조 세 개 요

2024

기 획 재 정 부

머 리 말

기획재정부는 우리나라 조세제도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매년 「조세개요」를 정기적으로 발간하고 있습니다. 「조세개요」는 우리나라 국세·지방세의 조세체계 및 세입 구조 전반을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세법을 처음으로 접하는 국민, 국외 거주 동포 및 세법을 공부하려는 학생 등이 세금에 관한 내용을 보다 정확하고 쉽게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집필된 조세 기본서입니다.

이 책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제1장 '조세체계 및 세입구조'는 현행 조세제도와 조세수입 개요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연도별 세수실적, 조세부담률 등 주요 통계를 정리하여 수록하였습니다.

제2장 '세목별 개요'부터 제5장 '지방세제'까지는 세목별·제도별 주요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확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혜택 확대, 반려동물 진료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도입, 자녀장려금 대상 및 지급액 확대,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 등 2023년에 개정된 주요 세법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6장 '폐지된 세법'에는 과거 시행되었으나 정책환경 변화 등으로 폐지된 주요 조세 제도를 정리하여 과거 제도에 대한 고찰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발간되는 「조세개요」가 일반 국민은 물론 조세를 연구하는 학생, 전문가 및 국가 정책을 담당하는 실무자에게 조세 기본서로서 보탬이 되길 바랍니다.

2024년 10월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목 차

Ⅰ. 조세체계 및 세입구조 / 1

Ⅱ. 세목별 개요 / 15

1. 국세기본법 ····· 17
2. 소득세제 ····· 39
3. 법인세제 ····· 91
4. 양도소득세제 ····· 119
5. 상속세 및 증여세제 ····· 165
6. 종합부동산세제 ····· 189
7. 부가가치세제 ····· 205
8. 개별소비세제, 교통·에너지·환경세제 ····· 235
9. 주세 ····· 253
10. 인지세제 ····· 263
11. 증권거래세제 ····· 267
12. 교육세제 ····· 271
13. 농어촌특별세제 ····· 275
14. 관세 ····· 279

Ⅲ. 조세지원제도(조세특례제한법) / 391

Ⅳ. 기 타 / 493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제도 ····· 495
2. 글로벌최저한세 제도 ····· 517
3. 국세징수제도 ····· 525
4. 조세범 처벌제도 ····· 531
5.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제도 ····· 539

Ⅴ. 지방세제 / 543

Ⅵ. 폐지된 세법 / 585

Ⅰ. 조세체계 및 세입구조

1. 조세의 분류 / 3
2. 세입구조 / 6
3.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 / 9
4. 국세·지방세 비율 / 10
5. 조세납기 / 11

작성자 : 조세분석과장 윤수현

1. 조세의 분류

가. 조세의 분류

① 과세주체

국　세 : 국가가 부과하는 조세

지방세 :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조세

② 세수의 용도

보통세 : 세수의 용도를 특정하지 않고 일반경비에 충당

목적세 : 세수의 용도를 특정하여 그 특정경비에만 충당

③ 다른 조세에 부가 되는지 여부

독립세 : 부가세외의 조세

부가세(Sur tax) : 다른 조세에 부가되는 조세

교육세・농어촌특별세・지방교육세 등

※ 개별세법과 일반세법

개별세법 : 국세에 관하여는 각세목(조세의 종류를 "세목"이라고 함)을 별개의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1세목 1세법주의" 라고 칭함(다만 예외적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상속세와 증여세라는 두세목을 규정) 이처럼 각 조세의 종목과 세율을 정한 세법을 「개별세법」이라고 함

일반세법 : "1세목 1세법주의"하에서 각 조세에 공통되는 사항을 규정한 별도의 세법을 「일반세법」이라고 함

<참고> 일반세법의 종류와 내용

구 분	규정하고 있는 사항
국 세 기 본 법	국세에 관한 기본적 공통적인 사항 및 위법·부당한 국세처분에 대한 불복절차
국 세 징 수 법	국세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조 세 범 처 벌 법	조세범죄와 그에 대한 처벌
조 세 범 처 벌 절 차 법	조세범죄에 대한 처벌 절차
조 세 특 례 제 한 법	조세의 감면 또는 중과 등 조세특례와 제한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국제거래에 관한 조세의 조정에 관한 사항 및 국가간 조세행정 협조에 관한 사항

나. OECD 조세 분류체계에 따른 우리나라 국세분류

구분	내용
소득과세 (income and profits)	소득세, 법인세, 농어촌특별세(소득세·법인세 감면분)
재산과세 (property)	상속·증여세, 증권거래세, 인지세, 종합부동산세, 농어촌특별세(증권거래세·종합부동산세분)
소비과세 (consumption)	부가가치세, 주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개별소비세, 관세, 교육세(주세·교통세·개별소비세·금융보험업자수입분), 농어촌특별세(개별소비세·관세감면분)
기타(other taxes)	과년도 수입

* 출처 : Revenue Statistics, Special Feature : taxes paid on social transfers, OECD

다. 우리나라의 현행 조세 종류

조세(25개)
- 국세(14개)
 - 소득세-(소득세법)
 - 법인세-(법인세법)
 - 상속세, 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종합부동산세-(종합부동산세법)
 -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 개별소비세-(개별소비세법)
 - 교통·에너지·환경세-(교통·에너지·환경세법)
 - 주 세-(주세법)
 - 인 지 세-(인지세법)
 - 증권거래세-(증권거래세법)
 - 교육세-(교육세법)
 - 농어촌특별세-(농어촌특별세법)
 - 관세-(관세법)
- 지방세(11개)
 -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지방세법)

주」 1. 토지초과이득세는 1998.12.28, 전화세는 2001.9.1. 폐지
자산재평가세는 2000.12.31 신고분까지 적용
2. 2001. 1월부터 지방세분 교육세(국세)가 지방교육세(지방세)로 전환
3. 2005.1.1 종합토지세 폐지, 2007.7.19 부당이득세 폐지
4. 2010.1.1. 사업소세·농업소득세 폐지,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신설

2. 세입구조

가. 2024년 국세 세입예산

(단위 : 억원, %)

구 분	'23년		'24년 본예산	'23년 예산 대비		'23년 실적 대비	
	최종예산	실적		증감액	증감률	증감액	증감률
총 국 세	4,004,570	3,440,711	3,673,140	△331,430	△8.3	232,429	6.8
[일반회계]	3,902,539	3,339,396	3,561,182	△341,357	△8.7	221,786	6.6
○ 내 국 세주」	3,579,676	3,060,595	3,216,136	△363,540	△10.2	155,541	5.1
· 소 득 세	1,318,632	1,158,330	1,257,605	△61,027	△4.6	99,275	8.6
· 법 인 세	1,049,969	804,195	776,649	△273,320	△26.0	△27,546	△3.4
· 상속증여세	171,274	146,341	146,566	△24,708	△14.4	225	0.2
· 부가가치세	832,035	737,749	814,068	△17,967	△2.2	76,319	10.3
· 개별소비세	101,943	88,209	101,945	2	0.0	13,736	15.6
· 증권거래세	49,739	60,803	53,829	4,090	8.2	△6,974	△11.5
· 인 지 세	8,158	7,969	8,505	347	4.3	536	6.7
· 과년도수입	47,926	56,999	56,969	9,043	18.9	△30	△0.1
○ 교통·에너지·환경세	111,471	108,436	153,258	41,787	37.5	44,822	41.3
○ 관 세	107,237	72,883	89,065	△18,172	△16.9	16,182	22.2
○ 교 육 세	47,022	51,516	61,625	14,603	31.1	10,109	19.6
○ 종합부동산세	57,133	45,965	41,098	△16,035	△28.1	△4,867	△10.6
[특별회계]	102,031	101,314	111,958	9,927	9.7	10,644	10.5
○ 주 세	32,151	35,686	35,759	3,608	11.2	73	0.2
○ 농 특 세	69,880	65,628	76,199	6,319	9.0	10,571	16.1

주」지방교부세법에 따라 지방교부 대상이 되는 내국세 세목을 말하는 것으로 강학상의 내국세 범위와는 다름

나. 연도별 세입실적

(단위 : 억원, %)

구 분	2021		2022		2023	
	실 적	증감률	실 적	증감률	실 적	증감률
총 국 세	3,440,782	20.5	3,959,393	15.1	3,440,711	△13.1
[일반회계]	3,325,048	20.4	3,851,596	15.8	3,339,396	△13.3
○ 내 국 세	2,964,450	20.0	3,522,750	18.8	3,060,595	△13.1
소 득 세	1,141,123	22.6	1,287,486	12.8	1,158,330	△10.0
신 고 분	526,974	32.6	561,722	6.6	389,928	△30.6
종합소득세	159,902	△0.5	239,389	49.7	214,368	△10.5
양도소득세	367,072	55.2	322,333	△12.2	175,560	△45.5
원 천 분	614,149	15.1	725,764	18.2	768,402	5.9
이자소득세	22,140	△15.5	26,277	18.7	52,068	98.2
배당소득세	46,490	44.8	41,577	△10.6	40,623	△2.3
사업소득세	36,727	10.9	40,962	11.5	43,665	6.6
근로소득세	472,312	15.5	574,418	21.6	591,442	3.0
기타소득세	19,359	10.4	22,572	16.6	24,028	6.5
퇴직소득세	14,308	5.1	16,301	13.9	12,014	△26.3
법 인 세	703,963	26.8	1,035,704	47.1	804,195	△22.4
신 고 분	554,679	31.0	869,844	56.8	603,768	△30.6
원 천 분	149,284	13.3	165,859	11.1	200,427	20.8
상속증여세	150,062	44.6	145,940	△2.7	146,341	0.3
상 속 세	69,447	77.9	76,113	9.6	85,444	12.3
증 여 세	80,614	24.6	69,827	△13.4	60,896	△12.8
부가가치세	712,046	9.7	816,266	14.6	737,749	△9.6
국 내 분	253,768	△11.2	205,464	△19.0	211,965	3.2
수 입 분	458,278	26.2	610,802	33.3	525,783	△13.9
개별소비세	93,638	1.6	93,182	△0.5	88,209	△5.3
증권거래세	102,556	17.1	63,029	△38.5	60,803	△3.5
인 지 세	9,598	△0.6	7,988	△16.8	7,969	△0.2
과년도수입	51,465	23.6	73,155	42.1	56,999	△22.1
○ 교 통 세	165,984	19.1	111,164	△33.0	108,436	△2.5
○ 관 세	82,270	16.6	103,241	25.5	72,883	△29.4
○ 교 육 세	51,039	8.7	46,444	△9.0	51,516	10.9
○ 종합부동산세	61,302	70.3	67,988	10.9	45,965	△32.4
[특별회계]	115,734	24.9	107,797	△6.9	101,314	△6.0
주 세	26,734	△11.1	37,665	40.9	35,686	△5.3
농 특 세	89,000	42.2	70,132	△21.2	65,628	△6.4

다. 세목별 세수구성비

(단위 : 억원, %)

세 목 별	2022년			2023년		
	실적	구 성 비		실적	구 성 비	
		국세	내국세		국세	내국세
총 국 세	3,959,393	100.0		3,440,711	100.0	
(일 반 회 계)	3,851,596	97.3		3,339,396	97.1	
○ 내 국 세	3,522,750	89.0	100.0	3,060,595	89.0	100.0
· 소 득 세	1,287,486	32.5	36.5	1,158,330	33.7	37.8
· 법 인 세	1,035,704	26.2	29.4	804,195	23.4	26.3
· 상속·증여세	145,940	3.7	4.1	146,341	4.3	4.8
- 상 속 세	76,113	1.9	2.2	85,444	2.5	2.8
- 증 여 세	69,827	1.8	2.0	60,896	1.8	2.0
· 부가가치세	816,266	20.6	23.2	737,749	21.4	24.1
· 개별소비세	93,182	2.4	2.6	88,209	2.6	2.9
· 증권거래세	63,029	1.6	1.8	60,803	1.8	2.0
· 인 지 세	7,988	0.2	0.2	7,969	0.2	0.3
· 과년도수입	73,155	1.8	2.1	56,999	1.7	1.9
○ 교통·에너지·환경세	111,164	2.8		108,436	3.2	
○ 관 세	103,241	2.6		72,883	2.1	
○ 교 육 세	46,444	1.2		51,516	1.5	
○ 종합부동산세	67,988	1.7		45,965	1.3	
(특 별 회 계)	107,797	2.7		101,314	2.9	
○ 주 세	37,665	1.0		35,686	1.0	
○ 농어촌특별세	70,132	1.8		65,628	1.9	

주」 구성비는 반올림되었으므로 세목별계와 합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

- 조세부담률은 국세 및 지방세를 합한 조세수입이 경상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국민들의 조세부담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
- 국민부담률은 조세수입과 사회보장기여금이 경상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조세부담률보다 포괄적으로 국민부담 수준을 측정하는 지표
 사회보장기여금은 4대 공적연금인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과 건강보험, 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기여금을 말함

가. 조세부담률

(단위 : 조원, %)

구 분		'18	'19	'20	'21	'22
GDP		2,007.0	2,040.6	2,058.5	2,221.9	2,323.8
규 모	조 세	377.9	383.9	387.6	456.9	514.5
	- 국 세	293.6	293.5	285.5	344.1	395.9
	- 지 방 세	84.3	90.5	102.0	112.8	118.6
부담률	조세부담률	18.8	18.8	18.8	20.6	22.1
	- 국 세	14.6	14.4	13.9	15.5	17.0
	- 지 방 세	4.2	4.4	5.0	5.1	5.1

* 신계열 기준(2020년 기준년 개편)

나. 국민부담률

(단위 : %)

년도	'18	'19	'20	'21	'22
국 민 부담률	25.2	25.7	26.2	27.9	29.7

※ OECD 주요국의 조세 및 국민부담률('22년 기준(호주, 일본은 '21년), %)

구 분	한 국*	미 국	일 본	프랑스	독 일	이탈리아	영 국	OECD평균**
조세부담률	22.1	21.6	20.7	31.1	24.7	29.8	28.2	25.3
국민부담률	29.7	27.7	34.1	46.1	39.3	42.9	35.3	34.0

* 한국 신계열 기준(2020년 기준년도)

** OECD 평균 : 호주, 일본은 '21년 기준 부담률(출처 : OECD Statistics 2023)

4. 국세·지방세 비율

(단위 : %)

구 분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국 세	79.0	76.9	75.4	76.3	76.7	77.7	76.4	73.7	75.3	77.0
지방세	21.0	23.1	24.6	23.7	23.3	22.3	23.6	26.3	24.7	23.0

※ OECD 주요국의 국세·지방세 비중('22년 기준, %)

	연방제국가			단일국가				
	미 국	독 일	평 균	영 국	프랑스	일 본	한 국	평 균
국 세	58.4	45.7	68.6	93.9	68.5	62.5	77.0	86.1
지방세	41.6	54.3	31.4	6.1	31.5	37.5	23.0	13.9

* 출처 : OECD Revenue Statistics(2023)

5. 조세납기

가. 국 세

세 목	납 부 기 한
종합소득세	○ 5.31 (확정신고,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경우 6.30), 11.30 (중간예납) ○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매매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월
퇴직소득세	○ 5.31 (확정신고)
양도소득세	○ 5.31 (확정신고) ○ 예정신고 →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월 주식은 양도일이 속한 반기의 말일부터 2월
법인세	○ 확정신고 →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월(연결-4월) ○ 중간예납 → 중간예납기간*이 지난 날부터 2월 * 사업개시일부터 6개월간
부가가치세	○ 1.25 (2기확정), 4.25 (1기예정), 7.25 (1기확정), 10.25 (2기예정) ○ 재화수입 → 관세 신고납부와 같음 ○ 일반환급 →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30일(2.24/8.24) ○ 조기환급 → (조기환급, 예정,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15일
상속세	○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월
증여세	○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월
개별소비세	○ 판매(반출, 입장)한 날이 속한 분기의 다음 달 25일 ○ 유류, 담배 → 판매(반출)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 ○ 과세유흥장소 → 유흥음식행위를 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 과세영업장소(대형 카지노) → 다음 해 3월 말일

세 목	납 부 기 한
주세	○ 제조장에서 출고한 날이 속한 분기의 다음 달 25일
교통·에너지·환경세	○ 반출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
종합부동산세	○ 12월 15일
증권거래세	○ 증권시장, 금융투자업자를 통한 거래분 → 다음 달 10일 ○ 개별 양도자 등 → 양도일이 속한 반기의 말일부터 2월 ○ 전자조달시스템 상 전자 계약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경우 과세문서 작성일
인지세	○ 과세문서에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는 때 ○ 계속적·반복적 작성문서 → 작성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
교육세	○ 금융·보험업자 - 확정신고: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연결납세방식 적용법인은 4개월) - 중간예납: 아래의 중간 예납기간이 끝난 후 2개월 이내 * 중간예납기간: (1차) 직전과세기간 종료 후 3월, (2차) 1차 중간 예납기간 종료 후 3월, (3차) 2차 중간예납기간 종료 후 3월 ○ 그 밖의 경우 →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주세 신고와 같음
농어촌특별세	○ 소득세·법인세·관세·취득세·(등록)등록면허세 감면세액 → 해당 본세 신고납부 시(중간예납은 제외), ○ 원천징수 건은 다음 달 10일 ○ 증권시장 거래분 →다음 달 10일 ○ 개별소비세액, 취득세액, 레저세액, 종합부동산세액 분 → 해당 본세 신고납부 시
관세	○ 납세신고분 →납세신고 수리일부터 15일 ○ 수입신고 전 즉시반출신고분 → 수입신고일부터 15일 * 위 신고분에 대해 성실신고자는 그 기한이 속한 달의 말일 ○ 납세고지분 →납세고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 성실납세자 →납부기한이 동일한 달에 속하는 세액은 그 달의 말일

나. 지 방 세

세 목	과세대상 또는 납세의무자		납 기
취득세	부동산, 차량 등 취득		(신고・납부) ○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상속·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3월내)
지방소비세	부가가치세(국세)		(납입·배분) ○ (특별징수의무자) 세무서장・세관장이 부가가치세 총액의 21%를 징수 ○ (납입) 특별징수의무자가 다음달 20일까지 납입관리자에게 징수액 납입 ○ (배분) 납입관리자가 25일까지 안분기준에 따라 지자체,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교육청에 각각 납입
지방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소득세 및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	○ 법인세분 :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연결과세방식 적용 대상 법인: 종료일로부터 5개월) ○ 종합소득세분 : 5월 말(종합소득세와 동일) ○ 양도소득세분 :국세종료 후 2개월 내 ○ 특별징수 :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법인세법에서 정한 과세표준	
자동차세	소유분	승용 자동차	○ 정기분: 제1기분(6.16~30) / 제2기분(12.16~31) ○ 수시분*: 해당 기분의 세액을 일할 계산하여 징수 * 자동차를 취득(신규·이전)하거나 말소하는 경우 등 ○ 연세액 일시납부(1,3,6,9월) /분할납부(3,6,9,12월)
		승합 자동차	
		화물 자동차	
	주행분	교통・에너지 환경세(국세)	(신고・납부) ○ 주행분 자동차세를 징수한 관할 지방자치단체장(교통・에너지 환경세 납부기한까지 신고납부) ○ 징수다음달 10일까지 울산시장에게 징수액 납입 ○ 울산시장(주된 특별징수의무자)이 시군별로 안분하여 25일까지 각 시・군에 납입
담배소비세	담배 제조 및 수입업자		○ 매월 20일까지 ○ 수시부과사유 발생시 수시부과
레저세	승마(승자) 투표권 발매액		○ 매월 10일까지 ○ 미신고납부자에 대하여 수시부과

세 목	과세대상 또는 납세의무자		납 기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	소방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의 건축물, 선박	○ 재산세 규정을 준용하여 부과징수(재산세에 병기)
	특정시설분	컨테이너, 원자력발전, 화력발전	○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납부
	특정자원분	발전용수, 지하수, 지하자원	○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납부 (지하수의 경우 보통징수 방법으로 징수)
지방교육세	취득세액, 등록면허세액(등록분), 레저세액, 주민세액(개인분·사업소분), 재산세액, 자동차세액, 담배소비세액		○ 취득세·등록면허세(등록분)·레저세·담배소비세·주민세(사업소분)을 신고·납부기한까지 ○ 주민세(개인분)·재산세·자동차세 납부기한까지
재산세	재산	건축물	○ 정기분-7월(16~31) : 주택분 재산세 1/2 납부* 건물분 재산세 전액 납부 -9월(16~30) : 주택분 재산세 1/2 납부 토지분 재산세 전액 납부 * 20만원 이하 7월에 일시납부(자치단체 별 조례 규정)
		주택	
		토지	
		선박	
		항공기	
등록면허세	등록분	부동산 등기	○ 등기·등록하기 전까지(등기·등록신청서 접수 전까지) ○ 면허증서 교부받기 전에 등록면허세 납부
		선박 등기	
		차량의 등록	
		기계장비	
		법인등기	
	면허분	각종 인허가 등 면허	
주민세	개인분	주소를 둔 개인	○ 개인분 : 매년 8월(16~31) 납부(보통징수) ○ 사업소분 : 매년 8월(1~31) 신고납부 ○ 종업원분 : 매월 납부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
	사업소분	사업소 연면적	
	종업원분	월지급급여액	

Ⅱ. 세목별 개요

1. 국세기본법 / 17
2. 소득세제 / 39
3. 법인세제 / 91
4. 양도소득세제 / 119
5. 상속세 및 증여세제 / 165
6. 종합부동산세제 / 189
7. 부가가치세제 / 205
8. 개별소비세제, 교통·에너지·환경세제/ 235
9. 주세 / 253
10. 인지세제 / 265
11. 증권거래세제 / 267
12. 교육세제 / 271
13. 농어촌특별세제 / 275
14. 관세 / 279

1. 국세기본법

1. 총 칙 / 19
2. 국세부과의 원칙과 세법적용의 원칙 / 21
3. 납세의무의 성립·확정 및 소멸 / 23
4. 세무조사 / 31
5. 납세자 권리구제(심사와 심판) / 35

작성자 : 조세법령운용팀장 김완수

1. 총 칙

가. 목적·내용

국세기본법은 국세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위법 또는 부당한 국세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과세를 공정하게 하며, 국민의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총칙법으로서의 성격

우리나라는 1세목 1세법 주의에 입각하여 여러 가지 국세를 각각 별개의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각 세법의 중복적인 규정을 피하고 세법 체계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은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음.

납세자 권리구제 절차법으로서의 성격

국세기본법은 위법·부당한 국세처분에 대한 납세자 권리구제 불복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나. 주요 용어 정의

(1) 가산세

(가) 정의 :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에 가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그 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함.

(나) 부과근거 : 개별세법에 두고 있으며, 본세에 포함. 다만, 무신고가산세, 과소·초과환급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는 국세기본법에서 규정.

(2) 납세의무자, 납세자, 제2차 납세의무자, 보증인, 원천징수

(가) 납세의무자 : 세법에 따라 국세를 납부할 의무(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는 제외)가 있는 자

(나) 납세자 :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와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경우의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 포함)와 세법에 따라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

(다) 제2차 납세의무자 :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세의무를 지는 자

(라) 보증인 : 납세자의 국세 또는 강제징수비의 납부를 보증한 자

(마) 원천징수 :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국세(이에 관계되는 가산세 제외)를 징수하는 것을 말함. 이것은 일정한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그 지급하는 금액에서 지급받는 개인(또는 법인)의 소득세(또는 법인세)를 차감하고 잔액만을 지급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처럼 원천징수한 소득세(또는 법인세)는 원칙적으로 다음 달 10일까지 정부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음.

※ 납세자와 납세의무자

- 납세자
 - 납세의무자
 - 본래의 납세의무자
 - 납세의무를 승계받은 자
 - 연대납세의무자
 - 제2차 납세의무자(물적납세의무자 포함), 납세보증인
 - 징수납부의무자 : 원천징수의무자,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자 등

(3) 과세기간, 과세표준

(가) 과세기간 : 세법에 따라 국세의 과세표준 계산의 기초가 되는 기간을 말함. 법인세법에서는 '사업연도', 소득세법과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그대로 '과세기간',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양자를 총칭하여 '과세연도'라고 규정.

(나) 과세표준 : 세법에 따라 직접적으로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대상의 수량 또는 가액을 말함. 과세표준이 수량으로 표시되는 조세를 '종량세'라고 하고, 과세표준이 금액으로 표시되는 조세를 '종가세'라고 함.

2. 국세부과의 원칙과 세법적용의 원칙

'국세부과의 원칙'이란 납세의무의 확정과정에서 지켜야 할 원칙을 말하며, '세법적용의 원칙'이란 세법의 해석과 적용 과정에서 지켜야 할 원칙을 말함.

구 분	국세부과의 원칙	세법적용의 원칙
내 용	① 실질과세의 원칙 ② 신의성실의 원칙 ③ 근거과세의 원칙 ④ 조세감면의 사후 관리	① 납세자 재산권의 부당한 침해 금지 ② 소급과세의 금지 ③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 ④ 기업회계의 존중
국세기본법과 세법과의 우선관계	국세에 관하여 세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소급과세의 금지

1. 개 념

법적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행정법규 등이 효력을 발생하기 전에 완결된 사실에 대하여 새로 제정된 법규 등을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는 것을 말함.

(1) 입법에 의한 소급과세의 금지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성립」 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함.

(2)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소급과세의 금지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함.

2. 소급과세금지의 기준시점과 진정소급, 부진정소급

(1) 기준시점

새로운 세법 또는 해석이나 관행이 소급하여 적용되었는지 여부의 판정은 「납세의무의 성립일」을 기준으로 판정. 즉,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된 경우에는 새로운 세법 등을 소급하여 적용되는 것이 금지되나, 아직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새로운 세법 등을 적용할 수 있음.

(2) 진정(眞正)소급과 부진정(不眞正)소급

납세의무 성립일 전후로 개정된 세법 등의 소급적용 허용 여부에 따라 소급의 성격을 구분하면 다음과 같음.

구 분	개 념	소급적용 여부
진정소급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된 소득 등에 대하여 납세의무 성립일 이후에 개정된 세법 등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을 말함.	허용하지 아니함
부진정소급	과세기간 중(납세의무의 성립일 전)에 개정된 세법 등을 그 과세기간 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을 말함(이러한 소급은 진정한 의미의 소급에 해당되지 아니함).	허용함

3. 납세의무의 성립·확정 및 소멸

가. 납세의무의 성립

(1) 과세요건

납세의무의 성립에 필요한 법률상의 요건을 말함. 이러한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시점. 즉 과세물건이 납세의무자에게 귀속됨으로써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표준의 계산 및 세율의 적용이 가능하게 되는 시점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이며 과세요건(4分說)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가) 납세의무자

세법에 의하여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하며, 이러한 납세의무자는 법률상의 의무자로서, 재정학상의 납세자와는 다른 것임.

(나) 과세물건

'과세물건'이란 조세법규가 과세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물건·행위 또는 사실을 말함.

(다) 과세표준

'과세표준'이란 세법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세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물건의 수량 또는 가액을 말함.

(라) 세율

'세율'이란 과세표준에 대한 세액의 비율로서 종가세의 경우에는 세율이 백분비 또는 천분비 등으로 표시되며, 종량세의 경우에는 세율이 금액으로 표시됨.

(2)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가) 원칙적인 성립시기

구 분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기간과세 세목[1]	① 소득세 ② 법인세 ③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 해당 법인이 해산하는 때 * 수입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 세관장에게 수입신고하는 때
수시과세 세목[2]	① 상속세 ② 증여세 ③ 종합부동산세 ④ 개별소비세, 주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 ⑤ 인지세 ⑥ 증권거래세	· 상속이 개시되는 때 ·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 ·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 과세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때 또는 과세장소에 입장하거나 과세유흥장소에서 유흥음식행위를 한 때 또는 과세영업장소에서 영업행위를 한 때 * 수입물품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 · 과세문서를 작성한 때 · 해당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
기 타	① 교육세 ② 농어촌특별세	· 국세에 부과되는 교육세 : 해당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부과되는 교육세 :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 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가 산 세	① 무신고가산세,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② 납부지연가산세,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③ 납부지연가산세 (법 §47의4①3) ④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법 §47의5①1) ⑤ 그 밖의 가산세	·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하는 때 · 법정납부기한 경과 후 1일마다 그 날이 경과하는 때 ·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경과하는 때 · 법정납부기한이 경과하는 때 ·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주」 1. 일정한 기간을 단위로 파악된 유량(流量, flow)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를 말함.
2. 일정한 시점을 기준으로 파악된 저량(貯量, stock)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를 말함.

(나) 예외적인 성립시기

구 분	성 립 시 기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법인세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	그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
중간예납하는 소득세·법인세	중간예납기간이 끝나는 때
예정신고기간·예정부과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간·예정부과기간이 끝나는 때
수시부과하여 징수하는 국세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한 때

나. 납세의무의 확정

(1) 의의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에 대하여 과세요건사실을 파악하고 세법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는 등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말함. 과세요건의 충족에 의해 납세의무가 성립하면 비로소 납세의무가 객관적으로 존재하게 됨. 그러나 과연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는가, 충족되었다면 그 내용은 무엇인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단계의 납세의무는 단지 추상적인 존재일 뿐이어서 이에 관하여는 아직 국가가 징수권을 행사할 수 없고 납세의무자는 이를 납부할 수 없음. 이러한 추상적 납세의무에 관하여 그 과세요건의 충족여부 및 내용을 확인하는 이른바 '확정'이 이루어짐으로써 비로소 납세의무는 구체적인 것으로 전환되며 이행될 수 있는 조세채무로 되는 것임.

(2) 확정의 방식

○ 부과과세제도 : 확정의 권한을 과세권자에게만 부여하고 있는 제도이며, 이는 전통적인 방식으로서 현재 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신고납부방식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되고 있음.

○ 신고납세제도 : 확정의 권한을 1차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부여하고 과세권자의 확정권은 2차적·보충적 지위에 유보하는 제도를 말함.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종합부동산세(신고납부방식을 선택한 경우)·개별소비세·주세·증권거래세·교육세 및 및 교통·에너지·환경세에 적용되고 있음.

부과과세제도와 신고납세제도의 비교

구 분		부과과세제도	신고납세제도	
(1) 의의		과세권자에게만 확정권을 부여	(1차적) 납세의무자에게 확정권 부여	(2차적) 무신고시 과세권자가 확정
(2) 적용세목		상속세·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종합부동산세(신고납부방식을 선택한 경우)·개별소비세·주세·증권거래세·교육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	
(3) 확정의 절차	① 확정의 주체	과세권자	(원 칙) 납세의무자	(예 외) 과세권자
	② 확정의 방식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③ 확정의 효력 발생시기	결정통지서(납세고지서) 도달시	신고서 제출시	결정통지서(납세고지서) 도달시

다. 납부의무의 소멸

성립 또는 확정된 납세의무는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하여 소멸하는데, 그 구체적인 사유는 다음과 같음.

구 분	납부의무 소멸사유	내 용
(1) 만족을 얻으면서 소멸하는 사유	① 납부	세액을 국고에 납입하는 것
	② 충당	·납부할 국세 등과 국세환급금을 상계 ·공매대금으로 체납액에 충당
(2) 만족을 얻지 못하고 소멸하는 사유	① 부과취소	유효하게 행해진 부과처분을 당초 처분시점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시키는 처분
	②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의 만료	
	③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완성	

(1)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가) 원칙적인 제척기간

구 분		제척기간
(1) 일반적인 세목	① 납세자가 사기나 그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법인세법에 따라 소득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법인세 포함)(주1) ②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세금계산서·계산서 미발급 등에 대한 가산세(주2)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	10년
	③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7년(주3,주4)
	④ ①, ②, ③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5년(주3,주5)
(2) 상속세와 증여세 (부담부증여시 양도소득세(주7))	① 납세자가 사기나 그밖의 부정한 행위로 상속세·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 ②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③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거짓신고 또는 누락신고(주6)를 한 경우(그 거짓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부분만 해당)	15년
	④ ①, ②, ③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년

(주1). 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 15년

(주2).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 미발급, 가공발급·수취 및 허위발급·수취에 대한 가산세,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공발급·수취 및 허위발급·수취에 대한 가산세와 비사업자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가산세

(주3). ③과 ④의 부과제척기간이 끝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후의 과세기간에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과세기간의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년

(주4). 역외거래의 경우 10년

(주5). 역외거래의 경우 7년

(주6). 거짓신고 또는 누락신고란 다음의 경우를 말함

ⓐ 상속재산가액 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가공의 채무를 빼고 신고한 경우

ⓑ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을 상속인 또는 수증자의 명기로 등기 등을 하지 않은 경우로서 그 재산을 신고 누락한 경우

ⓒ 예금, 주식, 채권, 보험금 그 밖의 금융자산을 신고 누락한 경우

(주7). 부담부증여에 따라 증여세와 함께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증여세에 대해 정한 기간(15년·10년)을 그 양도소득세의 제척기간으로 함

(나) 상속세·증여세의 특례제척기간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상속세·증여세를 포탈하는 경우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인 제척기간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산의 상속 또는 증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음. 다만, 상속인이나 증여자 및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와 포탈세액 산출의 기준이 되는 재산가액이 5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

ⓐ 제3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의 재산을 상속인이나 수증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그 자의 명의로 실명전환을 한 경우

ⓑ 계약에 따라 피상속인이 취득할 재산이 계약이행기간에 상속이 개시됨으로써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고 상속인이 취득한 경우

ⓒ 국외에 있는 상속재산이나 증여재산을 상속인이나 수증자가 취득한 경우

ⓓ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필요하지 않은 유가증권, 서화, 골동품 등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을 상속인이나 수증자가 취득한 경우

ⓔ 수증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증여자의 금융자산을 수증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사용·수익한 경우

ⓕ 비거주자인 피상속인의 국내재산을 상속인이 취득한 경우

ⓖ 제3자 명의 재산을 상속 또는 증여받은 경우

ⓗ 상증세법 §45의2에 따른 명의신탁증여의제의 경우

(다) 판결 등으로 인한 특례제척기간

ⓐ 판결 등 : 국세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인 제척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 ⓐ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그 결정 또는 판결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 또는 세액과 연동된 다른 세목이나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의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 「형사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어 뇌물·알선수재·배임수재로 인한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 상호합의 : 조세조약에 부합하지 않는 과세의 원인이 되는 조치가 있는 경우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이내(조세조약에서 따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에 그 조세조약의 규정에 따른 상호합의가 신청된 것으로서 그에 대하여 상호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원칙적인 제척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상호합의가 종결된 날부터 1년

ⓒ 경정청구 : 일반적 경정청구 및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 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간 조정을 위한 경정청구' 및 '간주임대료에 대한 경정청구' 또는 '국제거래가격에 대한 과세의 조정에 따른 조정권고'가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인 제척기간에도 불구하고 경정청구일 또는 조정권고일부터 2개월

ⓓ 정보교환 : 역외거래와 관련하여 부과제척기간이 지나기 전에 「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정보교환을 요청하여 정보교환을 요청한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까지 조세정보를 받은 경우에는 원칙적인 제척기간에도 불구하고 조세정보를 받은 날부터 1년

ⓔ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된 경우 : 조세쟁송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에서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되어 명의대여자에 대한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실제로 사업을 경영한 자에게 경정결정이나 그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인 제척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가 확인된 경우 : 조세쟁송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에서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가 확인되어 당초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 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인 제척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라) 제척기간의 기산일

구 분		제척기간
(1) 원칙적인 기산일	①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 (신고하는 종합부동산세 제외)(주)	과세표준 신고기한 다음날 (중간예납·예정신고기한, 수정신고기한 제외)
	② 종합부동산세 및 인지세	납세의무 성립일
(2) 예외적인 기산일	①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에 대하여 부과하는 국세	해당 원천징수액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의 법정 납부기한의 다음 날
	② 과세표준신고기한 또는 법정납부기한이 연장되는 경우	연장된 기한의 다음 날
	③ 공제, 면제, 비과세 또는 낮은 세율의 적용 등에 따른 세액을 의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징수하는 경우	공제세액 등을 징수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날

(주). 신고에 의해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뿐만 아니라 과세표준 신고의무가 부여된 국세도 포함됨. 다만,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려고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더라도 납세의무 성립일(매년 6월 1일)을 기산일로 함.

(2)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가) 소멸시효기간 : 5억원 이상의 국세에 대한 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10년간(이외의 국세는 5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름.

(나) 소멸시효의 기산일

구 분		제척기간
(1) 원칙적인 기산일	①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의 경우 신고한 세액	법정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
	② 과세표준 및 세액을 정부가 결정, 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는 경우 납세고지한 세액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
(2) 예외적인 기산일	①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하는 국세로서 납세고지한 원천징수세액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
	② 인지세로서 납세고지한 인지세액	
	③ 원칙적인 기산일 중 ①의 법정신고납부기한이 연장되는 경우	연장된 기한의 다음 날

(다) 소멸시효의 중단 및 정지사유

ⓐ 중단사유 : 납세고지, 독촉 또는 납부최고, 교부청구, 압류

ⓑ 정지사유 : 세법에 따른 분납기간, 징수 유예기간, 체납처분유예기간, 연부연납기간, 세무공무원이 사해행위 취소소송(국세징수법)이나 채권자 대위 소송(민법)을 제기하여 그 소송이 진행 중인 기간

(라) 국세부과의 제척기간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비교

구 분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1) 개 념	국가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	국가가 국세징수권을 장기간 행사하지 않는 경우 그 징수권을 소멸시키는 제도
(2) 대 상	국가의 부과권(형성권의 일종)	국가의 징수권(청구권의 일종)
(3) 기 간	5년, 7년, 10년, 15년	5년, 10년
(4) 기 산 일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	국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
(5) 중단과 정지	없음	① 징수권 행사로 인해 중단 ② 징수권 행사가 불가능한 기간에는 정지
(6) 기간만료의 효과	① 장래를 향해 부과권 소멸 ② 결손처분 불필요	① 기산일에 소급하여 징수권 소멸 ② 결손처분 필요

4. 세무조사

가. 세무조사의 의의

세무조사는 세무공무원이 세법에 규정되어 있는 질문검사권을 행사하여 과세요건의 충족여부를 사후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로서 과세관청의 조세채권채무 확정권의 행사 절차를 의미함.

납세의무자도 신고에 의한 조세채권채무 확정권(자기확정권)을 보장받고 있는 바, 법에 의하여 부여받은 자기확정권을 행사하여 확정한 조세법상의 효과는 존중되어야 하므로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고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안 됨.

나. 통합조사의 원칙

(1) 통합조사의 원칙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 납세자의 사업과 관련하여 세법에 따라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세목을 통합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2) 통합조사 원칙의 예외

(가) 세목의 특성, 납세자의 신고유형, 사업규모, 세금탈루 혐의 등을 고려하여 특정 세목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나) 긴급히 조사할 필요가 있거나 혐의내용이 특정 사업장, 특정 항목 또는 특정 거래에만 한정되어 그와 관련된 특정 세목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다) 그 밖에 세무조사의 효율성, 납세자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특정 세목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다. 조사대상자 선정

(1) 정기선정

(가) 국세청장이 납세자의 신고 내용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성실도를 분석한 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최근 4과세기간(또는 4사업연도) 이상 같은 세목의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납세자(장기 미조사자)에 대하여 업종, 규모, 경제적 집중 등을 고려하여 신고내용이 적정한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다) 무작위 추출방식으로 표본조사를 하려는 경우

(2) 수시선정

(가)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하는 신고,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의 작성·교부·제출, 지급명세서의 작성·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나) 무자료 거래, 위장·가공거래 등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다)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라)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마)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 제공을 알선한 경우

라. 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1) 사전통지

세무공무원은 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는 제외)를 받을 납세자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 사유 등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함. 다만, 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2) 납세자의 세무조사 연기신청 사유

(가) 천재지변

(나) 화재, 그 밖의 재해로 사업상 심각한 어려움이 있을 때

(다)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의 질병, 장기출장 등으로 세무조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라) 권한있는 기관에 장부, 증거서류가 압수되거나 영치되었을 때

(마) 위 (나)~(라)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때

마. 세무조사 기간

(1) 세무조사기간 제한

조사대상 세목·업종·규모, 조사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세무조사기간이 최소한이 되도록 하여야 하고, 특히 연간 수입금액(양도가액) 100억원 미만의 납세자에 대하여는 조사기간을 원칙적으로 20일 이내로 제한하며, 연장시에도 연장기간을 1회당 20일 이내로 제한.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

(가) 무자료·위장·가공거래 등으로 실제 거래 내용에 대한 조사 필요시

(나) 국제거래를 이용한 세금탈루, 국내탈루소득의 해외 변칙유출 혐의로 조사시

(다) 명의위장, 이중장부 작성, 차명계좌 이용, 현금거래의 누락 등의 방법을 통하여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조사시

(라) 거짓계약서 작성, 미등기양도 등을 이용한 부동산 투기 등을 통하여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조사시

(마) 상속세·증여세 조사, 주식변동 조사, 범칙사건 조사 및 출자·거래관계에 있는 관련자에 대하여 동시조사를 하는 경우

(2) 세무조사기간의 연장사유

(가) 장부 등의 은닉, 제출지연·거부 등 조사를 기피하는 행위가 명백한 경우

(나) 거래처 조사, 거래처 현지확인 또는 금융거래 현지확인 필요한 경우

(다) 세금탈루 혐의가 포착되거나 조사 과정에서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개시하는 경우

(라) 천재지변이나 노동쟁의로 조사가 중단되는 경우

(마) 납세자보호관 또는 담당관이 세금탈루혐의와 관련하여 추가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바) 세금탈루혐의에 대한 해명 등을 위해 조사대상자가 세무조사기간 연장을 신청하여 납세자보호관 또는 담당관이 인정하는 경우

바. 세무조사의 중지사유

아래와 같이 정상적인 조사를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중지하고, 중지기간은 세무조사기간 및 연장기간에 불산입하며, 중지사유 소멸, 긴급히 조사를 해야 할 경우 조사재개.

(가) 세무조사 연기신청사유에 해당하는 납세자가 조사중지를 신청한 경우

(나) 국외자료 수집·제출, 상호합의절차 개시에 따라 외국 과세기간과 협의가 필요한 경우

(다)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세무조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 납세자의 소재가 불명한 경우

ⓑ 납세자가 해외로 출국한 경우

ⓒ 납세자가 장부·서류 등을 은닉하거나 그 제출을 지연 또는 거부한 경우

ⓓ 노동쟁의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는 경우

(라) 납세자보호관 또는 담당관이 세무조사의 일시중지를 요청하는 경우

사. 세무조사시 장부· 서류의 임의보관 제한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은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 목적으로 납세자의 장부 등을 임의로 보관할 수 없음. 다만, 납세자가

동의한 경우 세무조사 기간동안 일시 보관할 수 있고, 납세자가 반환을 요청한 경우 반환을 요청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하며(단,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차례만 14일 이내의 범위에서 보관기간 연장 가능하고 세무조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반환해야함), 원본과 다름없다는 납세자의 확인을 받은 장부 등의 사본 보관은 가능함

아. 세무조사 범위 확대 사유

아래 사유 외에 세무공무원은 조사 진행 중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없음.

(가) 다른 과세기간·세목 또는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세금탈루 증거자료가 확인되어 다른 과세기간·세목 또는 항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나) 명백한 세금탈루 협의 또는 세법 적용의 착오 등이 있는 조사대상 과세기간의 특정 항목이 다른 과세기간에도 있어 동일하거나 유사한 세금탈루 협의 또는 세법 적용 착오 등이 있을 것으로 의심되어 다른 과세기간의 그 항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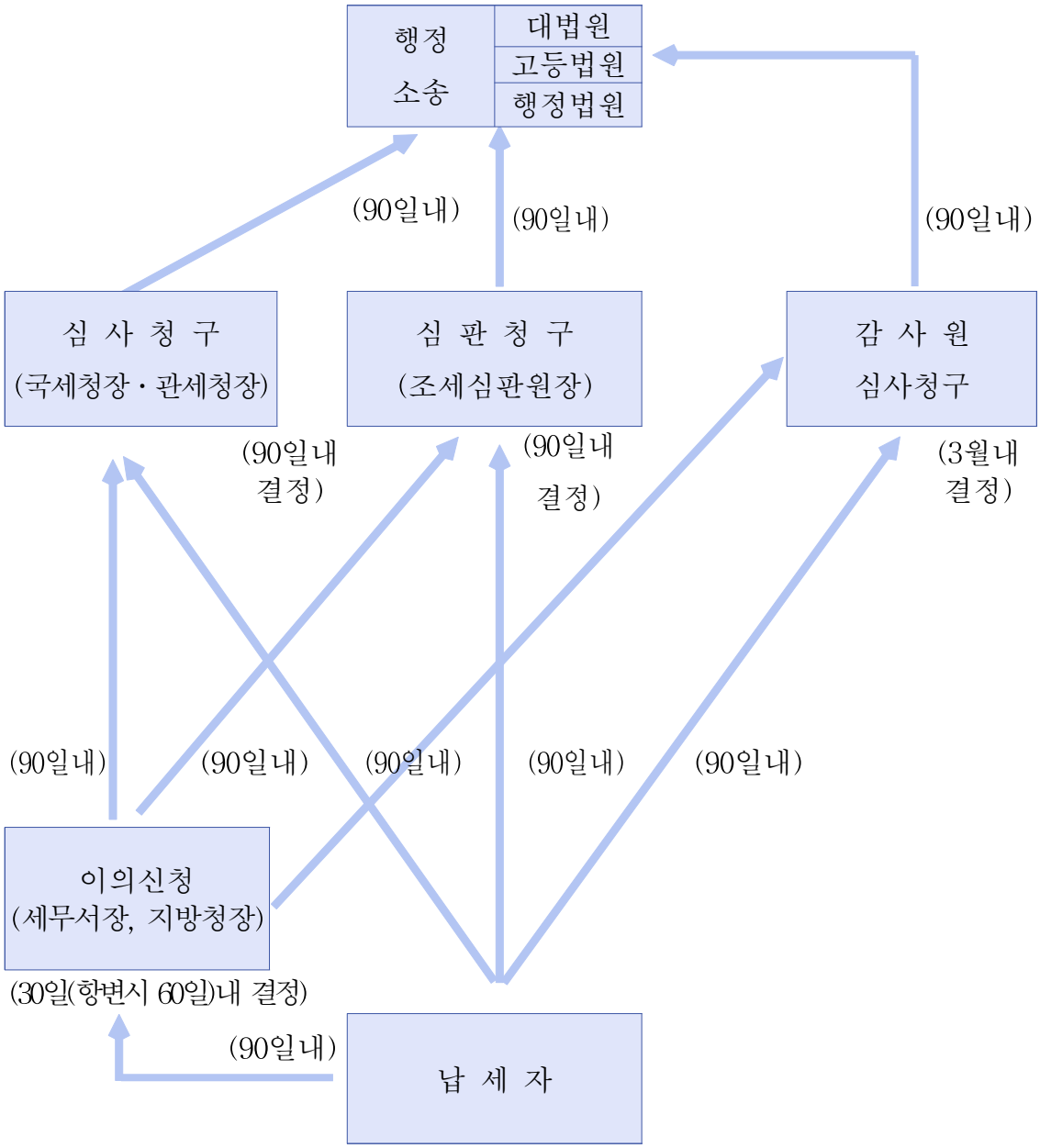
5. 납세자 권리구제 (심사청구, 심판청구)

가. 개 요

'납세자 권리구제 청구' 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가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하는 것을 말함

국민과 행정기관 간의 분쟁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먼저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거쳐야 한다는 것을 '행정심판전치주의'라고 하는데 1994.7.27. 행정소송법(§18①)의 개정으로 다른 법률에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게 되었으나, 국세기본법(§56②)에서 국세처분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또는 감사원법에 의한 불복절차(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음

나. 납세자 권리구제절차



주」 1. 청구기간은 처분 또는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계산함
단, 결정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계산하는 것임
2. 국세기본법상 불복절차와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와의 관계
납세자는 ① 국세기본법에 의한 불복절차(이의신청(생략가능)→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②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중복적용은 불가능함(선택적 지위관계)

다. 구제절차의 담당기관 및 해당기간

구 분		이 의 신 청 (임의절차)	심 사 청 구 (필수절차)	심 판 청 구 (필수절차)
① 청구기관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	국세청장	조세심판원장
② 불복청구서의 제출기관		소관세무서장 또는 소관 지방국세청장에 제출하거나 소관세무서장을 거쳐 소관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	소관세무서장을 거쳐 국세청장에게 제출	소관세무서장을 거쳐 조세심판원장에게 제출
③ 청구기간		90일 이내	90일 이내	90일 이내
④ 보정기간		20일 이내	20일 이내	상당한 기간
⑤ 결정	기간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항변 시 60일) 이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방법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세청장이 결정	조세심판관회의가 심리를 거쳐 결정

2. 소득세제

1. 소득세제 연혁 / 41
2. 소득세 과세제도 개요 / 44
3. 과세체계 / 47
4. 특별소득·세액공제 / 67
5. 소득세율 / 68
6. 세액공제 / 70
7. 가산세의 종류 및 적용대상 / 71
8. 신고납부절차 / 72
9. 결정 또는 경정 / 74
10. 근로장려세제 / 76
11. 자녀장려세제 / 85
12. 금융투자소득세제 / 87

작성자 : 소득세제과장 이영주
금융세제과장 조용래

1. 소득세제 연혁

가. 일정시대의 소득세제

○ 1934년 총독부내 세제조사위원회의 세제개혁안을 근간으로 일반소득세 도입
- 1종(법인소득)
- 2종(이자·배당 등에 대한 원천과세)
- 3종(2종에 속하지 않는 소득으로 종합과세 대상)

○ 2차대전 중 전비조달 목적으로 수차례 개정

나. 미군정하의 소득세제

○ 일정시대의 소득세제를 그대로 실시하되 47년과 48년의 2차에 걸친 개정으로 근로소득공제의 현실화 및 소득세율의 인상 등이 이루어짐

다. 건국후의 소득세제

○ '49.7.15 소득세법 제정 : 정부수립 후 최초 제정

○ '61.12.8 소득세법 개정 : 완전한 분류과세(부동산·배당이자·근로·사업·기타소득의 5개 유형으로 분류과세)

○ '67.12.29 소득세법 제정(경제개발 재원조달을 위하여 구법 폐지) : 분류과세와 종합과세 이원화(재원 확보를 위하여 분류과세 소득 중 각 소득별 일정액 이상은 종합과세)

라. 현행의 소득세제

○ '74.12.24 전면개정(현행 소득세 체계로 개편) : 퇴직소득, 양도소득 및 산림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은 종합과세(8~70% 16단계 초과누진세율)

○ '94.12.24 전면개정(1996.1.1 시행)을 통하여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도입하는 등 매년 세법개정을 해오고 있음

<참고> 우리 나라 소득세 과세제도의 변천요약

구 분	주 요 제 도
1949.7.15.소득세법 제정 (정부수립 후 최초 제정)	○ 분류과세와 종합과세의 이원화 - 분류과세(특별소비세) :청산소득, 퇴직소득, 사채이자소득 등 분류과세 - 종합과세(일반소득세) :근로·부동산·사업·산림·배당소득은 종합과세 * 소득세에서 법인세 분리
1961.12.8.소득세법 제정 (5·16 후 구법 폐지)	○ 완전한 분류과세 - 부동산·배당이자·근로·사업·기타 소득의 5개 유형으로 분류과세
1967.12.29.소득세법 제정 (경제개발 재원조달을 위하여 구법 폐지)	○ 분류과세와 종합과세 이원화 - 재원 확보를 위하여 분류과세 중 각 소득별 일정액(예: 사업소득 3백만원) 이상은 종합과세
1974.12.24.전면 개정 (현행 소득세 체계로 개편)	○ 종합과세 - 퇴직소득, 양도소득, 산림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은 종합과세(8~70%, 16단계 초과 누진세율)
1994.12.22.전면 개정 (1996.1.1 시행)	○ 종합과세 확대 - 금융소득 종합과세 * 다만, 1997.12.31. 개정된「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 법률」부칙에 의해 1998~2000년 귀속분은 금융소득종합과세 실시를 유보하였다가 1999년말 관련 법을 개정하여 2001년부터 재실시 ○ 신고납부제 전환 ○ 최고세율 인하(40%), 세율구분 단순화(4단계)
2001.12.31.개정	○ 소득세율 10% 인하(9~36%) ○ 유형별 포괄주의 도입(이자·배당소득에 한함)
2002.12.18.개정	○ 자산소득 합산과세제도 폐지 ○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여부 인별로 판단
2003.12.30.개정	○ 자원봉사용역에 대한 기부금 소득공제 인정
2004.1.29.개정	○ 소득세율 1%p 인하(8~35%) ○ 원천징수세율 인하(이자·배당 : 15%→14%)
2006.12.30.개정	○ 사업용계좌 개설제도 도입 ○ 산림소득을 사업소득으로 통합

구 분	주 요 제 도
2007.12.31.개정	○ 종합소득세 과표구간 상향 조정(1천만원~8천만원 → 1천2백만원~8천8백만원)
2008.12.26.개정	○ 종합소득세 세율 조정(8·17·26·35%→(09년)6·16·25·35%→(10년)6·15·24·33%) ○ 서화·골동품의 양도차익에 대해 기타소득세 과세 (11.1.1부터 시행) → (13.1.1부터 시행, '10.12.31)
2009.12.31.개정	○ 종합소득세 최고세율 인하 유보((10~11년)35%→(12년)33%) ○ 고소득 전문직 등의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강화(건당 30만원 이상 현금 거래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2010.12.31.개정	○ 다자녀 추가공제 확대(자녀2명 : 50만원→100만원, 자녀 2인 초과 : 1인당 100만원→200만원) ○ 일용근로자 원천징수세율 인하(8%→6%)
2012.1.1.개정	○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 과세표준구간 신설 (3억원초과, 38%), ○ 근로장려세제 적용 대상 확대(무자녀가구 및 일부 사업자) 및 지급액 인상(최대 120만원→최대 70 ~ 200만원) ○ 임원에 대한 퇴직소득 한도 규정 신설
2013.1.1.개정	○ 고소득 개인사업자 최저한세율 인상 (산출세액 3천만원 초과 35%→45%) ○ 소득세 특별공제 종합한도 신설 (한도 2,500만원) ○ 연금·퇴직소득의 과세 정상화 ○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 인하(4천만원 -> 2천만원)
2014.1.1.개정	○ 최고세율(38%) 적용 과세표준 구간 조정(3억원→1억5천만원) ○ 자녀관련 인적공제 및 특별공제 세액공제로 전환 ○ 근로장려금 적용 기준 전환(결혼 및 맞벌이 여부) 및 자녀장려세제 도입
2014.12.23.개정	○ 퇴직연금 활성화 및 과세형평 제고를 위한 세제 개편 ○ 주택임대차선진화를 위한 제도개선 -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비과세('14년~'16년) 및 분리과세('17년 이후) ○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부장려금 제도 도입
2015.12.15.개정	○ 종교인소득 과세제도 도입('18.1.1 시행)
2017.12.19.개정	○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 과세표준 구간 조정(5억원초과 42%)
2020.12.19.개정	○ 금융투자소득세 도입('23.1.1 시행) ○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 과세표준 구간 조정(10억원초과 45%)
2022.12.31.개정	○ 하위 2개 과세표준 구간 조정 (1,200만원→1,400만원, 4,600만원→5,000만원) ○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연기('25.1.1 시행)

2. 소득세 과세제도 개요

가. 열거주의 방식

○ 과세소득을 규정하는 방식에는 포괄주의 방식과 열거주의 방식이 있음
- 포괄주의 방식 : 포괄적인 정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소득을 규정하는 방식(미국, 일본 등)
- 열거주의 방식 : 법률에서 과세 대상으로 열거한 소득만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방식(독일, 영국, 우리나라 등)

○ 현행 소득세법은 구체적으로 과세대상으로 열거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있음

*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금융투자소득 9가지 소득

○ 우리나라의 경우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소득세는 열거주의 방식이지만 법인소득에 과세하는 법인세는 포괄주의 방식으로 과세하고 있음

나. 종합과세

○ 소득세는 과세방법에 따라 크게 종합소득세제와 분류소득세제로 구분
- 종합소득세제(Global Income Tax) : 소득의 원천이나 소득의 종류에 관계없이 모든 소득을 종합하여 누진세율에 의하여 과세
- 분류소득세제(Classified Income Tax) : 소득을 몇 개의 발생원천별로 구분하고 각 소득원천에 따라 단일비례세율 또는 복수비례세율을 적용하여 과세

* 분리과세(separate taxation)는 종합과세되는 소득을 지급받을 때 일정률의 원천징수를 하고 나면 종합소득 신고시 이를 합산하지 않는 것을 말함

<참고> 소득세 과세 방법

- 종합소득
 - 종합과세 : 합산과세, 누진세율
 - 분리과세 : 합산안함, 원천징수세율
- 분류소득-분류과세 : 합산안함, 별도세율

○ 현행 소득세법은 종합과세를 원칙으로 하면서 일부 소득에 대하여는 분류과세하고 있음

우리나라 소득세제의 소득구분과 과세방식

- 종합소득
 - 이자소득
 - 배당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

 ⇒ 종합과세방식
- 퇴직소득
- 양도소득
- 금융투자소득('25년시행)

 ⇒ 분류과세방식

다. 개인단위과세

○ 종합과세에 있어 소득을 종합하는 인적단위를 과세단위라고 하며 개인단위주의와 소비단위주의(부부단위주의 또는 가족단위주의)로 구분

- 누진세율 구조하에서는 과세단위를 어떻게 설정하는가에 따라 세부담 크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침

○ 우리나라 소득세법은 원칙적으로 개인을 단위로 하여 소득세를 과세하고 있음. 다만 가족 구성원중 2인 이상이 공동사업자에 포함되고 있는 경우 손익분배 비율을 허위로 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는 예외적으로 이를 합산하여 과세하고 있음.

라. 신고납부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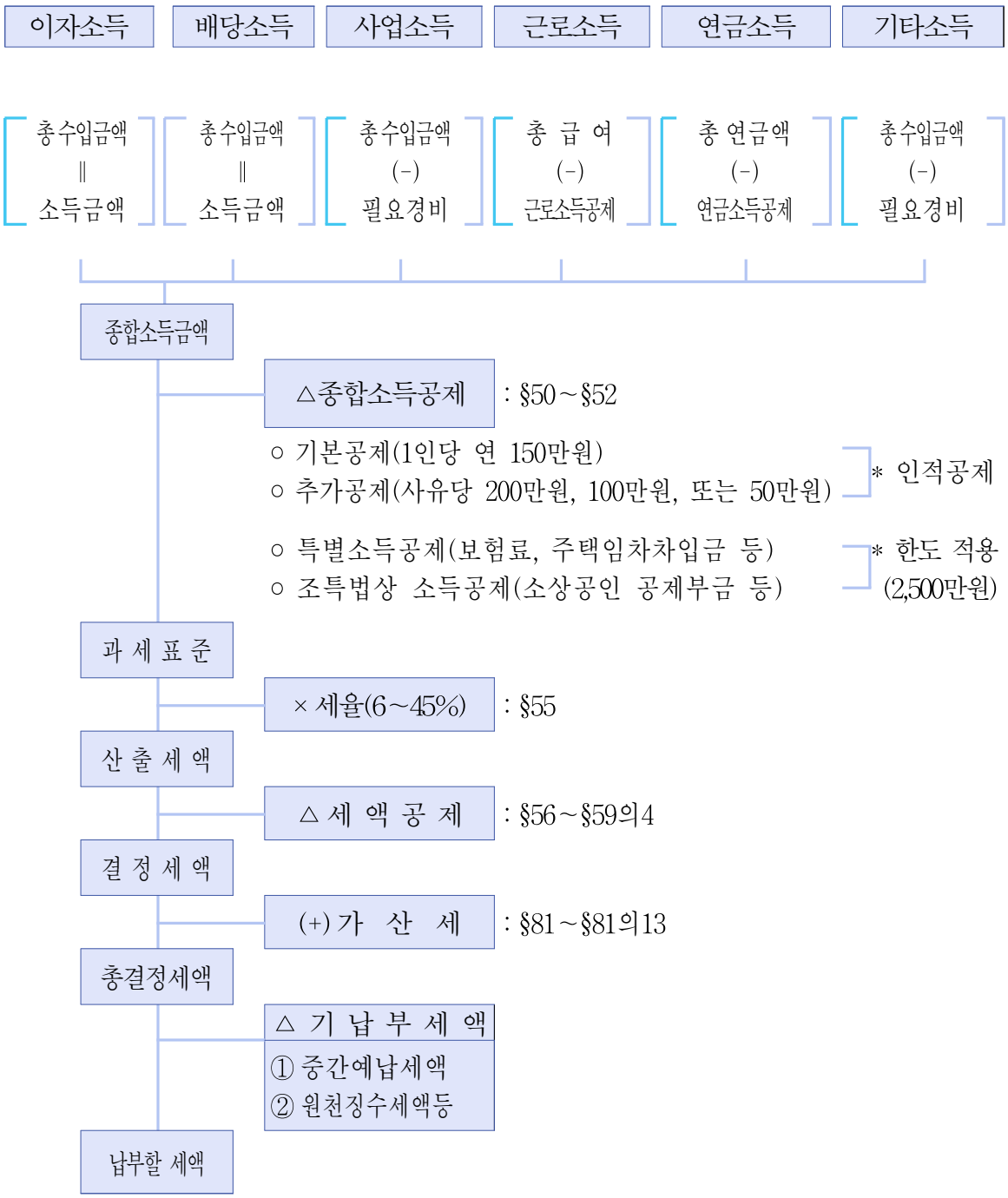
○ 납세의무자가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경우 6월 30일까지)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함으로써 소득세의 납세의무 확정

마. 원천과세

○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일정한 이자소득·배당소득·근로소득 및 기타소득 등을 지급하는 자는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자의 경우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정부에 납부하여야 함

3. 과세체계

가. 종합소득 과세체계



(1) 이자소득

(가) 이자소득의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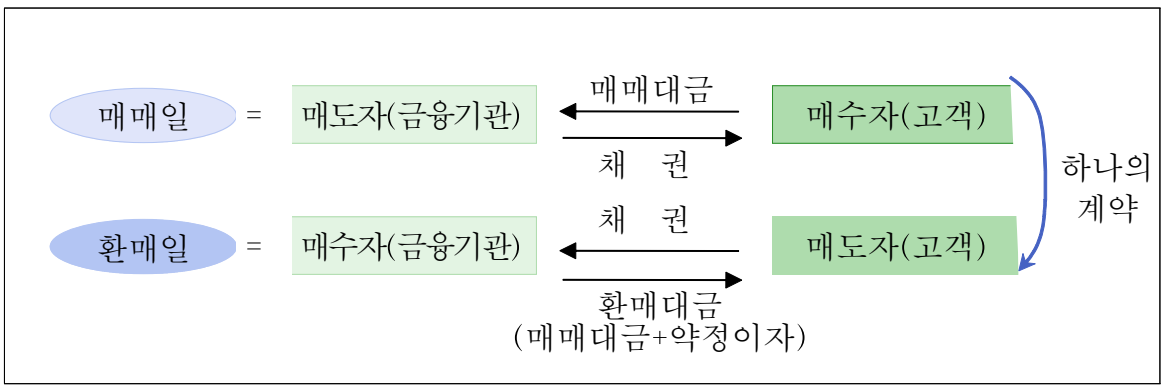
'이자소득' 이란 해당 연도에 발생한 다음의 소득을 말함.

① 국가·지방자치단체·내국법인·외국법인이나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 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②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예금(적금·부금·예탁금과 우편대체 포함)의 이자
③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신용계(信用契) 또는 신용부금(信用賦金)으로 인한 이익
④ 환매조건부 채권·증권의 매매차익
⑤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⑥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⑦ 비영업대금의 이익
⑧ 위 ①~⑦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
⑨ 위 ①~⑧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 또는 행위와 파생상품이 결합된 경우 해당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

○ 환매조건부 채권·증권의 매매차익

이는 금융기관이 시장가격에 의하지 않고 환매기간에 따른 사전약정이율에 의해 결정된 가격으로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조건으로 매매하는 채권·증권(RP;Repurchase Agreements)의 매매차익을 말함

환매조건부 채권·증권(RP)의 거래구조



○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보험차익=만기보험금(또는 공제금)·중도해약 환급금 - 납입보험료(또는 납입공제료)

○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직장공제회' 란 동일 직장이나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생활안정, 복리증진 또는 상호부조 등을 목적으로 구성된 공제회·공제조합 및 이와 유사한 단체를 말함.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	근로자가 퇴직 · 탈퇴로 인하여 직장공제회로부터 받는 반환금	-	납입공제료

*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은 199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직장공제회에 가입하고 퇴직 또는 탈퇴로 인하여 받는 반환금부터 과세됨

○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타인에게 금전을 빌려주고 그 대가로 받는 이익을 말함

(나) 비과세 이자소득

다음의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음.

근 거	비과세 이자소득	비 고
소득세법 §12 (1)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의 이익주」	-
소득세법 시행령 §25	장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
조세특례제한법 §87①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이자소득 (분기별 납입금액 300만원 이내)	·2012.12.31.까지 가입분에 한함
조세특례제한법 §87③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비과세)	·2025.12.31.까지 가입분에 한함
조세특례제한법 §87의2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이자소득	·2025.12.31.까지 가입분에 한함
조세특례제한법 §88의2	비과세종합저축의 이자소득	·2025.12.31.까지 가입분에 한함
조세특례제한법 §89의3	농협 등의 조합에 대한 예탁금(1인당 3천만원이하에 한함)의 이자소득***	·2025.12.31.까지 발생분에 한함
조세특례제한법 §91의18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이자소득 {배당소득과 합계 1인당 200만원(서민·농어민은 400만원) 한도}	-
조세특례제한법 §91의19	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비과세 (현역병등 월납입액 40만원 한도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비과세)	·2026.12.31.까지 가입분에 한함
조세특례제한법 §91의21	청년희망적금에 대한 비과세 (납입한도 연 600만원 이하인 전용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비과세)	·2022.12.31.까지 가입분 & 2024.12.31.까지 수입분
조세특례제한법 §91의22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비과세 (납입금액 연 840만원 이하)	·2025.12.31.까지 가입분에 한함

주」'공익신탁' 이란 학문, 복지, 교육, 환경 등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을 말하는데(공익신탁법 §2), 이러한 공익신탁의 이익에 이자소득으로 구분되는 경우는 물론이고 소득의 내용에 따라 다른 소득으로 구분 되는 경우에도 소득세를 비과세

* ①계약기간 10년 이상, 납입보험료 1억원 이하인 저축성보험, ②매월 납입하는 월150만원 이하의 저축성보험(순수보장성보험은 한도 제한 없음), ③종신형 연금보험의 보험차익은 이자소득에서 과세제외('17.4.1시행, 대통령령 제27829호)

** ①가입일 현재 19세~34세 무주택 세대주 ②총급여 3.6천만원 이하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금액 2.6천만원 이하인 사업소득자, ③계약기간 2년 이상

*** 2026.1.1 ~ 2026.12.31까지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5의 세율을 적용하며, 그 이자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함

(2) 배당소득

(가) 배당소득의 범위

배당소득이란 해당연도에 발생한 다음의 소득을 말함

①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②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 또는 분배금
③ 내국법인으로 보는 신탁재산으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④ 의제배당
⑤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인정배당)
⑥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은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⑦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⑧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정외국법인의 배당가능한 유보소득 중 내국인이 배당 받은 것으로 간주된 금액
⑨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⑩ 동업기업과세특례에 따른 동업자의 배당소득 (所法 3 ③)
⑪ 위 ①~⑧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⑫ 위 ①~⑪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 또는 행위와 파생상품이 결합된 경우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

※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집합투자'란 2인 이상에게 투자권유를 하여 모은 금전 등을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않으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것을 말함. 이러한 집합투자를 수행하는 기구(Vehicle)에는 신탁 형태의 투자신탁, 회사 형태의 투자회사·투자유한회사 및 투자합자회사(사모투자전문회사), 조합형태의 투자조합 및 투자익명조합이 있음.

※ 집합투자 등에 따른 이익의 소득구분

-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 ● 배당소득
 - 투자신탁(수익자, 수익증권)
 - 투자회사(주주, 주식)
 - 투자유한회사·투자합자회사(사원, 지분증권)
 - 투자조합·투자익명조합(조합원, 지분증권)
- 집합투자기구 외의 신탁이익 ····· ● 소득의 내용별로 구분

(나) 비과세 배당소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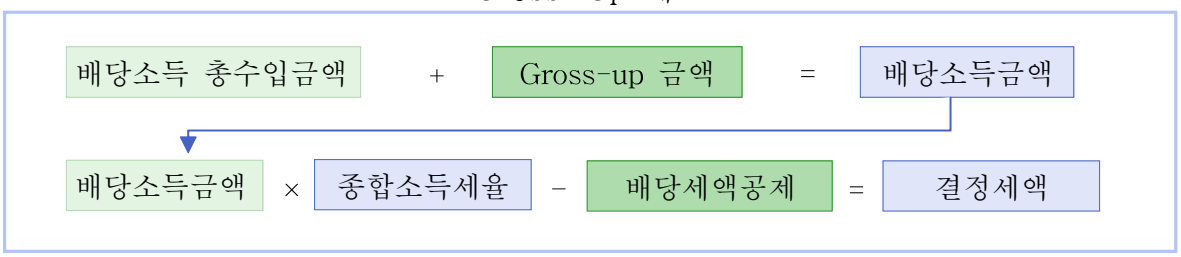
다음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음

근 거	비과세 배당소득	비 고
소득세법 §12(1)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의 이익	-
조세특례제한법 §66, §67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이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 (식량작물재배업, 특정어업소득 등에 한함)	2026.12.31.까지 지급받는 소득에 한함
조세특례제한법 §68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한 거주자가 지급받은 배당소득 중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2026.12.31.까지 지급받는 소득에 한함
조세특례제한법 §87①	장기주택마련저축의 배당소득 (분기별 납입금액 300만원 이내)	2012.12.31.까지 가입분에 한함
조세특례제한법 §88의2	비과세종합저축의 배당소득	2025.12.31.까지 가입분에 한함
조세특례제한법 §88의4⑨	장기보유우리사주의 배당소득 (액면가 1,800만원 이하 보유자에 한함)	-
조세특례제한법 §88의5	농협 등의 조합에 대한 출자금(1인당 1천만원 이하에 한함)의 배당소득	2025.12.31.까지 받는 분에 한함
조세특례제한법 §91의18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배당소득 {이자소득과 합계 1인당 200만원 (서민·농어민은 400만원) 한도}	-

(다)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의 조정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법인단계에서 법인세가 과세되고 다시 주주단계에서 소득세가 과세되는데, 이것을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라고 함. 현행 소득세법은 이러한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하여 Gross-Up 제도를 채택하고 있음 이것은 주주단계에서 소득세를 과세할 때 해당 배당소득에 대해 과세된 법인세 상당액(이를 '귀속법인세'라 한다)을 배당소득 총수입금액에 가산하여 소득세를 계산한 다음, 그 귀속법인세를 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배당세액공제)하는 방식임

Gross-Up 제도



(3) 사업소득

(가) 사업소득의 범위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적,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다음과 같은 일정한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사업소득 범위	사업소득범위 제외
농업, 임업 및 어업 소득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 소득
광업 소득	
제조업 소득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소득	
수도,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 소득	
건설업 소득	
도매 및 소매업 소득	
운수 및 창고업 소득	
숙박 및 음식점업 소득	
정보통신업 소득	
금융 및 보험업 소득	
부동산업 소득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지상권을 설정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기타소득)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소득	계약 등에 따라 그 대가를 받고 연구·개발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제외한 연구개발업 소득
사업시설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소득	

사업소득 범위	사업소득범위 제외
교육서비스업 소득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노인학교 발생 소득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소득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장기요양사업 소득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소득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소득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에 따른 협회 및 단체
가구내 고용활동 소득	
복식부기의무자가 차량 및 운반구 등 사업용 유형고정자산 양도 소득	법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양도소득
그 밖에 위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 활동을 통한 소득	

(나) 비과세 사업소득

사업소득 중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음

구 분	비과세소득의 범위
논·밭 임대소득	논·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작물재배업소득	수입금액 10억원 이하인 것
주택임대소득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해당 주택(주택부수토지 포함)을 임대하고 지급받는 소득(고가주택*의 임대소득 및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제외) * 과세기간 종료일 또는 해당 주택의 양도일 현재 기준시가 12억원 초과하는 주택
농가부업소득	농·어민이 경영하는 축산·고공품(藁工品)제조·민박·음식물 판매·특산물제조·전통차제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활동에서 발생하는 다음에 해당하는 소득 ①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에서 발생하는 소득 ② ①이외 소득으로서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연 3,000만원 이하의 소득 *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은 [시행령 별표 1]의 가축별로 적용하며(예:젖소 50마리, 돼지 700마리 등), 농가부업규모를 초과하는 사육두수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기타 부업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하여 연 3,000만원까지 비과세
전통주 제조소득	다음에 해당하는 주류를 농어촌지역(수도권 외의 읍·면지역)에서 제조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연1,200만원 이하인 것 ① 주류부문의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및 시·도무형유산 보유자 또는 대한민국식품명인이 제조하는 주류 등(전통주) ② 관광진흥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91. 6. 30. 이전에 추천하여 주류심의회의 심의 절차를 거친 주류 ③ 종전의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해 제주도지사가 국세청장과 협의하여 '99. 2. 5. 이전에 제조허가 한 주류
산림소득	조림기간이 5년 이상인 임지(林地)의 임목(林木)의 벌채 또는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금액으로서 연 600만원 이하의 금액 * 조림하지 않은 자연림과 조림기간이 5년 미만인 임목의 벌채·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 하지 않음
어로어업·양식어업소득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연근해어업과 내수면어업 또는 양식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것

(다) 사업소득금액의 계산

사업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사업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 즉,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을 바탕으로 세무조정을 하여 사업소득금액 계산



주」 1. 세무조정 : 결산서상 당기순이익과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금액과의 차이를 조정하는 과정

2. 총수입금액불산입 : 자산수증익・채무면제익 중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금액, 사업자가 자가생산한 제품 등을 다른 제품의 원재료 등으로 사용한 금액 및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등

3. 필요경비불산입 : 벌금・과료, 가사관련경비, 업무무관경비 및 기업업무추진비 필요경비 불산입액 등

(라) 부동산임대업의 소득금액

○ 부동산임대업의 범위

・부동산 또는 부동산 상의 권리를 대여하는 사업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을 대여하는 사업

・광업권자・조광권자・덕대가 채굴 시설과 함께 광산을 대여하는 사업

○ 부동산임대업의 소득금액 계산

부동산임대업의 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국내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여부

주택 수	월세	보증금
1채	비과세 주택임대소득 (고가주택*은 과세O) * 기준시가 12억원 초과	과세 ×
2채	과세 O	・고가주택* 2주택 소유 및 보증금등의 합계액이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2026.1.1. 이후 발생분) * 기준시가 12억원 초과 ** 3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if 보증금 등의 합계액 ≦ 3억원 : 과세 × └ if 보증금 등의 합계액 > 3억원 : 과세 O ・소형주택(기준시가 2억원 이하이며 주거전용 면적이 40㎡ 이하인 주택)은 과세대상에서 제외
3채 이상	과세 O	・2011.1.1. 이후 발생분 ┌ if 보증금 등의 합계액 ≦ 3억원 : 과세 × └ if 보증금 등의 합계액 > 3억원 : 과세 O ・소형주택(기준시가 2억원 이하이며 주거전용 면적이 40㎡ 이하인 주택)은 과세대상에서 제외

○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한시적 비과세('14년~'18년 소득분) 후 현재 분리과세[1]('19년 소득분부터)

주」 1. 분리과세 산출세액 계산 방법: (분리과세 주택임대수입 × (1-60%*)-400만원**) × 단일세율 14%

* 등록 여부에 따른 차등화(등록 60%, 미등록 50%)

**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등록 400만원, 미등록 200만원)

단, 종합소득 산출세액이 더 작은 경우 종합소득 과세방식 선택 가능

(마) 성실신고확인제도(소득세법 §70의2)

○ 대상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과세표준신고서 외에 세무사 등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함께 제출

○ 해당 신고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일정 수준 이상인 사업자가 대상사업자임

업 종	농어업, 도소매업 등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등	부동산업, 서비스업 등
기준 수입금액	15억원 이상	7.5억원 이상	5억원 이상

○ 성실신고확인자(세무사, 회계사, 세무법인, 회계법인)가 사업자의 매출누락 및 비용 측면의 탈세를 모두 확인하되, 가공경비·업무무관경비 등 비용 측면의 탈세 방지에 역점

○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

- 신고기한 연장(5월말 → 6월말)
- 성실사업자 수준으로 교육비·의료비 등 공제 허용
- 확인비용의 일정비율(60%) 세액공제(연간 120만원 한도)

○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 가산세(산출세액의 5% 및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의 0.02% 중 큰 금액)를 부과, 세무조사 사유에 추가

(4) 근로소득

(가) 근로소득의 범위

○ 근로소득이란 근로계약에 의한 비독립적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임금, 상여, 수당 등을 말함

○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의 소득이 포함됨

- 기밀비(판공비), 교제비, 기타 유사한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않은 급여
-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위로금·개업축하금·학자금·장학금(종업원의 수학중인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장학금 포함)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근로수당·가족수당·전시수당·물가수당·출납수당·직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보험회사·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등 금융기관의 내근사원이 받는 집금수당과 보험가입자의 모집, 증권매매의 권유 또는 저축의 권장으로 인한 대가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급식수당·주택수당·피복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 종업원이 주택(주택부수토지 포함)의 구입·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등.

(나) 비과세 근로소득

○ 복무중인 병이 받는 급여

○ 법률에 따라 동원된 자가 동원직장에서 받는 급여

○ 각종 법률 등에 따라 받는 다음의 급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수급권자가 지급받는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간병급여·유족급여·유족특별급여·장해특별급여 및 장의비 또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질병 또는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지급받는 배상·보상 또는 위자의 성질이 있는 급여

- 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에 따라 근로자·선원 및 그 유족이 지급받는 요양보상금·휴업보상금·상병보상금·일시보상금·장해보상금·유족보상금·행방불명보상금·소지품 유실보상금·장의비 및 장제비
-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에 따라 받는 전직지원금과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별정우체국법의 적용을 받는 자가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
-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지급받는 요양비·요양일시금·장해보상금·사망조위금·사망보상금·유족보상금·유족일시금·유족연금일시금·유족연금부가금·유족연금특별부가금·재해부조금 및 재해보상금 또는 신체·정신상의 장해·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 중에 받는 급여
- 「국군포로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군포로가 지급받는 보수 및 퇴직일시금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외국에 있는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 포함)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훈련시설의 입학금·수강료 기타 공납금 중 다음의 요건을 갖춘 학자금 (해당 연도에 납입할 금액을 한도로 한다)

- 해당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업무와 관련있는 교육·훈련을 위하여 받는 것일 것
- 해당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규칙 등에 따라 정해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것일 것
- 교육·훈련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교육·훈련 후 해당 교육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않는 때에는 지급받은 금액을 반납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받는 것일 것

○ 직무발명보상금 (퇴직소득과 합하여 연간 700만원 한도)

○ 기타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다) 근로소득금액의 계산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공제(2000만원 한도)

총 급 여 액	공 제 액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의 70%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350만원 + 500만원 초과분의 40%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750만원 + 1,500만원 초과분의 15%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200만원 + 4,500만원 초과분의 5%
1억원 초과	1,475만원 + 1억원 초과분의 2%

(라)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의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총급여액

△ **비과세소득**
- ○ 생산직근로자의 시간외근무수당(연 240만원 한도, 전년도 총급여 3,000만원 이하)
- ○ 현물식대 또는 월 20만원 이하 식사대
- ○ 출산·보육수당(월 20만원 한도)

급 여 액

△ **근로소득공제**

근 로 소 득 금 액

△ **인적공제** : 기본공제, 추가공제
△ **특별소득공제** : 연금·건강보험료, 주택자금 등
△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 :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등
* 소득공제 종합한도 : 공제 합계액 2,500만원 한도 설정

과세표준

(×) 기본세율(6%~45%, 8단계 초과누진)

산출세액

△ **특별세액공제**

- 자녀세액공제 : 8세 이상 1명 15만원, 2명 35만원, 3명부터는 1명당 30만원,
 출산·입양의 경우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
- 공제율 15% : 의료비(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는 20%, 난임시술 의료비는 30% 공제율 적용), 교육비, 기부금(1천만원 초과분 30%), 장애인보장성보험료
- 공제율 12% : 연금저축·퇴직연금(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5%), 일반보장성보험료
- 표준세액공제 : 특별소득·세액공제 미신청시 13만원

△ **근로소득세액공제**
- 산출세액 130만원 이하분 : 55%
- 산출세액 130만원 초과분 : 30%
- (공제한도) 총급여 3,300만원 이하 : 74만원
 총급여 3,300만원~7,000만원 이하 : 74~66만원
 총급여 7,000만원~1.2억원 이하 : 66만원~50만원
 총급여 1.2억원 초과 : 50만원~20만원

결정세액

(5) 일시재산소득 (06.12.30. 폐지)

○ 광업권, 어업권, 산업재산권, 영업권 등의 양도소득

* '06.12.30 개정시 기타소득으로 통합됨

(6) 연금소득

(가) 연금소득의 범위

구분	연금소득의 범위	적 용 례
공적연금소득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연금[1)] *국민연금법·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별정우체국법·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2002.1.1이후 부담금을 기초로 지급받는 금액을 연금소득으로 과세
사적연금소득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에서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소득	세액공제(기존의 소득공제 포함) 받은 금액, 운용수익 또는 이연퇴직소득을 기초로 지급받는 금액을 연금소득으로 과세

1)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별정우체국법·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유족연금, 장애연금, 장해연금, 상이연금, 연계노령유족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음

(나) 연금소득금액 : 총연금액 - 연금소득공제(900만원 한도)

총 연 금 액	공 제 액
350만원 이하	전액공제
350만원 초과 700만원 이하	350만원 + 350만원 초과분의 40%
700만원 초과 1,400만원 이하	490만원 + 700만원 초과분의 20%
1,400만원 초과	630만원 + 1,400만원 초과분의 10%

(다) 공적연금과 사적연금 과세방법

<table>
<tr><th colspan="2">구 분</th><th>공적연금
(국민연금・직역연금)</th><th>사적연금(연금계좌)
(퇴직연금+연금저축)</th></tr>
<tr><td rowspan="3">납입단계</td><td>사용자
부담</td><td>・납입시 과세 제외</td><td>・납입시 과세 제외</td></tr>
<tr><td>자기
부담</td><td>・납입금▶연금보험료 공제</td><td>・납입금▶연금계좌세액공제
→ 납입액*× 12%(15%**)
* 납입액 한도: 연금저축 연 600만원, 퇴직연금과 합하여 900만원)
** 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총급여 5,500만원 이하) : 15%
※ (납입한도) 연 1,800만원 + ISA전환금 + 주택차액</td></tr>
<tr><td colspan="2">운용단계</td><td colspan="2">발생한 운용소득을 연금수령시까지 과세이연</td></tr>
<tr><td rowspan="2">수령단계</td><td>연금
수령</td><td>・연금소득 과세
- 종합과세(6~45%)
・지급시 간이세액표로 원천징수 후 1월에 연말정산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5월에 종합소득 신고
- 공적연금소득 외 소득이 없는 경우 확정신고 면제</td><td>・연금소득 과세
< 사용자부담금(퇴직소득 이연금) > 퇴직소득세액의 70%*
* 연금수령연차 10년 초과시 60%
< 자기부담금 & 운용수익 >
1,500만원 이하: (3~5%) *분리과세 선택
- 70세미만5%, 80세미만4%, 80세이상3%
1,500만원 초과: 분리과세(15%) 또는 종합과세(6~45%) 중 선택
※ (과세제외) 자기부담금 중 공제받지 못한 금액</td></tr>
<tr><td>연금외
수령</td><td>・일시금 수령시 퇴직소득 과세</td><td>・소득원천에 따라 과세
<table><tr><th>소득원천</th><th>과세방법</th></tr><tr><td>퇴직소득 이연금
(사용자부담)</td><td>퇴직소득</td></tr><tr><td>자기부담</td><td rowspan="2">기타소득
(15% 분리과세)</td></tr><tr><td>운용수익</td></tr></table></td></tr>
</table>

(7) 기타소득: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퇴직・양도 소득 외의 소득

* 예) 상금・현상금・포상금・보로금(報勞金)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복권 등에 의한 당첨금품, 사례금, 전속계약금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뇌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종교인 소득('18.1월 시행)
서화・골동품 양도소득
가상자산 소득 등

(가) 기타소득의 구분

소득 구분	내 용
비과세소득	국가유공자 보훈급여금, 국가보안법에 따른 상금, 퇴직 이후에 발명진흥법에 따라 직무발명으로 받는 보상금(700만원 한도) 등
무조건 종합과세소득	뇌물・알선수재 등에 의한 금품
무조건 분리과세소득	복권당첨금, 승마투표권의 환급금 등, 슬롯머신의 당첨금품, 서화・골동품 양도소득('13년부터 시행) 등
조건부 분리과세소득*	위 외의 소득

* 조건부 분리과세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 가능하고, 300만원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

(나) 기타소득 원천징수세율: 20% 원칙

(단, 복권당첨금, 승마투표권의 환급금 등, 슬롯머신 당첨금품 중 3억원 초과분은 30%세율, 연금외 수령한 소득은 15% 적용)

나. 양도소득·퇴직소득

(1) 양도소득

○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제도 참조(P.119)

(2) 퇴직소득

○ 퇴 직 급 여

(-)

퇴직소득공제

근속연수별 공제액
- 5년 이하 : 100만원×근속연수
- 5년~10년 : 500만원+(근속연수-5년)×200만원
- 10년~20년 : 1,500만원+(근속연수-10년)×250만원
- 20년 초과 : 4,000만원+(근속연수-20년)×300만원

(×)

12 / 근속연수

(=)

○ 환 산 급 여

(-)

환산급여별 공제액
- 8백만원 이하 : 환산급여의 100%
- 8백만원~7천만원 : 8백만원+(8백만원 초과분의 60%)
- 7천만원~1억원 : 4,520만원+(7천만원 초과분의 55%)
- 1억원~3억원 : 6,170만원+(1억원 초과분의 45%)
- 3억원 초과 : 1억5,170만원+(3억원 초과분의 35%)

(=)

○ 과 세 표 준

(×)

○ 기 본 세 율

(×)

○ 근속연수 / 12

(=)

○ 퇴직소득 산출세액 (결정세액)

4. 특별소득·세액공제

구 분			내 용
인적공제	기 본 공 제		○ 본인·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및 부양가족 : 1인당 150만원
	추 가 공 제		○ 70세 이상 경로자 : 100만원 ○ 장애인 : 200만원 ○ 부녀자세대주 : 50만원(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 ○ 한부모공제 : 100만원 (부녀자공제와 중복배제)
특별소득공제등	연 금 보 험 료		○ 국민연금, 공무원·군인·사학연금 부담금 전액
	건강보험료등		○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전액
	주 택 자 금 공 제*		○ 무주택세대주가 주택청약저축에 납입한 금액 또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임차를 위해 차입한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 : 납입액 또는 원리금상환액의 40% 소득공제(연 400만원 한도) ○ 기준시가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상환기간 15년 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 전액 - 공제한도 : 연 800만원 단, 고정금리이자 or 비거치식분할상환(1,800만원), 고정금리이자 & 비거치식분할상환(2,000만원), (고정금리이자 or 비거치식분할상환) & 상환기간 10년 이상(600만원)
	신용카드 등 공제		○ (신용카드등사용액-총급여액의 25%)×10%, 15%, 30%, 40% - 총급여 7천만원 미만자: 300만원, 총급여 7천만원 초과 250만원 한도 * 전통시장·대중교통사용분,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 통합 공제한도 300만원 (총급여 7천만원 초과는 전통시장, 대중교통사용분 통합 공제한도 200만원) * '24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증가분 소득공제 : 전년대비 5%초과 증가분에 대해 10% 공제(100만원 한도)
특별세액공제등	자 녀 세 액 공 제		○ 자녀세액공제 : 8세 이상 1명 15만원, 2명 35만원, 3명부터는 1명당 30만원, 출산·입양시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이상 70만원
	의 료 비 공 제*	15%	○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 : 총급여액의 3% 초과분 [700만원 한도, 다만 본인·영유아·경로우대자·장애인 등(공제율 15%),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공제율20%)·난임시술비용(공제율30%)은 한도 없음]
	교 육 비 공 제*		○ 학생 또는 보육시설 영유아 취학전아동을 위하여 지급한 입학금, 수업료, 학원수강료 - 근로자본인 : 대학원까지 전액공제 -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 유치원·영유아, 취학전아동, 초·중·고생은 연 300만원, 대학생은 연 900만원 한도 ○ 장애인을 위하여 지급한 특수교육비 : 한도없음
	기 부 금 (1천만원 초과분30%)*		○ 특례기부금 : 소득금액 범위내 전액공제 ○ 일반기부금 : 소득금액의 30% 범위내(종교단체 기부금은 소득금액의 10%) * '24년도의 경우 3천만원 초과분 40% 공제
	연금저축, 퇴직연금	12%	○ 연금저축 연 600만원 한도, 퇴직연금 포함 연 900만원 한도 -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공제율 15% 적용
	보 험 료 공 제*		○ 본인 또는 소득이 없는 가족명의로 계약한 보험으로서 피보험자를 기본공제대상자로 한 보험료 - 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 : 전액공제 - 보장성보험료 : 연 100만원 한도 - 장애인전용보험료 : 연 100만원 한도(공제율 15%)
	월세세액 공제	15%	○ 총급여액 8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월세지급액의 15%*, 연 1,000만원 한도 * 총급여 5.5천만원 이하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금액 4천5백만원 이하 성실사업자 등은 17%
	표준세액공제		○ 특별소득·세액공제 미신청시 13만원

주」 *는 근로소득자에게만 적용되는 공제항목임[다만, 성실사업자의 경우 '08년부터 의료비·교육비공제, '13년부터 월세세액공제(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이하) 허용]

5. 소득세율

가. 기본세율

과 세 표 준	세 율
1천4백만원 이하	6%
1천4백만원 초과~5천만원 이하	15%
5천만원 초과~8천8백만원 이하	24%
8천8백만원 초과~1억5천만원 이하	35%
1억5천만원 초과~3억원 이하	38%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40%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42%
10억원 초과	45%

※ 과세표준(종합소득금액 -소득공제) × 기본세율 = 산출세액

나. 금융소득(이자·배당) 원천징수세율

구 분	종 류	원천징수세율
완납적[1] 원천징수	① 직장공제회초과반환금('99.1.1.이후 가입자부터 과세)	기본세율(6~45%)
	② 비실명금융소득 ┌소득지급자가 금융기관인 경우(實名法§5)	90%
	② 비실명금융소득 ├소득지급자가 금융기관이 아닌 경우(所法§129②)	45%
	② 비실명금융소득 └특정 비실명채권의 이자소득(實名法§5)	15%
	③ 민사소송법에 의하여 법원의 경락대금등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14%
	④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단체중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하는 단체로서 단체명을 표기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단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이자·배당소득	14%
	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분리과세 되는 이자·배당소득	5~14%
예납적[2] 원천징수	① 기타의 일반적인 이자·배당소득 및 온라인투자연계 금융업자를 통해 지급받는 이자소득(所法§129①)	14%
	② 비영업대금의 이익(所法§129①1호 나) ③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所法§129①2호)	25%

주」 1. 완납적 원천징수 :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분리과세)
2. 예납적 원천징수 : 잠정적으로 원천징수후 종합과세

다. 사업소득 등 원천징수세율

구 분	대 상	세 율
사업소득	○ 의료보건용역(부가세법 §12①4, 同令 §29)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및 치과위생사 제공용역 - 접골사, 침사, 안마사, 수의사 제공용역 - 의약품 조제용역, 장의용역, 분요의 수집·운반·처리·정화조청소용역 등 ○ 인적용역(부가세법 §12①13, 同令 §35) - 가수, 감독, 설계, 직업운동가[주1], 보험모집인, 상담소, 국선변호인 등 - 음악·무용·바둑의 교수, 직업운동가 및 운동지도가 등의 용역 - 저작권료, 강연료, 강사료 및 심사료등(접대부·댄서는 제외)	3% 주1) 계약기간 3년이하 외국인 직업운동가의 경우 지급액의 20%
근로소득	○ 월급여자 - 매 월 - 연말정산 ○ 일용근로소득자	간이세액표 기본세율 6%
기타소득	○ 기타소득금액이 1건당 50,000원 초과시 원천징수 - 연간 300만원 이하의 경우 원천징수분리과세 선택 가능(300만원 이상 자는 종합과세)	20% (복권 등 3억원 초과분 30%)
봉사료소득	○ 봉사료 금액이 공급가액(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의 20%를 초과하는 경우의 봉사료	5%
퇴직소득	○ 퇴직소득금액	기본세율
비거주자 국 내 원천소득	○ 선박, 항공기, 등록된 중기나 자동차의 임대소득 ○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소득 ○ 인적용역 제공소득 ○ 이자 (국가·지방자치단체·내국법인의 발행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 ○ 배당소득 ○ 자산이나 정보의 사용 또는 양도로 인한 소득 ○ 기타소득 ○ 유가증권양도 : 양도가액의 10%와 양도차익의 20% 중 적은 금액 ○ 부동산·부동산주식양도: 양도가액의 10%와 양도차익의 20% 중 적은금액	2% 2% 20% 20% (14%) 20% 20% 20% 10% 또는 20% 10% 또는 20%

6. 세액공제

구 분	공제대상	세 액 공 제 액
배당세액공제	종합소득금액에 배당소득금액이 합산된 경우(즉, 기본세율이 적용되는 법인세가 과세된 소득을 재원으로 하는 배당소득)	배당소득수입금액×10%
기장세액공제	간편장부대상자로서 복식부기에 따라 기장하고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자	종합소득 산출세액 × (복식부기에 따라 기장된 사업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20% • 한도: 100만원
근로소득세액 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1) 일반근로자의 경우 · 산출세액 130만원 이하분 : 55% · 산출세액 130만원 초과분 : 30% · (공제한도) 총급여 3,300만원 이하 : 74만원 총급여 3,300~7,0000만원 이하 : 74~66만원 총급여 7,000~1억 2,000만원 이하 : 66~50만원 총급여 1억 2,000만원 초과 : 50~20만원 (2) 일용근로자의 경우 [(일 급여액－일 150,000원)×6%]×55%
재해손실 세액공제	사업자가 재해로 인하여 자산총액의 20%이상에 상당하는 자산을 상실한 경우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액＋가산금)×재해상실비율 ※ 재해상실비율＝상실자산가액 / 상실 전 자산가액(토지 제외) (한도 : 재해손실액 범위내)
외국납부세액 공제	종합소득금액 또는 퇴직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 *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면제 및 제한세율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초과하는 세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	(1) 세액공제 세액공제액＝ ①, ② 중 적은 금액 ①외국납부세액 ②공제한도＝산출세액 × 국외원천소득 / 종합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 *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외국납부세액은 10년 동안 이월공제됨(직접·배분비용의 차감에 따른 한도액 감소로 공제받지 못한 세액은 이월공제 배제) (2) 필요경비 산입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 외국납부세액을 필요경비에 산입

주」 소득세법상 세액공제임

7. 가산세의 종류 및 적용대상

종 류	부 과 사 유	가산세액	가산세 적용대상자
신고불성실가산세	①일반적인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대상금액×20%(또는 10%)	사업자여부 불문
	②부당무신고가산세	가산세대상금액×40%	사업자여부 불문
	③복식부기의무자가 무신고	①가산세대상금액×20% ②수입금액×7/10,000] 중 큰 것	사업자(복식부기 의무자)에 한함
	④복식부기의무자의 부당 무신고	①가산세대상금액×40% ②수입금액×14/10,000] 중 큰 것	사업자(복식부기 의무자)에 한함
무기장가산세	무기장·미달기장	산출세액×$\frac{\text{무기장·미달기장 소득금액}}{\text{소득금액}}$×20%	사업자(간편장부 대상자 포함, 소규모 사업자 제외)에 한함
납부지연가산세	미납·미달납부, 초과환급	미납·미달납부,초과환급세액×기간×22/100,000+미달납부세액×3%	사업자여부 불문
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가산세	①지급명세서 미제출·불분명	미제출·불분명 지급금액×1% (지연제출은 0.5%)	사업자여부 불문
	②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불분명	미제출·불분명 지급금액×0.25% (지연제출은 0.125%)	
계산서 관련 가산세	계산서 미교부(불명)	계산서 미발급, 가공(위장) 수수 : 공급가액의 2%, 부실기재 : 공급가액의 1%	사업자(복식부기 의무자)에 한함
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	계산서합계표미제출(불명)	미제출·불분명 지급금액×0.5% (지연제출은 0.3%)	사업자(복식부기 의무자)에 한함
적격증명서류 관련 가산세	정규증빙 미수취 또는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 수취	미수취·불명분 금액×2%	사업자(소규모사업자, 추계자 제외)에 한함
영수증수취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영수증수취명세서 미제출 또는 불명	미제출·불분명 지급금액×1%	사업자(소규모사업자, 추계자 제외)에 한함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	사업장현황미신고·미달신고	미신고·미달신고 수입금액×0.5% (신고기한후 1월내 신고시 50% 감면)	사업장현황신고의 무자(의료업자등)
원천징수 등 납부 불성실가산세	원천징수세액 등을 미납·미달납부	미납·미달납부세액×기간×22/100,000 (3% + 최대 10%)	사업자여부를 불분하고 원천징수의 무자 등에게 적용
공동사업장 등록불성실 등 가산세	공동사업장에 대한 허위등록 및 신고내용 무신고·허위신고	미등록·거짓등록시 수입금액의 0.5% 무신고·거짓신고시 수입금액의 0.1%	공동사업자
현금영수증 관련 가산세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 -현금영수증 미발급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	- 미가입기간 수입금액×1% - 미발급·불명분 금액×5%와 건별 5천원 중 큰 금액	-현금영수증가맹대상 -현금영수증가맹자
신용카드거부 가산세	신용카드 거부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	건별 거부·불명분 금액×5%와 건별 5천원 중 큰 금액	신용카드 가맹자
사업용계좌미사용 가산세	- 사업용계좌를 개설·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 사업용계좌를 미사용	- 미개설기간 수입금액×0.2%와 미사용 거래금액 합계액×0.2% 중 큰 금액 - 미사용금액의 0.2%	복식부기의무자

8. 신고납부절차

가. 과세표준확정신고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사업자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신고)

(1) 제출서류

(가) 인적공제 및 특별공제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나) 종합소득금액 계산의 기초가 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서류

(다) 사업소득금액을 비치·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합계잔액시산표 및 조정계산서. 다만, 간편장부를 기장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를 제출 가능

(라) 필요경비명세서

(마)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계산서·세금계산서 및 신용카드매출전표 이외의 증빙을 수취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수취명세서

(바) 사업소득금액을 비치·기장한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추계소득금액계산서

(2)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음

(가) 근로소득·퇴직소득·공적연금소득·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 또는 연말정산대상 종교인소득만 있는 자

(나) 근로소득·퇴직소득만 있는 자

(다) 퇴직소득·공적연금소득만 있는 자

(라) 퇴직소득·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자

(마) 퇴직소득·연말정산대상 종교인소득만 있는 자

(바) 분리과세이자소득·분리과세배당소득·분리과세연금소득 및 분리과세기타소득만 있는 자

(사) 위의 (가)~(마)에 해당하는 자로서 (바)의 소득이 있는 자

(3) 과세표준확정신고의 특례

○ 거주자 사망의 경우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 과세표준 신고

○ 거주자 출국의 경우 : 출국일 전까지 과세표준 신고

나. 확정신고 자진납부

(1) 자진납부할 세액의 계산

과세표준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퇴직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세액과 기납부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자진납부

(2) 납부할 세액의 분납

○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분납가능

분납범위	납부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납부세액이 2천만원 초과인 경우 : 그 세액의 1/2이하의 금액

○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추가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월~4월분 근로소득 지급시에 분납가능

다. 신고방식

(1) 장부기장에 의한 신고

○ 사업소득자는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기장을 하여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무신고시에도 원칙적으로 장부를 근거로 결정

○ 다만,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일정규모 미만*인 소규모사업자의 경우에는 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간단한 장부만을 기장·보관하고 이를 근거로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에 의하여 간편하게 신고가능

* 도·소매업 및 부동산매매업 등 : 3억원, 제조업·숙박 및 음식점업 등 : 1억5천만원, 부동산임대업 및 서비스업 등 : 7천5백만원

(2) 추계방식에 의한 신고

과세표준계산에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일 경우에는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등에 의하여 추계방식으로 신고 또는 결정

9. 결정 또는 경정

가. 결정·경정의 의의

(1) 결정

납세지 관할세무서장(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종합소득·퇴직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않은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함

(2) 경정

납세지 관할세무서장(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종합소득·퇴직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 원천징수의무자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및 근로자의 퇴직으로 인해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
-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은 때
- 소득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대상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로 지정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신용카드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않은 경우로서 시설규모나 업황으로 보아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때

나. 결정·경정의 방법

(1) 원칙 : 세무조사에 의한 방법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함

(2) 예외 : 추계조사결정 또는 경정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음

(가)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에 의한 방법

표준소득률에 의한 소득금액 추계방법을 대신하여 2002.1부터 시행되는 방법으로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은 국세청장이 결정함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방법

기준경비율적용대상자(①-②-③-④)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①-②)
① 수입금액 ② 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 자산의 임차료 ③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 ④ 수입금액×기준경비율	① 수입금액 ②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주」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중 일정규모 미만 사업자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일정금액에 미달하는 소규모 사업자
 - 도·소매업 및 부동산매매업 등 : 6천만원,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 : 36백만원, 부동산임대업 및 서비스업 등 : 24백만원

(나) 동업자권형에 의한 방법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소득금액을 결정·경정함

10. 근로장려세제(EITC, Earned Income Tax Credit)

가. 개념

(1) 근로소득 수준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세금 환급 형태로 지급하여 근로빈곤층의 근로유인을 제고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

(2) 목적 : 근로를 통한 빈곤탈출과 경제적 자립을 통해 저소득 근로자가 빈곤층으로 추락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

(3)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부터 제100조의13

나. 도입배경

(1) 근로빈곤층 증가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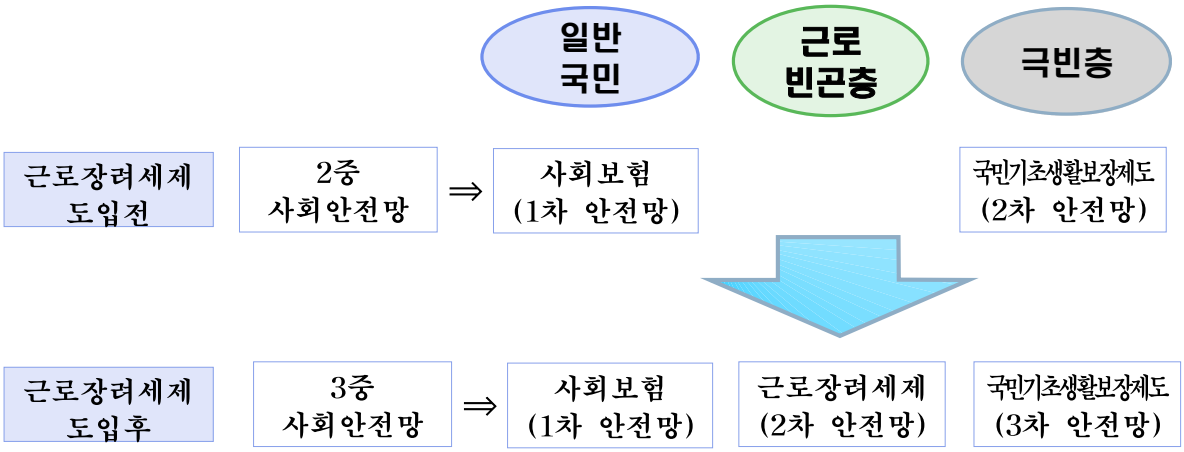
세계 경제의 글로벌화 등 경제 환경의 변화에 기인한 고용과 소득의 양극화로 일을 하면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빈곤층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

(2) 근로빈곤층에 대한 보호의 취약성

최근 증가하고 있는 근로빈곤층은 일을 하면서도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점에서 일자리 창출과 함께 근로장려세제를 통하여 일을 통한 빈곤탈출을 돕고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

(3) 3중 구조의 사회안전망으로 근로빈곤층 지원 확충 필요

근로빈곤층 지원을 위해 기존의 사회보험·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 구성된 2중의 사회안전망을 근로장려세제를 추가한 3중의 구조로 확충



다. 근로장려세제 운용방안

(1) 적용대상 및 적용단위

(가) 적용대상

○ 도입초기에는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자계층부터 적용

○ 개인사업자의 경우 과세미달자 비율이 높고 기장신고 비율은 낮아 도입시 적용이 배제되었으나 지속적인 소득파악 노력 등을 통하여 단계적으로 적용대상을 확대

- '12년 지급분부터 일부 사업자(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로 적용 확대
- '15년 지급분부터 일부 업종(전문직종)을 제외한 모든 사업자로 적용 확대

(나) 적용단위

○ 소득지원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인단위가 아니라 가구단위로 적용

- 먼저 근로장려세제를 시행하고 있는 미국·영국 등 대부분의 국가도 가구단위로 제도 운영

(2) 신청자격

□ 총소득기준

○ 부부의 연간 총소득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인 가구

- 총소득합계액이란 사업소득은 업종별 조정률을 통해 소득금액을 환산하여 합산하고, 기타소득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소득금액을 합산하고,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는 이자·배당·근로·연금·종교인소득은 총수입금액을 합산 (단, 비과세소득은 제외)

- 총소득기준금액

가구원 구성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소득기준(만원)	2,200	3,200	3,800

* 거주자의 배우자가 소득세 과세기간 중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18세 미만) 요건

○ 배우자·부양자녀 해당여부 판정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따르되, 과세기간 종료일 전 배우자 사망시에는 사망일 전일의 상황에 따름

○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

○ 중증장애인인 경우 부양자녀의 연령제한 없음

□ 재산 요건

○ 가구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인 가구.
다만, 1.7억원 초과인 경우 근로장려금의 50% 감액

- 주택, 토지·건축물, 자동차, 전세금, 예·적금 등 금융재산, 골프·승마·등 회원권, 유가증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가액

□ 신청제외자

○ 외국인(단, 한국인과 혼인한 외국인, 한국인인 부양자녀 있는 외국인은 신청 가능)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에 해당하는 경우

(가) 총소득요건

○ 부부의 연간 총소득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 부부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을 모두 합산한 가구의 총소득 합계액을 기준으로 적용여부를 결정

(나) 부양자녀의 연령기준

○ 자녀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중증장애인이거나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해등급 3등급 이상으로 지정된 자는 연령 제한 없이 부양자녀의 범위에 포함

(다) 부양자녀의 소득 기준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부양자녀가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부양의 필요성이 적어 근로장려세제상 부양자녀의 범위에서 제외

(라) 부양자녀의 범위

○ 부양자녀는 친자녀를 원칙으로 하되, 「민법」 또는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입양한 양자 및 사실상 입양상태에 있는 자 포함

○ 한편, 부모가 없거나, 부모의 장애 등으로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손자녀·형제자매를 포함

○ 한 부양자녀에 대하여 복수의 거주자가 신청할 경우 다음의 순서로 부양자녀 있는 거주자를 판정

① 부양자녀와 동일주소에서 거주하는 자

② 총급여액 등이 많은 자

③ 장려금 산정금액이 많은 자

④ 직전 소득세 과세기간에 해당 부양자녀를 자신의 부양자녀로 하여 근로장려금을 받은 자

(다만, 해당 거주자간 상호합의로 정한 사람이 있는 경우 해당 거주자를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에 부양자녀가 있는 거주자로 함)

(마) 부양자녀의 판정 기준일

부양자녀 해당여부의 판정은 연도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부양자녀가 당해 연도 중에 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부양자녀로 인정

(바) 재산합산 기준

○ 주택보유, 일반재산 기준은 거주자를 포함한 1세대를 기준으로 판정하며, 소유기준일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6월 1일 기준으로 적용

○ 1세대의 범위는 거주자, 배우자, 부양자녀,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주소·거소의 소유자인 직계존비속을 포함

(사) 합산대상 재산의 범위와 평가방법

재산의 종류	포함되는 재산의 범위	평 가 방 법
토지 및 건축물	재산세 부과대상의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	영업용 승용자동차 제외	시가표준액
전세금	전세금(임차보증금 포함)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 이내의 국세청장 고시 금액 또는 임대차계약서 상의 전세금
금융재산	예금·적금·부금·예탁금·저축성보험과 투자신탁	금융재산의 잔액 (요구불예금의 경우 6.1일 이전 3개월 평균 잔액)
유가증권	주식, 채권	상장주식 : 최종시세가액 그 외 주식 및 채권 : 액면가액
회원권	회원제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는 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요트회원권	시가표준액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토지상환채권 주택상환사채	입주권:기존건물평가액±청산금 분양권:소유기준일까지 불입금액 토지상환채권:액면가액 주택상환사채:액면가액

라. 근로장려금의 산정

(1) 근로장려세제 모형

○ 근로장려세제의 모형은 저소득 근로계층의 소득 지원과 근로유인 제고를 위한 점증 - 평탄 - 점감 형태로 구분

- 점증구간 : 근로 유인 제고를 위해 근로소득이 늘어날수록 근로장려금도 증가
- 평탄구간 : 점감구간 앞에 근로장려금의 최대급여가 유지되는 평탄구간을 설정
- 점감구간 : 일정 소득구간 이상에서는 근로장려금이 점차 줄어드는 점감구간을 설정

○ 가구원 구성에 따라 총급여액등 및 점증·평탄·점감 구간을 다르게 설정하고, 차등하여 근로장려금 지급

(2) 근로장려금 산정기준 총급여액 등의 범위

○ 총급여액 등은 부부의 과세대상 근로소득, 사업소득(보험모집인 또는 방문판매원의 사업소득을 말하며, 2014년 귀속 소득분부터는 모든 사업자의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을 합산하여 산정

- 사업소득의 경우 2014년 귀속 소득분부터는 “총수입금액×업종별 조정률”의 금액을 말함

○ 비과세 소득과 다음의 금액은 총급여액 등의 범위에서 제외

- 직계존비속 또는 전문직 사업자인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은 제외
- 사업자등록이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사업자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소득
-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의 사업소득(다만, 인적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사업자등록이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사업자로부터 받은 소득은 총급여액 등의 범위에 포함)
- 부동산 임대소득(2021년 귀속 소득분부터)

(3) 근로장려금의 산정

(가) 근로장려금 산식

○ 부부의 총 급여액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산

가구원 구성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4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 165/400
	400만~900만원	165만원
	900만~2,200만원	165만원 - (총급여액 등 - 900만원) × 165/1300
홑벌이가구	7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 285/700
	700만~1,400만원	285만원
	1,400만~3,200만원	285만원 - (총급여액 등 - 1,400만원) × 285/1800
맞벌이가구	8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 330/800
	800만~1700만원	330만원
	1700만~3,800만원	330만원 - (총급여액 등 - 1,700만원) × 330/2100

(나) 근로장려금 산정표의 적용

○ 근로장려금은 산식에 의해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 계산이 복잡하므로 신청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총급여액등 구간을 10만원 단위로 구분하여 작성된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의해 산정

마. 근로장려금 신청·지급 등 행정절차

(1) 신청 및 지급절차

(가) 신청주의의 채택

근로장려세제는 환급 가능한 세액공제제도의 일종이므로 일반적인 환급금과 동일하게 관할 세무서에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 다만, 환급 대상자의 신청 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21년부터는 거주자가 동의한 경우 세무서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세무공무원 등이 거주자의 근로장려금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음(신청도움 서비스)

(나) 신청시기

○ 종합소득세 신고기간(매년 5.1.~5.31.)에 종합소득세 신고와 함께 근로장려금 신청서 제출

- 다만, 부부 모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상반기분 신청기간(9.1.~9.15.)에 신청하여야 함(하반기분은 신청한 것으로 의제됨)

○ 1가구 내 2 이상 거주자가 신청시 '총급여액 등이 많은 자-근로장려금 산정액이 큰 자-직전 소득세 과세기간에 근로장려금을 받은 자' 등의 순서에 따른 거주자가 신청한 것으로 보되, 상호합의로 정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된 자로 함

- 신청기한내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기간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기한후 신청 가능. 다만, 이 경우에는 5% 감액 지급

(다) 근로장려금 신청의 간소화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근로장려금 신청서」와 근로소득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급여수령통장 사본 등), 임대차 계약서, 입주권, 분양권만 제출

(라) 근로장려금의 결정

○ 관할세무서장은 근로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참조하여 원칙적으로 신청기한 경과후 3월내(매년 8월말까지) 근로장려금을 결정하고, 지급결정 후 30일 이내에 급여지급 또는 거부 결정을 한 내용을 신청자에게 통지

○ 다만, 3월내에 근로장려금을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의 결정기한을 2월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 근로장려금 결정기한 연장 사유

· 근로장려금 신청서와 첨부서류 등에 의하여 신청자격을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사실확인·자료요구·조사가 필요한 경우

·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자와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제출한 근로소득에 대한 증빙자료 등에 의하여 근로소득을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사실확인·자료요구·조사가 필요한 경우

· 관할 세무서장이 신청자에게 증빙서류의 제출 또는 보정을 요구한 경우

(마) 근로장려금의 지급

○ 근로장려금은 연 1회, 9월말까지 신청자에게 계좌이체 등을 통하여 지급

- 다만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자의 경우 연 2회(상반기분 12월, 하반기분 6월) 지급

○ 체납국세가 있는 경우에는 환급할 근로장려금의 30% 한도로 충당 후 지급

- 다만 충당 후 지급하는 근로장려금 중 185만원 이하의 금액은 압류금지 대상임

(2) 부정수급자에 대한 제재

(가) 일정기간 지급제한

○ 부정한 방법에 의한 수급자는 일정기간 신청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부여

- 구체적으로 수급요건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결격사유를 고의로 누락하는 등 고의·중과실 등으로 허위신청한 경우 2년간 근로장려금의 지급을 제한하고,

- 소득자료나 기타 증빙서류의 위조·변조 등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위신청한 경우에는 5년간 근로장려금의 지급을 제한

(나) 부정수급액 추징

○ 부정수급하거나 오류로 지급된 근로장려금은 국세징수법상 취소·경정감액결정을 통해 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청구

○ 이 경우 일반 환급세액징수의 경우와 동일하게 이자상당액(1일당 0.025%)을 추징

○ 다만, 신청자에게 귀책이 없는 경우 가산세 면제

(다) 지급명세서 자료상에 대한 처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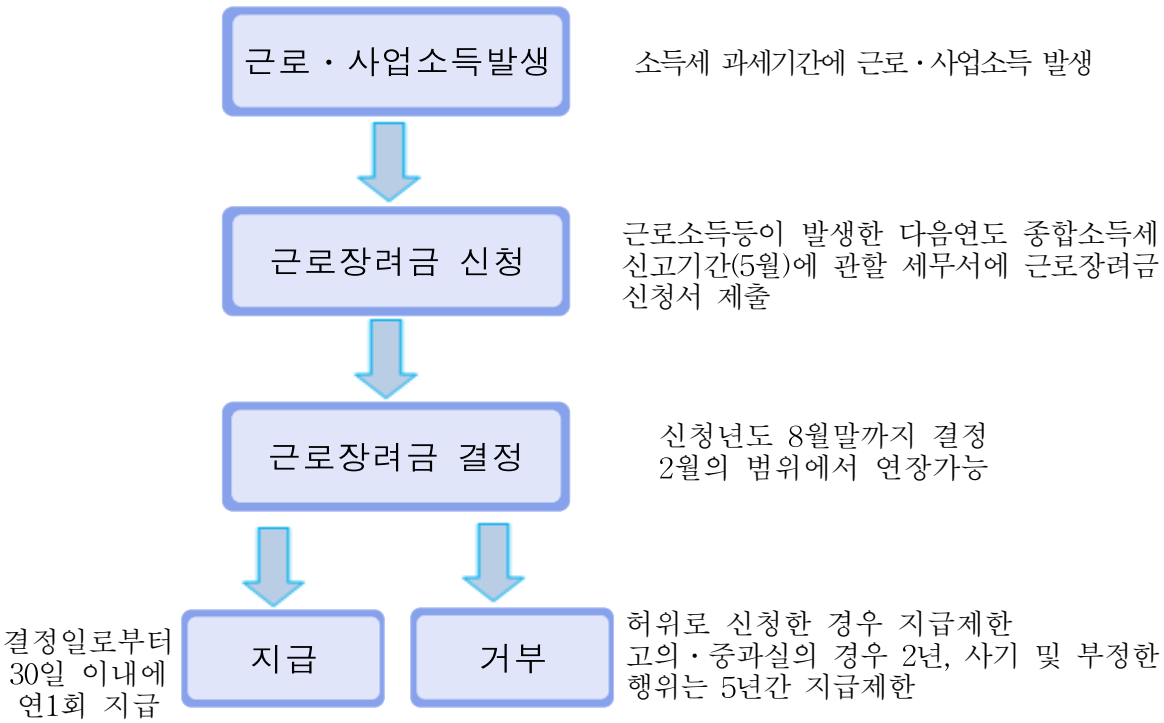
○ 가공법인을 설립, 허위의 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EITC부정수급을 유발하는 자료상 형태의 지급명세서 발급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지급명세서 지급금액의 20%이하 벌금(알선·중개자도 동일적용)

○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 규정 적용 배제

(3) 불복절차

○ 근로장려금은 세액공제의 일종이므로 처분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국세기본법상의 불복규정을 적용한다.

- 위법·부당하게 지급거부, 감액지급, 취소 등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가 가능



11. 자녀장려세제(CTC, Child Tax Credit)

가. 개념

○ 저소득 근로가구의 자녀양육비 지원을 위해 세금의 환급방식으로 자녀장려금을 지급('2014년 귀속소득분에 대해 2015년부터 지급)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7부터 제100조의31

나. 도입배경

○ 저출산 극복과 여성의 경제활동 확대 및 아동빈곤 예방을 위해 조세제도를 통하여 자녀양육비용 지원

다. 신청자격

○ 부양자녀가 있고 거주자(배우자 포함)의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7천만원 미만인 가구에 대해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 지급(자녀수 제한 없음)

- 그 밖의 신청자격 관련 사항은 근로장려세제의 관련 규정 준용

라. 자녀장려금 산정

(1) 자녀장려금 산식

○ 부부의 총급여액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산

가구원 구성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홑벌이 가족가구	2천100만원 미만	부양자녀의 수 × 100만원
	2천100만 ~7천만원 미만	부양자녀의 수 × [100만원 - (총급여액 등 - 2,100만원) × 4,900분의50]
맞벌이 가족가구	2천500만원 미만	부양자녀의 수 × 100만원
	2천500만 ~7천만원 미만	부양자녀의 수 × [100만원 - (총급여액 등 - 2,500만원) × 4,500분의50]

(2) 자녀장려금 산정표의 적용

○ 자녀장려금은 산식에 의해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 계산이 복잡하므로 신청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근로소득 구간을 50만원 단위로 구분하여 작성된 자녀장려금 산정표에 의해 산정

마. 자녀장려금 신청 등

○ 종합소득세 신고기간(매년 5.1.~5.31.)에 자녀장려금 신청서 제출

- 그 밖의 자녀장려금 신청 관련 사항은 근로장려세제의 관련 규정 준용

○ 자녀장려금은 「소득세법」에 따른 자녀세액공제와 중복적용 불가

바. 근로장려세제 관련 사항의 준용

○ 부양자녀의 요건과 판정시기, 자녀장려금의 결정, 환급의 제한, 경정 등 및 금융거래정보에 대한 조회와 자료 요청에 관한 사항은 근로장려세제의 관련 규정 준용

사. 재산요건

○ 가구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인 가구. 다만, 1억7천만원 이상인 경우 50% 감액

12. 금융투자소득세제('25년부터 시행)

가. 과세대상 소득

○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소득

- 현재 비과세 중인 채권 양도소득, 소액주주 상장주식 양도소득도 '25년부터 과세
- 과세기간(1.1.-12.31.) 중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형태의 소득* (회수금액 - 취득금액)을 포괄

* 증권의 결산 분배금 · 환매 · 해지 · 상환(중도·만기상환) · 양도(계좌간 이체, 계좌 명의변경, 증권의 실물양도 등 포함), 파생 계약으로부터 이익 등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의 범위>

▸ **금융투자상품:** 이익 추구·손실 회피를 목적으로 특정 시점에 금전 등의 지급을 약정하여 취득하는 권리로서, 취득금액이 회수금액을 초과하게 될 위험(투자성)이 있는 것으로 아래 두 가지로 구분(자본시장법 §3)

❶ **(증권)** 금융투자상품 중 원본 초과손실 위험이 없는 것

- **(채무증권)** 국채, 지방채, 회사채 등
- **(지분증권)** 주권, 신주인수권, 출자지분 등
- **(수익증권)** 투자신탁에 대한 수익권이 표시된 증권
-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의 성격이 내재된 증권(주가연계증권 등)
- **(증권예탁증권)** 국제간에 걸친 증권의 유통수단으로 이용되는 대체증권
- **(투자계약증권)** 투자자가 타인과의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 받는 계약상의 권리가 표시된 것

❷ **(파생상품)** 기초자산을 대상으로 하는 매매예약 계약, 원본 초과손실 위험

나. 분류과세

○ 자본소득(소득의 성격), 결집효과(누적된 소득의 실현), 손실가능성(투자성)을 고려하여 종합·양도·퇴직소득과 구분하여 과세

다. 비과세 소득

○ 「공익신탁법」에 의한 공익신탁의 이익

○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라. 금융투자소득금액의 계산

○ 과세기간(1.1~12.31) 별로 금융투자상품의 소득금액 및 손실금액 합산

▸ **(주식·채권·투자계약증권 양도소득)** 주식·채권·투자계약증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분배소득은 이자·배당으로 과세)

▸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소득)** 증권의 환매·양도소득

▸ **(파생결합증권 소득)** 기초자산 가격의 변동에 대해 미리 정해진 방법에 따라 투자자가 원금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금액(증권의 환매·양도소득 포함)

▸ **(파생상품 소득)** 상품 계약에 따라 지급받을 금액에서 지급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

마.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

(1) 계산방법

○ 금융투자소득금액에서 금융투자 결손금,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를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정

(2) 기본공제

○ ❶국내 상장주식, 주식형 펀드/❷기타 모든 금융투자 소득을 구분하여 기본공제 적용

- 국내 상장주식·주식형 펀드는 5,000만원 공제, 기타금융투자 소득은 하나로 묶어서 250만원 공제

(3) 결손금 이월공제

○ 해당 과세기간의 개시일 전 5년 이내에 발생한 금융투자결손금을 금융투자소득 과세표준에서 공제

바. 금융투자소득 세율

과세표준	세 율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	6천만원 + (3억원 초과액 × 25%)

사. 원천징수

○ (방법) 금융회사별로 반기별 소득금액 통산 후 원천징수

○ (원천징수의무자) 금융투자소득을 지급하는 금융회사

○ (대상소득) 금융회사를 통하여 지급되는 모든 금융투자소득

○ (원천징수세율) 20%

○ (원천징수 절차) ❶ 계좌별 누적 소득금액 및 원천징수세액 계산(반기별)

❷ 금융회사 내 계좌별 소득금액의 인별 통산(반기별)

❸ 이월된 결손금을 반영하여 계산한 최종 원천징수세액을 관할 세무서에 납부(반기말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

아.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1) 예정신고

○ (대상소득) ❶ 금융회사를 통하여 지급되지 않은 금융투자소득

❷ 금융회사가 원천징수하지 않은 소득

○ (신고기한) 반기 말일부터 2개월(8월말, 2월말)

(2) 확정신고

○ (대상) 누진세율(25%) 적용으로 추가납부세액이 있는 자, 환급을 받으려는 자, 결손금 확정이 필요한 자 등

○ (신고기한) 다음연도 5월 말까지

3. 법인세제

1. 법인세 개요 / 93
2. 과세체계 / 94
3. 각 사업연도의 소득 / 95
4. 익금과 손금 / 96
5. 법인세율 / 97
6.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 98
7.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 99
8.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 100
9. 과다경비 손금불산입 / 101
10. 업무무관경비 손금불산입 / 102
11. 업무용 승용차 과세기준 합리화 / 102
12.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 103
13.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 104
14. 퇴직급여충당금 / 106
15. 대손충당금 / 106
16.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106
17. 지급배당 소득공제 / 107
18. 결손금 공제 / 107
19. 부당행위계산부인 / 108
20. 합병·분할에 따른 양도손익 / 108
21.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 110
22. 법인세의 신고와 납부 / 111
23. 소득처분 / 113
24. 지출증빙서류의 수취·보관 / 114
25. 비영리법인 과세제도 / 114
26. 연결납세제도 / 115
27. 동업기업 과세특례 / 116
28.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舊 기업소득 환류세제) / 117

작성자 : 법인세제과장 정형

1. 법인세 개요

가. 법인 구분

○ 내국법인

- 영리 내국법인
 - 상법상 합명, 합자, 유한, 유한책임, 주식회사
- 비영리 내국법인
 - 민법상 사단·재단법인
 - 사립학교법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익배당법인 제외)
 -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
- 국가·지방자치단체

○ 외국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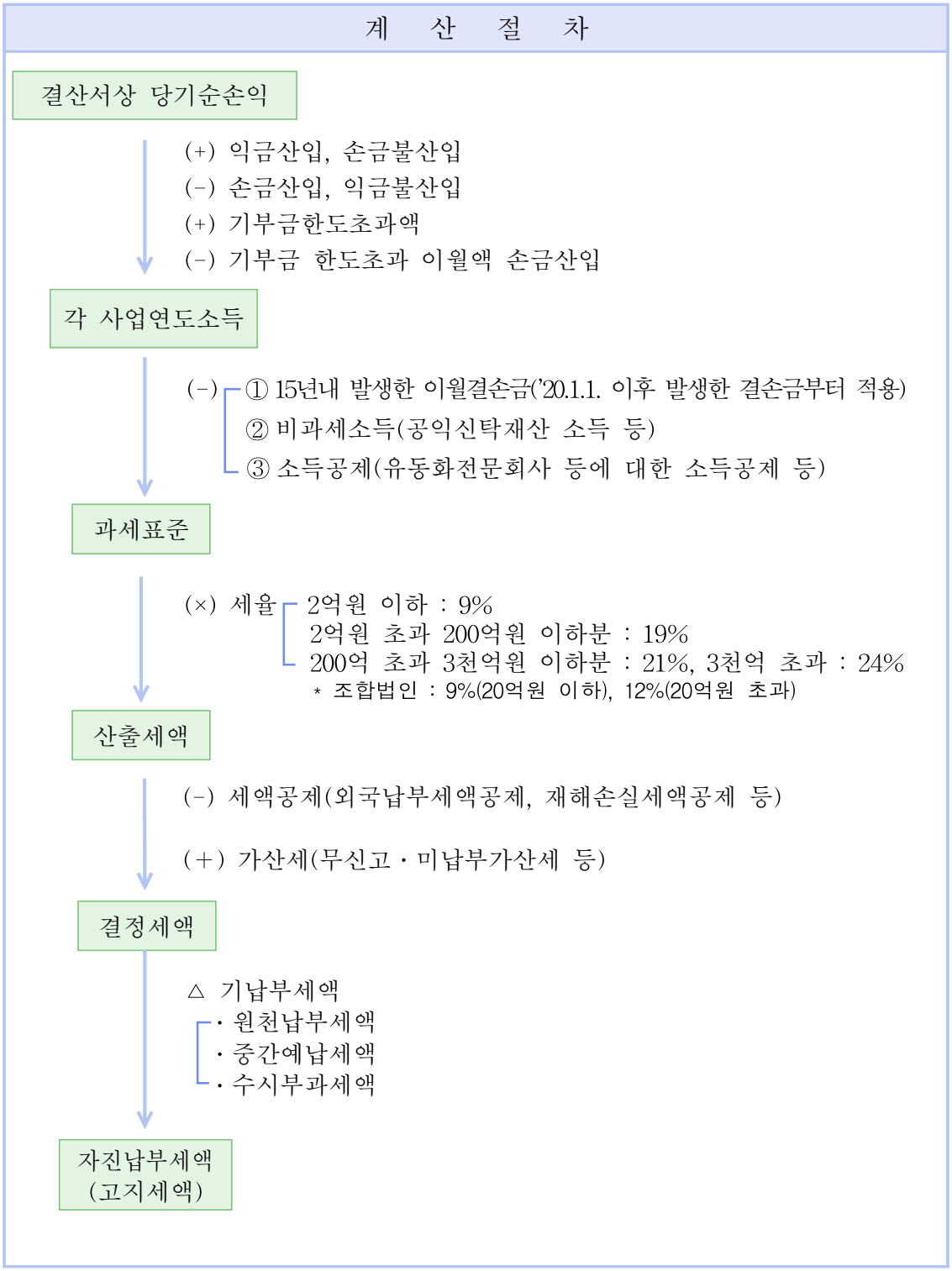
- 영리 외국법인
- 비영리 외국법인 : 외국 정부·지자체, 비영리 목적 법인

나. 법인 구분별 과세범위

구 분		각사업연도 소득	청산소득
내국법인	영리법인	국내외 모든 소득에 과세	과세
	비영리법인	국내외 수익사업소득에만 과세	비과세
외국법인	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만 과세	
	비영리법인	국내원천 수익사업소득만 과세	
국가·지방자치단체		비과세	

※ 비영리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는 취지
- 비영리법인 : 청산시 민법 제80조에 따라 잔여재산을 구성원에게 분배할 수 없고 지정된 자 등 또는 국고에 귀속시키기 때문
- 외국법인 : 본점 소재지인 외국에서 청산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과세할 수 없음

2. 과세체계


계 산 절 차
결산서상 당기순손익
(+) 익금산입, 손금불산입
(-) 손금산입, 익금불산입
(+) 기부금한도초과액
(-) 기부금 한도초과 이월액 손금산입
각 사업연도소득
(-) ① 15년내 발생한 이월결손금('20.1.1. 이후 발생한 결손금부터 적용)
② 비과세소득(공익신탁재산 소득 등)
③ 소득공제(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
과세표준
(×) 세율 2억원 이하 : 9%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분 : 19%
200억 초과 3천억원 이하분 : 21%, 3천억 초과 : 24%
* 조합법인 : 9%(20억원 이하), 12%(20억원 초과)
산출세액
(-) 세액공제(외국납부세액공제, 재해손실세액공제 등)
(+) 가산세(무신고·미납부가산세 등)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원천납부세액
· 중간예납세액
· 수시부과세액
자진납부세액
(고지세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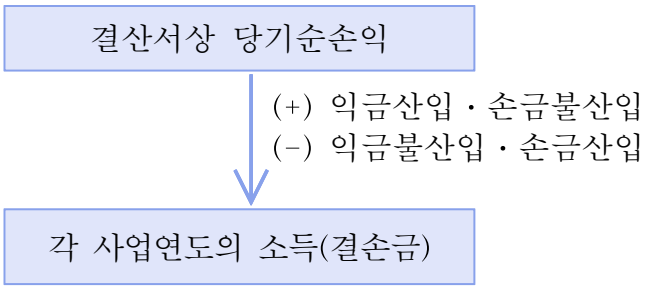
3. 각 사업연도의 소득

○ 원칙

- 각 사업연도의 소득 :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손금의 총액을 차감한다.
-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 :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에서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

○ 실무상 방식

- 결산서상 당기순손익에 익금산입·손금불산입을 가산하고, 익금불산입·손금산입을 차감하는 세무조정을 통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



○ 세무조정의 구분

- 결산조정 : 결산을 확정할 때 손비로 계상하는 경우에 한하여 익금·손금으로 인정하는 조정
- 신고조정 : 결산을 확정할 때 손비로 계상하지 않더라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익금·손금의 계상으로 익금·손금으로 인정되는 조정

○ 결산조정 항목

- 감가상각비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외부감사대상법인은 신고조정 가능)
- 퇴직급여충당금
- 대손충당금
- 구상채권상각충당금
- 채무자 파산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대손금
- 자산의 평가손익

○ 신고조정 항목
- 인건비, 차입금이자, 퇴직보험료 등 실제 지출된 비용
- 감가상각비 부인액의 손금불산입
- 건설자금이자의 손금불산입
-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차이로 발생하는 익금산입 등

4. 익금과 손금

○ 익금 :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을 제외하고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 이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음
- 배당으로 의제되는 금액
- 사업수입금액
- 자산의 양도금액
- 자산의 임대료
- 자산의 평가차익
-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등

○ 손금 :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을 제외하고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 이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음
- 판매한 상품의 매입가액,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
- 상품·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판매수당 등 판매부대비용
- 양도한 자산의 장부가액
- 인건비
- 수선비
- 감가상각비
- 자산의 임차료
- 차입금 이자 등

5. 법인세율

(단위:%)

구 분				'98.1.1 ~	'02.1.1~	'05.1.1~
법인세율	일반법인[1]	과세표준	1억원 초과	28	27	25
			1억원 이하	16	15	13
	조합법인[2]			12	12	12
원천징수세율[3]				22 [4]	15	14

주」 1. 법인세 산출방법 : (예) 과세표준 3억원일 경우('18년의 경우)
(2억원 × 10%) + [(3억원-2억원) × 20%] = 40,000천원

2. 조합법인 : 농협조합, 수협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엽연초생산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법인세 산출방법 : (당기순이익 + 기부금・기업업무추진비・과다경비・업무무관경비・지급이자・대손금・대손충당금・퇴직급여충당금 세무조정 금액) × 세율

3. 원천징수 : 소득(이자소득・투자신탁의 이익)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을 지급하면서 세액을 징수하여 매월 세무서에 납부하는 제도. 원천징수된 세액은 소득을 지급받은 법인의 법인세 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됨

4. '00~'01.6월은 20%, '01.7~'01.12월은 15%

구 분			'08.1.1~	'09.1.1~	'10.1.1~	'12.1.1~	'15.1.1~	'18.1.1~	'23.1.1~
법인세율	일반법인	과세표준 3천억원 초과	25	22	22	22	22	25	24
		과세표준 3천억원 이하						22	21
		과세표준 200억원 이하				20	20	20	19
		과세표준 2억원 이하	11	11	10	10	10	10	9
	조합법인	20억원 이하	12	9	9	9	9	9	9
		20억원 초과					12	12	12
원천징수세율			14	15	14	14	14	14	14

6.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가. 범 위

○ 법인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

○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액* 보다 저가양도 또는 고가매입한 경우 그 차액

* 정상가액이란 시가의 100분의 30을 가감한 범위 내의 가액임

나. 손금산입 한도 및 기부대상 단체

구 분	손금 한도	기부받는 단체
특례 기부금	50%	<법령에 의한 단체> ▪ 국가·지자체 기증 금품, 국방헌금, 국군장병 위문금품, 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 구호금품 ▪ 사립학교·비영리교육재단·기능대학·원격대학·산학협력단·외국교육기관 등에 대한 시설비·교육비·연구비·장학금 ▪ 국립대병원·서울대병원·사립학교병원·대한적십자병원·국립암센터·지방의료원·한국장학재단 등에 대한 시설비 ·교육비·연구비 <지정에 의한 단체(고시)> ▪ 한국학교 ▪ 전문모금기관
일반 기부금	10% (사회적 기업 20%)	<법령에 의한 단체> ▪ 사회복지, 종교, 의료법인 ▪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대학교 ▪ 학교등의 장이 추천한 개인의 교육비 등 ▪ 공익신탁으로 신탁하는 기부금 ▪ 사회복지시설 중 무료·실비로 이용하는 시설 <지정에 의한 단체(고시)> ▪ 비영리법인, 비영리외국법인, 사회적협동조합, 공공기관,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 또는 등록된 기관 ▪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자선·학술 등 공익목적 기부금 ▪ 국제기구
비지정 기부금	손금 불인정	○위 열거된 것 외의 기부금

7.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가. 정 의

접대, 교제,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 지출증빙이 없어도 일정범위안에서 기업업무추진비로 인정하는 기밀비는 2000년부터 폐지

나. 손금산입한도

다음 금액의 합계액을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으로 함

- 기초금액 : 1,200만원(중소기업 3,600만원)
- 매출액 : 100억원 이하 : 0.3%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 3천만원+(수입금액-100억원) × 0.2%
 500억원 초과 : 1억1천만원+(수입금액-500억원) × 0.03%

*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특정법인의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은 위 금액 기준 합계액의 50%임

- 2020.1.1.부터 2020.12.31.까지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의 경우 2020.3.23.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한해 다음의 매출액 기준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 적용(조특법 §136④·⑤)

- 매출액 : 100억원 이하 : 0.35%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 3천5백만원+(수입금액-100억원) × 0.25%
 500억원 초과 : 1억3천5백만원+(수입금액-500억원) × 0.06%

다. 신용카드등 사용의무

1회 3만원(경조사비는 20만원) 초과 지출 : 신용카드등*을 사용하여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만 손금인정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직불카드,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 등
*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기명식선불카드・직불전자지급수단・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기명식전자화폐・현금영수증

라. 기업업무추진비에 대한 특례

○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 = 일반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 + 문화비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 + 전통시장에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

○ 문화비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 = MIN[①, ②]
① 문화비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 지출액
② 일반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의 20%

* 적용기한 : 2025.12.31

○ 전통시장에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 = MIN[①, ②]
① 전통시장에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 지출액
② 일반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의 10%

* 적용기한 : 2025.12.31

8.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가. 개 요

○ 감가상각자산 취득가액을 내용연수 기간동안 감가상각을 통하여 비용화
- 법인이 결산시 감가상각비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손비인정

○ 감가상각 대상자산 : 토지를 제외한 건물·차량·기계 등 유형자산과 영업권·특허권·광업권 등 무형자산

나. 감가상각방법

다음 자산 구분별로 하나의 방법을 선택
- 건축물 및 무형자산 : 정액법
- 광업권 또는 폐기물매립시설 : 정액법 또는 생산량비례법
- 기타 유형자산 : 정률법 또는 정액법 중 선택
- 광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자산 : 생산량비례법, 정률법, 정액법
- 개발비 : 관련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20년의 범위에서 연단위로 신고한 내용연수에 따라 매 사업연도별 경과월수에 비례하여 상각
-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 사용수익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상각
- 주파수이용권, 공항시설관리권 : 주무관청에서 고시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한 기간내에서 사용기간에 따라 균등액을 상각

다. 내용 연수

다음 구분별로 내용연수범위내에서 선택 적용

- 건축물 등 : 구조별 5년(4~6년), 12년(9~15년), 20년(15~25년), 40년(30~50년)
- 업종별 자산 : 업종별 4년(3~5년), 5년(4~6년), 6년(5~7년), 8년(6~10년), 10년(8~12년), 12년(9~15년), 14년(11~17년), 16년(12~20년), 20년(15~25년)
- 무형자산 : 자산별 5년, 7년, 10년, 20년, 50년
- 시험연구용자산 : 자산별 3년, 5년

9. 과다경비 손금불산입

가. 상여금 등 손금불산입

○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은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손금불산입
○ 지배주주 등인 임원 또는 직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직위에 있는 다른 임원 또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초과금액을 손금불산입

나.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 임원 또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는 임원 또는 직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
○ 임원 퇴직급여는 다음의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
- 정관에 퇴직급여로 지급할 금액을 정한 경우 : 정관에 정한 금액
- 정관에 퇴직급여로 지급할 금액을 정하지 않은 경우
 : 1년간 총급여액 × 1/10 × 근속연수

다. 퇴직보험료의 손금불산입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형)의 부담금 : 전액 손금산입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형)의 부담금
: 아래 ①과 ②의 금액 중 큰 금액에서 ③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손금산입

① 임원 또는 직원이 전원 퇴직할 경우의 퇴직급여추계액에서 퇴직급여충당금을 공제한 금액에 상당하는 연금에 대한 부담금
②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보험수리적기준에 따른 퇴직급여추계액에서 퇴직급여충당금을 공제한 금액에 상당하는 연금에 대한 부담금
③ 직전 사업연도종료일까지 지급한 부담금

라. 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

조직·사업을 공동으로 운영·영위하면서 발생·지출된 손비 중 다음의 기준에 의한 분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

- 출자에 의한 공동사업 : 출자총액 중 해당 법인이 출자한 금액의 비율
- 출자에 의한 공동사업 외의 경우
 - 공동사업자간에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 :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과 총자산가액 총액 중 선택(선택하지 아니한 경우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한 금액에서 해당 법인의 매출액 또는 총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 다만, 공동행사비·공동구매비 등은 참석인원수·구매금액 등을 기준으로 가능
 - 공동사업자간에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 : 약정에 따른 분담비율

10. 업무무관경비 손금불산입

○ 업무무관 부동산, 동산(서화·골동품, 자동차·선박 등)의 취득·관리로 발생한 비용은 손금불산입

○ 업무무관 부동산 판정기준

- 취득후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유예기간 동안은 예외)
 * 유예기간 : 건축물 또는 시설물신축용토지 및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취득한 매매용부동산 5년, 기타 2년
- 유예기간내에 매각하는 부동산(부동산매매업 주업법인 제외)

○ 업무관련 서화·골동품의 범위

- 서화·골동품으로서 장식·환경미화 등에 사용하기 위해 사무실·복도 등 여러시설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상시 비치하는 것은 업무관련 자산으로 판정

○ 업무무관 부동산에 대한 추가 규제

- 업무무관 자산가액 상당 차입금 지급이자 비용부인

11. 업무용 승용차 과세기준 합리화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중 업무용 사용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은 손금불산입

* 법인이 소유·임차한 자동차로서 개별소비세 부과대상 승용자동차

○ 승용차 관련 비용이 연간 1,500만원 이하인 경우

-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필요
 * 임대차계약기간이 30일 이내인 렌터카로서 임직원 등을 운전자로 한정하는 임대차특약을 체결한 경우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간주

⇒ 운행기록 작성 없이 전액 비용 인정

○ 승용차 관련 비용이 연간 1,500만원 초과인 경우
-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시에 1,500만원보다 비용 공제를 더 받으려면 운행기록 작성 필요

⇒ 업무용 사용비율에 따라 비용 인정

○ 감가상각비와 임차료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서 업무사용금액은 연간 800만원 한도로 손금산입, 한도초과분은 이월
-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로서 800만원 초과금액은 이월

○ 업무용승용차에 대해 내용연수 5년, 정액법을 적용한 감가상각 의무화

○ '24.1.1. 이후 법인업무용 자동차번호판 번호판(연두색) 부착 의무
- 취득가액 8,000만원 이상일 경우

12.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 적용순서

○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

○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채권·증권의 이자

○ 건설자금이자

○ 업무무관자산 및 업무무관가지급금 이자상당액

나.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

- 채권자의 주소 및 성명을 확인할 수 없는 차입금
- 채권자의 능력 및 자산상태로 보아 금전을 대여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는 차입금
- 채권자와의 금전거래 시실 및 거래내용이 불분명한 차입금

다.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채권·증권의 이자

○ 다음의 채권·증권을 발행한 법인이 직접 지급하는 경우로서 그 지급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자·할인액 또는 차익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이나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 금융회사가 환매기간에 따른 사전약정이율을 적용하여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조건으로 매매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매매차익

라. 건설자금이자

○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매입에 한하여 적용된다

- 매매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아파트·상가 등의 재고자산의 대하여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하지 않는다
- 건설을 개시한 날로부터 건설이 준공된 날까지만 계산
- 건설자금으로 사용된 것이 분명한 특정차입금은 강제적으로 자본화하고 일반차입금에 대해서도 선택적으로 자본화한다

마. 업무무관자산 및 업무무관가지급금 이자상당액

○ 업무무관자신과 업무무관가지급금 등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은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와 취득·관리해서 생긴 비용을 손금불산입

○ 손금불산입 지급이자의 계산

$$\text{지급이자} \times \frac{\text{업무무관 자산가액 적수} + \text{업무무관 가지급금 적수}}{\text{총차입금 적수}}$$

13.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가.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 개 요

- 내국법인이 해당 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 중 다음의 금액은 익금불산입

지분비율	익금불산입률
50% 이상	100%
20% 이상~50% 미만	80%
20% 미만	30%

- 출자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자회사에의 출자와 관련된 차입금의 이자중 다음에 계산하는 금액은 익금불산입 금액에서 차감

$$\text{차입금이자} \times \frac{\text{자회사 주식등의 장부가액 적수} \times \text{익금불산입비율}}{\text{출자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 적수}}$$

○ 다음의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는 익금불산입 배제

- 배당기준일 전 3개월 이내에 취득한 주식등을 보유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입배당금액
- 지급배당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 법인세를 비과세·면제·감면(100% 감면) 받는 법인으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액
-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 유상감자 시 주식 취득가액 초과 금액 및 자기주식보유법인이 잉여금의 자본 전입으로 인해 발행하는 이익
- 3% 재평가 적립금(합병·분할 차익 중 승계된 금액 포함)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

나.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 개요

-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액의 95%를 익금불산입

○ 외국자회사 : 내국법인이 직접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5%) 이상을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 외국법인

○ 익금불산입되는 수입배당금액의 범위 :

- 이익의 배당금, 잉여금의 분배금, 의제배당(단,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하여 내국법인이 배당받은 것으로 보는 금액 및 해당 유보소득이 실제 배당된 경우의 수입배당금액은 제외)

○ 다음의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는 익금불산입 배제 :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며 실제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의 15% 이하인 유보소득 배당간주 규정을 적용받는 특정외국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에 배당하는 수입배당금액
- 혼성금융상품(자본 및 부채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금융상품으로서 법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의 거래에 따라 내국법인이 지급받는 수입배당금액
- 위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배당금액

14. 퇴직급여충당금

○ 설정한도 : 다음 중 적은 금액
- 각 사업연도 한도 : 임원 또는 직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의 5%
- 누적한도 :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퇴직금 추계액의 0%('16년 귀속 이후) - 세법상 퇴직급여 충당금 이월잔액 + 퇴직전환금 기말잔액]

○ 퇴직급여충당금의 사용
-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한 법인이 퇴직금을 지급할 때에는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지급

15. 대손충당금

○ 개요 : 채권의 대손에 충당하기 위하여 미리 설정한 충당금을 손비로 인정

○ 설정대상 채권
- 대상 : 외상매출금, 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
- 제외 : 특수관계자 가지급금 등

○ 설정한도 : 다음중 큰 금액
- 채권잔액 × 1%
- 채권잔액 × 대손 실적률*

* 해당 사업연도 대손금/전기말 채권잔액

※ 금융회사 등은 금융위원회·행정안전부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대손충당금적립기준에 따라 적립하여야 하는 금액, 채권잔액×1%, 채권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

16.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가. 원 칙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나. 거래유형별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상품 등의 판매 : 상품 인도일

○ 부동산 등의 판매 : 대금 청산일.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등기하거나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등기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 장기할부조건으로 판매·양도 : 원칙은 인도일. 다만, 회수기일도래기준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회수기일도래기준 인정

○ 건설·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 포함)

·(1년 미만 단기건설) 작업진행률에 따른 진행기준이 원칙. 다만, 중소기업,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인도기준 적용시에는 목적물의 인도일

·(1년 이상 장기건설) 작업진행률에 따른 진행기준. 다만,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목적물의 인도일

○ 이자소득

·(일반법인) 예·적금의 이자를 지급받은 날, 채권이자를 지급받기로 한 날 등

·(금융기관) 실제 수입한 날. 다만,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경우에 한해 발생주의 인정

○ 배당소득 : 잉여금 처분에 의한 배당은 잉여금 처분일,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은 이익을 지급받은 날

○ 임대료 : 임대료의 지급일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지급일, 임대료의 지급일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날

17. 지급배당 소득공제

유동화전문회사 등이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을 소득금액에서 공제

- 대상 법인 : 유동화전문회사, 투자회사, 투자목적회사, 투자유한회사 등

18. 결손금 공제

○ 이월공제 : 결손금은 향후 15년*간 이월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80%** 공제

* ('20.1.1. 이후 발생한 결손금부터 적용)

** 중소기업,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은 한도 적용 제외

○ 소급공제 : 중소기업은 결손금을 1년간 소급공제하여 기납부한 법인세를 환급

* 환급세액 계산방법

[직전 사업년도 법인세 산출세액] - [(직전 사업년도 과세표준 - 당해 사업년도 결손금중 소급공제받고자 하는 결손금)×직전 사업년도 법인세율]

19. 부당행위계산부인

○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하여 과세하는 제도

○ 특수관계자의 범위
- 사실상 영향력 행사자와 그 친족
- 주주 등과 그 친족, 임원, 직원
- 계열회사 및 그 임직원 등

○ 부당행위의 유형
- 자산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가액으로 거래하는 경우
- 금전을 무상 또는 저리로 대부하는 경우
- 자산·용역을 무상 또는 저리로 제공·임대하는 경우 등

20. 합병·분할에 따른 양도손익

가. 납세의무자

○ 피합병법인 및 분할법인

나. 양도손익

양도가액	-	순자산의 장부가액	=	양도손익

○ 양도가액 : 다음의 금액을 합산

① 피합병법인 주주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취득한 합병법인주식등의 가액과 금전 기타 재산가액의 합계액 등(합병신주·금전·기타 재산은 시가로 평가)

② 합병법인이 합병이전 취득한 피합병법인 주식이 있는 경우 同 주식에 대해서도 합병신주를 교부했다고 보고 계산(합병신주는 시가로 평가하되, 특수관계법인간 불공정합병시 분여받은 이익만큼 가산)

③ 합병법인이 납부하는 피합병법인의 법인세 및 그 법인세에 부과되는 국세와 법인지방소득세

○ 순자산의 장부가액 : 자산의 장부가액에서 부채의 장부가액을 차감하고 국세기본법에 따라 환급되는 법인세액을 가산한 금액

○ 적격인 경우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음(과세이연 여부 선택)

다. 합병·분할매수차손익

○ 합병법인 등은 양도가액과 피합병법인등의 순자산시가와의 차액을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비적격인 경우에 한정)

① 양도가액 > 순자산시가인 경우 차액을 합병(분할)매수차손으로 하여 5년간 월별균등 손금산입

② 양도가액 < 순자산시가인 경우 차액을 합병(분할)매수차익으로 하여 5년간 월별균등 익금산입

라. 적격합병 시 과세특례

○ 과세이연 요건

① 1년이상 사업영위 법인간 합병 등

② 주식비율 80%이상 및 일정 주주는 합병신주를 계속 보유

③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

④ 합병등기일 1개월전 현재 종업원의 80%이상을 승계하고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80%이상 유지

○ 과세특례

- 피합병법인 등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
- 합병등기일 현재 이월결손금 및 세무조정사항 전부를 승계받음

○ 사후관리

- 양도받은 모든 자산·부채별로 자산조정계정(합병등기일 현재 시가 - 장부가액)을 설정하여 감가상각비와 상계 또는 추가하거나 처분시 익금 또는 손금산입
- 2년 이내에 합병법인이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거나, 피합병법인의 지배주주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등을 절반 이상 처분하는 경우, 고용승계요건 위배한 경우 과세이연 중단 및 승계받아 공제한 결손금 익금산입

마. 적격분할 시 과세특례

○ 과세이연 요건

① 5년이상 사업영위 법인의 분할

②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
③ 분할 사업부문의 자산·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
④ 분할대가 전액이 주식이고 일정 주주는 분할신주를 계속 보유
⑤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
⑥ 분할등기일 1개월 전 현재 종업원의 80%이상 승계하고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80% 이상 유지

○ 과세특례
- 분할법인 등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
- 분할등기일 현재 이월결손금 및 세무조정사항 전부를 승계받음(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 승계 불가)

○ 사후관리
- 양도받은 모든 자산·부채별로 자산조정계정(분할등기일 현재 시가 - 장부가액)을 설정하여 감가상각비와 상계 또는 추가하거나 처분시 익금 또는 손금산입
- 2년 이내에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거나, 분할법인의 지배주주등이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등을 절반 이상 처분, 고용 승계 요건 위배한 경우 과세이연 중단 및 승계받아 공제한 결손금 익금산입

바. 신고·납부

○ 합병·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

21.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토지등 양도소득 = 토지 등의 양도금액 -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

○ 과세대상 토지 등의 범위 및 세율
① 주택(그 부수토지 포함) : 양도소득 × 20%(미등기 40%)
② 비사업용 토지 : 양도소득 × 10%(미등기 40%)
③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 : 양도소득 × 20%

22. 법인세의 신고와 납부

가. 과세표준의 신고

(1) 신고기한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도 포함

(2) 제출서류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세무조정계산서, 기타 세무조정계산서부속서류

나. 납 부

(1) 납부 기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감면공제세액·중간예납세액·수시부과세액·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까지 납부

(2) 분납

- 납부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 1천만원 초과금액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그 세액의 50% 이하금액
- 분납 납부기한은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개월(중소기업 2개월)이내

다. 가산세

구 분	가 산 세
납부지연 가산세	미달납부세액×미납일수×0.022%
무신고 가산세	MAX(①,②) ① 결정세액× 40%(부당) 또는 20%(일반) ② 부당(일반)무신고 수입금액 × 0.14%(0.07%)
신고불성실 가산세	MAX(①,②) (일반과소신고는 ①만 적용) ① 결정세액× 40%(부당) 또는 10%(일반) ② 부당과소신고 수입금액 × 0.14%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 지급명세서(일용근로소득 제외) 미제출·불분명 지급금액×1%. 다만, 3월내 제출 시는 0.5% ·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불분명 지급금액×0.25%. 다만, 3월내 제출 시는 0.125%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불분명 지급금액 ×0.25%. 다만, 1월내 제출 시는 0.125% ('21.7.1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법정증명서류미수취·사실과다른금액×2%
주식등변동상황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미제출·누락제출·불분명한 주식의 액면가액×1%
주주등의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해당 주주등이 보유한 주식의 액면금액×0.5%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부실기재 : 공급가액 ×0.5% · 계산서 부실기재 : 공급가액 × 1% · 계산서합계표 미제출·부실기재 : 공급가액×0.5% · 계산서 미발급·가공(위장)계산서 수수 : 공급가액×2%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아래의 금액을 합계(미납부세액의 10% 한도) · 미납부세액×일수×0.022% · 미달납부한 원천징수세액 ×3%

구 분	가 산 세
기부금영수증 발급·작성·보관 불성실 가산세	· 불성실발급금액 × 5% · 기부자별 발급명세 미작성, 미보관 × 0.2%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 가산세	아래 중 큰 금액 · 산출세액 × 20% · 수입금액 × 0.07%
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 불성실 가산세	발급거부금액·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 × 5%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	· 미가맹시 : 수입금액 × 1% · 발급거부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 발급거부금액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 × 5% · 거래금액 10만원 이상인 재화·용역 공급시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위반 : 미발급금액×20%(7일내 자진발급시 10%)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 배당가능한 유보소득금액 × 0.5%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아래 중 큰 금액 · 산출세액 × 5% · 수입금액 × 0.02%

23. 소득처분

신고, 결정 또는 경정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소득처분

- 주주에게 귀속되는 경우 : 배당
- 임원·직원에게 귀속되는 경우 : 상여
-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개인사업자인 경우 : 기타사외유출
- 소득이 사외로 유출되어 출자자·사용인·임원 이외의 자에게 귀속되었음이 분명한 경우: 기타소득
-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않은 경우 : 사내유보
- 소득이 사외로 유출되었으나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기타사외유출
- 기업업무추진비한도초과액 등 : 기타사외유출

24.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명서류(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산서)를 작성 또는 수취하여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

- 증빙미수취시 손비로는 인정하되, 미수취 등 금액 중 손금으로 인정되는 금액의 2%를 가산세로 부과

○ 예외인정

- 다음에 해당하는 자와 거래하는 경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비영리법인(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 금융·보험업 법인(금융보험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한함),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비거주자,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간이과세자로 신용카드 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아닌 사업자
- 건당 3만원 이하 거래, 농·어민과의 직접 거래 등

25. 비영리법인 과세제도

○ 납세의무

-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수입 또는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과세
- 타인으로부터 자산 수증시 증여세 과세(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비과세)

○ 과세특례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설정한도 : 이자소득 등 ×100%, 기타 수익사업소득×50%(80%*, 100%**)
 * 장학재단으로서 고유목적사업 지출액의 50% 이상을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법인
 **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국립대학병원 등 ('25년 말까지)
 - 사용용도 :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사용
 - 익금산입 : 설정일로부터 5년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법인 해산, 고유목적사업 전부 폐지, 법인 간주 단체 취소,
 고유 목적사업 외 용도로 지출한 경우
- 이자소득만 있는 경우 원천징수방법에 의하여 과세 종결 가능
- 토지, 건물,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자산양도소득만 있는 경우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 법인세로 납부가능
- 복식부기에 의한 기장 및 장부비치 의무 배제(수익사업 제외) 등

26. 연결납세제도

가. 개요

모회사와 자회사가 경제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 경제적 실질에 따라 해당 모회사와 자회사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보아 소득을 통산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는 제도

나. 적용대상

연결납세방식 적용신청의 승인을 받은 내국법인과 해당 내국법인이 90% 이상 지배*하는 다른 내국법인

* `23.12.31.까지는 완전지배시만 적용가능

다. 연결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에서 다음 금액을 순차로 공제하여 산출
- 연결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 소득공제액

○ 다음의 결손금은 공제제한
- 연결납세방식 적용 전에 발생한 결손금
- 연결모법인이 다른 법인을 합병한 경우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이월결손금
- 연결모법인이 다른 법인을 분할합병한 경우 소멸한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이월결손금

라. 연결소득금액 계산

① 연결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 또는 결손금 계산

② 연결법인별 연결조정항목의 제거

③ 연결법인간 거래손익 조정

○ 연결법인간 지급한 수입배당금은 전액 익금불산입하고, 연결법인에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 및 연결법인간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손금산입액은 전액 손금불산입

○ 연결법인간 자산양도손익 과세이연
- 양도손익이연자산 : 유형고정자산, 무형자산, 금융투자상품, 채권, 토지와 건축물
-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 경우 과세이연 배제

- 과세이연된 양도손익은 양수법인이 자산을 상각, 양도, 소각, 대손처리하거나 채권의 회수기일이 도래하는 경우 과세

④ 연결조정항목을 연결집단 기준으로 재계산한 후 법령에서 정한 비율별로 각 연결법인별로 배분 계산

○ 연결집단을 1내국법인으로 보아 연결조정항목의 익금불산입액과 손금불산입액을 계산하여 각 연결법인에 대한 귀속액을 배분

⑤ 각 연결법인별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연결소득금액을 계산

27. 동업기업 과세특례

가. 개요

○ 동업기업(Partnership)이란 2인 이상이 금전 기타의 재산 또는 노무 등을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하기 위해 설립한 인적회사 성격의 단체

○ 동업기업 과세특례(Partnership Taxation)는 동업기업을 도관으로 보아 동업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동업기업 단계에서는 과세하지 않고, 구성원인 동업자에게 귀속시켜 동업자별로 과세하는 제도

- 단, 소득의 계산 및 신고에 있어서는 동업기업을 실체로 인정

나. 적용대상

① 민법·상법에 따른 조합 및 합명회사·합자회사

- 「민법」에 따른 조합
- 「상법」에 따른 익명조합·합자조합
- 「상법」에 따른 합명·합자회사

② 특별법에 따른 조합

- 「변호사법」에 따른 법무조합

③ 특별법에 따른 합명회사

- 「변호사법」에 따른 법무법인
- 「변리사법」에 따른 특허법인
- 「공인노무사법」에 따른 노무법인
- 「법무사법」에 따른 법무사합동법인

④ 전문적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특별법에 따른 유한회사
- 「변호사법」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
-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법인
- 「변리사법」에 따른 특허법인(유한)

다. 과세방식

○ 동업기업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해
- 동업기업에 대해서는 동업기업 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를 부과하지 않고 동업자에게 배분
- 동업자는 배분받은 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납세의무 부담

○ 동업자가 단독사업자로서 소득을 얻는 경우와 동업기업을 통해 소득을 얻는 경우 간에 소득의 성격이 전환되지 않도록
- 과세체계가 동일한 동업자군별로 동업기업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을 계산하여 동업자에게 배분
- 배분받은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을 동업자군별로 소득세법·법인세법에 따라 구분하여 동업자의 해당 과세연도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을 계산

○ 동업기업의 결손금은 동업자에게 지분가액을 한도로 배분
- 동업자는 배분받은 결손금을 다른 사업소득 등과 공제

○ 세액공제·감면금액, 원천징수세액, 가산세 등 동업기업 관련 세액은 동업기업 단계에서 세액을 계산하여 동업자에게 배분
- 동업자는 해당 과세연도 소득세·법인세 신고·납부시 배분받은 세액을 공제·가산

28.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가. 개요

○ 당기 소득의 일정액 중 투자·임금증가·상생협력지출액 등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과세

나. 적용대상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법인

다. 과세방식

○ 미환류소득(Ⓐ, Ⓑ 중) 선택 × 20%

· Ⓐ [기업소득 × 70% - (투자[1] + 임금증가[1, 1.5~2] + 상생협력지출액[3])]

· Ⓑ [기업소득 × 15% - (임금증가[1.5~2] + 상생협력지출액[3])]

* 괄호 안은 가중치
(임금증가 : 임금증가액(1)[상시근로자수 증가한 경우 기존상시근로자(1.5), 신규상시근로자(2)] + 청년정규직 + 정규직전환)

라. 세부 과세기준

○ (과세방식) 당해연도 미환류소득을 '차기환류적립금'으로 적립하여 다음연도 납부가능(2개 사업연도 유예)
- 당해연도 초과환류액은 직전연도의 차기환류적립금에서 차감하거나 다음연도로 이월(2개 사업연도)하여 미환류소득에서 차감

○ 기업소득, 투자, 임금증가, 상생협력지출액 산정방법

① (기업소득) 각 사업연도 소득 + 가산항목 - 차감항목
- (가산항목) 국세 환급금에 대한 이자, 기부금 한도초과 이월액, 당기 투자자산의 당기 감가상각분
- (차감항목) 법인세액, 법령상 의무적립금, 이월결손금 등

② (투자) 국내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사업용 자산

③ (임금증가) 8천만원 이상자 등을 제외한 상시근로자의 근로소득 증가액

④ (상생협력 출연금)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출연금,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 등

○ (과세방식 선택) Ⓐ방식은 3년간, Ⓑ방식은 1년간 의무적용

○ (적용기간) 투자촉진세 : '18.1.1. ~ '25.12.31.

4. 양도소득세제

1. 양도소득의 개념과 범위 / 121
2.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 121
3. 양도·취득시기 / 124
4. 1세대 1주택 비과세 / 125
5.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 / 130
6.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및 비과세 / 133
7. 비사업용토지 / 138
8. 부당행위계산 부인 / 143
9. 배우자 등 증여재산에 대한 이월과세 / 145
10. 기준시가 / 146
11. 양도소득세 계산구조 / 147
12. 세 율 / 153
13. 신고납부 / 157
14. 분납 및 물납 / 157
15. 기 타 / 157
16. 지정지역 / 158
17. 국외자산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 160
18. 법인의 주택·비사업용 토지 양도에 대한 추가과세제도 / 162

작성자 : 재산세제과장 박지훈
금융세제과장 조용래

1. 양도소득의 개념과 범위

가. 양도소득의 개념

○ ‘양도소득’이란 개인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얻는 소득을 말함(다만, 부동산매매업자 등이 사업적으로 행해지는 부동산 등을 판매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

나. 양도의 개념

○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 또는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함

○ 자산이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하더라도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① 환지처분 또는 보류지에 충당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로 충당되는 경우

② 양도담보
양도담보는 비록 소유권이전의 형식을 취하지만 그 실질이 채권담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양도로 보지 않음(다만, 양도담보 계약을 체결한 후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변제에 충당한 때에는 그 때에 이를 양도한 것으로 봄)

③「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토지교환
토지 이용상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합리적으로 바꾸기 위해 토지를 분할하여 교환한 것으로 분할된 토지의 전체면적이 분할 전 토지의 전체면적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가. 토지와 건물

‘토지’라 함은 지적법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함(건물에는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

나. 부동산에 관한 권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다.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과 증권예탁증권을 포함)

(1) 주권상장 법인 주식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1%이상(코스닥 주식은 2%, 코넥스 주식은 4%) 또는 시가총액 10억원(코스피·코스닥·코넥스 동일) 이상인 대주주등이 양도하는 주식과 장외거래하는 주식

- 합병법인의 신주를 합병사업연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주식보유 현황에 따름

(2)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식등. 다만,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설립한 시장(K-OTC)에서 거래되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주식으로서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4%미만 또는 시가총액 10억원 미만인인 경우는 제외

(3) 외국법인이 발행하였거나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주식등

라. 기타자산

(1)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2) 특정시설물 이용권·회원권 등

이용권・회원권 그밖에 그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에 비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한 단체의 일원이 된 자에게 부여되는 시설물이용권을 말하는 것으로 골프장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 회원권 등이 있음

(3) 특정주식 등

해당법인의 자산총액 중 토지・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가액의 합계액과 해당 법인이 보유한 다른 법인의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이고, 해당법인의 주식 합계액 중 주주(출자자 포함) 1인과 기타 주주(주주 또는 출자자 1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합계액이 50%를 초과하는 법인의 주식을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주주1인 및 기타주주 외의 자에게 3년간 누계기준으로 50% 이상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

(4)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의 주식

골프장·스키장·휴양콘도미니엄 또는 전문휴양시설을 건설 또는 취득하여 직접 경영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중 토지·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가액과 해당 법인이 직접·간접으로 보유한 다른 법인의 주식가액에 다른 법인의 부동산등 보유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자산총액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으로서, 해당 법인의 주식을 단 1주라도 보유하다가 양도해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

(5) 이축권

토지·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이축을 할 수 있는 권리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 단 감정평가를 통해 별도로 평가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외

마. 파생상품

(1) 국내 모든 주가지수 관련 파생상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코스피200 선물·옵션·ELW, 미니코스피200 선물·옵션, 코스닥150 선물·옵션, KRX300 선물, 섹터지수 선물, 배당지수 선물, 코스닥 200변동성지수선물, 코스닥150 주식워런트증권(ELW) 등

(2)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 및 주가지수 관련 장외파생상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3) 차익결제거래(Contract For Difference) : 기초자산의 가격(국내외 주식·지수 등)과 연계하여 계약체결 당시 약정가격과 계약에 따른 약정을 소멸시키는 반대거래 약정가격 간의 차액을 현금으로 결제하고 계약 종료시점을 미리 정하지 않고 일방의 의사표시로 계약이 종료되는 상품

바.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자본시장법 §110, 189상 수익증권 양도는 제외, 신탁재산의 통제권이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 신탁재산 자체의 양도로 봄)

3. 양도·취득시기

가. 원칙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

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다.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라. 장기할부조건으로 매매하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 포함)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마.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의 취득시기

사용승인서 교부일. 그러나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 승인일.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바.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취득 또는 양도한 경우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

사. 상속 또는 증여에 따라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아.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

환지 전의 토지의 취득일. 다만,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증가 또는 감소된 경우에는 그 증가 또는 감소된 면적의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

자.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

차. 민법 제2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유 취득한 경우

당해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

카. 의제취득시기

(1)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 중 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기타자으로서 1984.12.31. 이전에 취득한 것은 1985.1.1.에 취득한 것으로 봄

(2) 2001.1.1. 이후 양도하는 상장주식으로서 1985.12.31. 이전에 취득한 것은 1986.1.1.에 취득한 것으로 봄

4. 1세대 1주택 비과세

가. 개요

○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고가주택 제외)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주택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하는 제도(다만, 2017.8.3.부터 취득하는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의 경우 2년 거주 필요)

○ 이때, 주택에 딸린 토지가 도시지역 안에 있으면 주택정착 면적의 5배까지, (2022.1.1. 이후 양도분 부터 수도권내 도시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은 3배), 도시지역 밖에 있으면 10배까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1세대 1주택에 해당

나.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

(1)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분양받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임차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전원이 거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사업인정고시일전 취득한 경우에 한함.)

(3)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다만,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함)

(4)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다만,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함)

(5) 취학, 1년 이상 질병의 치료·요양, 근무상 형편으로 1년 이상 살던 주택을 팔고 세대원 모두가 다른 시·군지역으로 이사를 할 경우(광역시 안의 구지역과 읍·면지역간의 이주, 도농복합형태의 시 안의 동지역과 읍·면지역간의 이주를 포함함)

다.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

(1)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재개발·재건축사업에 참여한 조합원이 사업시행 기간 중에 일시 취득하여 1년 이상 살던 집을 재개발·재건축된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완공 후 3년 이내)하게 되어 팔게 될 경우(다만, 이 경우에는 재개발·재건축 주택의 완공 전 또는 완공 후 3년 이내에 양도하고, 완공된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여야 함)

(3) 1세대가 주택을 취득한 후 해당 주택에 대하여 임차인과 체결한 직전 임대차 계약(“직전임대차계약”, 임대한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일것)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임대차 계약(“상생임대차계약”, 임대한 기간이 2년 이상일 것)을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중에 체결하고 임대를 개시한 경우

라. 1세대 2주택이라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경우

(1) 이사를 가기 위해 일시적으로 두 채의 집을 갖게 될 경우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이사를 가기 위해 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2년 이상 보유한 종전 주택을 팔게 되면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 수도권소재 법인 또는 공공기관의 수도권밖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종사자가 이전(연접)지역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 내 양도 시

(2) 상속을 받아 두 채 이상의 집을 갖게 될 경우
상속받은 주택과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그 밖의 주택(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단

(3) 한 울타리 안에 두 채의 집이 있을 경우
한 울타리 안에 집이 두 채가 있어도 1세대가 주거용으로 모두를 사용하고 있을 때에는 1세대 1주택으로 판단

(4) 집을 사간 사람이 등기이전을 해가지 않아 두 채가 될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어 주택을 양도한 경우 집을 사간 사람이 등기이전을 하지 않아 공부상 1세대 2주택으로 나타난 경우에도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종전의 주택을 판 사실이 확인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음

(5) 직계존속을 모시기 위하여 세대를 합쳐 두 채의 집을 갖게 될 경우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모시기 위해 세대를 합친 경우에는 합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함)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음

(6) 결혼으로 두 채의 집을 갖게 될 경우
각각 1주택을 소유한 남녀가 결혼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또는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는 무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 2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함)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음

(7) 농어촌지역 소재 상속주택, 이농주택, 귀농주택을 포함하여 두 채의 집을 갖게 될 경우
1주택(일반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다음의 농어촌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이후에 일반주택(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함)을 팔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음

※ '농어촌주택'이라 함은 서울 · 인천 · 경기도를 제외한 읍·면지역(도시지역 내는 제외)에 소재한 다음의 주택을 말함

① 상속주택 : 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

② 이농주택 : 농·어업에 종사하던 자가 전업으로 인하여 다른 시·구·읍·면으로 전출함으로써 가족의 전부 또는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주택으로서 이농인이 취득일 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

③ 귀농주택 : 농·어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와 그 배우자 및 그들의 직계존속의 본적 또는 원적이 있거나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곳에 1,000㎡ 이상의 농지와 함께 취득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택(대지면적 660㎡ 이내)

(8) 농어촌주택·고향주택을 포함하여 두 채의 집을 갖고 있다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 §99의4)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03.8.1(고향주택은 '09.1.1.)부터 '25.12.31.까지 농어촌주택(고향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상 보유하면 농어촌주택(고향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일반주택 양도시 농어촌주택(고향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① 농어촌주택

- 농어촌지역 : 읍, 면, 동 소재 주택(단, 동의 경우 인구 20만 이하의 시 지역에 속한 경우로 한정, 수도권, 도시지역,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관광단지 지역은 제외)
- 주택가격 : 농어촌주택 취득 시 기준시가 3억원(한옥은 4억원) 이하

② 고향주택

- 고향지역 : 가족관계등록부에 10년 이상 등재된 등록기준지(본적지, 원적지 포함)로서 시지역 또는 10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시지역(수도권, 조정대상지역, 관광단지 지역은 제외)
- 주택가격 : 고향주택 취득시 기준시가 3억원(한옥은 4억원) 이하

(9) 지정문화재 주택을 포함하여 두 채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정문화재 또는 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과 일반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국내에 1개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10) 부득이한 사유로 두 채의 집을 갖게 될 경우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을 구입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로서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일반주택 양도 시 국내에 1개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마. 기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

(1) 점포가 딸린 건물에서 주택부분이 점포보다 클 경우

1세대 1주택자가 점포가 딸린 주택(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함)을 팔았을 때에는 주택면적이 점포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점포를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음

구 분	비과세 여부
주택 > 점포	점포를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주택 ≤ 점포	주택부분은 비과세, 점포부분만 과세

(2)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취득한 아파트를 팔았을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전부터 보유하던 주택(종전주택)이 재개발(재건축)사업에 의해 헐린 후, 당초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으로서 분양받은 아파트가 완공되어 이를 팔게 되면 다음의 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 요건(2년 보유)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음

· 재개발(재건축) 주택의 보유기간 :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공사기간, 완공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

(3) 입주권 (재개발·재건축)을 팔았을 경우

보유하던 종전주택과 부수토지를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출자하고 받은 조합원입주권도 2006년 1월 1일부터는 주택 수에 포함되므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음

<비과세 요건>

◦ 종전주택이 관리처분계획인가일과 주택의 철거일 중 빠른날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② 양도일 현재 당해 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1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바.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 1세대 1주택(또는 조합원 입주권)이라도 실지거래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또는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시 12억원 초과부분에 상당하는 양도차익은 장기보유특별공제(24~80%, 다만, 2021.1.1.이후 양도분은 2년 거주요건 충족 시 20~80%, 미충족 시 12~40%) 적용 후 기본세율로 과세

- 고가주택 양도차익 = 전체 양도차익 × $\frac{(\text{양도가액} - 12\text{억원})}{\text{양도가액}}$

- 고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전체 장특공제액 × $\frac{(\text{양도가액} - 12\text{억원})}{\text{양도가액}}$

5.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

가.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세제지원

* 취득당시 기준시가 6억원(수도권 외 지역은 3억원) 이하 주택을 장기일반임대주택등으로 등록하여 8년 이상('20.8.18 이후 등록분부터 10년 이상) 임대한 주택(다만, '18.3.31.까지 사업자등록 등을 한 경우에는 5년 이상 임대한 주택)

○ (양도세) 조정대상지역내 소재 임대주택 양도시 중과배제(1세대가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2018.9.14.이후 새로이 취득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2020.7.11.이후 임대등록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단기민간임대주택을 2020.7.11.이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변경신고한 주택은 중과세율 적용), 임대주택외 2년 이상 거주한 주택 양도시 생애 한 차례 임대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하고 거주주택은 비과세(2020.7.11.이후 임대등록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단기민간임대주택을 2020.7.11.이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변경신고한 주택은 비과세 제외)

○ (법인세) 임대주택 양도시 법인세 추가과세(20% 세율)를 적용하지 않음 (법인이 2020.6.17.이후 임대등록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및 단기민간임대주택을 2020.7.11.이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변경신고한 주택은 추가과세 적용)

○ (종합부동산세)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법인이 2020.6.17.이후 임대등록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

< 매입임대주택 세제지원 요건 >

구 분	호 수	기 간	주택면적*	임대개시일 당시** 주택가액
수도권	1호 이상	5년 이상	-	6억원 이하
지 방				3억원 이하

* '13.2.15. 이후 양도분부터 매입임대주택의 면적기준을 삭제함

** '11.10.14. 전에 「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주택의 경우 취득 당시 주택가액을 기준으로 함

나. 임대주택사업자의 거주용 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1) 거주용 자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주택 외 거주용 1주택 보유자가 2년 이상 거주한 해당 주택을 양도할 경우 생애 한 차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최초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 2020.7.11.이후 임대등록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단기민간임대주택을 2020.7.11.이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변경신고한 주택은 비과세 제외)

* 시행시기: '19.2.12일 이후 신규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하되, '19.2.12일 당시에 거주하고 있는 주택(시행일 이전에 거주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계약금을 지불한 경우도 포함)은 종전규정 적용

(2) 기존 임대주택을 거주용 자가주택으로 전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임대주택사업자가 거주주택을 비과세받아 양도한 이후에 기존 임대주택에 입주하여 2년 이상 거주하고 추가로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에 비과세받은 거주주택의 양도일 이후의 기간에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비과세

- '19.2.12일 이후 임대주택을 거주주택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전체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는 것으로 전환. 다만, 최종적으로 임대주택 1채만 보유하게 된 후 거주주택으로 전환 시 직전 거주주택 양도 후 양도차익분에 대해서 비과세

다.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세제지원

○ '24.12.31.까지(민간매입임대주택의 경우 '20.12.31.까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8년 이상 임대 후 양도시 임대기간 중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50%, 10년 이상 임대 후 양도시 70%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 (2020.7.11.이후 임대등록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단기민간임대주택을 2020.7.11.이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으로 변경신고한 주택은 비과세 제외)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란 무주택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강화된 공적 규제가 적용되는 매입임대주택(85㎡ 이하)으로서 아래 요건을 갖춘 주택을 말함

- 8년이상 계속하여 임대하고 5% 임대료 인상률 제한을 준수할 것

6.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및 비과세

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1) 개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100% 감면

○ '농지소재지'란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 이와 붙어있는 시·군·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로 30㎞ 이내의 지역을 말함

○ '자경'이란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함

- 근로소득(총급여)·사업소득(농업·축산업·임업 및 비과세 농가부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제외)이 3,700만원 이상이거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수입금액 이상인 경우 해당 과세기간은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2014.7.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다만 사업소득금액이 결손인 경우 사업소득금액을 0(영)으로 간주)

- 복식부기 의무자 수입금액 기준 이상의 수입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은 자경기간에서 제외

○ 8년 자경요건의 예외

-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요건(자경기간)이 완화

대상농지	자경기간	적용기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	3년 이상	2026. 12. 31까지

(2)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

○ 농지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 편입(읍·면 지역에 소재하는 농지는 제외)되거나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후 3년이 지난 경우 감면이 제외되나 다음의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에해당하는 경우 3년이 경과해도 감면 적용

○ 주거지역 등 편입 및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후 3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 전체 양도소득 중 주거지역 등 편입일·환지예정지 지정일까지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서만 감면 허용

<대규모 개발사업 지역>

① 사업시행지역 안의 토지소유자가 1,000명 이상이거나 사업시행면적이 100만m^2 이상인 지역으로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3년이 경과한 경우(택지개발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경우에는 10만m^2)

② 사업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인 개발사업지역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책임으로 사업 또는 보상이 지연된 경우

③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된 후 3년 이내에 대규모개발사업이 시행되고,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3) 상속농지의 경작기간 계산

○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경작기간과 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하여 8년 자경 여부를 판단

○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상속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공익사업을 위하여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 피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보는 것임

(4) 적용기한 및 세액 한도

○ 적용기한 : 2026.12.31.까지 양도

○ 감면세액 한도: 농지대토 감면, 공익사업목적 수용 감면 등과 합산하여 1년간 1억원, 5년간 2억원

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1) 개요

4년 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농지 양도일부터 1년 이내에 새로운 농지를 취득(상속·증여 제외)하여 경작을 개시한 경우로서 종전농지와 새로운 농지를 계속하여 경작한 기간이 합산하여 8년 이상인 경우 종전농지의 양도소득세 100% 감면

○ 농지소재지 요건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 규정과 동일

○ 농지대토 감면을 적용받기 위한 새로운 농지(대토)의 요건

- 종전 농지를 판 날로부터 1년 안에 판 농지의 면적 2/3 이상이거나 가격이 1/2 이상인 다른 농지를 사야하며 새로 취득한 농지 취득일(새로운 농지를 먼저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농지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 경작 개시할 것
- 종전의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과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하여 경작한 기간이 합산하여 8년 이상일 것
- 양도한 농지는 그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농지소유기간 중 4년 이상 경작하였어야 함
- 새로운 농지의 경작기간을 계산할 때 새로운 농지의 경작을 개시한 후 종전의 농지 경작기간과 새로운 농지 경작기간을 합산하여 8년이 지나기 전에 근로소득(총급여)·사업소득(농업·축산업·임업 및 비과세 농가부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제외)이 3,700만원 이상이거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이 복식부기 의무자 수입금액 이상인 경우 해당 과세기간은 새로운 농지를 계속하여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

 (다만, 사업소득금액이 결손인 경우 사업소득금액을 0(영)으로 간주)

(2)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

○ 종전농지 및 새로운 농지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 편입(읍·면 지역 소재 농지는 제외)되거나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후 3년이 지난 경우 감면 제외

○ 종전농지가 주거지역 등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후 3년 이내에 양도된 경우 전체 양도소득 중 주거지역 등 편입일·환지예정지 지정일까지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서만 감면 허용

(3) 감면한도 : 자경농지 감면 등과 합산하여 1년간 1억원, 5년간 2억원
(단, 대토감면 한가지만 적용될 경우 5년간 1억원)

다.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1) 개요

한·EU FTA 이행에 따라 피해가 우려되는 축산농가를 지원하기 위하여 8년 이상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를 폐업을 위하여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100% 감면

(2)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축사용지

○ 축사용지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 편입(읍·면 지역에 소재하는 농지는 제외)되거나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후 3년이 지난 경우 감면이 제외되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에서 예외로 인정하고 있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3년이 경과해도 감면 적용

○ 주거지역 등 편입 및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후 3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 전체 양도소득 중 주거지역 등 편입일·환지예정지 지정일까지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서만 감면 허용

(3) 적용기한 및 세액 한도

○ 적용기한 : 2025.12.31.까지 양도

○ 감면세액 한도 : 농지대토 감면, 공익사업목적 수용 감면 등과 합산하여 1년간 1억원, 5년간 2억원

라. 어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1) 개요

어업인 경영 지원을 위하여 8년 이상 직접 어업에 사용한 어업용 토지(육상해수양식어업 및 수산종자생산업에 직접 사용되는 육상양식장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100% 감면

* 다만, 해당 어업용 토지등이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해당 어업용 토지등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감면

(3) 적용기한 및 세액 한도

○ 적용기한 : 2025.12.31.까지 양도

○ 감면세액 한도 : 농지대토 감면, 공익사업목적 수용 감면 등과 합산하여 1년간 1억원, 5년간 2억원

마. 자경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1) 개요

산림자원의 육성 지원을 위하여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아 10년 이상 자경한 산지를 양도한 경우 자경기간에 따라 양도소득세 10~50% 감면

* 다만, 해당 산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산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세액을 감면

(3) 자경기간별 감면율 및 세액 한도

○ 자경기간별 감면율

자경기간	감면율
10년 이상 20년 미만	10%
20년 이상 30년 미만	20%
30년 이상 40년 미만	30%
40년 이상 50년 미만	40%
50년 이상	50%

○ 감면세액 한도 : 농지대토 감면, 공익사업목적 수용 감면 등과 합산하여 1년간 1억원, 5년간 2억원

바.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 농지의 교환도 원칙적으로 양도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농지를 교환 또는 분합하는 경우로서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비과세

- 교환하는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이 큰 편의 1/4 이하
- 교환으로 취득한 농지를 그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3년 이상 경작

7. 비사업용 토지

가. 개요

○ 토지에 대한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국토의 생산적·효율적 이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중과함

○ 과세체계

- 개인: ’16년부터 기본세율 + 10%p 추가과세(’16년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허용, ’17년부터 토지 취득일로 보유기간 기산일을 조정)

※ 지정지역의 경우(’18년부터) : (기본세율 + 10%p 추가과세)+ 10%p 추가과세

- 법인: 일반 법인세 외에 10%p 추가과세

나. 연혁

○ 8.31대책(’05년)에 따라 도입(’05년말 소득세법 개정)되어 ’07.1.1.~’09.3.15. 양도분까지 60%의 세율로 중과 적용

○ ’09.3.16.~’15.12.31.까지 중과 유예*

* 단, 법인이 비사업용 토지 양도시 ’13.1.1.부터 추가과세 적용

다. 비사업용 토지 판정방법

○ 소유기간 중 일정기간 이상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

◇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사업용 토지에 해당
- 양도일 직전 3년중 2년 이상을 사업에 직접 사용
- 양도일 직전 5년중 3년 이상을 사업에 직접 사용
- 보유기간의 60% 이상을 사업에 직접 사용

라. 부득이한 사유시 사업용 토지로 인정되는 경우

(1) 사업에 사용한 기간으로 간주하는 기간

- 토지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제한된 경우 : 사용이 금지·제한된 기간
- 토지취득 후 건축법상 건축허가·착공이 제한된 경우 : 건축허가·착공이 제한된 기간
- 토지취득 후 도시계획 변경 등으로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 당해 사유 발생 기간

(2) 기간 기준에 관계없이 사업용 토지로 보는 경우

- '06.12.31이전에 상속받거나 '06.12.31이전 20년 이상 소유한 상속받은 농지 · 임야 · 목장용지 : '09.12.31까지 양도시(개인만 해당)
- 공익사업용으로 협의매수 · 수용되는 토지 : 사업인정고시일이 '06.12.31 이전이거나 사업인정고시일부터 5년 이전에 매입한 경우
- 8년 이상 재촌·자경한 직계존속 · 배우자로부터 상속 · 증여받은 농지 · 임야 및 목장용지를 양도하는 경우(도시지역 내 토지는 제외) : 양도기한 제한없음
- 학교법인이 기부 · 출연받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 기업구조조정 목적으로 양도하는 토지 등

마. 대상토지의 사업성 판단기준

토지지목의 판정은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나 사실상의 현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함

(1) 농지(논, 밭, 과수원)

<원칙>

○ 소유자가 재촌·자경하지 않는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

- 재촌 : 농지소재지와 동일 또는 연접 시·군·구, 농지소재지와 직선거리 30㎞이내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
- 자경 : 농작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해 경작

○ 도시지역(녹지지역·개발제한구역 제외)안의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
- 1년 이상 재촌·자경하던 농지가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경우 편입일부터 3년간은 사업용 토지로 인정(5년내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

<예외>

○ 농지법 등에 의해 소유할 수 있는 농지는 재촌·자경 여부에 관계없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
- 농지법에서 소유가 인정되는 농지
 * 종자생산자·농업기자재 생산자가 소유한 농지, 매립농지, 농지전용 후 전용목적으로 사용하는 토지 등
-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 및 이농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
 * 상속개시·이농일부터 3년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5년 이내 양도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
- 종중소유 농지('05.12.31이전 취득분에 한함)
- 부득이한 사유로 자경할 수 없는 농지
 * 5년이상 재촌·자경자가 질병(1년이상 치료·요양 필요), 고령(65세 이상), 징집, 취학, 선거에 의한 공직취임, 교도소·구치소·보호감호소 수용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임대·사용대하는 경우(사유발생 후에도 재촌 요건)
- 공익목적의 비영리사업자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농지
- 한국농어촌공사가 8년 이상 수탁하여 임대·사용대한 농지
-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수용된 토지를 대체하여 취득한 농지로서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80㎞ 이내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재촌하는 자가 자경하는 농지

(2) 임야

○ 임야는 원칙적으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나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
- 공익상 필요·산림의 보호육성에 필요한 임야
- 임야 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로서 보유기간 요건을 갖춘 임야
 * 임야·소재지와 동일하거나 붙어있는 시·군·구 또는 임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는 자
- 거주·사업과 직접 관련된 임야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판단 기준>

구분	사업용 토지
공익목적, 산림의 보호·육성 목적 소유 임야	○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보안림, 채종림, 시험림 ○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 안의 임야로서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임야, 특수산림사업지구 안의 임야(단, 도시지역 편입일부터 2년이 경과한 임야는 제외) ○ 사찰림, 동유림 ○ 공원자연보존지구 및 공원자연환경지구 안의 임야 ○ 도시공원, 문화재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안의 임야 ○ 전통사찰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 ○ 접도구역, 철도보호지구, 홍수관리구역, 상수원보호구역 안의 임야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의 임야
재촌임야	○ 임야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 * 도시지역 소재 여부와 관계없이 재촌여부 충족시 사업용 토지에 해당 – 임야 소재지 : 임야가 소재한 시·군·구, 연접 시·군·구, 임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 지역
거주·사업과 관련된 임야	○ 임업후계자가 산림용 종자·묘목, 버섯, 분재, 야생화, 산나물, 그 밖의 임산물 생산에 사용하는 임야 ○ 종묘생산업자가 산림용 종자·묘목 생산에 사용하는 임야 ○ 자연휴양림·수목원 조성 또는 관리·운영에 사용되는 임야 ○ 산림계가 그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임야 ○ 사회복지법인, 학교, 종교·제사단체, 정당이 사업에 사용하는 임야 ○ 상속개시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상속임야 ○ 종중이 소유한 임야('05.12.31이전 취득분에 한함)

(3) 목장용지

<원칙>

○ 축산업자 소유 목장용지로서 기준면적* 초과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
* 가축별 기준면적과 가축두수를 적용하여 계산

○ 축산업자가 아닌 자의 토지는 중과 대상

○ 도시지역(녹지지역·개발제한구역 제외)안의 축산용 토지는 중과 대상
–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경우 편입일부터 3년내 양도하면 중과 제외

<예외>

○ 사업과 직접 관련된 목장용지는 중과 제외

- 상속목장용지(상속개시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상속일로부터 5년 내 양도하는 경우)
- 종중소유 목장용지('05.12.31이전 취득분에 한함)
- 공익목적의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목장용지 등

(4) 기타 토지(농지, 임야, 목장용지 외의 토지)

<원칙>

○ 재산세가 비과세·면제되거나 별도합산, 분리과세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 재산세 종합합산과세 대상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

* 건축물이 없는 일반적 의미의 나대지, 공장건축물 부속토지 기준면적 초과분, 일반건축물 부속토지 기준면적 초과분 등

○ 주택 부속토지 중 기준면적 초과분(도시지역 안은 주택 정착면적의 5배, 도시지역 밖 10배)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

○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휴양, 피서, 위락 용도로 사용하는 별장의 부속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

- 단, 수도권 외 읍·면 지역에 소재(도시지역, 투기지역, 관광단지 등 제외)하면서 기준시가 1억원 이하의 농어촌주택은 별장에서 제외

<예외>

○ 재산세 종합합산과세 대상 토지중에서도 거주·사업과 직접 관련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

- 체육시설용 토지

* 선수전용·종업원용 체육시설용 토지(기준면적 이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용 토지(시설기준 충족), 경기장운영업용 토지 등

- 주차장용 토지
 * 건축물 부설주차장용 토지(기준면적 이내), 업무용 자동차의 주차장용 토지(최저차고기준면적의 1.5배 면적 이내), 주차장운영업용 토지(토지소유자가 직접 주차장업을 영위한 경우로 한정)
- 개발사업시행자가 조성하는 토지(토지조성후 3년내 양도하는 경우)
- 청소년 수련시설용·종업원의 예비군 훈련용 토지
- 휴양시설업용 토지(옥외동물방목장·옥외식물원, 부설주차용 토지)
- 양어장 또는 지소(池沼)용 토지(내수면양식업, 낚시터운영업 등에 사용되는 부지)
- 무주택 1세대가 소유하는 토지(660㎡ 이내) 등

○ 사업을 가장할 우려가 있는 경우 연간수입금액/토지가액 비율기준을 적용하여 중과 대상 여부 판정

- 주차장운영업용 토지(3%이상)
- 블록·석물·토관제조업용 토지(20%이상)
- 화훼판매시설업·조경작물식재업용 토지(7%이상)
- 학원용 토지(자동차정비·중장비운전·중장비정비학원 10%이상, 농업교습학원 7%이상) 등

8. 부당행위계산 부인

가. 개요

○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실질과세원칙 또는 조세부담의 공평원칙에 반하므로 경제적·사회적 합리성의 기준에 의하여 거주자의 행위·계산을 부인하고 거주자의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할 수 있음

- 거주자가 특수관계자(「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에 열거된 자)와 거래하면서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저가로 양도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거주자의 행위·계산을 부인하고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

나. 과세요건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인 경우

다. 증여를 통한 우회양도

특수관계자에게 자산 증여 후 수증자가 10년 이내 양도한 경우로서 증여자가 직접 양도할 경우의 양도세가 수증자의 증여세 및 양도세의 합계보다 큰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간주

(1) 부당행위계산 부인 요건 : 아래의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한 경우 부당행위 해당

①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이 있는 경우일 것*

* 수증자가 납부한 증여세 + 양도세 합계액 ≥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경우의 양도세

②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아 10년 이내에 제3자에게 양도할 것

(2)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 경우 당초 증여받은 자산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으므로 이미 납부한 증여세는 환급함

(3)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증여자이며, 증여자가 무재산인 경우 수증자에게 연대납세의무를 부여함

(4) 위 부당행위계산부인 요건을 충족했다 하더라도 양도소득이 해당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지 않음

(5) 취득가액은 증여자가 해당 자산을 취득할 당시의 취득가액을 적용하며, 보유기간도 증여자의 취득일부터 수증자의 양도일까지 계산함

9. 배우자 등 증여재산에 대한 이월과세

가. 제도의 취지

부동산 등을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등에게 증여 후 양도하는 방법으로 취득시기를 임의로 조정하여 양도소득세 부담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

나. 적용대상 자산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자산(토지·건물 및 시설물 이용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을 증여받은 후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다만, 수증자가 이월과세 적용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는 경우* 적용 제외

* 부당행위계산부인(소득세법 §101②) 적용

다. 납세의무자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 계산시 증여당시 가액을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증여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당초 취득가액을 공제하며, 이 때의 납세의무자는 증여자가 아니라 증여재산을 양도한 수증자임

라. 증여상당세액의 필요경비 공제

양도차익 계산시 기납부 증여세는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방법으로 이중과세를 조정(다만, 기납부 증여세는 양도차익을 한도로 공제)

마. 장기보유특별공제

당초 증여자가 취득한 날부터 양도하는 날까지의 보유기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

10. 기준시가

가. 기준시가

○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양도자산의 취득 및 양도 당시의 기준이 되는 가액을 말함 ('07년 1월 1일부터 양도하는 토지·건물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의 계산이 기준시가원칙에서 실지거래가액으로 전환되었으나 기타 필요경비 개산공제, 환산가액 등의 계산을 위해 여전히 이용되고 있음)

○ 토지의 건물의 기준시가

구 분		기 준 시 가
① 토 지		시장·군수·구청장이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한 개별공시지가
② 일반건물		건물의 신축가격·구조·용도·위치·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
③ 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		건물의 종류·규모·거래상황·위치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고시하는 가액
④ 주택	㉠ 공동주택	국토교통부장관이 위 법률에 따라 결정·공시한 공동주택가격. 다만, 국세청장이 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을 때에는 그 가격을 따름
	㉡ 단독주택	시장·군수·구청장이 위 법률에 따라 결정·고시한 개별주택가격

○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 토지의 기준시가 계산

개별공시지가는 199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1990년 8월 30일에 최초로 고시되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경우에는 취득 당시의 개별공시지가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1990년 8월 30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다음과 같이 계산함

$$\text{'90.8.30. 전에 취득한 토지의 기준시가} = \text{'90.1.1. 기준 기준시가} \times \frac{\text{취득당시 시가표준액}}{(\text{'90.8.30. 시가표준액} + \text{그 직전 시가표준액}) \times 1/2}$$

11. 양도소득세 계산구조

<table>
<tr><th>계 산 구 조</th><th>세 부 내 용</th></tr>
<tr><td>양도가액</td><td>○ 실지거래가액 : '07년 이후 모든 양도자산은 실거래가 과세</td></tr>
<tr><td>(－) 필요경비</td><td>○ 실지거래가액 : 실제 취득가액 및 자본적지출액등 공제</td></tr>
<tr><td>양도차익</td><td></td></tr>
<tr><td>(－) 장기보유특별공제</td><td>○ 등기된 3년 이상 보유한 토지・건물

<table>
<tr><th colspan="2">일반자산</th><th colspan="2">1세대 1주택('21.1.1.이후 양도분)</th><th colspan="2"></th></tr>
<tr><th>보유기간</th><th>공제율</th><th>보유기간</th><th>공제율</th><th>거주기간</th><th>공제율</th></tr>
<tr><td>3년~4년</td><td>6%</td><td></td><td></td><td>2~3년</td><td>8%</td></tr>
<tr><td>4년~5년</td><td>8%</td><td>3~4년</td><td>12%</td><td>3~4년</td><td>12%</td></tr>
<tr><td>5년~6년</td><td>10%</td><td>4~5년</td><td>16%</td><td>4~5년</td><td>16%</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14년~15년</td><td>28%</td><td>9~10년</td><td>36%</td><td>9~10년</td><td>36%</td></tr>
<tr><td>15년 이상</td><td>30%</td><td>10년 이상</td><td>40%</td><td>10년 이상</td><td>40%</td></tr>
</table>
○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배제 대상

- 미등기자산,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경우 '22.5.10.~'25.5.9. 양도 시 한시 적용</td></tr>
<tr><td>양도소득금액</td><td></td></tr>
<tr><td>(－) 양도소득기본공제</td><td>○ 부동산・주식·파생상품 등으로 나누어 각각 연간 1인당 250만원
* 미등기 양도자산 : 공제불가</td></tr>
<tr><td>양도소득과세표준</td><td></td></tr>
<tr><td>(×) 세 율</td><td>○ 일반세율 ('23.1.1~)

1천4백만원 이하 : 6% 5천만원 이하 : 15%

8천8백만원 이하 : 24% 1억5천만원 이하 : 35%

3억원 이하 : 38% 5억원 이하 : 40%

10억원 이하 : 42% 10억원 초과 : 45%

○ 단기양도 :

1년 미만(주택 및 입주권・분양권 70%, 주택 외 부동산 50%),

2년 미만(주택 및 입주권・분양권* 60%, 주택 외 부동산 40%)

* 분양권은 2년 초과분에 대해서도 60%세율 적용

○ 미등기자산 : 70%

○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2주택자(기본세율+20%), 3주택자(기본세율+30%)]는 '22.5.10.~'25.5.9. 양도 시 한시 배제

○ 비사업용토지 : ('16년 이후) 기본세율+10%p 추가과세

** 투기지역내 비사업용토지 : 기본세율+20%p 적용</td></tr>
<tr><td>산출세액</td><td></td></tr>
<tr><td>(－) 공제・감면세액</td><td>조특법상 감면세액 등</td></tr>
<tr><td>결정세액</td><td></td></tr>
<tr><td>(＋) 가 산 세</td><td>신고불성실(10%～40%), 납부지연(1일 2.2/10,000) 등</td></tr>
<tr><td>총결정세액</td><td></td></tr>
<tr><td>(－) 기납부세액 등</td><td></td></tr>
<tr><td>차감납부할세액</td><td></td></tr>
</table>

가.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계산

양도소득 과세표준은 종합소득,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하며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기본공제를 차감한 금액이며, 양도소득금액은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취득가액,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를 차감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여 계산

<양도소득 과세체계>

양도가액	−	필요경비	=	양도차익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	양도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기본공제	=	과세표준
과세표준	×	세 율	=	산출세액

나. 양도가액의 산정 및 필요경비의 계산

(1)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산정 기준

자산의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따름. 다만,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를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

$$\text{환산가액} = \text{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times \frac{\text{취득당시 기준시가}}{\text{양도당시 기준시가}}$$

(2) 필요경비의 계산

필요경비는 자산의 취득 · 보유 · 양도 단계에서 발생한 비용 중 양도가액에 대응되는 직접비용으로서 법령에서 열거하는 비용에 한해 공제됨

<소득세법상 양도차익 계산 시 인정되는 필요경비>

구분	개 요
취득가액	○ 양도가액에 직접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 매입가액, 취득세·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 소유권 확보를 위해 소요된 소송·화해비용 -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지급하는 이자상당액 ※ 사업소득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된 감가상각비는 취득가액에서 차감
자본적 지출액	○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한 비용 - 용도변경 목적의 개조, 엘리베이터 및 냉난방장치, 피난시설 설치 - 재해 등으로 멸실, 훼손된 자산의 복구비용 등 -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 재해·노후화 등으로 인하여 건물을 재건축 하는 경우 그 철거비용 ○ 보유기간 중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개발부담금 및 재건축부담금
양도비	○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 - 증권거래세, 양도세 신고서 작성비용, 중개수수료, 공증비용, 소개비 등 ○ 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권 매각차손

○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경우 자본적지출액과 양도비로서 실제 지출된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며, 취득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경우에는 개산공제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

※ 필요경비 개산공제(실지거래가액 이외의 방법으로 과세시 공제범위)

구 분		개산공제액
토지와 건물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3% (미등기자산 0.3%)
부동산에 관한 권리	지상권・전세권・등기된 부동산임차권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7% (미등기자산 1.0%)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1%
기타자산, 주식 및 출자지분		

○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는 경우 ①(환산가액 + 개산공제액)이 ②(자본적 지출액 + 양도비)보다 적은 경우에는 ②를 필요경비로 할 수 있음

다. 장기보유특별공제

(1) 제도의 개요

○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토지, 건물*, 조합원입주권** 양도시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차감하여 양도소득금액 계산

*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2012년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

** 관리처분계획인가전 양도차익에 한하여 적용(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경우 제외)

○ 미등기 양도자산 등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배제

-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경우 '22.5.10.~'25.5.9. 양도 시 한시 적용

(2) 제도의 취지

○ 양도소득의 결집효과(bunching effect)*를 방지하고 물가상승에 따른 세부담 증가를 조정

* 누진세율 체계하에서 장기간 누적된 소득이 일시에 과세되는 경우 세부담이 크게 증가하는 효과

(3) 제도의 연혁

○ 1975년 양도소득특별공제가 신설되었으며, 1989년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로 변경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음

(4) 공제율

○ 일반건물, 토지 : 연2%, 최대 30%(15년 보유)

○ 1세대 1주택 : 연8%(보유 4%, 거주 4%), 최대 80%(10년 보유 및 거주)

* '20.1.1. 이후 양도시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미거주시는 일반 공제율(15년, 최대 30%) 적용

(5) 장기일만민간임대주택,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 장기일만민간임대주택(민간매입임대주택의 경우 '20.12.31.까지)으로 등록하여 8년 이상 임대후 양도시 임대기간 중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50%, 10년 이상 임대 후 양도시 70%의 장특공제 적용(2020.7.11.이후 임대등록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단기민간임대주택을 2020.7.11.이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변경신고한 주택은 공제 제외)

○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6년 이상 임대후 양도시 일반공제율에 연도별 2%p 추가 공제(최대 40%)

<참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 연혁

❑ 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소법 §95②)

<table>
<tr><th rowspan="3">구 분</th><th colspan="2">2008.3.21.~
2008.12.31.</th><th colspan="2">2009.1.1.~
2011.12.31.</th><th colspan="2">2012.1.1.~
2018.12.31</th><th colspan="2">2019.1.1
이후 양도</th><th colspan="3">2021.1.1
이후 양도</th></tr>
<tr><th rowspan="2">적용대상
보유기간</th><th rowspan="2">토지·
건물</th><th rowspan="2">1세대
1주택</th><th rowspan="2">토지·
건물</th><th rowspan="2">1세대
1주택</th><th rowspan="2">토지·
건물·
다주택</th><th rowspan="2">1세대
1주택</th><th rowspan="2">토지·
건물·
다주택</th><th rowspan="2">1세대
1주택</th><th rowspan="2">토지·
건물·
다주택</th><th colspan="2">1세대1주택</th></tr>
<tr><th>보유기간</th><th>거주기간*</th></tr>
<tr><td>3년 이상</td><td>10%</td><td>12%</td><td>10%</td><td>24%</td><td>10%</td><td>24%</td><td>6%</td><td>24%</td><td>6%</td><td>12%</td><td>12%</td></tr>
<tr><td>4년 이상</td><td>12%</td><td>16%</td><td>12%</td><td>32%</td><td>12%</td><td>32%</td><td>8%</td><td>32%</td><td>8%</td><td>16%</td><td>16%</td></tr>
<tr><td>5년 이상</td><td>15%</td><td>20%</td><td>15%</td><td>40%</td><td>15%</td><td>40%</td><td>10%</td><td>40%</td><td>10%</td><td>20%</td><td>20%</td></tr>
<tr><td>6년 이상</td><td>18%</td><td>24%</td><td>18%</td><td>48%</td><td>18%</td><td>48%</td><td>12%</td><td>48%</td><td>12%</td><td>24%</td><td>24%</td></tr>
<tr><td>7년 이상</td><td>21%</td><td>28%</td><td>21%</td><td>56%</td><td>21%</td><td>56%</td><td>14%</td><td>56%</td><td>14%</td><td>28%</td><td>28%</td></tr>
<tr><td>8년 이상</td><td>24%</td><td>32%</td><td>24%</td><td>64%</td><td>24%</td><td>64%</td><td>16%</td><td>64%</td><td>16%</td><td>32%</td><td>32%</td></tr>
<tr><td>9년 이상</td><td>27%</td><td>36%</td><td>27%</td><td>72%</td><td>27%</td><td>72%</td><td>18%</td><td>72%</td><td>18%</td><td>36%</td><td>36%</td></tr>
<tr><td>10년 이상</td><td>30%</td><td>40%</td><td>30%</td><td>80%</td><td>30%</td><td>80%</td><td>20%</td><td>80%</td><td>20%</td><td>40%</td><td>40%</td></tr>
<tr><td>11년 이상</td><td rowspan="10"></td><td>44%</td><td rowspan="10"></td><td rowspan="10"></td><td colspan="2" rowspan="10">※ '12.1.1.~: 2주택 이상인 경우도 포함

※ 비사업용토지
• '15.12.31.까지 배제
• '16.1.1.부터는 장특공 인정 (보유기간 기산일 '16.12.31.까지는 '16.1.1. / '17.1.1.부터는 취득일)

※ '18.4.1.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3주택 중과적용 대상자 장특공제 배제</td><td>22%</td><td rowspan="10">•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한 주택 ('20.1.1이후 양도분 부터)</td><td>22%</td><td colspan="2" rowspan="10"></td></tr>
<tr><td>12년 이상</td><td>48%</td><td>24%</td><td>24%</td></tr>
<tr><td>13년 이상</td><td>52%</td><td>26%</td><td>26%</td></tr>
<tr><td>14년 이상</td><td>56%</td><td>28%</td><td>28%</td></tr>
<tr><td>15년 이상</td><td>60%</td><td>30%</td><td>30%</td></tr>
<tr><td>16년 이상</td><td>64%</td></tr>
<tr><td>17년 이상</td><td>68%</td></tr>
<tr><td>18년 이상</td><td>72%</td></tr>
<tr><td>19년 이상</td><td>76%</td></tr>
<tr><td>20년 이상</td><td>80%</td></tr>
</table>

* 거주기간 2년 이상 3년 미만(보유기간 3년 이상에 한정함): 8%

❑ 임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특례

- 거주자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민간매입임대주택의 경우 '20.12.31.까지) 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10(8)년 이상 임대 후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임대기간 중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70%(50%) 적용(조특법 §97의3, '14.1.1이후 양도분부터, 2020.7.11.이후 임대등록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단기민간임대주택을 2020.7.11.이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변경신고한 주택은 공제 제외)
-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민간건설임대주택, 민간매입임대주택, 공공건설임대주택, 공공매입임대주택을 6년 이상 임대 후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임대기간에 따라 매년 2% 추가공제(조특법 §97의4, '14.1.1. 양도 분부터)

라. 양도소득기본공제

구 분	1995. 12. 31 이전	1996. 1. 1 이후
적용대상	· 2년이상 보유한 토지 · 건물등 · 기타자산	· 미등기 양도자산을 제외한 전체 자산 (양도소득공제를 기본공제로 전환)
공 제 액	연 150만원	연 250만원 *

주」 2001.1.1부터는 부동산 · 주식에 대해 각각 250만원 공제

12. 세 율

가.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소법 §104①1,2,3,4,8,10,④3,4,⑤,⑦)

<table>
<tr><th colspan="2">자 산</th><th colspan="2">구 분</th><th>'04.1.1~
'08.12.31</th><th>'09.1.1~
'09.3.15</th><th>'09.3.16~
'13.12.31</th><th>'14.1.1~
'17.12.31</th><th>'18.1.1~
'18.3.31</th><th>'18.4.1~
'21.5.31</th><th>'21.6.1~
'22.5.9</th><th>'22.5.10~</th></tr>
<tr><td rowspan="8">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td><td rowspan="3">보유
기간</td><td>1년 미만</td><td colspan="3">50%</td><td colspan="3">50%[1]
(40%)[2]</td><td colspan="2">50%[1]
(70%)[2]</td></tr>
<tr><td>2년 미만</td><td colspan="2">40%</td><td>40%</td><td colspan="3">40%[1]
(기본세율)[2]</td><td colspan="2">40%[1]
(60%)[2]</td></tr>
<tr><td>2년 이상</td><td colspan="7">기본세율</td></tr>
<tr><td colspan="2">분양권</td><td colspan="4">기본세율</td><td colspan="2">기본세율
(조정대상지역 내 50%)</td><td colspan="2">60%
(70%)[3]</td></tr>
<tr><td colspan="2">1세대 2주택 이상
(1주택 + 1조합원
입주권,
1주택+1분양권
포함)인
경우의 주택</td><td>기본세율
('07~'08,
50%)</td><td colspan="3">기본세율
(2년 미만 단기 양도시
해당 단기 양도세율 적용)</td><td>보유기간별
세율
(조정대상
지역은
+10%p)</td><td>보유기간별
세율
(조정대상
지역은
+20%p)</td><td rowspan="2">기본세율[5]</td></tr>
<tr><td colspan="2">1세대 3주택 이상
(주택+조합원
입주권+분양권
합이
3이상 포함)인
경우의 주택</td><td>60%
(입주권
포함
3이상인
경우 '06년
부터 60%)</td><td>45%
(1년 미만
보유시
50%)</td><td colspan="2">보유기간별세율
(단, 지정지역
☞기본세율+10%p)</td><td>보유기간별
세율
(조정대상
지역은
+20%p)</td><td>보유기간별
세율
(조정대상
지역은
+30%p)</td></tr>
<tr><td colspan="2">비사업용 토지</td><td colspan="2">'07년부터 60%</td><td colspan="5">보유기간별세율
(단, 지정지역 ☞기본세율+ 10%p)[4]</td></tr>
<tr><td colspan="2">미등기양도자산</td><td colspan="7">70%</td></tr>
<tr><td colspan="2">기타자산</td><td colspan="7">보유기간에 관계없이 기본세율</td></tr>
</table>

[1]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각각의 산출세액 중 큰 것

[2] 주택(이에 딸린 토지 포함) 및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3]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4] '16.1.1. 이후('15.12.31.까지 지정지역은+10%) 모든 지역의 비사업용 토지
☞ 비사업용 토지 세율(기본세율 + 10%p, 소법§104①8)

[5] 보유기간 2년 이상인 조정대상지역 內 주택을 '22.5.10일부터 '25.5.9일까지 양도 시 기본세율 적용
☞ 비사업용 토지 세율(기본세율 + 10%p, 소법§104①8,)

나. ’21.6.1. 이후 양도분 다주택자 중과 및 비사업용 토지 세율적용 상세내용 (소법 §104①,④,⑦)

구 분			보유기간	세 율	비 고
주택 (입주권·분양권 포함)	2주택	조정대상지역	1년 미만	70%	中 큰 세액
				기본세율+20%p	
			2년미만	60%	中 큰 세액
				기본세율+20%p	
		일반지역	1년 미만	70%	(경합없음)
			2년 미만	60%	
	3주택	조정대상지역	1년미만	70%	中 큰 세액
				기본세율+30%p	
			2년미만	60%	中 큰 세액
				기본세율+30%p	
		일반지역	1년 미만	70%	(경합없음)
			2년 미만	60%	
비사업용 토지		지정지역 (’18.1.1.이후 양도분)	1년 미만	50%	中 큰 세액
				비사토세율+10%p	
			2년 미만	40%	中 큰 세액
				비사토세율+10%p	
		일반지역	1년 미만	50%	(경합없음)
			2년 미만	40%	

* 보유기간 2년 이상인 조정대상지역 內 주택을 ’22.5.10일부터 ’25.5.9일까지 양도 시 기본세율 적용

다. 비사업용 토지 과다소유법인 주식(소법 §104①9, 소령 §167의7)

양도시기	세 율
2007.1.1. ~ 2009.3.15.	60%
2009.3.16. ~ 2015.12.31.	기본세율
2016.1.1. 이후1)	기본세율 + 10%p

라. 주식(소법 §104①11)

<table>
<tr><th colspan="3">구 분</th><th>~
'15.12.31.</th><th>'16.1.1.~
'17.12.31.</th><th>'18.1.1.~</th></tr>
<tr><td rowspan="3">대주주</td><td>중소기업</td><td>상장·비상장</td><td>10%</td><td rowspan="2">20%</td><td rowspan="2"><table><tr><th>과세
표준</th><th>세율</th><th>누진공제</th></tr><tr><td>3억 이하</td><td>20%</td><td>-</td></tr><tr><td>3억 초과</td><td>25%</td><td>1천5백만원</td></tr></table> 1)</td></tr>
<tr><td>중소기업 외</td><td>상장·비상장</td><td>20%</td></tr>
<tr><td colspan="2">1년 미만 보유</td><td colspan="3">30%</td></tr>
<tr><td rowspan="2">대주주 외</td><td>중소기업</td><td>상장&장외거래
비상장</td><td colspan="3">10%</td></tr>
<tr><td>중소기업 외</td><td>상장&장외거래
비상장</td><td colspan="3">20%</td></tr>
</table>

※ 증권예탁증권(DR : Depositary Receipts)은 '11.1.1. 이후 양도 분부터 과세

* 중소기업의 대주주 주식을 '16.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는 20%

1) 중소기업의 대주주 주식 과세표준 3억원 초과분 25%세율 적용 시기를 1년 유예하여 '20.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마. 파생상품등(소법 §104①12, 소령 §159의2, §167의9, 소규칙 §76의2)

과세시기	과세대상	세 율	비 고
2016.1.1.이후 양도분	코스피200선물·옵션	20% (탄력세율 5% →10%[1])	장내파생상품
	해외파생상품		장외파생상품 일부포함
2016.7.1.이후 양도분	미니코스피 200 선물·옵션		장내파생상품
2017.4.1.이후 양도분	코스피200 주식워런트증권		파생결합증권
2019.4.1.이후 양도분	코스닥150선물·옵션 KRX300선물,섹터지수 선물 배당지수 선물 코스피200변동성지수선물 코스피150 주식워런트증권		국내 장내파생상품 (모든 주가지수 관련 파생상품)
	주가지수 관련 장외파생상품[2]		장외파생상품
2021.4.1.이후 양도분	차액결제거래	20% (탄력세율10%)	

1) 2018.4.1. 양도분부터 탄력세율 10% 적용

2) 주가지수 관련 국내 장내파생상품과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상품에 한함

바. 기본세율(소법 §104①1, §55①)

'14년 ~'16년			'17.1.1~			'18.1.1~			'21.1.1~			'23.1.1~		
과표	세율	누진공제	과표	세율	누진공제	과표	세율	누진공제	과표	세율	누진공제	과표	세율	누진공제
1,200만원이하	6%	-	1,200만원이하	6%	-	1,200만원이하	6%	-	1,200만원이하	6%	-	1,400만원이하	6%	-
4,600만원이하	15%	108만원	4,600만원이하	15%	108만원	4,600만원이하	15%	108만원	4,600만원이하	15%	108만원	5,000만원이하	15%	126만원
8,800만원이하	24%	522만원	8,800만원이하	24%	522만원	8,800만원이하	24%	522만원	8,800만원이하	24%	522만원	8,800만원이하	24%	576만원
1.5억원이하	35%	1,490만원	1.5억원이하	35%	1,490만원	1.5억원이하	35%	1,490만원	1.5억원이하	35%	1,490만원	1.5억원이하	35%	1,544만원
1.5억원초과	38%	1,940만원	5억원이하	38%	1,940만원	3억원이하	38%	1,940만원	3억원이하	38%	1,940만원	3억원이하	38%	1,994만원
			5억원초과	40%	2,940만원	5억원이하	40%	2,540만원	5억원이하	40%	2,540만원	5억원이하	40%	2,594만원
						5억원초과	42%	3,540만원	5억원초과	42%	3,540만원	5억원초과	42%	3,594만원
									10억원초과	45%	6,540만원	10억원초과	45%	6,594만원

사. 비사업용 토지 세율(소법 §104①8)

'16.1.1.~			'17.1.1.~			'18.1.1.~			'21.1.1.~			'23.1.1.~		
과표	세율	누진공제	과표	세율	누진공제	과표	세율	누진공제	과표	세율	누진공제	과표	세율	누진공제
1,200만원 이하	16%	-	1,200만원 이하	16%	-	1,200만원 이하	16%	-	1,200만원 이하	16%	-	1,400만원 이하	16%	-
4,600만원 이하	25%	108만원	4,600만원 이하	25%	108만원	4,600만원 이하	25%	108만원	4,600만원 이하	25%	108만원	5,000만원 이하	25%	126만원
8,800만원 이하	34%	522만원	8,800만원 이하	34%	522만원	8,800만원 이하	34%	522만원	8,800만원 이하	34%	522만원	8,800만원 이하	34%	576만원
1.5억원 이하	45%	1,490만원	1.5억원 이하	45%	1,490만원	1.5억원 이하	45%	1,490만원	1.5억원 이하	45%	1,490만원	1.5억원 이하	45%	1,544만원
1.5억원 초과	48%	1,940만원	5 억원 이하	48%	1,940만원	3 억원 이하	48%	1,940만원	3 억원 이하	48%	1,940만원	3 억원 이하	48%	1,944만원
			5 억원 초과	50%	2,940만원	5 억원 이하	50%	2,540만원	5 억원 이하	50%	2,540만원	5 억원 이하	50%	2,594만원
						5억원 초과	52%	3,540만원	10억원 이하	52%	3,540만원	10억원 이하	52%	3,594만원
									10억원 초과	55%	6,540만원	10억원 초과	55%	5,594만원

13. 신고납부

가. 예정신고납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이 되는 날까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고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을 차감한 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국내 주식 거래시 주식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신고하여야 함

나. 확정신고납부

과세기간 중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연도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고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을 차감한 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예정신고를 이행한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으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자산의 예정신고를 2회 이상 이행한 경우 등에는 확정신고를 하여야 함

14. 분납 및 물납

가. 분납 : 납부기한 경과후 2개월 이내

- ㅇ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ㅇ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초과 : 그 세액의 50%이하의 금액

나. 물납

- ㅇ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공공사업시행자가 발행한 공공용지보상채권으로 물납('16.1.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물납제도 폐지. 다만, '15.12.31일 이전에 양도되거나 수용된 토지 등은 종전규정 적용)

15. 기 타

가. 양도소득세의 신고납세제도로의 전환

양도소득세제의 기본 틀을 종전 정부부과과세제도에서 신고납세제도로 전환하여 2000.1.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토록 함.

나. 비상장주식 고가 양도 시 양도세 및 증여세 이중과세 조정

양도주식의 시가상당액을 양도가액으로 간주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시가초과분을 양도자의 상여·배당 등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과세

다. 재외국민·외국인의 부동산양도신고제도

재외국민과 외국인이 자산을 양도하고 그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하여 등기관서의 장에게 2020.7.1. 이후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 제출 필요

16. 지정지역

전국 부동산가격상승률 및 소비자물가상승률 등을 감안,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

※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구성

-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2인
- 위원장은 기획재정부 차관, 부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차관
- 위원은 관계부처 차관급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과, 경제 및 부동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② 운영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가. 지정요건

(1) 기본요건

□ 「주택 및 그 부속토지」(매월별)⇒①과 ②(개발사업등이 진행중인 지역 ①과 ③), 대규모개발사업지역 ④ 요건 모두 충족

① 직전월 주택매매가격상승률 > 직전월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130%

② ㉠ 또는 ㉡ 중 하나 이상 충족

㉠ 직전 2개월 월평균 주택매매가격상승률 > 직전 2개월 월평균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130%

㉡ 직전월 이전 1년간 주택매매가격상승률 > 직전월 이전 3년간 연평균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

③ 직전월 주택매매가격상승률 > 직전월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130%

④ 직전월 주택매매가격상승률 > 소비자물가상승률

□ 「주택 및 그 부속토지 이외의 부동산」(매월별)⇒①과 ②(대규모개발사업지역③) 요건 모두 충족

① 직전월 지가상승률 > 직전월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130%

② ㉠ 또는 ㉡ 중 하나 이상 충족

㉠ 직전2개월 지가상승률 > 직전2개월 전국지가상승률×130%

㉡ 직전월 이전 1년간 지가상승률 > 직전월 이전 3년간 연평균 전국지가상승률

③ 직전월 지가상승률 > 소비자물가상승률

(2) 추가요건

기본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전국부동산가격동향 및 당해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상승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거나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에서 지정

나. 지정지역 과세방법

투기지역 내의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10%p 추가과세

다. 지정지역 지정(해제)현황

○ ’17.8.3. 서울 용산구·성동구·노원구·마포구·양천구·강서구·영등포구·서초구·강남구·송파구·강동구 및 세종특별자치시(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예정지역)를 투기지역으로 지정

○ ’18.8.28. 서울 종로구·중구·동대문구·동작구를 투기지역으로 추가 지정

○ ’22.9.26. 세종특별자치시 투기지역 해제

○ ’23.1.5. 서울 성동구·노원구·마포구·양천구·강서구·영등포구·강동구·종로구·중구·동대문구·동작구 투기지역 해제

※ ’23.1.5.현재 지정지역 현황: 서울 강남구·서초구·송파구·용산구

17. 국외자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가. 납세의무자

당해 국외자산 양도일까지 국내에 5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에 한하여 국외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며, 비거주자 등이 국내에 5년 미만 거주하면서 국내외투자기업 등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제외

나. 과세대상

국내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과 대체로 동일

다. 양도가액

○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함

○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자산이 소재하는 국가의 양도당시의 현황을 반영한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당해 자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참작하여 정하는 방법에 의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마. 시가 산정”에서 확인

라. 필요경비

○ 취득가액

- 실지거래가액을 확인 할 수 있는 경우 국내자산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준용
- 실지거래가액을 확인 할 수 없는 경우는 “마. 시가 산정”에서 확인

○ 자본적지출액·양도비는 국내자산의 산정방법을 준용

마. 시가산정

○ 시가의제

국외자산의 시가를 산정하는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가액이 확인되는 되는 때에는 이를 당해 자산의 시가로 하는 것이지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2 제2항에 의한 주식 등과 동조의 제3항에 의한 자산 중 특정시설물 이용권 및 과점주주의 주식 등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 등(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제5호 자산)의 경우에는②-④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①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외국정부의 평가가액
② 국외자산의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6월 이내에 이루어진 실지거래가액
③ 국외자산의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6월 이내에 평가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
④ 국외자산의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6월 이내에 수용 등을 통하여 확정된 국외자산의 보상가액

○ 시가의 보충적 평가방법

양도·취득당시의 시가를 산정하지 어려운 때에는 다음 규정에 의하여 시가를 평가

①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62조·제64조·제65조를 준용하여 국외자산가액을 평가.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62조·제64조·제65조를 준용하여 국외자산가액을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하는 것을 말함
② 유가증권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의 평가방법을 준용

바. 외화환산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잇어서는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를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

사.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

아. 세율 : 국내자산과 동일하게 적용

자. 외국납부세액 공제

○ 국외에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그 부가세액을 포함)에 대하여는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을 공제받거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음

○ 국외자산양도소득세액의 범위는

- 개인의 양도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 개인이 양도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부가세액

○ 공제신청은 국외자산양도소득세액공제 신청서를 신고기한 내에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차. 기타 준용 규정

국외자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과세에 관하여는 상기 외의 조문은 국내자산의 양도에 적용되는 조항을 준용하여 적용. 단, 2012.1.1.이후 양도하는 국외자산 중 주식등의 경우는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납부, 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에서 제외

18. 법인의 주택·비사업용 토지 양도에 대한 추가과세제도

가. 과세대상

국내 소재 주택 및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

나. 과세표준

양도금액 - 장부가액

다. 세율

법인세율 + 20%p* (미등기 양도 40%)

* 중소기업은 '15년 일반세율(10~22%) 과세, '16년부터 10%p 추가과세

라. 추가과세 배제 대상

(1) 다음에 해당하는 토지·건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하나, 미등기양도 토지등은 과세
- 파산선고에 의한 토지등의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법인이 직접 경작하던 농지로서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도시개발법 그밖의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3) 요건을 갖춘 분할, 요건을 갖춘 현물출자, 조직변경 및 요건을 갖춘 교환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4) 한국토지공사가 토지개발사업으로 조성한 토지 중 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5)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건설임대주택 분양 또는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포함)하는 법인이 그 주택 및 부수토지로서 그 면적이 다음의 면적 중 넓은 면적 이내의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 주택의 연면적(지하층 면적, 지상층 주차장 면적, 주민공동시설 면적 제외)
-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5배(도시지역 밖은 10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

(6) 그 밖에 공공목적을 위한 양도 등 시행규칙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마. 양도차손익의 통산 및 이월공제 배제

과세기간중에 토지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손익은 통산하되, 동 제도의 도입취지를 감안하여 통산결과 차손이 발생한 경우 소급공제 및 이월공제를 배제

바. 양도소득의 귀속사업연도

(1) 원칙 :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준용

(2) 장기할부조건에 의한 양도 : 양도일에 전액 양도소득을 인식

(3) 예약매출에 의한 양도 : 계약일에 양도된 것으로 보아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중에서 과세기간에 해당되는 기간에 상응하는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하여 양도소득을 계산

사. 적용시기

(1) '09.3.16부터 '12.12.31까지 취득하거나 양도하는 부동산에 대한 추가과세(30%, 미등기40%)는 적용하지 아니하고 다만, 법인이 투기지역내 주택 및 비사업용 토지 양도시 10%의 세율로 산출한 세액을 법인세에 추가하여 과세하였으나 동 사항은 일몰이 종료(2012.12.31.까지 적용)

(2) '13.1.1부터 '13.12.31까지 법인이 주택 및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30%의 세율로 산출한 세액을 법인세에 추가하여 과세

(3) 2014년 1월 1일부터 법인이 주택 및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10%의 세율로 산출한 세액을 법인세에 추가하여 과세. 다만, 중소기업은 '15년까지 추가과세 없이 일반세율(10~22%)로 과세하고 '16년부터 10%의 세율로 산출한 세액을 법인세에 추가하여 과세

5. 상속세 및 증여세제

1. 과세체계 / 167
2. 세　율 / 176
3. 재산의 평가 / 176
4. 신고납부와 결정 / 180
5.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 / 182
6. 가업상속공제 제도 / 184
7. 공익법인 제도 / 185

작성자 : 재산세제과장 박지훈

1. 과세체계

가. 상속세

(1) 상속세 과세대상

구 분	상속세 과세대상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거주자의 국내·국외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
비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비거주자의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

주」거주자 :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자

(2) 상속세 납세의무자

○ 상속인(상속포기자 및 특별연고자 포함)·수유자(사인증여의 수증자 포함)

-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 다만, 특별연고자 또는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를 면제하되, 그 영리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중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그 상속인 및 직계비속이 납부할 의무가 있음

{영리법인이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상당액 - (영리법인이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 × 10 ÷ 100)} ×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비율

○ 상속인별 또는 수유자별 상속세 부담비율

$$\text{상속세의 부담비율} = \frac{\text{상속인별 또는 수유자별 상속세 과세표준 상당액}}{\text{상속세 과세표준} - \text{가산한 증여재산 중 상속인·수유자가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

○ 상속인 등의 연대납세의무

-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사전증여재산 포함)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짐

(3) 상속재산의 범위

○ 본래의 상속재산 :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사실상의 모든 권리

○ 간주상속재산 : 상속재산으로 간주하는 것으로서 보험금, 신탁재산, 퇴직금등

○ 추정상속재산 : 상속개시일 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 또는 부담한 채무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것

- 상속개시일 전 재산종류별(① 현금·예금 및 유가증권, ②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③ 기타자산)로 1년 이내 2억원 이상, 2년 이내 5억원 이상인 경우
- 상속추정 배제 :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액, 인출액, 채무부담액으로서 그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이 다음 금액 중 작은 금액에 미달시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함

①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액, 인출액, 채무부담액의 20% ② 2억원

(4) 과세제외 재산

○ 비과세 재산

-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에 유증 등을 한 재산
- 국가지정문화재, 시·도지정문화재와 해당 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가 속한 보호구역내 토지
- 분묘에 속한 금양임야(9,900 m^2이내), 분묘에 속한 묘토인 농지(1,980 m^2 이내), 족보 및 제구. 단, 금양임야 및 묘토는 2억원을 한도로 하고, 족보와 제구는 1천만원을 한도로 함

○ 과세가액불산입 재산 :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한 재산 또는 공익신탁재산

(5) 공과금 등

○ 공과금 : 상속인에게 승계된 피상속인의 조세·공공요금 등

○ 장례비용 : 총한도액 15백만원(①+②)

① 상속개시일부터 장례일까지 직접 소요된 장례비용(5백만원 미만인 경우 5백만원,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천만원)

② 봉안시설(자연장지 포함) 사용비용(공제한도액 5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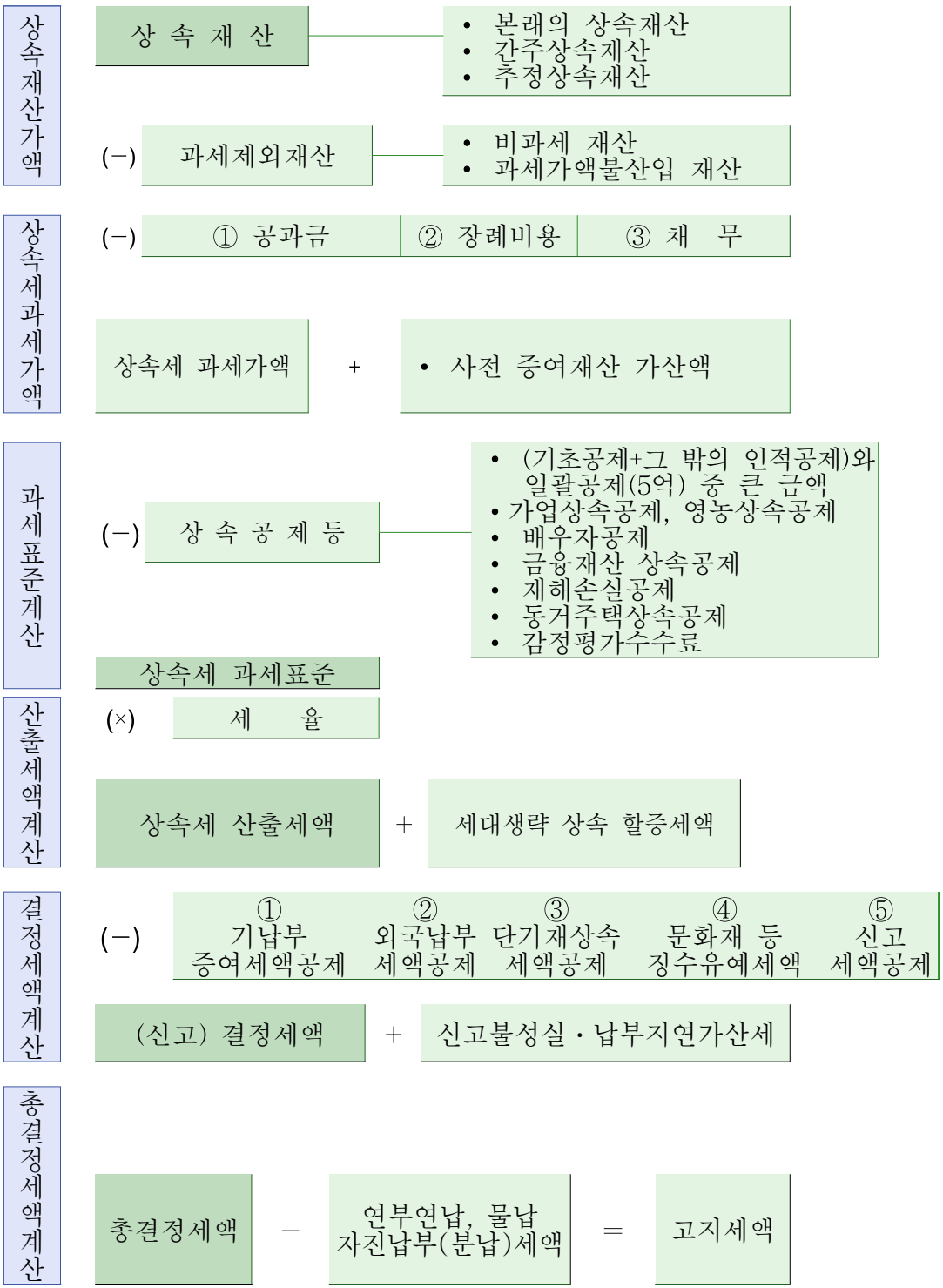
○ 채무 : 국가·지방자치단체·금융기관 등에 대한 채무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부담할 것으로 확정된 것

(6) 상속공제

구 분	항 목		공 제 내 용	한 도
기초공제			2억원	
인적공제	배우자공제		법정상속지분내 실제상속받은 가액	최소 5억, 30억한도
	그 밖의 인적공제	자녀공제	1인당 5,000만원	
		미성년자공제	1,000만원×19세까지의 잔여연수	
		연로자공제	1인당 5,000만원	
		장애자공제	1,000만원×기대여명의 연수* * 통계청장이 고시	
일괄공제			Max[5억원, (기초공제 2억원 + 그 밖의 인적공제)]	
가업상속공제			가업상속재산가액 (300억원~600억원 한도)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 (10년 이상 300억원 20년이상 400억원 30년이상 600억원)
영농상속공제			영농상속재산가액	30억원
금융재산 공 제	순금융재산가액이 - 2,000만원이하 - 2,000만원~1억원 - 1억원초과		순금융재산=(금융재산-금융부채) 전액 2,000만원 순금융재산가액×20%	2억원
재해손실 공 제	신고기한이내에 화재·폭발·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상속재산이 멸실·훼손된 경우 당해 손실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	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 및 민법 제1003조 제2항에 따라 상속인이 된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하고 1세대 1주택자인 경우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가액(담보된 채무 차감)의 100%를 6억원 한도내에서 공제 *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			

주」 기초공제+인적공제(배우자공제는 제외)와 일괄공제 중 선택

(7) 상속세 과세체계


상속재산가액
상 속 재 산
• 본래의 상속재산
• 간주상속재산
• 추정상속재산
(-) 과세제외재산
• 비과세 재산
• 과세가액불산입 재산
상속세과세가액
(-) ① 공과금 ② 장례비용 ③ 채 무
상속세 과세가액 + • 사전 증여재산 가산액
과세표준계산
(-) 상 속 공 제 등
• (기초공제+그 밖의 인적공제)와 일괄공제(5억) 중 큰 금액
• 가업상속공제, 영농상속공제
• 배우자공제
• 금융재산 상속공제
• 재해손실공제
• 동거주택상속공제
• 감정평가수수료
상속세 과세표준
산출세액계산
(×) 세 율
상속세 산출세액 + 세대생략 상속 할증세액
결정세액계산
(-) ① 기납부 증여세액공제 ② 외국납부 세액공제 ③ 단기재상속 세액공제 ④ 문화재 등 징수유예세액 ⑤ 신고 세액공제
(신고) 결정세액 + 신고불성실·납부지연가산세
총결정세액계산
총결정세액 - 연부연납, 물납 자진납부(분납)세액 = 고지세액

나. 증여세

(1) 증여세 과세대상

구 분	증여세 과세대상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주」거주자 :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자

(2) 증여세 납세의무자

○ 본래의 납세의무자 : 수증자

○ 증여자의 연대납부의무 : 증여자는 수증자가 다음 어느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해 연대하여 납부의무를 진다.

-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로서 조세채권 확보가 곤란한 경우
-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강제징수를 하여도 조세채권 확보가 곤란한 경우
- 비거주자인 경우

(3) 증여재산의 범위

○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사실상의 모든 권리 및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에 증여세 과세

① 일반적 증여예시

- 신탁이익의 증여

· 신탁계약에 따라 위탁자가 타인을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로 지정하는 경우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가액을 수익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함

- 보험금의 증여

·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다른 경우 보험금상당액을 보험금수취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함

- 고·저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특수관계자간 고·저가 양도

구분	수증자	과세요건	증여재산가액
저가 양수	양수자	(시가-대가)가 시가의 30%이상 또는 3억원이상	(시가-대가) - MIN(시가×30%, 3억원)
고가 양도	양도자	(대가-시가)가 시가의 30%이상 또는 3억원이상	(대가-시가) - MIN(시가×30%, 3억원)

·특수관계자 외의 자간 고·저가 양도

구분	수증자	과세요건	증여재산가액
저가 양수	양수자	(시가-대가)가 시가의 30%이상	(시가-대가) -3억원
고가 양도	양도자	(대가-시가)가 시가의 30%이상	(대가-시가) -3억원

- 채무면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채권자로부터 채무의 면제를 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 그 면제·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함

- 부동산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특수관계자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 다음의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함

• 부동산무상사용이익 $= \sum_{n=1}^{5} \frac{\text{각 연도 부동산 무상사용이익}}{(1 + 10\%)^n}$

* 각 연도 부동산무상사용이익 = 부동산가액 × 연간 사용요율(2%)

- 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의 금액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1천만원 이상인 경우만 적용)

• 증여재산가액 = 대출금액 × 적정이자율 - 실제 지급한 이자상당액

② 자본거래관련 증여예시

- 합병시의 증여
- 증자시의 증여
 · 저가발행 실권주의 재배정·불배정
 · 고가발행 실권주의 재배정·불배정
 · 고·저가 발행 신주의 불균등배정
- 감자시의 증여
- 현물출자시 증여
- 전환사채 등에 대한 증여
 · 전환사채 등을 인수·취득함으로써 이익을 얻는 경우
 · 전환사채 등을 주식으로 전환하거나 양도함으로써 이익을 얻는 경우
- 초과배당시 증여
- 상장시 증여
- 합병에 따른 상장시 증여

③ 기타 증여

-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4) 증여추정

(가)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 증여추정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하는 경우 및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재산을 특수관계자가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경우 배우자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
- 다만, 양도한 사실이 명백한 경우는 제외

(나)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자금출처로 입증된 금액이 취득재산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해당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
-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가액의 20%와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는 제외

(5) 증여의제

-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 특수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일감떼어주기) 증여의제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6) 과세제외 재산

비과세재산

- 국가·지방자치단체로 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 민법상 부양의무자 상호간의 생활비, 교육비, 학자금 또는 부의금, 혼수용품 등

(7) 불산입재산

-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과 공익신탁을 통하여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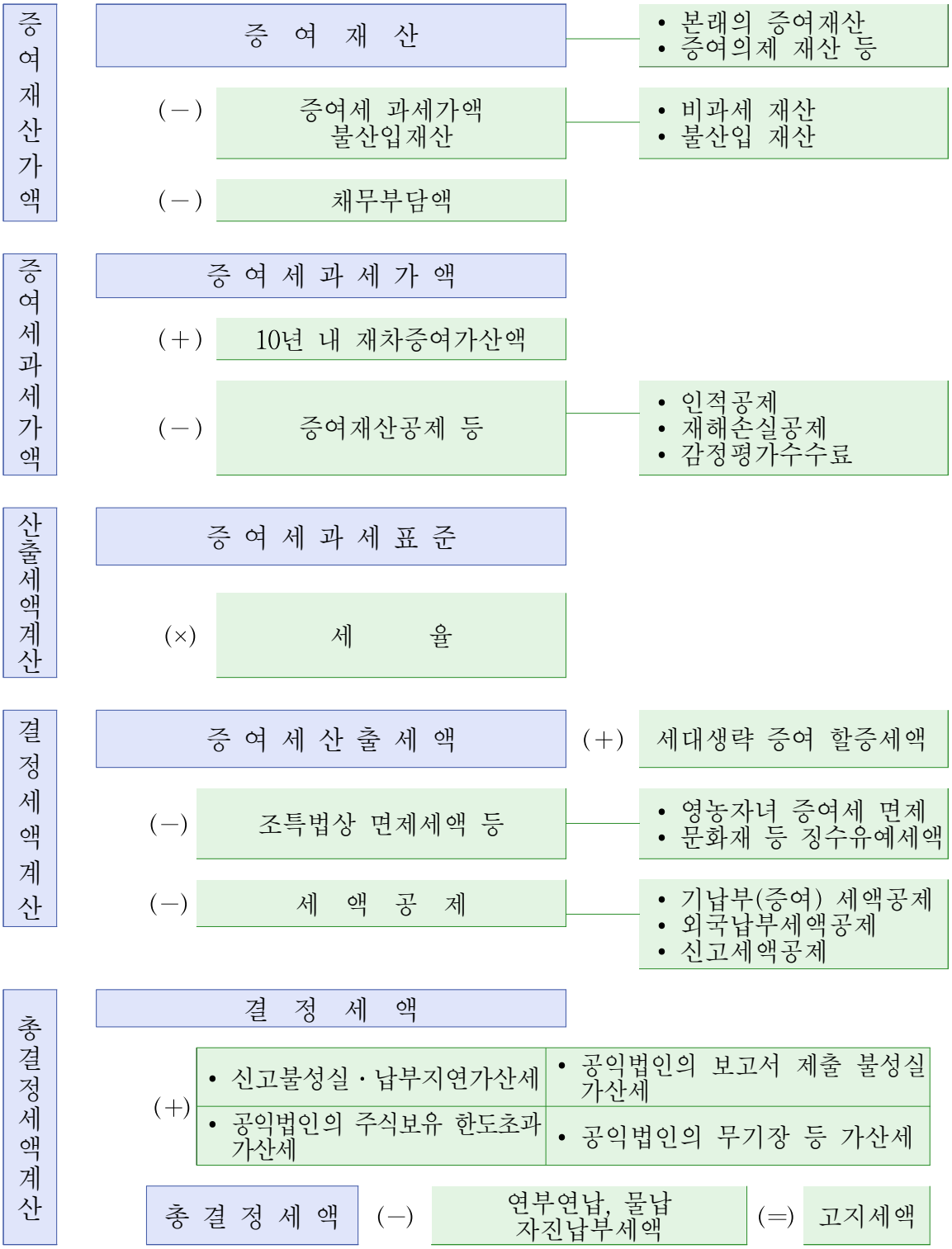
(8) 재차 증여재산 합산

○ 10년내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합산

(9) 증여재산공제

<table>
<tr><th>항 목</th><th colspan="2">공 제 내 용</th><th>비 고</th></tr>
<tr><td rowspan="4">친족공제</td><td>배우자로부터 증여</td><td>6억원</td><td rowspan="4">10년간
공제금액임</td></tr>
<tr><td>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td><td>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td></tr>
<tr><td>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td><td>5천만원</td></tr>
<tr><td>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으로부터 증여</td><td>1천만원</td></tr>
<tr><td>재해손실공제</td><td colspan="3">신고기한 이내에 화재·폭발·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증여재산이 멸실·훼손된 경우 당해 손실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td></tr>
<tr><td>혼인
증여재산공제</td><td>혼인신고일 전후 2년이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td><td>1억원</td><td rowspan="2">평생
통합한도
(혼인+출산)
1억원</td></tr>
<tr><td>출산
증여재산공제</td><td>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이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td><td>1억원</td></tr>
</table>

(10) 증여세 과세체계


증여재산가액
증 여 재 산
• 본래의 증여재산
• 증여의제 재산 등
(－)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재산
• 비과세 재산
• 불산입 재산
(－) 채무부담액
증여세과세가액
증 여 세 과 세 가 액
(＋) 10년 내 재차증여가산액
(－) 증여재산공제 등
• 인적공제
• 재해손실공제
• 감정평가수수료
산출세액계산
증 여 세 과 세 표 준
(×) 세 율
결정세액계산
증 여 세 산 출 세 액
(＋) 세대생략 증여 할증세액
(－) 조특법상 면제세액 등
• 영농자녀 증여세 면제
• 문화재 등 징수유예세액
(－) 세 액 공 제
• 기납부(증여) 세액공제
• 외국납부세액공제
• 신고세액공제
총결정세액계산
결 정 세 액
(＋)
• 신고불성실·납부지연가산세
• 공익법인의 보고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 공익법인의 주식보유 한도초과 가산세
• 공익법인의 무기장 등 가산세
총 결 정 세 액
(－) 연부연납, 물납 자진납부세액
(＝) 고지세액

2. 세 율

'96.12.31 이전		'97.1.1～'99.12.31	2000.1.1 이후
<상속세>		○ 과세구간 및 세율 단일화	
·5천만원 이하	10%	· 1억원 이하 10%	· 1억원 이하 10%
·2억5천만원 이하	20%	· 5억원 이하 20%	· 5억원 이하 20%
·5억5천만원 이하	30%	·10억원 이하 30%	·10억원 이하 30%
·5억5천만원 초과	40%	·50억원 이하 40%	·30억원 이하 40%
		·50억원 초과 45%	·30억원 초과 50%
<증여세>			
·2천만원 이하	10%		
·1억5천만원 이하	20%		
·3억원 이하	30%		
·3억원 초과	40%		

주」세대를 건너뛰어 조부가 손자에게 상속·증여시 30% 할증과세(손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로서 상속 또는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0% 할증)

3. 재산의 평가

가. 기본원칙

○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

○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임

○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증여일 전 6개월·후 3개월) 이내에 상속(증여) 재산의 매매·감정·수용·경매·공매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은 시가로 인정

-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내의 기간 중 또는 평가기간 경과 후 법정결정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시가로 인정 가능
- 다만, 유사재산의 경우에는 상속시일 개시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간 이내의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일까지 매매·감정·수용·경매·공매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은 시가로 인정

○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

나. 보충적 평가방법

○ 부동산 등

토 지		원칙 : 개별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평가
건 물 (오피스텔·상업용 건물 제외)		• 건물의 신축가격·구조·용도·위치·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고시한 가액
주 택	공동주택	•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한 공동주택가격 (다만, 국세청장이 결정·고시한 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
	개별주택	•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공시한 개별주택가격
지 상 권		• $\Sigma \frac{\text{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토지의 가액} \times 2\%}{(1 + 10\%)^n}$ * n : 해당 지상권의 잔존연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및 특정시설물 이용권		• 평가기준일까지 불입 금액 + 평가기준일 현재 프리미엄 * 다만, 특정시설물 이용권에 대해 국세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있는 경우는 당해 가액

○ 기타의 유형재산

시설물 및 구축물	• 재취득가액 - 설치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 감가상각비
선박·항공기·차량·기계장비 및 입목	• 처분할 경우 다시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 재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는 장부가액, 시가표준액을 순차로 적용
상품·제품·반제품·재공품·원재료 등	• 처분할 경우 다시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 다만 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는 장부가액
판매용이 아닌 서화·골동품	• MAX(2 이상의 감정가액의 평균액, 감정평가심의회에서 감정한 감정가액)

○ 주식 및 출자지분

상 장 주 식	• 평가기준일 전·후 2개월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
비 상 장 주 식	• 1주당 가액 = Max $\left(\frac{(1주당\ 순손익가치 \times 3) + (1주당\ 순자산가치 \times 2)}{5},\ 순자산가치의\ 80\%^{*}\right)$ - 1주당 순손익가치 = $\frac{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가중평균액}{10\%}$ ※ 유형자산 처분손익, 자산수증이익 등 일시적·우발적 요인인 경우 현금흐름할인법 등으로 산정한 미래 추정이익을 순손익액으로 사용가능 - 1주당 순자산가치 = $\frac{해당법인의\ 순자산가액(자산 - 부채)}{발행주식총수}$ *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2:3의 비율로 가중평균 *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경우 ① 청산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사업의 계속이 곤란한 경우 ② 사업개시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 휴·폐업 법인 ③ 법인의 자산총액 중 부동산등이 80%이상인 법인 ④ 법인의 자산총액 중 주식등이 차지하는 비율이 80%이상인 법인 ⑤ 정관상 잔여존속기한이 3년 이내인 법인 • 유사상장법인 비교평가법, 현금흐름할인법 등 기타 방법 적용 -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가중평균가액의 ± 30%의 범위 안의 가액인 경우에 한하며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

※ 최대주주 등의 보유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대하여는 일반적인 평가액에 다음의 금액을 가산

최대주주 등의 지분비율	일반기업	중소기업, 매출액 5천억원 미만 중견기업
할증률	20%	0%

○ 기타의 재산

<table>
<tr><td colspan="2">국·공채 및 사채</td><td>①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것 : MAX(㉠, ㉡)
㉠ 평가기준일 이전 2월간 최종시세가액 평균액
㉡ 평가기준일 이전 최근일의 최종시세가액
② 기타의 것
㉠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것 : 매입가액 + 미수이자
㉡ 기타의 것 : 처분예상금액</td></tr>
<tr><td colspan="2">대부금·외상매출금 및 받을 어음 등의 채권</td><td>① 일반적인 경우 : 원본가액 + 미수이자
② 원본의 회수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 :
각 연도에 회수할 금액(원본 + 이자상당액)을
적정할인율로 할인한 가액</td></tr>
<tr><td colspan="2">예금·저금·적금 등</td><td>• 평가기준일 현재의 예입총액 + 미수이자 - 원천징수액</td></tr>
<tr><td colspan="2">매입한 무체재산권</td><td>• 매입가액 - 매입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감가상각비</td></tr>
<tr><td rowspan="3">기타
무체재산권</td><td>영업권 등</td><td>• 초과이익금액을 평가기준일 이후의 영업권지속연수(원칙적으로 5년)를 감안하여 환산한 가격
$\bullet \sum \frac{\text{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times 50\% - \text{평가기준일 현재의 자기자본} \times 10\%}{(1 + 10\%)^n}$</td></tr>
<tr><td>특허권 등</td><td>• 각 연도의 보상금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의 합계액</td></tr>
<tr><td>광업권 등</td><td>• 평가기준일 이후의 채굴가능연수에 대해 평가기준일 전 3년간 평균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의 합계액</td></tr>
<tr><td rowspan="3">정기금</td><td>유기정기금</td><td>•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을 기준으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 다만, 1년분 정기금의 20배를 초과할 수 없음</td></tr>
<tr><td>무기정기금</td><td>• 1년분 정기금 × 20배</td></tr>
<tr><td>종신정기금</td><td>• 통계청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른 성별·연령별 기대여명의 연수까지의 기간 중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을 기준으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td></tr>
</table>

4. 신고납부와 결정

가. 신고납부기한

○ 상속세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

○ 증여세 :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나. 세액공제

○ 상속세

- 증여세액공제 :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
- 외국납부세액공제 : 외국소재 상속재산에 대하여 외국에서 상속세를 부과받은 경우에는 부담세액 공제
- 단기재상속세액공제 : 상속개시 후 10년이내에 상속인의 사망으로 재상속시 먼저 부담한 세액공제

 · 재상속시 공제율 : 1년내 100%, 매 1년씩 10% 체감

재상속기간	공제율	재상속기간	공제율
1년 이내	100%	6년 이내	50%
2년 이내	90%	7년 이내	40%
3년 이내	80%	8년 이내	30%
4년 이내	70%	9년 이내	20%
5년 이내	60%	10년 이내	10%

- 문화재자료 등 징수유예세액 : 상속재산에 문화재자료 및 국가등록문화재 또는 박물관자료가 포함된 경우
- 신고세액공제 : 상속증여세를 자진신고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3%를 공제

○ 증여세

- 증여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문화재자료 등 징수유예, 신고세액공제 : 상속세와 동일

다. 분납·연부연납·물납

○ 분납 :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의 금액을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이내에 분납 가능

- 2천만원 이하인 경우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납부할 세액의 50%이하의 금액

○ 연부연납

- 개요 : 상속세 및 증여세는 일시납부가 원칙이나 특정한 요건 충족시 납부기한을 연장하여 납세부담을 이연
- 신청요건 : ①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세액 2천만원 초과, ②기한 이내에 납세의무자 신청, ③납세의무자의 담보 제공
- 연부연납기간

세목		연부연납기간
증여세	일반 재산	허가받은 날부터 5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재산	허가받은 날부터 15년
상속세	일반 재산	허가받은 날부터 10년
	가업상속재산 (사립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 포함)	20년 또는 연부연납 허가 후 10년이 되는 날부터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납세의무자가 신청한 기간

○ 물납

- 요건 :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상속재산의 1/2을 초과하고,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고, 상속받은 금융재산이 상속세 납부세액에 미달하는 경우(2016.1.1. 이후부터 증여세 물납 불가)
- 물납충당순위 : ①국채 및 공채 ②상장 유가증권(①제외) ③국내소재 부동산(⑥제외) ④주권,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증권 등(①,②,⑤제외), ⑤비상장 유가증권 ⑥상속인 거주주택과 부수토지

라. 금융재산 일괄조회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결정·경정하기 위하여 조사하는 경우 국세청장은 금융기관의 장에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금융거래의 비밀 보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 상속인·피상속인 또는 증여자·수증자의 금융재산에 관한 자료를 일괄하여 조회할 수 있음

마. 가산세

○ 무신고 가산세 = 상속세산출세액 × $\frac{\text{무신고 과세표준}}{\text{결정한 과세표준}}$ × 20%(부정 무신고 40%)

○ 과소신고 가산세 = 상속세산출세액 × $\frac{\text{과소신고 과세표준}}{\text{결정한 과세표준}}$ × 10%(부정 과소신고 40%)

○ 납부지연가산세 :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10만분의22

5. 일감몰아주기 과세 제도

가. 일감몰아주기 개념

○ 기업집단 소속 계열사끼리 일감을 몰아주어 수혜를 얻은 기업의 가치를 단기간내 급등시키고 그 결과 일부 주주에게 세금부담 없이 부를 대물림하는 행위를 의미

○ 특수관계법인간 일감몰아주기를 통해 특정인의 부를 변칙적으로 키워주는 행위에 대해 증여로 의제하여 과세

나. 증여의제이익 계산(① + ②)

○ (대기업)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 × (특수관계법인 매출액 비중 - 5%) × (지배주주등의 지분비율)

○ (중견기업)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 × (특수관계법인 매출액 비중 - 20%) × (지배주주등의 지분비율 - 5%)

○ (중소기업)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 × (특수관계법인 매출액 비중 - 50%) × (지배주주등의 지분비율 - 10%)

다. 증여의제 시기

○ 증여의제이익의 계산은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단위로 하고, 수혜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을 증여시기로 봄

라. 과세제외 매출액

○ 중소기업인 수혜법인과 중소기업인 특수관계법인 간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매출액 등은 과세제외 매출액으로 함

※ 과세제외 매출액(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3 ⑧)

① 중소기업인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② 수혜법인이 본인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③ 수혜법인이 본인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에 그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수혜법인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

④ 수혜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의2에 따른 지주회사인 경우로서 수혜법인의 같은 법 제2조 제1호의3에 따른 자회사 및 같은 법 제2조 제1호의4에 따른 손자회사(증손회사 포함)와 거래한 매출액

⑤ 수혜법인이 제품·상품의 수출(「부가가치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수출을 말한다)을 목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⑤의2 수혜법인이 용역을 국외에서 공급(「부가가치세법」제22조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용역의 공급을 말한다)할 목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⑤의3 수혜법인이 「부가가치세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다목 또는 바목에 따른 용역의 공급(해당 용역을 공급받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공급받은 용역과 동일한 용역을 다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공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⑥ 수혜법인이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⑦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스포츠 클럽 운영업 중 프로스포츠구단 운영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광고 매출액

⑧ 수혜법인이 국가·지차체 등이 운영하는 사업에 참여함에 따라 공공기금과 수혜법인이 공동(공공기금이 50% 이상)으로 출자한 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마. 신고납부기한

○ 수혜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

6. 가업상속공제 제도

가. 개요

○ 중소·중견기업의 장기간 축적된 기술·경영 노하우의 안정적 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일정 요건에 해당되는 가업을 상속한 경우 가업상속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최대 600억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제도

나. 대상

○ 중소기업 및 매출액 5,000억원 미만의 중견기업

다. 공제금액

○ 가업상속재산의 100%를 공제('14년부터 70%에서 100%로 확대)

* 공제한도 :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가업 : 300억원
 20년 이상 경영한 가업 : 400억원
 30년 이상 경영한 가업 : 600억원

라. 피상속인 요건

○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해야 하며, 가업의 영위기간 중 50% 이상 또는 10년 이상 또는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을 대표이사로 재직해야 함

○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 등을 합하여 비상장기업은 40%, 상장기업은 2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

마. 상속인 요건

○ 공동상속 허용

* 가업이 2개 이상의 기업인 경우 기업별 상속 허용
* 1개 기업을 공동상속한 경우에도 대표이사(대표자) 승계지분에 대해 공제 적용

○ 상속개시 전 가업에 종사한 기간이 2년 이상

○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임원 취임, 2년 내 대표이사 취임

바. 사후관리

○ 상속 후 5년간 가업을 영위할 것

* 대표이사에 종사, 주된 업종 유지, 1년 이상 휴업·폐업 금지

○ 가업용 자산의 40% 이상 처분 금지

- 다만, 추징시에는 처분비율을 고려하여 공제금액 추징

○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 유지

○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 말부터 5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 또는 5년간 총급여액의 전체 평균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2개 과세연도 평균의 100분의 90 이상

7. 공익법인 제도

가. 비영리법인 및 공익법인의 개념

○ (민법상 비영리법인)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그 밖에 영리가 아닌 사업목적의 사단 또는 재단

○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 민법상 비영리법인 외에,

- 「교육기본법」 등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과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단체로서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

○ (상증법상 공익법인등)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자

* 종교, 학술, 장학, 의료, 문화·예술 등 상증령 제12조에 따른 사업

나. 공익법인 세제 개요

○ (상속세 및 증여세) 비영리법인이 재산을 출연받는 경우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나,

-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를 지원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이 출연받는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불산입
- 또한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경우 해당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도 산입하지 않음

○ (법인세) 공익법인도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므로, 수익사업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신고·납부할 의무

*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 소매업 등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각 사업 중 수입, 이자소득, 배당소득, 주식·신주인수권 양도로 생기는 수익,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등

-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정 범위 내에서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설정하여 손금 산입 가능

○ (양도소득세) 비영리법인이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 해당 소득은 각 사업연도소득으로 법인세 신고·납부를 해야 하나,

*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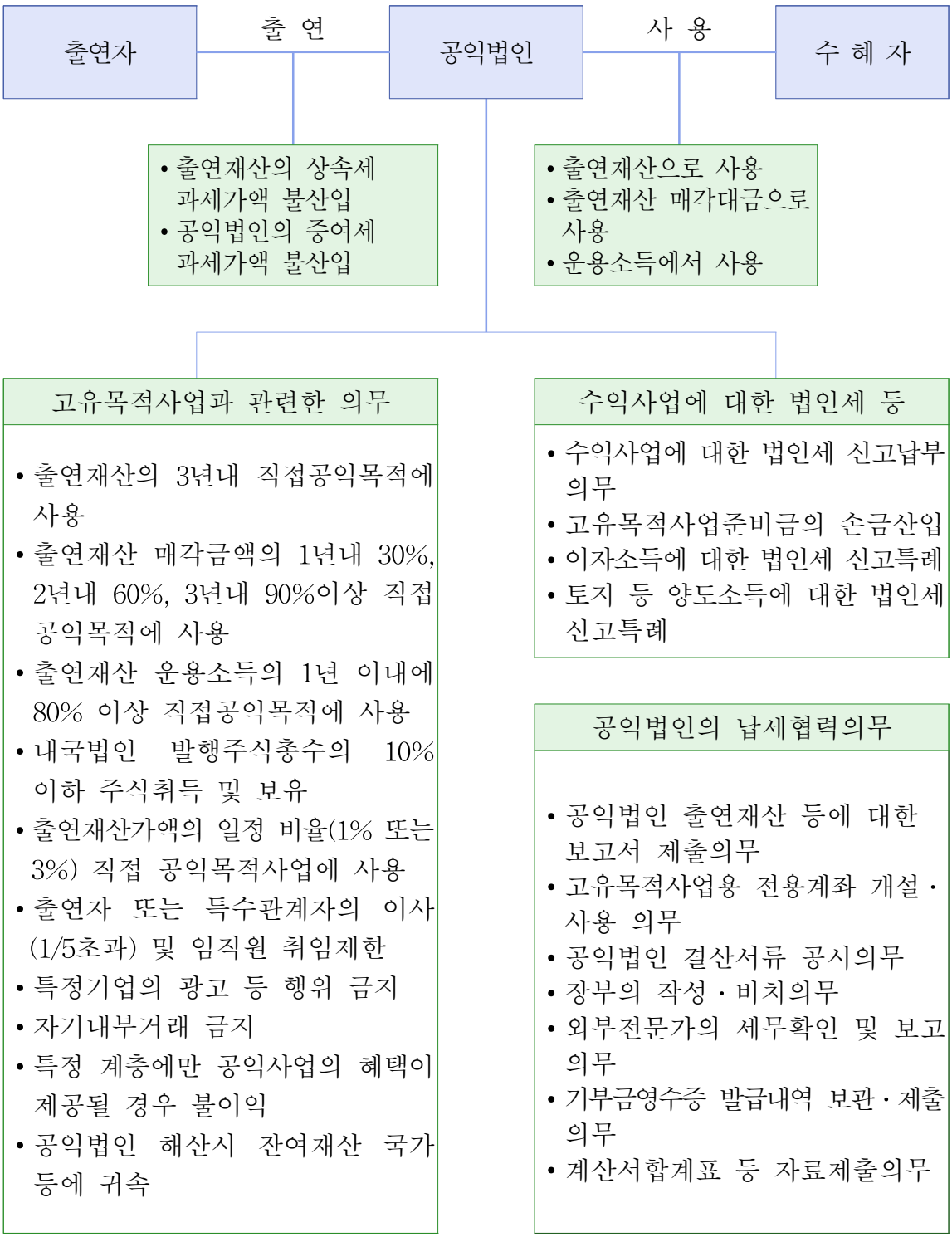
-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은 소득세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세액을 법인세로 납부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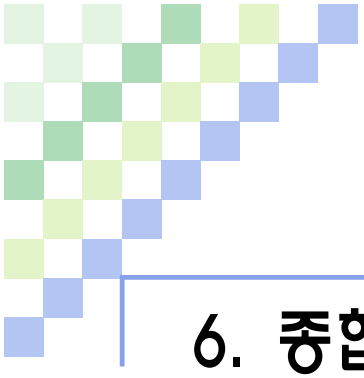
* 과세표준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자본적지출액 - 양도비 - 장기보유특별공제-양도소득기본공제

○ (부가가치세) 공익법인이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면제

- 공익법인에게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 면제

다. 공익법인의 납세의무 체계





6. 종합부동산세제

1. 납세의무자 / 191
2. 과세표준 / 192
3. 합산배제 / 193
4. 세율 및 세액계산 흐름도 / 196
5. 종부세액의 계산 / 197
6. 부과·징수 등 / 201
7. 주요 개정연혁 / 202

작성자 : 재산세제과장 박지훈

1. 납세의무자

가. 주택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나. 종합합산토지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다. 별도합산토지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

<보유세 과세대상 분류>

구분	재 산 의 종 류		재산세	종부세
건축물	주거용	· 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단독·다가구),오피스텔(주거용) · 일정한 임대주택·미분양주택·사원주택·기숙사·가정보육시설용주택·비수도권소재1주택·문화재주택	과세 과세	과세 ×
	기타	· 일반건축물(상가, 사무실, 빌딩, 공장, 사업용 건물)	과세	×
토지	종합합산	· 나대지, 잡종지, 분리과세가 아닌 농지·임야·목장용지 등 ·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 중 기준초과 토지 ·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중 기준초과 토지 · 재산세 분리과세·별도합산과세대상이 아닌 모든 토지	과세 과세 과세 과세	과세 과세 과세 과세
	별도합산	·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기준면적 범위내의 것) · 법령상 인·허가 받은 사업용 토지	과세 과세	과세 과세
	분리과세	· 일부 농지·임야·목장용지 등(재산세만 0.07% 과세) · 공장용지 일부, 공급목적 보유 토지(재산세만 0.2% 과세) ·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토지(재산세만 4% 과세)	과세 과세 과세	× × ×

2. 과세표준

가. 주택

[인별 공시가격 - 9억(1세대 1주택은 12억원, 법인은 미공제)] × 60%(공정시장가액비율)

나. 종합합산토지분

[인별 공시가격 - 5억] × 100%(공정시장가액비율)

다. 별도합산토지분

[인별 공시가격 - 80억] × 100%(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 감면이 있는 경우의 과세표준

○ 주　　택 : {[인별공시가격 × (1 - 감면율)] - 9억(1세대1주택자 12억원, 법인은 미공제)} × 60%
○ 종합합산토지 : {[인별공시가격 × (1 - 감면율)] - 5억} × 100%
○ 별도합산토지 : {[인별공시가격 × (1 - 감면율)] - 80억} × 100%

3. 합산배제

가. 합산배제 임대주택

아래 주택은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음(과세제외)

주택 종류	주거전용면적	주택가격	주택수	임대기간	지역
① 건설임대 ('18.4.1.이후 공공지원민간 또는 장기일반민간 임대주택으로 등록)	149㎡이하	9억원이하	2호이상	5년이상 ('18.4.1.이후 8년 이상, '20.10.8. 이후 10년 이상)	전국 (합산: 동일시·도)
② 매입임대 ('18.4.1.이후 장기일반민간 임대주택으로 등록)	면적기준 없음	수도권: 6억원 이하 지방: 3억원 이하	-	5년이상 ('18.4.1.이후 8년 이상, '20.10.8. 이후 10년 이상)	전국
③ 기존임대	국민주택규모 이하	3억원이하	2호이상	5년이상	전국
④ 미임대건설임대	149㎡이하	9억원이하	-	미임대2년	전국
⑤ 리츠 등 임대	149㎡이하	6억원이하	5호이상	10년이상	수도권외
⑥ 미분양매입임대	149㎡이하	3억원이하	5호이상	5년이상	수도권외 (합산: 동일시·도)

* 다만, 1주택 이상 보유한 1세대가 신규 취득(상속, 재건축·재개발 등의 사유로 임대기간 합산하는 경우는 제외)한 조정대상지역 내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매입임대주택은 합산과세('18.9.13.이후 취득부터 적용)

** '20.7.11.이후 임대등록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은 합산과세

** '20.7.11.이후 단기민간임대주택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신고한 매입임대주택은 합산과세

** 법인이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내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매입임대주택은 합산과세('20.6.17.이후 임대등록을 신청한 분부터 적용)

*** 임대의무기간 종료후 미분양된 기간이 2년 이내인 공공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매입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나. 합산배제 기타주택

① 사용자 소유의 사원용 주택 : 종업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국민주택규모이하 주택
② 기숙사 : 학교,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공동취사용 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1)
③ 주택건설업자의 미분양주택 : 주택건설업자(주택법의 사업계획승인이나 건축법의 허가를 받은 자) 소유의 미분양주택으로서 사용승인일로부터 5년 미경과 주택
④ 어린이집으로 사용하는 주택 : 세대원이 「소득세법」 §168⑤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후 과세기준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어린이집으로 운영하는 주택
⑤ 시공자가 공사대금으로 받은 미분양주택(5년한, 1년이상 타인거주 제외)
⑥ 정부출연연구기관이 해당 연구기관의 연구원에게 제공하는 주택
⑦ 문화재 보호법에 따른 등록문화재(문화재보호법 §2④)
⑧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등이 2010년 2월 11일까지 직접 취득하는 서울특별시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그 중 수도권 밖의 비율이 60% 이상일 것)으로서 존립기간이 5년 이내인 것
⑨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등이 미분양주택을 취득할 당시 매입약정을 체결한 자가 그 매입약정에 따라 미분양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인 주택
⑩ 신탁업자가 자산유동화 방식으로 취득하는 일정요건의 미분양주택으로 신탁재산의 운용기간이 5년 이내일 것
⑪ 노인복지주택 : 노인복지법 §33②에 따라 설치한 자가 소유한 것에 한함
⑫ 향교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 :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해당 부속토지
⑬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등이 2011년 4월 30일까지 직접 취득하는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으로서 존립기간이 5년 이내일 것
⑭ 신탁업자가 2011년 4월 30일까지 직접 취득하는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
⑮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등이 2014년 12월 31일까지 직접 취득하는 미분양주택으로서 존립기간이 5년 이내인 것
⑯ 신탁업자가 2012년 12월 31일까지 직접 취득하는 미분양주택으로 신탁재산의 운용기간이 5년 이내일 것

⑰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주택매수의 청구에 따라 사업자가 취득하여 보유하는 주택

⑱ 주택도시기금과 LH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한계·연체 주택담보대출 차주(1주택 실거주자, 기준시가 5억원 이하)로부터 매입하는 주택

⑲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부속토지

⑳ 「공공주택 특별법」 §4①에 따라 지정된 공공주택사업자 등이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멸실시키는 주택

㉑ 공공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매입임대주택의 부속토지

㉒ 소유자가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부동산투자회사(공공주택사업자 또는 주택도시기금이 단독 또는 공동출자하여 설립하고 출자지분의 전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의 부속토지

㉓ 전통사찰보존지 내 주택의 부속토지(연간 사용료가 해당 부속토지 공시가격의 1천분의 20 이하인 경우)

㉔ 공공주택사업자가 소유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4에 따른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주택지분의 일부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분)

㉕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가 2024년 3월 28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으로 한정)

4. 세율 및 세액계산 흐름도

<table>
<tr><td>구 분</td><td colspan="3">∑ 주택 공시가격</td><td colspan="3">∑ 종합합산 토지 공시가격</td><td colspan="3">∑ 별도합산 토지 공시가격</td></tr>
<tr><td>−</td><td colspan="3"></td><td colspan="3">−</td><td colspan="3"></td></tr>
<tr><td>공 제 액</td><td colspan="3">9억원(1세대 1주택 12억원)
* 법인의 경우 공제 미적용</td><td colspan="3">5억원</td><td colspan="3">80억원</td></tr>
<tr><td>×</td><td colspan="3"></td><td colspan="3">×</td><td colspan="3"></td></tr>
<tr><td>공정시장
가액비율</td><td colspan="3">60%</td><td colspan="3">100%</td><td colspan="3"></td></tr>
<tr><td>×</td><td colspan="3"></td><td colspan="3">×</td><td colspan="3"></td></tr>
<tr><td>세 율</td><td>과세표준</td><td>일반 세율
(3주택 이상)</td><td>누진공제
(3주택 이상)</td><td>과세표준</td><td>세율</td><td>누진공제</td><td>과세표준</td><td>세율</td><td>누진공제</td></tr>
<tr><td></td><td>3억 이하</td><td>0.5%
(0.5%)</td><td>-
(-)</td><td>15억이하</td><td>1.0%</td><td>-</td><td>200억이하</td><td>0.5%</td><td>-</td></tr>
<tr><td></td><td>6억 이하</td><td>0.7%
(0.7%)</td><td>60만원
(60만원)</td><td>45억이하</td><td>2.0%</td><td>1,500만원</td><td>400억이하</td><td>0.6%</td><td>2,000만원</td></tr>
<tr><td></td><td>12억 이하</td><td>1.0%
(1.0%)</td><td>240만원
(240만원)</td><td>45억초과</td><td>3.0%</td><td>6,000만원</td><td>400억초과</td><td>0.7%</td><td>6,000만원</td></tr>
<tr><td></td><td>25억 이하</td><td>1.3%
(2.0%)</td><td>600만원
(1,440만원)</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td><td>50억 이하</td><td>1.5%
(3.0%)</td><td>1,100만원
(3,940만원)</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td><td>94억 이하</td><td>2.0%
(4.0%)</td><td>3,600만원
(8,940만원)</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td><td>94억 초과</td><td>2.7%
(5.0%)</td><td>10,180만원
(18,340만원)</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td><td>법인</td><td>2.7%
(5.0%)</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td><td colspan="3"></td><td colspan="3">=</td><td colspan="3"></td></tr>
<tr><td>종합부동산
세 액</td><td colspan="3">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td><td colspan="3">토지분 종합합산세액</td><td colspan="3">토지분 별도합산세액</td></tr>
<tr><td>−</td><td colspan="3"></td><td colspan="3">−</td><td colspan="3"></td></tr>
<tr><td>차 감 할
재산세액</td><td colspan="9">재산세로 부과된 세액 중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금액에 부과된 재산세 상당액
☞ 과세대상 유형별(주택, 종합합산 토지, 별도합산 토지)로 구분하여 계산</td></tr>
<tr><td>=</td><td colspan="3"></td><td colspan="3">=</td><td colspan="3"></td></tr>
<tr><td>산출세액</td><td colspan="3">주택분 산출세액</td><td colspan="3">종합합산토지분 산출세액</td><td colspan="3">별도합산토지분 산출세액</td></tr>
<tr><td>−</td><td colspan="3"></td><td colspan="3">−</td><td colspan="3"></td></tr>
<tr><td>세액공제
*최대 80% 한도</td><td>장기보유</td><td colspan="2">5년이상 20%
10년이상 40%
15년이상 50%</td><td colspan="3"></td><td colspan="3"></td></tr>
<tr><td></td><td>고 령 자</td><td colspan="2">60세이상 20%
65세이상 30%
70세이상 40%</td><td colspan="3"></td><td colspan="3"></td></tr>
<tr><td>=</td><td colspan="3"></td><td colspan="3">=</td><td colspan="3"></td></tr>
<tr><td>세부담상한전
종부세액</td><td colspan="9">세부담상한전 종부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td></tr>
<tr><td>−</td><td colspan="3"></td><td colspan="3">−</td><td colspan="3"></td></tr>
<tr><td>세부담상한
초과세액
* 법인 제외</td><td colspan="9">해당연도 총세액상당액(재산세+종부세)이 전년도 총세액상당액의 150%를 초과하는 세액</td></tr>
<tr><td>=</td><td colspan="3"></td><td colspan="3">=</td><td colspan="3"></td></tr>
<tr><td>부과·징수세액</td><td colspan="9">부과·징수(자진납부)할 세액(분납 가능)</td></tr>
</table>

5. 종부세액의 계산

가. 주택분

결정세액 = (주택분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법정공제세액*

* 재산세 공제, 1세대 1주택 세액공제, 세부담상한 초과세액 공제

① 재산세 공제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과세대상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중 **주택분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재산세액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

* 과세기준금액 초과분(공시가액 - 9억 또는 12억<법인의 경우 미공제>)× 공정시장가액비율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 가격을 합산한 금액 - 9억원*) ×제2조의 4제1항의 공정시장가액비율}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른 재산세 공정시장 가액비율 ×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 / 주택을 합산하여 주택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12억원 공제, 법인의 경우 미공제

② 1세대 1주택 세액공제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거주자로서 고령 및 장기보유자의 경우에는 아래 표에 따른 세액을 공제(최대 80%한도)

· 고령자공제

연 령	공제율
만 60세 이상 만 65세 미만	100분의 20
만 65세 이상 만 70세 미만	100분의 30
만 70세 이상	100분의 40

· 장기보유공제

보유기간	공제율
5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20
10년 이상 15년 미만	100분의 40
15년 이상	100분의 50

※ 세대의 범위

○ 일반적 범위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함. "가족"이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

○ 독립세대(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1세대로 보는 경우)

1.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 1세대 특례

- 혼인 : 혼인함으로써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혼인한 날부터 5년 동안은 각각 1세대로 봄.
- 동거봉양 :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同居奉養)하기 위하여 합가함으로써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합가한 날부터 10년 동안은 각각 1세대로 봄

③ 세부담상한 초과세액 공제(법인 제외)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주택분 재산세액상당액과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의 합계액이 직전년도에 해당 주택에 부과된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세액은 이를 공제

(재산세 + 종부세) − (전년도 재산세·종부세* × 150%)

* 해당연도 주택을 전년도에 보유한 것으로 보아 계산하되 탄력세율과 세부담상한은 적용하지 않음

나. 종합합산토지분

결정세액 = (종합합산토지분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법정공제세액*

* 재산세 공제, 세부담상한 초과세액 공제

① 재산세 공제

과세대상 종합합산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종합합산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중 종합합산토지분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재산세액을 종합합산토지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공시 가격을 합산한 금액 - 5억원) ×제2조의 4제1항의 공정시장가액비율}×「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른 재산세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곱하고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 /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를 합산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② 세부담상한 초과세액 공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종합합산토지분 재산세액상당액과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의 합계액이 직전년도에 해당 종합합산토지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세액은 이를 공제

(재산세 + 종부세) - (전년도 재산세·종부세* × 150%)

* 해당연도 종합합산토지를 전년도에 보유한 것으로 보아 계산하되 탄력세율과 세부담상한은 적용하지 않음

다. 별도합산토지분

결정세액 = (별도합산토지분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법정공제세액*

* 재산세 공제, 세부담상한 초과세액 공제

① 재산세 공제

과세대상 별도합산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중 별도합산토지분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재산세액을 별도합산토지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공시 가격을 합산한 금액 - 80억원) ×제2조의 4제1항의 공정시장가액비율}×「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른 재산세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곱하고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 /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를 합산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② 세부담상한 초과세액 공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별도합산토지분 재산세액상당액과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의 합계액이 직전년도에 해당 별도합산토지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세액은 이를 공제

(재산세 + 종부세) - (전년도 재산세·종부세* × 150%)

* 해당연도 별도합산토지를 전년도에 보유한 것으로 보아 계산하되 탄력세율과 세부담상한은 적용하지 않음

6. 부과·징수 등

가. 과세기준일

매년 6월 1일

나. 부과징수

관할세무서장이 매년 12월 1일~12월 15일까지 부과징수

다. 신고납부

관할세무장의 부과징수 규정에 불구하고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고자하는 경우 매년 12월 1일~12월 15일 신고납부 가능

라. 분납

납부할 세액이 2.5백만원 초과 5백만원 이하인 경우 해당 세액에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 5백만원을 초과한 경우 그 세액의 50%이하의 금액을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6개월 이내 분납 가능*

* 종합부동산세의 납부기한 이내에 분납신청서 제출

7. 주요 개정연혁

구 분		'05년	'06~'08년	'09~'18년
과세 방법		인별합산	세대별합산	인별합산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08.11.13)
과세기준금액	주 택	9억원	6억원	6억원 (1세대1주택 9억원)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	40억원	40억원	80억원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	6억원	3억원	5억원
과표 적용율		50%	90%	80%(FMV)
과세표준 및 세율	주 택	5.5억원이하 1% 5.5~45.5억원이하 2% 45.5억원초과 3%	3억원이하 1% 3~14억원이하 1.5% 14~94억원이하 2% 94억원초과 3%	6억원이하 0.5% 6~12억원이하 0.75% 12~50억원이하 1% 50~94억원이하 1.5% 94억원초과 2%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	80억원이하 0.6% 80~480억원이하 1% 480억원초과 1.6%	160억원이하 0.6% 160~960억원이하 1% 960억원초과 1.6%	200억원이하 0.5% 200~400억원이하 0.6% 400억원초과 0.7%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	7억원이하 1% 7~47억원이하 2% 47억원초과 4%	17억원이하 1% 17~97억원이하 2% 97억원초과 4%	15억원이하 0.75% 15~45억원이하 1.5% 45억원초과 2%
세부담 상한		전년대비 150%	전년대비 300%	전년대비 150%
1세대 1주택자 공제 (단독명의)		-	-	○ **고령자세액공제** 60~65세미만 10% 65~70세미만 20% 70세이상 30% ○ **장기보유자공제** 5~10년미만 20% 10년이상 40% * 중복공제 가능
기타 특례		-	-	비수도권소재 1주택 종부세 비과세 (3년간 '09~'11시행)

구 분		'19년 이후	'21년	'22년
과세 방법		인별합산	인별합산	
과세기준금액	주 택	6억원 (1세대1주택 : 9억원)	개인: 6억원 (1세대1주택 : 11억원, 법인 : 없음)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	80억원	80억원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	5억원	5억원	
과표 적용율		85%('19년 FMV) * '20년 90%	95%(FMV, '21년)	• 주택 : 60%(FMV) • 토지 : 100%(FMV
과세표준 및 세율	주 택	3억원이하 0.5%(0.6%) 3~6억원이하 0.7%(0.9%) 6~12억원이하 1.0%(1.3%) 12~50억원이하 1.4%(1.8%) 50~94억원이하 2.0%(2.5%) 94억원초과 2.7%(3.2%)	3억원이하 0.6%(1.2%) 3~6억원이하 0.8%(1.6%) 6~12억원이하 1.2%(2.2%) 12~50억원이하 1.6%(3.6%) 50~94억원이하 2.2%(5.0%) 94억원초과 3.0%(6.0%) 법인 3.0%(6.0%)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	200억원이하 0.5% 200~400억원이하 0.6% 400억원초과 0.7%	200억원이하 0.5% 200~400억원이하 0.6% 400억원초과 0.7%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	15억원이하 1% 15~45억원이하 2% 45억원초과 3%	15억원이하 1% 15~45억원이하 2% 45억원초과 3%	
세부담 상한		전년대비 150% *조정지역2주택 200%, 3주택 이상 300%	전년대비 150% *조정지역2주택 및 3주택 이상300%, 법인은 세부담 상한 없음	
1세대 1주택자 공제 (단독명의)		○ **고령자세액공제** 60~65세미만 10% 65~70세미만 20% 70세이상 30% ○ **장기보유자공제** 5~10년미만 20% 10~15년미만 40% 15년 이상 50% * 중복공제 가능 (최대 70% 상한)	○ **고령자세액공제** 60~65세미만 20% 65~70세미만 30% 70세이상 40% ○ **장기보유자공제** 5~10년미만 20% 10~15년미만 40% 15년 이상 50% * 중복공제 가능 (최대 80% 상한) ○ **부부의 경우 공동명의로 공제 허용**	
기타특례		-	-	

구 분		'23년 이후
과세 방법		인별합산
과세기준금액	주 택	개인: 9억원 (1세대1주택 : 12억원, 법인 : 없음)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	80억원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	5억원
과표 적용율		• 주택 : 60%(FMV) • 토지 : 100%(FMV)
과세표준 및 세율	주 택	3억원이하 0.5%(0.5%) 3~6억원이하 0.7%(0.7%) 6~12억원이하 1.0%(1.0%) 12~25억원이하 1.3%(2.0%) 25~50억원이하 1.5%(3.0%) 50~94억원이하 2.0%(4.0%) 94억원초과 2.7%(5.0%) 법인 2.7%(5.0%)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	200억원이하 0.5% 200~400억원이하 0.6% 400억원초과 0.7%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	15억원이하 1% 15~45억원이하 2% 45억원초과 3%
세부담 상한		전년대비 150% * 법인은 세부담 상한 없음
1세대 1주택자 공제 (단독명의)		○ **고령자세액공제** 60~65세미만 20% 65~70세미만 30% 70세이상 40% ○ **장기보유자공제** 5~10년미만 20% 10~15년미만 40% 15년 이상 50% * 중복공제 가능 (최대 80% 상한) ○ **부부의 경우 공동명의로 공제 허용**
기타특례		-

7. 부가가치세제

1. 과세대상과 납세의무자 / 207
2. 과세기간 및 신고납부 / 210
3. 재화의 간주(의제)공급 / 211
4. 재화와 용역의 공급시기 / 213
5. 영세율과 면세 / 214
6.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계산방법 / 217
7. 세금계산서 / 221
8. 결정·경정·징수와 환급 / 224
9. 간이과세 / 226
10. 대리납부 / 228
11. 국외사업자의 전자적용역 공급에 대한 과세특례 / 229
12.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 230

작성자 : 부가가치세제과장 최진규

1. 과세대상과 납세의무자

가.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

(1) 재 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有體物)과 무체물(無體物)을 말함

① 유체물 : 상품·제품·원료 등 재고자산, 기계·건물 등의 고정자산 등 모든 유형적인 물건

② 무체물 : 동력·열과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및 권리 등으로 유체물 이외의 모든 물건

※ 과세대상으로 보는 재화 : 비영업용 승용차의 매각, 선하증권·창고증권·화물상환증의 양도, 물·흙·퇴비의 공급 등

※ 과세대상으로 보지 않는 재화 : 손해배상금, 특별회비, 유가증권, 매출채권의 양도, 부당이득금, 비사업자가 공급하는 권리, 영업손실보상금 등

(2) 용 역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재화·시설물·권리의 사용)로서 다음의 사업에 해당하는 것

- 사업의 분류는 통계청에서 발간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을 근거로 함

① 건설업, ② 숙박 및 음식점업, ③ 운수 및 창고업, ④ 정보통신업(출판업과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은 제외한다), ⑤ 금융 및 보험업, ⑥ 부동산업(단,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 또는 염전 임대업과 공익사업 관련 지역권·지상권 설정 및 대여사업 제외), ⑦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⑧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⑨ 교육서비스업, ⑩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⑪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⑫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과 제조업 중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⑬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⑭ 국제 및 외국기관의 사업

나. 과세거래

(1) 재화의 공급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음

① 현금·외상·할부판매 등 매매계약에 의한 재화의 인도

② 가공계약에 의한 재화의 인도

③ 교환계약에 의한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

④ 기타 법률상 또는 계약상 원인에 의한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 : 경매(국세징수법 제66조의 규정에 따른 공매 및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수용(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용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현물출자 등

⑤ 자가공급·개인적 공급·사업상 증여·폐업 시 잔존 재화

⑥「신탁법」 제10조에 따라 위탁자의 지위가 이전되는 경우에는 기존 위탁자가 새로운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공급한 것으로 봄

⑦ 재화의 공급이 아닌 거래

㉮ 담보제공 : 질권(質權)·저당권(抵當權) 또는 양도담보(讓渡擔保)*의 목적으로 동산·부동산 및 부동산상의 권리를 제공하는 경우

* 담보물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양도하고, 일정기간내에 변제하면 담보물의 소유권을 반환받는 담보

㉯ 사업의 양도 :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

㉰ 조세의 물납(상속세·증여세·지방세)

㉱ 신탁재산의 소유권 이전으로서 다음의 각 목의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

-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 신탁의 종료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 수탁자가 변경되어 새로운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2) 용역의 공급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의한 역무의 제공,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다음의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① 무상공급*, ② 고용관계에 의한 근로의 제공

* 다만, 특수관계자에게 제공하는 사업용 부동산의 무상임대용역은 과세

(3) 재화의 수입

다음에 해당하는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는 것(보세구역을 거치는 것은 보세구역에서 반입하는 것)을 재화의 수입으로 본다.

① 외국으로부터 국내에 도착한 물품(외국의 선박에 의하여 공해(公海)에서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으로서 수입신고가 수리(受理)되기 전의 것

②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

다. 납세의무자

(1) 국내에서 영리목적에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사업을 하는 자*, 재화 수입자

예) 개인(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법인, 수입자, 국가·지방자치단체,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

* 사업목적이 영리든 비영리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자에 해당하면 사업자등록의 유무,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여부에 관계없이 납세의무자가 됨

(2) 신탁재산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수탁자

단, 다음의 경우 위탁자가 납세의무자

① 신탁재산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위탁자 명의로 공급하는 경우

② 수탁자가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사업대행자인 경우 등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하는 경우

③ 그 밖에 신탁의 유형, 신탁설정의 내용, 수탁자의 임무 및 신탁사무범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과세기간 및 신고납부

가. 과세기간

(1) 일반과세자(개인·법인) : 1·2기로 구분
- 제 1 기 :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 제 2 기 :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 간이과세자 :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 신규자 : 사업개시일부터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4) 폐업자 :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

(5) 유형전환자 :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당초 유형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나. 신고·납부(일반과세자)

신 고	신 고 대 상 기 간	신고·납부기한
예정신고	· 제1기분 : 1월1일~3월31일 · 제2기분 : 7월1일~9월30일	각 예정신고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 (다만, 개인사업자와 직전기 공급가액 합계액 1억5천만원 미만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 대신 직전기 납부세액의 1/2을 예정고지)
확정신고	· 제1기분 : 1월1일~6월30일 · 제2기분 : 7월1일~12월31일	각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다만, 예정신고 및 영세율 등 조기 환급 신고분으로 기 신고한 내용 제외)

* 간이과세자는 과세기간(1.1~12.31) 종료후 25일 이내 신고·납부(직전기 납부세액의 1/2을 예정부과기간(1.1~6.30) 종료후 25일 이내 징수)

다. 사업장단위 신고·납부의 특례

(1) 주사업장 총괄납부사업자

부가가치세는 각 사업장마다 신고·납부(또는 환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업자에게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하여 각 사업장의 납부세액 및 환급세액을 통산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 가능

(2)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

부가가치세는 각 사업장마다 신고·납부(또는 환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는 각 사업장을 대신하여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총괄하여 납부 가능

3. 재화의 간주(의제)공급

재화의 공급은 대가를 받고 타인의 소유로 변경되어 타인이 사용·소비되는 것이 통상적이나, 예외적으로 대가의 수수가 없거나 재화가 이동되지 않거나 사업자가 자신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재화의 공급에 해당

가. 자가공급

(1) 의 의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것

(2) 과세대상이 되는 자가공급

① 면세사업 전용재화

- 과세사업을 위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소비하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

②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와 그 유지를 위한 재화

-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로 사용하거나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유지를 위하여 사용·소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

③ 다른 사업장(직매장 등)에 판매할 목적으로 반출하는 재화

-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

나. 개인적 공급

(1) 의 의

외부거래로서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자기나 그 사용인(종업원)의 개인적인 목적을 위하여 사용·소비하는 경우는 개인적 공급으로 봄

(2) 과세대상이 되는 개인적 공급

① 사업자가 개인적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재화를 사용·소비

② 사용인 또는 기타의 자가 재화를 사용·소비하는 것으로서 사업자가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

※ 위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해당 재화를 매입할 때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한 것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 사업상 증여

(1) 의 의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증여되는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의 대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은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며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봄

(2)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상 증여

①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견본품

②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적용을 받아 특별재난지역에 공급하는 물품

③ 자기적립마일리지등으로만 전부를 결제받고 공급하는 재화

라. 폐업 시 잔존재화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 또는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가 사업개시일 전에 등록한 경우로서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에 대하여 자기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

다만,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은 재화는 과세 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

4. 재화와 용역의 공급시기

가. 재화의 공급시기

(1) 일반원칙

①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 재화가 인도되는 때
②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③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2) 거래형태별 공급시기

① 현금판매·외상판매·할부판매 :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② 반환조건부·동의조건부·기타 조건부 및 기한부 판매 :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 등
③ 장기할부판매·완성도지급기준·중간지급 조건부공급 또는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의 계속적 공급 :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나. 용역의 공급시기

(1) 일반원칙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

(2) 거래형태별 공급시기

① 완성도지급기준·중간지급·장기할부·기타 조건부공급 또는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 :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② 간주임대료 : 예정신고기간의 종료일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등

5. 영세율과 면세

가. 영세율 적용

(1) 의 의

영세율은 세율을 영(零)으로 하는 것으로 매출세액은 영으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않아도 되고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하여 환급받는 제도

(2) 적용대상

① 수출하는 재화 : 외국으로 반출하는 내국물품,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해 공급하는 재화 등
②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
③ 선박·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
④ 기타 외화획득 재화·용역
⑤ 비료·농약·농기계 등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⑥ 외국인관광객 등에 공급하는 재화·용역

(3) 영세율 적용대상 사업자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원칙
다만, 상호주의원칙에 의해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의 거주자 또는 법인에게 동일 영세율을 적용하는 경우와 그 외국에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가 없는 경우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도 적용

(4) 영세율 적용방법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에 영세율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 영세율 증명서류 : 직접수출(수출실적명세서), 중계·위탁가공·외국인도·위탁판매수출(수출계약서 사본 또는 외화입금증명서) 등

나. 면 세

(1) 의 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면제하는 제도

(2) 취 지

면세는 해당 면세사업자단계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대한 세부담의 면제로 기초생활필수품, 국민후생용역, 문화 관련 재화·용역 등 소비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

- 면세는 중간 유통단계에서 면세하는 경우 중복과세 현상이 있으므로 최종소비자의 거래에 대하여 면세하는 것이 원칙

(3) 면세사업자의 매입세액 공제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제의무(등록, 거래징수, 신고·납부)가 없으나 전단계에서 부담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지 못함

(4) 면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

다음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

① 기초생활 필수 재화 및 용역 : 미가공식료품과 농·축·수·임산물, 수돗물, 연탄, 무연탄, 여객운송용역(항공기·우등 고속버스·전세버스·택시·특종선박·고속철도·삭도·관광유람선 등 제외)

② 국민후생을 위한 재화 및 용역 : 의료보건용역(미용성형 의료용역 등 제외)·교육용역(무도학원, 자동차운전학원 제외)

③ 문화 관련 재화 및 용역 : 문화 관련 재화(도서·신문·잡지 등), 예술창작품, 문화행사, 비직업운동경기, 도서관·박물관·동물원 등의 입장

④ 생산요소 관련 재화 및 용역 : 토지, 금융·보험용역

⑤ 인적용역 :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공급하는 인적용역(연예인·작곡가 등)

⑥ 과세 주체의 공공성에 따른 면세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 정부업무 대행단체 등이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

* 2007.1.1부터 국가·지자체·지자체조합이 공급하는 부동산임대업,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골프장, 스키장운영업, 기타운동시설 운영업은 과세로 전환

⑦ 과세 객체의 용도에 따른 면세 : 국민주택 공급 및 건설용역, 주택 및 부속토지 임대용역, 특수용도 유류(농기계등, 연근해 어업용 선박, 연안여객선,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공장·광산·건설현장·학교 구내식당 음식용역, 공동주택 일반관리·경비·청소용역, 천연가스 시내버스 등

⑧ 면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수입

· 미가공식료품(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축·수·임산물 포함)

· 문화 관련 재화(도서·신문, 학술·교육·문화단체가 과학·교육·문화용으로 수입하는 재화)

· 외국으로부터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기증되는 재화

· 관세가 면제되는 여행자 휴대품, 별송물품, 우송물품 등

(5) 부수재화 또는 용역

면세되는 재화·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와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 면제

(6) 면세포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의 경우에는 면세를 포기하고 과세대상으로 하여 매입세액 환급 가능

① 영세율 적용이 되는 경우

② 학술 등 연구단체가 연구와 관련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다만, 면세포기를 하고자 하는 자는 면세포기신고를 하고 사업자등록 신청

6.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계산방법

가. 과세표준

(1) 의 의

납세의무를 부과할 때 세액계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매출세액이 되는 거래징수세액을 계산할 때 세율을 곱하는 금액

(2) 과세표준의 계산

다음 가액의 합계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은 공급가액)

①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

②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않는 경우 :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時價)

③ 폐업한 경우 : 폐업 시 남아 있는 재화의 시가

(3)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금액

에누리액, 환입된 재화의 가액, 재화 또는 용역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연체이자,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破損)·훼손(毁損)·멸실(滅失)된 재화의 가액, 부가가치세, 할인액, 자기적립 마일리지*로 결제받은 금액

* 당초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마일리지 등을 적립하여 준 사업자에게 사용한 마일리지

(4)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금액

대손금·판매장려금·하자보증금, 자기적립 마일리지 이외의 마일리지 등으로 결제받은 경우

(5) 수입재화의 과세표준

재화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관세+소비세 등(개별소비세, 주세, 교통·에너지·환경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

(6)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과세표준

① 부동산임대용역의 과세표준은 임대료와 전세금 또는 전세보증금에 대하여 일정한 방식에 의하여 임대료로 계산한 간주임대료의 합계액

② 간주임대료 계산산식

- 과세표준 = (해당 기간의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 × (과세대상 기간의 일수) ×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해당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365(윤년의 경우에는 366)

* 2020년 1.8%, 2021년 1.2%, 2022년 1.2%, 2023년 2.9%

- 임대료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의 과세표준

: 사업자가 2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 기간의 합계액

나. 세 율

부가가치세 세율은 10%

다. 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 공급가액(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

라. 납부세액

(1) 납부세액 계산산식

납부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과세표준×10%

② 매입세액 :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공급에 대한 세액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③ 계산방식 : 계산은 각 과세기간 또는 예정신고기간 단위로 계산

(2)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거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② 사업과 직접 관련없이 지출한 매입세액

③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④ 기업업무추진비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⑤ 면세되는 사업 및 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

⑥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이내의 것 제외) 등

(3) 매입세액공제 특례

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 공제

○ 사업자*(법인 및 공급가액 10억원 초과 개인사업자를 제외한다)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발행하거나 전자적 결제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 공제

* 일반과세자 중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목욕 · 이발 · 미용업, 여객운송업, 입장권발행 사업자, 변호사, 법무사, 회계사, 세무사 등 주로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

발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단, 2026년까지 1.3%), 연간 500만원 한도(단, 2026년까지 연간 1천만원 한도)

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 의의 및 내용

개인사업자(직전연도 공급가액 합계액 3억원 미만인 일반과세자 및 간이과세자)가 2024년 12월 31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발급일 다음날까지 국세청장에게 발급명세를 전송한 경우 발급건수 등을 고려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하여 주는 제도

○ 공제금액

발급건당 200원(연간 100만원 한도)

③ 의제매입세액공제

○ 의 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축·수·임산물의 생산과정에서 농어민 등이 부담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그 농산물 등을 구매하는 사업자에게 그 구입가액의 일정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의제하여 공제하여 주는 제도

○ 취 지

부가가치세의 누적효과를 해소하고 간접적으로는 농어민을 지원하여 가격구조의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

○ 공제대상 의제매입세액 = 농·축·수·임산물 매입가액 × 공제율*

- 공제율(연간기준)

업 종		공제율
음식점(개인)	4억이하	9/109 ('26년까지)
	4억초과	8/108
음식점(법인) 개인 제조업(과자점업 등)		6/106
제조업(기타개인, 중소기업)		4/104
과세유흥장소, 기타		2/102

- 공제한도

구분	과세표준	기본	한시('25년까지)	
			음식점업	그 외
개인사업자	2억원이하	과세표준의 50%	75%	65%
	2~4억원		70%	
	4억원초과	40%	60%	55%
법인사업자		30%	50%	

④ 대손세액공제

○ 의의 및 내용

·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으나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강제집행 등으로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이 대손되어 관련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못하는 경우 거래징수하지 못한 부가가치세를 대손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매출세액에서 차감하여 주는 제도

· 재화 등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는 경우 공급받은 사업자가 폐업하기 전에 공급한 사업자의 대손이 확정되는 때에는 관련 대손세액 상당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

○ 계산방법

대손세액 = 대손금액 (부가가치세 포함) × 10/110

7. 세금계산서

가. 세금계산서

(1) 의 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표시한 세금계산서를 거래상대방에게 작성·교부하여야 하며, 매입할 때는 매출자로부터 교부받아야 함

(2) 교부대상 및 방법 등

- ○ 교부자 : 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36조 상 영수증 발급사업자가 아닌 사업자)
- ○ 교부대상 거래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 교부시기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 또는 거래처별로 1역월(歷月)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해당 달의 말일자로 익월(翌月) 10일까지 교부하거나, 1역월 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자로 익월 10일까지 교부 가능

(3) 전자세금계산서

- ○ 교부대상 : 2011년부터 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전자적 방법(기존 민간시스템(ERP)을 활용하는 방법, 교부대행사업자(ASP)를 이용하여 발행하는 방법,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을 이용하여 발행하는 방법 등)으로 발급하고, 발급일 다음 날까지 국세청에 해당 전자세금계산서를 전송

 * 법인, 사업장별 과세·면세 공급가액 합계 8천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 ○ 의무 면제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국세청에 전송한 분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및 세금계산서 보관 의무를 면제

(4) 선발행 세금계산서 : 재화와 용역의 공급시기 전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그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그 발급하는 때를 재화와 용역의 공급시기로 봄

① 대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② 세금계산서 발급 후 7일 이내에 대가를 받는 경우

③ 세금계산서 발급 후 7일 이후 대가를 받는 경우

- 계약서, 약정서에 대금 청구·지급시기를 따로 적고, 대금청구·지급시기 사이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도래하는 경우

* 조기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30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받아야 함

(5)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 사업자가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공급받은 자가 관할 세무서장에 신청 후 공급자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한 거래일자에 발급

○ 신청시기 :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

○ 대상거래 : 거래건당 공급대가 5만원 이상

나. 수입세금계산서

○ 교부자 : 세관장

○ 교부대상 거래 : 재화의 수입

다. 수정세금계산서

○ 의 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착오나 정정 등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 가능

○ 교부사유

- 당초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
-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 세율 적용을 잘못한 경우(영세율 ↔ 10%)
- 면세 등 발급대상 거래가 아닌 거래에 대해 발급한 경우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후 25일 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거나 구매확인서가 발급된 경우
-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 및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발급한 경우

라. 영수증

○ 의 의

영세사업자(零細事業者) 및 세금계산서를 현실적으로 교부할 수 없는 자가 쉽게 교부할 수 있도록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지 아니한 계산서

○ 교부대상 사업

- 소매업·음식점업·숙박업·변호사업·변리사업·세무사업 등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사업
- 목욕·이발·미용업·여객운송업·입장권을 발행하는 사업

마. 세금계산서합계표 등 제출

○ 제 출 자 : 사업자

○ 제출대상 :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 제출시기 :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와 같이 제출, 예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지 아니한 것은 해당 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

8. 결정·경정·징수와 환급

가. 결정과 경정

(1) 결정과 경정 사유

①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②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을 때

③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이 없거나 제출한 합계표에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④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을 때

(2) 경정 유형

① 실지조사 경정 : 세금계산서·장부 기타 증빙이 있을 때 → 세금계산서·장부 기타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

② 추계경정 : 세금계산서·장부 기타 증빙이 없거나 허위일 때 → 동업자권형(同業者權衡)·생산수율·영업효율·부가가치율·입회조사기준 등에 의하여 추계경정

나. 징 수

(1) 사업자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과 경정으로 추가세액이 있는 경우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

(2)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세관장이 징수

다. 환 급

(1) 의 의

납부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은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환급세액으로 하여 납세의무자에게 되돌려주는 것을 말함. 환급에는 과세기간 단위로 환급하는 일반적인 환급과 예정신고기간 또는 영세율 등 조기환급기간 단위로 환급하는 조기환급 등이 있음

(2) 환급시기

○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30일 내

○ 경정의 경우 지체없이 환급

(3) 조기환급

○ 대상 : 영세율이 적용되거나 사업설비를 신설·취득·확장 또는 증축하는 때

○ 환급시기

- 각 예정신고기간별로 그 예정신고기한 경과후 15일 내
- 예정신고기간 중 또는 과세기간 최종 3개월 중 매월 또는 매 2월(“영세율 등 조기환급기간”이라 함)에 영세율 등 조기환급기간의 종료일로부터 25일 내에 해당 영세율 등 조기환급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때에는 조기환급신고기한 경과후 15일 이내

9. 간이과세

가. 간이과세자

(1)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부가가치세액을 포함)가 1억 4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가 해당

(2) 광업, 제조업, 도매업, 상품중개업, 부동산매매업,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과세유흥장소, 변호사 등 전문 인적용역,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사업의 소재 지역과 종류·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 등은 간이과세에서 제외

나. 과세표준과 세액

(1) 과세표준 : 공급대가(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

(2) 부가가치율

업 종	부가가치율
1.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15%
2. 제조업, 농업·임업 및 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20%
3. 숙박업	25%
4.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소화물 전문 운송업 제외), 정보통신업	30%
5.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제외),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40%
6. 그 밖의 서비스업	30%

(3) 세율 : 10%

(4) 납부세액 = 과세표준×해당 업종 부가가치율 × 10%

(5) 납부세액 공제 : 해당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재화와 용역의 공급대가에 0.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6) 세금계산서 : 영수증 교부(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다. 신고와 납부

(1)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 신고·납부

(2)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
(세금계산서 발급 간이과세자는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

라. 과세유형의 전환

(1) 계속사업자 : 간이과세자가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1역년의 공급대가가 1억 400만원의 금액에 미달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의 7월 1일부터 그 다음 해의 6월 30일까지

(2) 신규사업자 :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최초로 사업을 개시한 해의 다음 해의 7월 1일부터 그 다음 해의 6월 30일까지에 대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적용 여부를 판단

(3) 휴업자 : 직전 1역년 중 휴업자에 대하여는 휴업기간을 제외한 잔여기간에 대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가액으로 하며, 직전 1역년에 대한 공급대가가 없는 경우에는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1월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이를 1월로 봄

(4) 경정의 경우 : 간이과세자의 공급대가가 결정 또는 경정됨으로 인하여 간이과세기준금액이상인 경우 그 결정 또는 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간이과세자로 봄

마. 간이과세 포기

간이과세자가 간이과세를 포기하고 일반과세자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일반과세 적용을 받고자 하는 전달의 말일까지 간이과세 포기 신고

바. 납부의무의 면제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제

10. 대리납부

가. 의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 및 권리를 공급받는 경우에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을 대신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자가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하는 제도

나. 적용대상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 및 권리를 공급받는 자가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는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

다. 대리납부세액

공급가액 × 10%

라. 대리납부방법

대리납부세액을 징수한 자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와 함께 이를 징수한 사업장 또는 주소지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또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납부서에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를 첨부하여 한국은행이나 체신관서에 납부

마. 대리납부불이행가산세(국세기본법)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 및 권리를 공급받는 자가 부가가치세를 정부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의 10%를 한도로 하여 납부일까지의 기간 등을 감안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

가산세 = (미납세액 × 3%) + (미납세액×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 0.022%)

11. 국외사업자의 전자적용역 공급에 대한 과세특례

가. 의의

국외사업자가 직접 또는 국외 오픈마켓등을 통해 국내 소비자에게 전자적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국내에서 공급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제도

나. 납세의무자

(1)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

(2)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이 오픈마켓이나 중개자를 통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오픈마켓 또는 중개자

다. 과세대상(전자적용역)

(1) 게임·음성·동영상파일, 전자문서 또는 소프트웨어와 같은 저작물 및 이를 개선시키는 것

(2) 클라우드컴퓨팅

(3) 광고를 게재하는 용역

(4) 중개용역

① 국내에서 물품, 장소를 대여하거나 사용·소비할 수 있도록 중개하는 것

② 국내에서 재화·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을 수 있도록 중개하는 것

* 클라우드컴퓨팅, 광고를 게재하는 용역, 중개용역은 2019.7.1.이후 공급분부터 적용

라. 간편사업자 등록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국외에서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간편사업자 등록 신청

마. 신고납부 방법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국세정보통신망에 접속하여 예정·확정신고 및 납부

12.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가. 사업자등록

(1) 사업자등록

① 신규사업 개시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 내 등록

② 사업개시 전에도 등록 허용

(2) 폐업 시 신고

폐업 시 사업자는 지체없이 정부에 신고하고 정부는 그 등록을 말소

(3) 미등록자에 대한 조치

① 미등록의 경우 사업자는 매입세액 공제 불가

② 가산세 : 공급가액의 1/100

나. 기장의무

(1) 사업자는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과 관계되는 거래사실을 장부에 기록하고 사업장에 비치

(2) 과세되는 사업과 면세되는 사업을 겸영 시 구분기장

(3) 장부와 세금계산서는 5년간 보관(단,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업자가 국세청장에게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한 경우는 보관의무 없음)

다. 세금계산서합계표 등 제출 및 신고납부

(1)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와 확정신고(개인 일반과세자와 직전기 공급가액의 합계액 1억5천만원 미만 법인사업자, 간이과세자는 예정신고 대신 직전기 납부세액 1/2납부)를 하여야 함

(2) 부가가치세 신고 시 세금계산서합계표도 함께 제출

(3) 미제출 등 불이행에 대한 조치

① 제출되지 않은 세금계산서합계표에 대하여는 매입세액 불공제

②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환급 또는 공제 시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부가가치세액 3배 이하 벌금

③ 가산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발급 : 공급가액의 1%
- 세금계산서미교부, 타인명의세금계산서발행, 세금계산서 과다발급·과다수취 가산세 : 공급가액의 2%
- 세금계산서 가공* 발급·수취 가산세 : 공급가액의 3%

 * 재화·용역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 발급, 수취
- 신고불성실가산세
 - 부당한 무신고·과소신고·환급신고 : 납부세액의 40/100
 - 일반무신고 : 납부세액의 20/100
 - 일반과소신고·환급신고 : 납부세액의 10/100

④ 세금계산서 부실교부에 대한 처벌

- 고의로 미교부 또는 허위기재 교부 시 : 1년 이하 징역 또는 부가가치세액 2배 이하의 벌금

<참고>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의 비교

구 분	일 반 과 세 자	간 이 과 세 자
1. 대 상 사 업 자	간이과세자가 아닌 모든 사업자	직전연도 1역년 공급대가가 1억 4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2. 과 세 표 준	공급가액	공급대가
3. 세 금 계 산 서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교부	영수증 교부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4. 납 부 세 액	매출세액－매입세액	과세표준(공급대가)×해당 업종별 부가가치율×10%
5. 예 정 신 고 납 부	직전기 공급가액 합계액 1억5천만원 이상 법인 : 해당 예정신고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 자진 신고·납부 직전기 공급가액 합계액 1억5천만원 미만 법인, 개인 :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1/2 예정고지 납부 단, 30만원 이하는 고지 생략	직전기 납부세액의 1/2 예정부과 납부 단, 30만원 이하는 고지생략 (예정부과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예정부과기한까지 신고의무)
6. 매입세금계산서등	매입세액으로 공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재화와 용역의 공급대가에 0.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
7. 미 등 록 가 산 세	공급가액의 1%	Max [공급대가의 0.5%, 5만원]
8. 납 부 의 무 면 제	적용대상 아님	과세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납부의무 면제

<참고> 일반과세자 과세체계

매출세액 …… 과세표준×세율

(－) 매입세액
- 매입 시 부담한 세금계산서 수수분 매입세액(매입가액×세율)
- 신용카드매출전표 매입세액공제
-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
- 대손세액공제
- 재고매입세액공제

납부세액

(－) 납부세액 경감 회사택시사업자에 대한 납부세액 경감

(－) 공제세액
-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 공제
- 예정신고 미환급·예정고지세액공제
- 현금영수증사업자 세액공제

(＋) 가산세
- 미등록가산세
- 세금계산서 등 미교부·기재불성실가산세
-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
-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
-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등

차가감 납부(환급)할 세액

8. 개별소비세제, 교통·에너지·환경세제

1. 개별소비세 / 237
2. 교통·에너지·환경세 / 248

작성자 : 환경에너지세제과장 김정주

1. 개별소비세

가. 과세대상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부과

품 목	세 율
〈제1호〉	
○ 투전기, 오락용 사행기구	20%
○ 수렵용 총포류	〃
〈제2호〉	
○ 보석(500만원 초과)	20%
○ 귀금속제품(500만원 초과)	〃
○ 고급모피(500만원 초과)	〃
○ 고급시계(200만원 초과)	〃
○ 고급융단(200만원 초과)	〃
○ 고급가방(200만원 초과)	〃
○ 고급가구(개당500/조당800만원 초과)	〃
〈제4호〉	
○ 휘발유	475원/ℓ (529원/ℓ)
○ 경유	340원/ℓ (375원/ℓ)
○ 등유	90원/ℓ (63원/ℓ)
○ 중유	17원/ℓ
○ 프로판(LPG) (가정용·상업용)	20원/kg 14원/kg
○ 부탄(LPG)	252원/kg (275원/kg)
○ 천연가스(LNG)	60원/kg (42원/kg)
(발전용)	12원/kg (8.4원/kg)
○ 부생연료유	90원/ℓ (63원/ℓ)
○ 유연탄(발전용)	46원/kg (43원, 49원)

품 목	세 율
〈제3호〉	
○ 승용자동차	
- 2,000cc 초과, 캠핑용자동차	5%
- 2,000cc 이하, 이륜자동차	5%
* 1,000cc 이하 경차 과세제외	
○ 전기승용자동차	5%
〈제6호〉	
○ 피우는 담배	
- 궐련(20개비)	594원
- 파이프담배·각련	21원/g
- 엽궐련	61원/g
- 전자담배	
(액체형)	370원/㎖
(궐련형)	529원
(일반고체형)	51원/g
- 물담배	422원/g
○ 씹거나머금는 담배	215원/g
○ 냄새 맡는 담배	15원/g
〈과세장소〉	
○ 경마장	1,000원
○ 투전기장	10,000원
○ 골프장(대중형 제외)	12,000원
○ 카지노	50,000원
- 폐광지역(내국인)	6,300원
- 외국인	0원
○ 경륜장·경정장	400원
〈과세유흥장소〉	
유흥주점·외국인전용유흥주점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10%
〈과세영업장소〉	
○ 카지노 (매출액) 500억원이하	0%
1,000억원이하	2%
1,000억원초과	4%

주」 1. 고급가방은 '14년부터 과세

2. 제4호 품목 중 휘발유·경유는 교통·에너지·환경세 적용
유연탄 탄력세율 : 5,000kcal/kg이상 5,500kcal/kg미만은 기본세율 46원, 5,500kcal/kg이상 49원, 5,000kcal/kg미만 43원 적용 (순발열량 기준, '19.4.1.~)
천연가스(LNG) 탄력세율 : 42원, 기재부령으로 정하는 발전용 이외의 물품에 적용('15.7.1.~)
발전용 천연가스(LNG) 기본세율 : 12원/kg (열병합발전, 수소제조용 탄력세율 8.4원/kg)

3. ()안 세율은 현재 적용되는 탄력세율
- 유류세 한시적 인하에 따른 경감 탄력세율(~'24.8.31.): (휘발유) 423원/ℓ, (경유) 263원/ℓ, (부탄) 193원/kg
- 발전연료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에 따른 경감 탄력세율(~'24.12.31.): (발전용LNG, 열병합용 제외) 10.2원/kg, (유연탄, 5,500kcal~) 41.6원/kg, (유연탄, 5,000~5,500kcal) 39.1원/kg, (유연탄, ~5000kcal) 36.5원/kg

4. 장외경마장 2,000원, 장외 경륜장·경정장 800원

5. 강원랜드는 2012.1.1. 이후(외국인전용 카지노는 2014.1.1. 이후) 매출분부터 과세

* 승용자동차에 대한 세율 적용의 특례(개별소비세법 개정법률안 부칙, '2013.3.15일 시행)

과세대상	적용기간 및 세율				
	2012.1.1. ~ 2012.3.14.	2012.3.15. ~ 2012.12.31.	2013.1.1. ~ 2013.12.31.	2014.1.1. ~ 2014.12.31.	2015년 이후
2,000cc 초과 승용자동차, 캠핑용자동차	100분의 10	100분의 8	100분의 7	100분의 6	100분의 5

<참고> 납세의무자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분류

과 세 대 상	납 세 의 무 자	과 세 표 준
제조장 과세물품	과세물품을 제조·반출하는 자	○ 시계·가방·모피 등 : 반출가격-기준가격 ○ 석유류 : 반출수량
수입 과세물품	수입업자	○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를 합한 금액
과세장소	과세장소 경영자	○ 인원
과세유흥장소	과세유흥장소 경영자	○ 요금

* 과세표준 경감(기준판매비율)제도 (2023.7.1. 이후 반출분부터)
 - 제조자가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등은 실제 반출가격에서 기준판매비율만큼 차감한 금액으로 과세
 - 기준판매비율 : 자동차 18%, 가구 38.9%, 모피 24.6%

나. 세 율

(1) 기본세율 :

○ 과세물품 : 종가세(5%, 20%), 종량세(석유류, 담배)

○ 과세장소 : 정액세(골프장,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카지노, 투전기 시설장소)

○ 과세유흥장소 : 종가세(유흥주점 10%)

○ 과세영업장소 : 종가세(카지노 연간 총매출액 500억원 이하 면제, 500억원 초과분 2%, 1,000억원 초과분 4%)

(2) 탄력세율 : 경기조절, 가격안정, 수급조정상 필요한 경우와 유가변동에 따른 지원사업의 재원 조달에 필요한 경우 기본세율의 상하 30%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함

다. 비과세

(1) 자기(법인 제외) 또는 자기가족만이 사용하기 위하여 자기가 직접 제조하는 물품

(2) 「관세법」에 따라 간이세율을 적용하는 물품

(3) 「축산물위생관리법」·「약사법」 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제조장에서 수거되는 물품

(4) 알코올분 1도 이상을 함유하는 물품으로서 「주세법」에 따라 주세가 부과되는 물품

라. 신고·납부

(1) 신고 :

- 과세물품의 경우 판매·반출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달 25일까지 신고 (단, 석유류, 담배는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신고)
- 과세장소의 경우 입장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달 25일까지 신고
- 과세유흥장소의 경우 유흥음식행위를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신고
- 과세영업장소의 경우 영업행위를 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말일까지 신고

※ 과세물품의 공매·경매시, 판매장·제조장·과세장소·과세유흥장소·과세영업장소의 영업을 폐업한 경우 사유 발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신고

(2) 납부 : 신고서 제출기한 내에 납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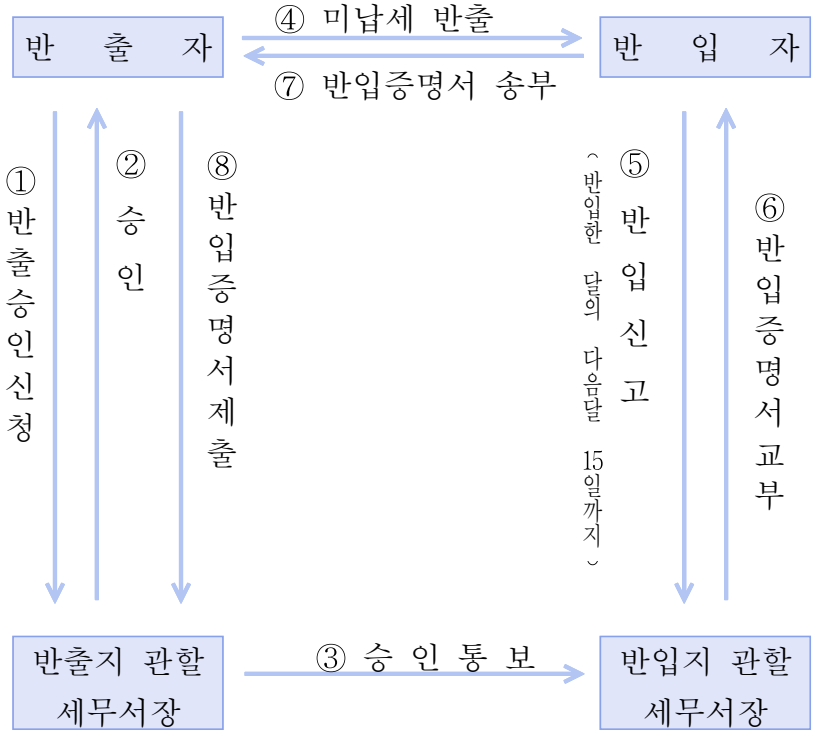
마. 미납세 반출 및 면세제도

(1) 미납세 반출

단순한 보관장소의 이동, 제조공정상 필요에 의한 이동 및 수출을 위한 이동 등에 대해 개별소비세의 징수를 유보하는 제도

- 수출할 물품을 다른 장소에 반출하는 것
- 국내에서 개최하는 박람회·전시회·품평회·전람회 등에 출품하기 위하여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는 것 등
- 원료를 공급받거나 위탁공임만을 받고 제조한 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위탁자의 제품저장창고에 반출하는 것
- 제조장 이외의 장소에서 규격검사를 받기 위하여 과세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당해 제조장에 환입하는 것
- 품질불량 기타 사유로 인하여 제조장에 반환하는 것 등

<미납세 반출절차도>



* 승인신청의 특례에 의할 때 ①~③의 절차가 생략됨

(2) 면세

특정한 용도에 사용되는 과세물품을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경우 세액을 면제해 주는 제도

(가) 수출 및 군납(주한외국군) 면세

(나) 외교관면세

○ “주한외교공관등”에서 공용품으로 수입하거나 제조장에서 구입하는 것

○ “주한외교관등” 또는 그 가족이 자가용품으로 수입하는 것

○ 주한외교공관등과 주한외교관등이 사용하는 자동차에 사용되는 석유류

(다) 외국인전용판매장면세

외국인전용판매장에서 비거주자 또는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주한외교관등에게 판매하는 물품

(라) 조건부 면세

반출·수입시에 개별소비세를 면제하되, 반입지에 반입한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하거나, 반입후에 용도변경 등이 이뤄진 경우 개별소비세를 징수(용도변경 등의 경우에는 신고·납부)하는 제도

· 원자로·원자력 또는 동위원소의 생산·사용·개발에 공하거나 그 물품의 제조용원료로 사용하는 물품

· 보석으로서 이화학실험연구용·공업용 및 축음기침 제작용의 것

· 승용차 : 18세 미만의 자녀 3명이상이 양육하는 사람이 구입(감면한도 300만원, 가족관계등록부 기준), 장애인 구입(감면한도 500만원, 장애인 승차를 위한 특수장비설치비용은 과세표준에서 제외), 환자수송전용,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대여사업용, 기업부설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가 신제품 또는 신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시험·연구용으로 수입하여 사용하는 것

· 외국으로부터 자선·구호를 위하여 자선·구호기관·단체에 기증되는 것

· 외국으로부터 사원·교회 등에 기증되는 의식용품 또는 예배용품

· 학교·보육시설·과학관·박물관·물품진열소등에 진열하거나 교재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표본 또는 참고품

- 외국으로부터 학술연구 또는 교육용에 사용하게 하기 위하여 학술연구단체 또는 교육기관에 기증되는 것
- 재수출할 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것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것
- 외국항행선박·원양어업선박 또는 항공기에 사용하는 석유류
- 의료용·의약품제조용·비료제조용·농약제조용 또는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
- 외국무역선·원양어업선박 또는 외국항행항공기에서 사용할 것으로 인정되는 연료 이외의 소모품
- 산업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유연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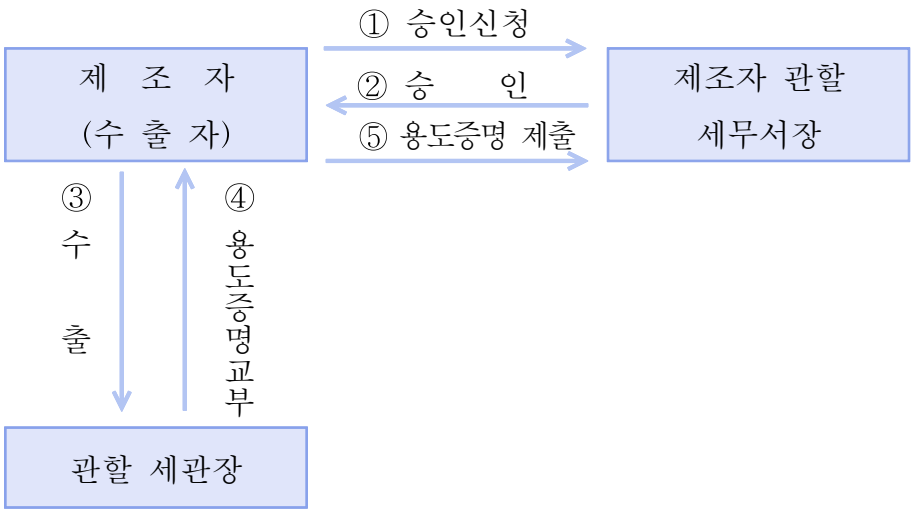
(마) 무조건 면세

특정한 용도에 사용되는 과세물품을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경우 아무런 조건을 붙이지 아니하고 세액을 면제해 주는 제도

- 외국의 자선 또는 구호기관·단체에 기증하는 것
- 외국으로부터 수여되는 훈장·기장 또는 이에 준하는 표창품·상패
- 외국에 항행중인 군함 또는 재외공관으로부터 송부되는 공용품
- 우리나라의 선박 기타 운송기관이 조난으로 인하여 해체된 경우의 해체재·장비품
- 수출물품의 용기로서 재수입하는 것
- 외국무역선 또는 원양어업선박이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내항선이 된 경우에 선박에 실린 것으로서 그 선박안에서 사용할 것으로 인정되는 연료 기타 소모품중 관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증하는 것
- 군사원조로 수입하는 원조물품 또는 그 물품을 원료로 하여 제조하는 군수용 물품. 다만, 원조물품 이외의 물품을 원료로 섞어 사용하는 경우에 그 원료에 대하여는 면제하지 않음
- 거주이전 외의 목적으로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사람이 입국할 때에 휴대하여 수입하거나 따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자기가 직접 사용할 것으로 인정되어 관세가 면제되는 것

-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입국하는 사람이 입국하는 때에 휴대하여 수입하거나 따로 수입하는 이사화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
-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해당 거주자가 사용할 것으로 인정되어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
-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상업용 견본 또는 광고용 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것
- 외국에서 개최되는 박람회등에 출품하기 위하여 해외로 반출하는 것
- 개별소비세가 부과된 물품으로서 수출한 후 이 법에 따른 환급 또는 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것을 관할세무서장이 증명하는 물품이 재수입되어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것
- 국내에서 제조한 물품으로서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물품이 국외로 반출된 후 수출신고수리일로부터 6개월 내에 재수입됨으로써 과세물품이 되는 경우에 그 물품의 제조·가공에 사용한 원재료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면제·환급 또는 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것을 관할세무서장이 증명하는 물품이 재수입되어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것
- 국가원수의 경호용으로 사용할 물품

<면세반출절차도(수출의 경우)>



* 승인신청의 특례규정에 의할 때 ①·②절차가 생략되고, 용도증명은 다음달 말일까지 과세표준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

바. 세액의 공제와 환급

(1) 이미 개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 또는 그 원재료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액을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에서 공제

(가) 과세물품의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과세물품을 반입하여 다른 과세물품의 제조·가공에 직접사용하는 것으로서 해당 세액을 납부·징수하는 경우

(나) 과세물품을 분해·미조립상태로 제조장·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여 가공·조립한 물품을 반출하는 것으로서 해당 세액을 납부·징수하는 경우

(2) 이미 개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원재료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이 있으면 이를 공제)

(가) 과세물품 또는 과세물품을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물품을 수출하거나 주한외국군에 납품하는 경우

(나)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물품과 그 물품의 원재료로 사용되는 물품

(다) 판매장·제조장으로부터 판매·반출된 과세물품을 품질불량, 변질, 자연재해 등의 사유로 같은 판매장·제조장(석유류의 경우 같은 회사의 다른 제조장을 포함) 또는 하치장에 환입한 것(중고품 제외,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교환이나 환불되어 환입한 중고품 포함)으로서 그 환입할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달 25일(석유류는 그 환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환입된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확인을 받은 경우.

<참고> 최근 개별소비세율 변동 연혁

구 분	세 율								
	'02.1	'03.7	'04.(3)10	'06.1	'09.1*	'10.1	'16.1	'17.1	'18.1
제1호 물품									
- 투전기, 오락용 사행기구	20%	20%	20(14)%	20%	28%	20%	20%	20%	20%
- 수렵용 총포류	20%	20%	20(14)%	20%	28%	20%	20%	20%	20%
- 골프용품	20%	20%	폐지	-	-	-	-	-	-
- 모타보트·요트류	20%	20%	폐지	-	-	-	-	-	-
- 수상스키용품	20%	20%	폐지	-	-	-	-	-	-
- 공기조절기	20%	16%	폐지	-	-	-	-	-	-
- 영사기·촬영기	20%	20%	폐지	-	-	-	-	-	-
- 프로젝션·PDP TV	10% [1%]	8% [0.8%]	폐지	-	-	-	-	-	-
제2호 물품									
- 녹용·로얄제리	7%	7%	7(4.9)%	7%	9%	7%	녹용 폐지 7%	폐지	폐지
- 방향용 화장품	7%	7%	7(4.9)%	7%	10%	7%	폐지	폐지	폐지
- 보석·귀금속(500만원)	20%	20%	20(14)%	20%	26%	20%	20%	20%	20%
- 고급사진기(200만원)	20%	20%	20(14)%	20%	26%	20%	폐지	폐지	폐지
- 고급시계(200만원)	20%	20%	20(14)%	20%	26%	20%	20%	20%	20%
- 고급모피(500만원)	20%	20%	20(14)%	20%	28%	20%	20%	20%	20%
- 고급융단(200만원)	20%	20%	20(14)%	20%	26%	20%	20%	20%	20%
- 고급가방(200만원)	-	-	-	-	-	20%	20%	20%	20%
- 고급가구(500/800만원)	20%	20%	20(14)%	20%	28%	20%	20%	20%	20%

* 농어촌특별세 및 교육세 폐지 후 개별소비세율로 환원예정이었으나 미 시행
주」 '04.3월부터 () 탄력세율 적용, [] 잠정세율 적용

구 분	세 율													
	'02.1	'03.7	'04.(3)	'06.1	'08.12.19 ~ '09.06.30	'10.1.1 ~ '12.9.10	'12.9.10 ~ '12.12.31	'13.1.1 ~ '15.8.26	'15.8.27 ~ '16.6.30	'16.7.1 ~ '18.8.6	'18.8.7. ~ '19.12.31.	'20.3.1. ~ 6.30.	'20.7.1. ~ '23.6.30.	'23.7.1.-
제3호 물품														
- 승용자동차														
· 2,000cc 이하 · 이륜자동차	10(7.5) %	5%	5(4) %	5%	6.5(3.5) %	5%	5(3.5) %	5%	5(3.5) %	5%	5(3.5) %	5(1.5) %	5(3.5) %	5%
· 2,000cc 초과 · 캠핑용 자동차	14(10) %	10%	10(8) %	10%	13(7) %	10%	10(6.5) %	10%	5(3.5) %	5%	5(3.5) %	5(1.5) %	5(3.5) %	5%
· 전기승용자동차						5%	5%	5%	5(3.5) %	5%	5(3.5) %	5(1.5) %	5(3.5) %	5%

* '08년도 이전 경차 기준 800미만 이후 1000cc미만

** 전기승용자동차 '12년 이후 과세

구 분	세 율															
	'07.7	'08.1	'08.4	'09.1*	'10.1	'11.1	'13.1	'14.1	'14.7	'15.1	'15.7	'16.2	'17.4	'18.4	'19.4	'24.2
제4호 물품																
-등유 (원/ℓ)	181 (134)	90 (63)	90	104	90 (63)	90	90	90	90 (63)							
-중유 (원/ℓ)	17	17	17	17	17	17	17	17	17							
-부탄 (원/kg)	360 (275)	360 (275)	360 (252)	290 (275)	252 (275)	252 (275)	252 (275)	252 (275)	252 (275)							252 (275, 176.4)
-프로판 (원/kg)	40	40 (28)	20	20	20	20	20	20	20 (14)							20 (14, 14)
-LNG (원/kg)	60	60 (42)	60 (42)	60	60	60	60	60	60 (42)							60, 12 (42, 8.4)
-부생연료유 (원/ℓ)	147 (103)	90 (47)	90 (47)	104 (76)	90 (72)	90	90	90	90 (63)							
-유연탄 (원/kg)	-								24 (19.17)	24 (19.17)	24 (22)	24 (21.27)	30 (27,33)	36 (33,39)		46 (43, 49)

주1」수소제조용 부탄 탄력세율: 176.4원/kg, '24.2.29.~

주2」가정용·상업용 프로판 탄력세율: 14원/kg, '14.2.21.~

수소제조용 프로판 탄력세율: 14원/kg, '24.2.29.~

주3」발전용 LNG 기본세율: 12원/kg (열병합발전 등 LNG탄력세율: 8.4원/kg, '19.4.1~

* 제4호 물품 중 부탄의 경우, 유류세 한시적 인하에 따라 '08.3.10.~12.31.: 252원/kg, '18.11.6.~'19.5.6.: 234원/kg, '19.5.7.~8.31.: 256원/kg, '21.11.12.~'22.4.30.: 220원/kg, '22.5.1~6.30.: 193원/kg, '22.7.1.~'24.6.30.: 176.4원/kg, '24.7.1.~10.31.: 193원/kg

* 제4호 물품 중 발전연료의 경우,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에 따라 '22.8.1.~'24.12.31.: (발전용 LNG, 열병합용 제외) 10.2원/kg, (유연탄, 5,500kcal~) 41.6원/kg, (유연탄, 5,000~5,500kcal) 39.1원/kg, (유연탄, ~5000kcal) 36.5원/kg

* 농어촌특별세 및 교육세 폐지 후 개별소비세율로 환원예정이었으나 미 시행

구 분	세 율													
	'07.7	'08.1	'08.4	'09.1	'10.4	'11.1	'13.1	'14.1	'14.7	'15.1	'15.7	'16.1	'17.4	'17.11
제6호 물품														
궐련(20개비)	-			-					-	594	594	594	594	
파이프담배(g)	-			-					-	21	21	21	21	
엽궐련(g)	-			-					-	61	61	61	61	
각련(g)	-			-					-	21	21	21	21	
액상전자담배(㎖)	-			-					-	370	370	370	370	
궐련전자담배(20개비)														529
고체전자담배(g)														51
물담배(g)	-			-					-	422	422	422	422	
씹는담배(g)	-			-					-	215	215	215	215	
맡는담배(g)	-			-					-	15	15	15	15	

구 분	세 율										
	'07.7	'08.1	'08.4	'09.1*	'09.4	'14.7	'15.1	'15.7	'16.1	'17.4	'17.11
과세장소											
-경마장(장외)	500			650	500	1,000			1,000(2,000)		
-경륜장(장외)	200			260	200	400			400(800)		
-경정장(장외)	-			260	200	400			400(800)		
-투전기 시설장소	10,000			13,000	10,000	10,000			10,000		
-골프장 (회원제,비회원제)	12,000			19,200	12,000	12,000			12,000		
-카지노	50,000			65,000	50,000	50,000			50,000		
(외국인)	-			2,600		-			-		
(폐광지역)	3,500			4,550	3,500	5,250			6,300		
과세유흥장소											
-유흥주점	10%			13%	10%	10%					

* 농어촌특별세 및 교육세 폐지 후 개별소비세율로 환원예정이었으나 미 시행

2. 교통·에너지·환경세

가. 연 혁

(1) 도로 및 도시철도 등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휘발유와 경유에 대하여 교통세를 신설하여 10년간(1994～2003) 한시적으로 적용

(2) 교통·에너지·환경세로 명칭 변경하여 과세시한을 2024년까지 연장

나. 과세대상 및 세율

(1) 기본세율

○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 475원/ℓ

○ 경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 340원/ℓ

(2) 탄력세율

- 교통시설의 확충과 대중교통 육성 사업,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 환경의 보전·개선사업 및 유가 변동에 따른 지원 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과 해당 물품의 수급상 필요한 경우에 기본세율의 30%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음

- 현행 탄력세율: (휘발유) 529원/ℓ (경유) 375원/ℓ

※ 단, 유류세 한시적 인하에 따라

'18.11.6.～'19.5.6.까지 (휘발유) 450원/ℓ (경유) 319원/ℓ

'19.5.7.～'19.8.31.까지 (휘발유) 492원/ℓ (경유) 349원/ℓ

'21.11.12.～'22.4.30.까지 (휘발유) 423원/ℓ (경유) 300원/ℓ

'22.5.1.～'22.6.30.까지 (휘발유) 370원/ℓ (경유) 263원/ℓ

'22.7.1.～'22.12.31.까지 (휘발유) 332.5원/ℓ (경유) 238원/ℓ

'23.1.1.～'24.6.30.까지 (휘발유) 396.7원/ℓ (경유) 238원/ℓ

'24.7.1.～'24.10.31.까지 (휘발유) 423원/ℓ (경유) 263원/ℓ

다. 납세의무자

(1)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

(2) 과세물품을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자

(3) 과세물품을 수입하는 자

라. 신고 ·납부

(1) 과세물품을 제조장 등으로부터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신고・납부

마. 미납세 반출 및 면세제도

(1) 미납세 반출

단순한 보관장소의 이동, 제조공정상 필요에 의한 이동 및 수출을 위한 이동 등의 경우 개별소비세의 징수를 유보하는 제도

- 수출할 물품을 다른 장소에 반출하는 것
- 원료를 공급받거나 위탁공임만을 받고 제조한 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위탁자의 제품저장창고에 반출하는 것
- 제조장 이외의 장소에서 규격검사를 받기 위하여 과세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당해 제조장에 환입하는 것
- 품질불량 기타 사유로 인하여 제조장에 반환하는 것 등

(2) 면세

특정한 용도에 사용되는 과세물품을 판매장에서 판매하거나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함에 있어 세액을 면제해 주는 제도

(가) 수출 및 군납(주한외국군) 면세

(나) 외교관면세

주한외교공관등과 주한외교관등이 소유하는 자동차에 사용하는 경우

(다) 조건부 면세

반출・수입시에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면제하되, 반입지에 반입한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하거나, 반입후에 용도변경 등이 이뤄진 경우 교통·에너지·환경세를 징수하는 제도

・외국으로부터 자선·구호를 위하여 자선·구호기관·단체에 기증되는 것
・재수출할 물품을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것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것
・외국항행선박·원양어업선박 또는 항공기에 사용하는 것
・의료용・의약품제조용・비료제조용・농약제조용 또는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것

(라) 무조건 면세

○ 특정한 용도에 사용되는 과세물품을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함에 있어 아무런 조건을 붙이지 아니하고 세액을 면제해 주는 제도

- 외국의 자선 또는 구호기관·단체에 기증하는 것
- 외국무역선 또는 원양어업선박이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내국무역선이 된 경우에 선박에 적재된 것으로서 그 선박안에서 사용할 것으로 인정되는 연료 중 관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증하는 것
- 군사원조에 의하여 수입하는 원조물품 또는 그 물품을 원료로 하여 제조하는 군수용 물품
- 교통·에너지·환경세가 부과된 물품으로서 수출한 후 이 법에 따른 환급 또는 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것을 관할세무서장이 증명하는 물품이 재수입되어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것
- 국내에서 제조한 물품으로서 교통·에너지·환경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물품이 국외로 반출된 후 수출면허일로부터 6월내에 재수입됨으로써 과세물품이 되는 경우에 그 물품의 제조·가공에 사용한 원재료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면제·환급 또는 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것을 관할세무서장이 증명하는 물품이 재수입되어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것

바. 세액의 공제와 환급

(1) 이미 교통·에너지·환경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 또는 그 원재료를 그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여 과세물품의 제조·가공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액을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에서 공제함

(2) 이미 교통·에너지·환경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원재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이 있으면 이를 공제)

(가) 과세물품 또는 과세물품을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물품을 수출하거나 주한외국군에 납품하는 경우

(나)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한 과세물품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과세물품이 교통·에너지·환경세가 면세되는 경우

(다)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과세물품을 동일한 제조장에 환입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

(라) 과세물품이 의료용·의약품제조용·비료제조용 또는 농약제조용 원료로 사용되는 경우와 항공기·외국항행선박·원양어업선박 또는 주한외교공관등에서 사용되는 경우

9. 주 세

1. 과세대상 및 세율 / 255
2. 납세의무자 및 신고·납부방법 / 258
3. 주세의 면제 / 258
4. 주류제조 및 판매면허 / 259
5. 전통주에 대한 지원 / 260
6. 「소규모맥주제조(Micro Brewery)」 제도 / 261

작성자 : 환경에너지세제과장 김정주

1. 과세대상 및 세율

가. 과세대상 : 주류(주정과 알콜분 1도 이상의 음료)

주류의 종류		주 세 법 상 정 의	첨 가 재 료
주 정		녹말,당분,알코올분이 포함된 재료를 알코올분 85도이상으로 증류한 것	
발효주	탁 주	녹말이 포함된 재료(발아시킨 곡류 제외)와 국 및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술덧을 여과하지 아니하고 혼탁하게 제성한 것	아스파탐,스테비올배당체,효소처리스테비아,삭카린나트륨,젖산,주석산,구연산,아미노산류,수크랄로스,토마틴,아세설팜칼륨,에리스리톨,자일리톨,산탄검,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당분,알룰로오스,식물
	약 주	녹말이 포함된 재료(발아시킨 곡류 제외)와 국 및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술덧을 여과하여 제성한 것	아스파탐,스테비올배당체,효소처리스테비아,젖산,주석산,구연산,아미노산류,식물,수크랄로스,토마틴,아세설팜칼륨,에리스리톨,자일리톨,당분
	청 주	곡류 중 쌀과 국 및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술덧을 여과하여 제성한 것 또는 발효·제성과정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를 첨가한 것	아스파탐,스테비올배당체,효소처리스테비아,젖산,주석산,구연산,아미노산류,식물,수크랄로스,토마틴,아세설팜칼륨,에리스리톨,자일리톨,당분,산분,조미료,향료, 색소
	맥 주	엿기름(밀엿기름을 포함)과 홉, 밀·쌀·보리·옥수수·수수·감자·녹말·당분·캐러멜 등의 것 중 하나 이상의 것과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켜 제성하거나 여과하여 제성한 것	당분·산분·조미료·향료·색소·식물·아스파탐·스테비올배당체·솔비톨·수크랄로스·아세설팜칼륨·에리스리톨·자일리톨·효소처리스테비아·우유·분유·유크림·아스코르빈산, 「식품위생법」에 따라 허용되는 식품첨가물 중 유화제·증점제·안정제 등 성상의 변화 없이 품질을 균일하게 유지시키는 것
	과실주	과실을 원료로 하여 당분과 물을 혼합하여 발효시킨 술덧을 여과하여 제성하거나 나무통에 넣어 저장한 것	당분·산분·조미료·향료·색소·아스파탐·스테비올배당체·솔비톨·수크랄로스·아세설팜칼륨·에리스리톨·자일리톨·효소처리스테비아,·사카린나트륨·아스코르빈산·식물·아스파탐·스테비올배당체·솔비톨·수크랄로스·아세설팜칼륨·에리스리톨·자일리톨·효소처리스테비아

주류의 종류		주 세 법 상 정 의	첨 가 재 료
증류주	소주	녹말이 포함된 재료, 국과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켜 연속식증류 외의 방법으로 증류한 것과 주정 또는 곡물주정을 물로 희석한 것	당분·구연산·아미노산류·소르비톨·무기염류·스테비올배당체·효소처리스테비아·사카린나트륨·아스파탐·수크랄로스·토마틴·아세설팜칼륨·에리스리톨·자일리톨·다(茶)류(단일침출자 중에서 가공곡류차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알룰로오스·오크칩
	위스키	발아된 곡류와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술덧을 증류해서 나무통에 넣어 저장한 것	당분, 산분, 조미료, 향료, 색소
	일반증류주	수수 또는 옥수수, 그밖에 녹말이 포함된 재료와 국을 원료로 하여 물을 뿌려 섞은 것을 발효시켜 증류한 것	당분·산분·조미료·향료·색소·식물·아스파탐·스테비올배당체·솔비톨·수크랄로스·아세설팜칼륨·에리스리톨·자일리톨·효소처리스테비아
	브랜디	과실주를 증류하여 나무통에 넣어 저장한 것	당분, 산분, 조미료, 향료, 색소
	리큐르	일반증류주로서 불휘발분이 2도 이상인 것	당분·산분·조미료·향료·색소·식물·아스파탐·스테비올배당체·솔비톨·수크랄로스·아세설팜칼륨·에리스리톨·자일리톨·효소처리스테비아·우유·분유·유크림, 「식품위생법」에 따라 허용되는 식품첨가물 중 유화제·증점제·안정제 등 성상의 변화 없이 품질을 균일하게 유지시키는 것
기타주류		가목 : 분말주 나목 : 탁주, 약주류, 맥주, 과실주 이외의 발효주 다목 : 조미주(미림, 맛술) 라목 : 발효주+증류주(주정내지 리큐르 이외의 주류) 마목 : 기타주류의 기타	당분, 산분, 조미료, 캐러멜색소 (법 별표 제4호다목에 한함)

나. 세율 : 주류의 종류에 따라 세율을 달리한다.

주 종	규 격	현 행 세 율
주 정	85도 이상	57,000원/㎘(85~95도) (알콜분 95°초과하는 매1도마다 600원씩 가산)
탁 주		44,400원/㎘
맥 주		885,700원/㎘
<발효주>		
약 주		30%
청 주		30%
과실주		30%
<증류주>		
소주		72%
위스키		72%
브랜디		72%
일반증류주		72%
리큐르	불휘발분 2도 이상	72%
<기타주류>		
발효방법에 의한 제성주류로서 발효주가 아닌 것		72%
발효에 의하여 숙성한 주류로서 탁주, 약주, 청주, 맥주, 과실주 이외의 것		30%

주」 1. 주세액에 대한 교육세율 : 맥주 및 주세율 70% 초과 주류는 30%, 주세율 70% 이하의 주류는 10%(단, 주정·탁주·약주는 과세제외)
2. 소규모 전통주의 주세율 : 각 주종별 세율의 50%
3. 중소기업 맥주 : 과세대상 출고수량에 500㎘까지 과세표준의 70%적용
4. 소규모 맥주 : 과세대상 출고수량에 200㎘까지 과세표준의 40%, 200㎘부터 500㎘까지 과세표준의 60%, 500㎘초과 과세표준의 80%적용
5. 소규모 탁주 : 과세대상 출고수량에 5㎘까지 과세표준의 60%, 5㎘초과 과세표준의 80%적용
6. 별도의 추출장치를 사용하는 8ℓ이상의 용기에 담아 판매되는 맥주 : 맥주 세율의 80%(~'26.12.31.)

다. 부과방식 : 종가세(출고가격 또는 수입신고가격 × 세율)
종량세(출고량 × 세율)

2. 납세의무자 및 신고·납부방법

가. 납세의무자

(1) 주류를 제조하여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는 자

(2) 주류를 수입하는 경우 관세법에 의하여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

나. 신고 및 납부

(1) 국내주류제조자는 매분기 출고분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출고한 날이 속하는 분기 다음달 25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사례 : 19년 4/4분기에 출고한 경우 20년 1월 25일까지 세무서에 신고·납부)

(2) 주류수입자는 수입 신고하는 때에 관세법에 의한 신고서를 관할세관장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3. 주세의 면제

가. 주류 반출에 대한 주세 면제

(1) 수출하는 것

(2)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외국군대 또는 외국에 주둔하는 국군부대에 납품하는 것

(3) 주한외국공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에 납품하는 것

(4) 외국선원휴게소에 납품하는 것

(5) 주류면허법 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검사목적으로 수거하는 것

(6)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무형문화재로 지정받은 기능보유자가 제조한 주류로서 무형문화재 공개에 사용되는 것

(7) 약사법에 따라 의약품을 제조할 때 원료로서 사용되는 것

(8) 군이 직영하는 매점에서 군인·군무원 등에 판매되는 주류

(9) 주한외국국인 및 외국선원전용의 유흥음식점에 납품하는 것

나. 주류 수입에 대한 주세 면제

(1) 주한외국공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공용품으로 직접 수입하는 것 또는 주한외교관 및 이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자가소비용으로 직접 수입하는 것

(2) 사원·교회 기타 종교단체에 의식용으로 외국에서 기증한 것
(3) 여행자가 입국하는 때에 직접 가지고 들어오는 주류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것
(4) 약사법에 따라 의약품을 제조하기 위한 원료로서 수입하는 것
(5) 주류면허법 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검사목적으로 수거하는 것
(6) 수출된 주류가 변질, 품질불량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주류를 제조한 자의 주류 제조장 중 어느 한 곳으로 다시 들어온 것

4. 주류제조 및 판매면허

가. 주류를 제조 또는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 시설기준(담금·발효시설 등)을 충족하고 면허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면허를 부여한다.

나. 주류 면허별 판매 경로

		구 입	판 매
제조업			종합도매업, 특정도매업, 중개업, 유흥음식업자 * 탁주·약주·민속주·농민생산자단체 제조주류는 모든 도매업·소매업 및 실수요자에게 판매 가능
수출입업			종합도매업, 중개업, 소매업, 의제판매업, 유흥음식업자
종합도매업		제조업, 수입업	소매업, 의제판매업, 유흥음식업자
특정도매업		제조업	특정도매업, 소매업, 의제판매업, 유흥음식업자
소매업		수입업, 종합도매업, 특정도매업	가계 소비자
중개업	국내중개업	제조업·수출입업	수퍼·농수신협 매장
	수출중개업	제조업	외국

5. 전통주에 대한 지원

가. 전통주 정의

구 분	개 념	추천기관	면허
민속주	전통문화 전수·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류(무형문화재법)	문화재청장 시·도지사	세무서장
	주류부문의 전통식품명인이 제조한 주류(식품산업진흥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지역특산주	농어업경영체 또는 생산자단체가 스스로 생산하거나 주류제조장 소재지 관할 또는 인접 시·군·구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주원료로 생산한 주류(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도지사	

주」 민속주: 한산 소곡주, 안동소주, 문배주, 이강주, 금산 인삼주, 계룡 백일주 등
지역특산주: 고창 복분자주, 지리산 머루주, 광양 매실주, 진도 홍주 등

나. 지원내용

(1) 소규모로 생산되는 전통주*에 대해 일정규모(발효주 연 200㎘, 증류주 연 100㎘) 이하 주류에 대해서는 기본세율의 50%를 경감하여 적용한다.

* 직전 연도 출고량이 일정수준(발효주 : 500㎘, 증류주 : 250㎘) 이하 이거나 해당 연도에 신규면허자가 제조하는 주류

(2) 전통주 제조장의 시설기준은 일반주류 제조장 시설기준에 비해 완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구분	일반주류	지역특산주	민속주
탁주 약주	· 발효조 3㎘이상 · 제성조 2㎘이상	· 담금실 10㎡이상	· 담금실 10㎡이상
과실주	· 담금조 21㎘이상 · 저장검정조 22.5㎘이상	· 원료처리실 6㎡이상 · 담금실 20㎡이상	· 담금실 10㎡이상
증류식 소 주	· 담금조 5㎘이상 · 저장검정조 25㎘이상	· 담금실 25㎡이상	· 담금실 10㎡이상

주」 일반주류는 용기규모 기준, 전통주는 건물 면적기준임

(3) 도자기병과 포장물 가격 및 전통주에 사용되는 모든 용기 대금과 포장비용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모든 주류에 적용)
(4) 전통주의 판매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전통주를 전문적으로 취급할 수 있는 특정주류도매업면허를 부여한다.
(5) 전통주 제조자는 별도 판매면허 없이도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가 가능하다.
(6) 전통주에 대해서만 우체국 등을 통한 통신판매가 허용된다.

6. 「소규모맥주제조(Micro Brewery)」 제도

가. 의의

소비자의 다양한 기호를 충족하기 위하여 맥주를 제조하여 그 영업장(해당 제조자가 직접 운영하는 다른 장소의 영업장을 포함)에서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영업장(「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또는 대형마트·슈퍼마켓·편의점 등에서 판매하는 제도

나. 면허 기준

(1) 일반맥주에 비해 최소한으로 완화된 시설기준을 적용
(2) 주세보전을 위한 납세담보제공, 원료구입, 제조투입, 제품수량 등 기장의무 부여

다. 과세표준

주류 제조장에서 실제 반출한 수량의 80%(해당 주조연도의 과세대상 출고수량 중 먼저 출고된 200킬로리터 이하는 40%, 200킬로리터 이상 500킬로리터 이하의 수량에 대해서는 60% 적용)

라. 세율 : 885,700원/kl(일반맥주와 동일)

10. 인지세제

1. 과세문서 / 265
2. 세액체계 / 265
3. 비과세문서 / 266

작성자 : 부가가치세제과장 최진규

1. 과세문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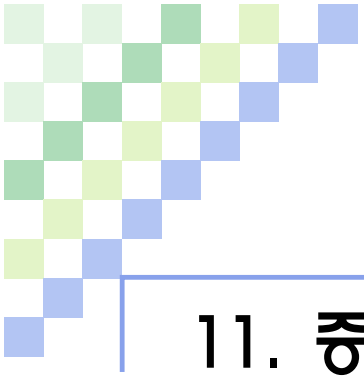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 기타 이를 증명하는 문서로서 법률에 규정된 것만 과세

2. 세액체계

과 세 문 서	세 액
1. 부동산·선박·항공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2. 금융·보험기관과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3. 도급·위임증서 중 법률에 따라 작성하는 문서 4. 광업권·무체재산권·어업권·양식업권·출판권·저작인접권·상호권의 양도증서 5. 시설물이용권의 입회·양도 증서(회원제골프장, 휴양콘도미니엄 등)	기재금액 세 액 1~3천만원 : 2만원 3~5천만원 : 4만원 5천만~1억원 : 7만원 1~10억원 : 15만원 10억원 초과 : 35만원
6.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여야 하는 동산의 소유권 양도 증서	3천원
7. 계속적·반복적 거래증서 - 신용카드회원 가입신청서 - 신용카드가맹점 가입신청서	 3백원 3백원
8. 상품권(모바일 상품권은 제외), 선불카드('20.3.31. 개정)	권면금액 세액 1만원 50원 1~5만원 200원 5~10만원 400원 10만원 초과 800원
8의2. 모바일 상품권(판매일부터 7일 이내에 판매가 취소되어 전액 환불되고 폐기되는 것은 제외)('20.3.31. 신설)	권면금액 세액 5~10만원 400원 10만원 초과 800원
9.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4백원
10. 예·적금증서 또는 통장, 환매조건부채권 매도약정서, 보험증권 및 신탁에 관한 증서 또는 통장	1백원
11. 시설대여 계약서	1만원
12. 채무보증에 관한 증서 - 사채보증 증서 - 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의 채무보증 증서 - 보증보험증권,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채무보증 증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자금 융자에 대한 신용보증 증서	 1만원 1천원 2백원

3. 비과세문서

○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하는 증서 또는 통장
○ 국고금의 취급에 관하여 작성하는 증서 또는 통장
○ 공공사업을 위한 기부를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는 증서
○ 자선·구호단체가 그 사업에 관하여 작성하는 증서
○ 주택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기재금액 1억원 이하인 것
○ 어음의 인수·보증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른 증권의 복본·등본
○ 금전소비대차증서로서 기재금액 5천만원 이하인 것
○ 「우편법」에 따른 우편전용의 물건에 관한 증서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토지 등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에 그 양도절차상 필요하여 작성하는 증서
○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법」에 따라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통화안정증권
○ 국제금융기구가 발행하는 채권 및 그 채권의 발행과 관련하여 작성하는 증서



11. 증권거래세제

1. 과세대상 / 269
2. 납세의무자 / 269
3. 비과세 / 269
4. 과세표준 / 269
5. 세율 / 270
6. 신고· 납부 / 270

작성자 : 금융세제과장 조용래

1. 과세대상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 다만, 외국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 양도 및 외국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해 인수인에게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

2. 납세의무자

가. 한국예탁결제원 : 다음 주권을 계좌 간 대체로 매매결제하는 경우

(1) 증권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

(2) 증권시장 밖에서 협회를 통해 장외매매거래 방식으로 양도되는 비상장주권

나. 금융투자업자 : 그 밖에 금융투자업자를 통해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

다. 양도자 : 그 밖에 사인간에 양도되는 주권. 다만,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금융투자업자를 통하지 않고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는 양수인

3. 비과세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119)」에 따라 주권을 매출하는 경우 (청약된 주권총수가 매출하려는 주권총수에 미달된 경우, 그 청약되지 않은 주권을 인수인이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

다. 주권을 목적물로 하는 소비대차의 경우

4. 과세표준

가. 한국예탁결제원이 납세의무자인 주권 : 당해 주권 등의 양도가액

나. 그 밖의 주권

(1) 주권 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 : 해당 주권 등의 양도가액.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규정하는 가액

○ 「소득세법(§101)」·「법인세법(§52)」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35)」에 따라 주권등이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7)」에 따른 정상가액에 의한 과세조정이 적용되는 제외)에는 그 시가액

○ 「소득세법(§126)」에 따른 비거주자 분리과세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법인세법(§92)」에 따른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7)」에 따라 주권등이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정상가격

(2) 주권 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 아래 어느 하나의 가액에 양도된 당해 주권 등의 거래수량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

○ 상장법인의 주권 등을 증권시장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 밖에서 양도하는 경우: 한국거래소가 공표하는 양도일의 매매거래 기준가액

○ 한국금융투자협회가 기준에 따라 거래되는 종목으로 지정한 주권 등을 기준 외의 방법으로 양도하는 경우: 금융투자협회가 공표하는 양도일의 매매거래 기준가액

○ 그 밖의 방식으로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 : 「소득세법 시행령(§165)」에 따라 계산한 가액

5. 세율

가. 법정세율 : 0.35%(비상장주식 등)

나. 탄력세율(2024년 기준)

(1) 유가증권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 : 0.03%

* 농어촌특별세(0.15%) 별도

(2) 코스닥에서 양도되는 주권 : 0.18%

(3) 코넥스에서 양도되는 주권 : 0.1%

(4) K-OTC에서 양도되는 주권 : 0.18%

6. 신고·납부

가. 한국예탁결제원, 금융투자업자 : 매월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나. 양도자, 양수자 : 매 반기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12. 교육세제

1. 도입목적 및 과세대상 / 273
2. 과세표준 및 세율 / 273
3. 비과세 / 273
4. 교육재정 흐름도 / 273

작성자 : 금융세제과장 조용래

1. 도입목적 및 과세대상

○ 교육의 질적 향상 도모에 필요한 교육재정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

○ 금융·보험업자(교육세법 별표)의 수익금액에 대한 과세와 개별소비세액·교통세액 및 주세액에 추가하여 부과(Surta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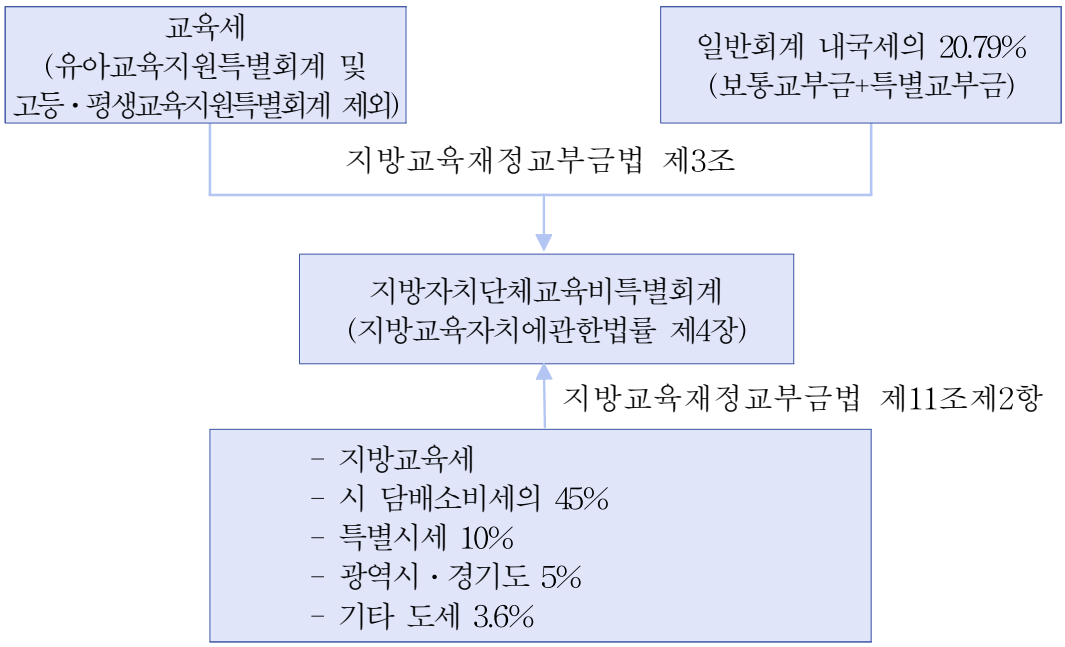
2. 과세표준 및 세율

과 세 표 준	세 율
○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	0.5%
○ 개별소비세액	30%(등유, 중유, 수송용부탄, 부생연료유의 경우 15%)
○ 교통·에너지·환경세액(휘발유, 경유)	15%
○ 주세액	10%(주세율 72%인 주류 또는 맥주의 경우 30%)

3. 비과세

금융·보험업자가 행하는 공익신탁의 신탁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액

4. 교육재정 흐름도



13. 농어촌특별세제

1. 도입목적 및 과세체제 / 277
2. 과세표준 및 세율 / 277
3. 비과세 / 277
4. 농어촌특별세 예산 체계도 / 278

작성자 : 조세특례제도과장 김문건

1. 도입목적 및 과세체제

○ UR타결에 따라 농어업의 경쟁력강화와 농어촌 산업기반시설의 확충 및 농어촌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제정

- 적용기간 : 1994. 7. 1～2034. 6. 30(40년간)

○ 조세감면액, 개별소비세금액, 증권거래금액, 취득세액 등에 추가하여 부과(Surtax)

2. 과세표준 및 세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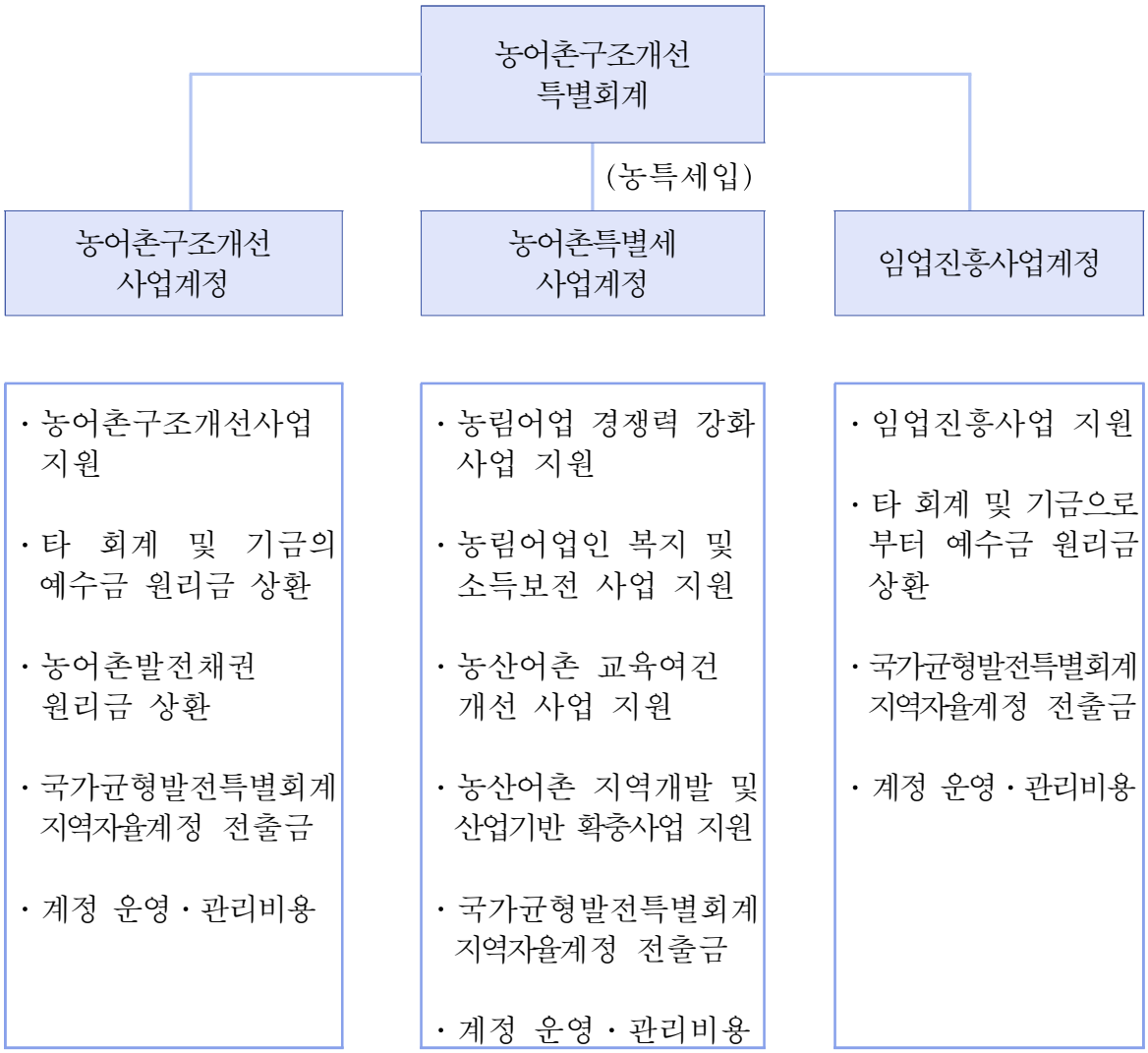
과 세 표 준	세 율	비 고
○ 조세감면액 - 내국세감면 - 관세감면 - 지방세감면	20%	○ 조특법·관세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을 받는 소득세·법인세·관세·취득세·등록면허세의 감면세액에 부과
○ 조세감면액 - 이자·배당소득세 감면	10%	○ 조특법에 따라 감면받은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세액에 부과
○ 개별소비세액	10% (골프장입장 30%)	○ 보석, 고급가구 등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할 개별소비세액에 부과
○ 증권거래금액	0.15%	○ 유가증권시장 상장주식의 양도가액에 부과
○ 취득세액 (표준세율을 2%로 적용)	10%	○ 부동산 등의 취득자 (서민·농가주택, 농지, 차량취득 등 제외)
○ 레저세액	20%	
○ 종합부동산세액	20%	

3. 비과세

○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및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

○ 농·어민 또는 연금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감면 등

4. 농어촌특별세 예산 체계도



14. 관 세

1. 관세개요 / 281
2. 관세율· 품목분류 / 287
3. 통관제도 / 301
4. 관세감면제도 / 306
5. 관세환급제도 / 312
6. 보세제도 / 316
7. 원산지제도 / 321
8. 관세범의 조사와 처분 / 323
9. 특혜관세무역협정 / 326
10. 자유무역협정(FTA) 특혜관세제도 / 336

작성자 : 관세일반 : 관세제도과장 김영현
관세율·품목분류 : 산업관세과장 최지훈
특혜관세무역협정 : 다자관세팀장 방우리
FTA특혜관세제도 : 관세협력과장 권기중
FTA관세이행과장 이종수

1. 관세개요

가. 관세의 개념

○ 관세영역(Customs Territory)을 출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

○ 부과대상물품의 성격에 따라 수출물품에 부과되는 수출관세와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수입관세로 구분, 우리나라의 경우 수입관세만 부과

나. 관세의 산출

(1) 산출방식

○ 관세 = 관세의 과세표준 × 관세율

- 종가세 물품 : 수입물품의 가격(과세가격) × 관세율표상 세율(예 : 8%)
- 종량세 물품 : 수입물품의 수량 또는 중량 × 단위당 납부세액(예 : 1,000원/kg)

(2) 과세표준

○ 수입물품의 가격(종가세), 수량 또는 중량(종량세)

- 종가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입물품의 가격인 『과세가격』은 관세평가(關稅評價 : customs valuation)를 통해 결정

※ 종가세 및 종량세

○ 종가세는 수입물품의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종량세는 수입물품의 수량 또는 중량을 과세표준으로 세액을 책정하는 방법

○ 우리나라 관세율표는 극히 일부 품목(영화필름과 비디오테이프)등에 대하여만 종량세로 부과하고 나머지 대부분은 종가세로 부과

○ 관세의 과세가격은 수입자(납세의무자)에게 신고하도록 함

(3) 관세율

○ 관세법은 별표로 관세율표('22년 기준 6,980개 세목)를 두어 기본관세율과 잠정관세율을 규정('22년 현재 잠정관세는 적용대상 품목 없음)

○ 그 외 관세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할당관세, 조정관세, 덤핑방지관세, 세계무역기구(WTO) 양허관세 등은 별도의 대통령령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그 세율과 적용대상 품목을 규정

○ 다른 나라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에 의한 협정관세율은 해당 협정 외에도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에 그 근거를 두고 대통령령으로 FTA별 협정관세율과 적용대상 품목을 규정

다. 기타 세액 산출방식

*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및 기타세액 산출방식
1. 관세 = 과세가격 × 관세율 2. 개별소비세 = (과세가격 + 관세) × 개별소비세율
3. 농어촌특별세 = 개별소비세 × 농특세율 4. 주세 = (과세가격 + 관세) × 주세율
5. 교육세 = 개별소비세 또는 주세 × 교육세율
6. 부가가치세 = (과세가격 + 관세 + 납부하는 모든 기타세액의 합계) × 10%

※ 세관장이 수입물품에 대해 징수하는 내국세(관세법 §4)
: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농어촌특별세 등

라. 납세의무자

○ 물품을 수입신고한 때의 화주

○ 물품을 수입한 화주가 불분명한 때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
-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인 때에는 그 물품의 수입을 위탁한 자
- 위에서 규정하는 대행수입이 아닌 때에는 상업서류(송품장·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에 기재된 물품수신인
- 수입물품을 수입신고전에 양도한 때에는 그 양수인

마. 과세가격의 결정(관세평가)

(1) 일반사항

○ 종가세의 대상이 되는 수입물품의 가격인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일련의 법정절차를 실무상 관세평가(關稅評價 : customs valuation)라고 함

(2) 과세가격 결정의 일반원칙(제1방법)

○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대하여 가산 및 공제 조정한 당해물품의 거래가격(去來價格 : transaction value)

○ 제1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 다음 방법을 순차 적용

○ 동종동질 물품의 거래가격(제2방법)
○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제3방법)
○ 수입 후의 국내판매가격(제4방법)
○ 생산비용을 산정한 가격(제5방법)
○ 기타, 합리적인 기준을 적용한 가격(제6방법)

※ 단, 수입자는 제4방법과 제5방법의 적용순위의 변경을 요청 가능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

구 분	적 용 요 건	정의 및 기준 등
가격신고	○당해물품 가격신고(납세자→세관장) ＊ 수입신고전 가격신고가능 ○가격신고서 제출 - 수입관련거래사항 - 과세가격산출내용 - 송품장 - 계약서 - 각종비용산출자료 - 기타 입증자료	▶가격신고생략 대상 ○정부 또는 지자체의 수입물품, 정부조달물품, 무세물품, 방산물품(추천받은 경우), 수출용 원재료, 특정연구기관이 수입하는 물품 등 ▶잠정가격신고 대상 ○거래관행상 일정기간후 가격이 결정되는 물품(원유, 곡물등) 등 ○확정가격 신고기한(2년이내) - 차액징수 또는 환급
당해물품 거래가격 (제1방법)	○지급하였거나 또는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서 아래의 요소를 조정한 가격 <가산요소>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구매수수료제외), 중개료, 용기, 포장비 및 재료비용,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품 또는 용역가격(예컨대 재료, 구성요소, 부분품, 공구, 몰드, 기술, 공예, 디자인 등)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및 유사권리사용료 ○판매자에게 귀속되는 수입후의 수익(사후귀속이익) ○수입항까지의 운임, 보험료 ○채권채무상계금액, 채무변제금액 등 <공제요소> ○수입후 건설, 정비, 조립 및 기술지원비 ○수입항 도착후 운임, 보험료, 운송관련비용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제세, 공과금 ○연불조건의 수입인 경우 연불이자 <거래가격원칙적용 배제요건>(2-6방법적용 대상) ○물품의 사용·처분에 제한,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이 있는 경우, 수익의 일부가 판매자에게 귀속되는 경우, 구매자와 판매자가 특수관계로서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 신고가격의 진실성과 정당성에 의심이 있어 입증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소명하지 못한 경우	▶권리사용료 가산요건 : 당해 물품에 관련되고, 당해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급하는 경우 ○특허권: 특허발명품, 방법에 관한 특허에 의하여 생산된 물품 등 ○의장권: 당해의장을 표현하는 수입물품 또는 의장권으로 생산한 물품 ○상표권: 수입물품에 상표가 부착된 경우 등 ○저작권: 수입물품에 가사·선율·영상·컴퓨터소프트웨어 등이 수록된 경우 ▶구매자와 판매자의 특수관계범위 -상호사업상 임원 또는 관리자, 법률상 동업자, 고용 관계, 의결권 있는 주식 5%이상 소유, 통제관계, 제3자를(에게) 관리, 지배, 친족관계 있는 경우

구 분	적 용 요 건	정의 및 기준 등
동종동질물품거래가격 (제2방법)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바 있는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 기초 ○당해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당해물품의 선적일에 선적되거나 당해물품의 선적일을 전후하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에 변동이 없는 기간 중에 선적되어 수입한 물품을 기초로 과세가격 산정 - 거래단계, 수량, 운송거리, 운송형태 등이 당해 물품과 동일하여야 하며, 차이가 있는 경우 이를 조정한 가격으로 함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이 둘 이상인 경우 당해물품과 거래내용 등이 가장 유사한 물품 가격 적용	▶동종동질물품의 정의 : "당해 수입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 물리적 특성, 품질 및 소비자 등의 평판을 포함한 모든 면에서 동일한 물품"
유사물품거래가격 (제3방법)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 ○동종동질물품 요건과 동일	▶유사물품의 정의 : "당해수입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 모든 면에서 동일하지는 아니하지만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대체사용이 가능할 수 있을 만큼 비슷한 특성과 구성요소를 가지는 물품"
국내판매가격 (제4방법)	○동종동질, 유사물품과 동일한 상태로 수입신고일 또는 거의 동시에 수입되어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가장 많은 수량으로 국내판매되는 단위가격을 기초로 하여, 판매수수료 또는 이윤 및 경비, 국내운임, 보험료. 조세 및 공과금을 공제한 가격 - 당해물품, 동종동일물품 또는 유사물품과 동일한 상태의 국내판매가 없는 경우 국내가공후 가장 많이 판매된 단위가격에서 가공비, 이윤 및 경비, 국내운임, 조세 등을 뺀 가격	▶국내판매되는 단위가격 : 수입후 최초거래에서 판매되는 가격 (다만,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 또는 생산지원사실이 있는 경우는 인정하지 아니함)
산정가격 (제5방법)	○당해 물품생산에 사용된 원자재 비용 및 조립 등의 비용에서 다음을 합한 가격을 기초로 과세 - 수출국 생산자의 통상의 이윤, 일반경비 해당금액 - 수입항까지 운임, 보험료	
합리적 기준가격 (제6방법)	○위 제1방법 내지 제5방법에 의하여도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 제1방법 내지 제5방법과 가장 부합되는 합리적 기준에 의거 과세가격결정	▶합리적 기준 : 각 요건 등의 신축적 해석·적용
특수물품 과세원칙	○제1방법 내지 제6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 <특수물품의 주요 대상> - 변질손상물품 - 여행자 휴대품, 우편물, 탁송품 - 임차수입물품 - 중고물품 - 보세공장 내·외국물품 혼용 제조물품 - 범칙물품 - 보세구역 거래 석유	

바. 신고납부제도와 부과고지제도

(1) 일반사항

○ 세액의 확정방식은 신고납부방식과 부과고지방식으로 구분

○ 신고납부방식은 납세자가 스스로 납부하여야 할 관세의 과세표준, 세율 및 납부세액을 결정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함으로써 관세채권이 확정되는 방식

○ 부과고지방식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세관장의 처분에 의하여 확정되는 방식

(2) 신고납부제도

○ 납세의무자가 수입신고를 하면서 세액을 세관장에게 신고·납부하는 제도

○ 납세의무자는 납세신고를 한 경우 납세신고수리일부터 15일 이내에 당해 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이라도 당해 세액을 납부할 수 있음

(3) 부과고지제도

○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자료가 미비한 여행자 또는 승무원의 휴대품 및 별송품과 우편물 등 납세의무자에 의한 세액결정에 정확을 기할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세관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고지하는 제도

사. 관세징수 통계

(1) 관세징수 실적('23년)

구 분	징수실적(조원)	전년대비증감(%)
관 세	7.3	△29.4('22년: 10.3)
수입액	839	△11.6('22년: 950)

(2) 수입액 대비 조세부담율

(단위 : 조원, %)

구 분		'20	'21	'22	'23
수입액(a)		556.5	710.8	949.5	838.8
징수액(b)	관세	7.1	8.2	10.3	7.3
	내국세	43.9	54.0	71.3	60.7
	계	51.0	62.2	81.6	68.0
징수율(b/a*100%)		9.2	8.8	8.6	8.1

2. 관세율·품목분류

가. 관세율의 종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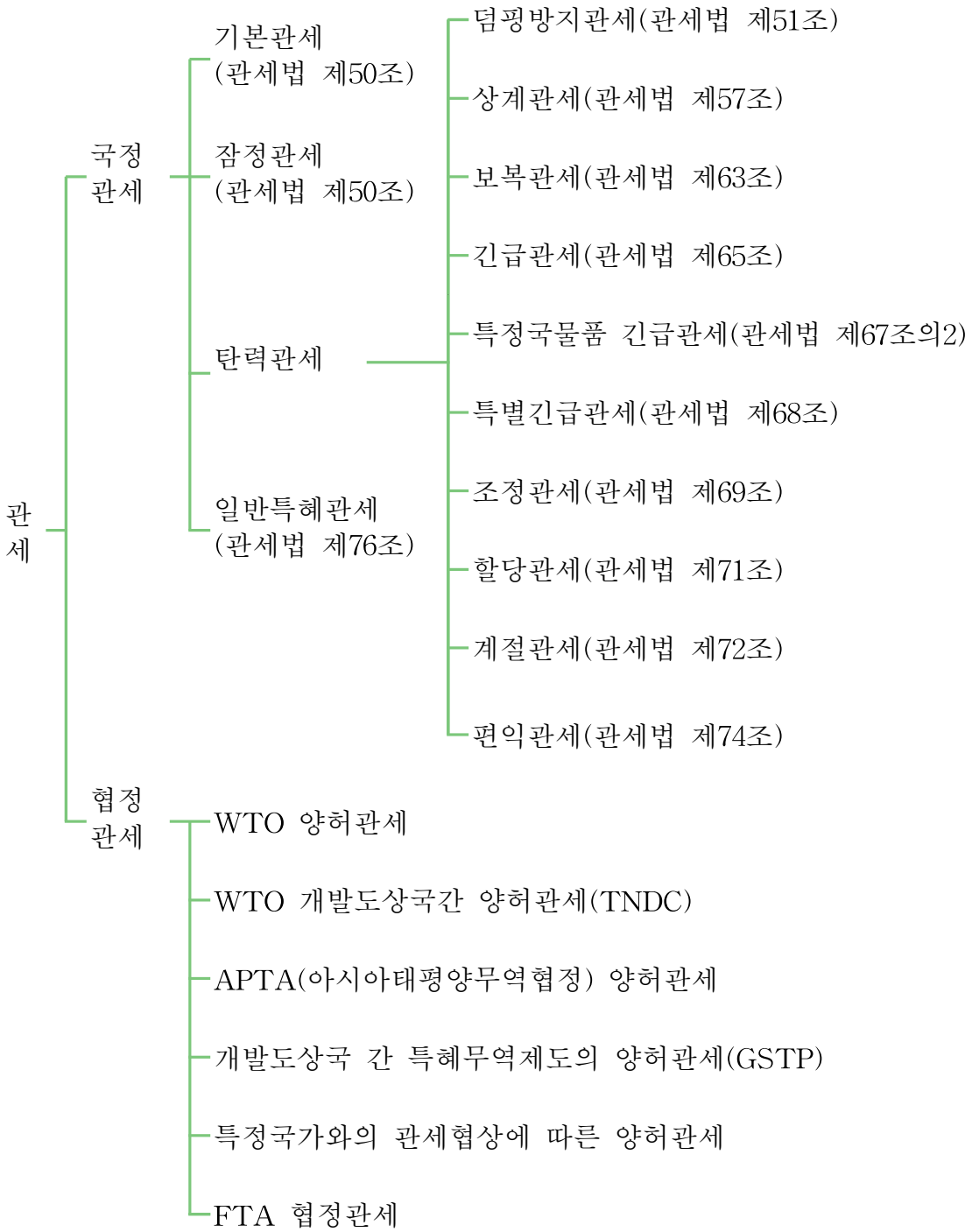
○ 관세율을 법령상의 근거에 따라 분류하면 우리나라의 법률로 정해진 국정세율과 조약으로 정해진 협정세율로 구분

○ 국정세율에는 기본관세, 잠정관세, 탄력관세가 포함되며, 협정세율에는 WTO 양허세율 등 각종 관세협정의 양허세율이 포함(도표참조)

○ 또한, 관세율은 과세표준을 가격으로 하는 경우와 물품의 수량이나 중량으로 하는 경우를 구분

○ 과세표준을 가격으로 하는 경우는 종가세율, 과세표준을 물품의 수량이나 중량으로 하는 경우는 종량세율이라고 함

[관세율의 종류]


관세
국정관세
기본관세 (관세법 제50조)
잠정관세 (관세법 제50조)
탄력관세
일반특혜관세 (관세법 제76조)
덤핑방지관세(관세법 제51조)
상계관세(관세법 제57조)
보복관세(관세법 제63조)
긴급관세(관세법 제65조)
특정국물품 긴급관세(관세법 제67조의2)
특별긴급관세(관세법 제68조)
조정관세(관세법 제69조)
할당관세(관세법 제71조)
계절관세(관세법 제72조)
편익관세(관세법 제74조)
협정관세
WTO 양허관세
WTO 개발도상국간 양허관세(TNDC)
APTA(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 양허관세
개발도상국 간 특혜무역제도의 양허관세(GSTP)
특정국가와의 관세협상에 따른 양허관세
FTA 협정관세

나. 관세율의 적용요건 및 적용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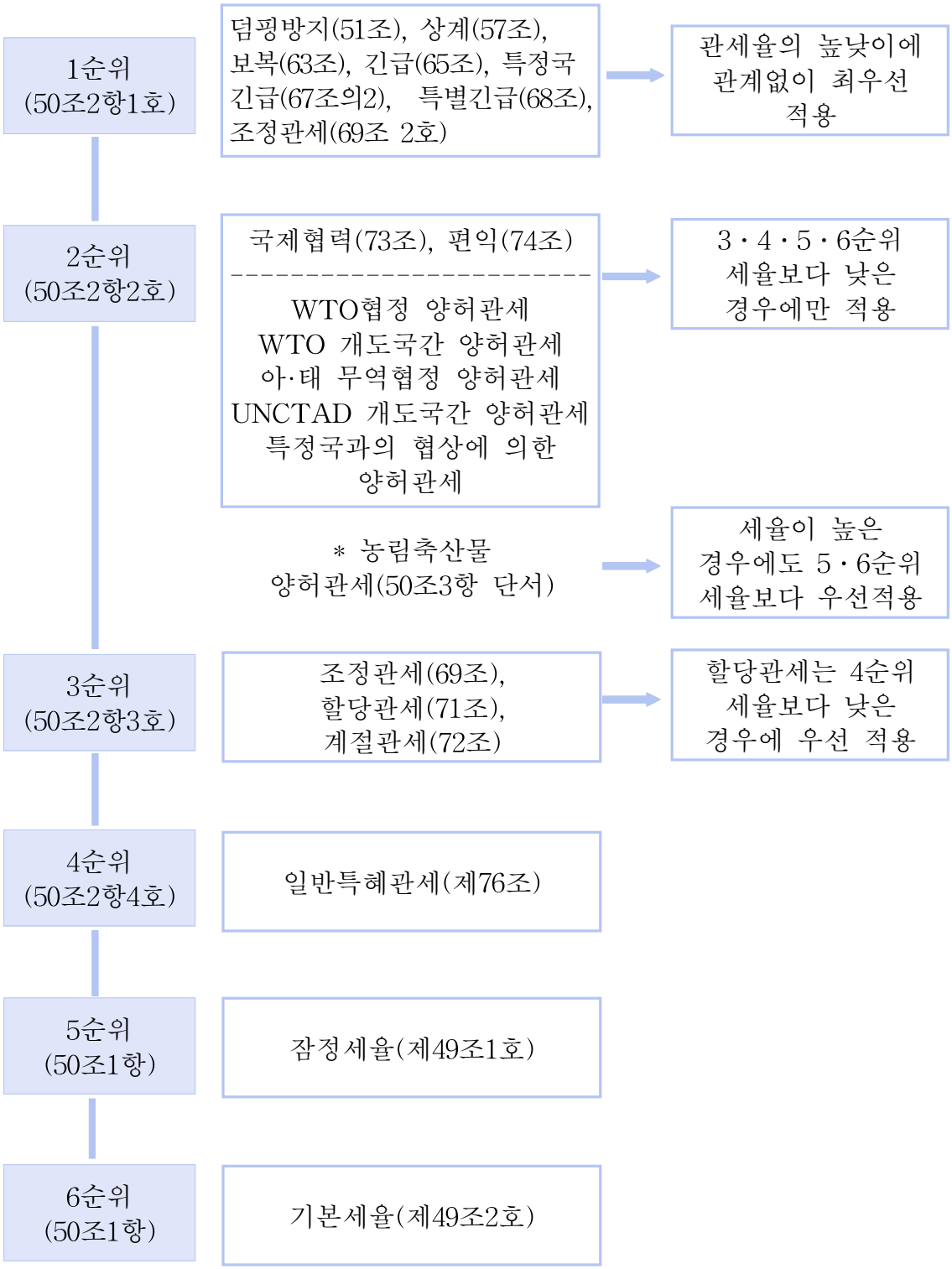
('24.7월 현재)

구 분		적 용 요 건	관세율적용범위	운용현황
기본관세(관세법제50조)		○관세율표상의 기본세율		○6,980개 세목
잠정관세(관세법제50조)		○관세율표상의 잠정세율		○운용품목 없음
탄력관세	덤핑방지관세(관세법 제51조)	○정상가격 이하로 판매되는 물품이 수입되어 국내산업이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 ○국내산업의 발전이 실질적으로 지연되었음이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당해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인정될 때	○(정상가격 - 덤핑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관세를 추가하여 부과(기재부령)	○21개 품목 : 필름, 철강, 판유리, 합판, 동관 등
	상계관세(관세법 제57조)	○보조금·장려금을 받은 물품이 수입되어 국내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가 있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	○보조금 또는 장려금 이하의 관세를 추가하여 부과(기재부령)	○운용품목 없음
	보복관세(관세법 제63조)	○교역상대국이 관세·무역협정 등에 규정된 우리나라의 권익을 부인 또는 제한하는 경우, 기타 우리나라에 대하여 부당 또는 차별적인 조치를 취하는 때	○피해상당액 범위안에서 관세를 부과(대통령령)	○운용품목 없음
	긴급관세(관세법 제65조)	○특정물품의 수입증가로 국내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음이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관세를 추가하여 부과(기재부령)	○운용품목 없음
	특정국물품 긴급관세(관세법 제67조의2)	○중국산 특정물품의 수입증가로 국내산업이 실질적 피해 또는 무역전환이 발생되거나 받을 우려가 있음이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관세를 추가하여 부과(기재부령)	○운용품목 없음 ※ 중국 WTO 가입시 도입되어 10년간 적용('03.12.30.~'13.12.10)
	특별긴급관세(관세법 제68조)	○농림축산물의 수입물량이 급증하거나 수입가격이 하락하는 때	○물량기준 : TE[1]+TE의 1/3이내 ○가격기준 : 수입가격의 하락(10%초과)에 따라 차등부과	○2개 물품: 미곡류(16개 품목), 인삼류(24개 품목)

주」 1. TE(Tariff Equivalent) : 관세상당치(국산물품과 외국물품과의 가격차)

구 분		적 용 요 건	관세율적용범위	운용현황
탄력관세	조정관세 (관세법 제69조)	○물품간의 세율불균형 시정 ○공중도덕보호, 인간·동물·식물의 생명 및 건강보호, 환경보전 등 ○국내개발물품 보호 ○농림축수산물 등 국제경쟁력 취약물품의 수입증가로 국내시장교란·산업기반붕괴 우려가 있는 경우	○일반물품 : 관세율 100%를 상한으로 관세부과 (대통령령) ○농림축수산물 : 국내외 가격차 범위내	○13개 품목 -냉동꽁치 등 수산물 7개 -표고버섯 등 농산물 5개 -합판 공산품 1개
	할당관세 (관세법 제71조)	(내리는 할당관세) ○물자수급원활 및 산업의 경쟁력강화 ○수입가격 급등으로 국내가격안정이 필요한 경우 ○유사물품간의 세율 불균형을 시정할 경우	○기본세율-40%p범위내	○ 정기할당('24.1.1) - 원유 등 77개 품목 ○ 수시할당(물가안정) - 1차(1월): 바나나 등 25개 품목 - 2차(4월): 만다린 등 4개 품목 - 3차(4월): 체리 등 12개 품목 - 4차(5월): 김 등 7개 품목 - 5차(7월): 나프타 제조용 원유 등 51개 품목
		(올리는 할당관세) ○특정물품의 수입억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반물품 : 기본세율+40%p범위내 ○농림축수산물 : 기본세율+동종·유사·대체물품의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한 율	○운용품목 없음
	편익관세 (관세법 제74조)	○관세에 관한 조약에 의한 편익을 받지 아니하는 나라의 생산물로서 수입되는 것	○조약에 의한 편익의 한도내에서 관세에 관한 편익을 부여	○대상국가 : 14개국 ○대상품목 : 10,194품목
협정관세	국제협력관세 (관세법 제73조)	○우리나라의 대외무역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적용대상 국가 -WTO 일반양허: 164개국 -WTO 개도국 양허:칠레 등 13개국 -APTA 양허:중국 등 7개국 -GSTP 특혜양허:페루 등 43개국	○국제기구와의 협상 : 기본세율의100%범위내에서 협상 가능 ○특정국가와의 협상 : 기본세율의 50% 범위내에서 협상 가능	○WTO일반양허 : 9,919품목 ○WTO농산물양허 : 275품목 ○WTO개도국 양허 : 16품목 ○APTA양허 : 2,825품목 ○GSTP양허 : 30품목 ○APEC 환경상품 양허: 109품목
	FTA협정관세 (FTA관세특례법 제4조)	○우리나라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	○협정에 의한 양허세율 적용	○발효된 FTA : 21건 -(21개) 칠레, 싱가폴, EFTA, ASEAN, 인도, EU, 페루, 미국, 튀르키예,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베트남, 중국, 콜롬비아, 영국, 중미, RCEP, 이스라엘,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적용대상국가 : 59개국
일반특혜관세 (관세법 제76조)		○개발도상국 또는 최빈개발도상국에 특혜를 공여하기 위하여 동 국가에서 생산된 특정물품이 수입되는 경우	○기본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	○최빈개도국양허 : 10,085품목

다. 관세율의 적용순위


1순위
(50조2항1호)
덤핑방지(51조), 상계(57조), 보복(63조), 긴급(65조), 특정국 긴급(67조의2), 특별긴급(68조), 조정관세(69조 2호)
관세율의 높낮이에 관계없이 최우선 적용
2순위
(50조2항2호)
국제협력(73조), 편익(74조)
WTO협정 양허관세
WTO 개도국간 양허관세
아·태 무역협정 양허관세
UNCTAD 개도국간 양허관세
특정국과의 협상에 의한 양허관세
3·4·5·6순위 세율보다 낮은 경우에만 적용
* 농림축산물 양허관세(50조3항 단서)
세율이 높은 경우에도 5·6순위 세율보다 우선적용
3순위
(50조2항3호)
조정관세(69조), 할당관세(71조), 계절관세(72조)
할당관세는 4순위 세율보다 낮은 경우에 우선 적용
4순위
(50조2항4호)
일반특혜관세(제76조)
5순위
(50조1항)
잠정세율(제49조1호)
6순위
(50조1항)
기본세율(제49조2호)

라. 기본관세율 구조

□ 현행 기본관세율의 단순평균세율(세목수 기준)은 8.7%

○ 1988년도의 경우 단순평균관세율이 18.1%에 이르다가 관세인하예시제 완료에 따라 1994년에는 7.9%로 대폭 인하

○ 1998년 섬유류, 신발 등에 대한 관세율 인상 조정 등으로 8.5%로 인상되었으며, 2000년 농산물에 대한 관세율 인상 조정 등으로 8.6%로 인상

○ 2007년에 품목분류체계의 변경 및 일부 기초원자재의 관세율을 무세화하는 기본관세율 개편을 실시함에 따라 단순평균관세율이 8.5%로 조정

- 2007년 개정은 DDA 협상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대폭적인 관세율 개편보다는 그 동안 기본관세율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등 누적된 문제를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춤

○ 2010년에 녹색산업 등 신성장 동력 산업에 투입되는 일부 원자재·부품, 희소금속 등 원자재 및 중소·영세기업이 주로 사용하는 원자재 등 총 43개 품목의 기본관세율 인하

○ 2011년에 WCO의 HS 2012 개정 권고에 따라 농수축산물 등에 대한 품목분류 체계를 대폭 개편하는 한편 관세율표에 이를 반영함에 따라 관세율의 변경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평균관세율이 8.7%로 소폭 상승

○ 2012년에 면사, 단판 등 장기 할당관세 적용품목의 할당세율을 기본세율에 반영하는 등 총 6개 품목의 기본관세율을 인하

○ 2017년에 유사 물품과의 세율균형 등을 위해 조영제 원료 등 3개 품목의 기본관세율 인하

○ 2022년에 실행세율 반영 및 세율체계 간소화를 위해 IT 협정품목 일부 기본관세율 인하

< 기본관세율의 단순평균세율 구조 >

(단위 : %)

구 분	'88	'89	'90~'91	'92	'93	'94~'98	'99~'06	'07~'11	'12~'16	'17~'21	'22~'24
전 체	18.1	12.7	11.4	10.1	8.9	7.9	8.6	8.5	8.7	8.8	8.7
공산품	16.9	11.2	9.7	8.4	7.1	6.2	6.3	6.9	6.8	6.9	6.8
농산물	25.2	20.6	19.9	18.5	17.8	16.9	18.6	16.9	16.9	17.0	16.8

□ 전체 세율 구성에서 6~10%의 관세율이 58.4%(세목수: 4,000개), 11% 이상의 관세율은 14.1%, 무세는 8.0%를 각각 차지

○ 농산물의 경우 31% 이상의 고세율 품목이 10.7%를 차지하나 공산품의 경우 정유(essential oil) 등 2품목에 불과

< 기본관세율 세율 분포현황('22) >

(단위 : 개수, %)

구 분		무세	1~5	6~10	11~20	21~30	31~50	계
농산물	세목수	65	263	306	282	242	139	1,297
	비 중	5.0	20.3	23.6	21.7	18.7	10.7	100
공산품	세목수	519	1,074	3,779	297	2	-	5,671
	비 중	9.2	18.9	66.6	5.2	0.0	-	100
전 체	세목수	584	1,337	4,085	579	244	139	6,968
	비 중	8.4	19.2	58.6	8.3	3.5	2.0	100

주」 종가세 품목 기준(종량세 및 선택세 12개 품목 제외)

마. 조정관세

□ 개요 : 특정물품의 수입증가로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산업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관세율을 100%까지 인상하여 부과할 수 있는 제도

□ 운용방향 및 현황

○ 관련 산업의 민감성과 경쟁력, 수입동향, 수입국과의 통상관계 등을 고려하여 관세율을 조정하되, 국내산업의 피해가 없도록 조정폭을 최소화

○ 나프타에 대해서는 나프타 제조용 원유와의 세율 균형을 위해 동일 세율의 조정관세 적용

⇒ 다만, '24년의 경우 나프타 제조용 원유 할당관세 세율(0%)에 맞추어 조정관세 적용 제외

○ 조정관세 적용현황('24.7월말 기준)

소관	물품(14개)	관 세 율		
		실행	'23	'24
농림부 (4개)	찐쌀	8	50	50
	혼합조미료	8	45	45
	고추장	8	32	32
	당면	8	26 또는 206원/kg	26 또는 206원/kg
해수부 (7개)	새우젓	20	32	32
	활 돔	10	28 또는 2,052원/kg	28 또는 2,052원/kg
	활 농어	10	28	28
	활 뱀장어	10	20	20
	냉동 꽁치	10	24	24
	냉동 명태	10	22	22
	냉동 오징어	10/20	22	22
산림청 (2개)	표고버섯	30	40 또는 1,625원/kg	40 또는 1,625원/kg
	합판	8	10	10
산업부	나프타*	0	0.5(7.1~7.5)	-

* 나프타 제조용 원유 할당관세 적용(0%)에 따라 조정관세 적용 제외

바. 할당관세

□ 개요 : 물자의 수급원활·가격안정과 관련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유사 물품 간 세율불균형 시정 등을 목적으로 하며, 기본세율에서 40%p를 가감한 범위 내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제도

□ 운용방향 및 현황

○ 수입물가 안정 및 산업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수입 원자재, 장비 등에 대해 관세율을 인하

○ 할당관세 적용현황('24년 정기할당관세 적용 기준)

구분			품목	세율		물량(톤)	기간
				기본	'24		
신성장 (19)	반도체	1	석영유리기판	3	0	전량	연중
	이차 전지	2	소성로	8	0	전량	연중
		3	PE분리막	4	0	전량	연중
		4	리튬니켈코발트망간 산화물(LNCM)	8	0	10,000	연중
		5	리튬코발트산화물(LCO)	8	0	전량	연중
		6	인조흑연	4	0	전량	연중
		7	전극	8	0	전량	연중
		8	전해액, 전해액 첨가제	8	0	전량	연중
		9	탄산리튬	5	0	전량	연중
		10	황산코발트	5	0	전량	연중
		11	흑연화합물	8	0	전량	연중
		12	리튬망간산화물(LMO)	8	0	전량	연중
	탄소 섬유	13	탄소섬유 사이징제	8	0	전량	연중
		14	탄소섬유 초지 성형품	8	0	전량	연중
		15	탄화로	8	0	전량	연중
	수소	16	전극막접합체	8	0	전량	연중
		17	분리판	8	0	전량	연중
		18	초고온탄화로	8	0	전량	연중
		19	백금촉매	8	0	2	연중
전통 (18)	자동차	20	알루미늄 합금·판·시트·스트립(이차전지)	8	0	24,000	연중
		21	알루미늄 합금·판·시트·스트립(차체용)	8	0	8,600	연중
		22	영구자석	8	0	4,264	연중
		23	정제한 납	3	0	11,000	연중
		24	고전압 릴레이	8	0	1,408	연중
		25	이온교환막	8	0	전량	연중
	철강	26	귀금속 잔재물	2	0	전량	연중
		27	니켈괴	3	0	전량	연중
		28	단조압연롤	8	0	전량	연중
		29	티타늄괴	2	0	전량	연중
		30	페로니오븀	3	0	전량	연중
		31	페로니켈	3	1	전량	연중
		32	페로크롬	2	1	전량	연중
		33	페이스트	8	0	전량	연중
	화학	34	XDA	8	0	전량	연중
		35	이산화티타늄	8	3	전량	연중
		36	형석(97%초과)	2	0	20,000	연중
		37	폴리에틸렌 3901.10 3901.20 3901.40	 8 8 8	 0 0 0	 91,800 36,000 18,000	연중

구분			품목	세율		물량(톤)	기간
				기본	'24		
취약 (21)	사료	38	유장분말(사료용)	20	0	20,000	연중
		39	매니옥펠릿(사료용)	7	0	전량	연중
		40	겉보리(사료용)	5	0	80,000	연중
		41	옥수수(사료용)	3	0	1,100만	연중
		42	사료용 근채류 등	5, 20	0	900,000	연중
		43	밀기울(사료용)	2	0	40,000	연중
		44	비트펄프(사료용)	5	0	전량	연중
			비트펄프(버섯용)	5	0	25,000	연중
		45	주정박(사료용)	2	0	70,000	연중
		46	대두박(사료용)	1.8	0	2,000,000	연중
		47	팜박(사료용)	2	0	25,000	상반기
		48	사료용조제품(사료용)	5	0	12,000	연중
	농어업	49	농약원제	2, 8	0	전량	연중
		50	요소	2, 8	0	전량	연중
		51	조주정	10	0	86,000kl	상반기
		52	새끼뱀장어	5	3	50	연중
	섬유	53	분산성염료	8	0	전량	연중
		54	생사	3	0	200	연중
		55	재생 스테이플 섬유	1	0	전량	연중
		56	유연처리우피	3	1	전량	연중
	광학	57	폴리카보네이트	8	0	전량	연중
		58	폴리에틸렌	8	0	전량	연중
물가·수급 안정 (19)	농림	59	옥수수(가공용)	3	0	2,100,000	연중
		60	대두(채유, 대두박용)	3	0	1,200,000	연중
		61	설탕	30	0	50,000	상반기
					5	50,000	하반기
		62	원당	3	0	전량	상반기
		63	해바라기씨유	5	0	전량	상반기
		64	커피(볶지 않은 것)	2	0	전량	상반기
		65	땅콩(조제)	50	10	10,000	상반기
		66	매니옥칩	20	0	53,000	상반기
					10	53,000	하반기
		67	감자·변성전분(식품용)	8	0	190,000	연중
		68	닭고기	20~30	0	30,000	1/4분기
		69	계란가공품	8~30	0	5,000	상반기
		70	인산이암모늄	8	0	전량	상반기
	非 농림	71	부탄	3	0	전량	상반기
			프로판	3	0	전량	상반기
		72	천연가스	3	0	전량	상반기
		73	나프타 제조용 원유	3	0	1억배럴	상반기
		74	LPG 제조용 원유	3	0	0.2억배럴	상반기
		75~77	희귀가스 (네온,크립톤,크세논)	8	0	전량	연중

사. 특별긴급관세

□ 개요 : UR협상에 따라 수입이 자유화된 농산물에 대하여 수입량이 급증하거나 수입가격이 하락하여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특별긴급관세율(국내외가격차에 상당한 율 + 추가 관세)을 부과할 수 있는 제도

□ 운용방향 및 현황

○ 농림축산물의 수입 증가 또는 수입가격 하락으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40개 품목[쌀(16개), 인삼류(24개)](HSK 기준)에 대해 특별긴급관세(Special Safeguard)를 운용 중

○ 특별긴급관세 적용현황

- 수입가격 기준 부과품목(40개) : 쌀류(16개), 인삼류(24개)
- 수입물량 기준 부과품목(16개) : 쌀류(16개)

* 쌀류(16개)는 가격·물량기준 모두 적용

□ 가격기준 특별긴급관세

○ 발동기준 : 품목별 수입가격(C.I.F기준)이 '88~'90년 평균수입가격(쌀류는 '86~'88년 평균수입가격, 이하 '기준발동가격')의 90%에 미달하는 경우

○ 부과세액 : TE에 의한 관세액 + 가격차 구간별 관세액

* 기준가격과 수입가격의 가격차에 따라 다음과 같은 구간별 관세액을 TE에 추가하여 부과

가격차 구간 (기준발동가격-수입가격)	특별긴급관세추가분	특별긴급관세 누계
Ⅰ.기준발동가격의 10%이하	부과안함	-
Ⅱ. 〃 10%초과 40%이하	30% (A)	A
Ⅲ. 〃 40%초과 60%이하	50% (B)	A + B
Ⅳ. 〃 60%초과 75%이하	70% (C)	A + B + C
Ⅴ. 〃 75%초과	90% (D)	A + B + C + D

□ 물량기준 특별긴급관세

○ 발동기준 :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한 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의 당해 연도 수입량이 기준발동물량을 초과하는 경우

○ 부과방법 : 기존 양허세율에 동 세율의 3분의 1까지를 추가하여 부과

▶ 기준발동물량 : 기준발동계수 × 최근 3년 평균수입량 + 전년대비 소비 변화량

▶ 기준발동계수 : 최근 3년간 시장점유율(수입량/소비량)에 의해 결정되며 시장점유율이 높을수록 기준발동계수가 낮음

ⅰ) 시장점유율 ≤ 10% → 기준발동계수 : 125%

ⅱ) 10% < 시장점유율 ≤ 30% → 기준발동계수 : 110%

ⅲ) 시장점유율 > 30% → 기준발동계수 : 105%

○ 부과방법 : TE + TE×1/3

* TE : Tariff Equivalent(국내외 가격차에 해당하는 세율)

※ 물량기준과 가격기준을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부과하여야 할 세율 또는 세액이 높은 것부터 적용

아. 간이세율 운용

□ 개요 : 여행자의 편의 제고 및 신속한 통관을 도모하기 위하여 여행자휴대품·우편물 등의 수입시, 관세·개별소비세 등을 합산한 세율을 기초로 산정한 통합세율

□ 부과대상 및 적용현황

○ 부과대상

- 여행자 또는 외국에 왕래하는 승무원이 휴대하여 수입하는 물품
- 우편물과 탁송품 또는 별송품

○ 간이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 관세율이 무세인 물품과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
- 수출용 원재료
- 관세법 제11장의 범칙행위에 관련된 물품
- 종량세가 적용되는 물품
- 상업용으로 인정되는 수량의 물품·고가품·당해 물품의 수입이 국내 산업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물품·관세법 제8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단일한 간이세율의 적용이 과세형평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물품
- 화주가 수입신고를 할 때에 간이세율의 적용을 받지 아니할 것을 요청한 경우

○ 간이세율(관세법 시행령 별표2)

품 명	세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중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물품	
가. 투전기, 오락용 사행기구, 그 밖의 오락용품	47
나. 보석·진주·별갑·산호·호박 및 상아와 이를 사용한 제품, 귀금속 제품	721,200원+4,808,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5
다. 고급 시계, 고급 가방	288,450원+1,923,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5
라. 삭제 <2017. 3. 27.>	
2. 삭제 <2019. 2. 12.>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중 기본관세율이 10퍼센트 이상인 것으로서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물품	
가. 모피의류, 모피의류의 부속품 그 밖의 모피제품	19
나. 가죽제 또는 콤포지션레더제의 의류와 그 부속품, 방직용 섬유와 방직용 섬유의 제품, 신발류	18
다. 녹용	21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물품. 다만, 고급모피와 그 제품, 고급융단, 고급가구, 승용자동차, 수렵용 총포류, 주류 및 담배를 제외한다.	15

자. 품목분류제도

(1) 제도개요

○ 국제협약(HS협약)*에 따라 대부분의 국가들이 동일한 품목분류 사용

*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은 세계관세기구(WCO) 주관으로 1983년에 제정하여 1988년부터 사용

○ HS품목분류는 관세·통계·운송 등 모든 분야에 공통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종전의 CCCN과 SITC*를 모체로 제정된 다목적의 국제통일품목분류표로서 각 국의 관세율표 및 통계품목분류표의 근거로 사용

* Customs Cooperation Council Nomenclature (HS이전 WCO 품목분류), Standard International Trade Classification (UN품목분류)

(2) 품목분류표 운용현황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관세법 별표)>

○ HS협약 품목분류체계에 기초하여 작성된 품목분류표로 기본관세율을 책정하기 위한 품목분류표

○ HS 6단위(5,612개)를 기초로 하되, 필요한 경우 세분화하여 6,980개(세목수)로 분류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 : The Harmonized System of Korea)>

○ HS협약 및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를 기초로 10단위로 세분류한 품목분류표로 WTO양허세율, FTA협정세율 책정 및 수출입공고·통합공고, 수출입통계 등의 목적으로 활용

○ 기획재정부 고시로 운용되고 있으며 현재 11,293개로 분류

○ '87년 제정 이후 교역구조 변화 등의 반영을 위해 26차례 개정

* HS협약(국제통일상품분류표)은 '88.1월 발효된 이후 4~6년 주기로 개정('92, '96, '02, '07, '12, '17, '22년 7차에 걸쳐 개정)

3. 통관제도

가. 통관의 개요

(1) 의의

○ '관세선을 통과하는 것' 즉 관세선을 지키는 관문이 세관이므로 '세관을 통과하는 것'을 의미

○ 통관은 관세법에서 규정한 절차를 이행하여 물품을 수출·수입·반송하는 것

○ 수출·수입·반송을 위한 의사표시인 신고로부터 세관의 물품검사, 신고서의 심사 등을 거쳐 신고수리 될 때까지의 과정은 좁은 의미의 통관

○ 수출·수입·반송을 위하여 입출항·하역·운송·보세구역 반입 등을 포함한 법에 규정된 모든 절차의 이행은 넓은 의미의 통관

(2) 종류

○ 통관에 대한 관세법상의 의미는 수출·수입 및 반송의 신고수리를 뜻하며, 화물의 이동 경로에 따라 수입통관, 수출통관 및 반송통관으로 구분

○ 수입통관은 물품이 외국에서 국내로 이동하는 경우, 수출통관은 국내에서 외국으로 이동하는 경우의 통관을 의미하고, 반송통관은 외국물품이 국내로 이동하였다가 수입통관을 하지 않고 그대로 다시 외국으로 이동하는 경우의 통관을 의미

(3) 무역절차에서의 통관의 위치

○ 수출의 경우는 수출신고수리 후에야 선적이 가능하고 수출대금의 결제가 가능하며, 수입의 경우에는 수입통관 후에야 판매처분 또는 사용수익이 가능하기 때문에 통관절차는 무역절차의 마무리 부분에 해당

(4) 통관관련 법령

○ 관세법

-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징세법인 동시에 수출입물품의 통관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절차법
- 관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각종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게 형벌을 과하는 형사법의 성격을 가짐

○ 대외무역법

- 국가 간 통상의 진흥과 수출입거래 및 수입에 의한 산업피해의 조사 및 대책수립 등을 규정
- 통합공고·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수입·전략물자와 산업설비의 수출입·원산지 관리 등 수출입제한의 대부분을 차지
- 대외무역법의 확인과 집행은 수출입통관 단계에서 이루어지므로 수출입통관 관련 법령에 해당

○ 외국환거래법

- 수출입의 무역에는 물품대금의 지급과 영수가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이러한 대금의 지급에 따른 외국환거래법은 통관에 관련된 필수법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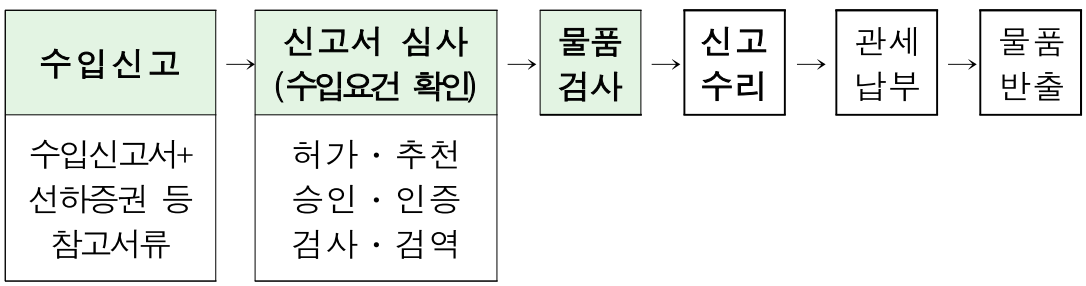
나. 수입통관

(1) 의의

○ 관세법상 수입은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으로,

- 수입통관은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를 부과·징수하고, 위험물품의 국내반입을 방지하기 위해 각종 법령상의 규제사항을 확인·집행하는 것임
- 이를 위해 수입승인사항 또는 관련 법규의 인·허가사항 등 제반사항과 세관에 신고된 사항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수입신고를 수리하는 과정을 의미함

(2) 수입통관 흐름도



(3) 절차

○ 수입신고 주체는 관세사가 대행 또는 화주가 직접 신고

○ 신고 시기는 물품의 국내도착 여부와 상관없이 화주가 선택

- ① 외국에서 출항 전 신고 ② 국내 입항 전 신고
 ③ 입항 후 보세구역 도착 전 신고 ④ 보세구역 장치 후 신고

○ 세관직원이 수입신고서 각 항목에 대한 적법성 심사와 허가, 승인 등 개별 법령에서 정한 수입요건의 구비여부를 확인

○ 통관단계에서 신고내용과 실제 물품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밀수품 등 불법물품을 적발하기 위하여 검사제도 운용

- 검사대상은 우범물품 선별 시스템(C/S : Cargo Selectivity)을 통한 자동 선별 및 수입신고서 심사결과 세관직원에 의한 선별로 지정

다. 수출통관

(1) 의의

○ 관세법상 수출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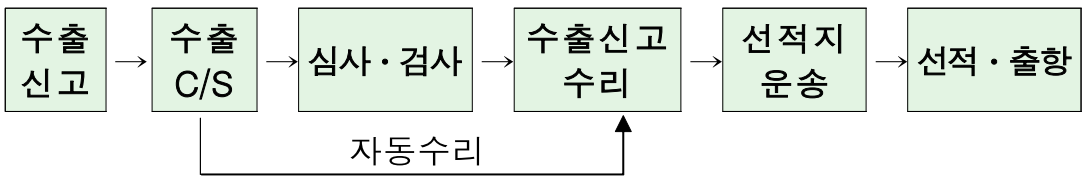
- 수출물품을 제조에서부터 수출신고, 검사, 신고수리를 거쳐 당해 물품을 우리나라와 외국 간을 왕래하는 운송수단에 적재하는 것

(2) 수출통관 현황

○ 현행 수출통관은 93%가 첨부서류 없이 신고서를 제출하면 자동으로 즉시 수리하는 제도(Paperless : P/L)로 운영 중

- 중고자동차, 전략물자 등 일부 우범물품에 한정하여 검사

(3) 수출통관 흐름도



(4)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

○ 전략물자는 핵·생화학·미사일·재래식 무기 등 4개 국제 수출통제 협약에서 국가 간의 이동을 제한하는 물품

○ 대외무역법에 근거한 '전략물자수출입고시'에서 동 물품을 전략물자로 지정하여 고시

라. 간이통관

(1) 의의

○ 예외적 수입통관절차로서, 여행자의 휴대품이나 탁송품·우편물품과 같이 소량이면서 빈번하게 수입되는 물품과 재수출면세 및 정부용품 등 면세물품 등에 대해서, 일반수입통관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므로 일반수입통관절차의 수입신고를 생략하거나 관세청장이 정하는 간이한 방법으로 신고를 할 수 있는 제도

(2) 간이통관 대상

○ 여행자 휴대품, 승무원 휴대품, 우편물, 국제운송을 위한 컨테이너, 탁송품 또는 별송품, A.T.A.까르네 관세협약에 의한 일시수입물품

(3) 이사물품 통관

○ 이사물품이란 해외에서 거주하다가 우리나라로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자 중, 이사자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자가 반입하는 물품으로서 3월 이상 사용한 물품, 이사물품은 면세통관 대상

○ 이사자 인정기준

- 이사자 : 해외체류 1년 이상
- 준이사자 : 가족을 동반하고 해외체류 6개월 이상

○ 이사물품 중 필수 과세 대상

- 외국산 자동차·선박·항공기·귀금속·3개월 미만 사용한 물품

(4) 여행자휴대품 통관

○ 여행자휴대품은 일시적으로 출입국하는 여행자가 출입국시 휴대반출입하는 물품으로서 통상 휴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물품

○ 여행자가 신고하거나 휴대품 및 기탁화물에 대한 X-ray검색 결과에 따라 검사

○ 여행자휴대품 면세기준

- 여행자 1인당 면세금액 : US$800(면세한도 초과시 초과분에 대해 과세)
- 별도 면세: 성인이 반입하는 주류 2병(2리터 이하로서 US$400이하인 것) 및 담배(궐련 200개비 등), 향수 100ml

○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휴대품 반입을 자진신고할 경우 관세 경감

- 산출세액의 30% 면세 (최대 20만원 한도)

○ 여행자 1인당 면세범위와 상관없이 특정한 물품은 국내로 반입을 허용하지 않거나 제한

- 사회안전과 풍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물품이나 경제질서를 위협할 수 있는 위조지폐·모조지폐 등은 국내반입이 원천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물품
- 총기류·도검류·향정신성의약품·동식물 등을 반입하기 위해서는 관련 정부기관의 허가나 신고·승인이 필요

○ 1인당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이나 국내 반입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물품은 세관검사직원이 휴대품 검사 후 유치

- 유치된 물품 중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은 세관에 소정의 세금을 납부하고 통관 가능
- 국내반입이 제한되는 물품은 관련기관의 승인 등을 받고 통관하거나 폐기, 또는 출국 시 반입금지물품과 함께 반송

(5) 국제우편물 통관

○ X-ray검색 및 개장검사 등을 통해 물품가격 US$150 이하의 자가사용 물품은 현장면세, 초과물품은 현장과세 또는 정식 수입통관

○ 통관우체국 : 국제우편물류센터, 인천해상교환국, 부산국제우체국

(6) 전자상거래물품 통관

○ 전자상거래 물품이란 사이버몰 등을 통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수출입물품

- 주요 반입국('23) : 중국(68%), 미국(19%), 유럽(4%), 일본(4%), 기타(5%)
- 주요 물품('23) : 가전제품(17%), 의류(14%), 건강기능식품(12%), 기타(57%)

○ 특송물품 중 물품가격 US$150(단, 한-미 FTA 특송물품은 US$200) 이하 자가사용물품 또는 상용견품은 특송업체의 물품목록 제출로 수입신고를 생략(목록통관) 가능(가격초과 시 목록통관 배제)

4. 관세감면제도

가. 의의

○ 관세의 감면(減免, Abatement, Relief, Exemption)이란 특정의 국가정책적 목적 달성을 위하거나 조약·협정에 의하여 관세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는 것

○ 감면세는 관세율표상의 세율은 정해져 있지만 특정한 경우에 해당하여 당해 세율에 의한 관세의 부과를 감면하는 것

○ 통상 수입자의 신청에 의하여 세액을 감면하는 것으로 무세와는 다른 개념

○ 무세는 관세율표상의 세율이 영인 것으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

○ 관세의 감면에 관하여서는 관세법 이외의 법령 또는 조약·협정에서도 규정

나. 현황

○ 관세의 비과세·감면은 관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자유무역지역법 및 FTA 등 협정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23년 감면실적은 총 1조 1390억원

- 관세법 : 외교관물품, 세율불균형물품, 학술연구용품, 소액물품, 여행자 휴대품, 재수출·재수입 물품 등에 대해 관세 감면, '23년 관세감면액은 1조 2338억원(총 관세감면액의 85.8%)

- 조세특례제한법 : 신재생에너지 생산용기자재, 국내복귀 해외진출기업 수입물품, 해저광물 탐사·채취장비, 외국인투자기업 수입자본재 등에 대해 관세 감면, '23년 관세감면액 92억원(총 관세감면액의 0.8%)
- 기타 국제협정 등 : FTA, SOFA, 항공협정 등 각종 국제협정에 따른 감면 및 자유무역지역법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시설재 감면, '23년 관세감면액은 1,655억원(총 관세감면액의 14.5%)

다. 주요 관세감면제도 개요

(1) 외교관용 물품 등의 면세

○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의 대사관·공사관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 등 외교기관 및 외교사절의 업무용품과 자용품 및 이들 가족이 사용하는 물품을 수입할 때에 관세를 면제하는 것(감면율 : 100%)

(2) 세율불균형물품의 감면세

○ 관세율불균형(역관세 현상)을 시정하기 위하여 세관장이 지정하는 공장에서 항공기, 반도체 제조용 장비를 제조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부분품 및 원재료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하는 제도

○ 중소기업에 대해 100% 감면,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단계적으로 축소 폐지 예정

(3) 학술연구용품의 감면세

○ 우리나라의 교육 및 학술의 진흥과 문화·과학기술의 진흥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정책상의 목적에서 학교·공공의료기관·공공직업훈련원·박물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관에서 수입하는 과학연구용품, 교육용품, 실험실습용품등에 대하여 교육·훈련·실험실습 등에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감면(감면율 : 80%, 공공의료기관 50%)

(4) 종교·자선·장애인용품 등의 면세

○ 국가가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회정책목적의 실현을 위한 관세 감면으로 사회복지의 향상, 공익사업의 달성, 종교자선 등 사회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 등에 대하여 관세감면을 통한 국가지원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제도(감면율 : 100%)

(5) 정부용품 등의 면세

○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증된 물품으로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물품 등 국가·정부·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항목에 대한 관세 감면(감면율 : 100%)하고

(6) 특정물품의 면세

○ 우리나라 선박이 외국정부의 허가를 받아 외국의 영해에서 채집 또는 포획한 수산물, 국제행사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그 행사에 참가하는 자가 수입하는 물품 등 국가의 정책목적에 의하여 특정한 물품 수입 시에 관세를 감면하는 제도(감면율 : 100%)

(7) 소액물품 등의 면세

○ 과세가격이 미화 250달러 이하인 물품으로서 견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기록문서 기타의 서류,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초과 시 전체분에 대해 과세)이면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 등에 대한 관세 감면제도(감면율 : 100%)

(8) 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대한 감면세

○ 오염물질의 배출방지 또는 처리용 물품, 폐기물 처리 또는 재활용을 위한 물품, 기계·전자기술 또는 정보처리기술을 응용한 공장자동화 기계·기구·설비 등을 중소기업이 수입 시 관세를 감면하는 제도(환경오염방지물품 감면은 '19년말 이후 미운영, '24년말까지 공장자동화물품 감면율 : 중소기업 70%, 중견기업 50%)

(9) 여행자 휴대품·이사물품 등의 면세

○ 여행자의 휴대품 또는 별송품으로서 여행자의 입국사유·체재기간·직업 기타의 사정을 고려하고, 우리나라로 거주를 이전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자가 입국하는 때에 수입하는 이사물품으로서 거주이전의 사유, 거주기간, 직업, 가족 수 기타의 사정을 고려하며, 국제무역선 또는 국제무역기의 승무원이

휴대하여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항행일수·체재기간 기타의 사정을 고려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에 대하여 면세(감면율 : 100%, 면세한도 등 관련 '라. 간이통관' 참고)

※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휴대품 반입을 자진신고할 경우 산출관세의 30%를 면세(최대 20만원 한도)

(10) 재수출 면세

○ 일시 수입된 물품을 원형 그대로 재수출하거나 수리 후에 재수출함으로서 교역의 증진, 외화의 절약, 기술의 도입, 관광객유치 등의 효과 창출을 위한 감면규정

○ 일시 수입되는 물품이 수입된 그대로의 상태로 수출된다고 하지만 내수용으로 전환될 우려가 있고 국내산업보호에 저촉될 우려가 있으므로 각국은 일시 수입이 허용되는 물품을 제한

○ 우리나라에서도 그 운영에 탄력성을 주기 위하여 면세대상물품의 범위를 기획재정부령으로 규정(감면율 : 100%)

(11) 재수출 감면세

○ 장기간의 내용연수를 가진 공사용 기계·기구나 수리·가공용 기계·기구를 외국으로부터 빌려와 국내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한 후에 다시 수출하거나, 외국으로부터 선박을 나용하여 사용 후 다시 돌려주는 경우 등에 국내에서 사용된 가치에 상당한 부분에 대하여 관세를 징수하고 재수출하는 잔여의 가치에 상당한 부분에 대하여 관세를 경감하는 제도

○ 국내에서 사용한 기간이 길수록 감면율이 낮아짐(감면율 : 재수출기간에 따라 30~85%)

(12) 재수입 면세

○ 우리나라에서 수출(보세가공 수출을 포함한다)된 물품으로서 해외에서 제조·가공·수리 또는 사용(박람회·전시회에 출품·사용되는 경우 등은 제외)되지 않고 수출신고 수리일로부터 2년 내에 다시 수입되는 물품 등 어떤 사정에 의하여 다시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경우 그 관세를 면제하는 것(감면율 : 100%)

(13) 손상감세

○ 수입신고한 물품이 신고수리 전에 변질 또는 손상된 때에 감세

○ 관세감면 받은 물품을 용도외 사용 또는 양도로 추징하는 경우에 그 물품이 변질, 손상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가치가 감소된 부분에 대해 감세(감면율 : 가치감소액)

(14) 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세

○ 아래의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 감세하는 제도

- 원재료 또는 부분품을 수출하여 관세율표 제85류(전자기기류) 및 제90류 중 제9006호(카메라)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제조·가공하여 수입되는 경우
- 가공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과 가공 또는 수리 후 수입된 물품의 HSK 10단위가 일치하는 것(다만, 수율·성능 등이 저하되어 폐기된 물품을 수출하여 용융과정 등을 거쳐 재생한 후 다시 수입하는 경우와 제품의 제작일련번호 또는 제품의 특성으로 보아 수입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임을 세관장이 확인할 수 있는 물품은 HSK가 일치하지 아니하더라도 관세 경감 가능)

(15) 조세특례제한법 관세감면

○ '조세특례제한법'은 조세의 감면 및 이에 관련되는 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제하여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서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함

○ 관세감면대상 물품은 국내제작이 곤란한 것에 한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며, 신재생에너지 생산 및 이용기자재,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관련 수입물품에 대하여 적용

○ 그 외 다음과 같은 물품에 대한 관세감면

- 해외진출기업이 국내에 복귀하여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증설하기 위해 수입신고하는 자본재(감면율 : 복귀 정도에 따라 50~100%)
-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수입 금지금(감면율 : 100%)
- 해저광물 탐사·채취를 위해 해저조광권자 등이 수입하는 기계·장비 및 자재(감면율 : 100%)

(16) 외국인투자에 대한 관세감면

○ 외국인 투자에 대한 지원과 편의제공을 통하여 외국인투자 유치를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외국인투자촉진법을 마련

○ 동 규정에 따라 도입되는 자본재에 대해 감면하고, 자본재에는 산업시설(선박, 차량, 항공기 등을 포함)로서의 기계, 기자재, 시설품, 기구, 부분품 등이 해당되며 조세특례제한법 및 외국인투자촉진법을 근거로 함(감면율 : 100%)

(17) 협정에 의한 관세감면

○ 한·미간의 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미국군 지위에관한협정(SOFA)에 의한 관세면세

○ 물품의 일시수입을 위한 통관증서에 관한 관세협약(ATA)에 의한 관세면세 등이 이에 해당(감면율 : 협정에서 정한 감면액)

라. 사후관리

(1) 의의

○ 관세의 감면적용을 받고 수입의 신고를 수리한 물품에 대하여 당해 조건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또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무단양도를 하지 않았는지 등을 세관에서 확인 또는 관리하는 것

○ 무단양도 또는 용도외 사용 등으로 인해 관세 등의 추징사유 발생시 적기에 관세수입의 확보를 기함을 목적

(2) 사후관리 기관

○ 사후관리 대상물품의 사후관리는 당해 물품의 설치 또는 사용할 장소를 관할하는 세관(관할지 세관)에서 실시하는 것이 원칙

○ 재수출면세물품, 까르네 협정을 적용받은 물품 등에 대한 사후관리는 통관지 세관에서 실시

5. 관세환급제도

가. 개 요

(1) 개 념

○ 관세 환급이란 화주 등 납세자가 세관에 납부한 관세를 되돌려 받는 것을 말함

(2) 종 류

○ 환급의 법적 근거와 사유에 따라 수출지원을 위한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하 환특법이라고 한다)상 관세환급과 「관세법」상 과오납환급, 계약상이환급의 3종류로 구분

나. 수출지원 관세환급

(1) 취 지

○ 수출지원상 관세환급(關稅還給, Drawback)이란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하는 때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관세 등을 「관세법」 등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특법에 따라 수출자 또는 수출물품의 생산자에게 되돌려 주는 것을 말함

(2) 목 적

○ 관세환급은 원재료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제조·가공·조립 등을 한 후 수출하는 경우에 동 원재료를 수입할 때 부담하였던 관세 및 제세를 돌려줌으로써 수출가격을 인하하여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수출산업을 지원하는 제도

○ 또한 이 제도는 국내에서 제조·가공·조립되지 않고 수입된 원상태대로 재수출되는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적용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중계무역을 지원하는 목적으로도 활용함

(3) 대상 조세

○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하는 때에 징수한 관세 등으로 관세·임시수입부가세·개별소비세·주세·교통에너지환경세·농어촌특별세 및 교육세(7개 조세)에 한함

○ 부가가치세는 위의 7개의 조세에서 제외되어 있어 환특법상의 관세환급에 의거 돌려받는 것이 아니고 부가가치세법상의 별도의 환급제도에 의거 돌려받게 됨

(4) 환급 신청권자

○ 수출 등에 제공한 자가 환급신청인이 될 수 있으며, 수출한 경우에는 수출자와 수출품제조자 중 수출신고필증의 환급신청인 란에 기재된 자

(5) 환급 방법

○ 개별환급 : 수출물품의 생산에 소요된 원재료를 확인하여 그 원재료가 수입될 때 납부한 관세 등을 계산하여 이를 환급하는 방법

○ 간이정액환급 : 중소기업의 수출지원을 위하여 수입세액 증명없이 관세청장이 물품별 환급액을 미리 산출하여 고시한 정액환급률표에 따라 환급

(6) 환급 신청서류

○ 개별환급 : 환급신청서, 수출증명서류, 원재료 수입시 납부세액 확인서류, 소요량 증명서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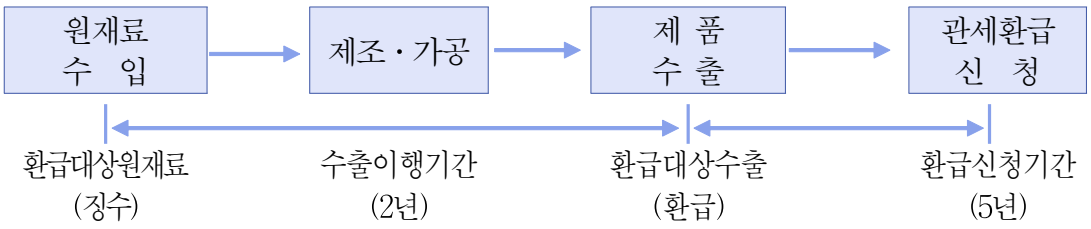
○ 간이정액환급 : 환급신청서, 수출증명서류

(7) 환급액 산출

○ 개별환급 : 수출품 제조에 소요된 원재료의 종류와 양을 소요량계산서에 의하여 확인하고, 동 원재료의 수입 시 납부세액을 수입신고필증과 기납증 등에 의하여 산출

○ 간이정액환급 :
(정액환급률표 상의 금액 × 수출신고필증 상의 물품금액) ÷ 10,000원

(8) 환급업무 절차도



① 관세등을 납부하고 수입한 원재료가 수출용원재료에 해당되고
② 수출이행기간(2년)* 이내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수출등의 지연사유가 있는 경우 소급하여 3년
③ 환급대상수출에 제공되어야 하며
④ 수출신고수리일로부터 5년 이내에 환급신청해야 환급가능

다. 과오납 환급

(1) 과오납 환급의 취지 및 요건

○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는 때에 납부한 관세가 납부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음이 발견된 때에 이를 바로 잡기 위하여 되돌려 받는 것

○ 과세환율이나 관세율의 적용 착오 또는 관세평가 시에 과세가격에 포함시켜서는 안 될 비용(연불이자 등)을 포함한 때 등 납부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납부하였음이 확인되면 환급신청 가능

(2) 과오납 환급 신청권자 및 신청서류

○ 수입신고필증 상의 납세의무자가 환급신청권자가 되며, 납세의무자로부터 환급신청권을 양도받은 경우에는 누구든지 환급신청 가능

○ 이 경우 양도증명서류와 양도자의 인감증명서 첨부

○ 과오납환급신청서에 과오납임을 증명할 수 있는 사유서 또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통관지세관장(징수담당부서)에게 제출

○ 세관장이 과오납을 직접 확인한 때에는 납세의무자의 청구가 없는 경우에도 환급이 가능

○ 이 경우에는 환급신청서류가 없어도 환급 가능

(3) 과오납 환급액 산출 방법

○ 과오납한 금액, 즉 이미 납부한 세액에서 정당한 납부세액을 공제한 차액

○ 과오납 관세를 환급하는 수입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농어촌특별세 등 내국세가 함께 과오납된 경우에는 내국세도 관세와 함께 환급되며, 과오납금의 환급 시에는 과오납한 기간에 상당하는 환급가산금을 환급액에 포함하여 지급

라. 계약상이(相異) 환급

(1) 계약상이 환급의 취지

○ 관세는 소비세이므로 수입물품이 국내에서 소비되는 것을 전제로 부과되는 것이고, 수입계약과 다른 수입물품은 수입자의 책임 없이 잘못 수입된 것이며, 수입 후 국내에서 사용되지 않고 수출자에게 되돌려 보내지거나 폐기(멸각)되는 등으로 국내에서 소비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임

(2) 계약상이 환급의 요건

○ 수입통관한 물품이 계약내용(수입신용장 등)과 다른 물품일 것

○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내에 보세구역(세관장이 허가한 보세구역외 장치장 포함)에 반입하여 수출하거나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멸각 또는 폐기한 것일 것

○ 수입신고수리 당시의 성질 또는 형상이 변경되지 아니한 물품일 것

○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으로서 국내에서 사용되지 않고 수입신고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보세구역 또는 자유무역지역 중 관세청장이 고시하는 장소에 반입하여 수출하거나 세관장의 확인을 받고 수출한 것

○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으로서 국내에서 사용되지 않고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에 탁송품 또는 우편물로 수출(수출신고금액 200만원 이하)하고 세관장의 확인을 받은 것

○ 여행자가 자진신고한 휴대품 및 별송품 중 보세판매장 또는 국제무역선·국제무역기에서 구입한 물품이 국내에서 사용되지 않고 환불된 경우

(3) 환급신청서류

○ 계약상이 물품 수출시 환급신청서류

- 계약상이 환급신청서, 수출신고필증, 계약상이 물품의 선(기)적 증명서류, 계약상이 물품임을 증명하는 서류, 계약상이 물품의 수입신고필증

○ 계약상이 물품의 멸각(폐기)시 환급신청서류

- 계약상이 환급신청서, 세관장의 멸각(폐기)승인서와 동 확인서, 멸각물품의 경우에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잔존물이 발생하는 때에는 그 명세, 계약상이 물품임을 증명하는 서류, 계약상이 물품의 수입신고필증

○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의 환급신청서류

- 계약상이 환급신청서, 수입신고필증, 수출 또는 환불을 증명하는 서류

6. 보세제도

가. 보세제도 개요

(1) 보세(保稅)제도의 의의

○ 외국물품을 보세상태에서 장치·검사·제조·가공·전시·건설·판매·운송할 수 있는 관세법상의 제도

○ 보세(保稅)라 함은 외국물품의 수입신고수리전의 상태라 할 수 있음

(2) 보세구역(保稅區域)의 개요

○ 외국물품을 수입신고수리 전 상태에서 장치·검사·전시·판매하거나 이를 사용하여 물품을 제조·가공하거나 산업시설을 건설할 수 있는 장소로서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지정하거나 특허한 장소

○ 보세구역에는 지정보세구역·특허보세구역 및 종합보세구역이 있음

나. 지정보세구역

(1) 일반사항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항시설 또는 항만시설을 관리하는 법인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토지·건물 기타의 시설을 세관장이 보세구역으로 지정한 것으로서 지정장치장과 세관검사장으로 구분

(2) 지정장치장

○ 통관을 하고자 하는 물품을 일시장치하기 위한 장소로서 세관장이 지정하는 지정보세구역

○ 지정장치장의 장치대상물품은 통관을 하고자 하는 물품인 바, 통관이라 함은 관세법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이행하여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는 것이므로, 수출통관·수입통관 및 반송통관을 하고자 하는 물품이 지정장치장에 장치됨

(3) 지정장치장의 장치기간

○ 지정장치장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지정한 보세구역이므로, 한사람이 이를 이용할 수 있는 기간에 제한을 둠으로서 다른 사람이 골고루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장치기간은 6개월의 범위 내에서 관세청장이 결정

(4) 세관검사장

○ 통관을 하고자 하는 물품을 검사하기 위한 장소로서 세관장이 지정하는 지정보세구역

○ 세관청사내의 구내창고 또는 세관청사 가까이에 있는 시설 중에서 물품검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구역에 설치

다. 특허보세구역

(1) 일반사항

○ 보세상태에서 외국물품을 장치·전시·판매하거나 보세상태에서 외국물품을 이용한 제조·가공·건설 등의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특허된 보세구역

○ 특허보세구역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세관장의 특허를 받아야 하며, 기존의 특허를 갱신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음

○ 특허보세구역에는 보세창고·보세공장·보세전시장·보세건설장·보세판매장의 5개 종류의 보세구역이 있음

(2) 보세창고

○ 외국물품을 장치하거나 통관을 하고자 하는 물품을 장치하는 특허보세구역으로서 영업용 보세창고와 자가용 보세창고로 분류

○ 내국물품도 미리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보세창고에 장치 가능

○ 외국물품을 이용한 제조·가공의 작업이나 산업시설의 건설공사를 할 수 없으며, 또한 외국물품을 전시·판매도 할 수 없음

(3) 보세판매장

○ 외국으로 반출하거나 외교관용물품의 관세면제를 받을 수 있는 자가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외국물품을 판매하는 특허보세구역

○ 위 조항에도 불구하고 공항 및 항만 등의 입국경로에 설치된 보세판매장에서는 입국하는 자에게 물품 판매가능

○ 출국장면세점·입국장면세점·시내면세점·외교관면세점으로 분류

(4) 보세공장

○ 외국물품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거나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가공 기타 이와 비슷한 작업을 하는 특허보세구역

○ 외국물품 원자재를 조세부담 없이 과세보류상태로 사용하여 제품을 제조·가공할 수 있음

○ 수출업체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

○ 수출용보세공장은 외국으로부터 원재료를 들여와서 국내의 노동력·기술·자본 등을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한 후 재수출하는 가공무역을 지원하는 제도

○ 내수용보세공장은 원재료를 수입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관세가 이를 사용하여 생산한 제품에 부과되는 관세보다 높은 경우에 이용되는 제도

(5) 보세전시장

○ 박람회·전람회·견본품 전시회 등의 운영을 위하여 외국물품을 장치·전시 또는 사용하는 특허보세구역이며, 보세전시장에 반입이 허용되는 물품은 당해 전시장의 설치와 관련된 건설용품·업무용품·오락용품·전시용품·판매용품 및 증여물품이 있음

○ 보세전시장에서 외국물품이 판매되거나 처분되는 것은 결과적으로 국내로 수입되는 것이므로 반드시 수입통관절차를 거쳐야 하며, 관세가 무세 또는 면세되는 물품이 아니라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6) 보세건설장

○ 산업시설의 건설에 소요되는 외국물품인 기계류·설비품 또는 공사용 장비를 장치·사용하여 당해 건설공사를 할 수 있는 특허보세구역

○ 발전소·석유화학공장 같은 대규모 산업시설의 건설시 소요되는 미조립상태의 외국산 설비품의 경우 매건마다 수입통관을 하지 않고 과세단위가 되는 시설물이 완성될 때 통관을 함으로서 통관절차의 간소화, 시설주의 자금부담을 완화하는 장점이 있음

라. 종합보세구역

(1) 일반사항

○ 특허보세구역의 기능 중 보세창고·보세공장·보세전시장·보세건설장 또는 보세판매장의 기능 중 둘 이상의 기능을 수행하는 지역

(2) 종합보세구역의 지정

○ 관세청장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통한 직권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그 밖에 종합보세구역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의 요청에 의하여 무역진흥에의 기여정도, 외국물품의 반입·반출물량 등을 고려하여 지정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관세청장이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그 지정대상으로 함

-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
-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공동집배송센터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단지
- 기타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됨으로써 외국인투자촉진·수출증대 또는 물류촉진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마. 자유무역지역

(1) 일반사항

○ 관세법·대외무역법 등 관계법률에 대한 특례와 지원을 통하여 자유로운 제조·물류·유통 및 무역활동 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지역

○ 제조업 및 각종 기업 활동을 위한 투자가 자국 내에서 활성화 되도록 하기 위한 경제정책의 일환으로 설립

(2) 관세법과의 관계

○ 자유무역지역에서는 자유무역지역법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관세법이 적용되지 않지만 자유무역지역에 통제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입출항 및 하역 절차 등 통관을 위하여 필수적인 절차가 자유무역지역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물품의 통관에 관하여 자유무역지역법보다 관세법을 적용하는 것이 입주기업체에 유리한 경우에는 관세법을 적용

(3)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 ○ 반입한 외국물품을 관세 부담 없이 입주사업에 사용·소비
- ○ 국내에서 반입하는 내국물품에 대해서는 관세·주세·개별소비세·교통에너지 환경세·농어촌특별세·교육세를 면제 또는 환급
- ○ 반입신고를 한 내국물품·자유무역지역 안에서 등록업체간 제공하는 외국물품과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 ○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

바. 보세운송

(1) 일반사항

- ○ 외국물품이 외국물품인 상태 그대로(즉 수입신고가 수리되지 않고 관세 등이 미납된 상태) 국제항, 보세구역, 보세구역외장치가 허가된 장소, 관서, 통관역, 통관장, 통관우체국간에 한하여 운송가능
- ○ 수출신고가 수리되어 외국물품이 된 물품이 당해물품이 장치된 장소에서 위에 나열된 장소 간에 운송하는 것도 포함

(2) 신고 및 승인

- ○ 보세운송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세청장이 정한 바에 의하여 세관장에게 보세운송의 신고를 해야함
- ○ 다만 재보세운송 물품, 위험물, 검역을 요하는 물품, 통관보류 물품 등 물품의 감시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3) 내국운송

- ○ 내국물품을 국제무역선 또는 국제무역기에 적재하여 운송하는 경우에는 운송 중에 외국물품과 교체되거나 그 상태대로 수출될 우려가 있으므로 보세운송절차에 준하여 감시단속을 하게 되는 바 이를 내국운송이라고 함

7. 원산지제도

가. 원산지제도 개요

(1) 원산지의 의의

○ 원산지(Country of Origin)는 당해 물품이 실질적으로 생산·제조 또는 가공된 나라를 의미하며, 물품의 국적이라는 개념으로 사용

○ 원산지는 일반적으로 정치적 정체성을 지닌 국가를 말하나 홍콩·마카오 등 독립적 국가가 아닌 지역도 해당

(2) 원산지 규정의 개념

○ 원산지규정(Rule of origin)이란 국가 간에 거래되는 물품이 만들어진 국가를 판정, 확인 그리고 표시하기 위하여 설정된 제반 기준과 절차

○ 1991년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된 원산지 제도는 통관의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규정이며, 원활한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함

(3) 원산지 규정의 분류

○ 특혜원산지 규정 : 수입물품이 특혜관세 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을 정한 것으로, 한 국가가 특정국에 대해 일방적으로 관세우대하는 경우와 국가 간 협정에 의해 당사국 쌍방이 상호 우대하는 경우로 구분

- 일방적 특혜규정 : 선진국의 개도국에 대한 GSP(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및 북한산 물품에 대한 비관세제도 등
- 쌍방적 특혜규정 : 자유무역협정(FTA) 및 관세동맹(MERCOSUR 등), WTO 개발도상국간 양허관세 등

○ 비특혜규정 : 원산지 표시목적의 원산지 규정, 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의 부과, 세이프가드 등의 통상조치를 위한 원산지 규정, 검역제도상의 원산지별 수입제한 제도 등

나. 원산지 판정 기준

(1) 완전생산기준

○ 당해국 영역에서 수확·채취한 식물과 동물, 당해국 영역에서 출생하고 사육된 동물 등 어떤 물품이 전적으로 1개국 내에서 생산되는 경우 당해 생산국을 원산지로 하는 것

(2) 실질적변형기준

○ 물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되는 경우 물품의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공정을 수행한 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것

- 세번변경기준 : 원료와 완제품의 세번(국제적 분류기준인 HS 품목번호)을 비교하여 HS 6단위 변경이 발생한 경우 실질적 변형으로 인정
- 부가가치기준 : 특정 제품의 전체가치 중에서 일정비율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국가에서 실질적 변형이 일어난 것으로 보아 당해 국가에 원산지를 부여하는 기준
- 특정가공공정기준 : 가장 객관적인 기준으로 제조공정 중 특정한 공정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부품을 사용한 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기준(예 : 의류는 봉제공정을 수행한 국가)

다. 원산지표시

(1) 원산지표시의 목적

○ 소비자보호 : 상품의 생산자 또는 판매자에게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여 구매자에게 원산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합리적인 상품선택의 기회 확대

○ 상거래의 공정성 제고 : 원산지에 따라 상품의 이미지·품질·가격 및 브랜드의 가치에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원산지표시제도는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유지하는 효과

(2) 원산지표시대상 물품지정

○ 근거법령 : 대외무역관리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 원산지 표시대상 : HS 4단위, 1222개 중 697품목(57%)

- 의류, 가방, 식품류, 가정용품 등 소비재 위주로 지정

8. 관세범의 조사와 처분

가. 관세범

○ 관세법 또는 관세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는 행위로서 동 법에 따라 형사처벌되거나 통고처분 되는 것

○ 관세의 부과·징수와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관세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관세행정목적 달성의 합목적성이 강조되는 행정범이며 경제범의 일종

나. 관세행정벌

(1) 일반사항

○ 각종 행정법규에는 그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의무규정을 두고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바, 이와 같이 행정법규상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일반통치권에 근거하여 일반사인에게 과하는 제재로서의 벌을 행정벌이라고 함

○ 관세행정목적달성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각종의 명령, 금지 등의 규정을 두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 바, 관세법상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과하는 처벌을 관세행정벌이라고 함

(2) 관세행정벌의 종류

○ 관세행정벌은 처벌내용에 따라 관세행정형벌과 관세행정질서벌로 구분되는 데 편의상 관세형벌, 관세질서벌이라고 함

(3) 관세형벌

○ 관세법상의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형법 제41조에 정하여져 있는 종류의 형을 과하는 것

○ 관세법 제268조의2 내지 제276조가 이에 해당하며, 이에 대해서는 관세법상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형법총칙이 적용되며, 과벌절차도 관세법상 특별규정이 없으면 형사소송절차에 따름

- 제268조의2 : 전자문서 위조·변조죄 등
- 제269조 : 밀수출입죄

- 제270조 : 관세포탈죄 등
- 제270조의2 : 가격조작죄
- 제271조 : 미수범 등
- 제272조 : 밀수전용 운반기구 몰수
- 제273조 : 범죄에 사용된 물품의 몰수 등
- 제274조 : 밀수품의 취득죄 등
- 제275조 : 징역과 벌금의 병과
- 제275조의2 : 체납처분면탈죄 등
- 제275조의3 : 타인에 대한 명의대여죄
- 제276조 : 허위신고죄 등

(4) 관세질서벌

○ 관세질서벌은 관세법상의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이긴 하나 과태료를 과하는 경우를 말하고, 관세법 제277조, 제277조의2가 여기에 해당

○ 원칙적으로 형법총칙은 적용되지 않으며, 과벌절차는 관세법상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정하는 바에 따름

다. 조사

(1) 일반사항

○ 관세법은 관세범칙사건의 조사에서 고발에 이르는 특별절차를 규정

○ 관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형사소송법을 준용

○ 고발 후의 형사절차에는 당연히 형사소송법의 절차를 따르며, 관세법 제12장의 조사와 처분에 관한 규정은 형사소송법에 대한 특별법이 되어 관세법이 우선하여 적용

(2) 조사의 의의

○ 일반적인 수사활동 중 관세범에 관하여 관세법상의 처분(통고처분 또는 즉시고발)을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범죄혐의의 유무를 명백히 하고 범인을 발견·확보하며 증거를 수집·보전하는 세관공무원의 활동을 관세법에서는 관세범의 조사(調査)라고 함

○ 일반형사절차상의 수사와 구별하고 있으며, 형사절차상의 수사의 범주에 속하므로 관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수사에 관한 규정이 준용

(3) 특별사법경찰관리

○ 세관공무원의 관세범에 관한 조사업무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법경찰관 또는 사법경찰리로 지명된 세관공무원만이 조사기관이 됨

(4) 임의조사

○ 조사 방법에는 임의조사와 강제조사로 구분

○ 임의조사란 피의자의 승낙을 받아 행하는 조사로서 관세범의 조사는 임의조사 원칙

○ 임의적 조사방법에는 신문, 소환, 출석 또는 동행요구, 사실조회 등

(5) 강제조사

○ 강제조사는 사법경찰관리로 지명된 자가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거나 혹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체포·구속·압수·수색

라. 처분

(1) 일반사항

○ 관세범의 처분이란 세관공무원이 관세범이 있다고 인정하여 범인·범죄사실 및 증거를 조사한 결과, 범죄의 존재에 관하여 확증을 얻었을 때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이 행하는 통고처분, 고발 등의 행정처분

(2) 통고처분

○ 관세법상의 통고처분이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관세범에 대하여 세관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토록 한 결과 범죄의 확증을 얻었을 때 그 범인에 대하여 그 이유를 명시하고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 몰수에 해당하는 물품과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것을 통고하는 행정처분

○ 통고처분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세법은 세관공무원의 조사처분전담권과 통고이행시 일사부재리의 효과를 부여

○ 검사는 세관장의 고발이 없이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세관장의 고발을 관세범에 대한 공소요건으로 규정

(3) 고발

○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관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범죄사실을 검사에게 고지하여 일반형사소송법절차에 따라 수사와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

○ 관세법상의 고발은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이 범죄의 확증을 얻은 경우 통고처분을 하거나 아니하면 반드시 고발을 해야 하는 것

○ 고발은 검사의 공소제기의 요건이 되는 것으로서 임의적이고, 고발자가 특정되어 있지 않는 형사소송법상의 고발과는 성격이 다른 것

9. 특혜관세무역협정

가. 특혜관세의 종류

(1) 국제협력관세(관세법 제73조)

○ 정부는 우리나라의 대외무역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특정 국가 또는 국제기구와 관세에 관한 협상을 할 수 있으며, 협상 수행 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관세 양허 가능. 다만, 특정국가와 협상할 때에는 기본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를 초과하여 양허할 수 없음

○ 국제협력관세에 의하여 인하된 관세율은 최혜국대우의 원칙이 적용되어 WTO 회원국 모두에게 인하된 세율을 적용하여야 하며, 만약 특정국가에 대해서만 인하된 관세율을 적용하려면 GATT 제25조제5항에 규정된 최혜국대우원칙에 대한 의무면제(waiver)를 받아야 함

(2) 편익관세(관세법 제74조)

○ 관세에 관한 조약에 따른 편익을 받지 아니하는 나라의 생산물로서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이미 체결된 외국과의 조약에 따른 편익의 한도에서 일방적으로 관세에 관한 편익 부여 가능

○ 편익을 부여할 수 있는 국가는 시행령으로 정하며 편익대상 물품은 WTO 협정에 따른 일반양허관세를 적용받는 물품으로 함

<편익관세 적용대상국가>

지 역	국 가
아 시 아	부탄
중 동	이란, 이라크, 레바논, 시리아
대 양 주	나우루
아프리카	코모로, 에티오피아, 소말리아
유 럽	안도라, 모나코, 산마리노, 바티칸, 덴마크(그린란드 및 페로제도에 한정한다)

(3) 일반특혜관세(관세법 제76조,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도상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 기본관세율보다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로 일반적, 무차별적, 비상호주의적으로 적용

○ 일반특혜관세제도는 WTO 최혜국대우 원칙에 위배되나, 도쿄라운드 무역협상에서 GATT 제25조의 의무면제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결정되었으며 이를 권능조항(enabling clause)이라 함

○ 현재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하여만 무관세 특혜 공여 중(제3항)

(4) 최빈개발도상국 특혜관세 공여(관세법 제76조제 3항)

○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하여 WTO의 결의를 근거로 '00.1.1일부터 무관세 특혜를 공여 중

○ '07.11월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최빈개도국에 대해 '12년까지 전체 품목의 95%까지 무관세 특혜를 확대하는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 '24.8월 현재 전체 품목의 93.4% 수준인 5,240개(HS6단위 기준) 품목에 대하여 특혜관세를 공여하고 있으며, '12.1월부터 원산지기준을 부가가치 50% 기준에서 40%로 완화하여 적용

○ 대상국가는 UN에서 지정한 45개 최빈개발도상국('24.8월 기준)

나. 세계무역기구(WTO)의 관세협상 및 협력

(1) 세계무역기구(WTO)의 설립

○ 국제무역규범을 관장하고 무역자유화를 확대하기 위해 창설된 국제기구

○ 기존 세계무역의 규범으로서 사실상 국제기구의 역할을 수행해왔던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체제하에서 우루과이라운드(UR: Uruguay Round)가 타결되면서 보다 강력한 국제기구의 필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1995.1.1일 출범

(2) 세계무역기구(WTO)의 개요

○ 세계무역기구(WTO)는 세계적 차원에서 회원국 사이의 통상 분쟁을 다루고 있으며, 무역장벽의 완화와 새로운 무역규범을 만들기 위해 다자간 무역협상을 추진하기도 한다. WTO 회원국은 '24.8월 기준 166개국에 이르며, WTO 회원국간 무역은 세계무역의 98% 이상을 담당

(3)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 상품무역에 관한 다자간협정(GATT,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1994)

- 농업 협정,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협정, 무역 관련 기술장벽 협정, 무역 관련 투자조치 협정, 반덤핑 협정, 관세평가 협정, 선적전 검사 협정, 원산지 규정 협정, 보조금 및 상계조치 협정 등을 포함

○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 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등 다수 협정으로 구성

(4)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의 주요 원칙

○ 차별없는 무역

- 최혜국대우(MFN, Most-favored Nation) 원칙: (관세, 과징금, 수출입에 관한 규칙 및 절차 등 통상관계에서) 동종상품에 대하여 제3국에 부과하고 있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다른 회원국에 부여해야 한다는 것으로서, GATT 1994 제1조에 명시되어 있는 WTO의 가장 기본적이며 중요한 원칙

- 내국민대우 원칙: GATT 1994 제3조에 명시된 규정으로 어떤 상품이 수입되었을 경우 그 상품이 당해 수입국내에서 생산되는 동종 상품과 동등한 조건으로 취급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

○ 예측가능하고 안정적인 시장접근 보장

- WTO는 수량제한을 일반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정부의 세입을 충당하기 위한 관세조치의 사용은 허용
- 그러나 관세를 수입물품 간 차별적으로 부과하여서는 안되고 부과수준도 WTO의 양허수준 이상으로 인상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에서 농산물 분야의 많은 비관세 장벽을 관세화
- 서비스 및 투자 부문에서도 규제조치의 수준을 WTO에 약속하여 그 이상의 조치를 할 수 없도록 규정

○ 공정경쟁의 촉진

- WTO는 개방적이고 공정하며 왜곡이 없는 경쟁을 추구하므로 농업협정, 지식재산권협정, 서비스 협정, 정부조달협정 등에 공정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규정을 구비

○ 다자주의와 경제개발 및 개혁 지원

- WTO는 개발도상국 및 경제개혁 추진국가들이 많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어 각국의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자유화 속도에 유연성을 부여하고 있으며 선진국들의 기술지원을 적극장려
- GATT 1994의 제4부에서는 선진공업국들이 개발도상국에 제공해야 할 각종 경제지원 및 특혜조치를 규정

(5) 세계무역기구(WTO) 양허관세

○ '24년 기준 전체 11,293개 품목(HSK 2022, 10단위 기준)의 91.6%에 해당하는 10,346개 품목에 대하여 관세양허

○ '24년 기준 단순평균 양허관세율은 11.5%이며(종가세 기준, In-quota 기준), 그 중 공산품 평균은 8.7%

(6) 국내 법제화

○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대통령령)

- 공산품·수산물 및 단순 양허한 농림축산물에 대한 양허관세(별표 1의 가)

* 정보기술협정 확대 대상물품에 대한 양허관세 : 기존 별표 1의 다에서 별표 1의 가로 통합('20.9.22. 시행)

-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한 율로 양허하거나 국내시장 개방과 함께 기본세율보다 높은 세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에 대한 양허관세(별표 1의 나)

(7)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

○ '01.11월 제4차 WTO 각료회의(카타르, 도하)에서 우루과이라운드(UR) 이후의 새로운 다자간 무역협상으로서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을 공식 출범

○ '12년 협상의 교착상태를 타개하기 위한 접근방안으로서 선진국을 중심으로 DDA 전체 의제를 일괄타결하지 않고 합의가능한 의제만을 '조기수확(Early Harvest)'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추진하여 제9차 WTO 각료회의('13.12.인니)에서 Small Package 타결

- ①무역원활화 ②농업일부, ③개발/최빈개도국 3개 부문에 걸쳐 10개의 합의문이 채택됨

- (무역원활화) 무역원활화 협정 채택, 세관협력 강화, 개도국 특별대우

- (농업) TRQ 관리방안 개선, 식량안보 등을 위한 허용보조 확대, 수출보조 자제

- (개발) 모니터링 메커니즘 설치, 최빈개도국의 시장접근 지원을 위한 우대조치 마련

<10개의 합의문>

	분야	제 목	주 요 내 용
1	무역 원활화	무역원활화	무역규제 투명성 제고, 수출입 관련 수수료 및 절차 간소화, 통과화물의 자유 등 통관절차 관련 제도 개선
2	농업	TRQ 관리방안	TRQ 관리절차 간소화, 쿼터 미소진 메커니즘 도입
3		식량안보목적 허용보조확대	개도국이 식량안보를 목적으로 보조금 지급시 WTO 제소 자제
4		일반서비스 항목 신설	개도국의 농업 관련 서비스를 농업협정상 허용 보조에 해당하는 일반 서비스 항목에 추가
5		수출보조 철폐등 수출경쟁제안	수출보조 감축, 수출신용 최대 상환기간 적용 등에 대한 정치적 메세지
6	개발/ 최빈 개도국	모니터링 메커니즘	개도국 우대규정 이행여부 점검기구 설치
7		무관세무쿼터 (DFQF)시장접근	선진국에 DFQF 개선노력 의무화
8		서비스웨이버 실행방안	서비스 이사회(CTS)를 통한 구체적 특혜제공 방안 검토
9		특혜원산지 가이드라인	완화된 특혜원산지 가이드라인 마련
10		면화	기존 홍콩 각료선언 내용 및 면화이슈 중요성 재확인

※ 무역원활화협정(TFA, Agreement on Trade Facilitation)

- ○ '13년 12월 WTO 제9차 각료회의에서 타결
- ○ '14. 11월 무역원활화협정을 세계무역기구 협정에 편입하기 위한 의정서 채택(WTO 일반이사회)
- ○ '15.7.30. 우리나라가 WTO에 수락서 기탁(회원국 중 10번째)
- ○ '17.2.22. 164개 WTO 회원국 중 2/3에 해당하는 112개국의 비준서가 기탁되어 발효

다.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간 무역협정(TNDC, Protocol Relating to Trade Negotiations among Developing Countries)

(1) 개요

○ GATT 체제 하에서 개발도상국간 무역을 확대하기 위한 양허관세로서 우리나라는 '73.2.11일 의정서(조약 제462호) 발효

○ 현재 적용국가와 양허품목이 많지 않아 실제 활용률은 높지 않음

(2) 회원국 및 양허품목

○ 회원국: 방글라데시, 브라질, 칠레, 이집트, 이스라엘, 멕시코, 파라과이, 파키스탄, 페루, 세르비아, 튀니지아, 튀르키예, 우루과이(13개국)

○ 양허품목: 16개 품목(HSK2022 기준)을 양허하였으나 최혜국대우 관세율보다 낮은 품목은 잎담배, 담배부산물, 시멘트 클링커 등 6개에 불과하며, 튀르키예에서 수입되는 담배 관련 물품이 수입실적의 대부분을 차지

(3) 국내 법제화

○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대통령령)

- 세계무역기구협정 개발도상국간의 양허관세(별표 2)

라.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PTA, Asia Pacific Trade Agreement)

(1) 개요

UN ESCAP(아시아 태평양 경제사회 위원회) 주관하의 우리나라, 중국, 인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라오스, 몽골(7개국) 간 특혜무역협정

(2) 연혁

○ '75.7.31. '아시아 태평양 경제사회 위원회의 개발도상회원국간의 무역협상에 관한 1차 협정'(방콕협정) 채택

- 방글라데시, 인도, 라오스, 한국, 스리랑카, 필리핀, 태국 등 7개국이 서명하였으나 태국, 필리핀을 제외한 5개국만이 비준하여 '76.6.17. 발효

○ '84～'90, 제2라운드(서울라운드) 협상 및 시행

○ '01.10～'05.11, 제3라운드 협상 및 시행

- '01.4월 중국의 가입을 계기로 제17차 방콕협정 상임위원회('01.10월)에서 협상개시 선언
- '05.11.2일 제1차 각료회의(중국 북경)에서 제3라운드 개정협정문 및 양허표에 서명하고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으로 조약명을 변경

○ '07.10～'17.01 제4라운드 협상 및 시행

- '07.10.26, 제2차 각료회의(인도 고아)에서 제4라운드 협상개시 선언
- '16.9.7, 제49차 상임위원회에서 제4라운드 양허표 최종 타결
- '17.1.13, 제4차 각료회의(태국 방콕)에서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에 대한 제2차 개정 서명 완료 후 국내이행절차 추진
- '18.7.1, 아·태 무역협정에 대한 제2차 개정 국내 비준절차 완료 및 발효

○ '18.3 ～ 제5라운드 협상

- 상품, 원산지, 무역원활화, 서비스, 투자 분야 등에서 협상 진행 중
- '19.10월 몽골의 APTA 가입 절차가 완료되어 '21.1.1.부터 몽골에 대해서도 APTA 적용

(3) 제3라운드 관세 양허 현황

○ 우리나라는 1,367개 품목을 양허(HS 2012기준)

- 평균 특혜폭(MoP, Margin of Preference)은 35.7%

○ 우리나라를 제외한 회원국은 총 2,903개의 품목을 양허(HS 2012기준)

- 중국 1,697개 품목, 인도 570개 품목 등

○ 원산지 확인 기준

- 공통적으로 부가가치 45% 기준이며 최빈개도국은 35%기준

(4) 제4라운드 관세 양허 현황

○ 우리나라는 2,797개 품목을 양허(HS 2012기준)

- 평균 특혜폭(MoP, Margin of Preference)은 33.4%

○ 우리나라를 제외한 회원국은 총 7,498개의 품목을 양허(HS 2012기준)

- 중국 2,191개 품목, 인도 3,142개 품목 등

○ 원산지 확인 기준으로 부가가치기준 이외에 세번변경기준을 추가 도입
- 공통적으로 부가가치 45% 기준이며 최빈개도국은 35%기준
- 철강 등 153개 품목(HS2017 4단위 기준)에 세번변경기준 도입

(5) 국내 법제화

○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대통령령)
-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일반양허(별표 3의 가)
- 녹차와 누에고치의 일반양허(별표 3의 나)
- 방글라데시 특별양허(별표 3의 다)
- 라오스 특별양허(별표 3의 라)

○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 확인 기준 등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

마. 유엔무역개발회의 개발도상국간 특혜무역제도(GSTP, Agreement on the Global System of Trade Preferences among Developing Countries)

(1) 개요

○ '89.6월,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의 주관 하에 77그룹 개도국간 관세인하를 통한 무역증진을 목적으로 출범

(2) 연혁

○ '86.5월~'88.4월 제1라운드 협상 후 총 44개국이 참여하였으며 농산물 등 1차산품 중심으로 790개 품목에 대해 회원국간 특혜를 공여

○ '94.6월~'98.12월 24개 회원국이 참여하여 제2라운드 협상을 완료하였으나 협상에 참여하지 않은 회원국의 특혜 무임승차를 우려하여 비준 무산

○ '04.6월~'10.12월 제3라운드 협상 결과 11개국이 관세부과품목의 70%에 대해 품목별로 실행세율을 20% 인하하는 양허안에 합의하였으나, 4개국 비준 시 발효되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미발효 상태(현재 인도, 쿠바, 말레이시아 3개국만 비준 완료)
- 11개국: 한국, 쿠바, 이집트,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모로코, MERCOSUR(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
- 합의 당시 우리나라는 관세부과품목의 70.2%에 해당하는 6,983개 품목 양허안에 서명

(3) 법령 반영

○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대통령령)

- 유엔무역개발회의 개발도상국간 특혜무역제도에 관한 협정의 양허관세(별표 4)

바. 특정국가와의 관세협상에 따른 국제협력관세

(1) 개요

○ WTO 양허관세협정에 반영되지 않았으나 양허의 필요성이 있는 물품에 대하여 특정국가와 협상하여 양허하는 특혜관세로서, 최혜국대우 원칙에 따라 협상대상국가 외의 모든 WTO 회원국에게 적용

(2) 주요 협상

○ 한·미 농산물협상: '87, '88, '95, 레몬, 아보카도, 버찌(체리), 아몬드 등 관세인하

○ 한·미 포도주협상: '89, '91, '94, 여러 차례 협상을 거쳐 포도주 및 관련 제품의 관세율을 15%까지 인하

○ 한·미 통신협상: '90.7월 텔레프린터, 교환기 등 관세인하

○ 한·헝가리 관세협상: '91, 필름, 철강, 알루미늄 제품 등 관세인하

○ 한·말레이시아 정상회담: '91, 팜핵유 관세인하

○ 한·영 위스키협상: '91, 위스키류의 관세율을 '94년까지 30%로 인하

○ 한·미 경제협의회: '95, 자동차의 관세율을 10%에서 8%로 인하

○ 한·EU 모니터링 회의: 위스키, 럼, 진, 보드카, 리큐르 및 포도증류주 외의 브랜디의 관세율을 30%에서 20%로 인하

○ 한·멕시코 협상: 데낄라의 관세율을 30%에서 20%로 인하

○ APEC 환경상품 관세인하: 109개 환경상품 관세율을 8%에서 5%로 인하

(3) 법령 반영

○ 특정국가와의 관세협상에 따른 국제협력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10. 자유무역협정(FTA) 특혜관세제도

가. FTA 특혜관세제도의 개요

(1) FTA 특혜관세의 의의

○ 협정에 따라 체약상대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철폐하거나 세율을 연차적으로 인하하여 부과하여야 하는 관세

(2) FTA 체결현황

○ (발효: 21개, 59개국) 칠레('04.4), 싱가포르('06.3), EFTA('06.9), 아세안('07.6), 인도('10.1), EU('11.7), 페루('11.8), 미국('12.3), 튀르키예('13.5), 호주('14.12), 캐나다('15.1), 중국('15.12), 뉴질랜드('15.12), 베트남('15.12), 콜롬비아('16.7), 영국('21.1), 중미('21.3), RCEP('22.2), 이스라엘('22.12), 캄보디아('22.12), 인도네시아('23.1)

○ (타결·서명) 타결 선언(에콰도르('23.10), GCC('23.12.)),
정식 서명(필리핀('23.9), UAE('24.5.))

○ (협상 진행중) 몽골, 조지아, 태국, 말레이시아 등

(3) FTA 특혜관세 적용 대상자

○ 특정 수입물품에 대해 체약상대국이 원산지임을 증명하는 증빙서류를 갖추고 세관장에게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는 수입자

(4) 원산지 결정기준

○ 완전생산기준

- 해당 물품의 전부를 생산·가공 또는 제조한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 주로 농수산물과 광산물 등에 적용

○ 실질적 변형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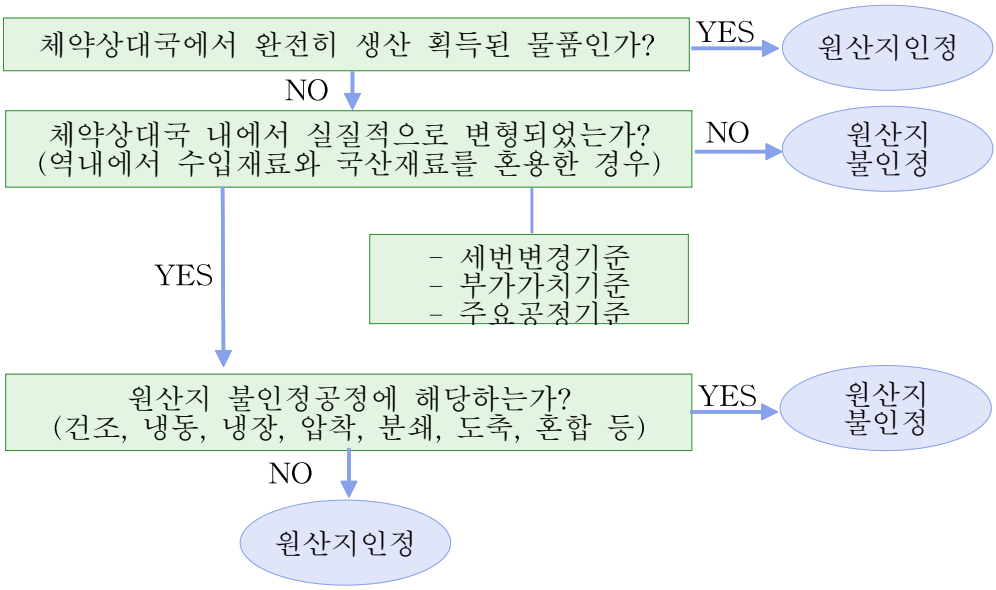
- 세번변경기준: 해당 물품의 품목번호(HS코드)가 그 물품의 생산·가공 또는 제조에 사용되는 재료 또는 구성물품의 품목번호와 일정 단위 이상 다른 경우 해당 물품을 최종적으로 생산·가공 또는 제조한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

 * (예) 원유(HS2709)를 수입해 석유제품(HS2710) 생산시 4단위 세번변경 발생

- 부가가치기준: 일정 수준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한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
- 가공공정기준: 해당 물품의 생산·가공 또는 제조의 주요 공정(협정에서 정하는 생산공정)을 수행한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

* (예) 섬유제품의 원사(yarn)를 만드는 공정부터 수행한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

<원산지기준 적용 흐름도>



○ 보완적 원산지기준

- 최소허용기준: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사용된 비원산지재료의 비율이 미미(예: 물품가격의 10%이하)할 경우에는 최종 생산국을 원산지로 인정
- 누적기준: 해당 물품의 원산지 결정시 체약상대국에서 발생한 생산과정 투입요소를 자국의 것으로 간주
- 불인정공정: 최종 생산국에서 단순·경미한 가공만을 거친 경우에는 그 국가를 원산지로 불인정(예: 건조, 냉동, 냉장, 세탁, 도축, 단순조립 등)

(5) FTA 특혜마진(margin)

○ 일반관세율(MFN 세율)과 특혜세율간의 차이

MFN 세율 (예 : 5%)	-	특혜세율 (예 : 2%)	=	특혜마진 (예 : 3%)

(6) FTA 특혜관세 수혜를 위한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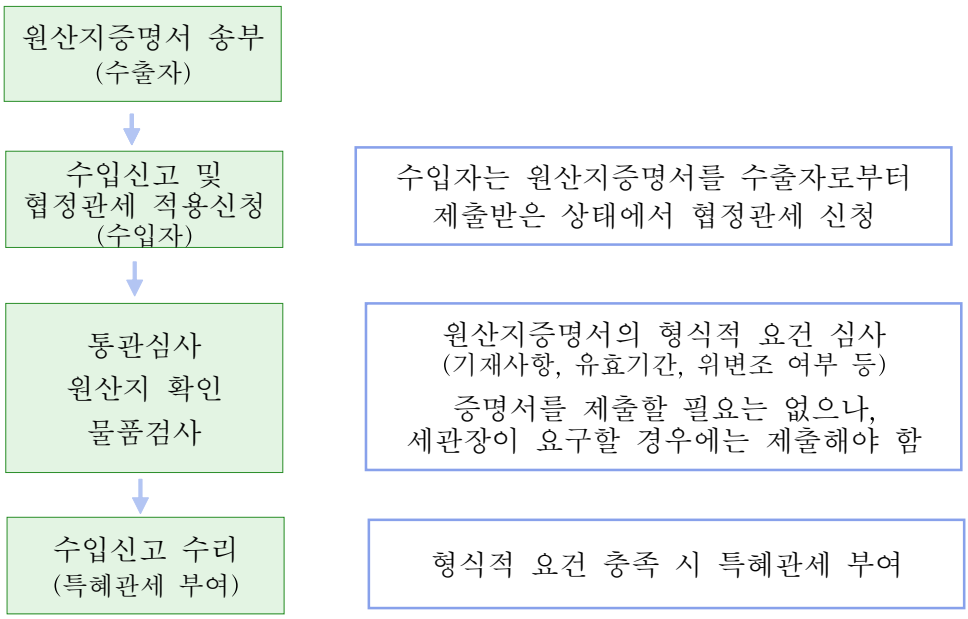
○ 수입자는 상대국 수출자에게 특혜관세 원산지증명서를 수령

○ 수입자는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원산지 증빙서류를 갖춰 세관장에게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여야 함

-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 가능

○ 수입국 세관당국은 수입물품이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특혜관세 부과

<특혜관세 수혜를 위한 통관절차>



(7) 특혜관세 관련 수입·수출자의 의무

○ 수입자는 협정관세 적용 신청 시 원산지 증빙서류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세관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함

○ 수입자, 수출자 및 생산자는 원산지 확인, 협정관세 적용 등에 필요한 서류를 5년간(협정에서 정한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 그 기간) 보관해야 함

○ 세관장은 필요시 협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자, 수출자 또는 생산자를 대상으로 수출입물품에 대한 원산지 또는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조사할 수 있음

나. 한-칠레 FTA

(1) 개요

○ '98.11월 APEC 정상회의에서 한-칠레 양국간 FTA 추진에 합의한 후, '99.9월 FTA 협상 개시 → '03.2월 정식 서명, '04.4월 발효

○ 품목수 기준으로 96%에 해당하는 품목의 수입관세를 10년내 철폐하기로 합의

○ 통상환경 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개선 협상 진행 중('18.11월~)

(2) 주요 원산지 결정기준

○ 완전생산기준 등에 의한 원산지 인정

- 동·식물, 육류, 어류 및 광물 등 양 당사국의 역내에서만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물품 및 역내산 원재료 만으로 생산된 물품에 적용

○ 실질적 변형기준에 의한 원산지 인정: 품목별로 규정

- (세번변경기준)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주로 HS 2단위 세번변경(CC) 기준이 적용, 공산품에 대해서는 HS 4단위(CTH) 또는 6단위(CTSH) 세번변경이 적용
- (부가가치기준) 부가가치 기준은 주로 공제법 45%(직접법 30%)가 적용되고, 대부분의 부가가치 적용 물품은 세번변경기준과 혼합기준으로 적용

○ 보완적 원산지기준에 의한 원산지인정: 원산지 결정기준에 따른 세번변경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전체가격의 8%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역내산으로 인정(최소허용기준)

- 다만, 농수산물에는 최소허용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섬유·의류 등의 경우에는 특정 섬유 등의 중량이 전체 중량의 8%이내인 경우 역내산 원산지로 인정

(3) 원산지 증명방식

○ 자율증명방식을 채택해 수출자가 스스로 원산지증명서 발급

○ 원산지증명서는 서명일로부터 2년 동안 유효

(4) 상품 양허 수준

<우리나라>

(HSK 10단위 기준, %)

카테고리	전 체	공산품	농산물	임산물	수산물	주요 품목(농산물)
즉시 철폐	9,740 (87.2)	9,101 (99.9)	224 (15.6)	138 (58.2)	277 (69.5)	배합사료, 종우, 양모,커피
5년 철폐	701 (6.3)	-	545 (38.1)	70 (29.5)	86 (21.5)	고사리, 장미, 두부, 포도주, 아몬드
7년 철폐	41 (0.4)	1 (0.01)	40 (2.8)	-	-	과실쥬스, 과실조제품, 가금류고기, 수프, 감자
9년 철폐	1 (0.01)	-	1 (0.07)	-	-	기타 과실쥬스
10년 철폐	262 (2.3)	-	197 (13.8)	29 (12.3)	36 (9.0)	토마토, 돼지고기, 복숭아, 키위
계절관세 (10년 철폐)	1 (0.01)	-	1 (0.07)	-	-	포도
16년 철폐	12 (0.1)	-	12 (0.8)	-	-	조제분유, 혼합쥬스
TRQ+DDA 이후 논의	18 (0.15)	-	18 (1.26)	-	-	쇠고기, 닭고기, 자두, 맨더린
DDA 이후 논의	373 (3.3)	-	373 (26.0)	-	-	마늘, 양파, 고추, 낙농제품
제외	21 (0.2)	-	21 (1.5)	-	-	쌀, 사과, 배
합 계	11,170	9,102	1,432	237	399	

<칠레>

(HS 8단위기준, %)

카테고리	전 체	공산품	농산물	임산물	수산물	주요 품목(농산물)
즉시 철폐	2,450 (41.8)	1,478 (30.6)	677 (92.9)	96 (100.0)	199 (99.0)	TV, 자동차, 컴퓨터, 휴대폰
5년 철폐	1,994 (34.1)	1,992 (41.3)	-		2 (1.0)	폴리에틸렌, 수송용차량
7년 철폐	14 (0.2)	14 (0.3)	-		-	유류여과기
10년 철폐	1,190 (20.3)	1,180 (24.4)	10 (1.4)		-	축전지, 청소기
5년 거치 8년 철폐	152 (2.6)	152 (3.1)	-		-	철강, 섬유 및 의류
제외	54 (1.0)	12 (0.2)	42 (5.8)		-	세탁기, 냉장고
합 계	5,854	4,828	729	96	201	

다. 한-싱가포르 FTA

(1) 개요

○ '03.10월 한-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한-싱가포르 FTA 정부간 협상 개시 선언 → '05.8월 정식 서명, '06.3월 발효

○ 싱가포르는 모든 품목을 즉시 관세철폐, 한국은 91.6%에 해당하는 품목을 최대 10년이내 관세철폐 합의

(2) 주요 원산지 결정기준

○ 완전생산기준 등에 의한 원산지 인정

- 동·식물, 육류, 어류 및 광물 등 양 당사국의 역내에서만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물품 및 역내산 원재료 만으로 생산된 물품에 적용

○ 실질적 변형기준에 의한 원산지 인정: 품목별로 규정

- (세번변경기준) 농수산물의 경우 주로 HS 2단위 세번변경(CC) 기준이 적용, 공산품의 경우 HS 4단위(CTH) 또는 6단위(CTSH) 세번변경이 적용
- (부가가치기준) 주로 공제법 계산에 따른 45~55%가 적용되고, 대부분의 부가가치기준 적용물품은 세번변경기준과 혼합기준이 적용

○ 보완적 원산지기준에 의한 원산지 인정: 원산지 결정기준에 따른 세번변경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전체가격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역내산으로 인정(최소허용기준)

- 다만, 섬유·의류 등의 경우에는 특정 섬유 등의 중량이 전체 중량의 8%이내인 경우 역내산 원산지로 인정

○ 개성공단 생산품 원산지 특례 인정

- 개성공단 또는 한반도의 여타 역외 공업지구에서 생산된 물품 중 양허된 품목(HS6단위 4,625개)이 한국 영토를 거쳐 싱가포르에 수출되는 경우 원산지 인정

(3) 원산지 증명방식

○ 원산지 증명서는 수출 당사국의 세관당국 또는 정부로부터 위임받은 기관이 발급

○ 원산지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1년 동안 유효

(4) 우리나라 상품 양허 수준(싱가포르는 모든 품목에 대해 관세 철폐)

(HSK 10단위기준, %)

양허 카테고리	전 체	공산품	농산물	수산물	임산물
즉시 철폐	6,724 (59.7)	반도체, 컴퓨터 철강, 자동차	밀, 사탕무 수수, 팜유	연어, 홍합 냉동해조류	석재류, 원목 단판
5년 철폐	2,009 (17.8)	석유아스팔트, 면도기, 다리미	곡류가공품, 커피, 초콜릿	염장품, 통조림	대바구니 부채살
10년 철폐	1,582 (14.1)	유기화학품, 전동기	살구, 딸기 콩, 감자, 무	고등어·대구 냉동품	제재목 성형목재
양허 제외	946 (8.4)	석유제품, 베어링, TV	쌀, 사과, 배 쇠고기, 마늘	양식용활어 열대관상어	합판, 섬유판
합 계	11,261 (100.0)				

라. 한-EFTA FTA

(1) 개요

○ '04.12월 한-EFTA 통상장관회의에서 FTA 협상 개시 선언
→ '05.12월 정식 서명, '06.9월 발효

○ EFTA는 농산물을 제외한 모든 상품에 대하여 즉시 관세철폐, 한국은 96.6%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하여 10년 이내 관세철폐 합의

(2) 주요 원산지 결정기준

○ 완전생산기준 등에 의한 원산지 인정

- 동·식물, 육류, 어류 및 광물 등 양 당사국의 역내에서만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물품 및 역내산 원재료만으로 생산된 물품에 적용

○ 실질적 변형기준에 의한 원산지 인정: 품목별로 규정

- (세번변경기준) 농수산물은 주로 완전생산기준 또는 HS 2단위 세번변경(CC) 기준 적용, 공산품은 HS 4단위(CTH) 또는 6단위(CTSH) 세번변경기준 적용
- (부가가치기준) 주로 역외산 비율 25~60%(역내산 40~75%) 이내 기준 적용, 대부분의 부가가치기준 적용물품은 세번변경기준과 혼합기준 또는 선택기준으로 적용

○ 보완적 원산지기준에 의한 원산지 인정: 섬유·의류 이외 물품은 비원산지 재료의 가격이 전체가격의 10%이내인 경우 세번변경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역내산으로 원산지 인정(최소허용기준)

- 다만, 섬유·의류 등은 비원산지 재료의 중량이 총중량의 10%이내인 경우 역내산 원산지물품으로 인정

○ 개성공단 생산품 원산지 특례 인정

- 역외가공조항을 통해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물품에 대해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인정(HS 6단위 267개 품목*)

 * HS62류(메리야스, 뜨게질 편물 외 의류), HS61류(편물의류와 그 부속품), 91류(시계 및 부속품), 84류(원자로 보일러 등), 85류(플라스틱과 그 제품)

(3) 원산지 증명방식

○ 자율증명방식을 채택하여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원산지신고서(증명서)를 작성하되, 별도의 원산지신고서(증명서) 없이 송품장 등의 상업서류에 작성 가능

○ 원산지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1년 동안 유효

(4) 우리나라 상품 양허 수준(EFTA는 농산물 제외 모든 품목에 대해 관세 철폐)

(HSK 10단위기준, %)

양허 카테고리	전 체 (기본농산물 제외)	공산품 (임산물 포함)	수산물	가공 농산물	주요 품목
즉시 철폐	8,726 (86.3)	8,568 (91.1)	110 (27.1)	48 (15.8)	페인트, 면직물, 의류 철강제품, 승용차
3년 철폐	388 (3.8)	381 (4.1)	7 (1.7)	-	온도계, 담배제조기, 배전반, 염색기
5년 철폐	395 (3.9)	294 (3.1)	101 (24.9)	-	참치, 볼펜, 내시경, 자동포장기계
7년 철폐	138 (1.4)	132 (1.4)	6 (1.5)	-	보일러, 화장품, 의약품, 차량부품, 베어링, 명태
10년 철폐	123 (1.2)	-	102 (25.1)	21 (6.9)	소주, 커피, 맥주, 포도주, 고등어통조림
관세인하 (10~50%)	187 (1.9)	-	-	187 (61.5)	
TRQ	1 (0.0)	-	1 (0.2)	-	냉동고등어
향후재검토	61 (0.6)	29 (0.3)	32 (7.9)	-	원유 및 석유제품, 활어류
양허 제외	95 (0.9)	-	47 (11.6)	48 (15.8)	쌀, 인삼제품, 해조류, 녹차, 배소전분
합 계	10,114 (100.0)	9,404 (100.0)	406 (100.0)	304 (100.0)	

(5) 농산물 특혜관세 제공내역

한 국	EFTA
對스 위 스: 농산물중 34% 특혜관세 제공 對노 르 웨 이: 농산물중 46% 특혜관세 제공 對아이슬란드: 농산물중 58% 특혜관세 제공 * 사과, 배, 쇠고기, 마늘, 우유 등 주요 농산물 양허제외	스 위 스: 농산물중 42.2% 특혜관세 제공 노 르 웨 이: 농산물중 52.7% 특혜관세 제공 아이슬란드: 농산물중 53.8% 특혜관세 제공 * 가공농산물 : 100% 즉시 철폐

마. 한-아세안* FTA

*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베트남, 태국 등 10개국

(1) 개요

○ '04.11월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FTA 협상 개시 선언
→ '06.8월 정식 서명, '07.6월 발효

○ 협정 발효시까지 국내 비준을 완료하지 못한 회원국은 국내절차 완료를 통보한 날에 협정이 발효되도록 하여 국가별로 발효일이 상이

- 한국,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미얀마: '07.6월
- 필리핀('08.1월), 브루나이('08.7월), 라오스('08.10월), 캄보디아('08.11월), 태국('10.1월)

○ 상품협정문 2차 개정: 한·아세안 양측은 양허품목 추가자유화 절차 등에 관한 「한-아세안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 개정을 위한 2차 의정서」에 서명('11.11.17일)하고 이를 '12. 6. 28에 공포

○ 상품협정문 3차 개정: 한·아세안 양측은 무역원활화 조치 추가 도입 등에 관한 「한-아세안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 개정을 위한 3차 의정서」에 서명('15. 8. 23일)하고 이를 '16. 1. 1.에 발효

(2) 주요 원산지 결정기준

○ 완전생산기준 등에 의한 원산지 인정

- 동·식물, 육류, 어류 및 광물 등 양 당사국의 역내에서만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물품

○ 실질적 변형기준에 의한 원산지 인정(품목별로 부가가치기준·세번변경기준 등 적용)

- 품목별 기준이 없는 품목은 일반기준(4단위 세번변경 또는 부가가치 40% 이상) 적용

○ 개성공단 제품에 대한 원산지특례 인정(부속서 3 제6항)

- '특정품목의 취급'에서 역외가공을 통해 생산된 제품에 대한 원산지 인정을 허용하여 실질적으로 개성공단제품에 대한 특혜관세혜택 가능
- 역외(개성) 투입의 총가치가 최종재화 FOB 가격의 40% 이하이고 일방 당사국(한국) 재료의 총가치가 최종 재화 생산에 이용된 총 재료 가치의 60% 이상인 경우 한국산 원산지를 인정
- 개성공단 제품의 수입이 급증하거나 자국의 국내 산업에 위협이 되는 경우 아세안 각국은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실시 가능

(3) 원산지 증명방식

○ 기관증명제도를 도입

- 우리측은 관세청·대한상의 및 기타 정부 위임기관을 원산지증명서 발급 기관으로 지정

○ 원산지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1년동안 유효

(4) 우리측 상품 양허 수준

(HS 6단위기준, %)

구 분	일반품목군 (NT)	민감품목군 (ST)		
		민감품목 (ST)	초민감품목(HSL)	양허제외
품목수	4,742 (90.77)	482 (9.23)	200 (3.83)	40 (0.25)
주요 품목	천연고무, 동광 합금안한 주석	대구, 청어 보드카, 합성섬유	새우살, 강낭콩 보리, 옥수수	쌀, 마늘, 양파 돼지·닭고기

(5) 아세안측 상품 양허 수준

(HS 6단위기준, %)

구 분	일반품목군 (NT)	민감품목군 (ST)	초민감품목 (HSL)	양허제외
브루나이	5,184(99.23) 차량, 직물섬유	40(0.77) 펌프, 발전기	13(0.25) 냉장고, 차량부품	13(0.25) 완충기, 타이어
캄보디아	4,759(91.10) 의류, 수송용차	465(8.90) 토마토, 마스크	200(3.83) 맥주, 의류, 신발	40(0.77) 플라스틱제품
인도네시아	4,760(91.12) 송신기기, 전기기기	464(8.88) 다랑어, 새우	156(2.99) 진주, 철강금속제	40(0.77) 쌀, 맥주, 발효주
라오스	4,698(89.93) 의류, 오토바이부품	526(10.07) 벼, 편물제품	200(3.83) 쇠고기, 커피, 감자	-
말레이시아	4,762(91.16) 운송설비, 철강	462(8.84) 타이어, 사무용품	113(2.16) 찹쌀, 현미, 닭고기	39(0.75) 고래, 맥주, 포도주
미얀마	4,831(92.48) 기계, 의류, 전자	393(7.52) 고래, 사탕수수	200(3.83) 농어, 새우, 벨트	40(0.77) 바다가재, 맥주
필리핀	4,874(93.30) 석유제품, 철강	350(6.70) 오리, 고등어	93(1.78) 닭, 돼지, 마늘	40(0.77) 벼, 사탕수수
싱가포르	5,224(100) 집적회로, 휘발유	-	-	-
베트남	4,707(90.10) 휘발유, 무선랜	517(9.90) 비누, 차부분품	200(3.83) 사탕수수, 소금	40(0.77) 담배, 스쿠터
태국	-	-	-	-

바. 한-인도 CEPA*

*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1) 개요

○ '06.2월 한-인도 정상회담에서 양국간 CEPA 협상 개시 선언
→ '09.8월 정식 서명, '10.1월 발효

○ 주력 수출품목 양허 및 원산지기준 개선을 위한 개선협상 진행 중('16.10월~)

(2) 주요 원산지 결정기준

○ 완전생산기준 등에 의한 원산지 인정
- 동·식물, 육류, 어류 및 광물 등 양 당사국의 역내에서만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물품에 적용

○ 실질적 변형기준에 의한 원산지 인정(품목별로 세번변경기준과 역내부가가치기준 등 도입)
- 품목별 원산기기준이 없는 경우 일반기준(6단위 세번변경 그리고 부가가치 35%) 적용

○ 보완적 원산지기준: 농수산물, 섬유·의류 외의 물품은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전체가격의 10%이내인 경우 최소허용기준에 따라 세번변경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역내산 원산지로 인정
- 다만, 섬유·의류 등은 비원산지 재료의 중량이 총중량의 7%이내인 경우 역내산 원산지물품으로 인정

(3) 원산지 증명방식

○ 관세청·대한상의 및 기타 정부 위임기관이 발급하는 원산지증명서 필요
- 인도측은 인도 자국법령에 의거 인도수출검사위원회, 섬유위원회 및 수산물수출개발원에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 원산지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1년 동안 유효

(4) 상품 양허 수준

<우리나라>

(HSK 10단위기준, %)

카테고리	전 체	주요 품목
즉시 철폐	6824 (60.6)	나프타, 석유화학제품, 플라스틱제품, 냉연강판, 동광, 석탄, 아연강, 면, 모, 원목, 천연섬유원료 등
5년 철폐	2,310 (20.5)	편직물, 윤활유, 양탄자, 원유, 소매용 의약품, 화물자동차, 밀, 사탕수수, 캐비아, 명란, 이쑤시게 등
8년 철폐	850 (7.5)	모사, 비공업용 다이아몬드, 순모직물, 외과용 의료기기, 페니실린, 동괴, 합금철, 사료, 김, 미역, 게살 등
8년내 세율을 1~5%로 감축	34 (0.3)	자동차 휘발유, 화강암, 밀, 박하, 부자, 시가, 강황 등
8년내 세율의 50%를 감축	478 (4.2)	혼방면사, 배전 및 제어기 부품, 사료용 옥수수, 인스턴트 커피, 게맛살, 오징어, 골뱅이, 건축용 석재 등
양허 제외	765 (6.8)	경유, 등유, 벙커유, 제트유, 일부 순면사, 쌀, 감귤,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달걀, 마늘, 고추, 고등어 등
합 계	11,261	

<인도>

(HS 6단위기준, %)

카테고리	전 체	주요 품목
즉시 철폐	202 (3.9)	유무선전화기, 컴퓨터주변기기, 축전기, 팩시밀리, 모피, 소가죽, 양가죽 등
5년 철폐	180 (3.4)	신문용지, 아연괴, 의료용 전자기기, 합성고무, TV모니터, 원목, 일부 섬유판 등
8년 철폐	3,357 (64.2)	건설중장비, 라디오, 베어링, 보온밥통, 선박, 선철, 시멘트, 원유, 카메라, 파티클보드, 합판, 화강암 등
8년내 세율을 1~5%로 감축	459 (8.8)	카스테레오, 석유화학중간원료, 공기조절기부품, 쇠고기, 돼지고기, 칠면조고기, 과일쥬스, 발효유, 김 등
10년내 세율의 50%를 감축	261 (5.0)	냉장고, 제트유, 살충제, 자동차기어박스, 접착제, 감, 강낭콩, 매니옥전분, 보리, 녹차, 인삼, 감초 등
양허 제외	768 (14.7)	에어컨, 스포츠화, 자동차, TV음극선관, 쌀, 무, 감자, 고구마, 고추, 오렌지주스, 사과 등
합 계	5,227	

사. 한-EU FTA

(1) 개요

○ '07.5월 협상 개시 → '10.10월 정식 서명, '11.7월 잠정 발효, '15.12월 전체 발효

○ 수입액 기준 EU측은 모든 대한국 수입에 부과되는 관세를 5년내 철폐, 우리는 대EU 수입 97.0%에 부과되는 관세를 5년내 철폐

- 품목수 기준, EU측은 쌀을 제외한 나머지 99.6%에 해당하는 품목에 부과되는 관세를 5년내 철폐, 우리는 93.6%를 5년내 철폐(양측 모두 쌀 양허제외)

(2) 주요 원산지 결정기준

○ 완전생산기준: 동·식물, 육류, 어류 및 광물 등 양 당사국의 역내에서만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물품에 적용

○ 실질적 변형기준: 비원산지 재료에 대해 생산과정에서 세번변경, 부가가치기준* 충족 또는 주요 공정을 수행한 경우 인정

* 공장도가격을 기준가격으로 하여 허용된 수입재료의 상한선을 규정

○ 원산지재료로만 획득한 물품: 원산지자격을 얻은 재료로만 생산된 물품

○ 최소허용기준: 비원산지 재료가 특정물품 원산지기준(PSR)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동 재료가 제품 공장도가격(Ex-works)의 10%이하인 경우에는 원산지로 인정

* 섬유류에는 중량기준 10% 이하 비원산지 재료는 허용

(3) 원산지 증명방식: 인증수출자 발급방식

○ 원산지증명은 수출국 법령에 따라 지정된 인증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자율적으로 발급하는 방식 채택

- 다만, 6,000유로 이하 수출물품의 경우 인증수출자가 아니더라도 수출업체 스스로 원산지증명서를 자율발급 할 수 있도록 함

○ 원산지증명서는 한-EFTA FTA와 마찬가지로 특별한 양식을 요구하지 않는 인보이스 신고(Invoice Declaration) 방식을 채택

○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2개월

(4) 상품 양허 수준

<우리나라>

(HSK2010년 10단위기준, %)

카테고리	전 체	주요 품목
즉시 철폐	9,639 (81.1)	자동차부품, 기타정밀화학원료, 계측기, 직물제의류, 칼라TV, 냉장고, 선박, 타이어, 광학기계, 화학기계, 전구, 섬유기계 등
3년 철폐	653 (5.5)	중·대형(1,500cc 초과) 승용차, 기타정밀화학제품, 펌프, 선박용 엔진 및 그 부품, 무선통신 기기부품, 안경, 의약품, 화장품 등
5년 철폐	766 (6.4)	소형(1,500cc 이하) 승용차, 하이브리드카, 밸브, 베어링, 시멘트, 윤활유, 기초 화장품, 접착제, 합성고무, 제재목, 원동기, 펌프 등
7년 철폐	135 (1.1)	순모직물, 동조가공품, 수산화나트륨, 건설중장비, 인쇄기계, 금속절삭가공기계, 기타기계류, 합판, 섬유판 등
10년 이상 등	672 (5.7)	육우, 젖소, 쇠고기, 계란, 우유, 표고버섯, 송이버섯, 주정, 메밀, 돼지고기, 양고기, 혼합유, 발효유, 마요네즈 등
양허제외	16 (0.1)	쌀
총 합계	11,881	

<EU>

(HS2006년 8단위기준, %)

카테고리	전 체	주 요 품 목
즉시 철폐	9,252 (94.0)	자동차부품, 무선통신기기부품, 스웨터, 편직물, 냉장고, 에어컨, 라디오, 스키부츠, 폴리에스테르 직물, 진공청소기, 리튬전지 등
3년 철폐	282 (2.9)	중·대형(1,500cc 초과) 승용차, 베어링, 타이어, 합성수지, 고무벨트, 복사기, 전자레인지, 주방용도자기제품, 항공기, 기타신발, 자전거 등
5년 철폐	269 (2.7)	소형(1,500cc 이하) 승용차, 하이브리드카, 칼라TV, 모니터, 광학기기부품, 순모직물, 모사 영상기록재생용기기, 화물자동차 등
양허제외	39 (0.4)	쌀
총 합계	9,842	

아. 한-페루 FTA

(1) 개요

○ '09.3월 협상 개시 → '11.3월 정식 서명, '11.8.1. 발효

○ 수입액 기준 양측 모두 100%에 해당하는 품목의 관세를 10년 내 철폐, 품목수 기준 우리는 97.4%, 페루는 98.9%에 해당하는 품목의 관세를 10년내 철폐

(2) 주요 원산지 결정기준

○ 자동차, 전기·전자제품 등 대부분의 주요 공산품에 대해서는 세번변경기준이나 부가가치기준(집적법 또는 공제법)의 선택적 적용이 가능하도록 규정

○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제품은 한국산과 마찬가지로 관세혜택 규정
- 대상물품은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100여개 생산품(원산지 부속서에 품목명 명시)

(3) 원산지 증명방식

○ 협정 발효 후 5년 동안은 기관증명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인증수출자에 한해 자율증명을 허용하고, 5년의 경과기간 이후에는 전면 자율증명 방식으로 전환

○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임

(4) 상품 양허 수준

(HSK2010년 10단위기준, %)

양허단계	우리나라				페루			
	품목	비중(%)	수입액(천불)	비중(%)	품목	비중(%)	수입액(천불)	비중(%)
즉시	10,044	84.5	915,668	94.2	5,001	67.9	464,927	74.2
3년	223	1.9	407	0.0	58	0.8	312	0.0
4-5년	609	5.1	18,655	1.9	936	12.7	90,540	14.4
(5년내소계)	10,876	91.5	934,730	96.2	5,995	81.3	555,780	88.6
7-8년	170	1.4	12,464	1.3	51	0.7	3,656	0.6
10년	524	4.4	24,692	2.5	1,240	16.8	67,512	10.8
(10년내소계)	11,570	97.4	971,886	100.0	7,286	98.9	626,948	100.0
10년 초과	202	1.7	0	0.0	79	1.1	0	0.0
계절관세	2	0.0	0	0.0	-	-	-	-
현행관세/양허제외	107	0.9	1	0.0	5	0.1	0	0.0
총합계	11,881	100.0	971,887	100.0	7,370	100.0	626,948	100.0

(5) 상품 양허 유형별 주요 품목

(HSK2010년 10단위기준, %)

우리나라		양허유형	페루	
주요 품목	품목수		품목수	주요 품목
아연광, 연광, 동광, 니켈광, 철광, 원유, 석탄, 윤활유, 보석, 승용차, 자전거, 타이어, 카메라, 시계, 건전지, 가죽제품(벨트 등), 모피의류, 견사, 신사복, 언더셔츠, 모자, 커피, 설탕(원당), 향신료(샤프란)	10,044	즉시 철폐	5,001	대형 승용차(3개 세번), TV(칼라,흑백), VCR, 전기밥솥, 라디오카세트, 일부 자동차부품, 카스테레오, 무선전화기, 선박, 화물자동차, 타이어, 라이터, 손목시계, 오락용구, 기타 합성섬유, 녹차, 배, 사과
아스파라거스(신선냉장), 아보카도우(신선건조), 위스키, 파스타, 식빵, 비스킷, 어류통조림(정어리)	223	3년 철폐	58	면도기, 이발기, 항공기엔진
-	-	4년 철폐	2	세탁기
연괴, 스웨터(면제) 코르크, 바나나, 라임, 포도주, 캐비아 대용물, 어류의 유지	609	5년 철폐	934	중형 승용차(3개 세번), 진공청소기, 의료위생용품, 종이제품, 설탕(정당), 필터담배, 맥주, 위스키, 인삼
옥수수(종자용) 소모사, 붕장어(냉동필레트)	170	7년 철폐	40	일부 철강제품
-	-	8년 철폐	11	장신구, 황산
아연괴, 일부 연괴, 파티클보드, 섬유판, 합판, 소시지, 오징어(냉동,자숙,조미,건조), 고등어(냉동)	524	10년 철폐	1,240	기타 승용차, 냉장고, 고무관, 모포류, 혼방면사, 폴리에스터직물, 신발류, 부직포, 인쇄용지, 접착제, 연축전지, 비누, 섬유판, 오리고기, 돼지고기
(ASG) 닭고기(냉장), 오리고기(냉동), 체다치즈, 무당연유, 녹두·팥				
난황	2	12년 철폐	24	쇠고기(냉동 절단), 설탕(원당)
발효주정	1	15년 철폐	20	버터, 발효유, 빙과류
돼지고기(삼겹살), 버터, 녹차, 설탕(정당), 참기름, 필터담배	199	16년 철폐	-	-
(ASG) 천연꿀, 맨더린				
-	-	17년 철폐	35	닭고기, 치즈
포도, 오렌지	2	계절 관세	-	-

자. 한-미국 FTA

(1) 개요

○ '06.3월 협상 개시 → '07.6월 정식 서명, '12.3월 발효

○ 공산품 100%에 대해 양측 모두 관세를 철폐키로 하고, 수입액 기준 94%를 즉시 또는 3년내 철폐키로 함

○ '18.1~3월 3차에 걸친 개정협상을 거쳐 '19.1월 개정의정서 발효

(2) 주요 원산지 결정기준

○ 역외가공물품의 원산지인정 특례: 협정발효 이후 '한반도역외가공지역(OPZ) 위원회'에서 일정기준 하에 OPZ를 지정할 수 있는 별도 부속서 채택 예정

○ 역내 부가가치 계산방법: 집적법과 공제법중 선택적으로 사용 가능

○ 자동차 부가가치계산을 위한 순원가법 도입: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부가가치 계산 시 집적법, 공제법, 순원가법 중 선택적으로 사용 가능

○ 닭고기를 제외한 쇠고기, 돼지고기 등 축산물의 원산지판정기준으로 '도축공정기준'(역외에서 수입한 산동물을 도축하여 수출할 경우 원산지인정) 도입

(3) 원산지 증명방식

○ 수출자·생산자 뿐만 아니라 수입자도 원산지증명 가능

○ 원산지증명서는 일정한 서식이 없이 필수기재항목*을 기재하면 인정

* 원산지증명서 작성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수입자(작성자가 알고 있는 경우), 수출자(생산자와 다른 경우), 품목번호 및 품명, 원산지결정기준, 원산지 등

○ 원산지 포괄증명 허용: 증명일로부터 12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내 동일 상품의 복수 선적에도 적용 가능

○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4년

(4) 특송화물 통관절차 간소화

○ 원칙적으로 200달러 이하 특송화물의 경우 관세 및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공식적인 반입서류도 요구하지 않을 것을 규정

(5) 상품 양허 수준

※ 수입액 : '03-'05년 3개년 평균

양허단계	우리나라(전체)				미국(전체)			
	품목수	비중(%)	수입액(억불)	비중(%)	품목수	비중(%)	수입액(억불)	비중(%)
즉시	9,003	80.0	218	77.6	8,623	82.1	283	69.2
2~3년	765	6.8	34	12.0	366	3.5	5	1.2
3년 이내	9,768	86.8	251	89.6	8,989	85.6	288	70.4
5년	589	5.2	8	3.0	756	7.2	103	25.3
5년 이내	10,357	92.0	260	92.6	9,745	92.8	391	95.7
6~7년	44	0.4	1	0.4	92	0.9	0.3	0.1
9~10년	667	5.9	12	4.4	586	5.6	17	4.2
10년 이내	11,068	98.3	273	97.4	10,423	99.2	409	100
10년 초과	161	1.4	5	1.7	82	0.8	0.02	0.0
계절/현행관세	16	0.1	2	0.8	-	-	-	-
제외	16	0.1	0.3	0.1	-	-	-	-
총합계	11,261	100	281	100	10,505	100	40,887	100

(6) 양허 유형별 주요 품목

() : 관세율

단계	우리나라	미 국
즉시	자동차부품(3~8), 크실렌(5), 통신용광케이블(8), 항공기엔진(3), 에어백(8), 전자계측기(8), 디지털프로젝션TV(8) 등	자동차부품(1.3~10.2), LCD모니터(5), 캠코더(2.1), 귀금속장식품(5.5), 컬러TV(5), 기타 신발(8.5), 전구(2.6) 등
3년	요소(6.5), 실리콘오일(6.5), 폴리우레탄(6.5), 치약(8), 향수(8), 골프채(8) 등	DTV(5), 컬러TV(5), 골프용품(4.9), 샹들리에(3.9) 등
5년	승용차(8), 고주파증폭기(8), 알루미늄판(8), 안전면도날(8), 환자감시장치(8), 면도기(8), 조제세제(6.5), 헤어린스(8) 등	승용차(2.5), 타이어(4), 가죽의류(6), 폴리에테르(6.5), 스피커(4.9) 등
10년	기초화장품(8), 페놀(5.5), 초음파영상진단기(8), 볼베어링(13) 등	전자레인지(2), 세탁기(1.4), 베어링(9), 섬유건조기(3.4), 화물자동차(25) 등
10년 비선형	아귀(10,냉동), 가오리(10,냉동), 오징어(24,냉동), 꽁치(36,냉동), 꽃게(20-산것, 신선·냉장,냉동), 합판(12) 등	참치캔(6~35), 세라믹타일(8.5/10), 철강(4.3~6.2)
10년 이상	명태(30,냉동), 민어(63,냉동), 기타 넙치(10,냉동), 고등어(10,냉동)	특수신발(20~55.3), 화물자동차(25) 등

차. 한-튀르키예 FTA

(1) 개요

○ '10.4월 협상 개시 → '12.8월 정식 서명, '13.5월 발효

○ 양측 모두 수입액 기준 거의 전품목(약 100%)을 10년내 관세철폐
- 우리측은 99.6%, 튀르키예측은 100%를 10년내 관세철폐
- 품목수 기준 우리는 92.2%, 튀르키예는 89.8% 품목의 관세 10년내 철폐

(2) 주요 원산지 결정기준

○ (품목별원산지기준) 원칙적으로 한·EU FTA 상 품목별원산지기준(PSR)과 동일하게 하되, 양측의 교역관계를 균형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일부 품목에 대해 원산지 기준을 완화하거나, 원산지 예외 쿼터 물량을 확보

- 한·EU FTA보다 완화된 PSR 적용 품목(3개): 설탕과자, 초콜릿 함유 식료품, 기타 비스킷

- 원산지 예외 쿼터 품목(3개): 면사, 재생 필라멘트 직물, 재생 또는 반합성 스테이플 섬유사

○ (개성공단)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위원회에서 역외가공지역(OPZ)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결정(한·EU FTA와 동일)

(3) 원산지 증명방식

○ 수출자가 스스로 발급하는 자율증명 방식을 채택

○ 원산지 증명서는 한-EU FTA와 마찬가지로 특별한 양식을 요구하지 않은 인보이스 신고(Invoice Declaration) 방식을 채택

○ 원산지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2개월임

(4) 상품 양허 수준

양허단계	우리나라(전체)				튀르키예(전체)			
	품목수	비중(%)	수입액 (백만불)	비중(%)	품목수	비중(%)	수입액 (백만불)	비중(%)
즉시	9,559	80.5	296.4	82.5	7,868	65.0	2,064	53.8
3년	200	1.7	14.4	4.0	350	2.9	338	8.8
5년	434	3.7	25.4	7.1	975	8.1	588	15.3
7년 비선형				-	4	0.0	169	4.4
7년	150	1.3	2.7	0.8	869	7.2	676	17.6
10년	609	5.1	18.8	5.2	801	6.6	1.7	0.0
(10년내소계)	10,952	92.2	357.8	99.6	10,867	89.8	3,837	100.0
관세감축 (RD)	134	1.1	0.2	0.1	175	1.4	0.0	0.0
양허제외	795	6.7	1.2	0.3	1,060	8.8	0.2	0.0
E(standstill)	599	5.0	1.1	0.3	748	6.2	0.1	0.0
E 배제	180	1.5	0.0	0.0	312	2.6	0.0	0.0
R	16	0.1	0.0	0.0				-
총합계	11,881	100.0	359	100.0	12,102	100.0	3,837	100.0

* 품목수는 HS 10단위 기준, 수입액은 '07-'09 평균 수입액 기준

(5) 양허 유형별 주요 품목

단계	우리측 공산품	튀르키예측 공산품
즉시	공기조절기, 금속절삭가공기계, 냉장고, 모자, 아연광, 양탄자, 의료용기기, 광물성연료(나프타,원유,기타석유제품)	ABS합성수지, 기타플라스틱제품, 일부평판압연제품, 기타알루미늄제품, 합판, 섬유판, 파티클보드, 조립식목재건축물, 철도차량부품
3년	내시경, 농약, 밸브, 베어링, 변압기부품, 펌프, 계측기, 대리석	차량용고무타이어, 공기조절기, 원동기와펌프, 볼트와너트, 기타산업기계, 가열난방기
5년	조립식목재건축물, 제재목, 전동축, 알루미늄의 판·쉬트, 화강암, 가솔린 경차, 가솔린/디젤 소형	기타자동차부품, 면사, 편직물, 일부합성필라멘트사, 합성필라멘트사직물, 냉장고, 전동기, 가솔린/디젤 중·대형
7년 비선형	-	가솔린/디젤 1600cc이하 소형승용차(4개세번)
7년	양모사, 섬수모사, 직물, 합판, 섬유판, 파티클보드(PB)	양모및섬수모혼방직물, 기어박스, 평판압연제품, 칼라 TV, 세탁기

카. 한-호주 FTA

(1) 개요

○ '09.5월 협상 개시 → '14.4월 정식 서명, '14.12월 발효

(2) 주요 원산지 결정기준

○ 우리 주력 수출품목의 생산공정 및 원자재 해외 수입 등 산업별 특성을 고려하는 한편, 농수산물에 대한 우리측 민감성을 반영한 원산지 기준 도입

- (승용차) 우리업계가 충족시키기 용이한 '4단위 세번변경+공제법 40%' 기준으로 규정
- (기계·전자기기) 대부분 6단위 또는 4단위 세번변경 기준을 도입하면서, 가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가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선택적으로 부가가치(역내산 40%) 기준 사용
- (철강) 대부분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일부 품목의 경우 선택적 부가가치 기준(역내산 40%) 도입
- (육류) 도축기준 불인정, 수산물·곡물 등 우리측이 민감한 신선 농수산물 대부분에 대해 엄격한 원산지 기준(완전생산)으로 하되, 가공농산물에 대해서는 완화된 원산지 기준 사용

○ (개성공단) 개성공단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한국산 원산지 인정을 위한 역외가공지역(Outward Processing Zone) 조항을 도입

- 협정발효 후 6개월 이내에 역외가공지역 위원회 회의 개최, 이후 연 2회 회의개최, 개성공단이 역외가공 대상임을 각주로 명시

(3) 원산지 증명방식

○ 원칙적으로 자율증명 채택, 호주의 경우 기관증명방식을 병행

○ 원산지 증명서의 유효기간: 2년

○ 직접 검증시 수출 당사국은 옵저버로 검증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

(4) 상품 양허 수준

양허단계	우리나라(전체)				호주(전체)			
	품목수	비중(%)	수입액(백만불)	비중(%)	품목수	비중(%)	수입액(백만불)	비중(%)
즉시철폐	8,940	75.2	11,097	72.4	5,450	90.8	4,248	86.0
무관세	1,932	16.3	8,391	54.7	2,780	46.3	2,099	42.5
유관세	7,008	59.0	2,706	17.7	2,670	44.4	2,149	43.5
3년/3A	1,019	8.6	367	2.4	115	1.9	434	8.8
5년	564	4.7	2,684	17.5	411	6.8	256	5.2
7년	265	2.2	15	0.1	-	-	-	-
8A	-	-	-	-	32	0.5	1	0.0
10년	413	3.5	335	2.2	-	-	-	-
(10년내)	11,201	94.3	14,498	94.6	6,008	100%	4,939	100%
10년 초과	492	4.1	804	5.2	-	-	-	-
10년간 50%	12	0.1	0	0.0	-	-	-	-
계절관세	5	0.0	3	0.0	-	-	-	-
양허제외	171	1.4	25	0.16	-	-	-	-
총합계	11,881	100	15,330	100	6,008	100	4,939	100

* 품목수: (우리) HSK 2009 10단위, (호주) HS 2007, 수입액: '07-'09 평균 수입액

(5) 공산품(임산물 포함) 양허 유형별 주요 품목

한국 양허		양허 유형	호주 양허	
주요 품목	품목수		품목수	주요 품목
승용차, 화물차, 자동차부품(제동장치, 기어박스 등), 세탁기, 의약품	8,577	즉시	4,559	가솔린중형승용차, 가솔린소형승용차, 디젤화물자동차, 타이어
밸브, 기타목재류, 의류, 의약품, 접착제, 타일, 안전유리, 타이어	792	3년	107	디젤중형승용차, 가솔린대형승용차, 자동차부품(기어박스, 차체부품 등)
-	-	3A	8	중고차
원유, 망간철, 알루미늄관, 농약, 단판, 면사, 인조섬유방적사	325	5년	411	백판지, 도금강판, 필름류, 기타지, 의류, 양말, 신발, 안전유리, 베어링
시멘트, 밸브, 베어링, 가열난방기부품, 제재목	85	7년		-
-		8A	32	양탄자, 의류(남성바지, 신사복, 기타복(앙상블))
니켈괴, 연괴, 아연괴, 섬유판, 건축용목제품, 합판, 목제생활용품	94	10년		-
기타목재류, 섬유판, 합판	36	12년		-
파티클보드, 일부 섬유판	15	15년		-
일부 파티클보드, 합판	7	제외		-

타. 한-캐나다 FTA

(1) 개요

○ '05.7월 협상 개시* → '14.9월 정식 서명, '15.1월 발효

* 캐나다의 쇠고기 관련 WTO 제소('09.4월)등으로 협상 중단

○ 현재 교역 중인 대다수 품목*에 대해 10년 이내에 관세 철폐

* 품목수 기준: (우리) 97.5% (캐나다) 97.5% / 수입액 기준: (우리) 98.4%, (캐나다) 98.7%

(2) 주요 원산지 결정기준

○ 우리 주력 수출품의 생산 공정 및 원자재 수입 등 산업별 특성을 고려

- (육류) 육류(닭고기 제외)의 도축기준 인정(한·미 FTA와 동일)
- (완성차) 미국산 부품의 상호 누적 인정을 허용한 부가가치 기준(집적법 35%, 공제법 45%, 순원가법 35%)
- (섬유·의류) 한·미 FTA(원사기준)보다 완화된 원산지 기준(세번변경 및 염색·날염공정 인정 등)으로 규정
- (전자기기 및 기계 등) 4단위 또는 6단위 세번변경기준을 도입하면서, 가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가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제품에 따라 선택적 부가가치(역내산 45%) 기준 사용

○ (개성공단) 한·미/한·EU FTA와 유사한 한반도 역외가공지역위원회 설립을 통해 역외가공지역 지정 및 원산지 충족기준을 논의키로 규정

- 단, 한·미 FTA에서 규정하고 있는 역외가공지역 상품의 원산지 상품 인정 전 충족 기준은 미도입

(3) 원산지 증명방식

○ 원산지 증명은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스스로 발급하는 자율증명 채택

○ 원산지 증명서 유효기간은 증명서의 서명일로부터 2년 또는 수입국의 법과 규정에 명시된 기간

○ 원산지 증명서는 단일 선적 이외에도, 원산지 유효기간 내 상품의 복수 선적에도 적용 가능(포괄증명)

(4) 상품 양허 수준

* 품목수: HS 2011 기준, 수입액: '09-'11 평균 수입액 기준

양허단계	우리나라(전체)				캐나다(전체)			
	품목수	비중(%)	수입액 (백만불)	비중(%)	품목수	비중(%)	수입액 (백만불)	비중(%)
즉시철폐	9,749	81.9	4,205	87.0	6,380	76.4	4,188	64.1
무관세	1,960	16.5	3,266	67.6	5,703	68.3	3,866	59.2
유관세	7,789	65.5	938	19.4	677	8.1	323	4.9
3년	502	4.2	255	5.3	1,403	16.8	2,072	31.7
5년	722	6.1	184	3.8	363	4.3	186	2.9
6년	2	0.0	0	0.0	-	-	-	-
7년	12	0.1	76	1.6	-	-	-	-
10년	612	5.1	29	0.6	2	0.0	0	0.0
세번분리	5	0.0	4	0.1	-	-	-	-
(10년내)	11,604	97.5	4,752	98.4	8,148	97.5	6,447	98.7
10년 초과	77	0.6	52	1.1	25	0.3	84	1.3
세번분리	5	0.0	4	0.1	-	-	-	-
계절관세	1	0.0	0	0.0	-	-	-	-
현행관세	2	0.0	0	0.0	-	-	-	-
양허제외	211	1.8	22	0.5	181	2.2	0	0.0
총합계	11,900	100	4,831	100	8,354	100	6,530	100

(5) 공산품(임산물 포함) 양허 유형별 주요 품목

한국 양허		양허 유형	캐나다 양허	
주요 품목	품목수		품목수	주요 품목
알루미늄괴, 니켈괴, 동괴, 자동차부품, 승용차, 석유화학제품, 기타정밀화학원료, 가죽 기타석유화학제품, 염료, 도료, 합성수지, 합성고무, 타이어, 섬유사, 직물, 의류, 의료용전자기기, 의료용기기	9,295	즉시 철폐	5,573	윤활제, 표면활성제, 자동차부품, 광학기기, 악기, 도료, 필름, 농약, 합성수지, 합판, 건축용목제품, 기타 비금속광물, 타일, 가열난방기, 칼라 TV, 진공청소기
기타목재류, 제재목, 단판, 목재생활용품, 코르크, 마찰제품, 의료용기기, 밸브, 합성수지	260	3년 철폐	1,028	화장품, 비누, 타이어, 가방, 면직물, 섬유사, 직물, 양탄자, 로프, 의류, 섬유제품, 자동차부품, 승용차, 화물차, 냉장고
타이어, 기타화장품, 단판, 기타목재류, 베어링, 침구이불, 자전거부품, 제재목, 건축용목제품	302	5년 철폐	202	타이어(승용차, 버스). 안료, 신발, 모자, 가열난방기, 건전지, 축전지, 전구, 철도차량, 화물자동차, 특장차 시계, 기타, (조명기기), 필기구, 접시세척기
제재목, 파티클보드, 섬유판, 합판, 기타목재류, 의료용전자기기, 건축용목제품	85	10년 철폐	2	기타차량, 승용차(1인승)
파티클보드, 섬유판, 합판	8	10년 비선형		-
-		11년 철폐	25	기타신발, 선박, 해양구조물

파. 한-중국 FTA

(1) 개요

○ '12.5월 한·중 통상장관 회담 계기 협상 개시 선언

- '12.5월~'14.3월간 총 10차례에 걸친 공식협상을 통해 1단계 협상*을 타결하고 '14.11. 제14차 공식협상 개최로 2단계 협상** 완료

* (1단계) 상품・서비스・투자・규범 등 협상분야 지침(모델리티) 협상

** (2단계) 전 분야의 양허 및 협정문안 협상 진행

○ '15.6.1. 정식서명, '15.12.20. 발효(시행)

(2) 주요 원산지 결정기준

○ 교역패턴, 생산공정, 산업 민감성 등을 고려하여 5,205개(HS 6단위 기준) 품목별 원산지 기준(PSR)을 규정

- (농수산물) 신선농수산물은 완전생산기준을 적용하고, 가공농수산품은 세번변경기준 중심으로 설정하여 對中 수출 가능성을 제고
- (석유·화학) 주로 4단위 세번변경기준(CTH) 중심으로 설정, 일부 석유제품에 대해서는 6단위 세번변경기준(CTSH)을 도입하여 활용도 제고
- (기계・전기전자・정밀기기) 세번변경기준(4단위(CTH), 6단위(CTSH)) 중심으로 설정하여 업계의 활용 편의를 제고하되, 양국 산업상 민감성이 있는 경우는 부가가치기준을 적용
- (섬유·의류) 섬유 제품은 주로 「세번변경기준(예외기준 포함) 또는 역내 부가가치기준(RVC 40%)」으로 설정, 의류 제품은 「2단위 세번변경기준(CC) 또는 역내 부가가치기준(RVC 40%)」으로 합의
- (철강) 도금, 선재 등 품목은 4단위 세번변경기준(CTH)으로 합의, 냉연제품은 예외기준을 포함한 4단위 세번변경기준(CTH ex. from~)
- (자동차) 양국의 산업의 민감성을 고려하여, 승용차는 4단위 세번변경기준(CTH)과 역내 부가가치기준(RVC 60%)을 모두 충족시 원산지를 인정, 기타 완성차는 단일 부가가치기준(RVC 50%)으로 설정

○ 개성공단에서의 역외가공을 인정

- 현재 개성공단에서 생산중인 품목을 포함한 총 310개 품목(HS 코드 6단위 기준)에 대해 원산지 지위를 부여

(3) 원산지 증명방식

○ 수출자, 생산자 또는 그 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수출 당사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자국법령에 따라 발급

- (우리측) 세관, 대한상의 (중국측) 해관총서 및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 원산지 증명서 유효기간: 1년

(4) 상품 양허 수준

* 품목수: (우리) HSK 2012 10단위, (중국) HS 2012 8단위 기준, 수입액: '12년 수입액 기준

양허단계	우리나라(전체)				중국(전체)			
	품목수	비중(%)	수입액(천불)	비중(%)	품목수	비중(%)	수입액(천불)	비중(%)
즉시철폐	6,108	49.9	41,853	51.8	1,649	20.1	73.372	44.0
무관세	1,983	16.2	33,811	41.9	691	8.4	64,658	38.8
유관세	4,125	33.7	8,042	9.96	958	11.7	8,714	5.2
5년 철폐	1,433	11.7	3,098	3.8	1,679	20.5	5,830	3.5
10년 철폐	2,149	17.6	17,330	21.5	2,518	30.7	31,250	18.7
(10년 이내)	9,690	79.2	62,281	77.1	5,846	71.3	110,453	66.2
15년 철폐	1,106	9.0	7,951	9.8	1,108	13.5	21,917	13.1
20년 철폐	476	3.9	3,406	4.2	474	5.8	9,375	5.6
(20년 이내)	11,272	92.2	73,638	91.2	7,428	90.7	141,744	85.0
부분감축	87	0.7	2,276	2.8	129	1.6	10,014	6.0
현행+TRQ	21	0.2	569	0.7	-	-	-	-
협정배제	16	0.1	77	0.1	-	-	-	-
양허제외	836	6.8	4,209	5.2	637	7.8	14,994	9.0
총합계	12,232	100	80,768	100	8,194	100	166,752	100

(5) 상품 양허 유형별 주요 품목

한국 양허		양허 유형	중국 양허	
주요 품목	품목수		품목수	주요 품목
메모리반도체, 휴대용컴퓨터, 중후판, 화물선, 무연탄, 컴퓨터부품, 열연강판, 전분박, 치어(돔, 농어)	1,983	즉시 철폐 (무관세)	691	집적회로반도체, 인쇄회로, 기타컴퓨터 주변기기, 플라스틱금형,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장비, 채소종자, 맥주, 소금
기타주철제품, 크레오소트, 합성수지 (PE, ABS, PC), 합성고무(BR, SBR, NBR), 견사, 화학기계 등	4,125	즉시 철폐 (유관세)	958	철및비합금강L형강, 동괴. 동박, 폴리우레탄, 항공 등유, 초산비닐, 견사, 마사, 모사, 비스코스사, 스위치부품 등
페로실리콘, 반도체제조용 금, 석유화학제품(파라페닐렌디아민/기타) 등	1,433	5년 철폐	1,679	기타 철 구조물, 이온교환수지, 연료유(No.5-7), 액화 프로판, 기타 직물, 면, 마, 편직물, 방모직물 등
관연결구류(주철), 실리콘오일, 마사, 직물제 의류(양모코트및자켓), 일부 순면생지, 일부 금속공작기계 부품, 식품가공기계(커터), 차체부분품, 브레이크 부품, 엔진섀시(승용차용) 등	2,149	10년 철폐	2,518	스테인레스 냉연강판(0.5-1mm), 중후판(10mm미만), 스테인레스 열연강판(3-4.75mm), 알루미늄 박, 에틸렌, 프로필렌, LCD 패널, PPS수지, 직물제의류(운동복), 편직제의류(유아복,운동복) 등
페로망간(합금철), 폴리염화비닐, 편직제의류(면티셔츠), 편광재료판, 일부 베어링, 일부 볼트및너트, 기어박스, 에어백, 클러치 등	1,106	15년 철폐	1,108	착색아연도강판, 톨루엔, 나프타, 석유아스팔트. 윤활기유, 폴리카보네이트, 순면사, 일부 기체펌프, LCD부품 등
편직제의류(면스웨터), 로드휠, 기타 납축전지, 기타배전및제어기(1000v이하), 기타 가죽제가방, 목재펠릿, 도라지, 새우살	476	20년 철폐	474	스티렌, ABS수지, 폴리스티렌, 일부 폴리에스터직물, 기타원동기(유압식), 목재가공기계, 디젤버스, 브레이크 등
안전유리, 방모사, 면직물, 직물제의류(여성용 합섬코트및자켓), 스포츠화, 일부 밸브부품, 원동기(리니어액팅), 섬유판(미가공 일부), 제재목(적송), 김치 등	87	부분 감축	129	방향성 전기강판, 스테인레스선재, 염화비닐수지, 기타폴리에스터사, 일부 타이어코드, 인쇄기계, 머시닝센터, 자동기어변속장치, 마이크 부품, 샴푸, 린스, 기타조제식료품
낙지, 대두, 참깨, 아귀(냉동), 미꾸라지(활어), 바지락, 고구마전분, 팥(건조), 오징어(가공), 맥아, 복어(활어)	21	현행+ TRQ	-	-
쌀(멥쌀, 찹쌀, 벼, 쌀가루 등)	16	협정 배제	-	-
주철관, 동판, 니켈괴, 초산, 초산에틸, 판유리, 타일, 순면사, 소모사, 기타 폴리에스터사, 직물제의류(남성용 합섬코트및자켓), 편직제의류(합섬스웨터), 기타신발, 볼베어링, 전기드릴, 승용차. 화물차 등	836	양허 제외	637	일부 전기아연도강판, 일부 용융아연도강판, 일부 전기강판, 파라자일렌, 테레프탈산, 폴리프로필렌, 에틸렌글리콜, 공업용 방직 섬유, 나일론사, 굴삭기, 승용차 등

하. 한-뉴질랜드 FTA

(1) 개요

○ '09.5월~'10.5월간 총 4차례 공식협상 개최 → 상품양허 수준 등 주요 쟁점에 대한 양측 입장차이로 협상 중단

○ '14.2월 협상 재개 → '15.3.23. 정식 서명, '15.12.20. 발효(시행)

(2) 주요 원산지 결정기준

○ (품목별원산지기준) 우리 주력 수출품목의 생산 공정 및 원자재 해외 수입 등 산업별 특성을 고려하는 한편, 농수산물에 대한 우리측 민감성을 반영

- (자동차) 승용차는 업계 편의를 위해 4단위 세번변경기준(CTH)과 부가가치기준(집적법 30%/공제법 40%)을 선택적으로 이용 가능하도록 규정
- (기계 및 전자기기) 2단위 또는 4단위 세번변경기준(CC 또는 CTH)과 부가가치기준(집적법 30%/공제법 40%)을 선택적으로 이용 가능
- (철강 및 철강제품) 대부분 4단위 세번변경기준(CTH)이나, 일부 품목은 부가가치기준(집적법 30%, 공제법 40%)을 선택적으로 적용하거나 보다 완화된 6단위 세번변경기준(CTSH)을 거치도록 규정
- (섬유 및 의류) 수입산 섬유원료(fiber) 또는 사(yarn)를 사용하여 사(yarn) 또는 직물(fabric)을 만들더라도 원산지로 인정(CC 또는 CTH)하되, 일부의류에 대해서는 염색·날염 공정을 추가한 기준과 부가가치기준(공제법 40%)을 선택적으로 이용 가능하도록 규정
- (농축수산물) 육류의 경우 도축기준 불인정, 수산물·곡물 등 우리측 민감품목인 신선 농수산물 대부분에 대해 엄격한 원산지 기준(완전생산)으로 하되, 가공농산물에 대해서는 완화된 원산지 기준에 합의

○ (개성공단) 개성공단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한국산 원산지 인정을 위한 역외 가공지역(Outward Processing Zone) 조항을 도입

- 다만, 한-미 FTA에서 규정하고 있는 역외가공지역 상품의 원산지 상품 인정 전 충족 기준(한반도 비핵화 진전, 남북관계에의 영향 등)은 미도입

(3) 원산지 증명방식

○ 원산지증명은 수출자의 편의를 위해 자율증명 방식을 채택

* 송품장 방식 또는 표준 서식 방식 중 작성자 편의에 따라 선택

○ 원산지 증명서의 유효기간을 2년으로 합의하였으며, 직접 검증시 수출 당사국은 옵저버로 검증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

(4) 상품 양허 수준

* 품목수: (우리) HSK 2009 10단위, (뉴질랜드) HS 2007 기준, 수입액: '09-'11 평균 수입액

양허단계	우리나라(전체)				뉴질랜드(전체)			
	품목수	비중(%)	수입액 (천불)	비중(%)	품목수	비중(%)	수입액 (천불)	비중(%)
즉시철폐	9,092	76.5	568,606	48.3	6,220	85.7	850,163	92.0
무관세	1,932	16.3	459,555	39.1	4,207	58.0	698,395	75.6
유관세	7,160	60.3	109,051	9.3	2,013	27.7	151,768	16.4
3년 철폐	960	8.1	141,362	12.0	488	6.7	41,138	4.5
5년 철폐	394	3.3	17,222	1.5	275	3.8	10,685	1.2
6년 철폐	1	0.0	53,982	4.6	-	-	-	-
7년 철폐	347	2.9	87,114	7.4	273	3.8	22,106	2.4
7년 + TRQ	1	0.0	26,293	2.2	-	-	-	-
(7년 이내)	10,795	90.9	894,579	76.0	7,256	100.0	924,092	100.0
10년 철폐	362	3.0	17,206	1.5				
10년 + TRQ	2	0.0	9,091	0.8				
(10년 이내)	11,159	93.9	920,876	78.3				
10년 초과	11,655	98.6	1,135,284	96.5				
10년간 50%	12	0.1	628	0.1				
계절관세	1	0.0	11,457	1.0				
세번분리 등	13	0.1	27,028	2.2				
양허제외	199	1.7	2,039	0.2				
기타	13	0.1	27,028	2.2	32	0.4	3,062	0.3
총합계	11,881	100.0	1,176,437	100.0	7,288	100.0	927,154	100.0

(5) 공산품(임산물 포함) 양허 유형별 주요 품목

우리나라		양허 유형	뉴질랜드	
주요 품목	품목수		품목수	주요 품목
원목, 펄프, 고철, 나프타, 알루미늄스크랩, 동스크랩, 열연강판, 회화, 농기계부품, 컴퓨터부품, 무선중계기, 서적, 리프트, 스캐너, 의자, PC	1,863	즉시 철폐 (무관세)	3,419	승용차, 칼라TV, 유/무선전화기, 원유, 제트유 및 등유, 합성수지, 철도차량 코르크, 단판, 원목
알루미늄괴, 변환기, 선박용부품, 변압기 부품, 스위치, TV카메라, 소가죽, 고령토, 의약품, 침구이불, 치약, 경유, 센서, 액정 디바이스, 양탄자, 농약, 예인선, 단판, 목제식탁용품	6,903	즉시 철폐 (유관세)	1,635	승용차용 타이어, 버스/화물차용 타이어, 에어컨, 세탁기, 축전지, 전선, 철강관, 아연도강판, 동조가공품, 밸브, 냉연강판, 알루미늄조가공품, 파티클보드, 제재목
메탄올, 알루미늄괴, 연괴, 기타화장품, 제재목, 플라스틱관, 항암제, 기체펌프, 헤어린스, 지게차, 주강, 의류(브라우스, 드레스, 바지), 자동차부품, 단판	771	3년 철폐	485	화물자동차, 건설중장비, 냉장고, 자동차 부품(여과기, 안전벨트, 제동장치), 기타 플라스틱제품, 철강선, 철강관, 냉연강판, 모사, 편직물, 편직제/직물제 의류
카테터, 변환기, 밸브, 베어링, 액체펌프, 안경, 가스용접기, 단판	172	5년 철폐	274	철강선, 철강관, 중후판, 봉강, 선재, 도금강판, 연선 및 와이어, 편직물, 기타 섬유제품, 기타신발
밸브, 베어링, 공기조절기, 시멘트, 볼트 및 너트, 수력터빈, 가열난방기 부품, 지게차, 복사기, 제재목	86	7년 철폐	270	변압기, 부직포, 도료, 모사, 편직물, 편직제/직물제 의류, 합판, 섬유판, 자동차부품(방열기 및 그 부분품)
섬유판, 목제식탁용품, 코르크, 젓가락, 합판, 건축용목제품, 목제장식품상자	62	10년 철폐	-	-
섬유판, 건축용목제품, 합판, 기타목재류	48	12년 철폐	-	-
섬유판, 파티클보드	20	15년 철폐	-	-
합판	4	20년 철폐	-	-
파티클보드, 합판	2	양허 제외	-	-

거. 한-베트남 FTA

(1) 개요

○ '12.8월 한·베트남 FTA 협상개시 선언 후 총 9차례의 공식협상 개최

○ '14.12.10. 양국 정상회담시 협상 실질 타결 선언

○ '15.3.28. 양국 수석대표간 가서명(Initialing) 및 '15.5.5. 정식서명

○ '15.11.30 국회 본회의 통과 및 '15.12.20. 발효(시행)

(2) 주요 원산지 결정기준

○ 한-아세안 FTA 기준과의 일관성을 유지하되, 양국의 생산 과정과 교역 패턴을 고려하여 보다 무역촉진적인 방향으로 품목별원산지기준을 개선

※ HS 6단위 기준 총 5,205개 중 한-아세안 대비 약 460여개(약9%) 개선

- (석유화학) 대부분 한-아세안 FTA와 유사한 "4단위 세번변경(CTH) 또는 부가가치40%(RVC40)"를 채택하되, 휘발유 제품에는 6단위 세번변경(CTSH) 채택

※ 한-아세안 FTA의 일반기준: 4단위 세번변경 또는 부가가치 40%

- (철강) 원재료 조달, 양국 산업구조 등을 고려, 대부분 "4단위 세번변경(CTH) 또는 부가가치 40%(RVC40)" 기준이나, 스테인레스강 중 일부 품목(광폭냉연강판 등)은 "6단위 세번변경(CTSH) 또는 부가가치 40%(RVC40)" 기준으로 합의하여 교역을 촉진

- (자동차) 완성차는 한-아세안 FTA 기준과 같이 "부가가치 45%(RVC45)" 기준으로 하되, 자동차 부품 중 일부 품목(기어 박스, 차축 등)에 세번변경 기준을 선택적으로 사용하도록 추가함

- (기계, 전기·전자) 한-아세안 FTA에서 대부분 "4단위 세번변경(CTH) 또는 부가가치 40%(RVC40)"이나, 양측 교역촉진을 위해 일부 품목(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등)을 "6단위 세번변경(CTSH) 또는 부가가치 40%(RVC40)"으로 개선

- (섬유·의류) 대부분 한-아세안 FTA와 유사하게 세번변경 기준과 부가가치기준 중에 선택할 수 있으나, 기타 섬유제품(손수건, 스카프등)에 대한 역외산 재료 사용을 허용하여 교역을 촉진

- (농축수산물) 신선농수산물은 대체로 한-아세안 FTA 기준(완전생산기준(WO))을 유지하되, 가공농수산물 중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선택기준(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 중 선택)의 비율을 높임

○ (개성공단) 개성공단에서 생산되는 100개* 품목(HS 6단위 기준)에 대해 한-베트남 FTA상 특혜관세 수혜 기회 마련

- (인정기준) 비원산지 투입가치가 최종 상품가격(FOB)의 40% 이하일 것 등

* 개성공단 기업의 희망품목과 최근 생산품목 등을 고려하여 100개 선정

(3) 원산지 증명방식

○ 기관증명 방식을 채택

○ 원산지 증명서 유효기간은 발급일 후 1년이며, 검증방식은 한-아세안 FTA와 마찬가지로 간접검증 후 필요시 수출국 직접 방문검증

(4) 상품 양허 수준

* 품목수: (우리) HSK 2012 10단위, (베트남) HS 2012 8단위, 수입액: '12년 수입액

양허단계	우리나라(전체)				베트남(전체)			
	품목수	비중(%)	수입액(천불)	비중(%)	품목수	비중(%)	수입액(천불)	비중(%)
전체	12,232		5,717,642		9,558		15,508,115	
한-아세안FTA	11,168	91.3	5,244,641	91.7	8,256	86.4	13,374,086	86.2
무관세	4	0.0	0	-	65	0.7	179,932	1.2
즉시철폐	87	0.7	72,329	1.3	-	-	-	-
3년철폐	216	1.8	12,930	0.2	14	0.1	267,503	1.7
5년철폐	134	1.1	43,140	0.8	47	0.5	19,069	0.1
7년철폐	7	0.1	2,997	0.1	30	0.3	34,011	0.2
10년철폐	48	0.4	40,195	0.7	106	1.1	405,553	2.6
15년철폐	3	0.0	242	0.0	3	0.0	11,173	0.1
유관세 소계	495	4.0	171,836	3.0	200	2.1	737,310	4.8
한-베 FTA	499	4.0	171,836	3.0	265	2.8	917,243	6.0
총합계	11,667	95.4	5,416,478	94.7	8,521	89.2	14,291,329	92.2

(5) 공산품(임산물 포함) 양허유형별 주요 품목

한국 양허		양허 유형	베트남 양허	
주요 품목	품목수		품목수	주요 품목
실뱀장어, 치어, 종패용 등	4	즉시 철폐 (무관세)	65	화물자동차, 펌프, 철근, 공기조절기, 기타 정밀화학원료, 기타철강금속제품, 냉연강판, 복합비료, 봉강, 사료, 아연도강판, 열연강판, 의약품, 원유 등
면사, 모사, 남성바지/셔츠, 방모사, 방모직물, 브라우스, 생지, 섬유판, 양말, 신사복, 순면사, 언더셔츠, 여성정장 잠옷, 정갈코트 및 자켓파티클보드, 합판 등	87	즉시 철폐 (유관세)	-	-
가자미, 갯장어, 건전지, 건조어란, 경유, 곡류가공품, 기타고무제품, 기타농산가공품, 석유제품, 시멘트, 넙치, 발효유, 방어, 자전거, 제트유, 피조개, 헤어린스, 필름 등	216	3년 철폐	14	기타영사기, 나일론직물, 부직포, 순면직물, 재생단섬유직물, 편직물, 폴리에스터단섬유직물, 혼방면직물
가오리(냉동), 간장, 조제 감자, 고구마, 과일주스, 기타과실, 잼, 두부, 향미용 조제품, 조제소라, 조제오징어, 기타소스류, 정밀화학원료, 기타주류, 기타조개, 섬유, 복어, 먹장어, 당면, 쌀과자, 생선묵, 선박용 부품, 성게, 에틸렌초산비닐, 위스키, 인삼음료, 저밀도에틸렌, 조제문어, 피조개, 캐슈넛, 파티클보드 등	134	5년 철폐	47	음극선관모니터, VCR, 계전기, 골판지원지, 기타생활용품, 기타식탁용구, 기타유리제품, 기타직물, 유아용조제식료품, 무선통신기기부품, 믹서, 변압기, 순면직물, 스위치, 신발부분품, 자동차부품, 전동기, 전선, 전신기기, 카스테레오, 컴포넌트, 편직물, 합성수지, 항공기부품, 혼방면직물 등
기타전선, 통신용전선, 합판	7	7년 철폐	30	가열난방기(철강제 조리기구), 커피탕기, 비금속제 경첩, 보온밥통, 변압기, 볼트/너트, 선재, 원동기, 의약품, 자전거부품, 전동기, 철도차량부품, 항공기부품
열대과일(구아바/망고/망고스틴/바나나/파인애플 등), 기타 과일주스, 기타 돔, 난초/국화 등 화훼, 마늘(건조/냉동), 생강(건조/기타), 섬유판, 베어링, 기타어류(냉동), 기타게(냉동), 기타해조류, 호도(탈각/신선・건조), 전갱이, 틸라피아 등	48	10년 철폐	106	화장품(스킨로션/파우더 등), 가열난방기, 가청주파증폭기, 건축용목제품, 계전기, 스위치, 모니터, 기타고무제품, 전기밥솥, 냉장고, 라디오, 동조가공품, 복합비료, 세탁기, 순면직물, 승용차(3,000cc 초과), 화물자동차(5톤～20톤) 등
고구마전분, 천연꿀, 팥(종자용외)	3	15년 철폐	3	자동차부품(기어박스)
새우(냉동/가공)	7	TRQ	-	-

너. 한-콜롬비아 FTA

(1) 개요

○ '09.12월 협상 출범 선언 이후 7차례 공식협상 및 7차례 소규모 협상을 거쳐 '12.8.31. 양국 수석대표 타결 선언 및 가서명

○ '13.2.21. 한-콜롬비아 FTA 정식서명 및 '14.4.29. 국회 본회의 통과

○ '16.7.15 한-콜롬비아 FTA 발효

⇒ 현재 교역 중인 사실상 모든 품목에 대하여 10년 내 관세철폐

- 수입액 기준 우리측은 99.9%, 콜롬비아측은 97.8% 10년 내 관세철폐
- 품목수 기준 우리는 96.1%, 콜롬비아는 96.7% 품목 10년내 철폐

(2) 주요 원산지 결정기준

○ (품목별원산지기준) 양국 간 교역물품에 대한 균형 있는 특혜 원산지 판정 기준을 마련하여 안정적인 교역 및 투자 환경을 조성

- 부가가치 기준으로 공제법·집적법·순원가법(자동차)을 선택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수출기업의 원산지증명 부담을 완화
- 우리측 주력 수출품목에 대해서는 생산공정과 원자재 해외 조립 비율 등 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기준을 규정

○ (개성공단) 개성공단 생산품의 원산지 인정을 위한 역외가공 조항 마련

- 섬유, 유리, 철강제품, 기계류, 전기전자, 광학기기, 시계, 가구 등 동 조항의 적용을 받은 HS6단위 100개 품목을 부속서에 규정

(3) 원산지 증명방식

○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스스로 발급하는 자율증명 방식을 채택

-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서명일로부터 1년임

(4) 상품 양허 수준

* 품목수: (우리) HSK 2010 10단위, (콜롬비아) HTSC2007 10단위(단, 농산물은 8단위)
* 수입액은 '07-'09 평균 수입액 기준

양허단계	우리나라(전체)				콜롬비아(전체)			
	품목수	비중(%)	수입액 (USD)	비중(%)	품목수	비중(%)	수입액 (USD)	비중(%)
즉시철폐	9,787	82.38	85,786,333	66.91	4,390	60.64	283,528,285	34.08
무관세	1,932	16.26	36,228,073	28.25	265	3.66	31,154,076	3.74
3	268	2.26	3,824,842	2.98	33	0.46	1,404,047	0.17
5	670	5.64	37,279,881	29.08	1,547	21.35	176,340,146	21.20
5년 소계	10,725	90.27	126,891,057	98.96	5,969	82.46	461,272,479	55.45
7	136	1.14	1,273,064	0.99	503	6.95	37,320,436	4.49
9					1	0.01	41,192,955	4.95
10	558	4.70	25,267	0.02	529	7.32	273,812,794	32.91
10년 소계	11,419	96.11	128,189,388	99.98	7,003	96.73	813,598,664	97.80
10년 초과	304	2.56	22,555	0.02	184	2.54	18,288,563	2.20
TRQ	5	0.04	0	0.00	6	0.08	0	0.00
양허제외	153	1.29	6,259	0.00	47	0.65	0	0.00
계	11,881	100.00	128,218,202	100.00	7,240	100.00	831,887,227	100.00

(5) 공산품(임산물 포함) 양허유형별 주요 품목

우리나라		양허 유형	콜롬비아	
주요 품목	품목수		품목수	주요 품목
철광, 동/알루미늄/아연 괴 및 제품, 비금속광물, 석탄, 석유화학제품	9,500	즉시	3,849	무선전화기, VCR, 합성수지, 자동차 부품, 정밀화학원료, 기타고무제품
원유, 자동차 부품	146	3년	31	기타합성수지, 기타플라스틱제품
페로니켈, 장신구, 제재목, 단판	132	5년	1,420	자동차부품, 버스 및 승용차용 타이어, 에어컨, 의류, 섬유류,
스웨터, 남성바지	6	7년	455	합성수지, 폴리에스터 직물, 화장품, 안전유리, 산업용 차량 타이어,
-	-	9년	1	중형 디젤 승용차(SUV)
니켈괴, 합판, 건축용 목제품	127	10년	363	승용차, 화물자동차, 이륜차, 브라운관 TV, 가죽제품, 신발, 완구류
파티클보드, 섬유판, 일부 합판	20	12년	11	냉장고, 냉방기, 세탁기

더. 한-영 FTA

(1) 개요

○ '17.2월부터 총 7차례 협상을 통해 한영 FTA 협정문(안) 합의

* 제7차 회의(5.29~30, 런던)와 컨퍼런스 콜(6.5, 6.7)을 통해 최종 합의

○ 한-영 FTA 원칙적 타결 선언('19.6.10.) 및 국무회의('19.8.13.) 등 내부절차 완료 후 정식 서명('19.8.22.)

○ 비준 동의안 국회 제출('19.9.4.) → 외통위('19.10.21.) → 본회의('19.10.28.)

○ EU 의회의 브렉시트 합의안 최종승인('20.1.29, 찬성 621표, 반대 49표)에 따라 '20.2.1일 0시(브뤼셀 시간 기준) 부터 英의 EU탈퇴 확정*

* (경과) '16.6월 국민투표로 브렉시트 결정, '17.3월 英의 EU 탈퇴의사 통보, '19.10월 英-EU 합의안 도출, '19.12월 합의안 英 하원 통과, '20.1월 英 상원 통과

○ 브렉시트 합의안에 명시된 이행기간(~'20.12.31.)동안은 한-EU FTA 적용, 이행기간 종료 이후인 '21.1.1일부터 발효

(2) 주요내용

○ (상품관세) 한-EU FTA 양허를 동일하게 적용

- 자동차, 자동차 부품 등을 현재와 같이 무관세로 수출 가능

○ (예외사항) 맥아·보조사료는 시장접근물량*(Tariff Rate Quotas) 추가 제공, EU산 재료·공정 누적 및 직접운송** 한시적(5년) 인정 등

* TRQ : 시장접근물량에 대해서는 저율(무) 관세 적용, 초과물량은 고율 관세 부과

** EU산 재료·공정을 사용하거나 EU를 거쳐 운송하는 경우에도 특혜관세 적용 가능

○ (추가 협상) 향후 영국이 브렉시트 이행기간 확보시 또는 발효 2년 내에 높은 수준의 협정 체결을 위한 후속 협상 개시

러. 한-중미* FTA

*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파나마

(1) 개요

○ '10. 10월부터 '11. 5월까지 공동연구 실시

○ '15. 9월부터 '16. 10월까지 제7차례 협상을 통해 사실상 타결 완료

○ '18.2월 정식서명, '19.8월 국회비준

○ '21.3월 전체 발효

* 니카라과·온두라스('19.10.1.), 코스타리카('19.11.1.), 엘살바도르('20.1.1.) 파나마('21.3.1.)

(2) 주요 원산지 결정기준

○ (품목별원산지기준) 교역패턴, 생산공정, 산업 민감성 등을 고려하여 5,205개(HS 6단위 기준) 품목별 원산지 기준(PSR)을 규정

- (농수산물) 육류, 어패류, 채소, 과일, 등 신선농수산물은 완전생산기준(WO)을 채택하고, 가공농수산물은 대부분 세번변경기준(CC)을 채택
- (섬유·의류) 전체적으로 원사(yarn forward) 기준을 채택하고, 일부 완성의류 품목에 대해서는 재단봉제 기준(CC)을 적용
- (전자기기 및 기계 등) 대부분 4단위(CTH) 또는 6단위(CTSH) 세번변경기준과 함께 부가가치기준(RVC)을 선택기준으로 도입하여 수출업계의 활용성 제고
- (자동차) 완성차는 4단위(CTH) 또는 부가가치기준 40%(RVC 40%) 적용

(3) 원산지 증명방식

○ 원산지 증명은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스스로 발급하는 자율증명 채택

- 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른 경우, 수출자는 원산지 충족여부 중 구체적으로 아는 경우에 한해 작성 가능
- 원산지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1년동안 유효

(4) 상품 양허 수준

* 품목수: HS 2015 기준, 수입액: '12-'14 평균 수입액 기준

(가) 코스타리카

양허단계	우리나라(전체)				코스타리카(전체)			
	품목수	비중(%)	수입액(천불)	비중(%)	품목수	비중(%)	수입액(천불)	비중(%)
즉시철폐	9,805	80.1	277,356	97.8	4,755	68.2	289,441	91.9
유관세	7,849	64.1	23,175	8.2	4,614	66.2	246,013	78.1
무관세	1,956	16	254,181	89.6	141	2	43,428	13.8
3년	155	1.3	3,632	1.3	15	0.2	4	0
5년	592	4.8	1,319	0.5	464	6.7	4,009	1.3
5년내철폐	10,552	86.2	282,307	99.5	5,234	75.1	293,454	93.2
7년	135	1.1	899	0.3	6	0.1	0	0
10년	402	3.3	488	0.2	1,052	15.1	9,514	3
10년내	11,089	90.6	283,694	100	6,292	90.2	302,968	96.2
12년	435	3.6	0	0	3	0	0	0
15년	138	1.1	0	0	329	4.7	5,582	1.8
16년	44	0.4	1	0	12	0.2	0	0
19년	1	0	0	0	1	0	0	0
양허제외	520	4.2	0	0	337	4.8	6,438	2
협정배제	16	0.1	0	0	0	0	0	0
총합계	12,243	100	283,695	100	6,974	100	314,988	100

(나) 엘살바도르

양허단계	우리나라(전체)				엘살바도르(전체)			
	품목수	비중(%)	수입액(천불)	비중(%)	품목수	비중(%)	수입액(천불)	비중(%)
즉철(A)	9,808	80.1	35,104	93.3	3,635	52.1	117,161	67.2
유관세	7,852	64.1	20,614	54.8	297	4.2	4,042	2.3
무관세	1,956	16	14,490	38.6	3,338	47.9	113,119	64.9

양허단계	우리나라(전체)				엘살바도르(전체)			
	품목수	비중(%)	수입액(천불)	비중(%)	품목수	비중(%)	수입액(천불)	비중(%)
3년	178	1.5	1,959	5.2	21	0.3	4,865	2.8
5년	574	4.7	498	1.3	715	10.3	2,352	1.3
5년내철폐	10,560	86.3	37,561	99.8	4,371	62.7	124,378	71.3
7년	132	1.1	0	0	50	0.7	7,772	4.5
9년비선형	0	0	0	0	7	0.1	17,190	9.9
10년	389	3.2	71	0.2	1,746	25	1,689	1
10년비선형	0	0	0	0	65	0.9	19,216	11
10년내철폐	11,081	90.5	37,632	100	6,239	89.5	170,245	97.7
12년	430	3.5	0	0	55	0.8	635	0.4
15년	145	1.2	0	0	338	4.8	174	0.1
16년	32	0.3	0	0	0	0	0	0
양허제외	538	4.4	0	0	340	4.9	3,268	1.9
양허제외+TRQ	1	0	0	0	0	0	0	0
협정배제	16	0.1	0	0	0	0	0	0
총합계	12,243	100	37,632	100	6,974	100	174,322	100

(다) 온두라스

양허단계	우리나라(전체)				온두라스(전체)			
	품목수	비중(%)	수입액(천불)	비중(%)	품목수	비중(%)	수입액(천불)	비중(%)
즉시철폐	9,811	80.1	60,826	96.4	4,481	64.3	22,353	27.9
유관세	7,855	64.2	36,922	58.5	1,125	16.1	5,389	6.7
무관세	1,956	16	23,904	37.9	3,356	48.1	16,964	21.2
3년	156	1.3	1,364	2.2	0	0	0	0
5년	585	4.8	46	0.1	649	9.3	4,304	5.4
5년내철폐	10,552	86.2	62,236	98.6	5,130	73.6	26,657	33.3
7년	129	1.1	27	0	0	0	0	0
8년	0	0	0	0	40	0.6	42,359	52.9
9년	1	0	0	0	0	0	0	0
10년	392	3.2	3	0	1,191	17.1	4,926	6.2

양허단계	우리나라(전체)				온두라스(전체)			
	품목수	비중(%)	수입액(천불)	비중(%)	품목수	비중(%)	수입액(천불)	비중(%)
10년내철폐	11,074	90.5	62,266	98.7	6,361	91.2	73,942	92.4
12년	438	3.6	0	0	0	0	0	0
15년	142	1.2	0	0	302	4.3	615	0.8
16년	38	0.3	0	0	4	0.1	11	0
19년+TRQ	1	0	0	0	0	0	0	0
양허제외	534	4.4	830	1.3	307	4.4	5,431	6.8
협정배제	16	0.1	0	0	0	0	0	0
총합계	12,243	100	63,096	100	6,974	100	79,999	100

(라) 니카라과

양허단계	우리나라(전체)				니카라과(전체)			
	품목수	비중(%)	수입액(천불)	비중(%)	품목수	비중(%)	수입액(천불)	비중(%)
즉시철폐	9,795	80	27,879	95.7	3,731	53.5	25.089	31.0
유관세	7,839	64	8,915	30.6	342	4.9	372	0.5
무관세	1,956	16	18,963	65.1	3,389	48.6	24.717	30.5
3년	172	1.4	267	0.9	15	0.2	5	0
5년	608	5	188	0.6	761	10.9	7.246	9.0
5년내철폐	10,575	86.4	28,333	97.3	4,507	64.6	32.340	40.0
7년	131	1.1	61	0	129	1.8	36.560	45.2
10년	408	3.3	136	0.5	1,612	23.1	10.451	12.9
10년내철폐	11,114	90.8	28,469	97.8	6,248	89.6	79.352	98.1
12년	435	3.6	0	0	18	0.3	8	0.0
15년	123	1	4	0	373	5.3	723	0.9
16년	32	0.3	0	0	50	0.7	94	0.1
19년	2	0	0	0	2	0	0	0
19년+TRQ	1	0	649	2.2	0	0	0	0
양허제외	520	4.2	10	0	283	4.1	739	0.9
협정배제	16	0.1	0	0	0	0	0	0
총합계	12,243	100	29,122	100.0	6,794	100.0	80.916	100.0

(마) 파나마

양허단계	우리나라(전체)				파나마(전체)			
	품목수	비중(%)	수입액(천불)	비중(%)	품목수	비중(%)	수입액(천불)	비중(%)
즉시철폐	9,795	80	462,080	86.3	5,350	60.6	330,420	83.8
유관세	7,839	64	2,326	0.4	1,570	17.8	40,973	10.4
무관세	1,956	16	459,754	85.9	3,780	42.8	289,447	73.4
3년	172	1.4	15,768	2.9	47	0.5	524	0.1
5년	608	5	52,548	9.8	1,403	15.9	7,601	1.9
5년내철폐	10,575	86.4	530,396	99	6,800	77	338,545	85.9
7년	131	1.1	256	0	27	0.3	633	0.2
10년	408	3.3	1,386	0.3	1,201	13.6	49,813	12.6
10년내철폐	11,114	90.8	532,038	99.3	8,028	90.9	388,991	98.7
12년	435	3.6	0	0	8	0.1	0	0
15년	123	1	0	0	372	4.2	52	0
16년	32	0.3	0	0	8	0.1	2,278	0.6
19년	2	0	0	0	0	0	0	0
19년+TRQ	1	0	791	0.1	0	0	0	0
양허제외	520	4.2	2,690	0.5	415	4.7	2,897	0.7
협정배제	16	0.1	0	0	0	0	0	0
총합계	12,243	100	535,520	100	8,831	100	394,218	100

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아세안(ASEAN) 10개국 및 아세안과 FTA를 旣체결한 5개국(한,중,일,호주,뉴지)의 총15개국이 참여하는 아·태지역 Mega FTA

(1) 개요

○ '97년 아세안+3(韓·中·日) 정상회의가 정례화되면서 동아시아 경제통합 논의 진행

○ '11년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아세안+6*가 참여하는 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을 추진하기로 함

* 아세안 10개국 및 한·중·일·호주·뉴질랜드·인도 등 16개국 참여

○ '12.11월 16개국 협상개시 선언, '13.5월 협상 개시 이후 약 8년간 총 31차례 공식협상, 19차례 RCEP 장관회의 등 개최

- 인도는 무역적자 심화 등에 따라 무역협정에 대한 국내 반발이 증가해 협정문 타결('19.11. 제3차 RCEP 정상회의) 시 RCEP에 불참을 결정

○ '20.11월 아세안 10개국 및 한국·중국·일본·호주·뉴질랜드 등 총 15개국은 제4차 RCEP 정상회의에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을 최종 서명('20.11.15), 발효('22.2.1.)

(2) 주요 원산지 결정기준

○ (품목별원산지기준) 품목별 특성에 따라 원산지 기준은 큰 틀에서 우리 기체결 FTA와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으나 최근 생산공정 반영, 역내 공급망 활성화 등을 위하여 일부 완화된 기준을 도입하여 업체의 활용도 제고

- (화학) 대부분 "세번변경기준(CTH/CTSH)과 부가가치 40%" 선택기준, 일부 품목에는 화학반응(Chemical Reaction) 공정기준을 추가적으로 선택하도록 하여 업체의 선택의 폭 확대

- (섬유·의류) 역외산 재료 활용이 가능하도록 대부분 "세번변경기준(CC/CTH)"으로 규정하고, 한-아세안 FTA 등 우리 기체결 FTA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류의 추가 공정기준(재단 및 봉제) 삭제

- (철강) 대부분 역외산 재료 활용이 가능한 “4단위 세번변경(CTH) 또는 부가가치 40%” 기준이며, 스테인레스강 중 일부 품목은 “6단위 세번변경(CTSH) 또는 부가가치 40%” 기준으로 완화

 * 한편, 일부 품목에서 역외산 재료의 절단 등 단순 공정은 불인정

- (자동차) 완성차는 “부가가치 40%” 기준으로 한-아세안 FTA(부가가치 45%) 등 기체결 FTA 대비 완화하였으며, 부품은 “4단위 세번변경(CTH) 또는 부가가치 40%”으로 기체결 FTA 수준과 비슷

- (기계, 전기·전자) 대부분 “4단위 세번변경(CTH) 또는 부가가치 40%”, 일부 품목(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등)을 “6단위 세번변경(CTSH) 또는 부가가치 40%”으로 완화*

 * 한-아세안 FTA는 84~85류 품목 대부분에 CTH or RVC 40% 기준 일괄 적용

- (농축수산물) 신선농수산물은 대체로 “완전생산기준(WO)” 또는 “2단위 세번변경(CC)”으로 엄격한 기준을 유지, 수산물(어육 등), 낙농품(분유 등), 화초류 등 일부 품목에 “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을 적용하여 한-아세안 FTA 등 기체결 대비 완화

 * 가공식품류는 주로 “세번변경기준(CC/CTH)”을 적용하여 한-아세안 FTA(CTH or RVC 40% 등) 대비 기준 다소 강화

○ (누적) 재료누적은 협정 발효 즉시 시행, 완전누적(공정 및 부가가치의 누적)은 모든 회원국에 대한 협정 발효 後 5년 내 검토

- (재료누적) 한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 또는 재료가 다른 당사국에서 상품 또는 재료의 생산에 재료로 사용되는 경우, 그 최종 상품 또는 재료의 작업이나 가공이 발생한 당사국의 원산지 지위 인정

- (완전누적) 당사국들에서 수행되는 모든 생산(공정누적) 및 상품에 부가되는 가치(부가가치 누적)에 대한 누적 확대 적용 여부를 모든 회원국이 협정을 발효하는 날부터 검토

- (누적적용의 예외) 협정 부속서 I 부록에 따른 민감물품의 원산지 결정에 필요한 추가요건* 충족 여부를 계산할 때는 재료누적을 적용하지 않음

 * 수출당사국에서 수출물품 총 가액의 20% 이상 부가가치가 발생

(3) 원산지 증명방식

○ ①기관증명 방식과 인증수출자, 수출자, 생산자가 발급하는 ②자율증명 방식 도입

- (증명형태) 원산지 증명은 서류 및 전자 형태 모두 사용 가능
- (시행시기) ①기관증명 및 인증수출자 자율발급은 발효 후 즉시 도입하고, ②수출자, 생산자 자율발급은 발효 후 10년(다만,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는 발효 후 20년) 이내 이행하고, 10년 추가 연장 가능
- (관련효과) 그간 기관발급만을 허용하던 對亞(인니는 제외), 對中수출시에도 원산지 자율증명*이 도입되어 원산지 증명·신고 절차 간소화

* (기존) 세관·대한상의에서 발급한 원산지 증명서 제출 → (변경) 인증수출자의 자율증명(발효 시) 또는 수출자·생산자의 자율증명(발효 시에서 10년後 적용) 可

(4) 우리측 추가 관세철폐 현황 (한국→RCEP)

(단위: 개, %, 백만불)

구분		기체결 FTA (A)		RCEP		기체결 FTA 대비 추가 관세철폐(B)		최종 관세철폐 (C=A+B)	
		품목수	양자 수입액	품목수	양자 수입액	품목수	양자 수입액	품목수	양자 수입액
아세안	인니*	11,084 (90.5%)	13,569 (94.0%)	11,105 (90.7%)	13,986 (96.9%)	499 (4.1%)	660 (4.6%)	11,583 (94.6%)	14,229 (98.6%)
	말련	11,173 (91.3%)	8,592 (82.2%)	11,105 (90.7%)	9,861 (94.4%)	428 (3.5%)	1,439 (13.8%)	11,601 (94.8%)	10,030 (96.0%)
	필리핀*	11,048 (90.2%)	3,069 (87.8%)	11,105 (90.7%)	2,919 (83.5%)	529 (4.3%)	76 (2.2%)	11,577 (94.6%)	3,146 (90.0%)
	태국*	11,060 (90.3%)	4,457 (84.2%)	11,105 (90.7%)	4,603 (87.0%)	516 (4.2%)	290 (5.5%)	11,576 (94.6%)	4,747 (89.7%)
	베트남	11,671 (95.3%)	6,143 (95.3%)	11,105 (90.7%)	5,593 (86.8%)	156 (1.3%)	5 (0.1%)	11,827 (96.6%)	6,148 (95.4%)
	브루나이	11,173 (91.3%)	1,959 (99.99%)	11,105 (90.7%)	1,958 (99.95%)	428 (3.5%)	44불 (0.0%)	11,601 (94.8%)	1,959 (99.99%)
	싱가포르	11,565 (94.5%)	8,290 (82.7%)	11,105 (90.7%)	9,717 (96.9%)	206 (1.7%)	1,534 (15.3%)	11,771 (96.1%)	9,824 (98.0%)
	캄보디아	11,173 (91.3%)	109 (82.9%)	11,105 (90.7%)	115 (87.5%)	428 (3.5%)	15 (11.3%)	11,601 (94.8%)	124 (94.2%)
	라오스	11,173 (91.3%)	11 (93.8%)	11,105 (90.7%)	7 (56.1%)	428 (3.5%)	0.5 (4.4%)	11,601 (94.8%)	12 (98.2%)
	미얀마	11,173 (91.3%)	378 (90.2%)	11,105 (90.7%)	367 (87.5%)	428 (3.5%)	15 (3.6%)	11,601 (94.8%)	394 (93.8%)

非아세안	호주	12,016 (98.1%)	21,820 (99.7%)	11,083 (90.5%)	20,505 (93.7%)	4 (0.0%)	0.2 (0.0%)	12,020 (98.2%)	21,821 (99.7%)
	뉴지	11,980 (97.9%)	1,316 (96.2%)	11,092 (90.6%)	1,111 (81.3%)	1 (0.0%)	- (0.0%)	11,981 (97.9%)	1,316 (96.2%)
	중국	11,264 (92.0%)	74,317 (90.7%)	10,529 (86.0%)	68,516 (83.6%)	4 (0.0%)	21 (0.0%)	11,268 (92.0%)	74,337 (90.7%)
	일본	-	-	10,158 (83.0%)	47,278 (76.0%)	(무관세 제외) 8,202 (67.0%)	(무관세 제외) 24,137 (38.8%)		

* 한-아세안 FTA 상호주의제도로 관세가 남아있는 품목에 대한 RCEP 관세철폐 포함

* 상호주의제도: 수입국 관세철폐 대상이나 수출국 민감품목이면, 수입국도 관세 미철폐

(5) RCEP측 對한국 추가 관세철폐 현황 (RCEP→한국)

(단위: 개, %, 백만불)

구분		기체결 FTA (A)		RCEP		기체결 FTA 대비 추가 관세철폐(B)		최종 관세철폐 (C=A+B)	
		품목수	양자 수입액	품목수	양자 수입액	품목수	양자 수입액	품목수	양자 수입액
아세안	인니*	8,234 (82.2%)	10,106 (85.8%)	8,959 (89.5%)	9,460 (80.3%)	1,134 (11.3%)	458 (3.9%)	9,368 (93.6%)	10,563 (89.7%)
	말련	8,420 (89.4%)	8,434 (87.4%)	8,476 (90.0%)	8,324 (86.2%)	359 (3.8%)	390 (4.0%)	8,779 (93.2%)	8,825 (91.4%)
	필리핀*	7,883 (80.3%)	2,887 (59.0%)	8,918 (90.8%)	4,489 (91.7%)	1,140 (11.6%)	1,637 (33.4%)	9,023 (91.9%)	4,524 (92.4%)
	태국*	7,557 (79.1%)	7,260 (80.4%)	8,629 (90.3%)	7,855 (87.0%)	1,238 (13.0%)	804 (8.9%)	8,795 (92.0%)	8,064 (89.3%)
	베트남	8,498 (88.9%)	16,446 (90.9%)	8,284 (86.7%)	16,218 (89.6%)	326 (3.4%)	651 (3.6%)	8,824 (92.3%)	17,098 (94.5%)
	브루나이	9,762 (98.3%)	181 (93.0%)	9,720 (97.9%)	194 (99.9%)	167 (1.7%)	14 (7.0%)	9,929 (100.0%)	194 (100.0%)
	싱가포르	8,619 (100.0%)	25,627 (100.0%)	8,619 (100.0%)	25,627 (100.0%)	-	-	8,619 (100.0%)	25,627 (100.0%)
	캄보디아*	7,631 (79.8%)	260 (41.3%)	8,322 (87.1%)	399 (63.3%)	1,401 (14.7%)	174 (27.7%)	9,032 (94.5%)	435 (69.0%)
	라오스	8,073 (84.5%)	17 (30.7%)	8,219 (86.0%)	28 (50.7%)	868 (9.1%)	11 (20.7%)	8,941 (93.5%)	29 (51.4%)
	미얀마	8,375 (85.3%)	639 (93.7%)	8,450 (86.0%)	667 (97.7%)	826 (8.4%)	37 (5.5%)	9,201 (93.7%)	677 (99.1%)

非아세안	호주	6,184 (100.0%)	9,603 (100.0%)	6,077 (98.3%)	9,465 (98.6%)	-	-	6,184 (100.0%)	9,603 (100.0%)
	뉴지	7,478 (100.0%)	1,434 (100.0%)	6,866 (91.8%)	1,321 (92.1%)	-	-	7,478 (100.0%)	1,434 (100.0%)
	중국	7,499 (90.6%)	149,336 (85.5%)	7,118 (86.0%)	145,359 (83.2%)	41 (0.5%)	747 (0.4%)	7,540 (91.1%)	150,083 (85.9%)
	일본	-	-	7,548 (83.0%)	29,046 (78.0%)	3,864 (42.5%, 무관세 제외)	4,722 (12.7%, 무관세 제외)	7,548 (83.0%)	29,046 (78.0%)

* 한-아세안 FTA 상호주의제도로 관세가 남아있는 품목에 대한 RCEP 관세철폐 포함

* 상호주의제도: 수입국 관세철폐 대상이나 수출국 민감품목이면, 수입국도 관세 미철폐

버. 한-이스라엘 FTA

(1) 개요

○ '09.5월 제4차 한·이스라엘 경제공동위에서 FTA 타당성 검토연구 진행에 합의하고, '09.10~'10.8월 민간공동연구 실시

○ 우리측 통상교섭본부장, 이측 경제부장관간 한-이 FTA 실질 타결 선언 공동선언문 서명('19.8.21, 예루살렘), '21.5.12. 정식 서명, '22.12.1. 협정 발효

(2) 주요 원산지 결정기준

○ (농산물) 우리측이 민감한 신선 농수산물은 대부분 엄격한 원산지기준(완전생산기준)을 적용하되, 가공농산물은 보다 완화된 원산지기준(세번변경기준) 적용

○ (공산품) 세번변경기준(CTH)와 역외산 재료사용비율 등 규정

품 목	원산지 기준
자동차	- 세번변경기준(CTH)과 역외산 재료사용비율 60% 이하 중 선택
기계,전기·전자	- 세번변경기준(CTH)과 역외산 재료사용비율 50-60% 이하 중 선택
섬유·의류	- 세번변경기준(CTH) 또는 역외산 재료사용비율 60% 이하 중 선택 - 단, 의류는 역내에서 재단(cut)과 봉제(sewn) 등이 이뤄져야 원산지 인정
화학제품	- 대부분의 품목에 세번변경기준(CTH) 또는 역외산 재료사용비율 50% 이하, 또는 특정 화학공정을 거친 경우 원산지 인정
철강·비철금속	- 기타비금속(81류, CTSH)을 제외한 모든 품목에, 세번변경기준(CTH) 또는 역외산 재료사용비율 50% 이하 중 선택

(3) 원산지 증명방식: 기관증명 방식과 인증수출자 자율증명

(4) 상품 양허 수준

구분	우리나라				이스라엘			
	품목수(개)		對이 수입액(천불)		품목수(개)		對한 수입액(천불)	
전체	12,243		895,425		8,280		1,214,207	
즉시	9,661	78.9%	730,784	81.6%	6,032	72.9%	1,182,470	97.4%
유관세	7,702	62.9%	291,054	32.5%	1,401	16.9%	644,110	53.0%
무관세	1,959	16.0%	439,730	49.1%	4,631	55.9%	538,360	44.3%
3년	201	1.6%	55,285	6.2%	567	6.8%	28,086	2.3%
5년	1,105	9.0%	92,400	10.3%	1,037	12.5%	2,879	0.2%
5년내	10,967	89.6%	878,469	98.1%	7,636	92.2%	1,213,434	99.9%
6~8년	78	0.6%	9,680	1.1%	44	0.5%	118	-
10년	491	4.0%	5,874	0.7%	188	2.3%	611	0.1%
10년내	11,536	94.2%	894,023	99.8%	7,868	95.0%	1,214,163	100.0%
12~15년	123	1.0%	814	0.1%	5	0.1%	2	-
16~19년	2	-	93	-	-	-	-	-
소계	11,661	95.3%	894,837	99.9%	7,873	95.1%	1,214,165	100.0%
관세 감축 15%	2	-	-	-	13	0.2%	0.3	-
관세 감축 25%	-	-	-	-	3	-	-	-
TRQ	-	-	-	-	3	-	-	-
양허제외	580	4.7%	588	0.1%	388	4.7%	42	-

* 품목수는 HS2016 기준, 수입액은 2013-2015 평균 기준, 우리측 품목수는 세번분리 48개를 미반영

(5) 상품 양허 단계별 주요 품목

우리나라		양허 유형	이스라엘	
주요 품목	품목수		품목수	주요 품목
반도체 제조용장비, 집적회로반도체, 항공기부품, 나프타, 기타석유화학제품 등	9,661	즉시	6,032	승용차, 무선전화기, 건설중장비, 반도체, 자동차부품, 컴퓨터부품 등
기타화학공업제품, 의료용전자기기	201	3년	567	공기조절기, 전선, 냉장고, 의약품
기초화장품, 의료용기기 및 그 부품, 자동차부품 등	1,105	5년	1,037	면직물, 반창고, 의료용기기, 금속제 가구, 제지원료및종이제품 등
기타화학공업제품, 기타농산가공품 등	569	6~10년	232	드릴링공구, 기타가구 등
천연꿀, 맨더린, 화초류, 소스류	125	10년 초과	5	기타 향신료, 후추(분쇄), 의료위생용품
	11,661	소계	7,873	
석류, 감(기타)	2	감축	16	접착제, 양송이, 덱스트린, 곡분
해당없음	-	TRQ	3	냉동닭고기, 참치 통조림
	2	소계	19	

서. 한-캄보디아 FTA

(1) 개요

○ 한-캄 정상회담('19.3월)시 캄보디아 훈센 총리가 양자 FTA를 제안하여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FTA 공동연구 개시를 합의

○ '21.2월 최종 타결 선언, '21.10월 서명, '22.12월 협정발효

(2) 주요 원산지 결정기준

○ 품목별 원산지 기준(PSR)에는 총 5,387개 세번(HS2017, 6단위)별로 비원산지 재료 사용시에도 원산지로 간주할 수 있는 요건 규정

○ (농축수산물) 신선농수산물은 대체로 "완전생산기준(WO)" 또는 "2단위 세번변경(CC)"으로 엄격한 기준을 유지

- 가공식품류는 대부분 한-아세안 FTA 수준을 유지하되, 우리 수출 유망 품목인 고추장, 조제분유, 빵 등은 주요 재료의 역외산 사용을 허용*하여 한-아세안 FTA 대비 기준 완화

* (예:고추장) 한-아세안 FTA의 "역외산 채소류(07류)·향신료(09류) 사용 불가" 조건 삭제

○ (석유·화학) 대부분 "세번변경기준(CTH/CTSH)과 부가가치 40%" 선택기준

○ (섬유·의류) 역외산 재료 활용이 가능하도록 대부분 "세번변경기준(CC/CTH)"으로 규정하고, 한-아세안 FTA 등 우리 기체결 FTA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류의 추가 공정기준(재단 및 봉제) 삭제

○ (철강) 대부분 역외산 재료 활용이 가능한 "4단위 세번변경(CTH) 또는 부가가치 40%" 기준

○ (자동차) 전기차는 "부가가치 40%" 기준으로 한-아세안 FTA(부가가치 45%) 등 기체결 FTA 대비 완화하였으며, 부품은 "4단위 세번변경(CTH) 또는 부가가치 40%"으로 기체결 FTA 수준과 비슷

○ (기계, 전기·전자) 대부분 "4단위 세번변경(CTH) 또는 부가가치 40%"

(3) 원산지 증명방식

○ 원산지 자율증명 등의 도입을 통해 한-아세안 FTA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원산지 검증 방법 등을 개선

○ 기관발급 뿐만 아니라 인증수출자 자율증명을 도입

(4) 상품 양허 수준(RCEP반영시)

구분	우리나라				캄보디아			
	품목수(개)		'18-'19년 對캄보디아수입액 평균(불)		품목수(개)		'18-'19년 對한국수입액 평균(불)	
전체	12,234		100.0%		325,200		100.0%	
한-아세안 FTA	11,127	91.0%	270,212,948	83.1%	8,295	76.7%	165,762,159	29.0%
RCEP 추가철폐	427	3.5%	35,996,725	11.1%	1,760	16.3%	134,005,886	23.4%
한아세안 FTA + RCEP	11,554	94.4%	306,209	94.2%	10,055	93.0%	299,768,045	52.4%
즉시 철폐	64	0.5%	4,524,429	1.4%	27	0.2%	935,983	0.2%
5년 철폐	36	0.3%	160,064	0.0%	4	0.0%	5,188	0.0%
7년 철폐	1	0.0%	0	0.0%	-	-		-
10년 철폐	20	0.2%	481,525	0.1%	21	0.2%	23,220,603	4.1%
15년 철폐	19	0.2%	0	0.0%	18	0.2%	34,235,478	6.0%
20년 철폐	-	-	-	-	14	0.1%	54,988,993	9.6%
소계	140	1.2%	5,166,018	1.5%	84	0.8%	113,386,244	19.8%
최종 관세철폐율 (한-아세안 +RCEP +한-캄 FTA)	11,694	95.6%	311,375,690	95.7%	10,139	93.8%	413,154,289	72.2%

(5) 상품 양허 단계별 주요 품목(RCEP반영시)

우리나라		양허 유형	캄보디아	
주요 품목	품목 수		품목 수	주요 품목
직물제의류, 정밀화학원료, 합성고무, 동제품, 인조섬유장섬유사, 석유화학중간원료, 합성수지, 시멘트, 기타정밀화학제품, 기타석유화학제품 등	64	즉시	27	화물자동차(청소차), 혁의류 및 기타, 대추, 딸기, 배, 소시지 등
당류, 과일주스, 식물성유지, 동물뼈, 쇠고기, 돼지고기, 난류, 치즈, 발효유, 곡류가공품, 면류, 기타농산가공품, 들깨, 양송이, 기타화초, 건조호박, 비누, 기타정밀화학원료 등	36	5년	4	화물자동차(청소차), 문구, 기타정밀화학제품
간장	1	7년		
베어링, 폴리에스터사, 합성수지, 기타석유화학제품, 치즈, 돼지고기, 기타농산가공품, 난초, 생강 등	20	10년	21	화물자동차(탱크트럭 등), 기타자동차(세미트레일러), 기타산업기계, 펌프, 분석시험기, 건설중장비, 운반하역기계, 계측제어분석기, 물, 간장, 된장, 소주, 포도, 정어리통조림 등
쇠고기, 돼지고기, 기타정밀화학원료, 기타농산가공품, 바나나(플랜틴), 기타과실, 된장, 합성수지, 수산화나트륨, 기타석유화학제품, 석유화학중간원료 등	19	15년	18	기타가죽, 소가죽, 연결부품, 기타생활용품, 피혁가공기계, 주철, 기타잡제품, 면류, 기타농산가공품, 레몬, 과일주스, 위스키, 주철관, 기타잡제품 등
		20년	14	기타섬유제품, 특장차(기중기차), 자동차부품, 기타고무제품, 기타자동차(탱커트레일러), 기타철강금속제품, 낚시용구, 제어용케이블, 인쇄기계, 원동기, 지가공기계, 두발용제품, 골판지원지, 접착제 등
-	140	총합계	84	-

어. 한-인도네시아 CEPA*

*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1) 개요

○ '12.3월부터 양자협상 추진, '14.2월 7차 이후 중단

○ '18.9월 인니 대통령 방한시 양국 정상이 협상 재개 노력 합의

○ '19.2월 양국 통상 장관간 협상 재개 합의 후 4차례 협상

○ '19.11월 최종 타결 선언, '20.12월 서명, '23.1.1. 발효

(2) 주요 원산지 결정기준

○ 한-아세안 FTA 기준과 일관성을 유지하되, 양국의 생산 과정 및 교역 패턴을 고려하여 보다 무역 촉진적 방향으로 품목별 원산지 기준을 개선

○ (철강) 원재료 조달, 양국 산업구조 등을 고려, 대부분 "4단위 세번변경(CTH) 또는 부가가치 40%(RVC40)" 기준이나, 스테인레스강 중 일부 품목은 "6단위 세번변경(CTSH) 또는 부가가치 40% (RVC40)" 기준으로 개선

○ (자동차) 한-아세안 FTA에서는 부가가치 기준이 대부분 45%(RVC45)이나, 한-인니 CEPA는 부가가치 기준을 40%으로 하여 업계 활용이 보다 용이하도록 개선

○ (기계, 전기·전자 84~85류) 한-아세안 FTA에서 대부분 "4단위 세번변경(CTH) 또는 부가가치 40%(RVC40)"이나, 양측 교역촉진을 위해 일부 품목(세탁기, 냉장고 등)을 "6단위 세번변경(CTSH) 또는 부가가치 40%(RVC40)"으로 개선

○ (섬유·의류) 대부분 한-아세안 FTA와 유사하게 세번변경 기준과 부가가치 기준 중에 선택할 수 있으나, 기타 섬유제품(손수건, 스카프 등)에 대한 역외산 재료 사용을 허용하여 교역을 촉진

○ (농축수산물) 신선농수산물은 대체로 한-아세안 FTA 기준(완전생산기준)을 유지하되, 수산물, 낙농품, 식물성추출물 중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세번변경 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의 비율을 높임

(3) 원산지 증명방식

○ 기관증명 방식을 채택하였으며, 자율증명은 순차적으로 도입(발효 후 인증수출자 2년 내, 수출자·생산자 원칙적 10년 내)하도록 규정

(4) 상품 양허 수준

구분	우리나라				인도네시아			
	품목수(개)		'17-'18년 對인니수입액 평균(불)		품목수(개)		'17-'18년 對한국수입액 평균(불)	
전체	12,232		10,365,549,951		10,813		8,605,051,518	
한-아세안 FTA	11,032	90.2%	9,697,835,038	93.6%	8,661	80.1%	7,619,434,046	88.5%
즉시 철폐	235	1.9%	73,485,399	0.7%	782	7.2%	414,340,321	4.8%
(면세제도)	-	-	-	-	104	1.0%	254,694,058	3.0%
3년 철폐	93	0.8%	217,498,461	2.1%	28	0.3%	11,180,088	0.1%
5년 철폐	50	0.4%	9,641,858	0.1%	69	0.6%	22,355,542	0.3%
7년 철폐	10	0.1%	45,730	0.0%	86	0.8%	43,176,796	0.5%
10년 철폐	231	1.9%	86,478,250	0.8%	309	2.9%	182,248,060	2.1%
15년 철폐	20	0.2%	2,424,413	0.0%	105	1.0%	50,766,653	0.6%
20년 철폐	16	0.1%	1,728,011	0.0%	18	0.2%	328,653	0.0%
소계	655	5.4%	391,302,121	3.8%	1,397	12.9%	724,396,112	8.4%
총합계	11,687	95.5%	10,089,137,159	97.3%	10,058	93.0%	8,343,830,158	97.0%

* 품목수 기준 : (한국) HSK 2018 (인도네시아) HSI 2018

* 수입액 기준 : 양측 모두 '17-'18년 평균

(5) 상품 양허 단계별 주요 품목

우리나라		양허 유형	인도네시아	
주요 품목	품목수		품목수	주요 품목
승용차, 화물자동차, 자동차부품, 자전거, 자전거부품, 판유리, 선박용부품, 의류, 정밀화학원료, 농약, 석유제품, 원당, 유채유, 한천, 발효유, 바다가재 등	235	즉시	678	자동차부품, 자전거부품, 베어링, 원동기, 철도차량부품, 기타철강제품, 철강선, 철강관, 기타플라스틱제품, 필름류, 플라스틱관, 에틸렌초산비닐, 면사, 감, 사과, 배, 바나나, 포도, 람부탄, 양파, 우유, 꿀, 과일주스 등
			104	(면세제도) 열연강판, 냉연강판, 도금강판, 철강선, 선재 등
동선, 위생용기, 기타고무제품, 기타석유화학제품, 비누, 세안용품, 질소비료, 석유제품, 곡류가공품 등	93	3년	28	농기계, 동선, 주철, 철강재용기, 주철관, 형강, 이염화에탄, 딸기 등
저밀도에틸렌, 브랜디, 위스키, 맥주, 과일주스, 고추장, 비스킷, 곡류가공품, 면류, 기타당류, 전복(조제), 대두유, 토란(냉동) 등	50	5년	69	고압케이블, 가열난방기, 자동차부품, 기계요소, 철강재체인, 철강관, 판유리, 타일, 제트유, 기타요업제품 등
제재목, 간장, 갑오징어(조제) , 복어(냉동), 정어리(냉동) 등	10	7년	86	TV카메라, 음향기기, 액체펌프, 기타철강제품, 철구조물, 철강관, 면류, 간장, 리치, 라임, 레몬, 파인애플, 구아바(5%) 등
베어링, 폴리에스터사, 합판, 섬유판, 제재목, 기타석유화학제품, 과일주스, 어류통조림, 열대과일(두리안, 파파야, 망고스틴, 구아바 등), 복어, 메기, 해파리(냉동) 등	231	10년	309	자동차부품, 모터사이클, 자전거, 친환경차, 승용차, 화물자동차, 선박용엔진, 원동기, 철강관, 형강, 철강선, 철근, 열연강판, 중후판, 도금강판, 냉연강판, 김, 게, 녹차 등
보조사료, 된장, 바나나(플랜틴) , 살라카, 유장 등	20	15년	105	화물자동차, TV, 비디오튜너, 냉장고, 철강재용기, 철강관, 도금강판, 섬유사, 명태, 대구 등
인삼음료, 밤(냉동), 감(건조), 살구(조제), 육즙 등	16	20년	18	카사바전분, 칠리고추(건조), 망고, 오렌지, 게, 기타수산가공품 등
참치, 어류통조림, 틸라피아, 문어(조제), 기타농산가공품 등	12	25% 감축 (10년내)	-	
	667	총합계	1,397	
	11,661	소계	7,873	

Ⅲ. 조세지원제도
(조세특례제한법)

1.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제2장 제1절) / 394
2.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제2장 제2절) / 400
3. 국제자본거래등에 대한 조세특례(제2장 제3절) / 408
4.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특례(제2장 제4절) / 409
5. 고용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2장 제4절의2) / 411
6.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제2장 제5절) / 414
7.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세특례(제2장 제7절) / 422
8. 공익사업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2장 제8절) / 431
9.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2장 제9절) / 437
10. 국민생활안정을 위한 조세특례(제2장 제10절) / 442
11. 그밖의 직접국세 특례(제2장 제11절) / 447
12. 간접국세 감면(제3장) / 453
13. 외국인투자 등에 대한 조세특례(제5장) / 468
14. 제주국제자유도시 육성을 위한 조세특례 등(제5장의2~제5장의10) / 470
15. 기회발전특구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5장의11)/ 478
16. 과세표준양성화를 위한 조세특례(제6장 제1절) / 480
17. 조세특례의 제한 등(제6장 제2절) / 485
18. 보칙(제7장) / 490

작성자 : 조세특례제도과장 김문건

조세특례제한법의 성격

○ 조세정책법

- 조세의 감면·중과 및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가의 경제정책을 세제면에서 지원

※ 조세의 기능 ┌ 국고조달기능
　　　　　 ┼ 사회정책적기능(소득재분배기능)
　　　　　 └ 경제정책적기능

※ 일몰제도 : 지원제도마다 적용기한을 명문화

○ 조세특례의 기본법

- 조세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조세특례를 규정할 수 없도록 함
- 일반세법은 조세의 기본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모든 조세특례사항은 조세특례제한법에 일괄 규정

○ 조세특례의 종류

- 직접특례(국고보조금) : 비과세, 소득공제, 익금불산입, 손금산입, 세액공제, 세액감면
- 간접특례(국고 무상대부) : 준비금, 분할익금, 충당금, 과세이연, 이월과세

1.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제2장 제1절)

<세법상 중소기업의 범위(조특령 제2조)>

구 분			내 용
세법상중소기업	① 중소기업	㉠ 업종요건 (주된 사업일 것) * 주된 사업 : 겸업시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기준으로 판정	○ 소비성 서비스업(호텔업, 여관업, 주점업 등)을 제외한 모든 업종
		㉡ 매출액 요건 (중소기업 기준)	○ 주된 사업을 기준으로 매출액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1의 범위 이내일 것
		㉢ 자산요건	○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일 것
		㉣ 독립성 요건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또는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에 해당하지 않으며,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적합할 것. 단, 주식소유계산시 간접소유 포함(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경우 집합투자기구를 통한 간접소유는 제외)
	② 중소기업 유예제도		○ 규모의 확대 등으로 매출액, 자산총액 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 최초 1회에 한하여 4년간(유예기간) 중소기업으로 봄 - 유예기간 경과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중소기업 해당 여부 판정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별표1 및 별표2의 개정으로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4년간 중소기업으로 봄
<유예 불인정>			○ 중소기업외의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 유예기간 중에 있는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 독립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의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가.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

(1)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6)

＊ 적용기한 : 2024.12.31.

○ 감면대상

- 창업중소기업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
- 청년창업중소기업 : 창업당시 대표가 15세~34세인 중소기업
- 창업벤처중소기업 : 창업후 3년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중소기업

○ 업종요건 : 광업, 제조업, 수도·하수 및 폐기물 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 통신판매업, 물류산업, 음식점업, 정보통신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뉴스제공업,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 제외), 금융 및 보험업 중 정보통신 활용 금융서비스 제공 업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엔지니어링사업 포함, 변호사업, 변리사업 등 제외),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서비스업, 사업 지원 서비스업(고용알선업 및 인력공급업은 농업노동자 공급업 포함),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 오락장운영업 등 제외),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이용 및 미용업, 직업기술 분야 교습학원 운영사업,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운영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 한함), 관광숙박업·국제회의업·유원시설업 및 관광객이용시설업, 노인복지시설 운영사업, 전시산업

○ 감면내용

- 창업 후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 이내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과세연도)와 그 후 4년간 소득세·법인세 감면
 - ▸ 일반 창업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5년간 50%
 - ▸ 청년·생계형 창업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5년간 50%,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5년간 100%
 - ▸ 창업보육센터사업자는 5년간 50%
 - ▸ 신성장서비스업종은 3년간 75%, 이후 2년간 50%
 - ▸ 고용 증가 시 최대 50% 추가 감면(고용증가율 × 1/2)

(2)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감면(§6)

* 적용기한 : 2024.12.31.

○ 감면대상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설립된 벤처기업

○ 감면내용

-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5년 이내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과세연도)와 그 후 4년간 소득세·법인세 50% 감면

(3)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대한 감면(§6)

* 적용기한 : 2024.12.31.

○ 감면대상 :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가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으로서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자

*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제품, 고효율에너지 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 신재생에너지 설비로 인증받은 제품 등 고효율제품을 제조하는 중소기업

○ 감면내용

-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날부터 5년 이내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과세연도)와 그 후 4년간 소득세·법인세 50% 감면

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7)

* 적용기한 : 2025.12.31.

○ 감면대상

- 수도권에 소재하는 소기업
- 지방에 소재하는 중소기업

* 수도권의 범위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전지역)

* 소기업의 범위 : 중소기업 중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 이내인 기업(10~120억)

○ 업종요건 :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 하수·폐기물 처리(재활용 포함),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출판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제외),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 제외), 연구개발업, 광고업,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전문디자인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 제외),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따른 수탁생산업, 엔지니어링사업, 물류산업, 직업기술 분야 교습학원 운영사업,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운영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 한함), 자동차정비공장 운영사업, 선박관리업, 의료기관 운영사업(의원·치과의원 및 한의원은 요양급여 비율이 매출액의 80% 이상으로서 종합소득 1억원 이하인 경우),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 및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제외), 노인복지시설 운영사업, 전시산업,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 공급업 포함),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하는 사업, 재가장기요양기관 운영사업,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경비 및 경호서비스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사회복지서비스업, 무형재산권 임대업(지식재산 임대하는 경우에 한정), 연구개발지원업, 개인 간병인 및 유사 서비스업, 사회교육시설, 직원훈련기관,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도서관·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독서실 운영업 제외), 주택임대관리업,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임업, 통관 대리 및 서비스업(감면율은 50%만 적용), 자동차 임대업(전기차 50% 이상 보유한 경우)

○ 감면내용

- 소득세・법인세 5~30% 감면(감면한도 1억원)

(단위 : %)

본점 소재지	업 종	기업 구분	
		소 기 업	중 기 업
수도권	・도・소매업, 의료업	10	-
	알뜰주유소('22.~'23.)	20	10
	・제조업 등 기타업종	20	-
지 방	・도・소매업, 의료업	10	5
	알뜰주유소('22.~'23.)	20	15
	・제조업 등 기타업종	30	15

* 장수성실 중소기업(①10년 이상 경영 ②종합소득금액 1억원 이하 ③소득세법에 따른 성실사업자가 직전 3개 과세기간 연평균 수입금액의 50%초과하고, 국세체납사실 등이 없을 것)의 경우 해당 감면비율의 110% 적용

- 소득세・법인세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다.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7의4)

* 적용기한 : 2025.12.31.

○ 감면대상 : 중소기업, 중견기업

○ 감면요건

- 상생결제제도를 통해 중소기업, 중견기업에 구매대금 지급
- 전년대비 현금성결제 비율이 감소하지 않을 것
- 전년대비 어음결제 금액이 증가하지 않을 것

○ 감면내용

-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지급기한별 공제율(지급기한 15일 이내 0.5%, 16~30일 이내 0.3%, 31~60일 이내 0.15%)을 곱한 금액을 세액공제(소득세・법인세의 10% 한도)

라.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시 세액공제(§8의3)

* 적용기한 : 2025.12.31.

○ 공제내용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목적으로 조성된 기금 등에 출연시 출연금(특수관계인 지원 금액 제외)의 10% 세액공제
- 협력중소기업에 유형고정자산을 무상임대시 장부가액의 3% 세액공제
- 상생협력을 목적으로 수탁·위탁거래의 상대방인 수탁기업에 설치하는 시설에 대한 투자금액의 1% 세액공제(중견 3%, 중소 7%)
- 대학 등 교육기관에 사업에 사용하던 자산 중 연구시험용 시설등을 무상 기증시 10% 세액공제

○ 사후관리

- 목적 외의 용도로 출연금 사용 및 일정기간(5년) 이내에 무상임대 종료시 세액공제액을 추징

2.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제2장 제2절)

가.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10)

＊ 적용기한 : 2024.12.31.(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 대 상 : 내국인

○ 공제방법

1.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x {20%(중소기업 30%, 코스닥 중견기업 25%) + 일정비율*(한도 10%, 코스닥 중견기업 15%)}

 * 해당연도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해당연도 수입금액 × 3

2.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x {30%(중소기업 40%) + 일정비율*(한도 10%)}

 * 해당연도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해당연도 수입금액 × 3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제1호 및 제2호를 선택하지 아니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는 다음 각 목 중 선택하여 적용

 가. 초과발생액 기준

 : (해당연도 지출액 - 직전 과세연도 지출액) × 25%(중소기업 50%, 중견기업 40%)

 나. 해당연도 발생액 기준

 : 해당연도 지출분 × 일정비율*(단, 중소기업 25%, 중견기업 8%)

 * 해당연도 연구・인력개발비/해당연도 수입금액 × 1/2(한도 2%)

 ※ 중소기업 졸업유예 이후 3년간은 15% 그 이후 2년간은 10% 공제

○ 세액공제 대상 비용(시행령 별표6)

- 연구개발 : 연구개발전담 직원의 인건비(4대보험 포함),, 재료비, 시설임차비 및 이용료, 특정연구기관 등에 지출한 기술개발 위탁비, 중소기업 특허조사・분석비용 등
- 인력개발 : 국내외의 전문연구기관・대학 등에 위탁교육훈련비, 직업훈련기관 위탁훈련비 등

나.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10의2)

* 적용기한 : 2026.12.31.

○ 대 상 : 내국인

○ 지원내용 : 내국인이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연구개발출연금 등을 지급받고 구분경리하는 경우 익금불산입

○ 익금산입

- 비용지출 :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경우 해당 지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에 익금산입
- 자산취득 : 감가상각자산의 경우에는 손금산입한 감가상각비를 익금에 산입하고, 그 외 자산은 처분시 익금에 산입

○ 용도외 사용 등 : 용도외 사용, 폐업, 해산시 미사용분에 대한 익금산입 및 이자 상당액 추징

다.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세액감면(§12①)

* 적용기한 : 2026.12.31.

○ 대 상 : 중소기업·중견기업

○ 지원내용

- 자체 연구·개발한 특허권·실용신안권·기술비법 등의 이전을 통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소득세·법인세 50% 세액감면

라. 기술대여소득에 대한 세액감면(§12③)

* 적용기한 : 2026.12.31.

○ 대 상 : 중소기업

○ 지원내용

- 자체개발한 특허권 등의 대여를 통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소득세·법인세 25% 세액감면

마.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12의2)

* 적용기한 : 2025.12.31.

○ 대 상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기업

○ 감면요건

- 생명공학 관련 산업, 정보통신산업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산업,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과 관련된 산업을 영위

○ 지원내용

- 3년간 100%, 2년간 50% 법인세·소득세 감면

○ 한 도 : 지역특구內 기업에 대한 총세제지원 한도 설정(①+②)

① 투자누계액의 50%

②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1천5백만원(청년·서비스업 근로자: 2천만원)

바. 기술혁신형 합병·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12의3,4)

* 적용기한 : 2024.12.31.

○ 지원내용

- 내국법인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합병하거나 주식을 취득한 경우 지급한 인수가액 중 기술가치 금액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

- 세액공제액(①, ② 중 선택)

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따른 평가기관의 평가금액 × 지분비율

② 인수가액 - [(순자산시가 × 1.2) × 지분비율]

○ 지원요건

- 내국법인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합병하면서 순자산시가의 130% 이상을 지급하거나 지분비율 30% 초과 취득(경영권 인수)하고 피인수법인의 순자산시가의 취득지분비율보다 130% 이상 지급할 것

* 「벤처기업법」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 「중소기업기술혁신법」에 따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매출액 대비 R&D 비용이 5% 이상인 기업 등

사.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13)

* 적용기한 : 2025.12.31.

○ 지원내용

- 벤처투자회사·신기술사업금융업자 및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가 소유하는 특정주식 및 출자지분 양도차익 및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 기관투자자(연기금·공제사업법인)가 벤처투자조합 등을 통하여 취득한 벤처기업 등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

○ 대상주식 및 출자지분

- 벤처투자회사가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
-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
- 벤처투자회사, 창업기획자,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개인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전문투자조합 또는 농식품투자조합을 통하여 창업기업,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 취득방법

- 설립시 자본금 납입, 설립 7년 이내 유상증자·잉여금의 자본 전입 또는 채무의 자본전환에 의해 취득(타인소유의 주식 등을 매입하는 경우는 제외)

아. 내국법인이 벤처기업 등에 출자시 세액공제(§13의2)

* 적용기한 : 2025.12.31.

○ 지원내용

- 내국법인*이 벤처기업 등에 대한 출자시 출자금액의 5% 세액공제

 * 벤처투자회사 등 조특법§13에 따라 벤처기업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법인세가 면제되는 법인 제외

○ 대상주식 및 출자지분

-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대한 직접출자 및 벤처투자조합 등을 통한 간접출자*

* 특수관계법인, 상호출자제한기업의 계열사에 대한 출자는 제외

○ 취득방법

- 설립시 자본금 납입, 설립 7년 이내 유상증자 납입

자. 내국법인의 소재·부품·장비기업 공동출자시 세액공제(§13의3)

* 적용기한 : 2025.12.31.

○ 지원내용

- 둘 이상의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부품·장비 중소·중견기업에 공동으로 출자할 경우, 지분 취득가액의 5% 세액공제

○ 사후관리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세액공제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추징
- 유상증자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피출자법인이 출자금액의 80%이상을 소재·부품·장비 관련 연구·인력개발 또는 설비투자로 지출하지 않는 경우

차. 소재·부품·장비 관련 외국법인 인수시 세액공제(§13의3)

* 적용기한 : 2025.12.31.

○ 지원내용

- 내국법인이 소재·부품·장비 또는 국가전략기술 관련 외국법인 주식·지분 취득 또는 소재·부품·장비 또는 국가전략기술 사업·자산양수시 인수금액의 5% 공제(중견 7%, 중소 10%)

○ 적용요건(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법인간 M&A
- 피인수법인의 출자총액의 50%(또는 30%+경영권) 이상
- 인수법인이 취득한 주식등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보유

○ 사후관리

- 인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년까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시 세액공제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추징
- 피인수법인의 주주가 인수법인의 지배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 피인수기업의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인수기업의 피인수기업 지분비율이 인수일 당시 지분비율 보다 낮아지는 경우

카. 벤처투자회사 등의 소재·부품·장비전문기업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13의4)

* 적용기한 : 2025.12.31.

○ 지원내용

- 벤처투자회사 등의 유망 소재·부품·장비기업(중소기업인 경우) 출자에 따른 주식 등의 양도차익·배당소득 비과세

○ 적용요건

- 소재·부품·장비 분야 유망 중소기업 등에 신규 출자 등을 통해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 취득방식 : 기업 설립시 자본금으로 납입, 유상증자 하는 경우로서 증자대금 납입, 잉여금을 자본으로 전입, 채무를 자본으로 전환

 * 출자방식 : 직·간접 출자

타. 창업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14)

* 적용기한 : 2025.12.31.

○ 지원내용

- 개인이 벤처기업, 창업기획자 등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 벤처투자조합,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전문투자조합, 농식품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창업기업,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등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 벤처투자조합,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농식품투자조합 등의 배당소득 또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조합이 조합원에게 그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함

○ 대상 주식 또는 출자지분

- 벤처투자회사·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09.12.31까지 취득분에 한하여 적용)
- 벤처기업·창업기획자 등에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25.12.31까지 취득분에 한하여 적용)
- 벤처투자조합·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농식품투자조합·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전문투자조합 등이 창업기업·신기술사업자·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등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25.12.31까지 취득분에 한하여 적용)

파.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16)

* 적용기한 : 2025.12.31.

○ 지원내용

- 출자·투자한 금액의 10%(벤처기업 등에 출자·투자한 경우에는 출자·투자한 금액 중 3천만원 이하분은 100%,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분은 70%, 5천만원 초과분은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출자일·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거주자가 출자일·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출자·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1과세연도를 선택하여 공제시기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 한도 : 종합소득금액의 50%

○ 투자대상

- 벤처투자조합,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전문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 적격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을 벤처기업 또는 이에 준하는 창업 후 3년 이내 중소기업 등에 투자하는 경우

-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 창업·벤처전문 PEF에 투자하는 경우
- 창업 후 7년 이내의 중소기업 등에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투자하는 경우

하. 스톡옵션 행사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16의4)

* 적용기한 : 2024.12.31.

○ 지원내용

- 벤처기업 임직원이 부여받은 적격스톡옵션에 대해 근로소득 과세방식[1]과 양도소득 과세방식[2]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
 1) 근로소득 과세방식: 스톡옵션 행사시 부여받은 주식의 시가와 매수가액의 차이를 근로소득으로 과세
 2) 양도소득 과세방식: 스톡옵션 행사로 부여받은 주식 양도시 시가와 매수가액의 차이를 양도소득으로 과세

○ 적격스톡옵션 : ① 벤처특별법에 따라 부여받는 스톡옵션,
② 행사가액 3년간 5억원 이하 등

거.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18)

* 적용기한 : 2026.12.31.

○ 지원대상 : 엔지니어링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국내에서 기술을 제공하는 자,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에서 근무하고 일정 요건을 갖춘 연구원 등

○ 지원내용 : 국내에서 처음으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10년이 되는 날 속하는 달까지 발생하는 근로소득에 대해 50% 감면

※ 소재·부품·장비관련 외국인 기술자는 2022.12.31. 이전에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최초 3년간 70%, 이후 2년간 50% 감면

너.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18의2)

* 적용기한 : 2026.12.31.(헤드쿼터인증기업은 일몰 없이 적용)

○ 지원대상 : 외국인근로자(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 일용근로자는 제외)

○ 지원내용 : 근로소득에 단일세율 19%적용(분리과세), 비과세 공제감면 적용배제

3. 국제자본거래 등에 대한 조세특례(제2장 제3절)

가. 공공차관 도입에 따른 감면(§20)

○ 공공차관의 도입과 관련하여 대주(貸主)가 부담하여야 할 조세는 공공차관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 외국인에게 지급되는 기술·용역 대가에 대하여는 공공차관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법인세 감면

나.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21)

○ 지원대상 : 비거주자, 외국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제외)

○ 지원내용 : 국가·지방자치단체·내국법인이 국외에서 발행한 외화표시채권,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외화차입금, 외국발행 외화표시어음, 외화예금증서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수수료에 대하여 소득세·법인세 면제

다. 정기외화예금에 대한 이자소득세 비과세(§21의2)

* 적용기한 : 2015.12.31.

○ 지원대상 :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제외)

○ 지원내용 : 계약기간 1년 이상인 정기외화예금에 가입하는 경우 해당 예금에서 계약기간 내에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서 소득세·법인세 비과세

○ 추징요건 :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해지, 예금의 전부 또는 일부 인출

4.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특례(제2장 제4절)

가. 통합투자세액공제(§24)

○ 대 상 : 내국인(소비성 서비스업, 부동산임대공급업 제외)

○ 투자대상

- 모든 사업용 유형자산(건물, 구축물, 차량 및 운반구, 선박 및 항공기, 비품 등 제외)
- 특정시설*, 업종별 사업에 필수적인 자산**은 공제 허용

* 연구·시험 및 직업훈련시설, 에너지절약시설, 환경보전시설, 근로자복지증진시설, 안전시설

** (건설업) 포크레인 등 중장비, (도소매, 물류업) 창고 등 물류시설, (운수업) 차량운반구, (관광숙박업) 건축물 및 부속 시설물, (어업) 선박

○ 지원내용

- 당기분 기본공제

① 일반투자분 :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5%, 대기업 1%

②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분 : 중소기업 12%, 중견기업 6%, 대기업 3%

③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투자분 : 중소기업 25%, 중견기업 15%, 대기업 15%

- 증가분 투자공제 (기본 공제액의 200% 한도)

(당해년도 투자액 - 직전 3년 평균 투자액) × 3%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4%)

※ 임시투자세액공제('23년 투자분에 한함)

- 당기분 기본공제

① 일반투자분 : 중소기업 12%, 중견기업 7%, 대기업 3%

②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분 : 중소기업 18%, 중견기업 10%, 대기업 6%

- 증가분 투자공제 (기본 공제액의 200% 한도)

(당해년도 투자액 - 직전 3년 평균 투자액) × 10%

나.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25의6)

* 적용기한 : 2025.12.31.

○ 대상비용 : 방송프로그램, 영화, OTT콘텐츠 제작비용

○ 지원내용

- 기본공제: 제작비용의 5%(중견기업의 경우 10%, 중소기업의 경우 15%)
- 추가공제: 제작비용의 10%(중소기업의 경우 15%)

○ 추가공제요건: ① 요건 충족 & ②, ③, ④, ⑤요건 중 3개 이상 충족

- ① 촬영제작비용 중 국내에서 지출한 비율 80% 이상
 ② 작가, 주요 스태프 인건비 중 내국인에게 지급한 비율 80% 이상
 ③ 배우 출연료 중 내국인에게 지급한 비율 80% 이상
 ④ 후반제작비용(자막, 그래픽, 편집 등) 중 국내에서 지출한 비율 80% 이상
 ⑤ 주요 IP(방송권, 전송권, 배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등 6개 주요권리) 3개 이상 보유

다.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26의2)

* 적용기한 : 2022.12.31.

○ 지원대상 : 거주자 1명당 납입한도 2억원 이하로 개설된 전용계좌(계좌는 거주자별 1개만 개설 가능)에서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경우

○ 지원내용 : 해당 전용계좌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해 9% 분리과세 적용

라. 투융자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27)

* 적용기한 : 2025.12.31.

○ 지원대상 : 거주자 1명당 납입한도 1억원 이하로 개설된 전용계좌(계좌는 거주자별 1개만 개설 가능)에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투융자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경우

○ 지원내용 : 투융자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 적용

5. 고용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2장 제4절의2)

가.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29의4)

* 적용기한 : 2025.12.31.

○ 대상요건 : 직전 3년 임금증가율의 평균을 초과하여 임금 증가

○ 지원내용 : 직전 3년 증가율의 평균을 초과하는 임금증가분에 대해 20%(중견기업 10%) 소득세·법인세 세액공제

나.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29의6)

* 적용기한 : 2024.12.31.

○ 대상요건 : 근로자*가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에 가입하여 5년이상 납입하고 공제금을 수령

* 최대주주, 친족 등 특수관계인 제외

○ 지원내용 : 근로자가 수령하는 성과보상금 중 기업납입금에 해당하는 근로 소득에 대해 소득세 감면(중소기업 근로자 50%(청년의 경우 90%), 중견기업근로자 30%(청년의 경우 50%))

다.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29의7)

* 적용기한 : 2024.12.31.

○ 대상요건 : 상시근로자의 수가 직전과세연도의 상시 근로자수 보다 증가

○ 지원내용 : 증가한 청년정규직·장애인·근로계약 체결당시 60세이상 근로자 수 1인당 400만원(중견기업 8백만원, 중소기업 1천1백만원+지방소재 1백만원 추가지원), 상시근로자 수 1인당 중견기업4백5십만원(중소기업 7백만원+지방소재 7십만원 추가지원) 소득세·법인세 세액공제

라. 통합고용세액공제(§29의8)

* 적용기한 : 2025.12.31.(정규직 전환의 경우 2024.12.31.)

○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중심으로 5개의 고용지원 제도를 통합

○ 통합前 제도 : ①고용증대세액공제(모든기업, '24 일몰)
②사회보험료 세액공제(중소, '24 일몰)
③경력단절여성 세액공제(중소·중견, '22 일몰)
④정규직 전환 세액공제(중소·중견, '22 일몰)
⑤육아휴직 복귀자 세액공제(중소·중견, '22 일몰)

○ 지원내용

- 기본공제 : 고용증가인원 × 1인당 세액공제액(3년)

① 상시근로자 : 중소(수도권 850만원, 지방 950만원), 중견(450만원)

② 청년·장애인·60세↑·경단녀 : 중소(수도권 1,450만원, 지방 1,550만원), 중견(800만원), 대*(400만원)

* 대기업은 2년간 공제 적용

- 추가공제 : 인원수 × 1인당 세액공제액(1년)

① 정규직 전환·육아휴직 복귀 : 중소(1300만원), 중견(900만원)

마.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30)

* 적용기한 : 2026.12.31.

○ 적용대상자 :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만15~34세, 군복무기간을 가산하여 최고 40세까지 가능), 고령자(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 지원내용 : 취업후 근로소득세 3년간 70% 감면(200만원 한도, 청년의 경우 5년간 90%)

바.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30의3)

* 적용기한 : 2026.12.31.

○ 적용대상자 : 중소기업(위기지역 중견기업 포함)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상시근로자 1인당 시간당 임금이 직전연도 대비 감소하지 않을 것
-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 대비 감소하지 않을 것
-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이 직전 과세연도 대비 감소한 경우

○ 지원내용 : 다음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소득세·법인세 공제

- (1인당 임금 감소분 × 상시 근로자수 × 10%)
- (1인당 시간당 임금 증가분 × 105%) × 전체 상시 근로자수 근로시간 합계 × 15%

사.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30의4)

* 적용기한 : 2024.12.31.

○ 적용대상자 : 상시근로자수가 전년도 상시근로자수보다 증가한 경우

○ 지원내용

- 청년, 경력단절여성의 경우 사회보험료 부담금액의 100%, 그 외의 경우 사회보험료 부담금액의 50~75%)를 세액공제

○ 사회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국가 등의 보조금 및 감면액은 제외)

6.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제2장 제5절)

가.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30의5)

* 적용기한 삭제로 증여세 과세특례 항구화(2014년부터)

○ 감면내용 :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창업을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토지·건물 등을 제외한 재산(증여세과세가액 50억원* 한도)을 창업자금으로 증여받은 경우

* 창업을 통하여 10명 이상 신규 고용하는 경우에는 100억원

- 증여세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10%의 낮은 세율로 증여세를 과세
- 증여한 직계존속의 사망시 증여 당시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로 정산함

나.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30의6)

* 적용기한 삭제로 증여세 과세특례 항구화(2014년부터)

○ 감면내용 :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최대 600억원 한도*)을 증여받고 가업을 승계한 경우

* 부모의 가업 경영기간에 따라 한도 차등적용
 10년 이상: 300억원, 20년 이상 400억원, 30년 이상 600억원

-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10억원을 공제하고 120억원까지 10%, 초과분은 20% 과세

다. 중소기업의 구조조정

(1) 중소기업간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31)

* 적용기한 삭제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항구화(2013년부터)

○ 지원대상 : 중소기업간의 통합으로 신설 또는 존속하는 통합법인

○ 통합요건

- 소멸사업장의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고
- 소멸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존속(신설)되는 통합법인의 주주가 되며
- 취득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이 통합일 현재 소멸사업장의 순자산가액(시가) 이상일 것

○ 감면내용

- 통합으로 소멸되는 중소기업의 사업용자산을 통합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 **이월과세** : 개인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법인에 양도시 양도한 개인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양수한 법인이 당해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개인의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

- 통합으로 취득하는 사업용 자산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
-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등 일정기간 세액감면을 받는 중소기업이 통합한 경우에는 통합법인이 잔존감면기간에 한하여 계속 감면 적용

※ 이월과세 : 개인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법인에 양도시 양도한 개인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양수한 법인이 당해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개인의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

○ 사후관리(2013년 신설) : 5년 이내에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거나 주주가 새로 교부받은 주식을 50% 이상 처분한 경우 이월된 양도소득세 추징

* 사업폐지 기준

통합 후 5년 내 사업용고정자산을 1/2 이상 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2)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32)

* 적용기한 삭제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항구화(2013년부터)

○ 지원대상 :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소비성 서비스업 영위법인은 제외)

○ 이월과세 요건 : 신설법인의 자본금이 소멸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통합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 자산합계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합계를 공제한 금액) 이상일 것

○ 감면내용

-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주택 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제외)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 법인전환 법인이 현물출자받는 사업용자산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
-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등 일정기간 세액감면을 받는 거주자가 감면기간중에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전환법인이 잔존감면기간에 한하여 계속 감면 적용

※ 사업양수도 방식

당해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전환사업장 순자산가액(시가)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설립후 3월이내에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

○ 사후관리(2013년 신설) : 5년 이내에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거나 주주가 새로 교부받은 주식을 50% 이상 처분한 경우 이월된 양도소득세 추징

라. 일반기업의 구조조정 지원

(1) 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34)

* 적용기한 : 2026.12.31.

○ 지원내용

- 내국법인이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차익 중 채무상환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와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개 사업연도의 기간 중 익금불산입하고 그 다음 3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산입

○ 사후관리

-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채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
- 자산을 양도한 내국법인의 부채비율이 자산 양도 후 3년 이내의 기간 중 기준부채비율보다 증가하게 된 경우
- 해당 자산을 양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산한 경우로서 합병법인, 분할로 인하여 신설되는 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 해당 사업을 승계한 경우가 아닌 경우

(2)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대한 과세 특례(§38)

○ 지원내용

- 내국법인이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따라 상대방 법인의 완전자회사로 되는 경우 완전자회사 주주의 주식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법인세를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완전모회사 또는 그 완전모회사의 완전모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이연

○ 적용요건

-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하던 내국법인 간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 등일 것
-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완전모회사로부터 교환·이전대가를 받은 경우 그 교환·이전대가의 총합계액 중 주식의 가액이 80% 이상이고, 완전모회사 및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 등으로 취득한 주식을 교환·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보유할 것
- 완전자회사가 교환·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사업을 계속할 것

○ 사후관리

- 다음 사유가 발생한 경우 완전모회사는 해당 사유의 발생사실을 1개월내 완전자회사의 주주에게 그 사실을 통지 및 완전자회사의 주주는 과세이연받은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

1. 완전자회사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 완전모회사 또는 완전자회사의 지배주주 등이 주식의 포괄적 교환 등으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3) 주식의 현물출자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38의2)

* 적용기한 : 2026.12.31.

○ 지원내용

- 내국인이 주식을 현물출자하여 지주회사(금융지주회사 포함)를 새로이 설립하거나 기존의 내국법인을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의 가액 중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또는 양도소득세를 내국인이 지주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이연
- 내국인이 현물출자·분할에 의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한 내국법인에 현물출자하거나 자기주식과 교환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또는 양도소득세를 해당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이연

○ 적용요건

- 지주회사 및 현물출자를 한 지배주주가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을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보유할 것
- 자회사가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사업을 계속할 것

○ 사후관리

- 지주회사 주식을 양도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되, 현물출자등을 한 날부터 3년 내 다음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익금산입

1. 신설·전환된 지주회사가 지주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2. 전환지주회사가 지주회사 전환 후 2년까지 지분비율미달자회사 주식을 일정비율 미만으로 소유하는 경우
3. 자회사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4. 지주회사 또는 현물출자등을 한 주주가 현물출자등으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4) 채무의 인수·변제에 대한 과세특례(§39)

○ 지원내용

- 내국법인의 주주·출자자(법인인 경우에 한정)가 해당 법인의 채무를 인수·변제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채무금액 중 해당 주주등이 인수·변제한 금액은 해당 연도 주주등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산입

- 채무가 인수·변제되어 채무가 감소한 법인(양도등대상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채무의 감소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개 사업연도의 기간 중 익금불산입하고 그 다음 3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산입

○ 적용요건

-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해당 내국법인의 지배주주·출자자 및 그 특수관계자의 소유주식·출자지분을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전부 양도할 것
- 또는 법인청산계획서를 해당 내국법인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2027년 12월 31일까지 해당 내국법인의 청산을 종결할 것

○ 익금산입

- 양도등대상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

1. 양도등대상법인의 부채비율이 채무 인수·변제 후 3년 이내의 기간 중 기준부채비율보다 증가
2. 채무를 인수·변제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산한 경우로서 합병법인, 분할로 신설되는 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 해당 사업을 승계한 경우가 아닌 경우

(5)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40)

* 적용기한 : 2026.12.31.

○ 지원내용

- 내국법인이 주주·출자자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4년거치 3년분할 익금산입

○ 적용요건

-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주주등의 자산증여 및 법인의 채무상환이 이루어질 것
- 재무구조개선계획에는 일정기한까지 양도대금을 특정 금융기관에 대한 부채의 상환에 전액 사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것

○ 손금산입

- 자산을 증여한 주주등(법인인 경우에 한정)의 경우 증여한 자산의 장부가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 산입

(6) 구조조정대상 부동산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43)

○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을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하여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50% 세액감면

○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의 취득일부터 5년 경과 후 양도시 양도소득금액의 50%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차감

(7) 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44)

* 적용기한 : 2026.12.31.

○ 지원대상 :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부실징후기업이 금융채권자로부터 채무의 일부를 면제받은 경우 채무면제익을 4년거치 3년분할 익금산입

○ 적용요건

-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및 부실징후기업의 기업개선계획에 따른 채무 재조정에 따른 채무 면제액이 포함되어 있을 것

○ 지원내용

- 대상법인 : 금융기관으로부터 면제받은 채무면제익(이월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와 그 다음 3년간 익금산입하지 않고 그 다음 3개 사업 연도에 균등액이상 익금산입

 * 사업의 폐지 또는 해산시 :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을 익금산입

- 금융기관 : 면제한 채무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대손상각비)

(8) 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46의7)

* 적용기한 : 2024.12.31.

○ 감면내용

- 벤처기업(코넥스 상장기업 외의 주권상장법인 제외, 매출액 대비 연구·인력개발비 투자 비중 5%이상인 중소기업 및 기술우수 중소기업 포함)의 주주(10%이상 보유)가 요건을 갖추어 제휴법인의 주주와 주식교환(제휴법인 자기주식과의 교환 포함) 또는 제휴법인에 현물출자 하는 경우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교환주식 또는 현물출자 주식 처분시까지 과세이연

○ 과세이연 요건

- 벤처기업이 제휴법인과 전략적 제휴계획을 추진하고 그 계획에 따라 주식교환 등이 이루어질 것

- 벤처기업 주주(특수관계자 포함)와 제휴법인의 최대주주가 특수관계에 있지 않을 것
- 주식교환 또는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을 1년이상 보유하도록 벤처기업과 제휴법인 간에 계약을 체결할 것

(9) 기업매각 후 벤처기업 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46의8)

* 적용기한 : 2026.12.31.

○ 감면내용
-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이었던 기업(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이후 7년이내)의 창업주 또는 발기인이 본인 보유 주식의 30%이상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 중 50%를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간의 종료일로부터 2년 이내 재투자하는 경우에는, 재투자에 사용된 금액에 대해 재투자로 취득한 주식 등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 함

○ 재투자요건
-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전문투자조합,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조합에 출자한 금액을 벤처기업등에 투자하는 경우
- 매각대상기업의 주주 1인과 특수관계인이 벤처기업 등의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할 것
- 재투자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3년 이상 보유할 것

마. 금융기관의 자산·부채인수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52)

* 적용기한 : 2026.12.31.

○ 지원내용
- 계약이전에 관한 명령 또는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인수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자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부채를 인수한 경우로서 순부채액(이전받은 부채의 가액 중 이전받은 자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이전받은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 적용요건
- 인수금융기관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순부채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전받을 것
- 인수금융기관이 이전받은 자산과 부채의 가액이 금융감독원장이 확인한 가액일 것

7.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세특례(제2장 제7절)

가.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60)

* 적용기한 : 2025.12.31.

○ 지원내용

- 대도시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는 내국법인이 대도시에 있는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수도권 밖에 있는 공장을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 제외)하기 위하여 해당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5년 거치 5년 분할 과세

나. 법인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데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61)

* 적용기한 : 2025.12.31.

○ 지원내용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본점·주사무소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본점·주사무소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에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은 5년 거치 5년 균등 익금산입

○ 일시 익금산입

-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무소를 둔 경우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대지와 건물을 처분한 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
-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경우

다. 공공기관이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62)

* 적용기한 : 2026.12.31.

○ 지원내용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이전공공기관이 본사를 혁신도시 또는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하기 위하여 종전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은 5년 거치 5년 균등 익금산입

라.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63, 63의2)

* 적용기한 : 2025.12.31.

○ 지원내용

- 수도권 밖으로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소득세·법인세 감면
 - 수도권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중소기업 공장의 경우에 한정) 또는 지방 5대 광역시, 구미시, 김해시, 아산시, 원주시, 익산시, 전주시, 제주시, 진주시, 창원시, 천안시, 청주시, 춘천시, 충주시, 포항시, 당진시, 음성군, 진천군, 홍천군(내면 제외), 횡성군으로 이전하는 경우 : 처음 5년간은 소득세·법인세 100%, 그 후 2년간 50%
 - 그 외 기타 지역, 지방광역시 등에 소재하는 위기지역 : 처음 7년간은 소득세·법인세 100%, 그 후 3년간 50%
 - 낙후도가 높은 지역, 위기지역 등 : 처음 10년간은 소득세·법인세 100%, 그 후 2년간 50%
- 공장 또는 본사의 대지·건물 양도차익에 대해 5년 거치 5년 분할 과세

○ 지원대상

- 공장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기업과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법인이 2025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한 경우 이전 후 발생하는 소득

○ 추징요건

-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사업을

폐업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경우(합병·분할·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 제외)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 또는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 수도권에 이전한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설치하거나 수도권에 본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무소를 설치한 경우
- 이전본사 근무 임원 수가 수도권 사무소 근무 임원 수의 100분의 50에 미달하게 된 경우

마.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64)

* 적용기한 : 2025.12.31.

○ 지원내용 : 소득발생후 5년간 소득세·법인세 50% 감면(5년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5년이 되는 해부터)

○ 지원대상
-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을 하는 내국인
-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 입주하여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

 * 농공단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의 지역으로 인구 20만 이상인 시지역 밖에 소재

 *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 일반산업단지(나주, 김제지평선, 장흥바이오식품, 북평, 나주혁신, 강진, 담양, 동함평, 세풍(1단계)), 국가산업단지(북평), 첨단과학산업단지(정읍), 전기자동차 산업단지(대마), 보령 주포제2농공단지

○ 감면한도
- 다음의 금액을 합한 금액(①+②)

 ① 사업용자산의 투자투계액 × 50%

 ②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1천5백만원(청년 등 상시근로자와 서비스업은 2천만원)

바. 영농구조의 개선을 위한 농업생산성 향상 지원(§66~§68)

(1)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66)

* 적용기한 : 2026.12.31.

- 법인설립지원 : 농지소재지에 4년 이상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업인이 농지 또는 초지를 현물출자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현물출자한 자산에 담보된 채무 중 법인이 인수하는 채무가액에 상당하는 소득 제외)에 대한 양도소득세 100% 감면
 - 사후관리 : 출자일로부터 3년 이내 출자지분 양도시 다음의 산식에 의한 양도소득세액과 이자상당액을 함께 납부

$$\text{*납부세액} = \text{농지에 대한 감면세액} \times \frac{\text{양도한 출자지분}}{\text{총출자지분}}$$

- 경영지원 :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전액과 식량작물재배업 외 소득중 (식량작물재배업외 작물재배업 소득 : 식량작물재배업외 작물재배업 소득금액×{6억원×조합원 수×식량작물재배업 외의 작물재배업 수입금액}, 작물재배업외 소득: 연간 1,200만원×조합원수)의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 면제
- 배당지원 : 식량작물재배업소득과 법인세가 면제되는 소득을 제외한 소득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중 과세연도별로 1,200만원 이하의 금액은 소득세를 면제하고 그 이외 배당소득은 5% 저율분리과세

(2) 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67)

* 적용기한 : 2026.12.31.

- 법인설립지원 : 어업인이 양식어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및 건물을 영어조합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현물출자한 자산에 담보된 채무 중 법인이 인수하는 채무가액에 상당하는 소득 제외)에 대한 양도소득세 100% 감면
 - 사후관리 : 출자일로부터 3년 이내 출자지분 양도시 감면세액 상당액을 이자상당액과 함께 납부
- 경영지원 : (어로어업소득: 연간 3,000만원×조합원수, 그 외 소득: 1,200만원×조합원수)
- 배당지원 : 연간 1,200만원 이하 배당소득은 배당소득세를 면제하고 그 이외 배당소득은 5% 저율분리과세

(3)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68)

* 적용기한 : 2026.12.31.

- 법인설립지원 : 농지소재지에서 4년 이상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업인이 농지 또는 초지를 현물출자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현물출자한 자산에 담보된 채무 중 법인이 인수하는 채무가액에 상당하는 소득 제외)에 대한 양도소득세 100% 감면
- 경영지원 : 식량작물재배업소득 및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중 일정금액에 대한 법인세 면제, 그 외 소득은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와 그후 4년간 법인세 50% 감면(5년이 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5년이 되는 해를 포함하여 5년간 50%감면)
- 배당지원 :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한 거주자가 받는 배당소득 중 식량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전액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세를 면제하고 그 외의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14% 분리과세

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69)

○ 감면내용

-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나 이와 붙어있는 시·군·구,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로 30킬로미터 이내 지역

○ 감면요건

- 일반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8년 이상 직접 경작
- 경영이양직불보조금 지급대상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또는 농업법인에게 202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
- 다만, 양도일 현재 특별시, 광역시(군 지역 제외), 시(시의 읍·면지역 제외)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편입일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양도할 경우는 감면 제외

- 근로소득(총급여)·사업소득(농업·축산업·임업 및 비과세 농가부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제외)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연도는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 복식부기 의무자 수입금액 기준 이상의 수입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과세연도는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 주거지역 등 편입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도 감면이 가능한 경우

- 대규모 개발사업(사업시행지역 안의 토지소유주가 1,000명 이상이거나 시행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후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3년이 경과한 경우
- 사업시행자가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인 경우로서 사업시행자의 책임에 의해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
-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후 3년 이내에 대규모개발사업이 시행되고, 해당 사업의 단계적 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편입일로부터 3년이 지난 경우

○ 감면한도

- 8년 자경 감면, 농지대토 감면, 공익사업 수용 감면 등의 세액을 합하여 1년간 1억원, 5년간 2억원 한도 내에서 양도소득세 감면

아.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69의2)

* 적용기한 : 2025.12.31.

○ 감면내용

- 축산에 사용하는 축사와 축사용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를 폐업을 위하여 202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 다만, 양도일 현재 특별시, 광역시(군 지역 제외), 시(시의 읍·면지역 제외)에 있는 축사용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편입일로부터 3년이 지나서 양도할 경우는 감면 제외

- 근로소득(총급여)·사업소득(농업·축산업·임업 및 비과세 농가부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제외)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연도는 축산에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자. 어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69의3)

* 적용기한 : 2025.12.31.

○ 감면내용

- 8년 이상 직접 어업에 사용한 어업용 토지(육상해수양식어업 및 수산종자생산업에 직접 사용되는 육상양식장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 다만, 해당 어업용 토지등이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해당 어업용 토지등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감면
- 근로소득(총급여)·사업소득(어업·축산업·임업 및 비과세 농가부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제외)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연도는 축산에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차. 자경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69의4)

○ 감면내용

-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아 10년 이상 자경한 산지를 양도한 경우 자경기간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 다만, 해당 산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산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세액을 감면

카.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70)

○ 감면내용

-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일정 요건을 갖춘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

○ 감면요건

-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 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
- 농지 등의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4년 이상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 종전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수용의 경우 2년)에 대체 농지를 취득(취득원인이 상속·증여인 경우 제외)하거나, 먼저 대체농지를 취득하고 그날부터 1년 이내 종전 농지를 양도한 경우로서 종전농지의 경작기간과 대체농지를 계속하여 경작한 기간이 합산하여 8년 이상일 것
-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종전농지의 2/3 이상이거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종전농지의 1/2 이상일 것
- 근로소득(총급여)·사업소득(농업·축산업·임업 및 비과세 농가부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제외)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연도는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 감면배제

- 종전농지 또는 새로 취득한 농지가 주거·상업·공업지역 편입일 또는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감면을 배제함

○ 감면한도

1년간 1억원, 5년간 1억원 한도내에서 양도소득세 감면

타.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70의2)

○ 과세특례 내용

- 직접 경작한 농지 및 농업용시설을 한국농어촌공사에 환매조건부로 양도 후 임차하여 경작하다가 환매권을 행사한 농업인 또는 해당 농업인의

상속인의 기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

- 농어촌공사에 양도한 후 임차하여 경작한 기간은 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시 경작기간에 포함
- 환매한 농지를 다시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 및 시기는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하기 전 해당 농지의 취득가액 및 시기를 승계

파.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71)

* 적용기한 : 2025.12.31.

○ 감면내용

- 농지·초지·산림지를 농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거주자가 농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직계비속(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의 100%를 감면

*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으로서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증여받은 농지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자

○ 감면대상

- 농지 : 농지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토지로서 40,000㎡ 이내
- 초지 : 초지법에 따른 초지로서 148,500㎡ 이내
- 산림지 : 조림기간이 5년 이상인 산림지로서 297,000㎡ 이내
- 축사 및 부수토지 : 축사의 실제 건축면적을 건축법상 규정된 건폐율로 나눈 면적의 범위 이내
- 어선: 어선법에 따른 총톤수 20톤 미만의 어선
- 어업권: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어업권으로서 100,000㎡ 이내
- 어업용 토지등: 4만제곱미터 이내
- 염전: 소금산업 진흥법에 따른 염전으로서 60,000㎡ 이내

8. 공익사업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2장 제8절)

가.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72)

* 적용기한 : 2025.12.31.

○ 다음에 해당하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법인의 결산재무재표상 당기순이익(법인세법에 따른 대손금, 기부금, 기업업무추진비, 과다경비,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 지급이자 등의 손금불산입액을 합산한 금액)에 9%(20억 초과의 경우는 12%)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

-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새마을금고
-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및 조합공동사업법인
-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어촌계를 포함)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
-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산림조합(산림계를 포함) 및 조합공동사업법인
-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엽연초생산협동조합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당기순이익 과세의 포기

- 상기 법인이 당기순이익 과세를 적용받지 아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받지 아니하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종료일(신설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교부신청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포기신청서 제출

나. 공익사업 재원조성 지원(고유목적사업준비금 : §74)

○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국립대학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산학협력단, 도서관, 미술관, 박물관, 지방문화원, 예술의 전당 등의 법인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

다. 정치자금의 손금산입특례 등(§76)

○ 정당 및 후원회에 지출한 정치자금의 손금산입 및 상속세·증여세 면제

① 정치자금법 : 개인은 연간 2천만원 한도로 정치자금 기부허용(외국인, 법인 및 단체는 제외)

② 거주자가 기부한 정치자금은 10만원까지는 기부금액의 110분의 100을 , 10만원 초과금액은 100분의 15(해당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00분의 25)를 세액공제하며 사업자인 거주자에 한하여 10만원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이월결손금을 뺀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산입

③ 불법정치자금을 기부받은 자에게 상속세·증여세 부과

라.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77, §77의2, §77의3)

* 적용기한 : 2026.12.31.(§77, §77의2), 2025.12.31.(§77의3)

(1) 공익사업용 토지 등(§77)

○ 지원대상

- 공익사업용 토지 등을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의 토지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
- 토지수용법등 법률에 의한 토지 등의 수용

 * 사업인정고시일전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에 한정함

○ 지원내용 : 양도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10%(채권보상시 15%, 3년만기 채권보상시 30%, 5년만기 채권보상시 40%) 감면

 * 만기보유 보상채권 한도 연간 1억원(5년간 2억원)

(2) 대토보상(§77의2)

○ 지원내용

- 거주자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 토지등의 양도대금을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대토보상)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40에 세액감면 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
 (2026년 12월 31일 이전 양도분에 대해 적용)

(3)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 등(§77의3)

○ 지원내용

-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 등을 매수청구·협의매수를 통하여 202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세액감면

1. 개발제한구역 지정일 이전에 토지 등을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매수청구일·협의매수일까지 토지 등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거주자가 소유한 토지 등 : 양도소득세의 40%
2. 매수청구일·협의매수일부터 20년 이전에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매수청구일·협의매수일까지 해당 토지 등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거주자가 소유한 토지 등: 양도소득세의 25%

마. 박물관 등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83)

* 적용기한 : 2022.12.31.

○ 지원내용

- 등록 후 3년 이상 운영한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과학관을 이전하기 위해 건물과 부속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신규시설 개관일부터 2년 내에 종전시설을 양도하거나 종전시설 양도일부터 1년 내 신규시설 취득 또는 3년 내 신축하여 개관시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일부터 3년 거치 후 3년간 분할납부

바.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을 위한 토지의 현물출자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85의4)

○ 지원내용

-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시행자(외국인투자기업만 해당)가 내국법인에 보유토지를 2014년 12월 31일까지 현물출자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차익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산입,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 처분 시까지 과세이연

○ 익금산입

- 토지를 현물출자받은 내국법인이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산하는 경우에는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

사. 어린이집용 토지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85의5)

○ 지원내용

-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자가 종전어린이집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고 양도일부터 1년 이내에 새로운 직장어린이집을 취득하는 경우 종전어린이집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과세이연

 <법인> 양도차익에 종전어린이집 양도가액 중 신규어린이집의 취득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방법. 이 경우 해당 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3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

 <개인> 양도차익에 종전어린이집 양도가액 중 신규어린이집의 취득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이연

아. 사회적기업에 대한 세액감면(§85의6①)

＊ 적용기한 : 2025.12.31.

○ 지원대상

- 사회적기업(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으로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라 인증받은 자)

○ 지원내용 : 인증 후 3년간 법인세·소득세 100%, 그 후 2년간 50% 감면 (감면한도: 1억원+취약계층 상시근로자 수×2,000만원)

자.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액감면제도(§85의6②)

＊ 적용기한 : 2025.12.31.

○ 지원대상

- 장애인 표준사업장(「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

○ 지원내용 : 인증 후 3년간 법인세·소득세 100%, 그 후 2년간 50% 감면 (감면한도: 1억원+취약계층 상시근로자 수×2,000만원)

차.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공장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85의7)

* 적용기한 : 2026.12.31.

○ 지원대상

-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상 가동한 공장(1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토지로서 5년 이상 보유한 토지 포함)을 공익사업 시행지역 밖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해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사업시행자에게 202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광역시(군지역 및 산업단지 제외), 행정중심복합도시는 제외

○ 지원내용

- 내국법인은 공장이전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하여 5년 거치 5년 분할 익금산입, 내국인은 5년 거치 5년간 분할납부 가능

카.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85의8)

○ 지원대상

-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해당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

○ 지원내용

- 내국법인은 공장이전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하여 5년 거치 5년 분할 익금산입, 내국인은 5년 거치 5년간 분할납부 가능

타.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물류시설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85의9)

○ 지원대상

- 공익사업지역에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사용한 물류시설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물류시설의 대지·건물을 공익사업시행자에게 202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

○ 지원내용 :

- 내국법인은 이전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하여 3년 거치 3년 분할 익금산입, 내국인은 3년 거치 3년간 분할납부 가능

파. 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85의10)

○ 지원내용

- 거주자가 2년 이상 보유한 산지를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국가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 감면

9. 저축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2장 제9절)

가.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86의3)

○ 비과세 요건 : 공제부금을 불입하는 소기업·소상공인공제('19.1.1.이후 가입하는 부동산임대업 소득금액은 제외)

○ 소득공제 :

$$\text{공제한도}^{*} \text{ 내의 부금 납부액} \times \left(1 - \frac{\text{부동산임대업 소득금액}}{\text{사업소득금액}^{**}}\right)$$

* (한도) 4천만원 이하 : 연 500만원 한도,
4천만원~1억원 이하 : 연 300만원 한도,
1억원 초과 : 연 200만원 한도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에 가입한 법인대표자가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이면 소득공제 허용

나.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87)

* 적용기한 : (소득공제) 2025.12.31.까지 납입분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2025.12.31.까지 가입분

○ 소득공제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는 납입금액의 40%(연 납입액 300만원 한도) 소득공제

○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 3.6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및 2.6천만원 이하 사업소득자인 청년의 경우 500만원 한도 내 이자소득 비과세

다.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87의2)

○ 농어민이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경우 해당 농어민 또는 그 상속인이 저축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가입일부터 1년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저축을 해지하여 받는 이자소득과 저축장려금에 대해서는 소득세·증여세 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1. 농어민이 사망한 때
2. 농어민이 해외로 이주한 때
3. 천재지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라.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87의7)

* 적용기한 : 2026.12.31.

○ 지원대상 : 거주자가 투자금액 5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모부동산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경우

○ 지원내용 :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 9% 분리과세 적용

마.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88의2)

* 적용기한 : 2025.12.31.까지 가입분

○ 세제지원 : 65세이상 노인, 독립유공자와 그 가족·유족, 장애인·상이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등이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시 저축원금 5천만원 범위내 이자소득세·배당소득세 비과세

바.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88의4)

○ 우리사주제도에 대한 세제지원

- 종업원출연분
 - 소득공제분(연400만원 한도) : 자사주 인출시 과세(과세이연)
 - 미공제분 : 자사주 취득시 즉시 저가매입분 근로소득으로 과세
- 법인·대주주출연분
 - 한도내금액 : 자사주 인출시 과세(과세이연)
 - 한도초과분 : 자사주 취득시 즉시 한도초과분 근로소득으로 과세

○ 우리사주제도에서의 과세방법

구 분			취득(배정)시	인출시			
				2년미만	2년이상	4년이상	6년이상
종업원 출연분	·소득공제 한도초과분 ·소득공제한도 내 미공제분 (차익과세)	과세방법	근로소득세 종합과세(6~45%)	기 과세			
		과세금액	취득시가의 70% -취득가액[1]				
	소득공제분 (전액과세)	과세방법	비과세(과세이연)	100%과세 소득세 원천징수	50% 비과세 50%원천징수	75% 비과세 25%원천징수	100% 비과세[4]
		과세금액		Min(매입가액[2],인출시 시가[3])			
법인·대주주 출연분	법인출연분중 한도초과분 (전액과세)	과세방법	근로소득세 종합과세(6~45%)	기 과세			
		과세금액	매입가액-한도액[5]				
	법인출연분중 한도이내분+대주주출연분+조합수익취득분 (전액과세)	과세방법	비과세(과세이연)	100%과세 소득세 원천징수	50% 비과세 50%원천징수	75% 비과세 25%원천징수	100% 비과세[4]
		과세금액		Min(매입가액-한도초과분, 인출시 시가)			

주」 1. 취득시 시가의 70%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그 차액을 과세
2. 매입가액 = 취득시 시가의 70%와 취득가액 중 많은 금액
3. 인출시 주가가 하락한 경우에는 하락한 인출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
4. 중소기업인 경우에 한함
5. 한도액 : Max(총급여의 20%, 5백만원)

사. 조합 등 출자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88의5)

○ 대상 :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에 대한 1인당 2천만원이하의 출자금의 배당소득과 사업이용실적에 따른 배당소득

○ 지원내용

- ~2025.12.31. : 소득세 비과세
- 2026.1.1.~2026.12.31. : 5% 저율분리과세
- 2027.1.1.~ : 9% 저율분리과세

아. 조합 등 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89의3)

○ 대상 : 농·수협 지역조합,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의 1인당 3천만원 이하 예탁금

○ 지원내용

- ~2025.12.31. : 이자소득 비과세
- 2026.1.1.~2026.12.31. : 5% 저율분리과세
- 2027.1.1.~ : 9% 저율분리과세

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과세특례(§91의18)

○ 가입대상 : 만 19세 이상 거주자(15세 이상인 자로 근로소득이 있는 자 포함)

○ 의무가입기간 : 3년

○ 납입한도 : 총 1억원(연간 2천만원, 연간 납입한도는 이월가능)

○ 지원내용 : 계좌에서 발생하는 손익을 통산하여 계약 해지시 소득 200만원(총급여액 5,000만원 이하 근로자. 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 사업자 및 농·어민의 경우 400만원)까지 비과세, 초과분은 9% 분리과세

○ 우대형 가입서류(비과세 한도 400만원)

- 서민형(총급여액 5,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 사업소득자) : 소득확인 증명서
- 농·어민 : 농·어업인확인서 및 농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차. 장병내일준비적금 비과세(§91의19)

* 적용기한 : 2026.12.31.까지 가입분

○ 가입대상 : 현역병, 사회복무요원, 상근예비역 등

○ 가입기간 : 복무기간 종료일까지(최대 24개월)

○ 지원내용 : 저축 납입금액 한도('24년 12월 31일 이전까지 월 40만원, '25년 1월 1일 이후 월 55만원) 내 발생하는 이자소득세 비과세

○ 비과세 적용기간 : 가입일부터 복무기간 종료일까지(최대 24개월)

카.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91의20)

* 적용기한 : 2024.12.31.까지 가입분

○ 가입대상 : 가입일 현재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으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5,000만원 이하 근로자 혹은 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 사업자

○ 의무가입기간 : 3년
○ 저축 요건
- 자산총액의 40% 이상을 상장주식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기 위한 저축일 것
- 계약기간이 3년 이상 5년 이하일 것
- 적립식 저축으로서 1인당 납입금액이 연 600만원 이내일 것
○ 지원내용 : 계약기간 동안 각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소득공제
○ 사후관리 : 총급여액 8,000만원 초과, 종합소득금액 6,700만원 초과 혹은 소득이 없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 소득공제 배제

타. 청년희망적금에 대한 비과세(§91의21)

* 적용기한 : 2022.12.31.까지 가입분

○ 가입대상 : 가입일 현재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으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3,600만원 이하 근로자 혹은 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 사업자
○ 계좌 요건 : 1명당 1개만 가입 가능, 납입한도 연 600만원, 계약기간 2년
○ 지원내용 : 가입하여 2024.12.31.까지 받는 이자소득 비과세

파.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비과세(§91의22)

* 적용기한 : 2025.12.31.까지 가입분

○ 가입대상 : 가입일 현재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으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7,500만원 이하 근로자 혹은 종합소득금액 6,300만원 이하 사업자
○ 계좌 요건 : 1명당 1개만 가입 가능, 납입한도 연 840만원, 계약기간 5년
○ 지원내용 : 가입한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비과세

하. 개인투자용국채에 대한 과세특례(§91의23)

* 적용기한 : 2024.12.31.까지 매입분

○ 적용요건 : 전용계좌를 통해 개인투자용국채를 매입(매입한도 총 2억원)하고 만기일까지 보유
○ 지원내용 : 개인투자용국채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 14% 분리과세 적용

10. 국민생활안정을 위한 조세특례(제2장 제10절)

가.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95의2)

○ 지원대상 : 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이 7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제외)인 무주택자인 근로소득자(외국인,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 등 계약 포함)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여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 다만 월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제외

○ 지원내용 : 월세액의 15%를 소득세에서 세액공제(총급여 5.5천만원 또는 종합소득 4.5천만원 이하자의 경우 17% 세액공제)

나.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96)

* 적용기한 : 2025.12.31.

○ 지원대상 : 국민주택 규모 이하 임대주택을 1호 이상 임대하는 임대사업자(소득세법·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 및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연 임대료 증가율이 5% 이내일 것)

○ 지원내용

- 1호 임대 : 소득세·법인세 30% 감면(공공지원민간임대·장기일반민간임대 75%)
- 2호 이상 임대 : 소득세·법인세 20% 감면(공공지원민간임대·장기일반민간임대 50%)

다.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96의3)

* 적용기한 : 2024.12.31.

○ 지원대상 : 2020.1.1.부터 2024.12.31.까지의 기간 중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인하하여 지급받은 경우

○ 지원내용 : 임대료 인하액의 70% 감면(기준소득금액 1억원 초과시 50%)

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97의3)

* 적용기한 : 2024.12.31.까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등록한 주택 (매입임대주택은 2020.12.31까지)

○ 지원대상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준공공임대주택사업자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증액제한 요건 등 준수)한 후 양도하는 거주자

○ 지원내용 : 양도소득세 계산시 임대기간 중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8년 이상 임대시 100분의 50, 10년 이상 임대시 100분의 70을 적용

마.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97의4)

○ 지원대상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매입·건설임대주택으로서 장기임대주택을 6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 지원내용 : 양도소득세 산출을 위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계산시 보유기간별 공제액에 다음의 비율을 추가 공제

임대기간	6년 이상 7년 미만	7년 이상 8년 미만	8년 이상 9년 미만	9년 이상 10년 미만
추가공제율	2%	4%	6%	8%

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액감면(§97의5)

○ 지원대상 : '15.1.1.~'18.12.31.까지 주택을 취득하고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준공공임대주택 등록후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거주자

○ 지원내용 : 계속 임대기간에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를 감면

사.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99의2)

○ 특례내용

-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신축주택, 미분양주택,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으로서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이거나 연면적(공동주택은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2013년 4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취득한 경우 향후 5년간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의 100%를 감면
- 일반주택 양도시 감면대상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

○ 2014년 3월 31일까지 관할지자체에 감면대상기존주택 확인을 신청하여 날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 1세대 1주택 요건

- 2013년 4월 1일 현재 주민등록법상 1세대가 취득 등기일부터 매매계약일까지 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법상 1주택을 보유한 경우 당해 주택
- 다른 주택은 없고 2013년 4월 1일 현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오피스텔도 1주택으로 봄
- 일시적 2주택자로서 종전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대체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에 해당

○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

-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도 요건을 갖추면 감면 가능
- 2013년 3월 31일 이전에 체결한 매매계약이 2013년 4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 사이에 해제된 주택 및 당해 매매계약을 해제한 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 포함)가 원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던 사업주체 등과 계약을 체결하여 취득한 미분양주택

아.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세감면(§99의3)

○ 특례내용

- 2001.5.23.~2003.6.30. 기간중 신축 국민주택을 취득후 5년내 양도시 양도세 면제, 5년 경과후 양도시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차감

○ 서울특별시, 과천시, 분당, 평촌, 일산, 산본, 중동 신도시 지역은 제외

자. 농어촌주택(고향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99의4)

○ 특례내용

- 1세대가 2003년 8월 1일(고향주택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중에 다음 요건을 갖춘 1개의 농어촌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당해 농어촌주택(고향주택) 취득전에 보유하던 다른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농어촌주택(고향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 농어촌주택의 요건

- 수도권(연천군, 옹진군 제외)·도시지역·허가구역·조정대상지역·관광단지외 지역으로 읍·면 또는 인구 20만 이하의 시지역의 동에 소재한 주택일 것
-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가액(소득세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당해 주택의 취득 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 「건축법 시행령」제2조 제16호에 따른 한옥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건축비·수선비 지원, 보존의무 등의 대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등록된 한옥의 취득당시 4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 고향주택의 요건

- 수도권·조정대상지역·관광단지외 지역에서 가족관계등록부에 10년 이상 등재되고 10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인구 20만 이하의 시지역에 소재한 주택일 것
- 나머지 요건은 농어촌주택과 동일

차.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99의9)

*적용기한 : 2025.12.31.

○ 감면대상

- 위기지역으로 지정 또는 선포된 기간에 감면대상사업으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

○ 업종요건 : 광업, 제조업, 수도·하수 및 폐기물 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 통신판매업, 물류산업, 음식점업, 정보통신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뉴스제공업,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 제외), 금융 및 보험업 중 정보통신 활용 금융서비스 제공 업종, 전문·과학 및 기술서

비스업(엔지니어링사업 포함, 변호사업, 변리사업 등 제외),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서비스업, 사업 지원 서비스업(고용알선업 및 인력공급업은 농업 노동자 공급업 포함),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 오락장운영업 등 제외),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이용 및 미용업, 직업기술 분야 교습학원 운영사업,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운영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 한함), 관광숙박업·국제회의업·유원시설업 및 관광객이용시설업, 노인복지시설 운영사업, 전시산업

○ 감면내용

- 소득세·법인세 : 창업 또는 사업장 신설 후 최초 소득발생 (5년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5년이 되는 해부터) 5년간은 법인세 100%, 그 후 2년간 50%

○ 감면한도

- 다음의 금액을 합한 금액(①+②)

① 사업용자산의 투자투계액 × 50%

②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1천5백만원(청년 등 상시근로자와 서비스업은 2천만원)

11. 그 밖의 직접국세 특례(제2장 제11절)

가. 다자간매매체결거래에 대한 소득세 등 과세특례(§104의4)

○ 다자간매매체결회사를 통한 주식거래는 증권거래소 등에서 거래되는 것과 동일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증권거래세법·농특세법 적용

나.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104의7)

○ 2003년 6월 30일 이전에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으로서 법인으로 등기한 전환정비사업조합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환정비사업조합 및 그 조합원을 각각 소득세법에 의한 공동사업장 및 공동사업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 다만 전환정비사업조합이 법인세법에 의해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정비사업조합(전환정비사업조합을 포함)에 대하여는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법을 적용(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적용배제)하며 전환정비사업조합은 법인세법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 한함

○ 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에게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사업은 법인세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서 제외

○ 정비사업조합이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후 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것으로서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공급하는 토지 및 건축물은 부가가치세법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이 아님

○ 정비사업조합이 납부할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그 잔여재산을 분배 또는 인도한 때에는 당해 정비사업조합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이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그 잔여재산의 분배 또는 인도를 받은 자가 분배 또는 인도를 받은 가액을 한도로 2차 납세의무를 짐

다. 전자신고, 전자고지에 대한 세액공제(§104의8)

(1) 전자신고 세액공제

○ 공제대상 : 납세자나 세무사가 전자신고방법에 의하여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경우에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

○ 공제금액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납부 세액에서 2만원을 공제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1만원을 공제

○ 공제한도

- 세무사가 납세자를 대리하여 소득세, 법인세,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를 전자신고하는 경우에는 연간 300만원(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은 7백5십만원) 한도

(2) 전자고지 세액공제

○ 대상 및 금액 : 납세자가 전자송달 방법으로 납부고지서 송달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건당 1천원 세액공제

* 소득세 중간예납, 부가가치세 예정부과·예정고지, 과세표준과 세액이 정부가 결정하는 때 확정되는 국세

라.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 계산 특례(§104의10)

* 적용기한 : 2024.12.31.

○ 대상법인

- 해운법상 외항여객·외항화물운송사업자(수산물운송업자 제외), 국제순항크루즈선 운송사업
- 해당 기업이 용선한 선박의 연간운항순톤수의 합계가 기준선박의 연간운항순톤수 합계의 5배를 초과하지 않는 기업

○ 법인세 과세표준(①+②)

①개별선박표준이익의 합계액(해운소득)

개별선박표준이익 = 개별선박순톤수×1톤당 1운항일이익×운항일수×사용률

- 연간운항순톤수 = 순톤수×연간운항일수×사용률
- 기준선박 : 소유 선박 및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 연불조건부로 리스한 선박
- 순톤수 : 선박법§3①3*에 의한 순톤수

* 순톤수 : 협약 및 협약의 부속서의 규정에 따라 여객이나 화물의 운송용으로 제공되는 선박안의 장소의 크기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되는 지표를 말한다.

- 운항일수 : 소유기간(소유선박), 용선기간(용선선박)

- 사용률 : 소유선박 100%, 용선비율
- 1톤당 1운항일 이익

개별선박의 순톤수	1톤당 1운항일이익
1,000톤이하분	14원
1,000톤초과 10,000톤이하분	11원
10,000톤초과 25,000톤이하분	7원
25,000톤초과분	4원

② 비해운소득 법인세과세표준(종전의 방식)

○ 해운소득의 범위
- 외항해상운송활동으로 발생한 소득(용대선 포함)
- 화물의 유치등 외항해상운송활동과 연계된 활동으로 발생한 소득
- 외항해상운송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이자소득 등

○ 조세특례의 배제 등
- 비해운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선박표준이익과 통산 제외
- 해운소득에 대해서는 조특법등에 의한 조세특례 적용 배제
- 해운소득에 원천징수된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원천징수세액의 기납부세액 공제 배제
- 특례적용을 받기 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공제 배제

○ 구분경리 등
-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 구분경리(공통손익 안분)
- 특례적용시 연속한 5사업연도 동안 의무적용
- 해양수산부장관이 확인한 요건확인명세서 제출의무
- 2사업연도 이상 요건 위반시 2회째 위반 사업연도부터 당해 특례적용의 잔여기간과 다음 5사업연도 기간은 특례적용 배제

마. 향교·종교단체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104의13)

○ 적용대상 : 개별향교 및 개별종교단체가 소유한 부동산을 향교재단 및 종교단체 명의로 등기되어 관리되고 있는 부동산(주택 및 토지)

○ 지원내용 : 실질소유자인 개별향교 및 개별종교단체 명의로 종합부동산세 과세

바.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104의15)

○ 지원대상 : 해외의 광업권, 조광권을 직접 취득하거나 광업권 등을 소유한 외국법인의 지분을 취득하는 해외자원개발사업자

○ 지원내용 : 해외자원개발 투자금액의 소득세, 법인세에서 3%를 공제

사. 대학 재정 건전화를 위한 조세특례(§104의16)

○ 지원대상 : 대학(학교법인)이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보유중인 토지·건물 등 유형자산을 대체취득하는 경우 법인세 과세이연

○ 지원내용 : 3년 거치 3년 분할 익금산입

아. 기업의 운동경기부 등 설치·운영에 대한 과세특례(§104의22)

○ 지원대상 :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운동경기부 또는 이스포츠경기부를 설치한 내국법인

- 육상, 탁구 등 대한체육회에 가맹된 경기단체 종목 또는 이스포츠법에 따라 선정된 종목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종목의 경기부일 것
- 선수는 대한체육회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경기단체에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이스포츠법에 따른 이스포츠 선수일 것
- 경기종목별 선수의 수는 해당 종목의 경기 정원 이상일 것
- 경기종목별 경기지도자가 1명 이상일 것

○ 지원내용 : 3년(장애인운동경기부의 경우 5년)간 해당 운동경기부 또는 이스포츠경기부의 운영에 드는 비용의 10%(장애인운동경기부의 경우 20%)를 법인세에서 공제

자.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104의24)

* 적용기한 : 2024.12.31.

○ 지원대상 ① 국외에서 2년 이상 운영한 사업장을 이전하여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

② 국외에서 2년 이상 운영한 사업장을 부분축소 또는 유지하면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복귀

○ 지원내용

- 완전복귀(해외사업장 폐쇄) : 5년간 100%, 2년간 50% 법인세·소득세 감면
- 부분복귀*(해외사업장 축소 또는 유지) : 수도권 밖으로 복귀시 5년간 100%, 2년간 50% 법인세·소득세 감면(수도권 내로 복귀시 3년간 100%, 2년간 50%)

○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지원요건

- 수도권과밀억제권역밖의 지역에 창업 또는 사업장을 신설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4년이내 국외사업장을 양도하거나 폐쇄할 것
- 국외에서 운영하던 사업장을 양도하거나 폐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지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할 것

차.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세액공제(§104의25)

*적용기한 : 2025.12.31.

○ 지원대상 : 한국거래소에서 운영하는 전자상거래사이트를 통한 석유제품을 공급받는 자

○ 공제율 : 공급받는 자 공급가액의 0.3%(산출세액의 10% 한도)

카.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의 손금산입(§104의26)

*적용기한 : 2024.12.31.

○ 지원대상 : 추진위원회의 승인 또는 조합 설립인가가 취소된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조합 등에 대한 채권을 포기한 시공자 등

○ 채권 포기 요건

- 시공사 등이 채권확인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고 해당 채권확인서에 따라 조합등에 대한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
- 시공자 등이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채권의 포기에 관한 확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

○ 지원내용 : 채권 포기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산입

타.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104의32)

*적용기한 : 2026.12.31.

○ 공제대상

- 「소득세법」 제173조 제1항에 따라 기한 내에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를 제출한 자

○ 공제금액

- 용역제공자 인원 수(용역제공자 인적사항, 용역제공기간 등 기재해야 할 사항이 모두 기재된 인원 수로 한정)에 300원을 곱한 금액
-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이 발생한 달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 공제한도

- 연간 200만원

12. 간접국세 감면(제3장)

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105)

○ 방산업체가 공급하는 방산물자 등

○ 국군조직법에 의해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에 공급하는 석유류

○ 국가 또는 지자체 등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면세사업 목적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경우 제외) <2026.12.31.까지>

○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할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자체에 공급(BTO, BTL, BOT 방식)하는 사회기반시설 또는 동 시설의 건설용역 <2026.12.31.까지>

○ 장애인용 보장구로서 다음의 것(장애인 보조기기 등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과 그 수리용 부분품)

- 「장애인·노인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보조기기로서 장애인용으로 특별히 제작된 팔·다리의지(義肢), 수동·전동휠체어 등 30여개 물품
- 「의료기기법」 제2조에 따른 의료기기로서 장애인용으로 특수하게 제작되거나 제조된 보청기, 인공달팽이관장치(연결사용하는 외부 장치 및 배터리를 포함한다) 및 인공후두

○ 농민 또는 임업종사자에게 공급하는 다음의 기자재<2025.12.31.까지>

-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
-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으로서, 농촌진흥청장에게 등록된 농약(고독성 농약, 어독성 1급인 보통독성 농약 등 제외)
- 농업용 기계

 · 경운기, 농업용 트랙터, 관리기, 이앙기, 콤바인, 곡물건조기 등 31개 기종
- 축산업용 기자재

 · 육추기, 양계용케이지, 축산급이기, 자동급수기, 양돈케이지 등 39개 기종
-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

- 임업용 기자재
 · 임업용 동력천공기, 임업용 약제주입기, 산불진화용 펌프 등 15개 기종
- 유기농어업자재
 · 기자재의 제조 원료, 재료가 키토산, 목초액 등 허용물질(50종)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공시 또는 품질인증한 것
 · 키토산, 목초액, 천적 등 50개

○ 어민에게 공급하는 어업용 기자재<2025.12.31까지>
-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
- 그 밖의 어업용 기자재
 · 어망, 부자, 집어등, 양승기 등 41개 기종

나. 농·임·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105의2)

○ 농어민등이 농·임·어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거나 직접 수입하는 다음의 기자재에 대해서는 구입 또는 수입시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
- 농·임업용 기자재
 · 농·임업용 필름·파이프·포장상자·부직포·배지·양수기·무인항공기, 과일봉지, 축산 악취제거기, 동물용 의약품 등 66개 기종
- 어업용 기자재
 · 양어장용 필름, 양어장용 파이프, 와이어로프, 양식장용 사료살포기 등 34개 기종

○ 사후관리
-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은 기자재를 본래의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불법유통 시킨 경우 등에 해당시 환급세액과 이자상당액을 추징

다. 부가가치세 면제 등(§106)

(1) 국내 공급에 대한 면제(§106①)

○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2025.12.31.까지>

○ 공장, 광산, 건설현장 등의 종업원을 위한 구내식당과 학생을 위한 학교 구내식당의 음식용역(학교 위탁급식 등 포함)<2026.12.31까지>

○ 농·어업경영 및 농·어업 작업의 대행용역<2026.12.31까지>
○ 국민주택공급 및 국민주택의 건설(리모델링 포함)·설계용역
○ 주택관리업자 등이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용역, 경비용역 및 청소용역 (국민주택 규모 초과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2025.12.31.까지)
○ 노인복지주택 관리업자 등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 노인복지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용역, 경비용역 및 청소용역
○ 영구임대주택에 공급하는 난방용역<2026.12.31까지>
○ 온실가스 배출권,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상쇄배출권<2025.12.31.까지>
○ 정부업무대행단체가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국가에 공급하는 철도시설
○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면세목적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 또는 사회기반시설 건설용역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4조 1호의 방식을 준용하여 건설한 기숙사를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등<2025.12.31.까지 실시협약 체결분>
○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용 전기버스<2025.12.31.까지>
○ 개인택시운송사업용으로 간이과세자에게 공급하는 자동차<2024.12.31.까지>
○ 희귀병 치료 등을 위한 다음의 것
- 세레자임등 고셔병환자가 사용할 치료제
- 로렌조오일등 부신이영양증환자가 사용할 치료제
- 혈우병으로 인한 심신장애자가 사용할 열처리 혈액응고인자 농축제
- 근육이양증환자 치료제
- 윌슨병환자 치료제
- 후천성면역결핍증으로 인한 심신장애자 치료제
- 장애인의 음식물섭취에 사용할 삼킴장애제거제
- 장기이식 후 면역억제제의 합병증으로 생긴 림파구증식증 환자 치료제
- 니티시논 등 타이로신혈증환자 치료제
- 발작성 야간 헤모글로빈뇨증 환자 치료제
- 비정형 용혈성 요독증후군환자 치료제
- 전신 중증 근무력증 및 시신경 척수염 범주질환 환자 치료제
- 신경섬유종증 1형 환자의 치료에 사용할 치료제
- 아미팜프리딘 등 람베르트-이튼증후군 환자의 치료에 사용할 치료제

○ 영유아용 기저귀 및 분유
○ 농민·임업인에게 난방용 또는 농·임업용으로 공급하는 목재 펠릿<2025.12.31.까지>
○ 주택담보노후연금채권 또는 주택담보노후연금채권 담보 대상주택

(2)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106②)

○ 무연탄, 과세사업용 선박, 관세법에 따른 보세건설물품
○ 농·어민이 직접 수입하는 농업용 또는 축산업용 기자재와 어업용 기자재 <2025.12.31.까지>
○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의 경기시설 제작·건설 및 경기운영에 사용하기 위한 물품으로서 국내제작이 곤란한 것 <2024.12.31.까지>

라. 농·임·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면제(§106의2)

○ 농·임·어업용 석유류는 2023년까지, 연안운항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하여는 2026년까지 부가가치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자동차세를 사전면제하거나 석유판매업자에게 사후환급 또는 세액감면
○ 농·임·어업용 면세유 공급대상 농·어민 및 임업인의 범위
- 농민 : 개인(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업협동조합 등
- 어민 : 개인, 영어조합법인, 수산업협동조합과 어촌계, 어업주업법인
- 임업인 : 개인, 산림조합
○ 농·어민 등이 면세유를 공급받기 위하여는 농어업 기계 등을 면세유류 관리기관(농·수협 등)에 신고 (농업기계, 어업기계 2년단위 재신고)하고 면세유류구입카드 등을 교부받아야 함
○ 면세유 공급대상 농어업 기계 등의 범위
- 연근해 및 연안구역 어업용선박(어선설비를 포함)
- 나잠어업종사자의 탈의실용 난방시설 및 수송용 선박(「수산업법」에 따른 관리선 및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만 해당)
- 어민이 직접 운영하는 수산물생산기초시설·양식업용 시설 및 수산종자생산시설로써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어민이 직접 포획·채취한 어획물을 운반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어민 소유의 선박
- 낚시 어선업용 선박(「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이 「어선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선박만 해당)
- 농업기계, 임업기계, 어업기계, 내수면 어업·양식용선박 및 내수면육상양식어업용시설(수온유지용 및 양수용 한정)

○ 면세석유류 실사용량 확인 장치

- 다음의 농·어업기계 등에 대해서는 자동계측기(엔진 가동시간을 자동으로 측정할 수 있는 시간계측기) 또는 선박브이패스시스템 송신기 등 어선위치발신장치, 선박 건조 시 부착된 가동시간 계측장치를 부착하여야 함
 - 농업용 트랙터, 콤바인, 농업용 난방기, 버섯재배소독기, 곡물건조기 및 농산물건조기
 - 10톤이상의 농선·연근해어업용선박 및 내수면어업·양식업용선박과 선외내연기관부착 선박
- 직전연도에 면세석유류를 10㎘이상 공급받는 농민 및 40㎘(휘발유의 경우 20㎘) 이상 공급받는 어민이 소유하는 다음의 시설 및 농업기계에 대해서는 생산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면세유류관리기관장(농협, 수협)에게 제출
 - 수산물생산기초시설, 양식업용시설, 수산종자생산시설
 - 농업기계, 어업기계 및 내수면육상양식업용시설

○ 면세유류관리기관은 신고된 농어업기계 보유현황, 영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농·어민별로 면세유 공급량 배정

○ 면세유류관리기관은 면세유를 판매할 수 있는 석유판매업자를 지정할 수 있음

○ 면세유류관리기관은 농어민의 면세유 공급명세를 홈페이지에 공개 가능

○ 부정유통에 대한 가산세 40% 추징

- 농·어민 등이 면세유를 농·어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 농·어민 등에 대한 면세유 공급 중단

- 면세유를 부정유통한 경우
- 농·어업기계 등을 허위 신고한 경우

- 사용실적 서류 등을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 농·어민 등이 면세유를 농·어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 석유판매업자에 대한 면세유 취급중단
- 면세유 부정유통에 개입한 경우 5년간 취급중단 (면세유판매업자 지정취소)
- 부정유통 석유판매업을 양수, 합병·상속받은 경우에는 면세유 취급중단 승계

○ 면세유류관리기관의 관리부실에 대한 가산세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면세유류구입카드 등을 교부한 경우 : 가산세 40%
- 기타 관리부실로 면세유류구입카드 등을 잘못 교부한 경우 : 가산세 20%

○ 면세유 연간한도량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 산림청장의 신청에 의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석유제품별로 결정

마. 금 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106의4, §122의4)

(1) 도입 배경

○ 금 관련 제품 거래시 매출자가 매입자로부터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는 탈세(매입자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음) 방지 목적
⇒ '07년말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여 2008. 7. 1부터 시행

(2) 금 관련 제품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 내용

○ 금사업자는 "금거래계좌"를 개설하여야 함

○ 금사업자가 금 관련 제품을 매입한 때에는 금거래계좌를 사용하여 금 관련 제품의 가액은 매출한 금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액은 국세청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에 입금
- 매출자가 매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않음

○ 매입자가 입금한 금 관련 제품 매출세액의 한도 내에서 자기가 입금한 금 관련 제품 매입세액을 환급 허용
- 금 관련 제품 수입시 세관에 납부한 부가가치세액도 납부가 확인되는 경우 환급되는 매입세액으로 인정
- 금지금제련업자는 금 관련 제품 매출세액에서 금 관련 제품 매입세액을 차감한 금액의 70%를 매입세액으로 인정

○ 매입자가 입금한 부가가치세액은 금 관련 제품 매출자의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

○ 의무불이행시 제재

- 매입자의 부가가치세액 미입금 : 매입세액 불공제, 미입금 기간에 대해 1일 0.022%의 금액을 부가가치세액에 가산하여 징수
- 금거래계좌 미사용 : 매출·매입 금사업자 모두에게 금 관련 제품 가액의 10%를 가산세로 부과

바.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106의7)

○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의 99%를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분까지 경감

○ 경감세액 중 부가가치세액의 5%는 택시감차보상의 재원으로 국토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지급

○ 경감세액 중 부가가치세액의 4%는 .택시운수종사자 복지기금 관리기관에 지급

○ 경감세액 중 부가가치세액의 90%는 일반택시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

사.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106의9, §108의2, §108의3, §122의4)

○ 적용대상 품목

- 「관세·통계통합분류표」 중 비철금속류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과 잉곳 또는 이와 유사한 재용해 비철금속류의 웨이스트와 스크랩으로부터 제조된 괴상의 주조물
- 「관세·통계통합분류표」 중 '철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철강의 재용해용 스크랩 잉곳 등

○ 적용대상 사업자: 스크랩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거나 수입하는 사업자

○ 납부방법

① 스크랩등사업자는 지정 금융기관에 스크랩등거래계좌를 개설

② 매입자는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사용하여 물품대금과 부가가치세를 입금

③ 지정 금융기관은 물품대금을 매출자의 스크랩등거래계좌로 입금

④ 매입자가 입금한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자의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하고, 지정 금융기관은 매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한 후의 세액을 국고에 납부

○ 의무불이행시 제재
- 스크랩등거래계좌 미사용 : 매출·매입 사업자 모두에게 스크랩등 가액의 10%를 가산세로 부과
- 매입자의 부가가치세 미입금 : 매입세액 불공제, 미입금 기간에 대해 1일 0.022%의 금액을 부가가치세액에 가산하여 징수

아. 신용카드 등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106의10)

○ 요건 : 소비자가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 대상업종 : 일반유흥주점업 및 무도유흥주점업
○ 대리납부자 : 신용카드사
○ 대리납부금액 : 신용카드 결제금액(봉사료 제외)의 4/110 (공급가액의 4%)

자. 외국사업자 등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107)

(1) 외국인관광객에 대한 사후환급제도

○ 외국인관광객등이 국외로 반출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재화 또는 물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또는 개별소비세를 환급할 수 있음(영세율, 면제)
○ 외국인관광객의 범위
-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비거주자(법인, 국내에 주재하는 외교관, 국내에 주재하는 국제연합군 및 미국군의 장병 및 군무원을 제외)
○ 환급대상 제외물품
- 총포·도검·화약류, 문화재, 중독성·습관성 의약품
- 법령에 의해 거래가 제한되는 물품, 담배, 수출입금지물품
○ 면세물품 판매 및 송금·환급절차
- 면세판매자가 외국인관광객에게 면세물품을 판매하는 때에는 물품구입자의 신분확인을 한 후 물품판매확인서 등을 교부
- 면세물품의 구입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등을 환급받기 위해서는 출국시 관할세관장에게 판매확인서와 함께 구입물품을 제시하고 확인을 받아야 함
- 판매확인서를 교부받은 외국인관광객은 공항내 환급창구운영사업자를 통하여 세액상당액을 환급받거나 동 확인서를 면세판매자에게 우송하여 송금받을 수 있음

- 1회 거래가액이 100만원 미만, 1인당 구매금액 500만원까지는 면세판매장에서 세액상당액을 차감한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음

(2) 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서 외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국내에서 사업상 다음의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거나 제공받은 때에는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외국사업자에게 환급할 수 있음. 다만, 환급금액이 30만원 이하인 경우는 제외

- 음식·숙박용역, 광고용역
- 전력·통신용역, 부동산임대용역
- 국내사무소용 건물·구축물 및 당해 건물등의 수리용역
- 사무용 기구·비품 및 당해 기구·비품의 임대용역

○ 환급절차 : 상호주의 적용

-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 다음해 6월 30일까지 사업자증명원, 거래내역서, 세금계산서 원본(신용카드매출전표 포함)을 첨부하여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방국세청장에게 환급신청
- 환급신청을 받은 지방국세청장은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12월 31일까지 거래내역을 확인 후 부가가치세를 환급

(3) 외교관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외교관등이 관할세무서장의 지정을 받은 면세점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당해 외교관등에게 연간 200만원을 한도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상호주의 적용)

차. 외국인 관광객의 국내 호텔 숙박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107의2)

*적용기한 : 2025.12.31.까지

○ 외국인관광객 등이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로서 전년 또는 전전연도 대비 숙박요금 인상률이 10% 이하인 호텔에서 30일 이하의 숙박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해당 환급 대상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

카.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107의3)

*적용기한 : 2025.12.31.까지

○ 외국인관광객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의료용역을 등록한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에서 제공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를 환급할 수 있음

○ 외국인관광객의 범위

-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비거주자로서 법인, 국내에 주재하는 외교관, 국내에 주재하는 국제연합군 및 미국군의 장병 및 군무원을 제외

○ 환급대상 의료용역

- 쌍꺼풀, 코성형, 유방확대축소, 지방흡입·주름살제거 등 성형수술
- 색소모반·주근깨·흑색점·기미치료, 여드름치료, 제모술 등 피부시술

○ 의료용역 제공 및 송금·환급절차

- 의료기관은 외국인관광객에게 의료용역을 공급한 때에 의료용역공급확인서를 외국인관광객에게 교부하고 환급창구운영사업자에게도 전송
- 외국인관광객은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3개월 이내에 환급창구운영사업자에게 의료용역공급확인서를 제출
- 환급창구운영사업자는 외국인관광객에게 환급 또는 송금하고 환급송금증명서를 의료기관에 송부

○ 의료기관은 환급송금증명서를 송부받은 때 부가가치세액을 환급창구운영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하며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제받음

타.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108)

*적용기한: 2025.12.3까지

○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개인 등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등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 구입액의 3/103*에 상당하는 금액을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음

* 중고자동차의 경우에는 공제율이 10/110임

○ 대상 사업자

-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정)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를 한 자
-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매매업등록을 한 자
- 한국환경공단
-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자
- 재생재료 수집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

○ 재활용폐자원등의 범위

- 고철, 폐지, 폐유리, 폐합성수지, 폐합성고무, 폐금속캔, 폐건전지, 폐비철금속류, 폐타이어, 폐섬유, 폐유
- 중고자동차(다만 수출되는 중고자동차로서 제작연월일부터 수출신고수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자동차, 간이과세자가 아닌 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매각하는 자동차는 제외)

파. 개별소비세 등 감면 또는 면제(§109-§114)

○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109)

- 감면대상 : 하이브리드 자동차(100만원한도), 전기자동차(300만원한도), 수소자동차(400만원한도)
- 면제기한 : 2024.12.31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반출분에 적용

○ 외교관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110)

○ 군납 석유류,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 또는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면제(§111)

*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는 2025.12.31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는 분에 한하여 적용

○ 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개별소비세의 환급(§111의2)

- 환급대상
 - 승용·승합자동차로서 배기량 1,000시시 미만의 자동차
 - 1세대가 소유한 경형 승용·승합자동차 각각의 합계가 1대인 경우
 -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가 아닌 경우

- 환급금액(연간 30만원한도)
 · 휘발유 또는 경유 : 리터당 250원의 교통·에너지·환경세
 · LPG부탄 : 개별소비세 전액
- 환급기한 : 2026.12.31.까지 구매분에 적용

○ 택시 연료(LPG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면제(§111의3)
- 면제대상 :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 발급자
- 면제기한 : 2026.12.31.까지 구매분에 적용

○ 연안화물선용 경유에 대한 유류세 감면(경유에 부과되는 유류세의 15%)(§111의5)
- 감면대상 : 내항 화물운송사업자가 해당 사업용으로 운항하는 선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한국해운조합에 직접 공급하는 경유(56원/ℓ 감면)
- 감면기한 : 2025.12.31.까지 공급분에 적용

○ 석유제품 생산공정용 원료로 사용하는 중유 개별소비세 면제 (§111의6)

○ 군납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및 주세 면제(§114)
- 면제대상 : 군이 직영하는 매점에서 군인·군무원과 태극·을지무공훈장 수훈자에게 판매하는 주류

하. 주세의 면제(§115)

○ 관광객이용시설업 중 주한외국군인 및 외국인선원 전용의 유흥음식점에서 제공하는 주류

○ 외국인관광객 등이 소규모 주류 제조장 또는 전통주를 제조하는 주류 제조장을 방문하여 구매하는 주류(방문한 주류 제조장에서 제조한 것으로 한정)

○ 군납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및 주세 면제(§114)
- 면제대상 : 군이 직영하는 매점에서 군인·군무원과 태극·을지무공훈장 수훈자에게 판매하는 주류

거. 인지세의 면제(§116)

○ 신협,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및 어촌계, 엽연초조합, 산림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중앙회로부터 융자금액 합계액 1억원 이하의 융자를 받기 위하여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증서<2026.12.31.까지>

○ 어린이예금통장, 신협·새마을금고·농협·수협·엽연초조합·산림조합이 작성하는 당해 조합원의 예금 및 적금증서와 통장<2026.12.31.까지>
○ 농어촌정비사업, 농지은행사업, 농어촌정주생활권사업, 영농·영어규모 확대사업으로 인한 재산권의 설정·이전·변경 등 증명 증서 및 서류 <2026.12.31.까지>
○ 농협으로부터 농촌주택개량자금을 융자받거나 주택건축용 자재를 외상 구입하기 위해 작성하는 서류<2026.12.31.까지>
○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시행되는 농지조성사업 관련 서류<2026.12.31.까지>
○ 중소기업 창업자가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일부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받기 위하여 작성하는 증서, 통장, 계약서 등<2026.12.31.까지>
○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가 작성하는 서류<2024.12.31.까지>

너. 증권거래세의 면제(§117)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창업기획자 또는 벤처투자조합이 창업기업 또는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2025.12.31.까지>
○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자에게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2025.12.31.까지>
○ 농식품투자조합이 창업기업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경우<2025.12.31.까지>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창업기획자 또는 벤처·신기술사업·농식품 투자조합이 코넥스상장기업(상장 후 2년 이내의 중소기업에 한정한다)에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2025.12.31.까지>
○ 주식·파생상품 시장조성자가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2025.12.31.까지>
○ 창업·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창업기업, 벤처기업 또는 코넥스상장기업(상장 후 2년 이내의 중소기업에 한정한다)에 직접 또는 투자목적회사를 통해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2025.12.31.까지>

○ 우정사업본부와 연기금이 장내파생상품과 해당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인 주권의 가격 차이를 이용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파생상품의 거래와 연계하여 기초자산인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연기금의 경우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권으로 한정)<2026.12.31.까지>

○ 부실금융기관 또는 부실농협조합, 부실수협조합 및 부실산림조합이 보유하고 있던 주권 또는 지분을 적기시정조치 또는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양도하거나, 적기시정조치 또는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부실금융기관 또는 부실 농·수협·산림조합으로부터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받은 금융기관 또는 농·수협·산림조합 및 중앙회가 다시 이를 양도하는 경우

○ 정리금융회사·한국자산관리공사가 부실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인수한 부실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하거나 직접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 「법인세법」 제47조의2에 따른 신설법인의 설립, 같은 법 제44조제2항 각 호 또는 제3항에 따른 합병, 같은 법 제46조제2항 각 호 또는 같은 법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 이 법 제38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을 위하여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 금융기관등의 주주 및 금융지주회사가 제38조의2에 따라 주식을 이전하거나 주식을 교환하는 경우<2026.12.31.까지>

○ 농협·수협·산림조합에 의해 설립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과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가 부실농협·수협·산림조합의 정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실조합으로부터 인수한 부실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하거나 직접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4조제1항의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추종지수의 구성종목이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증권시장 또는 다자간매매체결거래를 통하여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 농협금융지주회사가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현물 출자 받은 주권 또는 지분을 농협은행 등 농협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에게 양도하는 경우

○ 기업재무안정 PEF가 재무구조개선기업에 직접 또는 투자목적회사를 통하여 투자·출자하여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2026.12.31.까지>

○ 내국법인의 재배주주 등이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0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여 양도하는 주권 또는 지분 <2026.12.31.까지>

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관세감면(§118의2)

* 적용기한 : 2024.12.31.

○ 지원대상 : 해외기업과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복귀 기업으로 수도권 밖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

○ 지원내용 :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자본재 또는 국내복귀기업 확인 후 2024년 12월 31일까지 수입되는 자본재에 대하여 관세를 100%(해외사업장 철수방식) 또는 50%(해외사업장 유지방식) 감면

13. 외국인투자 등에 대한 조세특례(제5장)

가.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121의2, §121의3)

(1) 신성장동력산업에 속하는 사업 등

○ 지원요건

- 국내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국제경쟁력강화에 긴요한 신성장동력산업에 속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 지원기간

- 취득세·등록세·재산세 : 5년 100%, 2년 50%
-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관세 : 수입자본재 5년 100%

(2) 외국인투자지역

○ 지원요건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

- 제조업, 시스템 통합 및 자료처리 등 관련 서비스업 : 외국인투자 3천만불 이상
- 관광업 : 외국인투자 2천만불 이상
- 물류업 : 외국인투자 1천만불 이상
- 연구시설 : 외국인투자 2백만불 이상이고 석사이상 연구원 10인 이상
- SOC사업 : 외국인투자 1천만불 이상
- 2이상의 외국인투자가의 투자금액 합계액이 3천만불 이상으로서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받는 경우, 동 외투지역내 제조·관광·물류업 및 연구시설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 제조업 : 외국인투자 1천만불 이상
- 물류업 : 외국인투자 5백만불 이상

○ 지원기간

- 취득세·등록세·재산세 : 5년 100%, 2년 50% (단지형 3년 100%, 2년 50%)
-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관세 : 수입자본재 5년 100%

(3) 경제자유지역, 자유무역지역, 새만금지역

○ 지원요건

- 제조업 : 외국인투자 1천만불 이상
- 관광업 : 외국인투자 1천만불 이상
- 사업서비스업 : 외국인투자 1천만불 이상
- 물류업 : 외국인투자 5백만불 이상
- 의료기관 : 외국인투자 5백만불 이상
- 연구시설 : 외국인투자 1백만불 이상이고 석사이상 연구원 10인 이상 (신성장동력산업에 속하는 사업을 위한 연구시설에 한정)

※ 자유무역지역 ⇒ 제조업・물류업

○ 지원기간

- 취득세・등록세・재산세 : 3년 100%, 2년 50%
- 관세 : 수입자본재 5년 100%

나. 증자의 조세감면(§121의4)

○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은 법인세 등의 감면 기준을 준용

다. 조세의 추징(§121의5)

○ 관세・개별소비세・부가가치세의 추징 : 등록말소, 출자목적물의 신고목적외 사용 또는 처분, 주식의 내국인에 대한 양도, 폐업의 경우, 5년 이내에 출자목적물의 납입이 감면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 취득세・등록세・재산세의 추징 : 주식의 내국인에 대한 양도, 등록말소, 폐업의 경우, 5년 이내에 출자목적물의 납입이 감면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라. 권한의 위임 등(§121의7)

○ 기획재정부장관은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신청・감면내용 변경신청 또는 사전확인신청의 접수 및 그 감면, 감면내용변경 또는 감면대상 해당 여부 결정을 위한 협의절차에 관한 권한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및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위탁가능

14. 제주국제자유도시 육성을 위한 조세특례 등 (제5장의2~제5장의 10)

가.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지원(§121의8)

* 적용기한 : 2025.12.31.

○ 감면대상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에 입주하여 감면대상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 감면내용

- 소득세·법인세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

○ 감면대상사업

- 생명공학육성법에 의한 생명공학산업(종자 및 묘목생산업, 수산물 부화 및 수산종자생산업 포함)
- 정보통신산업,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산업
- 산업발전법에 의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산업

○ 한 도 : 지역특구內 기업에 대한 총세제지원 한도 설정(①+②)

① 투자누계액의 50%

②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1천5백만원(청년 등 상시근로자와 서비스업은 2천만원)

나. 제주도내 투자진흥지구등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지원(§121의9)

* 적용기한 : 2025.12.31. (자유무역지역은 2021. 12.31 적용종료)

○ 감면대상

- 제주도내 투자진흥지구 및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여 감면대상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 제주도내 투자진흥지구의 개발사업시행자의 개발사업(총사업비 1천억원이상)

○ 감면내용

- 소득세·법인세 3년간 100%, 2년간 50%(사업시행자는 3년간 50%, 2년간 25%) 감면
- 지방세는 사업용재산의 취득·보유에 대해 취득세 면제, 재산세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

○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의 감면대상사업 : 투자금액 미화 2천만불이상
-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종합휴양업(골프장 제외), 국제회의시설업, 관광식당업
- 한국전통호텔업, 전문휴양업(골프장 제외), 관광유람선업, 관광공연장업, 종합유원시설업, 마리나업

○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의 감면대상사업 : 투자금액 미화 5백만불이상
- 문화산업, 청소년수련시설운영업, 대체에너지이용 전기생산업 등

○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의 감면대상사업
- 제조업 : 총사업비 1천만불 이상, 상시고용 100명 이상
- 지식서비스산업 : 총사업비 5백만불 이상

○ 한 도 : 지역특구內 기업에 대한 총세제지원 한도 설정(①+②)
① 투자누계액의 50%
②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1천5백만원(청년 등 상시근로자와 서비스업은 2천만원)

다. 투자진흥지구 및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징(§121의12)

○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해제, 제주자유무역지역의 입주허가 취소 또는 투자진흥지구 등 입주기업의 폐업시 지정해제일, 입주취소일 또는 폐업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추징

라. 제주도 여행객 면세점에 대한 간접세 등의 특례(§121의13)

○ 제주도 여행객이 지정면세점에서 면세물품 구입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관세 등 면제(부가가치세는 영세율 적용)

○ 관광객의 면세물품 구입한도 : 1인당 1회에 $800 이하, 연6회 구입 허용
- 별도 면세 : 성인이 반입하는 주류 2병(2리터 이하로서 $400 이하인 것) 및 담배 1보루

○ 사업자가 면세물품을 지정면세점에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및 담배소비세 면제(부가가치세는 영세율 적용)

마. 입국경로에 설치된 보세판매장 등의 물품에 대한 간접세의 특례(§121의14)

○ 입국장에서 면세물품을 인도하는 출국장면세점(「관세법」 제196조제1항

제1호 단서) 및 입국장면세점(「관세법」 제196조제2항)에서 면세물품 판매 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및 주세 면제

○ 사업자가 내국물품을 입국장에서 면세물품을 인도하는 출국장면세점 및 입국장면세점에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및 주세 면제

바.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121의17)

* 적용기한 : 2025.12.31.

○ 감면대상

- 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역활성화 지역 여수해양박람회특구 창업·신설기업, 새만금사업시행자
- 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역활성화지역의 개발사업시행자(총개발사업비 500억원 이상)

○ 감면내용

- 창업·사업장 신설 기업 : 소득세·법인세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
- 개발사업시행자 : 소득세·법인세 3년간 50%, 2년간 25% 감면

○ 감면대상사업

- 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 + 상시근로자 30명 이상 고용을 요하는 업종 : 제조업, 엔지니어링사업, 전기통신업, 정보서비스업 등
- 투자금액이 10억원 이상 + 상시근로자 15명 이상 고용을 요하는 업종 : 복합물류터미널사업, 공동집배송센터 운영사업, 항만배후단지 물류산업 등
- 투자금액이 5억원 이상 + 상시근로자 10명 이상 고용을 요하는 업종 : 연구개발업

○ 감면세액의 계산

- 창업·사업장 신설기업 : 3년 100%, 2년 50%
- 개발사업시행자 : 3년 50%, 2년 25%

○ 한 도 : 지역특구內 기업에 대한 총세제지원 한도 설정(①+②)

① 투자누계액의 50%

②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1천5백만원(청년 등 상시근로자와 서비스업은 2천만원)

사.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121의20)

* 적용기한 : 2025.12.31.

○ 감면대상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 감면내용
- 소득세·법인세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

○ 감면대상사업
- 출판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배급업, 방송업, 정보서비스업, 광고업, 전문디자인업 등(투자금액이 5억원 이상),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사업 등(투자금액이 30억원 이상)

○ 한 도 : 지역특구內 기업에 대한 총세제지원 한도 설정(①+②)
① 투자누계액의 50%
②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1천5백만원(청년 등 상시근로자와 서비스업은 2천만원)

아. 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등(§121의21)

* 적용기한 : 2025.12.31.

○ 감면대상
- 금융중심지(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금융중심지는 제외한다)에 2023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여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경우(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이고 상시고용인이 10명 이상)

○ 감면내용
- 금융중심지 구역 안 사업장의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사업개시일 이후 해당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 세액 감면, 그 다음 2년 50% 감면

○ 한 도 : 지역특구內 기업에 대한 총세제지원 한도 설정(①+②)
① 투자누계액의 50%
②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1천5백만원(청년 등 상시근로자와 서비스업은 2천만원)

자. 첨단의료복합단지 및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121의22)

* 적용기한 : 2025.12.31.

○ 감면대상
- 첨단의료복합단지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입주하여 보건의료기술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기업
- 국가식품클러스터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입주하여 식품산업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기업

○ 감면내용
- 소득세·법인세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

○ 한 도 : 지역특구內 기업에 대한 총세제지원 한도 설정(①+②)
① 투자누계액의 50%
②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1천5백만원(청년 등 상시근로자와 서비스업은 2천만원)

차. 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121의26)

* 적용기한 : 2026.12.31.

○ 지원내용
- 내국법인이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차익 중 채무상환액 또는 투자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와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개 사업연도의 기간 중 익금불산입하고 그 다음 3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산입

○ 사후관리
-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채무를 상환하지 않거나 투자하지 않은 경우
- 자산을 양도한 내국법인의 부채비율이 자산 양도 후 3년(공동사업재편의 경우 1년) 이내의 기간 중 기준부채비율보다 증가하게 된 경우
- 투자로 취득한 자산을 취득 후 4년 이내의 기간 중에 처분한 경우
- 해당 자산을 양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산한 경우로서 합병법인, 분할로 인하여 신설되는 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 해당 사업을 승계한 경우가 아닌 경우
-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

카. 채무의 인수·변제에 대한 과세특례(§121의27)

○ 지원내용

- 내국법인의 주주·출자자(법인인 경우에 한정)가 해당 법인의 채무를 인수·변제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채무금액 중 해당 주주등이 인수·변제한 금액은 해당 연도 주주등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산입하고, 채무가 감소한 내국법인은 채무가 감소한 해당 사업연도와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개 사업연도의 기간 중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3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

○ 적용요건

-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해당 내국법인의 지배주주·출자자 및 그 특수관계자의 소유주식·출자지분을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전부 양도할 것

○ 사후관리

- 채무가 감소한 내국법인이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하지 않은 금액을 익금에 산입

1. 양도등대상법인의 부채비율이 채무 인수·변제 후 3년 이내의 기간 중 기준부채비율보다 증가
2. 채무를 인수·변제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산한 경우로서 합병법인, 분할로 신설되는 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 해당 사업을 승계한 경우가 아닌 경우
3.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지배주주등의 소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전부 양도하지 아니한 경우
4.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

타.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121의28)

* 적용기한 : 2026.12.31.

○ 지원내용

- 내국법인이 주주·출자자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4년거치 3년분할 익금산입

○ 적용요건

-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주주등의 자산증여 및 법인의 채무상환이 이루어질 것
- 사업재편계획에는 일정기한까지 양도대금을 특정 금융기관에 대한 부채의 상환에 전액 사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것

○ 손금산입

- 자산을 증여한 주주등(법인인 경우에 한정)의 경우 증여한 자산의 장부가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 산입

파.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121의29)

* 적용기한 : 2026.12.31.

○ 적용대상 : 내국법인이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의 일부를 면제받은 경우 채무면제익을 4년거치 3년분할 익금산입

○ 지원내용

- 대상법인 : 금융기관으로부터 면제받은 채무면제익(이월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사업연도와 그 다음 3년간 익금산입하지 않고 그 다음 3개 사업 연도에 균등액이상 익금산입
 * 사업 폐지·해산 또는 사업재편계획 승인 취소 시 :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을 익금산입
- 금융기관 : 면제한 채무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대손상각비)

하. 기업 간 주식 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121의30)

* 적용기한 : 2026.12.31.

○ 구조조정 기업의 지배주주가 주식교환으로 취득한 주식에 대해 처분시까지 양도차익 과세이연

○ (지원요건)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의 보유주식을 전부 양도하고 다른 법인의 주식을 양수

ⅰ) 교환양수법인이 이미 보유하거나 새롭게 발행한 주식을 양수하는 경우

ⅱ) 교환양수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 등의 전부를 양수하는 방법

* ⅰ), ⅱ) 중 하나만 해당

○ (사후관리) 다음의 경우 주주에게 '과세이연된 세액+이자상당가산액' 부과

- 주식양도후 5년이내에 기업집단내 주식 양도한 법인과 동일업종 법인이 생기는 경우
- 주식양도후 5년이내에 주주가 양도한 법인의 주식을 재취득 하는 경우
-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

거.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121의31)

* 적용기한 : 2026.12.31.

○ 지원내용

- 내국법인이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합병(분할합병 포함)함에 따라 중복자산이 발생한 경우로서 합병법인이 1년 이내에 중복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양도차익에 대해 4년 거치 3년간 균등 익금산입

15. 기회발전특구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5장의11)

가. 기회발전특구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121의33)

* 적용기한 : 2026.12.31.

○ 감면대상

- 기회발전특구에 2026년 12월 31일까지 제조업 등 감면대상사업으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된 기간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로 한정)하는 경우

○ 감면내용

- 기회발전특구 안 사업장의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사업개시일 이후 해당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 세액 감면, 그 다음 2년 50% 감면

○ 한 도 : 지역특구內 기업에 대한 총세제지원 한도 설정(①+②)

① 투자누계액의 50%

②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1천5백만원(청년 등 상시근로자와 서비스업은 2천만원)

나.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과세특례(§121의34)

* 적용기한 : 2026.12.31.

○ 지원대상

- 수도권에서 3년(중소기업은 2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한 내국인이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기 위하여 수도권에 있는 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 지원내용

- 내국법인이 양도차익상당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해당 금액은 기회발전특구에 있는 사업용 부동산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

- 거주자가 양도차익상당액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양도일이 속하는 해당 연도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로 보지 아니하고, 해당 세액은 신규사업용부동산 처분일이 속하는 해당 연도에 납부

다. 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121의35)

* 적용기한 : 2026.12.31.

○ 지원내용

- 거주자가 전용계좌에 가입하고 집합투자기구 등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은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하고 종합소득과세표준 및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함

16. 과세표준양성화를 위한 조세특례(제6장 제1절)

가.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122의3)

* 적용기한 : 2026.12.31.

○ 성실사업자(사업소득이 있는 자에 한한다)가 신용카드가맹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맹, 장부를 비치·기장, 사업용계좌를 개설 및 신고, 직전 3개 과세기간의 연평균수입금액의 50%를 초과하여 신고,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2년 이상 사업영위 등의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와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는 교육비 및 의료비 지출액의 100분의 15를 소득세에서 공제

○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7천만원 이하인 성실사업자 또는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가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한 금액의 100분의 15(종합소득금액이 4천500만원 이하인 성실사업자 또는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의 경우 100분의 17)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 공제

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126의2)

* 적용기한 : 2025.12.31.

○ 근로자의 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사용금액의 일정비율을 소득공제

○ 공제율 :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직불형카드 등 30%
도서·공연 등 30%(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적용)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 40%
'24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증가분 10%

○ 다음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

<table>
<tr><th colspan="2">공제한도 \ 총급여</th><th>7천만원 이하</th><th>7천만원 초과</th></tr>
<tr><td colspan="2">기본공제 한도</td><td>300</td><td>250</td></tr>
<tr><td rowspan="4">추가공제 한도</td><td>전통시장</td><td rowspan="3">300</td><td rowspan="2">200</td></tr>
<tr><td>대중교통</td></tr>
<tr><td>도서공연 등</td><td>-</td></tr>
<tr><td>'24년 증가분</td><td colspan="2">100</td></tr>
</table>

다.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126의3)

○ 특례내용

- 현금영수증 결제를 승인하고 전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사업자로서 국세청장으로부터 현금영수증사업의 승인을 얻은 현금영수증사업자는 신용카드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설치한 사업자(현금영수증가맹점)의 현금영수증 결제건수 및 「소득세법」 제164조제3항 후단에 따른 방법으로 제출하는 지급명세서의 건수에 따라 일정 금액을 당해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받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하여 받을 수 있음
- 현금영수증가맹점이 현금영수증(거래건별 5천원 미만의 거래에 한하며, 발급승인시 전화망을 사용한 것을 말한다)을 발급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별 현금영수증 발급건수에 20원을 곱한 금액을 소득세 산출세액을 한도로 공제

○ 기타 사항

-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금액 등 결제내역이 기재된 영수증을 말하며 현금영수증가맹점은 “1”원 이상의 거래금액에 대하여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함
-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제금액 : 국세청장이 건당 12원을 기준으로 100분의 30을 가감하여 정한 금액*

 * 종이발급이 있는 현금영수증 9.4원(2019년 6월 30일 이전 발급분까지는 12.5원), 종이발급이 없는 현금영수증 8.4원(2019년 6월 30일 이전 발급분까지는 11.5원)

- 현금영수증사업자는 거래일시, 금액, 거래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의 인적사항 등 현금결제와 관련한 세부내역을 국세청장에게 전송

라.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 (§126의7)

(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지금의 공급

1) 면세되는 금지금의 범위

금괴(덩어리)·골드바 등 원재료 상태로서 순도가 1만분의 9999 이상인 금

2) 부가가치세 면제 요건

① 금지금공급사업자가 금지금 보관기관에 금지금을 임치한 후 금 현물시장에서 매매거래를 통하여 최초로 공급하는 금지금

② 최초 공급된 후 금 현물시장에서 매매거래되는 금지금

3) 금지금공급사업자의 범위

금지금을 공급하거나 수입하려는 사업자로서 한국거래소의 약관으로 정하는 자

4) 보관기관의 범위

금지금의 보관·인출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한국거래소의 약관으로 정하는 자

5) 금 현물시장의 범위

보관기관에 임치된 금지금을 매매거래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시장

(2) 매입세액공제

○ 금지금공급사업자가 금지금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금지금에 대하여 금지금공급사업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

(3) 세금계산서 발급 및 결제

1) 금지금 임치 후 최초 공급시

○ 금지금공급사업자는 금 현물시장에서 매매거래 후 결제가 완료되는 때에 보관기관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공급가액은 결제가 완료된 매매가액으로 하고, 부가가치세액은 영(零)으로 함

○ 금지금공급사업자는 1역월(歷月)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

○ 보관기관은 금거래계좌를 사용하여 부가가치세액을 제외하고 금 관련 제품의 금액만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금지금의 가액을 결제

2)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시

○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해서는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음

(4) 보관기관으로부터 금지금 인출시 부가가치세 과세

1) 부가가치세 과세

○ 보관기관에 임치된 금지금을 금 현물시장에서 매매거래를 통하여 공급받아 보관기관으로부터 인출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

○ 보관기관은 금지금을 인출하는 자에게 부가가치세액을 거래징수하여 납부

2) 공급가액

○ 「소득세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5호에 따른 이동평균법을 준용하여 산출한 평균단가에 인출하는 금지금의 수량을 곱한 금액

3) 공급시기

○ 보관기관에 금지금의 인출을 신청하는 때

○ 금 현물시장에서 금지금중개회원이 위탁자의 요구에 따라 금지금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위탁자가 금지금중개회원에게 금지금의 인출을 요구하는 때

4) 금거래계좌 납부

○ 보관기관으로부터 금지금 인출시 보관기관은 직접 금지금을 인출하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액을 거래징수하여 납부

○ 금지금중개회원이 위탁자의 요구에 따라 금지금 인출시 금지금중개회원이 위탁자로부터 받은 부가가치세액을 보관기관이 거래징수하여 납부하며, 금지금중개회원은 공급받는 자의 인적 사항, 금지금의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등 세금계산서 발급에 필요한 자료를 보관기관에 제공

○ 금지금을 인출하는 자가 금사업자인 경우에는 금거래계좌를 사용하여 금지금의 금액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액만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납부

(5) 지정사업자의 환급

○ 국세청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은 매입자가 입금한 부가가치세액의 범위에서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액을 금지금공급사업자에게 환급

① 금지금공급사업자가 공제받는 매입세액으로서 금거래계좌를 사용하여 입금한 부가가치세액

② 금지금공급사업자가 공제받는 매입세액으로서 금지금을 수입할 때 세관에 납부한 부가가치세액

(6) 금지금사업자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 금지금사업자가 금 현물시장에서 금지금 매매거래를 통하여 2019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거나 금지금을 보관기관에서 2019년 12월 31일까지 인출하는 경우 해당 공급가액 및 매수금액(금 현물시장 이용금액)에 대해서는 다음 중에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급일 또는 매수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① 금 현물시장 이용금액이 직전 과세연도의 금 현물시장 이용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이용금액 초과분)이 해당 과세연도의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종합소득산출세액 또는 법인세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

- 다만, 직전 과세연도 금 현물시장 이용금액이 없는 경우로서 금 현물시장을 최초로 이용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의 금 현물시장 이용금액을 이용금액 초과분으로 봄

② 해당 과세연도 금 현물시장 이용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종합소득산출세액 또는 법인세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

(7) 금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관세 면제

○ 금지금공급사업자가 금 현물시장에서 매매거래를 하기 위하여 2023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금지금에 대하여는 관세를 면제

17. 조세특례의 제한 등(제6장 제2절)

가. 중복적용 배제(§127)

(1) 국가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출연금 등으로 투자한 금액은 투자세액공제 적용시 배제

- 상생협력을 위한 수탁기업에 설치하는 검사대 또는 연구시설에 대한 세액공제, 통합투자세액공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해외자원개발투자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으로부터 보조금 또는 저리융자 등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받은 보조금 상당액 또는 이자지원금 상당액을 관련자산의 투자금액 또는 취득금액에서 차감

(2) 동일한 사업용 자산에 대한 투자세액공제간 중복적용 배제

- 상생협력을 위한 수탁기업에 설치하는 검사대 또는 연구시설에 대한 세액공제, 통합투자세액공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3) 세액감면과 투자세액공제간 중복적용 배제

- 외국인 투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또는 제121조의4에 의하여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 상기 (2) 및 중소기업의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제3자 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의 투자세액공제는 내국인지분율에 해당하는 투자금액만 세액공제
-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 세액감면, 중소기업간 통합시 잔존감면기간 세액감면, 법인전환에 대한 이월과세, 공공기관이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농공단지등 입주기업 세액감면, 영농·영어조합법인 세액감면, 농업회사법인 세액감면,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법인세 등의 감면,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제주투자진흥지구·제주자유무역지역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아시아문화중심도지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기회발전특구

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 연구개발 특구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등 감면, 통합투자세액공제,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중소기업 사회보험료세액공제, 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기업의 운동경기부 설치·운영에 대한 과세특례,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금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배제

(4) 동일사업장 및 동일과세연도에 세액감면규정간 중복적용 배제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중소기업간 통합시 잔존감면기간 세액감면, 법인전환시 잔존감면기간 세액감면, 공공기관이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농공단지 등 입주기업 세액감면,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법인세 등의 감면,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제주투자진흥지구·제주자유무역지역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아시아문화중심도지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기회발전특구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외국인투자 세액감면,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한 증자의 조세감면간 중복적용 배제

(5) 창업중소기업 등의 지방세 감면 규정간 중복적용 배제

- 창업중소기업 등의 취득세 면제, 창업중소기업 등의 재산세 50%감면,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방세감면간 중복적용 배제

(6) 양도소득세 중복적용 배제

- 2이상의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받는 경우 하나만 선택 적용
- 토지등 일부에 대하여 특정감면규정을 적용받는 경우 잔여부분은 다른 감면규정 적용 가능

(7) 동일고용에 대한 세액공제간 중복적용 배제

-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와 근로소득 증대 세액공제 간 중복적용 배제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 청년고용 증대 세액공제,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간 중복적용 배제
- 통합고용세액공제와 고용 증대 세액공제,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간 중복적용 배제

나. 추계과세 등의 경우 감면배제(§128)

(1) 추계과세시 감면이 배제되는 감면제도

○ 기업의 어음제도개선 세액공제,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특허권 등 기술취득 세액공제,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통합투자세액공제,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 병역 이행후 복직시 세액공제,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중소기업 세액공제,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통합고용세액공제, 고용유지 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중소기업의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제3자 물류비용세액공제,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대학맞춤형 교육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 등

- 다만, 거주자는 투자 증빙서류 제출시 통합투자세액공제는 추계과세시에도 감면 가능

(2) 결정(무신고), 경정(과소신고)·기한후 신고 및 세무조사 통지후 수정신고시 감면배제

○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특허권등 기술이전·대여소득 세액감면, 연구개발특구 첨단기술기업 법인세 등 감면,

중소기업 통합에 대한 잔존감면기간 세액감면, 법인전환에 대한 잔존감면기간 세액감면,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농공단지입주기업 세액감면, 영농조합법인·영어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사회적 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법인세 등의 감면, 상가건물 장기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제주국제자유도시 입주기업 세액감면, 기업도시 입주기업 감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입주기업 감면, 공공기관이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등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 기회발전특구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다.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제한(§129의2)

○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비과세종합저축, 우리사주조합원 과세특례, 조합 등 예탁금·출자금,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장병내일준비적금,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일 또는 연장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대해 적용 배제

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130)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투자시 세액공제 배제(1990.1.1. 기준으로 중소기업과 중소기업이 아닌 자로 구분하여 적용)

구분	1990. 1. 1. 이후 사업개시		1989. 12. 31. 이전 사업개시	
	증설투자	대체투자	증설투자	대체투자
일반기업	배제	배제	배제	허용
중소기업	배제	허용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의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내 증설투자는 허용

○ 세액공제 배제대상

-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자산, 다만, 디지털 방송장비, 전기통신설비 중 교환설비·전송설비·선로설비·정보처리설비, 연구시험시설, 직업훈련시설, 에너지절약시설, 환경보전시설, 근로자복지증진시설, 안전시설, 에너지절약시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한 시설을 제조하는 시설, 의약품품질관리개선시설에 대한 투자는 세액공제 허용

마. 최저한세 미달분 감면배제(§132)

○ 법인에 대한 최저한세

- (최저한세- 감면후세액)의 감면 배제
- 최저한 세율 : 일반기업 : 100억원 이하 10%, 100억원 초과~1천억원 이하 12%, 1천억원 초과 17%. 단, 중소기업 유예기간 이후 1~3년차 8%, 4~5년차 9% 적용
 중소기업(사회적기업) : 7%

○ 개인에 대한 최저한세

- (최저한세- 감면후세액)의 감면 배제
- 최저한 세율 : 감면전 산출세액의 35%(산출세액 3천만원 초과분 45%)

바. 중과세를 통한 규제제도

○ 기업업무추진비 규제(§136)

- 정부출자기관, 동 기관등이 최대주주인 출자법인에 대하여는 일반법인의 70%로 축소
- 내국인이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통시장에서 기업업무추진비를 지출하는 경우 기존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의 10% 범위 내에서 추가 손비 인정

○ 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중과세(§138)

- 차입금 과다법인으로서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내국영리법인에 대하여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익금을 익금에 산입

18. 보칙(제7장)

가. 조세감면의 사전·사후관리(§142)

○ 기획재정부 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조세특례 및 그 제한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중앙행정기관장에게 통보

○ 중앙행정기관장은 매년 4월 30일까지 조세감면에 관한 건의 및 평가의견 제출

○ 일정규모 이상인 신규건의 및 일몰도래 조세특례사항에 대해 예비타당성평가 및 심층평가 의무화(전문적인 조사·연구기관이 수행)

나. 구분경리(§143)

○ 세액감면을 받는 경우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구분경리

○ 소비성서비스업과 기타사업을 겸영시 구분경리

다. 세액공제의 이월공제(§144)

○ 세액공제는 당해연도 납부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 적용으로 감면이 배제된 경우 10년간 이월공제

※ 당해연도 공제액과 이월공제액이 중복되는 경우 이월공제액을 우선공제하고 이월공제금액간 중복시는 선입선출법으로 공제

라. 감면세액의 추징(§146)

○ 다음의 경우는 감면세액과 이자가산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자진 납부

- 투자세액공제를 받은 자산을 투자완료일부터 2년 이내 처분하거나 임대하는 경우(현물출자·합병·분할, 분할합병, 자산교환, 통합·사업전환·사업승계, 내용연수 경과 제외)

마. 이자·배당소득 비과세·감면세액의 추징(§146의2)

○ 이자소득,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사회기반시설채권, 영농조합법인·영어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배당소득 특례, 주택청약종합저축,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선박투자회사의 주주,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등

집합투자증권,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비과세종합저축, 우리사주조합원, 조합 등 예탁금·출자금, 세금우대종합저축,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등의 주식, 재외동포전용 투자신탁, 재형저축,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기구,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장병내일준비적금, 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 개인투자용국채, 기회발전특구펀드)의 과세특례 적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을 즉시 추징하여 추징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

-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추징할 세액을 미납부하거나 과소납부 시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납부

Ⅳ. 기타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제도 / 495
2. 글로벌최저한세 제도 / 517
3. 국세징수제도 / 525
4. 조세범 처벌제도 / 531
5.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제도 / 539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제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1. 목 적 / 497
2. 이전가격세제 / 498
3. 과소자본과세제도 등/ 505
4.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합산과세제도 / 507
5. 국외투과단체에 귀속되는 소득에 관한 과세특례 / 509
6. 국외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510
7. 국가 간 조세협력 / 510
8. 상호합의절차 / 511
9.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 512
10. 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 제출 / 514

작성자 : 국제조세제도과장 박경찬

1. 목 적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은 국제거래에 관한 조세의 조정과 국가 간의 조세행정 협조, 해외자산의 신고 및 자료 제출과 글로벌최저한세의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 간의 이중과세 및 조세 회피를 방지하고 원활한 조세 협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규정체계>

제1장 : 총칙

제2장 : 국제거래에 관한 조세의 조정

제1절 :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과세조정(이전가격세제)

제2절 : 국외지배주주 등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과세조정(과소자본세제 등)

제3절 :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합산과세

제3절의2 : 국외투과단체에 귀속되는 소득에 관한 과세 특례

제4절 : 국외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3장 : 국가 간 조세 행정 협조

제1절 : 국가 간 조세협력

제2절 : 상호합의절차

제4장 : 해외자산의 신고 및 자료 제출

제1절 :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제2절 : 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 제출

제5장 : 글로벌최저한세의 과세 (Ⅳ-2 참고)

제1절 : 통칙

제2절 : 추가세액의 계산

제3절 : 추가세액의 과세

제4절 : 특례

제5절 : 신고 및 납부 등

제6장 : 벌칙

2. 이전가격세제

가. 개요

이전가격세제란 기업이 국외 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에 있어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높거나, 낮은 경우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기업의 과세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 조세를 부과하는 제도

< 국외 특수관계인의 범위 >

국외 특수관계인이란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특수관계에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제외)을 말함

특수관계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를 말함

① 거래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다른 쪽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을 포함. 이하 동일)의 50퍼센트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거래 당사자 간의 관계

② 제3자와 그 친족 등이 거래 당사자 양쪽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퍼센트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거래 당사자 간의 관계

③ 거래 당사자 간에 자본의 출자관계, 재화·용역의 거래관계, 금전의 대차관계 등에 따라 소득을 조정할 만한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거래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다른 쪽의 사업 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거래 당사자 간의 관계

④ 거래 당사자 간에 자본의 출자관계, 재화·용역의 거래관계, 금전의 대차관계 등에 따라 소득을 조정할 만한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제3자가 거래 당사자 양쪽의 사업 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거래 당사자 간의 관계

< 정상가격 >

정상가격이란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이 국외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거래에서 적용하거나 적용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말한다.

※ (정상가격 산출시 독립기업원칙)

❶ 과세당국은 거래 당사자의 상업적·재무적 관계, 거래조건 등을 고려하여 실제거래를 파악 (거래조건, 거래당사자가 수행한 기능, 재화·용역의 종류·특성, 경제여건, 사업전략 등 고려)

❷ 해당 국제거래의 상업적 합리성이 현저히 결여된 경우 거래 부인 또는 재구성 후 정상가격 산출 (상업적 합리성 : 독립기업간 합의 가능성, 대안적 거래방식의 존재, 조세회피 목적 등 고려)

나. 정상가격 결정방법

①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comparable uncontrolled price method)

-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와 유사한 거래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간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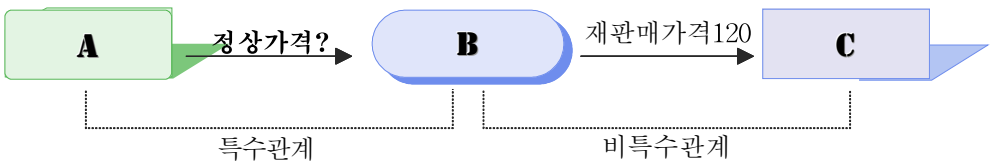
※ (원유, 농산물, 광물 등 물품에 대해 공개시장 거래가격을 바탕으로 정상가격 산출시 고려사항)

❶ 해당 국제거래와 공개시장 거래 간 거래조건(물품의 물리적 특성, 품질, 거래량, 거래시기, 운송조건 등) 차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함

❷ 가격결정시점(해당 물품거래에서 가격 산출의 기준이 되는 시점)은 납세자가 신뢰할 만한 자료 제출시 인정. 단,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다른 증거가 있는 경우 해당 증거를 바탕으로 가격결정일 추정

② 재판매가격방법(resale price metho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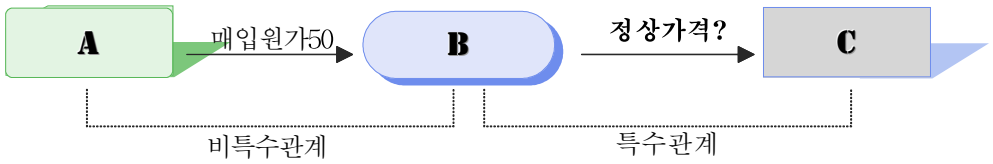
-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거래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인 구매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 대한 판매자가 되는 경우 그 판매가격에서 그 구매자가 판매자로서 얻는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뺀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 특수관계 없는자로부터 매입가격(100), 특수관계 없는자에게 매출가격(200원)에 근거한 매출총이익율(100/200)을 고려하여 정상가격 산정 : 120(재판매가격) − 120 × 0.5 = 60

③ 원가가산방법(cost plus method)

-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거래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자산을 제조·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자산의 제조·판매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발생한 원가에 자산 판매자나 용역 제공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더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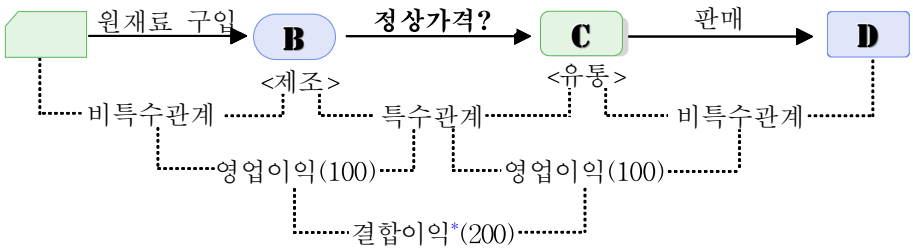
※ 특수관계 없는자로부터 매입원가(100), 특수관계 없는자에게 공급가격(200원)에 근거한 원가가산율(100/100)을 고려하여 정상가격 산정 : 50(매출원가) + 50×1 = 100

④ 거래순이익율방법(transactional net margin method)

-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와 유사한 거래 중 거주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에서 실현된 통상의 거래순이익률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⑤ 이익분할방법(profit split method)

-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거래 당사자 양쪽이 함께 실현한 거래순이익을 합리적인 배부기준에 따라 측정된 거래당사자들 간의 상대적 공헌도에 따라 배부하고, 이와 같이 배부된 이익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 합리적인 배부기준에 따라 상대적 공헌도에 따라 배부

⑥ 그 밖에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다.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및 소득처분 등

□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 과세당국은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 가능

○ 제3자 개입거래에 대한 과세조정 적용

- 거주자가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이전가격과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제3자를 개입시켜 거래 외관이 마치 독립된 제3자간 거래인 것처럼 위장하는 경우에도 정상가격 기준으로 과세조정

○ 상계거래의 인정

-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 있어서 어느 한 거래가격이 정상가격과 다르더라도 동일한 국외특수관계인과의 다른 거래에 있어서 그 차액이 상계된다고 거주자가 입증하는 경우, 상계되는 모든 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을 할 수 있음

○ 체약상대국이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조정하고, 이에 대한 상호합의절차가 종결된 경우에는 과세당국은 그 합의에 따라 거주자의 각 과세연도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정하여 계산할 수 있음

□ 소득처분 및 세무조정

○ 이전소득금액의 반환 확인 전까지는 임시유보로 처분하고 이후에 반환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분 및 조정

①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인의 주주인 경우 : 내국법인의 소득조정결과 익금산입되는 금액은 국외특수관계인에 대한 출자의 증가(자본금 증가)로 세무조정

② 국외특수관계인이 내국법인의 주주인 경우 : 내국법인의 소득조정 결과 익금산입되는 금액은 국외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되는 배당으로 소득처분

③ 기타의 경우는 국외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되는 배당으로 소득처분

라.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Advance Pricing Approval)제도

○ (의의) 정상가격의 결정방법을 과세당국과 기업이 사전에 협의하여 승인하는 제도

○ (신청) 거주자는 정상가격산출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신청대상기간 과세연도 중 최초과세연도 개시일 전까지

①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신청서

② 거래당사자의 사업연혁·사업내용·조직 및 출자관계 등에 대한 설명자료

③ 거래대상자의 최근 3년간의 재무제표, 세무신고자료, 국제거래계약서류

④ 기타 국조법 시행령 제26조에서 정하는 사항의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를 첨부하여 국세청장에게 신청

○ (심사 및 승인) 국세청장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및 지방 국세청장의 검토의견 또는 신청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중립적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하여 승인

- 상대방 국가와 상호합의에 의해 사전승인하는 경우는 부과제척기간 범위 내에서, 상호합의 없이 사전승인하는 경우는 경정청구기간 범위 내에서 정상가격 산출방법 소급적용 승인 가능

마. 자료제출 의무 등

□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

○ (국제거래명세서등 제출의무)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를 하는 납세의무자(소규모 납세의무자는 면제)는 국제거래명세서, 요약손익계산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를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

-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제출의무)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대규모 납세의무자는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통합기업보고서, 개별기업보고서, 국가별보고서)를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추가로 제출

○ (과세관청의 요구에 따른 자료제출의무) 과세관청이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시 60일 이내에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1차에 한하여 60일까지 제출기간 연장 가능

- 자료제출범위는 ① 법인의 조직도 및 사무분장표, ② 해당 거래와 관련된 자의 사업활동 내용, ③ 특수관계가 있는 자와의 상호출자 현황, ④ 자산의 양도·매입 등에 관한 각종 관련 계약서 등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제1항 각 호의 항목에 한정

□ 자료미제출 시 이전가격 추정과세

○ (요건) 개별·통합기업 보고서 및 과세당국이 요구하는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미제출

- (요구자료) 1. 조직도 및 사무분장표, 2. 사업활동 내역, 3.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상호출자 현황, 4. 계약서, 5.제품가격표, 6. 제조원가계산서, 7. 특수관계 여부에 따른 품목별 거래명세표, 8. 용역 또는 그밖의 거래에 대한 4~7에 준하는 서류, 9. 국제거래 가격 결정자료, 10. 특수관계 거래의 가격결정에 관한 내부 지침, 11. 해당 거래 관련 회계처리 기준·방법 등

○ (방법) 동종 사업을 영위하는 유사한 법인 등으로부터 입수하는 자료 등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정상가격 추정

□ 신고불성실 가산세 적용 면제

○ 신고된 거래가액과 정상가격의 차이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의 과실이 없다고 상호합의 절차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

○ 일방적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로서 신고한 거래가격과 정상가격의 차이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의 과실이 없다고 국세청장이 판정하는 경우

○ 납세의무자가 소득세·법인세 신고시 적용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관한 증빙자료를 보관·비치하거나 개별기업보고서를 기한까지 제출하고, 합리적 판단에 따라 그 정상가격산정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 부득이한 사유 없이 자료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과세당국은 과태료를 부과받은 자에게 30일의 이행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제출 또는 거짓 자료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내에 자료 제출이나 시정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연기간에 따라 2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추가로 부과 가능

바. 국세-관세 간 과세가격 조정

○ (개요)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물품 수입과 관련하여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이 상이하게 적용되는 경우 정상가격과 과세가격을 상호 연계·조정

○ (경정청구) 관세 과세가격에 대한 세관의 경정처분에 따라, 국세(소득세,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세관의 경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국세의 경정을 청구하고, 과세당국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

○ (국제거래가격과세조정협의) 경정청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경정청구에 대한 결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 간 조정을 신청하고, 국제거래가격과세조정협의회를 통해 협의 후 과세당국 또는 세관장에게 과세의 조정을 권고(90일내에 납세의무자에게 결과 통지)

○ (부과제척기간 특례) 일반적인 부과제척기간에도 불구하고 경정청구일 또는 조정권고일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경정청구 또는 조정권고에 따라 경정처분 가능(국세기본법 제26조의2)

○ (불복청구기간 계산의 특례) 국제거래가격과세조정 절차 진행기간은 불복청구기간에 불산입하여 납세의무자의 불복청구권 보장(국세기본법 제55조의2)

○ (사전조정제도 도입) '국세의 정상가격 일방적 사전승인(APA)' 신청시 또는 '관세의 과세가격 사전심사(ACVA)' 신청시 동시 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 국세청장과 관세청장은 과세가격의 평가방법 및 적정범위를 협의하여 결정

3. 과소자본과세제도 등

가. 과소자본세제의 의의

□ 과소자본의 개념

○ 외국법인의 국내자회사(국내사업장 포함)에 대한 자금지원 형태는 지분 출자와 자금대여로 구분되고, 배당과 이자에 대한 비용 인정여부가 상이함

- 자본에 대한 배당은 과세소득 계산시 손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반면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손금으로 인정

○ 국내자회사는 과세상의 차이로 인해 외국법인(국외지배주주)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할 때 출자 형식(equity capital)보다 차입금 형식(debt capital)을 더 선호함에 따라 자본 대신 차입이 증가하는 것을 과소자본(thin capitalization)이라 함

□ 과소자본세제

○ 내국법인(국내사업장 포함)의 차입금중 국외지배주주와 그 친족관계 등이 있는 자로부터의 차입금이 그 국외지배주주의 출자지분의 2배(금융업은 6배)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한 차입금 지급이자를 배당으로 간주하여 손금불산입하는 제도

(예) 미국계 은행 A의 갑기금(자본)이 10억원이고, 본점으로부터 차입금이 70억원인 경우 10억원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

< 국외지배주주 >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이상을 직·간접으로 소유한 외국주주, 동 외국주주가 50%이상을 직·간접으로 소유한 외국법인(형제회사), 내국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관계에 있는 자 등을 말함

나. 적용대상 차입금 및 소득처분

○ 차입금의 범위 및 유형

- 이자 및 할인료를 발생시키는 부채로서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금 또는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으로 제3자로부터 차입금(담보 제공 등 실질적 지급보증 포함)

○ 소득처분

- 국외지배주주로부터의 차입금(제3자가 개입되어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하는 거래 포함) 이자중 손금부인된 이자는 동 지배주주에 대한 배당으로 처분
- 국외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이나 국외지배주주의 보증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중 손금부인된 이자는 기타사외유출로 처분

다. 소득 대비 과다이자비용의 손금불산입

○ 적용대상 및 공제제한금액

-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순이자비용 중 조정소득금액의 30퍼센트를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하며, 기타사외유출로 처분

라. 혼성금융상품에 대한 비용공제 제한

○ 적용대상

- 내국법인과 국외특수관계인과의 혼성금융상품(부채·자본 성격을 동시에 갖는 금융상품)거래에서 발생한 이자비용이 상대국에서 자본으로 취급하여 일정기간 내에 과세되지 않는 경우

○ 공제제한

- 상대국에서 과세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 내국법인의 손금산입 불인정

4.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합산과세제도

가. 제도개요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합산 과세제도는 내국인이 해외 자회사(특정외국법인)를 설립하여 여기에 소득을 유보하는 경우 동 유보소득을 동 내국인에 배당한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제도임

배당간주금액	=	특정외국법인의 배당가능유보소득	×	내국인의 특정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

① 적용대상 : 내국법인, 거주자

내국인의 범위는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현재 발행주식의 총수 또는 출자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

② 세부담률 판정기준

법인의 부담세액≤당해 실제 발생소득 X 법인세최고세율의 70%에 해당하는 국가 또는 지역*을 말함

* 거주지국 세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를 포함한 최근 3사업연도의 법인세 차감전 당기순이익의 합계액에 대한 조세의 합계액의 비율이 국내 법인세최고세율의 70% 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을 말함

나.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합산과세제도의 적용범위

특정외국법인이 소재지국에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소, 점포, 공장 등의 고정된 시설을 가지고 그 시설을 통하여 사업을 실질적으로 영위하거나 해외지주회사의 특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함(수동소득이 5% 이상인 경우에는 적용)

○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요건에 해당되는 특정외국법인은 소재지국에 고정된 시설을 가지고 있고, 그 시설을 통하여 사업을 실질적으로 영위하는 경우라도 적용

㉠ 도매업,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임대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 기술서비스업은 제외),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매입원가)이 총수입금액(총매입원가)의 50%를 초과하고, 수입금액(매입원가) 중 특수관계인과 거래 금액이 50% 초과

㉡ 주된 사업(총수입금액의 50%를 초과하는 수입을 발생시키는 사업)이 주식 또는 채권의 보유, 지식재산권의 제공, 선박·항공기·장비의 임대, 투자신탁 또는 기금에 대한 투자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

다. 특정외국법인의 배당가능 유보소득과 익금 귀속시기

○ 특정외국법인의 배당가능 유보소득

- 특정외국법인 소재지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의하여 산출된 당해 외국법인의 법인세 차감전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계산
 - 다만, 거주지국의 회계원칙이 우리의 기업회계기준과 현저히 다른 경우에는 우리 기업회계기준에 의해 산출한 법인세 차감전 당기순이익을 계산하여야 함
- 배당가능 유보소득금액 계산은 특정 외국법인의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상의 처분전 이익잉여금에서 ① 잉여금처분에 의한 이익의 배당금 또는 잉여금의 분배금, ②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퇴직급여 및 기타 사외유출, ③ 거주지국 법령에 의한 의무적립금, ④ 이익잉여금으로 보아 이미 과세된 금액중 당해 사업연도에 행한 실제배당소득 등을 차감한 금액을 말함

○ 배당간주금액 익금 또는 소득산입 시기

- 특정외국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60일이 되는 날이 속하는 내국인의 과세연도의 익금 또는 배당소득에 산입

○ 외국납부세액공제

- 특정외국법인이 내국인에게 실제로 배당을 지급하는 때에 외국에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 익금 등에 산입한 과세연도의 배당간주금액을 국외원천소득으로 보고,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상 외국납부세액공제 규정을 적용

5. 국외투과단체에 귀속되는 소득에 관한 과세특례

가. 제도 개요

○ 거주자·내국법인이 해외에서 과세 실체로 보지 않는 파트너쉽 등의 형태로 투자한 경우 국내에서도 해당 파트너쉽 등의 단체를 과세 실체로 보지 않을 수 있도록 함

□ 국외투과단체의 정의

1. 외국법인, 국외투자기구 또는 법인 아닌 단체와 유사한 단체로서 국외에서 설립된 단체에 해당하는 '외국법인등'일 것
2. 외국법인등이 설립되었거나 외국법인등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소재하는 국가의 세법에 따라 그 외국법인등의 소득에 대하여 해당 외국법인등이 아닌 외국법인등의 주주, 출자자 또는 수익자가 직접 납세의무를 부담할 것

□ 신청주체 : 내국법인, 거주자

국외투과단체의 주주, 출자자 또는 수익자에 해당하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국외투과단체 과세특례"의 적용신청을 한 경우 국외투과단체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출자자 등에게 귀속되는 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을 적용

나. 과세특례 신청 및 조건

□ 과세특례의 신청

국외투과단체과세특례의 적용 신청은 특례를 적용받으려는 국외투과단체 각각에 대해 해야 하며, 과세특례를 최초로 적용받으려는 과세연도 또는 회계기간에 대한 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함

- 다만, 다수의 국외투과단체가 연속적으로 투자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거주자 등이 직접 투자하는 국외투과단체만 신청하면 연속된 국외투과단체 모두에 대해 신청한 것으로 봄

□ 과세특례의 포기제한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출자자등은 적용신청 이후 국외투과단체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외투과단체 과세특례의 적용을 포기할 수 없음

6. 국외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가. 제도 취지

○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면 우리나라 증여세는 취득과세형(수증자에게 과세)으로서 수증자가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증여재산이 국내에 있는 경우에만 증여세를 과세

○ 거주자가 국외 재산을 비거주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비거주자의 거주지국에서 취득과세형을 취하고 있다면 비거주자의 국가에서 증여세가 과세될 것이나 비거주자의 거주지국이 유산과세형(증여자에게 과세)을 취하고 있다면 그 재산이 그 나라에 소재하고 있지 않는 경우 국제적인 이중비과세 발생

⇒ 국제적 이중비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거주자인 증여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둠

나. 구체적 내용

○ 내국인이 국외에 있는 재산을 국외에 주소를 둔 자에게 증여할 경우 증여자에게 증여세 납세의무를 부여

- 다만, 수증자가 주소를 둔 국가에서 수증자에게 증여세를 과세(면제하는 경우 포함)하는 경우 적용을 배제하나, 수증자가 증여자의 특수관계인인 경우에는 국내에서 과세하되,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을 공제

7. 국가 간 조세협력

○ (조세정보 및 금융정보의 교환)

- 우리나라의 권한 있는 당국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 조세 불복에 대한 심리 및 형사 소추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세정보와 국제적 관행으로 일반화되어 있는 조세정보를 다른 법률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획득하여 체약상대국과 교환할 수 있음

○ (세무조사 협력)

- 우리나라의 권한 있는 당국은 조세조약이 적용되는 자와의 거래에 대하여 세무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에 대하여 체약상대국과 동시에 세무조사를 하는 등의 세무조사 협력을 할 수 있음

○ (조세 징수의 위탁)

- 국내에서 납부할 조세를 징수하기 곤란하여 체약상대국에서 징수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그 조세의 징수를 위탁할 수 있음
- 조세조약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으로부터 체약상대국에 납부할 조세를 우리나라에서 징수하도록 위탁받은 경우 국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음

○ (거주자증명서의 발급)

- 체약상대국으로부터 제한세율 등 조세조약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거나, 조세 및 금융정보의 교환 등 조세조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밖에 조세목적상 대한민국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임을 증명할 목적으로 거주자 또는 법인이 거주자증명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음

8. 상호합의절차

○ (개념) 국가간의 조세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상호합의를 신청하는 경우 또는 직권으로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이 외국과세당국과 협의하는 절차

- 상호합의절차가 진행되는 기간은 행정심판, 행정소송의 청구기간계산시 산입하지 아니하므로 상호합의절차 종료후에도 권리구제절차를 밟을 수 있음

○ 개시요건

- 조세조약의 적용 및 해석에 관하여 체약상대국과 협의 필요(기획재정부 장관)
- 체약상대국의 과세당국으로부터 조세조약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처분을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조세조약에 따라 우리나라와 체약상대국간에 조세조정이 필요한 경우(국세청장)

○ 중재인단을 통한 분쟁 해결절차(중재) 도입

- 상호합의절차 개시 이후 조세조약에서 정한 기간이 지날 때까지 우리나라와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
- 조세조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권한 있는 당국이 각각 선정한 중재인단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의 개시를 기획재정부장관이나 국세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음

○ 상호합의절차의 개시를 신청한 자는 국세 납부기한등의 연장 등의 적용 특례를 신청할 수 있으며, 특례 적용시 국세에 부과되는 지방세도 별도 절차 없이 고지유예등 적용

9.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 (개요)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해외금융회사등에 개설·보유한 해외금융계좌의 잔액을 합산한 금액이 신고대상연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을 넘는 경우 그 계좌정보를 다음 연도 6월 1일부터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제도

○ (해외금융회사등) 국외에 소재하는 금융회사(내국법인의 해외지점은 해외금융회사등에 포함되고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은 제외)

- 금융 및 보험업과 이와 유사한 업종을 하는 금융회사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및 이와 유사한 사업자

○ (해외금융계좌) 금융거래 및 가상자산거래를 위하여 해외금융회사등에 개설한 다음의 계좌

- 「은행법」 제27조에 따른 은행업무와 관련하여 개설한 계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 및 이와 유사한 해외증권의 거래를 위하여 개설한 계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생상품 및 이와 유사한 해외파생상품의 거래를 위하여 개설한 계좌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상자산 및 이와 유사한 자산의 거래를 위하여 국외에 있는 가상자산사업자 및 이와 유사한 사업자에 개설한 계좌
- 상기와 같이 규정된 계좌 외의 계좌로서 그밖에 금융거래를 위하여 해외금융회사등에 개설한 계좌

○ (신고의무 면제) 단기 거주 외국인·재외국민, 국제기관 종사자, 국가, 지방자체단체, 공공기관, 조약 등에 의해 설립된 기관, 금융회사등 및 타 법령에 따라 국가의 관리·감독이 가능한 기관 등

○ (수정신고 및 기한 후 신고) 해외금융계좌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다음해 6월말)까지 제출한 자가 해외금융계좌정보를 과소신고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까지 수정신고가 가능하며,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미제출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 가능(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법정신고기한 종료일부터 신고를 한 날까지의 경과월수에 따라 해당 과태료 금액의 30%~90% 감경)

○ (소명 요구) 신고의무 위반자(법인 포함)에게 위반금액의 출처에 대해 소명 요구, 미소명한 경우 해당 금액의 20% 과태료 부과

○ (비밀유지) 세무공무원은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됨

- 다만,「국세기본법」제81조의1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해외금융계좌정보 제공 가능

○ (의무위반시 제재) 신고의무자가 신고기한 내에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과소신고한 경우에 신고 대상 계좌별 미신고 금액 또는 과소신고 합계액을 합산한 금액의 20%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 부과하며,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 횟수, 위반행위의 정도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해당 과태료 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감경 또는 가중, 미신고·과소신고 금액이 50억원 초과시 형사처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3~20% 벌금) 및 명단공개

- 형사처벌 및 통고처분에 따른 벌금상당액 납부시 과태료 미부과

○ (포상금 지급) 해외금융계좌 정보제공에 대하여 과태료의 일정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

10. 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 제출

○ (개요) 해외직접투자명세등, 해외부동산등명세 및 해외신탁명세를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제출의무자) 다음에 해당하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

- 해외직접투자명세등: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한 자
- 해외부동산등명세: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자본거래 중 외국에 있는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보유하거나 처분한 자(해외부동산 등의 물건별 취득가액 또는 처분가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
- 해외신탁명세: 해외신탁을 설정하는 자

○ (소명 요구) 과세당국은 제출의무 불이행자에게 취득자금 출처에 대해 소명 요구 가능, 미소명한 경우 해당 금액의 20% 과태료 부과

○ (의무위반시 제재) 자료 제출의무자가 제출기한 내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하는 등의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라 과태료 부과

- 해외직접투자명세등: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해외부동산등명세: 해외부동산등의 취득가액, 처분가액 및 투자운용소득의 10% 이하의 과태료(1억원 한도)
- 해외신탁명세: 해외신탁재산 가액의 10% 이하의 과태료(1억원 한도)

○ (시행일) 해외신탁에 관한 부분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

□ 조세조약 체결 현황 (2024. 7월 현재)

시 행 국(95)

가 봉	('15.	12.	02)	그 리 스	('98.	07.	10)	남아프리카공화국	('96.	01.	07)
네 덜 란 드	('81.	04.	17)	네 팔	('03.	05.	29)	노 르 웨 이	('84.	03.	01)
	('99.	**04.**	**02)**								
뉴 질 랜 드	('83.	04.	22)	덴 마 크	('79.	01.	07)	독 일	('78.	05.	04)
	('97.	**10.**	**10)**	대 만**	('23.	12.	27)		**('02.**	**10.**	**31)**
라 오 스	('06.	02.	09)	라 트 비 아	('09.	12.	26)	러 시 아	('95.	08.	24)
루 마 니 아	('94.	10.	06)	룩 셈 부 르 크	('86.	12.	26)	리 투 아 니 아	('07.	07.	14)
					('13.	**09.**	**04)**				
말 레 이 시 아	('83.	01.	02)	멕 시 코	('95.	02.	11)	모 로 코	('00.	06.	16)
몰 타	('98.	03.	21)	몽 골	('93.	06.	06)	미 국	('79.	10.	20)
미 얀 마	('03.	08.	04)	바 레 인	('13.	04.	26)	방 글 라 데 시	('84.	08.	22)
베 네 수 엘 라	('07.	01.	15)	베 트 남	('94.	09.	09)	벨 기 에	('79.	09.	19)
					('21.	**01.**	**20)**		**('15.**	**12.**	**01)**
벨 라 루 스	('03.	06.	17)	불 가 리 아	('95.	06.	22)	브 라 질	('91.	11.	21)
									('18.	**01.**	**10)**
브 루 나 이	('16.	10.	14)	사우디아라비아	('08.	12.	01)	세 르 비 아	('16.	11.	17)
스 리 랑 카	('86.	06.	20)	스 웨 덴	('82.	09.	09)	스 위 스	('81.	04.	22)
									('20.	**10.**	**28)**
스 페 인	('94.	11.	21)	슬 로 바 키 아	('03.	07.	08)	슬 로 베 니 아	('06.	03.	02)
싱 가 포 르	('81.	02.	11)	아 랍 에 미 리 트	('05.	03.	09)	아 이 슬 란 드	('08.	10.	23)
	('19.	**12.**	**31)**		**('20.**	**02.**	**29)**				
아 일 랜 드	('91.	12.	27)	아 제 르 바 이 잔	('08.	11.	25)	알 바 니 아	('07.	01.	13)
알 제 리	('06.	08.	31)	에 스 토 니 아	('10.	05.	25)	에 콰 도 르	('13.	10.	16)
에 티 오 피 아	('17.	10.	31)	영 국	('78.	05.	13)	오 만	('06.	02.	13)
					('96.	**12.**	**30)**				
오 스 트 리 아	('87.	12.	01)	요 르 단	('05.	03.	28)	우 루 과 이	('13.	01.	22)
	('23.	**03.**	**01)**								
우 즈 베 키 스 탄	('98.	12.	25)	우 크 라 이 나	('02.	03.	19)	이 란	('09.	12.	08)
	('20.	**10.**	**18)**								
이 스 라 엘	('97.	12.	13)	이 집 트	('94.	02.	05)	이 탈 리 아	('92.	07.	14)
									('15.	**01.**	**23)**
인 도	('86.	08.	31)	인 도 네 시 아	('89.	05.	03)	일 본	('70.	10.	29)
	('16.	**09.**	**12)**						**('99.**	**11.**	**22)**
조 지 아	('16.	11.	17)	중 국	('94.	09.	28)	체 코	('95.	03.	03)
					('06.	**07.**	**04)**		**('19.**	**12.**	**20)**
칠 레	('03.	07.	25)	카 자 흐 스 탄	('99.	04.	09)	카 타 르	('09.	04.	15)
캄 보 디 아	('21.	01.	29)								
캐 나 다	('80.	12.	19)	케 냐	('17.	04.	03)	콜 롬 비 아	('14.	07.	03)
	('06.	**12.**	**18)**								
쿠 웨 이 트	('00.	06.	13)	크 로 아 티 아	('06.	09.	15)	키 르 기 즈	('13.	11.	22)
	('10.	**12.**	**27)**								
타 지 키 스 탄	('16.	09.	28)	태 국	('77.	10.	12)	튀 르 키 예	('86.	03.	27)
					('07.	**06.**	**29)**		**('24.**	**07.**	**21)**
투르크메니스탄	('16.	11.	26)	튀 니 지	('89.	11.	25)	파 나 마	('12.	04.	01)
	('20.	**02.**	**06)**								
파 키 스 탄	('87.	10.	20)	파푸아뉴기니	('98.	04.	21)	페 루	('14.	03.	03)
포 르 투 갈	('97.	12.	21)	폴 란 드	('92.	02.	21)	프 랑 스	('81.	02.	01)
					('16.	**10.**	**15)**		**('92.**	**03.**	**01)**
피 지	('95.	02.	17)	핀 란 드	('81.	12.	23)	필 리 핀	('86.	11.	09)
헝 가 리	('90.	04.	01)	호 주	('84.	01.	01)	홍 콩	('16.	09.	27)

* 볼드(Bold) 표시는 개정 발효일자, ** 양국 대표부간 체결된 민간약정

제정 서명국(3)

수 단 ('04. 09. 09) 나이지리아 ('06. 11. 06) 르 완 다 ('23.09.13)

□ 조세정보교환협정 체결 현황

시 행 국(12)

쿡 제 도 ('12. 03. 05)	마 셜 제 도 ('12. 03. 09)	바 하 마 ('13. 07. 15)
버 뮤 다 ('15. 02. 13)	저 지 ('16. 11. 21)	영국령버진아일랜드 ('16. 11. 21)
사 모 아 ('16. 11. 22)	건 지 ('16. 12. 21)	안 도 라 ('16. 12. 21)
모 리 셔 스 ('17. 04. 13)	바 누 아 투 ('17. 06. 08)	코 스 타 리 카 ('18. 11. 13)

□ 다자간 조세행정공조협약 가입 현황 (2024. 7월 현재)

다자간 조세행정공조협약 (147)

우리나라는 2012.07 발효('10년 가입)

가 나	**가 봉**	건 지	과 테 말 라	그 레 나 다	그 리 스	
그 린 랜 드	나 미 비 아	나 우 루	나 이 지 리 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네 덜 란 드	
노 르 웨 이	뉴 질 랜 드	니 우 에	대 한 민 국	덴 마 크	도 미 니 카	
도미니카공화국	독 일	라 이 베 리 아	라 트 비 아	러 시 아	레 바 논	
루 마 니 아	룩 셈 부 르 크	르 완 다	리 투 아 니 아	리 히 텐 슈 타 인	**마 다 가 스 카 르**	
마 셜 제 도	마 카 오	말 레 이 시 아	맨 섬	멕 시 코	모 나 코	
모 로 코	모 리 셔 스	모 리 타 니	몬 테 네 그 로	몬 트 세 랫	몰 도 바	
몰 디 브	몰 타	몽 골	미 국	바 누 아 투	바 레 인	
바 베 이 도 스	바 하 마	버 뮤 다	베 냉	베 트 남	벨 기 에	
벨 리 즈	보스나아헤르체고비나	보 스 와 나	부 르 키 나 파 소	북 마 케 도 니 아	불 가 리 아	
브 라 질	브 루 나 이	사 모 아	사우디아라비아	사 이 프 러 스	산 마 리 노	
세 네 갈	세 르 비 아	세 이 셸	세 인 트 루 시 아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세인트키츠네비스	
스 웨 덴	스 위 스	스 페 인	슬 로 바 키 아	슬 로 베 니 아	싱 트 마 르 텐	
싱 가 포 르	아랍에미리트	아 루 바	아 르 메 니 아	아 르 헨 티 나	아 이 슬 란 드	
아 일 랜 드	아제르바이잔	안 도 라	알 바 니 아	앤 티 가 바 부 다	앵 귈 라	
에스와티니왕국	에 스 토 니 아	에 콰 도 르	엘 살 바 도 르	영 국	영국령버진아일랜드	
오 스 트 리 아	오 만	**온 두 라 스**	요 르 단	우 간 다	우 루 과 이	
우 크 라 이 나	이 스 라 엘	이 탈 리 아	인 도	인 도 네 시 아	일 본	
자 메 이 카	저 지	조 지 아	중 국	지 브 롤 터	체 코	
칠 레	카 메 룬	카 보 베 르 데	카 자 흐 스 탄	카 타 르	캐 나 다	
케 냐	케 이 맨 제 도	코 스 타 리 카	콜 롬 비 아	쿠 웨 이 트	쿡 제 도	
키 라 소	크 로 아 티 아	태 국	터크스케이커스제도	튀 르 키 예	**토 고**	
튀 니 지	파 나 마	파 라 과 이	파 키 스 탄	파 푸 아 뉴 기 니	페 로 제 도	
페 루	포 르 투 갈	폴 란 드	프 랑 스	핀 란 드	**필 리 핀**	
헝 가 리	호 주	홍 콩				

* 밑줄표시는 속령(17개)에 해당, **볼드체는 미발효 국가(5개)**

2. 글로벌최저한세 제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1. 글로벌최저한세 개요 / 519
2. 기본개념 / 520
3. 추가세액 계산방법 / 521
4. 전환기 적용면제 / 522
5. 신고 및 납부 / 523

작성자 : 신국제조세규범과장 조문균

1. 글로벌최저한세 개요

가. OECD BEPS 프로젝트

○ OECD BEPS 프로젝트는 2013년 OECD와 G20 국가들이 다국적 기업들의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의 일환으로 시작되었으며, 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는 기업들이 세금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세 기반을 잠식하고 이익을 이전하는 행위를 말함

- BEPS 프로젝트는 15개의 구체적인 행동계획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으며, 그 중에 하나가 글로벌최저한세 규정

나. 글로벌최저한세 제도 합의 및 발표

○ OECD는 2018년 12월에 디지털세 필라1과 필라2의 개념을 확정

- 2020년 10월 중간보고서(블루프린트) 발표
- 2021년 10월 디지털세 10월 합의문(October Statement) 발표를 통해 최저한세율(15%) 및 적용대상 등 주요기준 합의
- 2021년 12월 각국의 글로벌최저한세 입법지침인 모델규정 발표
- 2022년 3월 모델규정에 대한 주석서(Commentary) 발표

○ OECD와 G20 국가들은 글로벌최저한세 규정의 필요성에 동의하였으며, 특히 2021년 10월에는 135개 이상의 국가가 글로벌최저한세 도입에 합의

다. 글로벌최저한세의 도입

○ 글로벌최저한세(GloBE, Global Anti-Base Erosion)는 다국적 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국제적인 조세 규칙

- 이는 특정 국가의 낮은 법인세율로 인한 조세 회피를 방지하고, 기업들이 실제 경제활동을 하는 국가 등에서 적정한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기위해 도입

○ 각국은 글로벌최저한세 규정을 자국의 법률에 통합하여 적용하게 되며, 우리나라는 2024년 글로벌최저한세 중 소득산입규칙을 시행하였고, 2025년 소득산입보완규칙을 시행할 예정

2. 기본개념

가. 글로벌최저한세란

○ 다국적 기업그룹의 소득에 대해 특정국가의 실효세율이 최저한세율(15%) 미만일 경우 최저한세율(15%)만큼 추가 과세하는 제도

나. 적용 대상

○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2개 사업연도 이상의 연결재무제표상 매출액이 7억5천만 유로(약1조원) 이상인 다국적 기업그룹*

* 하나 이상의 국가에 기업 또는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기업그룹

○ 정부기업, 국제기구 등 특정 기업의 경우 제외기업으로 적용 제외

- 제외기업은 글로벌최저한세의 적용을 받지 않으나, 다국적기업그룹의 적용대상 매출기준을 판단할 때에는 포함하여 계산

다. 글로벌최저한세 종류

○ 소득산입규칙(IIR, Income Inclusion Rule)

- 저율과세구성기업 소재국에 '적격소재국추가세제도'가 없는 경우, 해당 구성기업의 최종모기업이 그 소재국에 '소득산입규칙'에 따라 추가세액 우선 납부
- 최종모기업 소재국이 '소득산입규칙'을 도입하지 않은 경우, 다국적기업그룹의 지분구조에서 '소득산입규칙'이 적용되는 차상위 모기업인 중간모기업이 그 소재국에 해당지분에 상당하는 추가세액 납부

○ 소득산입보완규칙(UTPR, Under Taxed Payment Rule)

- '소득산입규칙'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소득산입보완규칙'을 도입한 국가에 추가세액을 배분하여 해당 국가 내 구성기업이 납부

○ 적격소재국추가세(QDMTT, Qualified Domestic Top-up Tax)

- 저율과세구성기업이 소재한 국가에서 도입한 경우, 해당 국가의 우선 과세권 인정

3. 추가세액 계산방법

가. 국가별 각 구성기업의 소득 배분

○ 다국적기업그룹 내 기업과 고정사업장 등 구성기업을 식별하고, 조약 또는 세법에 따라 구성기업의 소재지국 결정

○ 최종모기업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데 사용되는 회계기준 또는 IFRS 등 각 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기준에 따라 각 구성기업의 회계상 순손익 산정

나.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의 계산

○ 각 구성기업 별 재무제표에 따라 회계상 순손익에서 글로벌최저한세 조정사항*을 반영하여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을 계산

* 주요조정사항 : 조세비용 가산, 배당수익 차감, 지분손익 제외, 불법적 지출비용(뇌물 등) 가산, 유형자산재평가손익(기타포괄손익) 포함 등

- 고정사업장은 별도의 구성기업으로 보아 본점과 구분하여 해당 고정사업장의 별도재무제표에 기록된 순손익을 배분
- 투과기업의 경우 사업이 수행된 고정사업장 또는 주주구성기업에 회계상 순손익 배분

다. 조정대상조세의 계산

○ 각 구성기업 별 재무재표에 당기법인세비용으로 계상된 대상조세에 조정사항* 및 이연법인세 조정금액을 반영하여 조정대상조세 계산

*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 계산 시 제외되는 이익과 관련된 당기법인세비용차감 등

- 소득이 발생하는 원천에 따라 대상조세를 배분
- 이전 사업연도 대상조세에 따른 조정 반영

라. 국가별 실효세율 산정

○ 같은 국가에 소재한 각 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을 합산한 금액(분모)과 각 구성기업의 조정대상조세를 합산한 금액(분자)으로 각 국가별 실효세율 계산

마. 국가별 추가세액 산출

○ 추가납부세율은 최저한세율(15%)과 실효세율간의 차이

○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에서 실질기반제외소득금액을 차감한 초과이익에 추가납부세율을 곱하여 추가세액 계산

- 실질기반제외소득금액은 유형자산과 급여비용에 일정비율을 적용하여 산출

4. 전환기 적용면제

가. 개념

○ 글로벌최저한세 도입 초기에 다국적기업그룹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일정요건 충족 시 해당 국가에 납부하여야할 추가세액을 '영(0)'으로 봄

○ 신고구성기업의 선택에 따라 전환기사업연도(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하고 2028년 6월 30일 이전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에 적용

나. 적용 요건

○ 소액요건

- 국가별보고서에 따라 작성된 국가별 총수입금액이 1천만유로 보다 작고, 세전손익금액이 1백만유로보다 작은 경우

○ 간이 실효세율 요건

- 전환기사업연도 동안 계산된 간이실효세율이 연도별 일정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 2024년: 15%, 2025년: 16%, 2026년: 17%

○ 초과이익 요건

- 적격국가별보고서에 따른 국가별 세전손익금액이 손실이거나 이익이 발생하였으나 그 금액이 실질기반제외소득금액 합계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

5. 신고 및 납부

가. 신고의무자

○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는 다국적기업그룹의 추가세액 납부의무가 있는 국내구성기업이 신고하는 것이 원칙

- 같은 다국적기업그룹에 속하는 다른 국내구성기업을 지정하여 신고 가능

나. 신고·납부 기한

○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15개월(최초적용연도의 경우 18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 신고·납부

다. 과태료

○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국내구성기업이 부득이한 사유 없이 기한 내 신고서를 미제출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과태료 1억원 부과

○ 30일의 이행기간 내에 자료를 시정요구 받았으나, 기간 내에 불이행할 경우 지연기간에 따라 2억원 이하의 과태료 추가 부과 가능

○ 다만, 전환기사업연도 동안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제출과 관련된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음

3. 국세징수제도
(국세징수법)

1. 목적 및 내용 / 527
2. 임의적 징수절차 / 528
3. 강제적 징수절차(체납처분절차) / 5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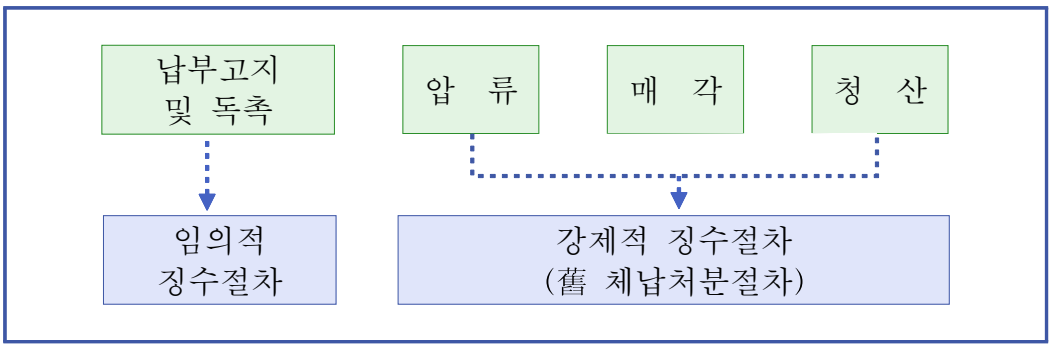
작성자 : 조세법령운용팀장 김완수

1. 목적 및 내용

국세징수법은 국세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세수입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며 국세징수법에 규정된 국세의 징수절차는 다음과 같음.

① 임의적 징수절차 : 각 세법에 의하여 확정된 조세채권에 대하여 자발적인 납부를 권하는「납부고지 및 독촉」에 의한 징수절차를 말함.

② 강제적 징수절차 : 납부고지 및 독촉에 의하여도 조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재산의 압류 → 압류재산의 매각 → 청산」의 과정을 통하여 강제적으로 조세채권을 실현하는 절차를 말함.



<참고> 간접적인 납세보전제도

납세자가 국세를 체납한 경우에는 임의적 징수절차와 강제적 징수절차를 통하여 국세를 징수하나 국세징수법에서는 이러한 징수절차 외에도 납세자가 국세를 체납하였을 경우 별도의 불이익을 받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납부를 간접적으로 촉구하는 다음과 같은 납세보전제도를 두고 있음.

① 납세증명서의 제출(§107) ② 체납자료의 제공(§110)

③ 사업에 관한 허가 등의 제한(§112) ④ 출국금지 요청 (§113) 등

2. 임의적 징수절차

국제징수법상 과세관청이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 등 강제적 징수절차를 집행하기 전에 납세자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국세를 납부하도록 하는 임의적 징수절차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구 분	의 의
납부고지	납세자가 납부기한 내에 자진납부하도록 하는 청구
독촉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재차 자진납부하도록 권하는 청구
납부기한 전 징수	특정한 사유가 있을 때 기한의 이익을 박탈하고 납기전에 징수하는 제도

3. 강제적 징수절차

가. 개요

'강제적 징수절차'란 고지 또는 독촉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납세자가 조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과세관청이 조세채권확보를 위하여 강제적으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압류한 재산을 환가하여 체납액에 충당하는 절차를 말함.

> 강제징수절차 : 압류 → 매각 → 청산

나. 압류의 조건(§31)

① 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를 완납하지 아니한 때

② 납부기한 전 징수의 경우에 납세자가 납기 전에 납부의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

다. 압류재산의 매각

'압류재산의 매각'이란 세무서장이 압류한 체납자의 재산을 처분하여 금전으로 환가하는 행정처분을 말하며 이와 같은 압류재산의 매각은 공매(公賣) 및, 수의계약(隨意契約)의 방법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65). 세무서장은 공매에 전문 지식이 필요하거나 압류한 재산이 직접 공매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고(§103), 예술품 등의 경우 전문 매각기관에서 매각을 대행하게 할 수 있음(§104). 다만, 압류된 유가증권 중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과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거래되는 가산자산은 해당 시장에서 직접 매각할 수 있음.

라. 청산(=배분)

'청산'이란 압류재산의 매각대금 등 강제징수절차에 따라 얻은 금전에 대하여 국세 및 기타채권에의 배분금액을 확정하는 처분으로 강제징수절차의 마지막 단계에 해당하고, 매각대금의 처리방법은 다음과 같음.

구 분	처 리 방 법
① 매각대금이 국세·강제징수비 기타 채권의 총액보다 많은 경우	국세·강제징수비 기타 채권에 충당 또는 배분한 후 잔액은 체납자에게 지급하여야 함(§96③).
② 매각대금이 국세·체납처분비 기타 채권의 총액에 부족한 경우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배분할 순위와 금액을 정하여 배분하여야 함(§96④).

4. 조세범 처벌제도
(조세범 처벌법)

1. 의의 / 533
2. 조세범의 유형 / 533
3. 조세포탈범 / 534
4. 면세유 부정유통범 및 유사석유제품 제조범 / 535
5. 체납처분 면탈범 / 535
6. 명의대여행위 / 535
7. 조세범칙 유형요약 / 536
8. 책임벌(양벌규정) / 537
9. 공소시효 / 537
10. 고발전치주의 / 538
11. 형법적용의 일부 배제 / 538

작성자 : 조세법령운용팀장 김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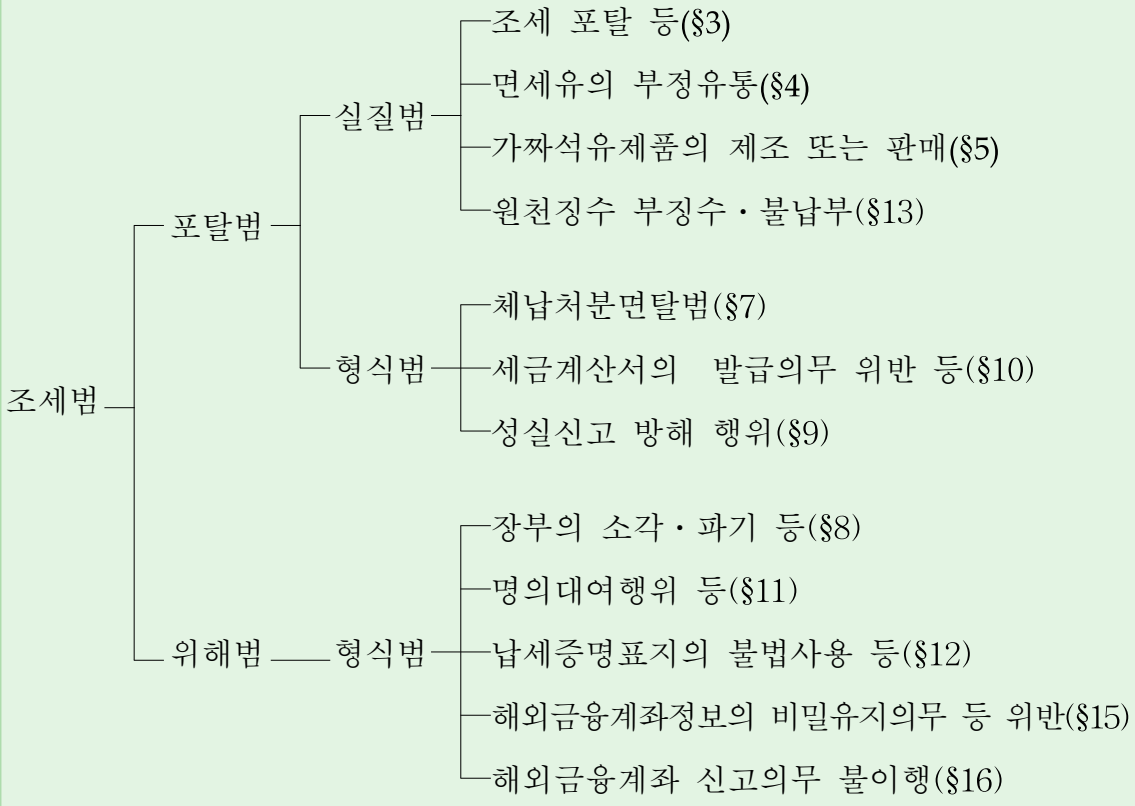
1. 의의

조세범처벌법은 세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의 건전한 납세의식을 확립하기 위해 세법을 위반한 자에 대한 형벌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임. 이 범에서 '조세'라 함은 "관세를 제외한 국세"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관세법 및 지방세법 위반은 조세범처벌법의 적용대상이 아님.

2. 조세범의 유형

조세범은 포탈범과 위해범으로 분류됨. 포탈범은 국가의 세금징수권을 직접 침해하여 세수 감소를 초래하거나 이를 기도하는 위반행위 유형임. 위해범은 세수감을 직접 초래하지는 않으나, 세법상 각종 의무규정을 위반해 국가과세권의 적정행사를 저해하는 행위 유형임.

<참고> 조세범의 유형



3. 조세포탈범

조세포탈범은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는 실질적 탈세범으로, 조세범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대표적인 유형임.

종전 구(舊)조세범처벌법 제9조는 개별소비세, 주세, 교통에너지환경세 포탈범의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인지세 조세포탈범은 포탈세액의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그 외 국세의 포탈범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3배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음.

2009년 전면개정시 형량에서 직접세와 간접세의 차별을 없애고, 조세포탈 행위의 상습정도, 포탈세액 규모, 납부세액 대비 포탈세액 비중 등에 따라 형량을 차등화함.

현행 조세범처벌법 제3조는 일반적인 조세포탈범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2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포탈세액이 3억원 이상이고 그 포탈세액이 신고·납부세액의 30%를 넘는 경우 또는 포탈세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등의 3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함. 또한 상습범에 대해서는 상기 형의 1/2을 가중할 수 있도록 함.

개정된 조세범처벌법은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범죄구성요건인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예시하였음.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조세범처벌법§3 ⑥)
①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②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③ 장부와 기록의 파기 ④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⑤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⑥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⑦ 그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4. 면세유 부정유통범 및 가짜석유제품 제조범

최근 부각되고 있는 면세유 부정유통, 가짜석유제품 제조 등 범칙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면세유 부정유통범과 가짜석유제품 제조범에 대해 일반 조세포탈범으로 처벌하던 것을 별도의 구성요건으로 처벌하도록 하였음.

농·어·임업용 면세유 및 해상면세유를 용도 외로 사용·판매하여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등의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함.

면세유류 구입카드 등을 부정발급 받은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가짜석유제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여 조세를 포탈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

5. 체납처분 면탈범

2009년 조세범처벌법 전면개정시 정당한 사유없이 1회계연도에 3회 이상 체납하는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체납액 상당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던 조세체납죄 규정은 압류·공매 등으로 미납국세를 충분히 징수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삭제함.

체납처분면탈범에 대해서는 체납전 고의면탈범에 대한 처벌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대상을 '체납자'에서 '납세의무자'로 변경하고, 처벌을 강화함.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거나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하였을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종전 형량 '2년 이하 징역') 체납처분 면탈행위를 방조하거나 거짓계약을 승낙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종전 형량 '1년이하 징역')

6. 명의대여 행위 처벌

구(舊) 조세범처벌법 제13조의2는 명의대여사업자에 대해서 질서범과 동일하게 5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처벌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워 2009년 전면개정시 처벌을 강화함.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거나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7. 조세범칙 유형요약

범칙행위의 유형	처 벌	관련 조문
조세포탈죄	(기본)포탈세액 2배이하 벌금, 2년이하 징역 (가중)포탈세액 3배이하 벌금, 3년이하 징역 ＊(ⅰ)포탈세액 3억원&탈세비율 30%이상 (ⅱ)포탈세액 5억원이상	§3
면세유 부정유통	3년이하 징역, 포탈세액 5배이하 벌금	§4
가짜석유제품 제조	5년이하 징역, 포탈세액 5배이하 벌금	§5
무면허주류제조·판매	3년이하 징역, Max(3,000만원, 주세상당액의 3배)이하의 벌금	§6
체납처분면탈	(납세의무자)3년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	§7①
	(방조자)2년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	§7③
장부의 소각·파기 등	2년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	§8
성실신고 방해 행위	(신고대리자)2년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	§9①
	(선동·교사자)1년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	§9②
세금계산서·계산서 발급의무위반	(미교부·허위기재)1년이하 징역, 산출세액 2배 이하 벌금	§10 ①②
	(재화·용역의 공급없이 발급)3년이하 징역, 산출세액 3배 이하 벌금	§10③
명의대여행위 등	(사업자) 2년이하 징역, 2,000만원이하 벌금	§11①
	(대여자) 1년이하 징역, 1,000만원이하 벌금	§11②
납세증명표지의 불법사용 등	2년이하 징역, 2,000만원이하 벌금	§12
원천징수의무자의 처벌	(불이행) 1,000만원이하 벌금	§13①
	(불납부) 2년이하 징역, 2,000만원이하 벌금	§13②
근로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거짓기재(주)	2년이하 징역, 총급여·지급액 20/100이하 벌금	§14
해외금융계좌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등의 위반	5년이하 징역, 3,000만원이하 벌금	§15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미신고·과소신고 금액이 50억원 초과시) 2년 이하의 징역, 위반금액의 13/100 이상 20/100이하 벌금	§16

㈜. 근로장려금을 거짓으로 신청할 목적인 경우에 한함

8. 책임벌(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하여 조세범처벌법에 규정하는 범칙행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6조를 위반한 행위는 제외)를 한 때에는 행위자 외에도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서도 벌금을 부과함.

다만, 2009년 전면개정시 종업원의 위반행위에 대해 영업주를 곧바로 처벌하도록 한 양벌규정에 대해 책임주의에 반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을 한 헌재판례(보건범죄단속특별법 제6조(2007.11.29, 2005헌가10) 및 청소년보호법 제54조(2009.7.30, 2008헌가10))를 반영하여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벌처벌을 면책하는 규정을 신설함.

9. 공소시효

조세범에 관한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와는 별도로 조세범처벌법에서 규정함. 조세범에 대한 공소시효는 원칙적으로 7년으로 하되, 현행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받는 조세포탈죄 중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에도 벌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공소시효를 10년으로 규정함.

공소시효 10년 특칙은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 등 행위자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의하여 조세범처벌법보다 더 가중한 처벌을 받는 경우에도 법인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법상 양벌규정만 적용할 수 있는 점, 조세범처벌법상 공소시효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조세포탈 공소시효 보다 짧은 점 등을 감안하여 2009년 전면개정시 신설함.

10. 고발전치주의

조세범처벌법상 범칙행위에 대해서는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고발이 없으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받는 조세포탈행위에 대해서는 고소·고발 없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음

11. 형법적용의 일부 배제

조세범처벌법은 형법에 대한 특별법에 해당하므로 형법에 우선하여 적용하되, 조세범처벌법에 정하지 않은 것은 형법총칙을 적용함.

종전 조세범처벌법은 국고주의를 기초로 하여 책임능력 없는 형사미성년자에 대하여도 처벌하는 등 형법총칙의 일부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었으나, 세계적으로 책임주의 입법이 일반적 경향임을 감안하여 2009년 조세범처벌법 전면개정시 조세범에 대하여도 책임원칙을 적용하여 책임능력·위법성 착오·종범경감 등 형법총칙 규정을 조세범처벌법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개정함.

다만, 제한가중 규정을 배제하지 않을 경우 고의·상습범에 대한 처벌이 약화될 우려가 있어 벌금경합에 대한 제한가중규정은 조세범처벌법 적용에서 제외키로 하였음.

형법총칙규정이 배제되는 범칙행위	배제되는 형법총칙 규정
① 조세포탈범(§3) ② 면세유 부정유통(§4) ③ 유사석유제품의 제조(§5) ④ 무면허 주류의 제조 및 판매(§6) ⑤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등(§10) ⑥ 납세증명표지의 불법사용 등(§12) ⑦ 원천징수의무자의 처벌(§13) ⑧ 거짓으로 기재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의 발급 등(§14)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38①2호)

5.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제도

1. 목 적 / 541
2. 과세자료 제출대상기관 / 541
3. 과세자료 / 541
4. 금융거래정보의 특례 / 541
5. 제출의무 불이행시 제재 / 541
6. 비밀유지의무 / 541

작성자 : 법인세제과장 정형

1. 목 적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 과세자료를 국세청에 집중시켜 정보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근거과세와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세무행정의 과학화 추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에 관한 법률로는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음

2. 과세자료 제출대상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 정부투자기관 및 사업자단체, 기타 공익목적으로 설립된 기관·단체중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단체

3. 과세자료

인·허가·신고자료, 실적자료, 국가기관이 수수하는 세금계산서 등

4. 금융거래정보의 특례

국세청장은 명백한 조세탈루 혐의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금융실명거래법에 불구 금융기관 본점 일괄조회

5. 제출의무 불이행시 제재

국세청장은 자료제출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는 기관이나 직원에 대하여는 당해 기관의 감독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

6. 비밀유지의무

타인에게 제공, 누설 또는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3년~5년 이하 징역, 1천만원~3천만원 벌금

Ⅴ. 지방세제

1. 개 요 / 545
2. 취 득 세 / 551
3. 등록면허세 / 555
4. 레 저 세 / 559
5. 담배소비세 / 561
6. 지방소비세 / 563
7. 주 민 세 / 566
8. 지방소득세 / 569
9. 재 산 세 / 572
10. 자동차세 / 576
11. 지역자원시설세 / 580
12. 지방교육세 / 584

1. 개 요

□ 지방세의 개념

○ 지방자치단체가 관할구역 내의 주민, 재산, 수익 등에 대하여 부과·징수하는 조세로서 지방자치단체 자주재원*의 근간

* 성공적 지방자치 수행, 주민욕구 충족,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필요경비

※ (헌법) 제38조 :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제59조 :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 지방세의 주요 원칙

○ (편익성, 주민부담 원칙) 자치단체의 서비스 혜택을 누리는 모든 주민들이 편익의 크기에 비례하여 세부담 배분(Membership)

※ 국세는 응능원칙 : 소득 및 능력에 따라 누진 과세, 소득재분배 추구

- 지방서비스에 필요한 재원은 가능한 한 주민이 내는 지방세로 조달해야 하고, 세원은 가급적 지역간 이동이 적은 것이 바람직

○ (보편성) 모든 지역에 골고루 분포된 세원이 적합하고, 보편성이 클수록 기초단체 세원으로 배정

※ 세원 편중 시 수도권·비수도권 등 자치단체간 세입 불균형 유발

○ (안정성/신장성) 주민생활과 직결된 서비스 재원이므로 안정적 수입 확보와 재정수요 증가에 대응한 세수 신장 필요

□ 지방세와 지방재정 ('22년 결산 기준)

○ 조세 514.5조 : 국세 395.9조(77.0%), 지방세 118.6조(23.0%)

○ 시·도세 중 일부는 시·군·구, 지방교육청의 재원으로 배분

※ 조정교부금(광역 → 기초),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시·도 → 지방교육청)

□ 지방세의 분류

과세주체 기준	사용용도 기준	법적근거 기준
• 광역지자체 : 시·도세 • 기초지자체 : 시·군·구세	• 보통세 : 일반재원 • 목적세 : 특정재원	• 법정세 : 지방세법 규정 • 법정외세 : 현재 없음 (일본 : 폐기물자원세 등)

□ 지방세의 세목구조

특별·광역시	시 세 (9)	보통세	①취득세 ②레저세 ③주민세* ④자동차세 ⑤지방소득세 ⑥지방소비세 ⑦담배소비세
		목적세	①지역자원시설세 ②지방교육세
	구 세 (2)	보통세	①등록면허세 ②재산세**
도	도 세 (6)	보통세	①취득세 ②레저세 ③지방소비세 ④등록면허세
		목적세	①지역자원시설세 ②지방교육세
	시군세 (5)	보통세	①주민세 ②재산세 ③ 자동차세 ④담배소비세 ⑤지방소득세

* (주민세 특례) 광역시의 경우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은 구세로 귀속

** (공동과세) 특별시 內 구의 재산세(선박, 항공기, 도시지역분 제외)는 특별시세(50%) 및 구세(50%)로 귀속

□ 세원별 비중 ('22년 결산 기준)

○ **재산과세 : 40.1%**

- (거래과세 24.8%) 취득세, 등록면허세(등록분)
- (보유과세 15.3%)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 주민세(舊 재산분)

○ **소득·소비과세 : 53.0%**

- (소득과세 22.5%) 지방소득세, 주민세(종업원분), 주민세(舊 균등분)
- (소비과세 30.6%) 지방소비세, 담배소비세, 레저세, 자동차세, 등록면허세(면허분), 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시설분)

○ **기 타 : 6.9%**

- 지방교육세, 과년도 수입

□ 지방세 근거법령

【 지방세 법령 】

○ 지방세기본법

- 지방세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납세자의 권리·의무 및 권리구제에 관한 사안 등을 규정

○ 지방세징수법

- 지방세의 징수와 체납처분에 관한 사안 등을 규정

○ 지방세법

- 과세대상,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과세기준일, 납기 등 지방세 각 세목의 과세요건 및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규정

○ 지방세특례제한법

- 지방세 감면 및 특례(세율 경감, 세액 감면, 세액 공제 등)와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 규정

【 국세법령 등의 준용 및 적용 】

○ 준용법령 :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고금관리법(지방세관계법에서 미규정한 사항)

○ 직접적용 : 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감면 등 특례 규정)

【 지방자치단체 조례 】

○ 지방세 부과·징수조례(지방세기본법 제5조 근거)

-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의 세목, 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그 밖에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 지방세 감면조례(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근거)

- 서민생활 지원, 특정지역의 개발, 특정산업·시설의 지원 등 감면이 필요한 사항, 3년의 범위 내에서 운영

□ 지방세 부과·징수

① 납세의무 성립

- 지방세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성립되고 과세권자는 채권자의 지위에, 납세의무자는 채무자의 지위에 서게 됨

② 납세의무 확정

- 납세의무자 또는 과세관청이 일정한 행위나 절차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것을 말함
 - · (신고납부)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 등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함으로써 납세의무가 확정(취득세, 등록분 등록면허세, 종업원분 주민세 등)
 - · (부과·징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함으로써 납세의무가 확정(재산세, 자동차세, 개인분 주민세 등)
 - · (특별징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없이 그 세액이 확정(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

③ 지방세 납부

- 전국 모든 은행의 창구 또는 CD/ATM기, 위택스(Wetax), 인터넷지로, 인터넷뱅킹, 신용카드, 모바일 앱 등을 통해 납부

④ 체납자에 대한 조치

- (강제집행) 지정된 기한까지 지방세를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체납자에게 독촉을 하고 재산을 압류한 후, 압류한 재산을 공매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체납된 지방세를 징수함
- (간접강제) 강제집행 이외에 체납세 납부독려를 위한 행정제재의 일환으로 여러 가지 납세의무를 간접강제 하는 제도를 두고 있음
 - ※ 관허사업제한, 납세증명서 제출, 출국금지, 신용정보 등록, 외국인 체납자 비자 연장 제한, 1천만원이상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등

⑤ 납세의무 소멸

- 지방세 납세의무는 지방세를 납부함으로써 소멸되나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도 법적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를 소멸시키는 제도를 두고 있음
 - · 부과권의 제척기간 : 납세의무가 성립된 후 일정기간 부과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권한이 소멸되는 제도
 - ※ 사기 등으로 지방세포탈 10년, 과세표준신고서 미제출 7년, 기타 5년
 - · 징수권의 소멸시효 : 납기가 경과하고 일정기간 징수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권한이 소멸되는 제도(기간 도과시 시효완성 정리)
 - ※ 5천만원 이상의 지방세는 10년, 그 외의 지방세는 5년
 - · 정리보류 : 납세자에게 납세능력이 없거나 징수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 자치단체 스스로 지방세 채권을 유보하는 행정처분

참고 1 지방세 부과·징수 일정(정기분)

월별	부과·징수 일정
1월	·등록면허세(면허분) 납부 (납기 : 1.16.~1.31.)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납기 : 1.16.~1.31.)
3월	·제1기분 자동차세 분할납부(납기 : 3.16.~3.31.)
4월	·12월말 결산법인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납기 : 4.30.)
5월	·지방소득세(소득분) 신고납부(납기 : 5.1.~5.31.)
6월	·제1기분(1~6월) 자동차세 납부(납기 : 6.16.~6.30.)
7월	·건축물·주택(제1기분)·선박·항공기 재산세 납부 (납기 : 7.16.~7.31.)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납기 : 7.16.~7.31.)
8월	·주민세(사업소분) 신고납부(납기 : 8.1.~8.31.) ·주민세(개인분) 납부(납기 : 8.16.~8.31.)
9월	·제2기분 자동차세 분할납부(납기 : 9.16.~9.30.) ·토지분·주택(제2기분) 재산세 납부(납기 : 9.16.~9.30.)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 주택의 건축물 부분에 한정)(납기 : 9.16.~9.30.)
12월	·제2기분(7~12월) 자동차세 납부(납기 : 12.16.~12.31.) ※ 종합부동산세 부과·징수 (12.1.~12.15.)
매월	·취득세 신고납부 :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등록면허세(등록분) 신고납부 : 등록하기 전까지 ·레저세·주민세(종업원분)·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 매월 10일 한 ·주행분 자동차세 : 매월 말일 한 ·담배소비세 : 매월 20일 한 ·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분·특정시설분) : 조례로 정함

참고 2 지방세 탄력세율 적용 현황

세 목 (법조항)	과세대상 및 표준세율	세율 적용가능 범위
취득세 (§14)	▸부동산 등: 4%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조정 가능
등록면허세 (§28⑥)	▸부동산등기 - 소유권보존 : 0.8% - 소유권이전 : 0.8%~2% - 물권, 임차권 : 0.2% - 그 외 등기 : 건당 6천원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조정 가능
주민세 (§78, 81, 84의3)	▸개인분 : 1만원 범위 내 ▸사업소분 : 기본세율 5~20만원 + 연면적 250원/㎡ ▸종업원분: 월지급급여총액의 0.5%	▸개인분: 1만원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제한세율 (주민청구가 있는 경우 1만 5천원 이내) ▸그 외(사업소분 및 종업원분):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조정 가능
재산세 (§111③)	▸주택 : 0.1~0.4%, 4% ▸토지 : 0.07~0.5%, 4% ▸건축물 : 0.25%, 0.5%, 4% ▸선박 : 0.3%, 5% ▸항공기 : 0.3%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조정 가능
	재산세 도시지역분(112②) ▸토지·건축물의 가액의 0.14%	▸0.23%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제한세율
자동차세 (§127③)	▸소유분 - 승용자동차 cc당 18원~200원 - 화물차 등 6,600~157,500원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산 가능
지역자원시설세 (§146④)	▸건축물·선박가액의 0.04%~0.12% ▸발전용수: 10㎥당 2원 ▸원자력발전: 발전량 1kWh당 1원 ▸화력발전: 발전량 1kWh당 0.6원 ▸지하수: 1㎥당 20원~200원 ▸지하자원: 광물가액의 0.5% ▸컨테이너: 1TEU당 15,000원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조정 가능 ※ 원자력발전·화력발전 제외
지방소득세 (§92①, 103의20①)	▸개인 : 소득세 과세표준의 0.6%~4.5% ▸법인 : 법인세 과세표준의 0.9~2.4%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조정 가능
지 방 교육세 (§151②)	▸본세액의 10%~43.99%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조정 가능 ※ 레저세분 제외

2. 취득세

□ 과세 대상

○ (일반취득) 토지·건축물, 차량,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콘도·종합체육시설이용·승마·요트회원권

○ (간주취득) 토지 지목변경, 과점주주 주식취득, 선박·차량·기계장비 종류변경, 건축물 개수

□ 납세의무자

○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하는 자

※ 등기·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라도 잔금지급 등 사실상 취득한 경우 포함

□ 과세 표준

○ 개인·법인 모두 유상취득과 원시취득은 실제거래가액 즉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하고, 무상취득은 “시가인정액“을 적용

□ 징수 방법

○ 취득일부터 60일(상속 6개월, 증여 3개월, 외국주소 9개월 이내) 과세관청에 신고납부

□ 면세점

○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인 경우

□ 과세유형별 취득세율

① 부동산

구 분			취득세	농어촌특별세[주1]	지방교육세[주2]	합계세율
주택	6억 이하	85㎡ 이하	1%	비과세	0.1%	1.1%
		85㎡ 초과	1%	0.2%	0.1%	1.3%
	6억 초과 9억 이하[주3]	85㎡ 이하	1~3%	비과세	0.1~0.3%	1.1~3.3%
		85㎡ 초과	1~3%	0.2%	0.1~0.3%	1.3~3.5%
	9억 초과	85㎡ 이하	3%	비과세	0.3%	3.3%
		85㎡ 초과	3%	0.2%	0.3%	3.5%
주택외 유상매매(토지, 건축물)			4%	0.2%	0.4%	4.6%
원시취득, 상속(농지외)			2.8%	0.2%	0.16%	3.16%
무상취득(증여)		비영리사업자	2.8%	0.2%	0.16%	3.16%
		그 외	3.5%	0.2%	0.3%	4.0%
농지		매매	3.0%	0.2%	0.2%	3.4%
		상속	2.3%	0.2%	0.06%	2.56%
공유물 분할			2.3%	0.2%	0.06%	2.56%

1) 취득세 표준세율(2%로 적용, 농특세법)의 10%. 단, 국민주택(85㎡이하)은 비과세
2) 舊등록세액(표준세율에서 2%를 뺀 세율로 산출)의 20%를 지방교육세로 부과
(주택의 경우, 표준세율(1~3%)에 50%를 곱한 세율의 20%)

$$(\text{해당 주택의 취득당시가액} \times \frac{2}{3\text{억원}} - 3) \times \frac{1}{100}$$

※ 단, 소수점이하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3) 주택세율(6억원~9억원 구간) 세분화

② 다주택자·법인의 주택 및 사치성재산(고급주택) 취득세율

구 분		취득세	농어촌특별세[주4]	지방교육세	합계세율
주택	①-1.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 사단·재단 등)	12%	1.0%	0.4%	13.4%
	①-2. 1세대2주택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3주택 조정대상지역 외)	8%	0.6%	0.4%	9.0%
	①-3. 1세대3주택 이상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4주택 이상 조정대상지역 외)	12%	1.0%	0.4%	13.4%
	② 조정대상지역 내 3억이상 주택 무상취득(다주택자·법인) ※ 1주택자가 배우자, 직계존비속 증여 제외	12%	1.0%	0.4%	13.4%
사치성재산(고급주택)	①-1.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 사단·재단 등)	20%	1.8%	0.4%	22.2%
	①-2. 1세대2주택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3주택 조정대상지역 외)	16%	1.4%	0.4%	17.8%
	①-3. 1세대3주택 이상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4주택 이상 조정대상지역 외)	20%	1.8%	0.4%	22.2%

4) [취득세 표준세율(2%로 적용, 농특세법)+(중과기준세율(2%) x 배수)]의 10%.
단, 국민주택(85㎡이하)은 비과세

③ 부동산 외

구 분				취득세	농특세	지방교육세	합계세율
선박	등기·등록 대상 (소형 제외)	상속취득		2.5%	0.2%	0.1%	2.8%
		상속 외 무상취득		3.0%	0.2%	0.2%	3.4%
		원시취득		2.02%	0.2%	0.004%	2.224%
		수입·주문건조 취득		2.02%	0.2%	0.004%	2.224%
		그 밖의 원인		3.0%	0.2%	0.2%	3.4%
	소형 선박	소형선박		2.02%	0.2%	0.004%	2.224%
		동력수상레저기구		2.02%	0.2%	0.004%	2.224%
	그 밖의 선박			2.0%	0.2%	-	2.2%
차량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경자동차		4.0%	비과세	-	4.0%
		그 외		7.0%			7.0%
	이륜자동차			2.0%			2.0%
	그밖의 자동차	비영업용	경자동차	4.0%			4.0%
			그 외	5.0%			5.0%
		영업용		4.0%			4.0%
	위 외의 자동차			2.0%			2.0%
기계장비	등록대상			3.0%	0.2%	0.2%	3.4%
	등록대상이 아닌 것			2.0%	0.2%	-	2.2%
항공기	미등록 대상 항공기			2.0%	0.2%	-	2.2%
	등록 대상 항공기			2.02%	0.2%	0.004%	2.224%
	최대이륙 중량 5,700kg 이상			2.01%	0.2%	0.002%	2.222%
입목				2.0%	0.2%	-	2.2%
광업권·어업권				2.0%	0.2%		2.2%
골프, 승마, 콘도, 종합체육, 요트 회원권				2.0%	0.2%		2.2%

④ 중과대상

○ 대도시(산업단지 등을 제외한 과밀억제권역)내 법인에 대한 중과

- 본점용 부동산 신·증축 위한 부동산, 공장 신·증설 위한 사업용 과세물건 취득 : 표준세율 + 중과기준세율(2%) × 2배
- 법인설립, 지점설치, 전입 관련 부동산의 취득, 공장 신·증설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 (표준세율 × 3배) - [중과기준세율(2%) × 2배)]

○ 사치성재산에 대한 중과 : 표준세율 + [중과기준세율(2%) × 4배]

⑤ 세율특례 대상

○ 舊 취득세만 비과세되는 경우 : 표준세율 - 중과기준세율(2%)

- (대상) 상속으로 인한 취득(1가구 1주택, 자경농지), 법인합병으로 인한 취득, 공유물 분할, 건축물의 이전,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등

○ 舊 등록세만 비과세되는 경우 : 중과기준세율(2%)

- (대상) 개수로 인한 취득. 과점주주 간주취득, 시설물의 취득, 묘지의 취득, 임시건축물 취득 등

3. 등록면허세

3-1. 등록면허세(등록분)

□ 과세대상

○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행위

※ 등기·등록을 하게 된 원인의 실질적인 정당성, 합법성 여부와 관계없이 외형상 등기·등록의 형식적 요건만 갖추면 과세대상에 해당

□ 납세의무자

○ 공부에 등기·등록을 하는 자

※ 외형상 권리자를 말하며 실질적인 권리자를 말하는 것이 아님

□ 납세지

○ 부동산(부동산 소재지), 선박(선적항소재지), 자동차(사용본거지), 건설기계(등록지), 항공기(정치장소재지), 법인등기(주사무소 등 소재지), 상호(영업장 소재지), 광업권·조광권(광구), 어업권(어장), 저작권 등(주소지), 특허권 등(등록권자주소지), 상표 등(주사무소), 영업허가(영업장), 지식재산권담보권(주소지)

□ 과세표준

○ 부동산·선박·항공기·자동차·건설기계 소유권등기 : 등록 당시의 가액

○ 저당권, 경매신청,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 채권금액

□ 징수방법

○ 등기·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면허세를 등기·등록을 하기 전까지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함

※ 등기·등록을 할 때는 신청서에 등록면허세 영수증을 첨부하여야하고 해당 등기·등록관서는 이를 확인 후 과세관청에 송부하여야함

□ 특별징수

○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의 경우에는 특허청장이 특별징수, 다음 달 말일까지 납세지 관할 지자체의 장에게 납부

※ 「저작권법」에 대한 등록에 대하여는 해당 등록기관의 장이 특별징수

□ 등기종류별 과세표준과 세율

① 부동산 등기

구 분		과세표준	세 율
소유권의 보존		부동산가액	0.8%
소유권의 이전	유상	〃	2.0%
	무상	〃	1.5%
	상속	〃	0.8%
지상권 설정·이전		〃	0.2%
저당권 설정·이전 (지상·전세권에 대한 저당권 포함)		채권금액	0.2%
지역권 설정·이전		요역지가액	0.2%
전세권 설정·이전		전세금액	0.2%
임차권 설정·이전		월 임대차금액	0.2%
경매신청·가압류·가처분·가등기 (부동산권리에 대한 경매신청 등 포함)		채권금액 또는 부동산가액(가등기 한정)	0.2%
그 밖의 등기		매 1건당	6,000원

※ 등록면허세액의 2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가 추가로 부과됨

※ 산출세액이 6,000원 미만일 때는 6,000원

② 법인등기

등기별	원인별	과세표준	세 율
① 상사회사, 영리법인의 설립·합병	·설립과 납입	납입·출자금액, 출자가액	0.4%
	·자본·출자 증가	납입금액·출자가액	0.4%
② 비영리법인의 설립·합병	·설립과 납입	납입 출자총액 또는 재산가액	0.2%
	·출자총액 또는 재산 총액의 증가	납입한 출자 또는 재산가액	0.2%
③ 자산재평가 적립금에 의한 자본·출자금의 증가		증가한 금액	0.1%
④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이전		매 1건당	112,500원
⑤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	40,200원
⑥ ① 내지 ⑤이외의 등기		〃	40,200원

※ 등록면허세액의 2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가 추가로 부과됨

③ 중과대상 및 세율

○ (적용대상) 대도시에 법인 설립·전입, 자본금 증가(설립·전입후 5년이내), 지점 설치

○ (세율) 법인등기 세율의 3배 과세

* 「부동산 등기 산출세액이 6,000원 미만일 때는 6,000원으로, 법인등기의 ①~③ 산출 세액이 112,500원 미만일 때는 112,500원으로 함

3-2. 등록면허세(면허분)

□ 개요

○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인가·등록·지정·검사·검열·심사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 등 행정청의 행위에 부과하는 세금

□ 납세의무자

○ 지방세법 시행령에 과세대상으로 열거된 사항의 면허를 받는 자

- (수시분) 각종 면허를 받거나 변경하는 자

- (정기분) 매년 1월 1일 현재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자

□ 과세 대상(지방세법 시행령 별표에 열거)

○ 면허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제1종 ~ 제5종으로 구분

면허 종류	제1종	제2종	제3종	제4종	제5종
966개	238개	204개	267개	209개	48개

* 도에서는 광역세인 도세이나 특별·광역시에서는 자치구세임

□ 징수 방법

○ (수시분) 면허증서 발급·송달 전까지 지자체장에게 신고납부

○ (정기분) 면허 유효기간이 없거나 1년을 초과하는 경우 매년 1월 1일 갱신된 것으로 보아 정기분 보통징수

□ 납세지 및 비과세

납 세 지	비 과 세
1. 영업장 또는 사무소 소재지 2. 면허받은 자의 주소지 3. 납세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납세지가 국내에 없는 경우에는 면허부여기관 소재지	국가, 지자체, 지자체조합, 외국정부, 주한국제기구, 면허의 단순한 표기변경 등

4. 레저세

□ 개 요

○ 승자투표권이나 승마투표권 등의 판매금액을 과세표준으로 과세하는 세금으로 수익세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경마 등 사행행위에 대하여 과세하는 간접세이며, 소비세

< 레저세 연혁 >

시행연도	1961	1988	1994	1995	2002	2003	2021
명 칭	마권세	마권세	경주·마권세	경주·마권세	레저세	레저세	레저세
과세대상	경마	▪ 경마	▪ 경마, 경륜·경정	▪ 경마, 경륜·경정	▪ 경마, 경륜·경정	▪ 경마, 경륜, 경정, 소싸움경기	▪ 경마, 경륜, 경정, 소싸움경기
비 고	국세에서 지방세(시·군세)로 전환	도세로 전환		본장:장외 (5:5)		대통령령으로 과세대상 확대	경륜·경정 온라인발매 시행

□ 과세대상

○ 경륜·경정(경륜·경정법), 경마(한국마사회법), 전통소싸움(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 사업장 분포 : 경마 (과천, 부산경남, 제주, 장외 27개소), 경륜 (부산, 창원, 광명, 장외 17개소), 경정 (하남, 장외 16개소), 소싸움경기(청도)

□ 납세의무자

○ 과세대상 사업을 영위하는 자

- 한국마사회(경마), 국민체육진흥공단·부산지방공단 스포원·창원레포츠파크(경륜), 국민체육진흥공단(경정), 청도공영사업공사(소싸움경기)

□ 납세지

○ 과세대상 사업장과 장외발매소가 소재한 광역시·도(모바일 발매는 전국 시·도)

□ 과세표준 및 세율

○ 승자투표권·승마투표권 등 발매금 총액의 100분의 10

□ 납부 방법

○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소싸움투표권 등의 발매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본장 및 장외발매소 소재지에 각각 신고납부

- (본장) 사업장 소재지에 모두 신고납부
- (장외발매소) 본장과 장외발매소 소재지에 50%씩 각각 신고·납부. 다만, 본장이 신설된 경우 5년간 본장 소재지에 80% 신고·납부
- (온라인발매) 본장 소재지 50% 전국 지자체에 50% 안분 신고·납부. 다만, 본장이 신설된 경우 5년간 본장 소재지에 80% 신고・납부

구분		광역단체간 배분		징수교부금 교부
본장 발생분	100% →	본장 소재 광역단체	3% →	본장 소재 기초단체
장외 발생분	50% →	본장 소재 광역단체	3% →	본장 소재 기초단체
	50% →	장외 소재 광역단체	3% →	장외 소재 기초단체 ※ 징수교부금과 별도로 해당 장외발매소에서 발생한 레저세 징수액의 20%를 우선 배분('22년~)
온라인 발생분	50% →	본장 소재 광역단체	3% →	본장 소재 기초단체
	50% →	전국 광역단체	3% →	전국 기초단체

5. 담배소비세

□ 개 요

○ 제조한 담배 또는 수입한 담배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제조자 또는 수입한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 간접세이며 소비세

※ (담배)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 및 연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료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지방세법 제47조)

□ 납세의무자

○ 담배를 제조하는 자

※ KT&G, PM(필립모리스), BAT(브리티쉬 아메리칸 타바코), JTI(재팬 타바고 인터내셔널)

○ 담배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

○ 외국으로부터 담배를 반입하는 자(여행자 등)

□ 납세지

○ 담배가 판매된 소매인의 영업장 소재지, 국내로 반입되는 세관 소재지

□ 과세 대상

○ 제조담배 또는 수입 등 국내 반입한 담배

□ 과세표준 및 세율

○ (세율) 개비수, 중량 또는 니코틴 용액의 용량당 정액세율(종량세)

<table>
<tr><th colspan="3">과세대상</th><th colspan="2">과세단위</th><th>세 율</th></tr>
<tr><td rowspan="8">피우는
담 배</td><td colspan="2">제1종 궐련</td><td colspan="2">20개비당</td><td>1,007원</td></tr>
<tr><td colspan="2">제2종 파이프담배</td><td colspan="2">1g당</td><td>36원</td></tr>
<tr><td colspan="2">제3종 엽궐련</td><td colspan="2">〃</td><td>103원</td></tr>
<tr><td colspan="2">제4종 각련</td><td colspan="2">〃</td><td>36원</td></tr>
<tr><td rowspan="3">제5종 전자담배</td><td>니코틴용액</td><td colspan="2">1㎖당</td><td>628원</td></tr>
<tr><td rowspan="2">연초 및 연초
고형물</td><td>궐련형</td><td>20개비</td><td>897원</td></tr>
<tr><td>기타</td><td>1g당</td><td>88원</td></tr>
<tr><td colspan="2">제6종 물담배</td><td colspan="2">1g당</td><td>715원</td></tr>
<tr><td colspan="3">씹거나 머금는 담배</td><td colspan="2">〃</td><td>364원</td></tr>
<tr><td colspan="3">냄새 맡는 담배</td><td colspan="2">〃</td><td>26원</td></tr>
</table>

※ 담배소비세 세율 변동 현황(궐련 20개비당)

- ('89) 360원 → ('94) 460원 → ('01) 510원 → ('05) 641원 → ('15) 1,007원

○ 담배 제세부담금 현황(궐련 기준)

구 분		< '14년 인상 전 > 금액	비중		< '15년 인상 후 > 금액	비중	< 증가 > 금액
제세부담금 계		1,550원	100%		3,318원	100%	1,768원
지방세	소계	**962원**	**62.1%**		**1,450원**	**43.7%**	**488원**
	담배소비세	641원	41.4%	⇒	1,007원	30.3%	366원
	지방교육세*	321원	20.7%		443원	13.4%	122원
국세	소계	**588원**	**37.9%**		**1,868원**	**56.3%**	**1,280원**
	건강증진부담금	354원	22.8%		841원	25.3%	487원
	폐기물부담금	7원	0.5%		24원	0.7%	17원
	부가가치세	227원	14.6%		409원	12.3%	182원
	개별소비세(신설)				594원	18.0%	594원
원가 및 이윤 등		950원			1,182원		232원
판매가격		2,500원			4,500원		2,000원

* 지방교육세율: '14년 담배소비세의 50% → '15년 43.99%

○ 궐련 vs 궐련형 전자담배* 제세부담금 비교('18.1.1. 시행)

구 분	판매가격	원가 등	제세부담금 합 계	담 배 소비세	지 방 교육세	건강증진 부 담 금	폐기물 부담금	개 별 소비세	부 가 가치세
궐 련	4,500원	1,182원	3,318원	1,007원	443원	841원	24원	594원	409원
궐련형 전자담배 ('18년 시행)	**4,300원**	**1,316원**	**2,986원**	**897원**	**395원**	**750원**	24원	**529원**	391원

* '17년 출시 당시는 고체형 전자담배 세율(1g당 88원)로 과세

6. 지방소비세

□ 도입 및 확대

○ (도입) 지방재정의 취약성 보완 및 경기침체에 따른 지방세수의 감소 보전을 위해 부가가치세의 5%를 세액으로 하는 지방소비세 도입('10)

○ (확대) 부동산 거래 활성화 대책에 따른 재정보전 및 안정적인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지방소비세 세율을 점진적으로 인상

- ('14) 주택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 세율*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액 보전을 위해 지방소비세 6%p(5%→11%) 인상

 * 9억초과(4%), 9억이하(2%) → 9억초과(3%), 6~9억(2%), 6억이하(1%)

- ('19~'23) 국세와 지방세 구조개선을 위한 1·2단계 재정분권 추진방안에 따라 지방소비세 14.3%p 단계적 인상

※ (1단계) '19년4%p(11%→15%), '20년6%p(15%→21%), 총 10%p 인상
(2단계) '22년2.7%p(21%→23.7%), '23년1.6%p(23.7%→25.3%), 총 4.3%p 인상

□ 과세 대상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 (부가가치세법 제4조)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및 용역의 정의】
▸ (재화) 재산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
▸ (용역)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

< 부가가치세와 판매세(sales tax) >

부가가치세와 판매세는 소비세이며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는 "전단계세액공제법"을 채택하고 있다. 이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주는 방법으로 과세자료를 포착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제도 이다.

반면 판매세는 미국에서 채택된 제도이며 이는 최종생산물의 판매자만이 판매액의 일정율로 세금을 부담하며 각 주마다 세율이 다를 수 있다.

□ 납세의무자

○ 「부가가치세법」 제2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

□ 과세표준 및 세액 : 부가가치세 총액의 25.3%

○ (과세표준)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부가가치세법」및 다른 세법 규정에 따른 감면·공제 세액을 빼고 가산세를 더한 금액

○ (세액) 과세표준(부가가치세 총액)의 100분의 25.3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 신고 및 납입

○ (납세자) 부가가치세와 지방소비세의 합계 금액으로 신고·납부·경정·환급

○ (특별징수의무자)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이 자치단체를 대신하여 지방소비세를 징수하여 다음달 20일까지 납입관리자*에게 납입

* 인구대비 지방소비세 비율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시·도지사

○ (납입관리자)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납입받은 지방소비세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안분기준에 따라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자치단체 및 시·도교육청에 납입

<지방소비세 납입 업무 흐름>



□ 안분기준

○ 5%p : 지방소비세 총액에서 각 시·도별 소비지수*와 가중치**를 곱한 값의 전국 합계액에서 해당 시·도의 비중을 적용하여 산출

*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민간최종소비지출을 백분율로 환산한 각 시·도별 지수

** 수도권 100%, 수도권 외 광역시 200%, 수도권 외 도 300%

○ 6%p : 취득세 인하에 따른 취득세, 지방교육세 감소 규모와 내국세율 인하에 따른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 규모 고려하여 안분

< 취득세 등의 보전 부분(6%p분) 구성항목 및 안분기준 >

<table>
<tr><th>취득세 감소분</th><th>지방교육세
감소분</th><th colspan="2">지방교부세
감소분</th><th rowspan="2">교육
전출금
공제
***</th><th>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분</th></tr>
<tr><td>취득세 감소비율(98%)*
+ 사회복지수요(2%)**</td><td>취득세 감소비율</td><td colspan="2">보통교부세
배분비율(19.24%)</td><td>보통교부금
배분비율(20.27%)</td></tr>
<tr><td></td><td></td><td>시·도 몫</td><td>시·군·구 몫</td><td></td><td></td></tr>
</table>

* 취득세 세율인하에 따른 주택유상거래 취득세 감소분 전국 총액(직전 3년간)에서 시도별 감소분이 차지하는 비율

** 시·도의 5세이하 및 65세이상 인구가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율

*** (시·도별 지방교육세 보전금액 + 시·도별 지방교부세 보전금액) × 시도별 법정전출비율(3.6～10%)

○ 10%p('[19]4%p+'[20]6%p) :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사업 전환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을 한시적('20～'26년)으로 보전하고 잔여분은 5%p 안분기준과 동일하게 적용

<table>
<tr><th colspan="2">① 전환사업 보전분(3.6조/정액)</th><th colspan="2">② 재정조정분(0.9조/정액)</th><th>③ 잔여분</th></tr>
<tr><td>㉮시·도
(약2.8조)</td><td>㉯시·군·구
(약0.8조)</td><td>㉰조정교부금
(약0.8조)</td><td>㉱교육전출금
(약0.1조)</td><td>시·도 소비지출 x
가중치(1:2:3)</td></tr>
</table>

○ 4.3%p('22 2.7%p+'23 1.6%p) : 2단계 재정분권 전환사업의 소요비용 등을 보전('~'26년)하고, 잔여분은 시·도에 60%, 시·군·구에 40% 안분*

* 소비지수 및 가중치(①기준)에 따라 시·도별로 할당한 후, 본청에 60%를 귀속하고 나머지 40%를 관할 시·군·구 간 인구·재정자주도를 고려하여 안분

<table>
<tr><th colspan="2">Ⓐ 전환사업 보전분(2.3조/정액)</th><th colspan="2">Ⓑ
재정조정분(0.7조/정액)</th><th colspan="2">잔여분</th></tr>
<tr><td>㉮시·도
(약1.9조)</td><td>㉯시·군·구
(약0.3조)</td><td>㉰조정교부금
(약0.6조)</td><td>㉱교육전출금
(약0.1조)</td><td>㉲60%
소비지출x가중치</td><td>㉳40%
인구·재정자주도</td></tr>
</table>

Ⓐ (전환사업 보전분)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을 통해 자치단체로 배분, 단, 보전분 전액이 전환사업 수행에 사용될 수 있도록 시·도 보전분을 조정교부금*·교육전출금** 산정 모수에서 제외

* 시·군 조정교부금 = 지방소비세 x (27또는47%), 자치구 조정교부금 = 보통세 x 일정률(조례)

** 교육전출금 = 보통세 x (3.6% ~ 10%)

Ⓑ (재정조정분) Ⓐ에 따라 모수에서 제외되어 감소한 조정교부금·교육전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군·구와 교육청에 보전

7. 주민세

□ 개 요

○ (과세 체계)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으로 구성

세목 구분	납세의무자	세율	세율조정범위
개인분	주소를 둔 개인	1만원 이하	제한세율
사업소분	사업소를 둔 사업주	(기본세율) 5만원~20만원 + (연면적) 250원/㎡	50% 가감조정
종업원분	사업소를 둔 사업주	월지급급여액의 0.5%	50% 가감조정

○ (세수 귀속) 특·광역시세 및 시·군세

※ 광역시의 사업소분·종업원분은 구세

구분	특별시	광역시	도
개인분	특별시세	광역시세	시·군세
사업소분	특별시세	자치구세	시·군세
종업원분	특별시세	자치구세	시·군세

□ 개인분(舊 개인균등분)

○ (납세의무자)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

※ 납세의무 제외: ①「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②미성년자, ③세대원 및 이에 준하는 개인, ④외국인등록을 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

○ (세 율) 1만원 이하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결정(제한세율)

※ 주민 청구가 있는 경우 1.5만원 내에서 조례에 따라 읍면동별로 세율을 달리 정할 수 있음

○ (징수방법) 과세기준일(7.1.) 주소지 관할 자치단체장이 보통징수

○ (납 기) 8.16. ~ 8.31.

□ 사업소분(舊 개인사업자·법인균등분 + 舊 재산분)

○ (사업소의 개념)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

인적 설비	계약형태나 형식에 불구하고 당해 장소에서 그 사업에 종사 또는 근로를 제공하는 자
물적 설비	허가와 관계없이 현실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축물·기계장치 등이 있고, 이러한 설비들이 지상에 고착되어 현실적으로 사무·사업에 이용되는 것
계속	최소한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것

○ (납세의무자) ①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개인(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000만원 이상), ②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법인

○ (납세지) 과세기준일(7.1.) 현재 각 사업소 소재지

○ (과세표준·세율) 과세표준은 사업소 및 그 연면적으로 하며, 기본세율분과 연면적에 대한 세율분을 합산하여 세액 산출

기본세율		
개인		5만원
법인	자본금액·출자금액 30억원 이하	5만원
	자본금액·출자금액 30억원 ~ 50억원	10만원
	자본금액·출자금액 50억원 초과	20만원
	기타	5만원
탄력세율 적용(조례로 ±50% 가감)		

연면적에 대한 세율	
사업소 연면적 330㎡ 초과	250원/㎡ (오염물질 배출사업소는 500원/㎡)
사업소 연면적 330㎡ 이하	-
탄력세율 적용(조례로 ±50% 가감)	

○ (중과) 오염물질 배출사업소로서 「물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선명령 등을 받은 사업소는 연면적에 대한 세율 500원/㎡ 적용

○ (징수방법) 과세기준일(7.1.) 현재 사업소 소재 자치단체에 신고납부

○ (납　　기) 8.1. ~ 8.31.

□ 종업원분

○ (납세의무자)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

* 사업소에 근무하거나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임직원, 그 밖의 종사자

○ (납세지) 급여를 지급한 날* 현재 사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소별로 부과

* 월 2회 이상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급여를 지급한 날

** 사업소를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하는 날 현재 사업소 소재지

○ (과세표준·세율) 종업원에게 지급한 그 달의 급여총액의 0.5%

○ (면세점) 최근 12개월간 해당 사업소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이 “1억 5,000만원” 이하인 경우

○ (징수방법) 급여지급일 현재의 사업소 소재지(폐업 시 폐업일 현재 사업소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별로 신고납부

○ (납　　기) 다음달 10일까지

8. 지방소득세

□ 과세대상 : 개인지방소득과 법인지방소득으로 구분

○ 개인지방소득 : 종합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 법인지방소득 : 각 사업연도소득, 토지 등 양도소득, 미환류소득, 청산소득

□ 납세의무자

○ 소득세 및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개인 및 법인)

구 분	**거주자*, 내국법인** *국내에 주소 또는 183일 이상 거소를 둔자	**비거주자, 외국법인**
과세범위	국내·외 원천소득	국내 원천소득

□ 과세기간 및 사업연도

○ 개인지방소득세 :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소득세법」 제5조)

○ 법인지방소득세 : 법령·정관 등에서 정하는 1회계기간(「법인세법」 제6조)

※ 전체 법인의 약 97.5%가 12월 결산법인(1.1.~12.31.)에 해당

□ 세액공제 및 감면

○ (개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7조의2에 따라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세액공제·감면되는 금액의 10%를 공제·감면

○ (법인) 세액공제·감면 규정 없음

□ 과세표준 및 세율

과세표준		소득세·법인세법 상 과세표준과 동일	
세율	개인분	1,400만원 이하	0.6%
		1,400만원 ~ 5,000만원	1.5%
		5,000만원 ~ 8,800만원	2.4%
		8,800만원 ~ 1억5천만원	3.5%
		1억5천만원 ~ 3억원	3.8%
		3억원 ~ 5억원	4.0%
		5억원 ~ 10억원	4.2%
		10억원 초과	4.5%
	법인분	2억원 이하	0.9%
		2억원 ~ 200억원	1.9%
		200억원 ~ 3천억원	2.1%
		3천억원 초과	2.4%
	특별징수	소득세·법인세액의 10%	
	탄력세율	지자체별로 세율의 50% 가감 적용 가능	

□ 납세지(해당 특·광역시, 시·군)

○ (개인) 원칙적으로 주소지이며 각 종류별 특별징수 납세지가 규정

※ 소득세는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지정할 수 있으나 지방소득세는 해당 없음

< 소득종류별 개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납세지 >

구 분	근로·퇴직소득*	연금소득	건강보험공단 지급 사업소득	그 밖의 소득 (본점에서 원천징수 일괄처리)
납세지	근무지	주소지	지급받는 사람의 사업장 소재지	소득 지급지 (예외) 본점에서 한꺼번에 지급하는 복권 당첨금 등: 복권 투표권 판매지

* 퇴직소득을 연금계좌에서 연금외수령 하는 경우의 납세지는 주소지

○ (법인) 각 사업장 소재지(종업원 수, 건축물 연면적 1:1 기준 안분)

- 각 사업장 소재지에 안분비율대로 신고·납부해야 함

< 법인지방소득세 안분 계산식 >

$$\left[\left(\frac{\text{관할 지방자치단체 안 종업원수}}{\text{법인의 총 종업원수}}\right) + \left(\frac{\text{관할 지방자치단체 안 건축물 연면적}}{\text{법인의 총 건축물 연면적}}\right)\right] \div 2$$

□ 신고납부 방법

○ (신고납부) 관할 지자체에 신고·납부

※ 개인지방소득세는 집중신고기간에 세무서(지자체 공무원 파견)에서도 신고·납부 가능

개인	근로소득	매월 특별징수(원천징수) 후 다음해 2월에 연말정산
	사업소득 등 종합소득	다음해 5월에 확정신고·납부
	양도소득	양도소득 신고기한에 2개월을 더한 날까지 예정신고·납부 후 다음해 7월 말까지 확정신고·납부(누진분 추가납부)
법인	사업연도소득 등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법인세는 3개월) 이내 신고·납부
	청산소득	해산 시 잔여재산가액 확정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납부

○ (특별징수) 특별징수의무자(임금, 이자 등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관할 지자체에 납부

- 징수한 날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

※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이자·배당소득)가 '15.1.1.부터 시행

○ (결정·경정) 관할 지자체에서 결정·경정·수시부과

※ 개인지방소득세는 2019년 말까지 세무서에서 결정·경정·수시부과

9. 재산세

□ 개요

○ (개념) 납세자가 소유한 재산의 경제적 교환가치에 담세력을 두어 과세하는 조세

○ (구성) 재산세(본세) + 도시지역분(舊 都市計劃稅)

※ 2010년까지는 재산세와 舊 도시계획세(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비용 충당을 위해 과세한 목적세)로 각각 과세 ⇒ 지방세목 간소화 추진에 따라 재산세로 통합

○ (세수 귀속) 시·군세 및 구세(단, 서울*은 공동과세(특별시세 및 구세))

* 서울 : (본세) 50%는 특별시세(단, 특별시세는 전액 각 구로 안분교부), 나머지 50%는 구세, (도시지역분) 전액 특별시세

□ 과세대상

○ (본세)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 토지의 과세대상 구분

구 분	과 세 대 상
종합합산 과세대상	• 별도합산과세 대상과 분리과세 대상을 제외한 토지
별도합산 과세대상	•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건축물 부속토지 •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연구·검사용 토지, 공지상태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17종)
분리과세 대상(합산배제)	•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 •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해 필요한 임야 및 종중 소유 임야 • 골프장용 토지와 고급오락장용 토지 • 공장의 부속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 있기 전에 취득이 완료된 토지 • 위와 유사한 토지(41종)

○ (도시지역분) 도시지역* 내 재산세 과세대상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건축물 및 주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산세(도시지역분)를 과세하기 위해 고시한 지역

< (참고) 재산세 과세대상 중 도시지역분 제외 대상 >
① 토지 :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단, 지상건축물, 골프장, 유원지, 기타 이용시설이 있는 토지는 제외)
② 주택 : 개발제한구역 내 주택(단, 고급주택은 제외)

□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6.1) 현재 사실상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

- 신탁재산 :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수탁자

○ 사실상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재산의 사용자

□ 납세지

○ (토지·건축물·주택) 소재지, (선박) 선적한 소재지, (항공기) 정치장의 소재지

□ 세액산출 방식

과세 표준		세 율		산출 세액	세부담상한 적용	결정 세액
시가표준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		=		→	

□ 과세 표준

○ 토지・건축물・주택 :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가액

- 시가표준액 : (토지) 공시지가, (건축물) 시가표준액, (주택)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 토지・건축물 70%, 주택 60%*

* ('22년) 1세대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 45% 적용
('23·'24년) 1세대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 45% 이하 적용(공시가격 3억 이하 43%, 3억초과 6억이하 44%, 6억 초과 45%)

○ 선박, 항공기 : 시가표준액

□ 세율

○ 토지

- 종합합산대상

과세표준	세 율
5,000만원 이하	0.2%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0만원 + 5,000만원 초과금액의 0.3%
1억원 초과	25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0.5%

- 별도합산대상

과세표준	세 율
2억원 이하	0.2%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0만원 + 2억원 초과금액의 0.3%
10억원 초과	280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0.4%

- 분리과세 대상

·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 0.07%

·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 4%

· 그 밖의 토지 : 0.2%

○ 건축물

- 일반건축물 : 0.25%

-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 4%

- 주거지역 내의 공장 : 0.5%

○ 주 택

- 일반

과세표준	세 율
6,000만원 이하	0.1%
6,000만원 초과 1.5억원 이하	6만원 + 6,000만원 초과금액의 0.15%
1.5억원 초과 3억원 이하	19.5만원 + 1.5억원 초과금액의 0.25%
3억원 초과	57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0.4%

- 1세대 1주택 세율 특례(공시가격 9억원 이하, '26년까지 한시적용)

과세표준	세율
6,000만원 이하	0.05%
6,000만원 초과 1.5억원 이하	3만원 + 6,000만원 초과금액의 0.1%
1.5억원 초과 3억원 이하	12만원 + 1.5억원 초과금액의 0.2%
('21년) 3억원 초과 5.4억원* 이하	42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0.35%
('22~24년) 3억원 초과 4.05억원** 이하	42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0.35%

* 공정시장가액비율 60%, ** 공정시장가액비율 45%

○ 선박, 항공기 : 0.3%(단, 고급선박 5%)

○ 도시지역분 : 0.14%

□ 세부담상한제 ※'28년까지 유지 후 '29년 폐지(지방세법 제19230호('23.3.14.)부칙 §15)

○ 당해연도 재산세액이 전년 대비 전년도 재산세액 대비 일정비율(세부담상한율)을 초과하여 증가하지 않도록 한도를 설정

- 토지·건축물 : 150%

- 주택 : 공시가격 3억 이하 105%, 3억~6억 110%, 6억 초과 130%

○ 상한 적용방식

① (산출세액) 시가표준액(부동산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 세율
② (세부담상한) 직전년도세액 × 세부담상한율(105~150%)
⇒ **(납부세액) "①"과 "②" 중 적은 금액**으로 부과징수
※ 본세와 도시지역분에 각각 적용

□ 과세기준일 : 매년 6월 1일

□ 징수 방법

○ 보통징수

○ 납기

구 분		납 기	비 고
토 지		매년 9. 16. ~ 9. 30.까지	
건축물		매년 7. 16. ~ 7. 31.까지	
주택	제1기분	매년 7. 16. ~ 7. 31.까지	20만원 이하 1기 일시납*
	제2기분	매년 9. 16. ~ 9. 30.까지	
선 박		매년 7. 16. ~ 7. 31.까지	
항공기		매년 7. 16. ~ 7. 31.까지	

* 20만원 이하 범위 내에서 각 지자체별 조례로 규정

10. 자동차세

10-1. 자동차세(소유분)

□ 개 요

○ (개 념) 자동차 소유에 따른 재산세적 성격 및 도로 손상, 교통혼잡 유발 등 사회적 비용 발생에 따른 원인자부담적 성격

○ (세수귀속) 특·광역시세 및 시군세

□ 과세 대상

○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신고된 차량

○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중 차량과 유사한 것*

* 덤프·콘크리트믹서트럭

< 비과세 대상 >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방·경호·경비·교통순찰·소방·환자수송·청소·오물제거·도로공사를 위해 제공하는 자동차

▶ 그 밖에 주한외교기관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 수출된 자동차,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자동차, 폐차되었음이 입증된 자동차, 강제집행절차가 진행 중인 자동차, 매매용 자동차 등

□ 납세의무자

○ 자치단체 내 등록·신고된 자동차의 소유자(등록원부상 소유자)

※ 소유자 사망 시,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 또는 연장자 순으로 납세의무 부여

□ 과세표준 및 세율

○ 차종(승용, 승합, 화물 등)과 용도(영업용, 비영업용)에 따라 과세

① 승용자동차 : 배기량(cc) 기준 차등과세

영업용		비영업용	
1,600cc 이하	cc당 18원	1,000cc 이하	cc당 80원
2,500cc 이하	cc당 19원	1,600cc 이하	cc당 140원
2,500cc 초과	cc당 24원	1,600cc 초과	cc당 200원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3년차부터 연 5%씩, 최대 50%까지 세액 경감

※ (예) 1998cc 쏘나타 2014년식(상반기등록) → ('19년) 年세액 319,680원(=1998×200×80%)

② 그 밖의 자동차 : 크기 등에 따른 차등과세

차 종	과세기준	영업용	비영업용
기타 승용	(단일세율)	20,000원	100,000원
승 합	규모 등에 따라 차등	25,000원～100,000원	65,000원～115,000원
화 물	적재정량에 따라 차등	6,600원～45,000원	28,500원～157,500원
특 수	소형/대형	13,500원/36,000원	58,500원/157,500원
3륜 이하	(단일세율)	3,300원	18,000원

※ 배기량이 없는 전기, 수소차는 차종에 관계없이 비영업용인 경우 10만원 부과

□ 징수 방법

○ 자동차 등록지 지자체에서 보통징수(납기가 있는 달의 1일 기준)

- (정기분) 연세액을 1/2로 나누어 제1기분은 6월, 제2기분은 12월에 징수

※ 납세의무자 신청시, 연세액의 1/4씩 분할 납부 가능

구 분	과세기간	납 기	분할신청시
제1기분	1～6월	6.16～30	3.16～31 6.16～30
제2기분	7～12월	12.16～31	9.16～30 12.16～31

- (수시분) 수시분 사유* 발생시, 해당 기분의 자동차세를 일할계산하여 징수

* 자동차를 취득(신규·이전)하거나 말소하는 경우, 과세대상 자동차가 비과세·감면대상이 되는 경우, 영업용 자동차가 비영업용이 되는 경우 등

□ 연납제도

○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는 경우, 연세액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세액의 5% 공제

신고납부시기	공제기간	납부 할 세액	공제액
1.16～1.31	2월～12월	연세액	연세액 × 334/365 × 5%
3.16～3.31	4월～12월	연세액	연세액 × 275/365 × 5%
6.16～6.30	7월～12월	연세액의 1/2	연세액 × 184/365 × 5%
9.16～9.30	10월～12월	연세액의 1/2	제2기분 세액×92/184×5%

※ 자동차세 선납에 대한 이자보전 성격에 부합하도록 변화된 경제환경 등을 반영하여 연납공제율을 연차적으로 축소(～'22년:10%→'23년:7%→'24년:5%→'25년 이후:3%)

10-2. 자동차세(주행분)

□ 개 요

○ (개념) 휘발유,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부과되는 유류세의 일종으로,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부가세 형태로 과세('00년 도입)

□ 납세의무자

○ 교통·에너지·환경세(이하 '교통세')의 납세의무자

- 정유회사(5개사 : SK, GS, 한화, 에스오일, 현대) 및 유류수입자

□ 납세지

○ 교통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 세율구조 및 리터당 세율

○ 교통세액의 26%(표준세율은 36%) : 휘발유 137.5원/ℓ, 경유 97.5원/ℓ

- 교통세는 유가 등락에 무관하며, 「정액세」 구조임

교통세 (정액세)	휘발유 529원/ℓ 경 유 375원/ℓ

× **주행세(26%)** * 표준세율 36%의 ±30%

➡

주행세	**휘발유 137.54원/ℓ** **경 유 97.5원/ℓ**

※ 1) 교통세 20% 세율인하('21.11.12.~'22.04.30.) : 주행세 변경(휘발유 137.54→109.98, 경유 97.5→78.00)
2) 교통세 30% 세율인하('22.05.01.~'22.06.30.) : 주행세 변경(휘발유 137.54→ 96.20, 경유 97.5→68.38)
3) 교통세 37% 세율인하('22.07.01.~'22.12.31.) : 주행세 변경(휘발유 137.54→ 86.45, 경유 97.5→61.88)
4) 교통세(휘발유 25%, 경유 37%) 세율인하('23.01.01.~'24.06.30.) : 주행세 변경(휘발유 137.54→103.14, 경유 97.5→61.88)
5) 교통세(휘발유 20%, 경유 30%) 세율인하('24.07.01.~'24.08.31.) : 주행세 변경(휘발유 137.54→110.03, 경유 97.5→68.25)

□ 과세체계

휘발유 1,487.35원/ℓ	⇦	소비자가격	⇨	**경유** 1,277.77원/ℓ

483.42원(32.5%)		⇦	국제상품가격	⇨	464.56원(36.4%)	
<제세금> 911.61원 (61.3%)	529원		교통·에너지·환경세		375원	<제세금> 674.85원 (52.8%)
	137.54원		**주행세(교통세×26%)**		**97.5원**	
	79.35원		교육세(교통세×15%)		56.25원	
	135.21원		부가세(공급가×10%)		116.16원	
	14.50원		관 세(수입가×3%)		13.94원	
	16원		수입부과금(16원/ℓ)		16원	
92.32원(6.2%)		⇦	마진 등	⇨	138.36원(10.8%)	

□ 징수방법

○ 정유업자는 반출 다음달 말일, 수입업자는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교통세의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징수의무자)에게 신고납부

납세의무자	→	특별징수의무자	→	주된 특별징수의무자	→	세 입
정유업자, 수입업자		제조장·보세구역 관할 지자체장		울산시장		소유분 자동차세 과세권한이 있는 지자체
반출 다음달 말일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5일내		징수다음달 10일까지		송금 받은 달 25일 이내까지		특광역시, 시·군

□ 세수배분

○ (배분체계) 울산시장(주된 특별징수의무자)이 특·광역시 및 시·군에 배분

- (1순위) 정액보전금(9,830억원)* : 소유분(비영업용) 자동차세 징수액에 따라 배분

* 한미FTA 협상, 경차 취득세 감면 등 국가정책에 따라 감소된 지방세 보전액

<정액보전금 산출내역 : 9,830억원>
① '98년 한미자동차 MOU에 따른 자동차 세율 인하 : 2,900억
② '01년 자동차분 면허세 폐지 : 2,000억
③ '01년 자동차 차령감면 : 3,342억
④ '04년 경차 취득세 감면 : 200억
⑤ '12년 한미FTA에 따른 자동차 세율 인하 : 1,388억

- (2순위) 유가보조금* : 전년도 집행실적 및 당해연도 소요액에 따라 배분

* 유류세제 개편('01년, '05년)에 따라 운수업계 유류세인상분 지원

□ 세출 개요

○ 정액보전금(9,830억원)은 지방자치단체 일반재원으로 사용하나, 유가보조금은 해당 목적에 한정* 사용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유가보조금에만 사용하도록 규정(불용시 이월)

11. 지역자원시설세

□ 개 요

○ (개념) 지역 부존자원 보호·보전, 주민생활환경 개선, 지역개발사업 재원 확보 및 소방사무 소요 제반비용 충당을 위해 과세하는 목적세

※ '21년도부터 소방분, 특정자원분, 특정시설분으로 분류체계 개편

○ (세수 귀속) 특·광역시세 및 시·도세

□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 발전용수 >

○ (과세대상) 발전용수로서 직접 수력발전에 이용되는 흐르는 물

※ ①양수발전용수 및 ②발전시설용량이 시간당 1만kW 미만인 소규모 발전사업자가 시간당 발전가능 총발전량 중 3천kW 이하의 전기를 생산하는 데에 드는 물은 제외

○ (납세의무자) 흐르는 물을 이용하여 직접 수력발전을 하는 자

○ (과세표준·세율) 발전에 이용된 물 10㎥당 2원

○ (부과·징수) 신고납부 대상이며,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함

* (예)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발전에 이용된 물에 대해서 다음 달 말일까지 발전소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에 신고하고 납부(「경기도 도세 조례」)

< 지하수 >

○ (과세대상) 지하수로서 먹는물*, 목욕용수, 그 밖의 용수(온천용수 포함)

* 먹는물로 판매하기 위한 과정에서 사용되는 지하수 포함

○ (납세의무자) 지하수를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採水)하는 자

○ (과세표준·세율) ①먹는 물로 판매하기 위해 채수된 물 200원/㎥, ②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해 채수된 온천수 100원/㎥, ③기타 20원/㎥

○ (부과·징수) 신고납부 대상이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음*

* (예) 시장·군수는 분기별로 채수한 지하수에 대해서 보통징수(「경상남도 도세 조례」)

< 지하자원 >

○ (과세대상) 지하자원으로서 채광(採鑛)된 광물

※ ①석탄 및 ②최근 1년간 매출액이 10억원 이하인 광산에서 채광된 광물은 제외

○ (납세의무자) 지하자원을 채광하는 자

○ (과세표준·세율) 채광된 광물가액의 0.5%

○ (부과·징수) 신고납부 대상이며,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함

* (예)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채광된 광물에 대하여 다음달 말일까지 광구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납부(「강원도 도세 조례」)

□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 컨테이너 >

○ (과세대상)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는 컨테이너

○ (납세의무자)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여 컨테이너를 입항·출항시키는 자

○ (과세표준·세율) 컨테이너 티이유(TEU)당 1만5천원

○ (부과·징수) 신고납부 대상이며,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함

* 현재 컨테이너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고 있는 시·도는 없음

< 원자력발전 >

○ (과세대상) 원자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

○ (납세의무자) 원자력을 이용하여 발전을 하는 자

○ (과세표준·세율)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1원

○ (부과·징수) 신고납부 대상이며,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함

* (예) 매월 산출한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다음 달 말일까지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납부(「경상북도 도세 조례」)

< 화력발전 >

○ (과세대상) 발전시설용량이 시간당 1만kW 이상인 화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

○ (납세의무자) 연료를 연소하여 발전을 하는 자

○ (과세표준·세율)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0.3원(24년부터 0.6원)

○ (부과·징수) 신고납부 대상이며,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함

* (예) 매월 산출한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다음 달 말일까지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납부(「충청남도 도세 조례」)

구 분	과세대상	세 율	세율조정범위
특정 자원분	발전용수	10㎥당 2원	50%가감조정
	지하수	먹는물 : 200원/㎥ / 목욕용 : 100원/㎥ / 기타 : 20원/㎥	50%가감조정
	지하자원	채광된 광물가액의 0.5%	50%가감조정
특정 시설분	컨테이너	컨테이너 TEU당 1만5천원	50%가감조정
	원자력발전	발전량 kWh당 1원	-
	화력발전	발전량 kWh당 0.3원	-

< 지역자원시설세와 선택적 과세제도 >

○ **(선택적과세제도)** 납세의무자, 과세물건, 과세표주, 세율 등 과세요건은 지방세법에서 규정(과세요건법정주의)

- 부과·징수절차 등 집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지방세법이 정한 범위내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과세자주권 행사

☞ 지역자원시설세는 지방세법에 정해진 범위 내에서 각 지역 특성에 적합한 대상을 선택하여 과세함으로써 재정수요를 충당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과 책임성을 극대화하는 수단이 되고 있음

□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 (과세대상) 소방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의 건축물* 및 선박

* 주택의 건축물 부분을 포함

○ (납세의무자) 건축물 또는 선박의 소유자

○ (과세표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

※ 건축물 : 시가표준액 × 공정시장가액비율(70%)
주택의 건축물 부분 : 시가표준액(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1의2호를 준용하여 지자체장이 산정한 가액) × 공정시장가액비율(60%, 43~45%)
선박 : 시가표준액

○ (세율) 과세표준에 따라 0.04% ~ 0.12%의 차등세율

과세표준	세율
600만원 이하	0.04%
600만원 초과 1,300만원 이하	2,400원 + 600만원 초과금액의 0.05%
1,300만원 초과 2,600만원 이하	5,900원 + 1,300만원 초과금액의 0.06%
2,600만원 초과 3,900만원 이하	13,700원 + 1,300만원 초과금액의 0.08%
3,900만원 초과 6,400만원 이하	24,100원 + 3,900만원 초과금액의 0.1%
6,400만원 초과	49,100원 + 6,400만원 초과금액의 0.12%

※ 저유장, 주유소, 정유소, 유흥장, 극장 및 4층 이상 10층 이하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위험 건축물 : 2배 중과(0.08~0.24%)

※ 대형마트, 복합상영관, 백화점, 호텔, 1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 : 3배 중과(0.12~0.36%)

○ (납기) 재산세와 동일

※ 재산세의 납기와 같을 때는 재산세의 납세고지서에 나란히 적어 고지할 수 있음

○ (분납) 납부세액 250만원 초과 시 납부기한 후 2개월 이내 가능

○ (세부담상한) 150%

○ (세액산출 방식) 과세표준에 세율과 중과세 비율을 곱하여 산정

과 세 표 준		세 율 (0.04~0.12%)		중과세 (일반세율의 2~3배)	=	산출세액	세부담 상 한 →	결정세액
시가표준액× 공정시장가액비율*	X		X					

* 건축물, 주택의 건축물 부분에만 적용

12. 지방교육세

□ 개요

○ (성격)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취득세 등 지방세에 부가하는 목적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에 따라 전액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

○ (세수 귀속) 특·광역시세 및 도세

□ 과세표준 및 세율

구 분	과세표준 및 세율	세율조정범위
취득세분	구 등록세분 취득세액*의 20%	50% 가감 조정 (레저세분 제외)
등록면허세분(등록분)	등록면허세액의 20%	
레저세분	레저세액의 40%	
담배소비세분	담배소비세액의 43.99%	
주민세(개인분·사업소분 기본세액)	주민세액의 10% (인구 50만 이상 시 25%)	
재산세분	재산세액의 20%	
자동차세분	자동차세액의 30%	

* 구 등록세분 취득세액 : 표준세율에서 2%를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
(주택유상거래의 경우, 표준세율(1～3%)에 50%를 곱한 세율로 산출한 금액)

□ 징수 방법

○ (신고납부) 취득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주민세 사업소분을 신고·납부하는 때

○ (부과고지) 주민세 개인분, 재산세, 자동차세를 부과 고지하는 때

Ⅵ. 폐지된 세법

1. 재평가세 / 587
2. 부당이득세 / 588
3. 토지초과이득세 / 588
4. 전화세 / 591

1. 재평가세 (적용시한 : 2000. 12. 31까지 신고분)

가. 대상자산 및 적용시한

○ 매매용자산 등을 제외한 국내소재 모든 자산에 대하여 2000년 12월 31일까지 재평가신고를 한 분에 대하여 적용(한시법)
- 재평가는 1회만 할 수 있음

○ 재평가일(1년에 4회)
- 법인 : 각사업연도 개시일·개시일부터 3월·6월 또는 9월이 경과한 날
- 개인 : 매연 1월1일·4월1일·7월1일 또는 10월1일

나. 과세체계

○ 재평가가액 - 평가액(장부가액) = 재평가차액

○ 재평가차액 - 세법상 이월결손금 = 과세표준

○ 과세표준×세율(3%, 과세이연되는 토지는 1%) = 재평가세액

다. 세율

○ '84연이후 취득한 토지, '83연이전 취득한 토지로서 1회 재평가한 토지 : 재평가세율 1%
- 재평가차액에 대한 법인세 과세(추후 매각시 과세)

○ 상기 외의 자산 : 재평가세율 3%
- 재평가차액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

라. 재평가액

○ 재평가일 현재의 시가에 의함
- 다만, 토지의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를 시가로 적용할 수 있음

마. 재평가적립금의 사용제한

○ 재평가세의 납부 ○ 재평가일 이후 발생한 이월결손금의 보전

○ 자본에의 전입 ○ 환율조정계정상의 금액과의 상계

2. 부당이득세 ('07.7.19. 폐지)

가. 과세표준 : 판매가격-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가격

나. 세율 : 100%

다. 과세대상품목 : 총 5개

(2001. 6 현재)

구 분	품 목	주 무 부	근 거 법
곡가조절용 정부양곡 (2품목)	· 일반쌀 · 보리쌀	농림부	양곡관리법 §9
무연탄, 연탄 (2품목)	· 무연탄(분탄) · 연탄(3.6 kg)	산업자원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2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1품목)	·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민간주택은 제외)	건설교통부	임대주택법 §14

3. 토지초과이득세 ('98.12.28 폐지)

가. 과세표준

○ 과세표준 = 과세기간종료일의 기준시가-과세기간개시일의 기준시가
- 당해과세기간의 정상지가상승분 - 개량비와 자본적지출액 -직전기지가 하락분 이월공제액 - 과세제외기간·비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
- 전소유자 보유기간 토지초과이득 - 기본공제액(200만원)

○ 산출세액 = 과세표준×세율(30%, 50%)

○ 납부할 세액=산출세액 - 감면세액(50%)-자진납부세액공제(10%)+부동산 보유토지명세서 미제출가산세(10%) - 예정과세 납부세액

나. 토지용도별 유휴토지 범위

토 지 용 도	유 휴 토 지 범 위
공장용건축물 부속토지	○ 공장입지기준면적(①+②)초과토지 ① $\frac{\text{공장건축물연면적}}{\text{업종별기준공장면적률}} \times 100$ ② ①×30%(단, 수도권은 20%로 함)
연수원용토지	○ 기준면적(①+②)초과토지 ① 건축물바닥면적×용도지역별 적용배율 ② 운동장면적(수용정원×10㎡)
별장용 토지	○ 모든 별장용 토지 ○ 정당한 사유없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별장용 토지(법인의 경우)
주택부속토지	○ 기준면적(①과 ②중 큰 면적)초과토지 ① 주택바닥면적÷용도지역별 적용배율 ② 건축물연면적÷당해지역 용적률×1.2
일반건축물 부속토지	○ 기준면적(①과 ②중 큰 면적)초과토지 ① 건축물바닥면적×용도지역별 적용배율 ② 건축물연면적÷당해지역 용적률×1.2 ○ 건축물의 가액이 토지가액비율의 10%에 미달하는 토지 ○ 무허가건축물의 부속토지
농 지	○ 재촌·자경하지 아니하는 농지 ○ 도시계획 편입후 3년이 경과된 전·답 및 과수원
목 장	○ 기준면적 초과 ○ 도시계획 편입후 3년이 경과된 목장용지

토 지 용 도	유 휴 토 지 범 위
임 야	○ 다음의 임야를 제외한 임야 ○ 사찰림, 종교시설 주변임야 ○ 군사시설보호구역 ○ 보안림·천연보호림·채종림·시험림 ○ 동유림, 종중림등
체육시설 (선수전용, 종업원 체육시설)	○ 기준면적 초과
주차장용 토지	○ 건축물부설주차장 기준면적 초과토지 ·건축물연면적÷150㎡×13.75㎡×2 ○ 법인의 자가전용주차장 기준면적 초과토지 ○ 주차장업용 토지로서 연수입금액비율이 7%에 미달하는 토지 ○ 주기장용 또는 운송사업용 주차장 기준면적 초과 토지
광천지등	○ 광천지·지소용토지의 수입금액비율이 4%에 미달하는 토지
염 전	○ 1ha당 연간 생산량이 25t미만인 염전
골 프 장	○ 골프장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 금액비율이 7%(대중골프장 및 간이골프장은 3%) 미만인 토지
임대용 토지	○ 임대에 쓰이는 토지. 다만, 기준면적이내의 건축물 부속토지 제외

다. 양도세 공제

○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유휴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에서 기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를 공제

- 3년내에 양도시 100%
- 6년내에 양도시 60%

4. 전화세 (2001. 9. 1 전화세법 폐지하고 부가가치세법으로 통합)

가. 과세대상 및 세율

○ 납세의무자 : 전화가입자

○ 세율 : 전화사용료의 10%

<참고> 세율의 변천

	'74. 1 이후	'75. 7 이후	'89. 1 이후	'91. 1 이후
전 화 세	15%	15%	10%	10%
방 위 세	-	10%	2%	(폐지)
계	15%	25%	12%	10%

나. 비과세 및 감면료

○ 공중전화 사용료 및 통화국에서의 통화에 대한 전화사용료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

○ 주한외국공관과 이에 준하는 기관

○ 주한외교관과 이에 준하는 자

○ 가입전화사업을 경영하는 자(전화세의 징수의무자)

다. 징수 및 납부

○ 전화세는 전화사업경영자가 매월 전화사용료를 영수할 때 징수하여 익월 20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

조 세 개 요

발행인 기 획 재 정 부 장 관

편집인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인 쇄 신 진 기 획

☎ 044)863-7887

발행일 2024. 10.

※ 이 책자의 내용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세제실 조세정책과 (☎ 044)215-411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